





발간등록번호

11-1371000-001192-01

2022.06.

2021년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 시범운영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재정립과  
평가인증제 시행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제출문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2021년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 시범운영: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재정립과 평가인증제 시행방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2년 6월

사단법인한국예술경영학회

회장 양지연

---



## 연구진

---

연구책임 박소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양지연 (동덕여자대학교 교수)

공동연구 김현경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박재연 (아주대학교 교수)

정종은 (상지대학교 교수)

연구원 손차혜 (기독교대학교 강사)

오경미 ((사)오픈넷 연구원)

이수현 (연세대학교 박사)

손송이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과정)

연구보조 안지숙 (동덕여자대학교 석사)

윤은성 ((주)낭만사 객원연구원)

류효정 (숙명여자대학교 석사)

조연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수료)

황지우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석사과정)

연구협력 최미숙 ((사)한국박물관협회 실장)

이정미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과장)

---



## 현장연구 및 연구자문

---

권영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강사)

기 량 (문화체육관광부 학예연구관)

김장언 (아트선재센터 관장)

김정화 (前 서울공예박물관 관장)

백 령 (경희대학교 문화예술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안미희 (경기도미술관 관장)

오세덕 (경주대학교 교수)

윤태석 (국립항공박물관 학예연구본부장)

이선종 (국립생태원 전시교육실장)

이연수 (한양대학교 겸임교수)

이지현 (OCI미술관 관장)

이한용 (전곡선사박물관 관장)

전태일 (경희대학교 교수)

조성실 (전북대학교 계약교수)

조은정 (고려대학교 초빙교수)

조진근 (前 국립현대미술관 전시기획1팀장)

한 수 (국립공주박물관 관장)

홍경아 (숙명여대박물관 문화기획팀장)

---



# 목차

<b>제1장 서론</b>	<b>1</b>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5
<b>1부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 및 운영현황 분석</b>	
<b>제2장 박물관·미술관 정책과 사립박물관·미술관</b>	<b>27</b>
1절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흐름과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위상	29
2절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규제완화 흐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주요 개정 이력 검토	38
3절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및 사립박물관·미술관 관련 정책	81
4절 사립박물관·미술관 관련 정책적 쟁점들	107
<b>제3장 박물관·미술관 인력정책과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b>	<b>139</b>
1절 박물관·미술관 인력정책 개관: 특징과 문제점	141
2절 사립박물관 인력지원사업	161
3절 사립미술관 인력지원사업	198
4절 사립박물관·미술관 인력지원사업의 쟁점과 과제	227
<b>제4장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현황: 국가 통계 데이터 분석</b>	<b>235</b>
1절 통계 데이터의 특징	237
2절 사립박물관 현황 지표	247
3절 사립미술관 현황 지표	274
<b>2부 국내 평가인증제 및 해외 박물관·미술관 정책 사례 분석</b>	
<b>제5장 평가·인증제도 국내 현황</b>	<b>301</b>
1절 지역문화정책 관련 주요 평가제도: 도시재생사업, 문화도시사업, 문화영향평가	303
2절 문화·체육·관광 우수 기관 인증: 여가친화, 문화예술후원 우수, 스포츠친화, 관광품질 인증	319
3절 국·공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	331
4절 문화 분야 평가·인증제도의 특성과 시사점	338

<b>제6장 해외 박물관·미술관 정책 및 평가·인증제 사례 분석</b>	<b>343</b>
1절 미국 사례	345
2절 프랑스 사례	359
3절 영국 사례	373
4절 일본 사례	380

### 3부 평가인증 시범운영 결과분석 및 제언

<b>제7장 사립박물관·미술관 자기진단 및 현장사례연구</b>	<b>401</b>
1절 사립박물관·미술관 자기진단 및 현장사례연구 개요	403
2절 실태 분석 결과: 체크리스트 기반 현황 진단	414
3절 의견 분석: 문제점 및 개선 사항	480
4절 ‘우수 박물관·미술관’을 위한 제언	502

<b>제8장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마련을 위한 설문조사</b>	<b>537</b>
1절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개요	539
2절 설문조사 결과	549
3절 소결	573

<b>제9장 제언: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재정립 및 평가인증제 시행 방안</b>	<b>575</b>
1절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 기초의 재정립 및 주류화	577
2절 박물관·미술관의 분류체계 정비 및 법적 정의 개정	609
3절 사립박물관·미술관 인력정책 정립 및 인력지원사업 개선	620
4절 사립박물관·미술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639
5절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의 도입 및 활용	655

<b>참고 문헌</b>	<b>669</b>
--------------	------------

<b>부록</b>	<b>675</b>
-----------	------------

# 표 목차

[표 1-1]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 관련 선행연구	4
[표 1-2] 『2021년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 시범운영: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재정립과 평가인증제 시행방안 연구』 단계별 진행 과정 및 세부 수행 과업의 재설계	16
[표 2-1] 2004년 이후 지역별 박물관·미술관 확충 모형	30
[표 2-2] 연도별 박물관 건립 현황	31
[표 2-3] 연도별 미술관 건립 현황	32
[표 2-4] 박물관·미술관 법령의 주요 변경 사항 개관(1990~2000)	52
[표 2-5] 박물관·미술관 법령의 박물관·미술관 범주 관련 주요 개정 내용	69
[표 2-6] 박물관·미술관 세제혜택 현황	73
[표 2-7] 박물관·미술관에 관한 법률적 범주의 비교	75
[표 2-8] 박물관·미술관 지원·특례 현황	77
[표 2-9]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박물관·미술관 진흥조례’ 제정 현황	83
[표 2-10] 경기도와 강원도의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조항 비교	86
[표 2-11] 광역도 박물관·미술관 정책과 지원사업	98
[표 2-12] 제주도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 정성지표	101
[표 2-13] 서울형 평가지표 체계의 구성(안)	105
[표 2-14] 전국 사립박물관 개관연도별 분포	108
[표 2-15] 소재 권역에 따른 사립박물관 개관시기별 분포	109
[표 2-16] 전국 사립박물관 행정구역(광역자치단체)별 분포	111
[표 2-17] 전국 사립박물관 행정구역(기초자치단체)별 분포	111
[표 2-18] 전국 사립미술관 개관연대별 분포	113
[표 2-19] 소재 권역에 따른 사립미술관 개관연대별 분포	114
[표 2-20] 전국 사립미술관 행정구역(광역자치단체)별 분포	115
[표 2-21] 전국 사립미술관 행정구역(기초자치단체)별 분포	116
[표 2-22] 전국 사립박물관 등록연도 분포	118
[표 2-23] 미등록 사립박물관 목록	118
[표 2-24] 전국 사립미술관 등록연도 분포	119

[표 2-25] 미등록 사립미술관 목록	119
[표 2-26] 사립박물관 개관연도와 등록연도 비교	120
[표 2-27] 사립미술관 개관연도와 등록연도 비교	121
[표 2-28] 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 중 박물관 세부평가지표	123
[표 2-29]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최종지표 및 자료수집 출처	125
[표 2-30] 설립·운영주체가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사립박물관·미술관' 목록	130
[표 2-31] 영리/비영리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특성 비교	135
[표 2-32] 사립박물관의 설립·운영주체 구분 및 비중	137
[표 2-33] 사립미술관의 설립·운영주체 구분 및 비중	138
[표 3-1] 2021년 기준 박물관 운영주체별 평균지표 현황	141
[표 3-2] 전국 사립박물관 인력 평균	142
[표 3-3] 2021년 기준 미술관 운영주체별 평균지표 현황	143
[표 3-4] 전국 사립박물관 인력 평균	144
[표 3-5] 2018년과 2021년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인력 평균 비교	145
[표 3-6] 문체부 소관 법령에서의 '전문인력' 범위와 관련 사업 주관기관	148
[표 3-8]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현황: 박물관 및 미술관	162
[표 3-9]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정책관 예산 집행 보고자료	164
[표 3-10] 사립박물관 학예인력 지원사업 업무흐름도	167
[표 3-11]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등급별 월 지원금 구성	171
[표 3-12]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기관 평가방법 및 기준	172
[표 3-13]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평가결과 등급표	173
[표 3-14]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직무교육 대상 및 내용	174
[표 3-15]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인력 모집 현황	175
[표 3-16]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인력 지원 통계	176
[표 3-17] 사립박물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업무흐름도	178
[표 3-18] 사립박물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월 지원금 구성	181
[표 3-19] 사립박물관 예비전문인력 지원사업 지원관 및 인력 평가항목	183
[표 3-20] 사립박물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기관 평가방법 및 기준	183
[표 3-21] 사립박물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평가결과 등급표	184
[표 3-22] 사립박물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직무교육 일정	184

(표 3-23) 사립박물관 지원인력 공고 신청 현황 및 지원인력 선정 결과	185
(표 3-24) 사립박물관 지원인력 지원 결과	186
(표 3-25) 사립박물관 소장품 DB화사업 사업추진 절차	189
(표 3-26) 사립박물관 소장품 DB화사업 지원금 지급규모	192
(표 3-27) 사립박물관 소장품 DB화사업 평가방법 및 기준	194
(표 3-28) 사립박물관 소장품 DB화사업 평가결과 등급표	194
(표 3-29) 사립박물관 소장품 DB화사업 인력모집 현황	195
(표 3-31) 지방정부의 사립미술관 지원사업 사례	199
(표 3-32)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추진주체별 역할	199
(표 3-33)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추진일정	200
(표 3-34) 사립미술관 연도별 사업비 및 지원관 수	203
(표 3-35)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학예인력 선정기준	205
(표 3-36)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에듀케이터 선정기준	206
(표 3-37)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평가항목과 배점	208
(표 3-38)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지원대상 성별과 연령 분포	212
(표 3-39)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추진주체별 역할	213
(표 3-40)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추진일정	214
(표 3-41)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연도별 사업비 및 지원관 수	215
(표 3-42)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평가항목과 배점	223
(표 3-43)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지원대상 성별과 연령 분포	226
(표 3-44)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정책효과 모델	228
(표 4-1)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현황 정기보고 양식	238
(표 4-2)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과 『2021 전국 사립박물관 운영실태조사』, 『전국사립미술관 운영현황 분석연구』 주요 조사 인덱스 비교	244
(표 4-3) 사립박물관의 소장자료 종류/성격	257
(표 4-4) 사립박물관의 소장자료 수(건/점) 분포	259
(표 4-5) 사립박물관 종별 유물관리시스템 등록관 비교	260
(표 4-6) 사립박물관 별 유물관리시스템 등록유물 수 비교	260
(표 4-7) 사립박물관 연간 상설전 유물교체 횟수 비교	261
(표 4-8) 사립박물관 자료·도서실 소장자료 수 비교	261

(표 4-9) 사립박물관 연간 기획/특별전 운영 횟수 비교	262
(표 4-10) 유형별 사립박물관 프로그램 운영현황 비교	263
(표 4-11) 사립박물관 개관 일수 분포	265
(표 4-12) 행정구역별 사립박물관 연 평균 관람인원 분포 현황	267
(표 4-13) 사립박물관 일 평균 관람객별 분포 현황	268
(표 4-14) 사립박물관 상설전시 관람료 현황	268
(표 4-17) 사립박물관 특별(기획) 전시 관람료 현황	268
(표 4-15) 사립박물관 학예인력 분포	269
(표 4-16) 사립박물관 학예직 외 전문직(교육, 전시 등) 분포	270
(표 4-17) 사립박물관 일반직원 분포	270
(표 4-18) 사립박물관 인턴 분포	271
(표 4-19) 사립박물관 자원봉사자 분포	271
(표 4-20) 사립박물관 온라인 홈페이지(또는 블로그 등 웹주소) 운영 여부	272
(표 4-21) 사립박물관 온라인 홍보 매체 이용 기관 분포	273
(표 4-22) 사립박물관 서비스 제공(전시설명) 현황	273
(표 4-23) 사립미술관의 소장자료 종류/성격 분류	283
(표 4-24) 사립미술관의 소장자료 수(건/점) 분포	284
(표 4-25) 사립미술관 지정문화재 등 소장 현황	284
(표 4-26) 사립미술관 연간 상설전 유물교체 횟수 비교	285
(표 4-27) 사립미술관 자료·도서실 소장자료 수 비교	285
(표 4-28) 사립미술관 기획 및 특별전 운영현황	286
(표 4-29) 유형별 사립미술관 프로그램 운영현황 비교	287
(표 4-30) 사립미술관 개관 일수 분포	290
(표 4-31) 행정구역별 사립미술관 연 평균 관람인원 분포 현황	292
(표 4-32) 사립미술관 일 평균 관람객별 분포 현황	293
(표 4-33) 사립미술관 상설전시 관람료 현황	293
(표 4-34) 사립미술관 특별(기획) 전시 관람료 현황	293
(표 4-35) 사립미술관 학예인력 분포	294
(표 5-36) 사립미술관 학예직 외 전문직(교육, 전시 등) 분포	294
(표 4-37) 사립미술관 일반직원 분포	295
(표 4-38) 사립미술관 인턴 분포	296

[표 4-39] 사립미술관 자원봉사자 분포	296
[표 4-40] 사립미술관 온라인 홈페이지(또는 블로그 등 웹주소) 운영 여부	297
[표 4-41] 사립미술관 홈페이지 운영 및 SNS 활용 현황	297
[표 4-42] 사립미술관 서비스 제공(전시설명) 현황	298
[표 4-43] 사립미술관 온라인 서비스 현황	299
[표 4-44] 사립미술관 온라인 홍보 현황	299
[표 5-1] 도시재생 선도지역 종합평가 항목 및 내용	305
[표 5-2] 문화도시 지정 절차	308
[표 5-3] 문화도시 지정 '심의' 절차	309
[표 5-4] 문화도시 조성계획 심의 지표(예비도시 선정)	310
[표 5-5] 문화도시 지정 심의 지표(본도시 선정)	311
[표 5-6] 법정문화도시 지정 현황	312
[표 5-7] 2020년 문화영향평가지표	315
[표 5-8] 문화영향평가 유형	315
[표 5-9] 여가친화기업 인증 평가지표	319
[표 5-10] 중견·대기업, 공공기관 여가활동 지원 지표	320
[표 5-11]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 절차	322
[표 5-12]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 평가 제출서류 세부 사항	323
[표 5-13] 스포츠 친화기업 인증제 평가지표	325
[표 5-14] 스포츠 친화기업 인증제 평가지표 세부(예시)	326
[표 5-15] 한국관광품질인증 현장평가기준	329
[표 5-16] 국·공립박물관·미술관평가인증 적용대상 및 평가인증 적용 시점	332
[표 5-17] 국립박물관 평가지표	333
[표 5-18] 공립미술관 평가지표	334
[표 5-19]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제도 운영 절차	335
[표 5-20] 문화 분야 평가·인증제도 사전 및 사후 관리제도 요약	339
[표 6-1] 미국 박물관·미술관 주제 분야별 분류와 주제 분야별 박물관·미술관 수	346
[표 6-2] 미국 박물관·미술관 핵심 기준	355
[표 6-3] 프랑스 박물관법	360

[표 6-4] 영국 박물관·미술관 인증 기준 및 세부 항목	377
[표 6-5] 일본 「박물관법」 전문	383
[표 6-6] 일본 <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상의 바람직한 기준>(문부과학성 고시 제165호) 전문	391
[표 7-1] 현장사례연구 프로세스	404
[표 7-2] 현장사례연구 대상 및 방법	405
[표 7-3] 현장사례연구 내용	406
[표 7-4] 현장사례연구 참여관 프로필	411
[표 7-5] 현장사례연구 참여관 등록 종별 비교	412
[표 7-6] 현장사례연구 참여관 설립·운영주체 구분	413
[표 7-7] 현장연구 분석 결과: 공공성 ① 설립 및 운영주체 상시 공표	414
[표 7-8] 설립주체별 기관의 설립주체와 운영주체 상시 공표	414
[표 7-9] 현장연구 분석 결과: 공공성 ② 설립 및 운영 관련 자체 규정	416
[표 7-10] 설립주체별 기관의 설립 및 운영 관련 자체 규정	416
[표 7-11] 현장연구 분석 결과: 공공성 ③ 윤리규정	416
[표 7-12] 설립주체별 ICOM 및 기관 윤리규정	417
[표 7-13] 현장연구 분석 결과: 공공성 ④ 공공적 자원의 범위와 내용 규정	419
[표 7-14] 설립주체별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적 자원의 범위와 내용 규정	419
[표 7-15] 현장연구 분석 결과: 공공성(공적 신뢰와 책임)	421
[표 7-16] 현장연구 분석 결과: 공공성 ⑤ 공공의 지원사업 참여 경험	423
[표 7-17] 사립박물관·미술관 대상 지원사업 종류	423
[표 7-18] 현장연구 분석 결과: 조직 건전성A ① 설립목적 및 미션	428
[표 7-19] 설립주체별 기관의 설립목적 및 미션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의 정기적 수립 및 실행, 평가와 개선하는 절차 보유	429
[표 7-20] 현장연구 분석 결과: 조직 건전성A ② 거버넌스 및 뮤지엄 개념 정립	429
[표 7-21] 현장연구 분석 결과: 조직 건전성A ③ 의사결정	431
[표 7-22] 설립주체별 기관 운영에 관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 또는 위원회 운영	432
[표 7-23] 설립주체별 기관 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정책개발을 하는 사람	433
[표 7-24] 현장연구 분석 결과: 조직 건전성A(거버넌스, 구조, 미션 등)	433
[표 7-25] 현장연구 분석 결과: 조직 건전성B ① 인력 현황	440
[표 7-26] 현장연구 분석 결과: 조직 건전성B ② 인력 관리	443

[표 7-27] 설립주체별 인력 관련 규정 마련 및 준수	444
[표 7-28] 현장연구 분석 결과: 조직 건전성B ③ 인력 규모	446
[표 7-29] 설립주체별 현재 업무분장 및 인원 평균에 대한 기관 인식	447
[표 7-30] 현장연구 분석 결과: 조직 건전성B ④ 재정 및 시설	451
[표 7-31] 현장연구 분석 결과: 조직 건전성B ⑤ 위기관리	453
[표 7-32] 현장연구 분석 결과: 조직 건전성B(인력, 시설, 재정, 위기관리)	456
[표 7-33] 현장연구 분석 결과: 소장품 ① 자료의 가치 평가와 소장품 관리 규정	457
[표 7-34] 현장연구 분석 결과: 소장품 ② 소장품 DB 구축 및 소장품 공개	458
[표 7-35] 설립주체별 소장품 DB 구축 전담 학예사 유무	459
[표 7-36] 현장연구 분석 결과: 소장품 ③ 소장품 관리·연구	462
[표 7-37] 현장연구 분석 결과: 소장품(Collection, 자료)	469
[표 7-38] 현장연구 분석 결과: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 ① 홈페이지	470
[표 7-39] 현장연구 분석 결과: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 ② 전시 및 교육	470
[표 7-40] 현장연구 분석 결과: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 ③ 이용자 정책	472
[표 7-41] 현장연구 분석 결과: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 ④ 소장품 활용 및 연구	474
[표 7-42] 현장연구 분석 결과: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 ⑤ 대외 협력	474
[표 7-43] 현장연구 분석 결과: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전시, 교육, 지역, 관람객)	479
[표 8-1]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대상 및 방법	540
[표 8-2]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내용	540
[표 8-3]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기관유형별 분포	546
[표 8-4]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근무특성별 분포	547
[표 8-5]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	548
[표 8-6]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긍정응답 90%대 문항	549
[표 8-7]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긍정응답 80%대 문항	549
[표 8-8]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긍정응답 70%대 문항	551
[표 8-9]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긍정응답 60%대 문항	553
[표 8-10]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긍정응답 50%대 문항	555
[표 8-11]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긍정응답 50% 미만 문항	556
[표 8-12]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 전체 응답분포	557
[표 8-13]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조직 건전성A 전체 응답분포	558

[표 8-14]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조직 건전성B 전체 응답분포	562
[표 8-15]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 전체 응답분포	567
[표 8-16]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이용자(경험) 전체 응답분포	570
[표 9-1]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2012) 4대 추진방향	587
[표 9-2]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2019)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588
[표 9-3] 박물관·미술관 운영실태조사 관련 법적 근거 비교	592
[표 9-4] 제1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문화기반시설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향’	606
[표 9-5]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20)의 박물관·미술관 관련 과제	606
[표 9-6] 박물관·미술관의 유형 구분	610
[표 9-7] 박물관·미술관의 구분 및 운영형태 관련 「박미법」 개정(안)	612
[표 9-8] 박물관·미술관의 법적 정의 내용 비교	614
[표 9-9] 박물관 및 미술관 정의 관련 「박미법」 개정(안)	617
[표 9-10]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에 대한 「박미법」 상 주요 규정	639
[표 9-11] 미국, 영국, 일본의 설립·운영 및 인증 관련 박물관·미술관 증빙 자료	648
[표 9-12]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의 정책 목표 및 효과	657
[표 9-13]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 기준(안)	661
[표 9-14]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 시행 로드맵(안)	667

# 그림 목차

〈그림 2-1〉 전국 사립박물관 개관연도별 분포	108
〈그림 2-2〉 전국 사립박물관 개관시기별 분포	108
〈그림 2-3〉 소재 권역에 따른 사립박물관 개관연대별 분포	109
〈그림 2-4〉 전국 사립미술관 개관연도별 분포	113
〈그림 2-5〉 전국 사립미술관 개관연대별 분포	114
〈그림 2-6〉 소재 권역에 따른 사립미술관 설립연대별 분포	115
〈그림 3-1〉 학예사자격증 발급 통계	147
〈그림 3-2〉 한국의 고용구조 내 학예(예비)전문인력의 커리어 패스(paths)	154
〈그림 3-3〉 기관별 큐레이터 책무도	160
〈그림 3-4〉 사립미술관 연도별 사업비 및 지원관 비교	202
〈그림 4-1〉 소재지별 사립박물관 면적 비교	249
〈그림 4-2〉 행정구역 별 1종 등록 사립박물관 면적	250
〈그림 4-3〉 행정구역 별 2종 등록 사립박물관 면적	250
〈그림 4-4〉 건물면적 대비 사립박물관 수	251
〈그림 4-5〉 행정구역별 사립박물관 부지면적 대비 건물면적 비교	251
〈그림 4-6〉 사립박물관 주요시설 보유현황	252
〈그림 4-7〉 사립박물관 전시실(상설전시실, 기획 또는 특별전시실) 운영현황	252
〈그림 4-8〉 사립박물관 상설전시실 운영현황	253
〈그림 4-9〉 건물연면적 대비 사립박물관 상설전시실 면적	253
〈그림 4-10〉 사립박물관 기획 또는 특별전시실 운영현황	254
〈그림 4-11〉 건물연면적 대비 사립박물관 기획 또는 특별전시실 면적	254
〈그림 4-12〉 행정구역별 사립박물관 지정문화재 등 소장 현황	259
〈그림 4-13〉 전국 사립박물관 기획 및 특별전시 운영 횟수	262
〈그림 4-14〉 행정구역별 사립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기관 수	263
〈그림 4-15〉 지역별 사립박물관 프로그램별 운영 기관 수	264
〈그림 4-16〉 행정구역별 사립박물관 평균 개관 일수	265

〈그림 4-17〉 행정구역별 사립박물관 평균 개관 시간	266
〈그림 4-18〉 소재지별 사립미술관 평균 부지면적	275
〈그림 4-19〉 행정구역별 사립미술관 평균 부지면적	276
〈그림 4-20〉 소재지별 사립미술관 평균 건물연면적	277
〈그림 4-21〉 행정구역별 사립미술관 평균 건물연면적 비교	277
〈그림 4-22〉 사립미술관 주요시설 보유현황	278
〈그림 4-23〉 행정구역별 사립미술관 전시실(상설전시실, 기획 또는 특별전시실) 운영현황	279
〈그림 4-24〉 행정구역별 사립미술관 기획전 및 특별전 개최 횟수 비교	286
〈그림 4-25〉 행정구역별 사립미술관 프로그램 운영 기관 수	287
〈그림 4-26〉 행정구역별 사립미술관 프로그램 별 운영 기관 수	288
〈그림 4-27〉 행정구역별 사립미술관 해외 교류 MOU 현황	289
〈그림 4-28〉 행정구역별 사립미술관 평균 개관 일수 비교	290
〈그림 4-29〉 행정구역별 사립미술관 평균 개관 시간	291
〈그림 6-1〉 미국박물관협회(AAM)의 뮤지엄 우수성 인증 단계	351
〈그림 9-1〉 문화분야 다른 법률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관계	598
〈그림 9-2〉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기술 R&D의 기대효과	636

## 제1장 서론

---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가. 연구 배경

### 1)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의 시행과 사립관에의 확대 적용 검토 경위

#### □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의 도입 및 추진 경위

-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종합적인 박물관 발전계획인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2012.5.)을 통해 양적 확충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온 박물관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 뒤, 중장기적인 박물관정책 기조로서 질적 성장을 강조한 박물관 발전정책의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함
  - 이 계획은 당시 문체부 조직편제상 미술관을 포함하지 않는 ‘박물관’ 정책으로서 수립됨
- 당시 발표된 계획의 4대 추진방향은 박물관 인력의 전문화, 박물관 제도의 체계화, 박물관 경영의 효율화, 전시와 프로그램의 대중화였으며, 이 중 ‘박물관 제도의 체계화’를 위해 설립·운영의 최소 기준 마련, 사전평가제 및 사후감리제 도입, 박물관 등록제도 개선, 사립의 비영리법인화 지원, 평가인증제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즉, 이는 질적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 방안으로서 기존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핵심 수단인 등록 제도를 변화한 정책 환경에 맞춰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 등록 요건을 보강하는 설립·운영의 최소 기준 마련, 평가인증제의 도입 등을 추진하고자 한 것임
- 이때 평가인증제도는 박물관의 운영부실 방지 및 공공서비스 강화, 국내·외 박물관 환경 변화에 부응한 미래가치 증대, 박물관의 건전한 발전 방향 제시 등을 목적으로, 개별 박물관이 운영상 최소 기준을 충족케 하여, 운영 내실화를 통한 공공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자 한 것임
  - 국·공립박물관에 대해서는 의무 시행, 사립·대학박물관에 대해서는 선택 시행으로 구상되었고, 인증박물관은 국유문화재 관리, 경력인정, 홍보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설계됨
  - 또한 인증제의 시행을 계기로 지원방식에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을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제고 하고자 하였음

- 이후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2012.5.)의 실행을 위해서 문체부는 2012~13년도에 평가인증제도 도입과 관련된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2014~15년에는 시범평가 사업을 추진함

(표 1-1)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 관련 선행연구

연구 제목	연구 기관	년도	내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 평가인증제도의 도입을 통한 운영 활성화 도모</li> <li>• 평가인증 결과에 따른 유기적 환류시스템 구축 제안</li> </ul>
『박물관 설립·등록기준 및 평가인증제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제도의 개선 및 평가인증제도 도입방안 제안</li> <li>• 7개 영역의 박물관 평가인증 지표를 상세하게 제시함</li> </ul>
『박물관 평가인증제 평가영역 및 평가기준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 평가 항목,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제시</li> <li>• 국·공립, 사립대학 박물관에 따라 평가항목 배점을 차등 적용하도록 설계함</li> </ul>
『박물관평가인증제도 확대방안 검토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 및 대학 박물관 대상으로 연구 실시</li> <li>• 사립 및 대학 박물관의 정책 및 운영현황을 진단하고, 평가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선결조건을 제시함</li> </ul>

- 2014년, 문체부는 평가인증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박물관에 대해 우선적으로 시범평가를 실시함
  - 그간에 지속적으로 공립박물관의 운영부실 문제가 공론화되어 왔고, ‘공립박물관 운영실태 조사 연구’(문화체육관광부, 2011)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 왔음
  - 그러나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서 공립박물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그 주요 원인 중 하나로서 법적, 제도적 한계점이 지적되면서, 공립박물관에 대한 우선적인 시범평가실시가 추진됨
  - 2014년 5월~12월까지 전국 203개 등록 박물관(2013년 기준)을 대상으로 시행된 시범평가에서는 (1) 표준유물관리시스템 활용률, (2) 등록 공립 박물관 소장유물 대비 데이터베이스(DB) 등록률, (3) ‘학예사자격증 보유자 및 학예직 근무자 수’당 소장유물 수, (4) 공공문화기반시설 활성화를 위한 우수사례(정성평가) 등을 평가지표(항목)로 설정함
  - 이 시범평가 결과, 소장유물 대비 데이터베이스 등록률이 60%에 그쳐, 문체부의 소장유물 데이터베이스 등록 인력 지원사업이 새롭게 실시됨
- 이 시범사업 이후 2015~16년에 걸쳐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시행을 위한 평가지표 및 운영지침(매뉴얼)이 개발되었으며, 2017년에 전국에 등록 후 3년이 경과된 190개관의 공립박물관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제를 실시했으며, 이후 2년 주기로 시행함

- 그 과정에서 2016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박미법」)을 개정하여 국·공립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등록 의무화, 사전 건립타당성 평가,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한 평가인증제도 시행 등을 법제화하였음
- 법 개정을 토대로 2020년에는 국립박물관 및 공립미술관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함

#### □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의 사립관 확대 검토 경위

- 2015년, 문체부는 사립박물관의 공공문화기반시설로서의 역할과 기능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 전국 등록 사립박물관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제도 시범평가를 실시함
  - 전국 336개 등록 사립박물관(2014년 기준)을 대상으로 한 이 시범평가는 사립박물관 운영 분야 4개 항목(△표준유물관리시스템 사용 및 등록률, △학예사자격증 보유자 수, △수장고 운영도, △기획·특별전시공간 보유 및 활용 현황), 우수사례 분야 1개 항목(박물관의 전시, 교육, 문화행사)으로 평가지표를 구성하여 진행됨
  - 이를 바탕으로 박물관 현장평가를 시행하고, 분야별 우수 후보관을 선정한 후, ‘평가 및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박물관을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우수박물관 선정 시, 박물관 규모보다는 운영 상태와 사업의 효과성, 활용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추진할 계획이었음
  - 그러나 이 사립관 대상 평가인증제 시범사업에 관해서는 문체부의 보도자료만 확인될 뿐, 그 결과에 대한 별도의 공표나 결과보고서의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2016년의 「박미법」 개정을 통해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도 시행이 의무화되었으나, 사립관 및 대학관의 경우에는 그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사립관 및 대학관으로의 확대 적용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짐
- 2017년, 사립 및 대학 박물관을 대상으로 『박물관평가인증제도 확대방안 검토연구』가 이루어졌으며, 평가인증제의 도입을 위해서는 정책적 연속선상에서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2012.5.)(이하 <기본구상>)에서 발표된 ‘박물관 제도의 체계화’ 및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을 결론으로 제시함
- 이 연구는 <기본구상>에서 “설립-등록-지원-평가인증은 고립된 제도가 아닌 연계되고 상호 보완되는 방식으로 설계” 되었으므로, “설립, 등록, 지원, 평가인증의 제도적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어느 하나만을 선별적으로 도입하거나 추진하는 방식은 이러한 체계성을 충족시키기 어려우며, 등록제도의 정비 없는 평가인증제도, 또는 지원제도의 개선 없는 평가인증제도의 도입은 이 계획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한계를 드러낼” 것임을 강조함
- 따라서 “박물관평가인증제도의 시행은 이러한 종합적, 체계적인 접근 속에서 준비와

실행이 요구되는 사안”인 만큼, “아직 법정 평가인증제도의 대상이 아닌 사립 및 대학 박물관으로의 확대 시행은 그런 점에서 사립박물관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설계, 대학박물관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 설계를 전제로 하여 시행되는 것”이 필요함을 역설함

- 평가인증제 확대 적용 여부에 대한 이러한 제안과 함께, 이 연구는 박물관정책 목표와 지원사업의 연계성 강화, 정책평가를 통한 지원사업의 개선, 박물관정책의 추진체계 정비, 박물관정책 주무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책무 강화, 사립 박물관의 정책적 중심성에 관한 재인식, 사립박물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 사립박물관의 법적 정의 및 분류체계의 재정립, 등록제도의 개선, 학예사 제도의 개선, 대학박물관정책의 부재 및 열악한 운영에 의한 평가인증제 도입의 곤란함, 대학박물관정책의 수립을 통한 대학박물관의 기능 강화 및 정부지원 확대 등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정책 대안으로서 제시함(박소현 외, 2017)
- 그러나 이 연구 이후 사립박물관(이하 사립관) 및 대학박물관(이하 대학관)에 대한 평가인증제 확대 적용 여부는 별도의 정책연구나 공론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함께 제안된 정책 과제들도 거의 반영되지 않거나 실행되지 않음

## 2)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의 발표 및 실행

### □ 종합적인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추진계획의 발표 및 그 특징

- 2012년의 <기본구상> 발표 이후 7년 만에 발표된 문체부의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이하 <중장기계획>)에서는 공공성 강화, 전문성 심화,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표로 5대 전략 및 16대 과제를 발표함
  - 이전까지는 박물관 업무와 미술관 업무가 분리되어 있었으나, 2017년 9월에 문체부 내에 박물관·미술관 정책 업무를 통합해 담당하는 문화기반과가 신설되었으며, 이 종합계획은 박물관과 미술관을 아우르는 첫 중장기계획의 성격을 갖게 됨
- 이 계획에서 첫 번째로 제시한 전략은 ‘공공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위상 강화’였으며, 이 전략 하에 ① 박물관·미술관 정책기반 체계화, ② 박물관·미술관 운영관리 내실화, ③ 박물관·미술관 평가제도 정비 등의 핵심과제가 제시됨
- 그 세부과제로는 이전의 <기본구상>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제도 정비의 과제들이 상당 부분 다시 핵심과제로서 제시되었음
  - 추진과제로 (가칭)박물관·미술관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지역문화거점’으로서의 박물관·미술관을 위한 지자체 역할 강화, 등록유형 정비, 운영관리 실태조사 강화(문화기반시설 통계시스템

구축, 등록요건 준수현황 관리 강화 및 미이행 시 등록취소), 건립타당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건립단계별 모니터링 강화, 건립과정 표준매뉴얼 제작·배포, 평가인증제도 내실화(지표 개선, 평가인증결과 환류 강화를 통한 선순환 구조 마련, 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 대상 평가인증 시범사업 실시), 평가 관련 전담기관 운영 등이 제시됨

- 이러한 <중장기계획>의 특징은 실질적으로 2010년대 초부터 거듭 제기되었던 추진 체계 정비 및 제도개선 차원의 각종 과제들이 거의 실행되지 못했고, 그런 상황에서 새롭게 도입된 평가인증제 등의 시행 과정에서도 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여러 한계점들이 드러나고 있음을 인식·파악한 결과임
- 한편 2022년 시점에서 현재까지의 <중장기계획> 이행 수준을 이 첫 번째 전략에 국한해 봤을 때, 아직까지 제시한 과제들이 상당 수 실행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위에 열거된 세부과제들이 동시적으로 추진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세부 과제들의 우선 추진순위가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평가인증제의 요건인 등록제도의 정비 없이 평가인증제의 내실화는 어렵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 사립박물관·미술관 대상 평가인증 시범사업 실시의 근거 계획

- <중장기계획>은 정책기반 체계화, 운영관리 내실화와 함께 평가제도 정비를 핵심 과제로 제시했으며, 평가제도 정비와 관련해 평가인증제의 각종 한계를 개선하는 것이 세부과제로 제안됨
- 이러한 세부과제들 속에서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 내실화’의 과제 중 하나로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 대상 평가인증 시범사업 실시가 포함되어 있음
- 그 배경으로는 현재 시행 중인 평가인증제의 ‘종합적 개선’ 필요성뿐 아니라 평가기관의 분산으로 평가과정의 연계성 부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으며, ‘종합적 개선’ 필요성과는 별도로 ‘설문조사’를 근거로 하여 사립관의 평가인증제 확대 필요의견이 79%에 달함을 언급함
- 이와 같은 배경을 근거로 삼아 <중장기계획>은 정책대안으로 지표 개선, 결과 환류 강화, 전담기관 운영 등과 함께 사립 및 대학관 대상 평가인증 시범사업 실시를 추진과제로 제시한 것임
- 하지만 이 계획에서 출처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설문조사’ 결과만을 토대로 평가인증제를 사립관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은 위에 언급한 정책연구(2017) 결과와는 상충되는 정책대안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이 계획에서는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이하 국·공립관)과 별도의 평가지표 마련이 사립관 및 대학관에 대한 평가인증제 적용 시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각종 제도적 문제점이나 한계가 ‘평가지표’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음
- 따라서 2010년대 이후의 박물관·미술관 정책 및 평가인증제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중장기계획>에 의해 실시되는 본 ‘시범사업’의 목표와 방법론이 현행의 국·공립관 대상 평가인증제를 모델로 삼아 기계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평가인증제와 연계되어 있는 각종 정책 및 현황을 진단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함
- 또한 <중장기계획>이 발표된 후 이미 3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만큼, 정책 환경의 변화를 포함한 보다 엄밀한 현황 진단과, 평가인증의 시행 가능성 및 조건에 대한 파악, 나아가 평가인증제의 정책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보다 더 시급하게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정책 과제가 무엇인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하는 작업이 요청됨

### 3) 코로나19 이후, 박물관·미술관 정책 여건 및 환경의 변화

#### □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분야의 피해 심각성

-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은 사회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가져왔으며 문화예술분야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침
- 세계적인 봉쇄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격리, 방역지침 등으로 문화시설의 휴관 및 폐관, 공연·전시의 무기한 연기 및 취소 등이 발생해, 문화예술활동의 위축과 중단은 물론, 존립 위기가 전면화됨
- 2020년 7월, 문체부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문화예술 분야의 피해는 5,049억 원으로 집계되었음(양혜원 외, 2020)

#### □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운영 악화 및 프리랜서 전문직 종사자의 위기 심화

- 2020년 7월 시점에서, 박물관·미술관, 도서관은 관람료 수입, 편의시설 매출 등의 감소로 동년 2월부터 9월까지 1,14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관련해 국제박물관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이하 ICOM)과 OECD 차원에서 뮤지엄 전반의 피해와 그 대응을 위한 조사 및 대응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 전지구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은 순식간에 수익창출 기회를 상실한 대부분의 문화·창조산업 분야에 큰 타격을 가했으며, 해당 분야의 프리랜서 전문직 종사자와 같이 더 취약한 노동자의 생존을 구조적으로 위협하는 사태임이 드러났고, 박물관·미술관 분야 또한 그에 해당하는 전형적인 위기 상황을 보임

#### □ 코로나19 계기 정부 지원 및 그 한계

- 세계적으로 거의 2020년 내내 휴관 상태가 이어지면서 박물관·미술관들은 관람객 급감과 경제적 타격을 입음
  - 2021년의 ICOM 조사 응답자의 70%가 연간 방문객이 50% 이상 감소함
- 이러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각국의 정부들이 다양한 조치를 취했는데, 긴급 재정 지원, 직원 급여 제공, 손실 보상, 긴급 세제지원, 모금 캠페인 등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짐
- 한국에서도 2020년 초에 다중이용시설인 박물관·미술관의 잠정 휴관으로 인해 사립관의 70% 이상이 휴관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문체부의 지원대책이 마련됨
- 그러나 사립관에 대한 지원 대책은 국고지원사업에서의 자부담분 경감 및 소독방역 물품 지원과 같은 긴급지원, 팬데믹 봉쇄로 인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와 맞물려 추진된 한국형 뉴딜사업(지능형 박물관·미술관 기반 조성 사업: 온라인 콘텐츠 제작 지원)으로 한정됨
- 문화정책 분야 전반에서 유네스코(UNESCO)의 ‘회복탄력성(resilience)’ 운동이 논의되고 이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적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박물관·미술관 분야는 이러한 정책 논의에 포함되지 못하였으며, 이에 대해 사립박물관·미술관 현장에서는 정책 소외를 토로하는 불만의 목소리가 제기되었음

####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박물관·미술관 정책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평가인증제 시범사업의 재설계 필요성 대두

- 본 과제는 위와 같이 코로나19 이전에 수립된 <중장기계획>을 실시 근거로 하되, 코로나19의 위기를 통과하고 있는 시점에서 실제로 실시되기에는 커다란 ‘시차’ 위에 있음을 중요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사립관에 평가인증제를 확대 적용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가 박물관·미술관 운영의 질적 향상임을 환기할 때, 이러한 질적 향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적 상황을 경험한 사립관의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과 병행되어야 할 사안임

- 이때 '지속가능성 확보'는 <중장기계획>의 3대 목표 중 하나로 제시된 것으로서, 오히려 코로나 19 위기를 겪으면서 휴관이나 폐관, 관람객 감소, 인원 감축 등 사립관의 지속가능성이 여러 형태로 더욱 심각하게 취약해지고 불안정해졌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음
-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평가인증제가 사립관의 회복탄력성이나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인지, 특히나 기존 국·공립관 대상으로 시행된 평가인증제에 대해서도 '종합적 개선'이 요청되고 있음을 인식할 때 그러한 개선 과제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립관에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종합적이고 신중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문화예술분야의 각종 긴급지원 및 새로운 정책의 개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정책 소외'를 체감한 사립박물관·미술관 분야인 만큼, 오히려 이러한 정책 소외가 어떤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는지를 진단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추진과제로 남아있는 평가인증제 확대 적용의 타당성 검토 및 그 제도적 설계를 위해서도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해 한국의 박물관·미술관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는 ICOM의 경우, 뮤지엄 정의(definition)의 전면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온 만큼, 기존의 박물관·미술관 운영은 물론 정책 전반에 대한 재구조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해외 각국에서는 이미 보다 공익적·윤리적 차원에서 박물관·미술관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왔음
  - 또한 한국의 문화정책 분야에서도 문화정책의 체계화 및 시의성 높은 정책과제들의 신규 개발, 지역문화정책의 본격적인 추진과 확대, 문화예술 및 문화산업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노동·복지 정책의 대대적인 정비와 확산 등이 코로나19의 팬데믹 시대를 전후로 추진되었음을 간과할 수 없음
  -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에 더해 국내외의 정책 환경 또한 긴박하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 연구의 평가인증제 시범사업 운영이 코로나19 이전의 현황이나 환경을 전제로 하여 추진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중장기계획>을 근거로 한 사립관 대상 평가인증제 시범사업 실시라는 정책 과제의 의미를 충분히 인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거대한 시대적 변화라는 중대한 시의성과 그로부터 제기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현황 및 과제에 부응해 시범사업의 운영방식을 보다 확장적이고 심층적으로 재설계하여 진행함으로써 그 정책적 기여도를 제고하고자 함

## 나. 연구 목적

### 1) 연구 목적

####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립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종합적인 운영현황 파악

-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운영현황은 기본적으로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을 기초로 하여 파악되고 있음
- 최근 사립박물관과 사립미술관 각각에 대한 운영실태조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었으나, 독립적으로 추진되었으며, 조사의 항목이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에 수록되는 운영현황 보고 항목과 상이하어 통합된 운영현황을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이에 기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실태조사인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수록 자료 및 그 데이터의 최신 자료를 토대로 사립관의 운영현황을 파악함
- 이러한 접근은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며, 운영현황 파악의 기본 데이터가 안고 있는 한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기도 함

#### □ 사립박물관·미술관에 관한 종합적인 정책 분석 및 쟁점 파악

-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운영현황은 그 개별적인 사정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기 보다는, 정부의 각종 관련 정책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받고 운영방식 자체가 결정되는 경향이 강함
- 따라서 사립관의 운영현황 파악은 정책 분석과 별개로 진행될 수 없으며, 현재와 같은 운영방식이 고착화된 중요한 요인으로서 사립관과 관련된 박물관·미술관 정책 전반에 대한 분석이 연계성을 갖고 이루어져야 함
- 따라서 본 연구는 사립관의 운영현황 파악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변천사와 현행의 정책, 등록제도 및 학예사자격제도, 경력인정대상기관 지정제도, 그리고 사립관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원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그로부터 사립관 운영과 직결되는 주요 쟁점을 파악할 것임

- 특히 이러한 정책 분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구되는 새로운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에 중요한 기초자료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사립관에 부합하는 평가인증제 시범사업 실시를 통한 심층 운영현황 분석 및 ‘우수 박물관·미술관’ 운영기준(안)의 도출

- 사립관 대상 평가인증제 시범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공립관의 운영 여건과 큰 차이를 갖는 사립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되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인식을 토대로 함
- 이러한 차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본 연구는 국·공립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인증제의 시행 방법이나 평가지표를 면밀히 분석한 후, 그 방법이나 지표를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립관의 특성 및 현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방법론을 설계하여 추진함
  - 특히 국·공립관의 평가인증제는 기본적으로 공적 예산의 운용 적절성과 이를 통한 성과 측정의 성격을 갖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경향을 띠고 있으므로, 예산이나 조직 면에서 이보다 열악한 다수의 사립관을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함
  - 평가지표의 경우, 특히 더 이러한 평가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는 만큼, 기존 국·공립관 대상 평가지표의 틀이나 세부 평가항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평가 자체의 효과를 반감할 우려가 큼
- 특히 본 시범사업은 어디까지나 법정 대상이 아닌 사립관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최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재설계되어야 하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유연하게 시범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또한 사립관 종사자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현행의 법제나 박물관·미술관 운영과 관련된 국내·외의 기준 및 윤리, 바람직한 운영방식 등에 대한 정보와 인식이 고르지 않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유하고 본 시범사업을 통해서 운영현황을 객관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에 중점을 둬
-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특히 국·공립관 대상의 평가인증제 방식은 더욱 부적합하므로, 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한 시범사업 과정의 설계, 평가자-피평가자라는 정형화된 관계를 넘어 신뢰를 기반으로 한 라포 형성, 반구조적 형태의 심층 인터뷰 등을 포함한 질적 연구의 방법을 통해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국·공립관 대상의 평가인증제의 경우, 근본적으로 공통의 합의된 ‘운영기준’이 부재한 상태에서 전문가들이 도출한 평가지표를 운영기준으로 간주해 추진되고 있으나, 이러한 방식을 그대로 사립관에 적용하는 것은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정의나 운영기준에 대한 다양한 사립관 종사자들의 입장과 의견을 고려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평가인증제 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운영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공론화와 합의 도출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 이에 본 연구는 시범사업의 방법을 기존 평가인증제의 방법보다 확대하여, (1) 국내·외 평가인증제 관련 정책 공유 포럼 실시(정책정보 공유), (2) 국내 법제를 중심으로 한 운영현황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립관의 자기진단평가, (3) 운영현황 체크리스트 기반 현장방문 심층 조사연구(전문가의 현장사례연구), (4) 해외 박물관·미술관 운영 국가 표준을 근거로 한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등으로 입체적으로 재설계하여 실시함

####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재정립 및 사립관 대상 평가인증제 시행 방안 제안

- 기본적으로 시범사업의 실시는 해당 제도의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을 우선적인 목적으로 하며, 그 타당성이 인정될 때에 제도 시행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필요로 함
- 이에 본 연구는 데이터 분석을 통한 종합적인 현황 파악, 정책 분석 및 쟁점 파악, 시범사업 실시를 통한 심층 현황분석 및 운영기준에 관한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요청되는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을 정립하고, 그 정책적 구조 내에서 사립관 대상 평가인증제의 도입 타당성 및 시행 방안을 제안하도록 함
- 「박미법」 개정을 통해 평가인증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현행 시행 대상은 법적으로 국·공립관으로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현재 조건 내에서의 종합적인 운영현황 및 정책 여건을 종합적으로 진단했을 때 그 대상 범위를 사립관에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이 박물관·미술관 정책에 의한 여러 대안 중에서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것인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음
- 이때 판단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는 선행연구(박소현 외, 2017)에서 종합적인 제도 개선을 전제로 한 도입을 제안한 점을 고려해, 실제로 평가인증제의 도입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현실적 여건들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라 할 것임
- 따라서 본 연구는 국·공립관과 같은 법정 의무시행 대상이 아닌 사립관에 대해 평가인증제를 도입하는 것이 현재의 종합적인 여건 속에서 타당한지를 검토하고, 그 위에서 시행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이미 선행연구(박소현 외, 2017)에서 등록제도나 학예사제도, 각종 지원사업 등이 안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들이 평가인증제도의 도입으로 해결 가능한 것인지, 또는 평가인증제도의 도입이 기존의 제도적 문제점들을 지속시키거나 심화시킬 여지는 없는지를 검토할 필요성이 지적된 만큼, 이에 관한 검토를 수행함

- 따라서 기존의 제도적 문제점과 현황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개별 제도 및 전체적인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한계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평가인증제도의 확대시행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선결조건을 구체화하고자 함
-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되는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구조적 한계점, 지원사업의 영향과 운영상의 문제점, 개별 박물관·미술관 운영의 여건, 현장 종사자의 입장 및 의견 등으로부터 제기되는,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재정립을 위한 과제들을 포괄한 중장기적 차원의 사립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시행 방안을 제안함
- 이는 기본적으로 설립-등록-지원-평가인증의 유기적인 연계를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온 기존의 정책 틀을 계승하는 제안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코로나19 이후 글로벌한 차원에서 확인되는 운영난 심화 속에서 국내 전체 박물관·미술관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운영 능력 향상 및 지속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것임

## 2) 기대 효과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을 재정립하는 계기 마련
- 박물관·미술관의 ‘질적 성장’과 이를 토대로 한 공공성 개념의 재구성을 통한 평가인증제도의 재설계
- 평가인증제도 및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지원사업 개선 기초자료로 활용

---

---

## 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가. ‘평가인증제 시범사업’의 재정의 및 재설계

#### □ ‘평가인증제 시범사업’의 재정의

- 이 연구에서 ‘평가인증제 시범사업’은 단순히 기존 평가인증제를 사립관을 대상으로 해서 시험적으로 시행하여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평가인증제 운영 방식을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와 같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포괄적인 정책 진단,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심층적인 현황 진단(정량적·정성적 진단) 등을 아우르는 것을 의미함
- 이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장기적인 지속가능성 및 회복탄력성, 박물관·미술관의 미래와 관련된 정책적 재설계 관점에서, 박물관·미술관 정책을 비롯한 국내외 정책환경 및 동향, 사립관 운영과 직결된 등록제도나 학예사자격제도, 각종 지원사업 등을 현재의 시점에서 종합적·체계적으로 진단하는 포괄적인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표출되는 운영상의 어려움은 최근의 코로나19에 의한 팬데믹을 직접적인 계기로 하되, 기존의 오래된 문제점이 누적되고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구조화된 것인 만큼, 일회적인 사업의 시행으로 접근하는 것은 시범사업의 근본적인 취지와도 상충되기 때문임

#### □ ‘평가인증제 시범사업’의 확장적 재설계

- 위와 같이 본 시범사업을 재정의함에 따라, 시범사업의 진행 방법 및 과정 역시 재설계될 필요가 있음
- 특히 본 연구에서는 ‘설립-등록-지원-평가인증’의 연계성 차원에서 수립되었던 박물관 종합계획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 시범사업의 범위 내에 종합적인 현황 파악 및 정책 분석을 포괄하여 진행함
- 또한 팬데믹 국면에서 사립박물관·미술관 현장에서 제기되었던 ‘정책 소외’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반영하여, 정책 소외의 구조적 진단을 위하여 현재 한국의 박물관·미술관 정책에만 한정하지 않고,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시점과, 문화정책 차원에서의 변화, 해외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동향 및 현황 등을 아우르는 시점을 적용하여, 애초에 제시된 과업의 내용적 범위를 넘어서는 확장된 분석을 시도함

- 정책 소외가 토로된 데에는 관장 및 학예사를 포함한 사립관 종사자 또는 관계자의 정책 참여, 즉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립관 종사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거나 정책적 의제나 이슈에 관한 공론화나 토의의 과정이 충분히 마련되지 못한 점 또한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의 시범사업 운영은 이러한 정책 소외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기존의 지원사업 평가 등을 통해 제기된 의견들은 물론, 통상의 시범사업 실시 과정에서 포함되지 않는 광범위한 설문조사의 추가 실시, 사전의 정책정보 공유 및 이를 통한 공론장의 형성을 목적으로 한 정책포럼의 운영, 현장방문에서의 심층 인터뷰를 아우르는 관별 현장연구보고서 작성 등을 시범사업의 중요한 요소로서 추진함
- 이처럼 시범사업의 범위 및 과정을 보다 확장적으로 재설계함으로써, 개괄적으로 (1) 현황 파악 및 정책 분석, (2) 국내·외 박물관·미술관 정책 및 평가인증제 관련 정책 공유 포럼 실시(정책정보 공유 및 토론), (3) 사립관 평가를 위한 사립관의 유형별 분류 및 분석틀의 마련, (4) ‘평가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관 모집, (5) 참여관 및 본 시범사업 참여 연구자·전문가 대상 설명회 실시 및 의견수렴, (6) 국내 법제를 중심으로 한 운영현황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립관의 자기진단평가, (7) 운영현황 체크리스트 기반 현장방문 심층 조사연구(전문가의 현장사례연구), (8) 해외 박물관·미술관 운영 국가 표준을 토대로 한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9) 전문가 자문회의, (10) 종합 분석 및 정책 제안 마련 등의 순서로 본 연구를 진행하도록 함

〔표 1-2〕 『2021년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 시범운영: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재정립과 평가인증제 시행방안 연구』 단계별 진행 과정 및 세부 수행 과업의 재설계

단계별 구분	단계별 수행 과업 개요
평가인증제 시범사업 준비 단계	(1) 현황 파악 및 정책 분석 (2) 국내·외 박물관·미술관 정책 및 평가인증제 관련 정책 공유 포럼 실시 (정책정보 공유 및 토론) (3) 사립관 평가를 위한 사립관의 유형별 분류체계 마련 및 분석틀 정립
평가인증제 시범사업 시행 단계	(4) ‘평가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관 모집 (5) 참여관 및 본 시범사업 참여 연구자·전문가 대상 설명회 실시 및 의견수렴 (6) 국내 법제 기반의 운영현황 체크리스트를 통한 사립관의 자기진단평가 (7) 운영현황 체크리스트 기반 현장방문 심층 조사연구 (연구자 및 전문가의 현장사례연구 방식)

단계별 구분	단계별 수행 과업 개요
	(8) 해외 박물관·미술관 운영기준 기반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분석 및 정책 대안 수립 단계	(9) 전문가 자문회의 및 정책과제 토의 (10) 종합 분석 및 정책 제안 마련

## 나. 연구 범위

### 1) 대상적 범위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사립박물관·미술관

### 2) 내용적 범위

- [시범사업 준비 단계]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 및 지원사업 분석

- 국내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 및 지원사업 조사·분석

- 선행연구 및 정책자료의 분석을 통한 접근
- 박물관·미술관 관련 정책 전문가 및 지원사업 관계 전문가의 평가 및 의견수렴
-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회복탄력성 및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재점검

- 국내·외 문화정책 및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동향 분석

-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에서 ‘질적 성장’의 구체적인 방향과 내용을 재정립하기 위한 정책 분석
-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위상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좌표 설정 및 타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방안 마련
- 국내·외 평가인증제도의 사례 및 운영현황 분석을 통해 사립관에 대한 적용 가능성 및 그 선결조건 탐색

- [시범사업 준비 단계] 정책 공유 포럼 개최 및 공론장 마련

- 정책 및 지원사업 분석을 통해서 연구진이 조사하고 새롭게 획득한 지식을 사립관 종사자 및 관계자와 공유하기 위한 정책 공유 포럼 개최

- 이를 통해서 연구진과 사립관 종사자 사이의 정책 정보에 대한 격차를 최소화하고, 본 평가인증제 시범사업과 관련된 국내외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현안 및 쟁점에 대한 열린 토론을 진행
- 이를 통해 평가인증제나 평가인증제 시범사업이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평가라는 관행 및 인식을 넘어서 사립관 종사자의 정책과정 참여 기회를 제고하도록 함

#### □ [시범사업 준비 단계] 사립박물관·미술관의 통계 데이터 분석 및 유형별 분석틀 마련

- 사립박물관·미술관 현황 관련 기본 통계 데이터를 활용한 현황 분석
  -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1) 및 『전국사립미술관 운영현황 분석연구』(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21), 『2021 전국 사립박물관 운영실태조사』(사)한국박물관협회, (주)장애파트너스그룹, 2021) 등 기존 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립박물관·미술관 현황 조사
  - 평가인증제도를 실시할 경우 기존 현황 데이터 활용도 검토 및 필요한 추가 정량 데이터의 항목 도출
-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유형별 분석틀 마련
  - 선행연구 및 현황 분석을 토대로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건립·운영 주체별, 주제별, 특성별, 직군별 등 유형 분류체계 도출

#### □ [시범사업 시행 단계] ‘평가인증제 시범사업’ 참여관 모집

- 기본적인 박물관·미술관 정책과 평가인증제 관련 현황 및 쟁점을 담은 사전 설명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함
- 또한 시범사업 진행방법 및 내용에 관한 안내 자료 등을 함께 작성하여 (사)한국박물관협회 및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의 협조를 얻어 참여관을 모집함

#### □ [시범사업 시행 단계] 참여관 대상 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 참여관 및 참여 현장연구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 시행과 관련된 설명 및 토의 진행
- 시범사업의 핵심적인 수단인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마련하여 체크리스트의 전체적인 구성 및 세부 내용에 관한 설명 실시
- 체크리스트의 항목은 기본적으로 「박미법」을 중심으로 한 정책 및 제도 전반을 아우르는 것으로서, 포럼과 더불어 현재의 정책에 대한 내용 공유 및 의견수렴의 장으로서의 의미도 가짐

□ [시범사업 시행 단계] 참여관의 체크리스트 작성: 자기진단평가 실시

- 본 시범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사립관 종사자에 의한 자기진단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연구진의 체크리스트 기반 현장연구 이전에 참여관에 의한 체크리스트 작성 절차를 마련함
- 이러한 자기평가는 국내·외 평가방식으로서도 주요하게 사용되는 것으로서, 시범사업 차원에서 가능한 방법들을 최대한 시험해 보는 목적으로도 유용함
- 체크리스트의 각 항목에 대한 자기기입을 통해 참여관은 각 관의 운영 및 현황을 객관화할 수 있으며, 본 연구 차원에서는 사립관 종사자와 현장연구진(전문가 집단) 사이에 체크리스트의 항목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공통되고 또는 얼마나 괴리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함

□ [시범사업 시행 단계] 질적연구방법(현장사례연구)에 의한 현장방문 실시:  
체크리스트 기반 운영현황 파악 및 사립관 종사자 심층 인터뷰

- ‘시범사업’의 조건과 사립박물관·미술관의 현실에 대한 진단
  - 본 연구는 사립박물관·미술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도 시범사업이라는 과제를 설정하고 있으나, 이를 시행할 수 있는 이상적 조건과 현실적 조건 사이의 간극을 우선적으로 진단하는 것이 필요했음
  - 첫째, 기본적으로 사립관은 법에 의한 평가인증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그 방법이 ‘시범사업’의 형식이라 하더라도, 현장 종사자들의 동의와 참여를 전제하지 않고 강제할 수 없는 것임.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작된 연구인만큼, 이러한 상황에서 운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사립관들의 참여 독려 또한 현장의 어려움을 무시하는 접근이 될 소지가 있음을 고려해야 함
  - 둘째, 현행 국·공립관에 적용하고 있는 평가인증 지표 및 방법을 활용한 시범운영이라는 방식은 이론적으로는 성립할 수 있으나, 사립관의 제도적·현실적 특성을 전제하지 않은 일률적 적용은 오히려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시범운영이 오히려 언젠가 확대 적용할 수도 있는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야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음
  - 셋째, 현재의 사립관 운영현황은 단순히 개별 관이나 종사자들의 작위에 의해서만 조성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경우에는 특히 정부의 정책적 행위의 소산인 측면이 큰 만큼, 이러한 정책적 측면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그로 인한 현실적 효과를 진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은 사립관의 운영 현실에 대한 책임을 기관이나 종사자들에게만 전가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평가인증제도 도입의 정책적 목적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넷째, 기존의 각종 운영현황 조사나 연구들이 부분적으로 드러내 보여준 사립관의 운영현황은 일반적으로 개별 박물관·미술관을 단위로 하여 접근하는 방식으로서 정책이나 지원사업과의

관계성이 보다 밀도 있게 규명되지 못하고 통계처리를 한 한계가 있음. 그로 인해 각종 문제들을 드러내더라도 이에 대한 구조적 해법을 모색하는 데 한계가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 애초에 중심 과제로 부여받은 평가인증제도 역시 그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는 데 구체적인 정책대안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에는 미진한 측면이 상존해 왔음

-따라서 본 연구는 평가인증제도를 이미 정해진 결론이자 정책 대안으로서 전제된 위에서 진행하는 방식 대신, 보다 입체적인 현황 분석을 중점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제도개선의 시급성에 따른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이러한 틀 속에서 평가인증제도의 정책적 유의미성을 판단하고, 그 시행을 위한 제도적 조건과 활용방안에 대해 구상, 제안하고자 함

#### ○ 박물관·미술관 관련 전문 연구자들에 의한 현장사례연구로의 재설계

-본 연구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립박물관·미술관들 중에서 국내·외 법규상의 박물관·미술관 정의에 부합하는 대상(‘항구적인 비영리기관’)을 선정하여 전문 연구자들에 의한 사례연구 방식으로 질적 현황조사 실시. 국내 법규로부터 도출한 체크리스트 기반 현장방문조사 방식

-처음에는 박물관·미술관 특성(설립목적, 운영주체, 지역분포, 시설규모 등)에 따른 사립박물관 40개관, 사립미술관 40개관 등 시범조사 대상관 80관 이내 선정을 목표로 진행하였으나, 사립관의 경우 평가인증제도의 의무 시행기관이 아닌 관계로, (사)한국박물관협회 및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의 협조를 얻어 참여의사를 가진 관들을 모집하였으며, 그 결과 약 50여 개관이 참여함

#### ○ 현장사례연구의 내용적 흐름

-현장연구 안내 및 해외사례 포럼: 평가인증제도의 역할 및 의미, 기대효과 및 활용계획, 평가기준 및 평가지표, 평가방법 및 절차 등 설명자료 및 정책동향 공유

-현장연구 체크리스트 작성: 각종 국내 법규에 기반한 운영현황 체크리스트 작성

-현장연구 설명회: 현장연구 참여관 및 전문가·연구자 대상으로 각각 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박물관·미술관 분야, 유형별, 부문별(소장품 및 연구, 인력, 교육 등), 정책 이슈별 등에 입각한 구성. 현장연구 참여 전문가·연구자를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원으로 하여 진행

-기관별 현장연구 체크리스트 수합 및 전문가·연구자의 현장방문에 의한 체크리스트 작성·수합: 유형별, 분야별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가 2인 1조로 현장연구 실시 후 결과보고서 작성

-자문회의 및 종합분석: 현장연구단으로 참여한 운영자문위원들의 의견수렴 및 종합분석 실시

#### □ [시범사업 시행 단계]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 기준’ 관련 설문조사 실시: ‘기준’ 없는 평가의 보완

○ 현장사례연구에서의 체크리스트가 국내 법규에 기반한 운영 현실의 진단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부합하는 운영상의 질적 기준을 도출

하기 위하여 사립박물관·미술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실시

-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 기준을 국가 차원의 법규를 통해 마련하여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을 토대로 주요 항목을 추출하고 이를 구조화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 항목들에 대한 박물관·미술관 종사자들의 공감 여부 및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정량적·정성적으로 가시화함으로써 평가인증제도의 전제조건인 설립·운영기준의 부재라는 제도적 결함을 보완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결과 분석 및 정책 대안 수립 단계] 자문회의 및 종합분석을 통한 평가인증제 시행 방안 마련

- 본 시범사업에 참여한 모든 연구진이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진행함으로써, 진행 과정의 경험을 토대로 한 전반적인 문제의식과 의견, 제안 등을 토의하고, 본 시범사업을 토대로 한 정책 제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수렴함
- 본 시범사업 전체의 과정 속에서 도출된 조사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다시 분석함으로써,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평가인증제 시행 방안을 수립함

## 다. 연구 방법

### 1) 연구수행 전략

□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운영현황에 관한 양적·질적 연구성과 창출

- 평가인증제도가 일반적으로 기존의 각종 평가사업(행정평가, 경영평가)의 관행과 방법을 중심으로 수행됨으로써, 지나치게 형식화·계량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접근에 치중하다 보니, 애초에 평가인증제도 도입 목적인 ‘질적 향상’과는 동떨어진 측면이 발생함
-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운영현황을 다각도로 심도 있게 살펴보는 데에서 본 연구가 수행되도록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박물관·미술관 관련 여러 학문분야 전문 연구자들의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심도 있는 현장사례연구 형식을 포함해 현황분석을 실시함

- 사립박물관·미술관에 관한 이러한 연구 성과가 지속적으로 축적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연구-평가-지원-운영상 질적 향상’이 선순환되고 재생산되는 계기를 마련함

□ 기존 박물관·미술관 정책 및 지원사업에 관한 분석을 토대로 정책목표 및 방향 도출

- 평가인증제도의 도입은 질적 향상을 위한 공공 자원의 배분(지원사업 등)과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 만큼, 박물관·미술관 정책 전반에서 평가인증제도가 어떠한 역할과 위상을 담당할 것인가가 현황 분석 및 정책환경 분석 속에서 도출되어야 함
- 이러한 방향성 없이 이루어지는 평가인증제도는 박물관·미술관 분야 종사자들에게 의미 있는 제도로서 기능하기 어려우며, 불필요한 행정업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정책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큼
- 따라서 정책 전반 및 지원사업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평가인증제도의 정책목표 및 방향을 보다 시의성 있게 도출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부합하는 평가인증제도의 시행 의미 및 그 방향성 검토

- 정책적 환경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는 평가인증제도는 그 정책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클 수 있으므로, 코로나19 확산 이후 보다 첨예하게 드러난 운영의 문제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동시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문화정책 전반의 변화, 국내·외 박물관·미술관 정책 의제들, 박물관·미술관의 활동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해 제기되는 박물관·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고, 기본 기능의 내실화를 도모함으로써,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국내·외 위상을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 마련

□ 사립박물관·미술관 및 그 종사자의 특성에 부합하는 참여적·협력적 방법론

- 사립박물관·미술관은 국·공립관과 달리 법정 평가인증제도의 대상이 아니고, 이에 대한 평가인증제도 운영 역시 같은 배경과 취지를 가질 수 없음
- 건립 주체의 성격, 소장품 및 주제의 성격 또한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코로나 19 확산 이전부터 건립 주체에 따라 운영 안정성 면에서 양극화 역시 두드러짐
- 취약한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운영 여건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계기로 전면적으로 드러나고 동시에 더욱 악화된 점 역시 국·공립관과 다른 지점이라 할 것임

-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첨예하게 드러난 구조적 문제점들을 더욱 면밀하게 살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회복탄력성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종사자들(관장, 학예사, 교육사 등)이 서로 다른 입장에서 경험하는 문제들을 공론화하고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이 필요함
-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부의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역할과 방향을 재정립하고, 평가인증제도가 ‘질적 향상’을 중심으로 한 공공성 확보는 물론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을 증진시키기 위한 상호협력과 성장의 제도적 플랫폼이 될 수 있도록 함

## 2) 연구수행 방법 및 추진일정

### □ 조사 계획

구분	목적 및 내용	
문헌 조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박물관·미술관 관련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쟁점 파악</li> <li>•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의 특성 및 문제점 파악</li> <li>• 평가인증제 도입의 가능성, 정책적 역할, 운영 및 활용방안 등 모색</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박물관·미술관 관련 선행연구 조사·분석</li> <li>• 국내 박물관·미술관 정책 관련 법률, 행정문서 등 조사·분석</li> <li>• 사립박물관·미술관 관련 지원사업 관련 문서 조사·분석</li> <li>• 해외 박물관·미술관 정책 동향 관련 문헌 분석</li> <li>• 국내·외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 관련 자료 조사·분석</li> </ul>
통계 자료 분석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 관련 국가통계자료의 타당성 검토</li> <li>• 박물관·미술관 관련 국가통계자료를 통한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현황 파악</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 운영현황보고 자료의 수집</li> <li>• 법정 운영현황보고 자료의 항목별 분석</li> <li>• 최근 정량적 조사·분석 보고서의 비교 검토</li> <li>• 법정 운영현황보고 자료의 정책적 활용 현황 검토</li> </ul>
현장 사례 연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유형별 현황 파악</li> <li>• 구조화된 체크리스트 방식을 통한 종합적인 질적 운영현황 조사·분석</li> </ul>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관 종사자들의 참여적 내용 공유 및 자기점검 계기 마련</li> <li>• 해외 박물관·미술관 정책 동향 및 국내 정책 및 법제에 관한 공유·의견수렴</li> <li>• 구조화된 체크리스트의 작성 및 이에 기반한 현황과 의견 조사·분석</li> <li>• 정책 전반에 대한 현장 의견수렴 및 분석</li> </ul>
설문 조사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질적 성장을 위한 설립·운영기준의 도입 타당성 분석</li> <li>• 설립·운영기준에 대한 현장 종사자들의 인식 조사·분석</li> <li>• 국제적인 수준의 설립·운영기준 마련을 통한 질적 성장의 토대 마련</li> </ul>

구분	목적 및 내용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요 해외사례(국가 차원의 설립·운영기준 사례)로부터 기준 항목 추출</li> <li>• 분야별 기준 항목을 통합한 구조화된 설문지 기반 인식 및 의견 조사</li> <li>• 인식조사 기반 운영현황의 진단 및 분석</li> </ul>
전문가 의견	<p>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박물관·미술관의 현황 및 문제점, 관련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li> <li>• 평가인증제도 확대시행의 가능성 및 문제점 조사·분석</li> </ul>
조사 (FGI)	<p>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박물관·미술관 현황 및 문제점과 관련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연계하여 파악함으로써, 정책적 접근의 실질적인 구조적 한계와 대안을 종합적으로 진단</li> <li>• 현장연구 기반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해 개방적인 의견수렴을 추진하여, 기존의 문헌자료 등을 통해서 확인되지 못한 현황 및 문제점의 구체화 및 의견수렴</li> <li>• 구체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인식 위에서 정책 재구조화 및 평가인증제도 도입의 가능성과 제도적 한계점, 시기적 타당성 등을 유기적으로 분석함</li> </ul>

## □ 행사 계획

구분	내용
보고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연구진행 상황을 보고하여 계획내용을 공유</li> <li>• 착수보고회, 최종보고회 개최</li> </ul>
관계기관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체육관광부 외 (사)한국박물관협회,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등의 유관기관 관계자와의 연구협력 및 자문회의 진행</li> </ul>
자문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장 종사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진행</li> </ul>
공동연구진 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광범위한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체계적인 역할분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회의 개최</li> <li>• 부문별·단계별 공동연구진 회의를 통해 부문별 연구내용의 완성도 제고, 단계별 각 부문간 연구내용의 상호조정 등을 도모하여 연계성 확보</li> </ul>

□ 추진 일정

구분		M+1	M+2	M+3	M+4	M+5	M+6
연구 내용							
현황분석	기초 데이터 분석(정량 평가)	▶▶	▶▶				
	질적 사례조사(1차/2차 현장평가)		▶▶	▶▶	▶▶	▶▶	
정책 및 지원사업 분석	국내·외 정책 동향 분석	▶▶	▶▶	▶▶			
	지원사업 분석	▶▶	▶▶	▶▶			
	평가인증제도 현황 분석		▶▶				
정책 재구조화 및 평가인증제도 설계	사립박물관·미술관정책 재구조화			▶▶	▶▶		
	지원사업 체계화 및 개선방안 도출			▶▶	▶▶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 설계	▶▶	▶▶	▶▶	▶▶	▶▶	
평가인증제도 시범운영	평가지침(안) 마련 및 수정보완	▶▶	▶▶	▶▶	▶▶	▶▶	
	정량평가 실시 및 정량 평가지표 개발			▶▶	▶▶	▶▶	▶▶
	현장평가 실시 및 정성 평가지표 개발			▶▶	▶▶	▶▶	▶▶
최종 분석 및 정리	정책 제안 및 운영·활용방안					▶▶	▶▶
	평가인증제도 운영방법 및 절차 제안					▶▶	▶▶
조사 계획							
현장사례연구			○	○	○	○	
문헌조사		○	○	○	○		
국내·외 정책 동향 및 지원사업 조사		○	○	○			
기초 데이터 조사·분석		○	○				
설문조사				○	○	○	
행사 계획							
보고회(착수, 최종)		○					○
관계기관회의		○	○	○	○	○	○
공동연구진 회의		○	○	○	○	○	○
전문가 자문회의		○	○	○	○	○	○
설명회(토론회 및 워크숍)				○		○	



#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 및 운영현황 분석

---

제2장 박물관·미술관 정책과 사립박물관·미술관

제3장 박물관·미술관 인력정책과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제4장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현황: 국가 통계 데이터 분석



## 제2장 박물관·미술관 정책과 사립박물관·미술관

---

1절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흐름과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위상

2절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규제완화 흐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주요 개정 이력 검토

3절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및 사립박물관·미술관 관련 정책

4절 사립박물관·미술관 관련 정책적 쟁점들



# 1절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흐름과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위상

## 가.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핵심 기초: 양적 확충 및 지방분권을 통한 문화의 민주화

### □ ‘모든 국민에게 문화를’: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시설 확충 기초의 본격 추진

#### ○ <문화발전 10개년 계획(1990~1999)>(1990)

- 1980년대 말, 한국사회의 민주화와 함께 문화정책 차원에서는 문화부가 신설되고, 정부에 의한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이 수립됨
-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은 ‘모든 국민에게 문화를’이라는 정책이념을 중심으로 ‘새로운 문화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시설의 대폭적인 확충과 시설개선’, ‘시설의 과학적 운영과 기능의 다양화’를 제안하고, 박물관 1,000관 건립을 목표로 제시함
- 그 결과 국민의 정부 수립 이전까지인 1990~97년에 사립박물관 52개관, 공립박물관 43개관이 신설됨

#### ○ <2000년대를 준비하는 『국민의 정부』 새 문화정책>(1998)

- 국민의 정부는 IMF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문화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10대 중점과제> 중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두 번째로 언급하며 시설확충에 대한 정책적 의지를 표현: 주요 추진과제로 공립박물관·미술관 확충(2003년까지 350관 확보, 투자규모 8,200억 원, 사업기간 1999~2011)을 제시하고, 문화기반시설 관리운영평가사업 시작함
- 1998~2002년 사이, 전국에 총 101관이 설립되었으며, 국립 3개관, 사립 48개관, 공립 49개관이 설립됨: 그 결과 공립박물관의 전년 대비 증가율이 2001년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2003년부터 미디어 보도를 통해 운영부실문제가 집중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함

### □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의 문화시설 확충: 지역균형발전, 문화분권/행정권한 이양, 공립관 확충

#### ○ 지방자치제 실시(1995)와 문화시설 확충

-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로 지방재정을 활용한 문화기반시설 확충을 도모하면서, 1996년부터 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비 국고지원사업을 추진함

- <문화비전 중장기 기본계획(2004~2008)>(2003): 지역균형발전과 문화분권
  - 참여정부는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사는 문화한국 건설-자유롭고 여유 있는 문화사회’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문화시설 확충보다 전국적 균형 배치, 지역문화 역량제고 등 지역 간 고른 문화발전과 문화 낙후지역 발전에 역점을 둔 <문화비전 중장기 기본계획>을 발표함
  - 2003년 참여정부 문화예술지원정책 개혁방안에서는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2011년까지 공공 박물관·미술관 500개관(인구 9만 명당 1관)을 건립할 것**을 목표로 제시함
  - 여기에서는 **박물관·미술관과 공교육 연계**에 대한 정책적 관심 또한 표명하여 2007년에 「박미법」 개정을 통해 ‘**교육**’ 기능을 명시함: 박물관·미술관의 ‘교육’ 기능은 어디까지나 공교육과의 연계를 전제로 하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방향 속에서 추가로 법제화된 기능임
  -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제정되고,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가 설치되어,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신청 및 지원 절차가 간소화됨
  - 2003~2007년 사이에 총 229관이 설립되었는데, 국립 1관(고궁박물관), 사립 96관, 대학 9관, 공립 123관이 신설됨

[표 2-1] 2004년 이후 지역별 박물관·미술관 확충 모형

구분	내용
특별시·광역시 모형	인구 5만 명당 1개관+국립 1개관+공립미술관 1개관
대도시 모형(인구 50만 이상)	인구 5만 명당 1개관
도청소재지 모형	인구 5만 명당 1개관+국립 1개관+공립미술관 1개관
기초시 모형	인구 5만 명당 1개관
기초군 모형	기초자치단체 당 1개관
낙후지역 모형	기초자치단체 당 1개소(복합문화공간)

※ 자료원 : 문화관광부, 2003, <문화비전 중장기 기본계획(2004~2008)> 재정리.

- 문화 인프라의 지속 확충 및 지자체 건립지원사업 활성화
  - 2008년 이명박정부는 문화 인프라의 지속적 확충, 지역문화유산의 보존, 전시, 문화향유 증대를 목적으로 지자체의 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사업 계속 지원을 제시했는데, 2012년까지 박물관·미술관을 900관 확보하겠다는 계획임
  - 이 계획은 인프라 확충정책과 기존 박물관·미술관 운영활성화 지원정책 병행을 위해 목표를 수정하여 **인구 5.3만 명당 1관 수준을 확보**하겠다는 것
  - 이를 위해 2009년 균특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이하, 광특회계)로 변경하여 광역경제권 선도산업을 집중지원하기로 하고 2010년부터 실시했는데, 이에 따라 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지원사업은 2009년까지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30%를 국비로 지원하였고 2010년부터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40%를 국비로 지원함

- 또한 광특회계의 예산편성절차를 더욱 간소화했는데, 구체적으로는 행정안정부 및 지역발전위원회 사전검토 절차를 폐지하고, 보조금 수여기간을 1개월로 단축하였으며, 지자체가 지역단위개발 사업을 자율 편성하는 지역개발계정을 마련함으로써 재정운용상 자유로운 사업을 추진토록 함
- 그러나 2008년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공공박물관·미술관 설립 목표치 초과달성과 문화관광부의 관리미흡을 지적했는데, 이러한 배경에는 전체 박물관 중 공립박물관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작용함(2010년 말에 이르면 총 655개관 중 289개관/전체 박물관의 약 44%를 공립관이 차지함)

[표 2-2] 연도별 박물관 건립 현황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101	117	140	162	180	192	206
국립	10	14	17	20	23	23	24
공립	9	11	19	22	25	26	28
사립	28	30	33	46	52	62	73
대학	54	62	71	74	80	81	81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220	235	276	289	306	358	399	511	579	630
국립	25	25	30	32	31	31	30	27	27	29
공립	30	32	49	56	63	108	134	225	255	282
사립	84	96	113	116	126	155	163	180	215	234
대학	81	82	84	85	86	64	72	79	82	85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655	694	740	740	745	780	826	853	873	881	897	900
국립	30	30	32	32	33	39	40	47	49	50	50	51
공립	289	312	326	326	328	332	339	341	349	366	380	386
사립	251	262	287	287	290	315	351	361	371	363	362	358
대학	85	90	95	95	94	94	96	104	104	102	105	105

[표 2-3] 연도별 미술관 건립 현황

연도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계	17	20	25	30	34	40	43
국립	1	1	1	1	1	1	1
공립	2	2	3	4	6	8	8
사립	14	17	21	25	27	31	34
대학	0	0	0	0	0	0	0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계	46	53	60	65	74	80	92	115	128	131
국립	1	1	1	1	1	1	1	1	1	1
공립	8	8	8	10	14	17	18	24	27	25
사립	36	43	50	53	58	60	70	87	97	100
대학	1	1	1	1	1	2	3	3	3	5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141	146	171	190	190	202	219	229	251	258	267	271
국립	1	1	1	1	1	1	1	1	1	1	1	1
공립	27	28	39	39	39	50	54	56	67	71	72	76
사립	108	110	124	124	124	140	150	157	168	172	179	179
대학	5	7	7	7	7	11	14	15	15	14	15	15

○ 지방자치단체에의 행정권한 ‘이임’에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으로

- 광의의 권한 위임이란 행정청이 권한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하여 그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권한 위임은 행정청 권한의 일부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의 위임은 인정되지 않음(전부 또는 중요 부분의 위임은 사실상 위임기관 권한의 폐지를 의미하기 때문임)
- 또한 권한의 위임이 법령상의 권한은 그대로 두고 위임규정에 의해 수임기관에 잠정적으로만 이전하는 것인데 반해, 권한의 이양은 법 개정을 통해 확정적 이전됨을 의미함
- 국민의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2004년 1월에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되면서, “국가는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기관위임 사무를 정비하는 등 사무구분체계를 조정하여야 한다”(제9조 권한 및 사무의 이양)고 규정함: 이후 2008년에 이 법이 전부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은 “국가는 사무배분의 원칙에 따라 그 권한 및 사무를 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국가사무 또는 시도의 사무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는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하여야 한다”로 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통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

- 「박물관법」 시기부터 법상의 행정권한을 지자체장에 위임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는 존재했으며, 「박미법」 제정 시에 이를 시도지사에게 위임으로 한정했다가, 2000년 전부개정 시에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행정권한의 범위를 적시하고 분기별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2000년의 전부개정 시, 시도지사에게 대한 행정권한 위임사항은 (1) 사립관의 설립계획의 승인·변경승인, 소관 행정기관과의 협의, 설립계획승인의 취소, 소관 행정기관·이해관계인에 대한 통보, 관보에의 공고, (2) 등록관에 대한 시정요구·정관명령, 자료제출요구, (3) 청문의 실시 등이었음
- 이러한 행정권한 ‘위임’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으로 본격 전환되는 것은, 2003년 5월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의 기초 하에 지역적 특성에 맞는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을 목적으로 「박미법」을 개정하면서였음: 이때 박물관·미술관 등록 및 등록취소, 설립계획 승인업무 등의 권한을 중앙정부에서 시·도로 이양함(등록 및 변경등록 등의 행정권한 이양)<sup>1)</sup>
- 2013년 1월, 문체부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민법」 제32조에 따른 문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취소, 정관변경 허가, 해산신고의 수리, 그 외 지도감독 권한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함: 단, (1)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법인, (2) 체육, 미디어, 종교 분야가 아닌 법인으로서 활동범위가 3개 이상 광역자치단체에 걸치는 비영리법인은 제외함
- 2019년 12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2021년 1월 시행)으로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박미법」 제18조에 따른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사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됨
- 2020년 2월, 저출산·고령화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다변화된 주민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해 지방의 인구, 지리, 경제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한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자체에 이양하기로 심의·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하도록 46개 법률의 일괄 개정이 이루어짐
- 이때 「박미법」 개정도 함께 추진되어 박물관·미술관의 등록, 폐관신고 등에 관한 사무를 시·도 외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기초자치단체)도 할 수 있도록 함

1) 한편, 2004년에 박물관정책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이관되고, 미술관정책은 독립되어 국립현대미술관이 관장케 함.

## 나.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한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양적 확충 기초 및 그 부작용 대응

### □ 사립관의 양적 증가에 의존한 박물관·미술관 확충 정책

- 한국의 박물관·미술관 정책은 그 핵심 기초인 양적 확충을 달성하는 데 사립관의 양적 증가를 중요한 축으로 간주해 왔으며, 이러한 정책 방향에 힘입어 사립관의 증가 추세도 지속됨
- 즉, 사립관의 양적 증가는 문화기반시설의 확충이라는 정책성과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으며, 사립관의 양적 확충은 1990년대 이후 국가정책의 산물이기도 함
  - 박물관 총수만 본다면, 「박미법」 제정 시점인 1993년부터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1999년까지 약 2배 정도의 증가(101관→206관)를 보이던 것이, 1999년부터 10년 후인 2009년에는 약 3.3배의 증가(206관→680관)를 기록하며 2015년에는 780관, 2021년에는 900관에 달함
  - 이러한 폭발적 증가 추세는 사립박물관의 증가에 크게 힘입은 것이라 할 수 있는데, 1993년에 총수의 20% 수준(20개관)에 불과했던 사립박물관 수는 1999년에 약 30% 수준(70개관)으로, 2009년에는 약 35% 수준(234개관), 그리고 2015년에는 약 40% 이상(315개관), 2021년에도 약 40% 수준(358개관)임: 사립박물관의 자체 증가율도, 1993년에서 1999년 사이에 약 3.5배 증가, 1999년에서 2009년 사이에 다시 약 3.3배 증가, 2009년에서 2021년 사이에 약 1.5배 증가를 기록함
  - 2010년대 들어 증가세가 반감했으나, 사립박물관은 1993년에 비하면 2021년 현재 약 13배 이상의 양적 증가를 기록하면서, 문화기반시설의 양적 확충이라는 국가정책 기초를 달성하는 데 크게 기여함
  - 미술관의 경우, 1993년 당시 국립 1관, 공립 2관, 사립 14관으로 출발해, 이후 사립관의 증가세가 국·공립관을 압도해 왔으며, 2021년 현재에도 국립 1관, 공립 76관, 사립 179관으로 전체 미술관 중 사립관이 약 66%를 차지함
- 따라서 국내 박물관·미술관 정책에서 양적 확충이라는 핵심적인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사립관의 증가 축진이 중요한 정책수단이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 □ 「박미법」의 제·개정: 사립관의 설립·등록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책

- 양적 확충을 목적으로 한 「박물관법」 폐지 및 「박미법」 제정(1992)
  - 1991년부터 박물관의 양적 확충이 본격 추진되기 시작하면서, 정부는 1984년에 제정된 「박물관법」을 폐지하고, 1992년에 등록요건의 완화 및 지원제도의 강화를 골자로 한 규제완화책으로서

「박미법」이 제정됨

- 규제완화가 민간을 대상으로 하는 조치인 만큼, 이러한 정책 방향은 사립박물관의 설립 유도가 비중 높은 정책 방안이었음을 의미함
- 법 제정 당시에는 특히 국가나 지자체에 의한 새로운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을 양적 확충 방안으로 우선하기보다, 민간주체들을 대상으로 그 법제도적 문턱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방식에 적극성을 보임
- 등록요건 완화 및 지원제도 강화를 주된 방향이자 내용으로 설정한 법 제정은 이와 같이 민간주체들에 의한 설립 및 운영을 촉진함으로써 양적 확충을 도모하고자 했음을 단적으로 말해줌
-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국가 입장에서는 박물관·미술관의 건립 및 소장품 수집 예산을 별도로 투입하지 않고 박물관·미술관의 양적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경제적인 방안이었음
-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의 박물관·미술관 중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던 박물관·미술관들(및 유사시설들)을 법적으로 포괄하는 효과까지 수반함

○ 사립관의 양적 우세 및 증가세의 장기 지속: 법 제정 배경이자 개정 효과

- 제정 당시 「박미법」의 등록대상은 「박물관법」을 계승하여, 국립, 공립, 사립박물관·미술관 중 공립 및 사립박물관·미술관에 한정되었음: 대학 박물관·미술관은 「박미법」의 소관이 아니었고, 등록대상의 확대를 도모한 1999년 12월의 전부개정을 계기로 「박미법」에 포함됨
- 현실적으로 제정 당시 「박미법」이 소관하는 국립, 공립, 사립관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한 것은 사립관이었으며, 사립관이 공립관 수를 웃도는 흐름은 2006년까지 통계적으로 지속되다가, 이후 공립관의 수가 급증함: 미술관의 경우에는 「박미법」 제정 이후 현재까지 사립미술관이 절대 다수를 기록함
- 위와 같이 사립관이 전체 박물관·미술관에서 수적 우위를 차지했던 점은 「박미법」의 핵심제도인 「등록제도」가 사립관을 주된 대상으로 삼았음을 의미함

○ 「박미법」의 전부개정(2000)과 그 이후: 규제완화의 증폭

- 박물관 및 미술관을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핵심적인 문화기반시설로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건 「박미법」의 전부개정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계승됨
- 등록대상의 확대를 위한 조항이 신설되었는데, 대표적으로 대학박물관 및 미술관이 등록대상으로 포함되었고, 2종박물관에 해당하는 시설의 범위를 대대적으로 확대함
-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을 구분하는 조항이 법률상에서는 삭제됨으로써, 전문박물관 개념이 사립박물관의 설립 및 등록 확대뿐 아니라, 국립 및 공립박물관의 설립 및 등록 확대에도 함께 적용되기에 이름(이 전부개정을 통해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만을 등록 제외대상으로 한정함)
- 이에 더해 규제적 조항으로 간주된 장부의 비치, 명칭 사용금지, 지도 및 조연, 과태료 등의 조항이 삭제되었으며, 공립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정하도록 함

- 「박미법」 전부개정 직후 다시 일부개정(2000.1.12. 개정, 2000.2.9. 시행)이 이루어지는데, 주요 골자는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자율성 보장을 목적으로 2개월 이상 휴관할 경우 사전에 시·도지사에 신고해야 하는 ‘휴관신고제’를 폐지하는 것이었음
- 다른 한편, 설립계획 승인 취소 및 다른 용도로의 전용을 제한하는 규정의 신설, 등록 및 관리감독 조항의 강화, 진흥시책 수립 및 진흥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 등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에 관한 지원 및 관리감독의 체계화를 도모하였으나, 현재의 시점에서 되돌아볼 때 이러한 보완책은 거의 실현되지 못함

#### □ ‘규제완화 부작용’ 해소를 위한 「박미법」의 정비 및 정책 실효성 제고 시도와 그 한계

- 2016년 5월, 「박미법」 제10차 개정은 기존 「박미법」 개정들이 양적 확충을 기조로 한 규제완화 성격을 취하면서 발생하게 된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상의 한계 및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짐
  - 이에 따라 국·공립박물관·미술관(공립의 경우 박물관에 한정)의 설립 사전평가제의 도입, 박물관·미술관의 등록제도 개선, 국·공립박물관·미술관에 대한 평가인증제의 도입 등을 통해 박물관·미술관 운영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 이러한 개정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박미법」의 각종 규제완화책들이 설립·운영주체에 따른 공적 책임을 차등화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국·공립박물관·미술관의 운영부실 및 그 설립·운영주체(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책임 약화라는 ‘규제완화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었음
  - 따라서 신규 도입된 사전평가제 및 평가인증제는 국·공립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제한하여 규제완화로 인한 설립·운영주체(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책임 소홀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함께 등록제도의 경우에도 국·공립관의 등록 의무화를 추진하였으나, 사립 및 대학관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임의조항으로 규정하였음
  - 단, 등록관에 대해서는 설립·운영주체를 불문하고 지자체 장의 의무로서 등록증 발급, 변경등록, 시정요구, 등록(또는 변경등록) 사실의 문체부장관에의 통지 등을 규정했고, 등록 박물관·미술관의 등록표시를 의무화했음
- 2017년 11월에 이어진 제11차 개정도 ‘규제완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의 연장
  - (1) 사전평가제를 공립미술관에도 확대 적용하고,
  - (2) 소장품 정책 관련 의무조항의 신설(박물관·미술관 자료 목록 및 취득·변경·활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지속 관리하며, 자료 보존·관리를 위한 적절한 전문인력 및 수장·전시환경 마련 등),
  - (3) 폐관 후 자료·시설 계획을 첨부한 폐관신고 의무화 및 폐관신고에 따른 등록취소 의무화

등을 신설함

- 2019년 이후 개정 이력: 「박미법」 정비 및 박물관·미술관 정책 실효성 제고
  - 2019년 11월에는 국가자격인 학예사 자격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 학예사 자격을 취소한다는 규정을 추가함(2020년 5월 시행)
  - 2022년 1월에는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함(2022년 7월 19일 시행)
- 2016년 이후 「박미법」 개정 방향: 규제완화 부작용 해소를 위한 법 정비 및 정책 실효성 제고
  - 「박미법」이 법 제정부터 규제완화책으로 출발했던 흐름은 장기간 지속되었고, 이에 대한 문제제기와 정부 차원의 정책적 방안 모색은 2010년대 들어 본격화되기 시작함
  - 물론 2000년대 들어서 규제완화 조치 한편에서 등록제도 및 학예사제도를 통한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이 제도적으로 추진되었으나, 이러한 후자의 조치들은 실질적으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으며, 그 결과 「박미법」 제정 목적에 명시된 ‘박물관·미술관의 건전한 육성’에 부응하지 못함
  - 이에 본격적으로 ‘규제완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법 개정 및 정책 추진이 이루어졌으나, 이는 우선적으로 국·공립관을 대상으로 신규 제도의 도입, 등록제도 및 학예사제도의 부분적 정비 등의 방식으로 추진되었음
  - 그 결과, 2010년대 이후 문체부가 발표한 박물관·미술관 중장기계획에 의한 등록제도 및 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과 같은 토대가 되는 사안들은 실질적으로 미흡하게만 반영, 추진되었고, 그로 인해 「박미법」이 박물관·미술관의 기본 기능과 사회적·정책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는 여전히 한계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관련해 2019년에 한국법제연구원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진흥을 위한 법제 개선 방안 연구』에서도 법 구조 및 체계의 문제점, 박물관·미술관 정책 추진체계의 불명확성, 등록제도를 기반으로 한 규율의 연계성 취약, 지자체의 박물관·미술관 정책 기능의 한계, 등록 및 평가제도의 운영체계 실효성 미흡 등이 지적되었음
  - 그러나 이러한 정책연구 이후에도 관련된 법 개정이나 정책의 추진이 실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규제완화 부작용이 사립관 운영과 관련해 어떠한 현실을 초래했는지에 관해서도 후속 정책연구나 점검이 미흡함
  - 따라서 현재까지의 ‘규제완화 부작용’ 대응책은 박물관·미술관 정책 기조의 중요한 축인 사립관의 양적 확충과 그로 인해 증가한 사립관의 운영 현실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 진단과 처방에 이르지 못함

## 가. 「박물관법」 폐지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정(1992)에 따른 주요 변화

### □ 설립/등록의 이원화 및 등록의 임의성

- 박물관 개념 정의에서 ‘등록’ 여부 제외와 등록의무의 해제
  - 「박물관법」은 박물관 개념 정의에서 「박물관법」에 따라 등록된 시설만을 박물관으로 정의하였음
  - 이에 따라 「박물관법」은 제7조(등록)에서 박물관의 명칭, 소재지, 설치자의 명칭(과 주소)을 등록(또는 변경등록)하는 것을 의무로 규정했음
  - 「박미법」은 박물관·미술관 개념 정의에서 이 법에 따라 등록된 시설만을 박물관·미술관으로 정의하는 방식을 삭제함: 이는 「박미법」 16조(등록 등)에서 등록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과 연동함
  - 다만 등록 시에 갖추어야 할 요건(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전문직원, 자료, 시설)을 제시하고, 명칭, 소재지,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외에 시설명세서, 자료 목록 등으로 등록 사항을 추가함
- 설립과 등록의 연계성 상실: 설립·운영기준을 등록요건으로 변경(설립·운영기준 삭제)
  - 「박물관법」에서 등록의 주체는 “박물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설립과 등록이 불가분의 관계임을 적시함: 이는 등록이 의무사항이라는 점에서 긴밀히 연계되어 있었다 하겠음
  - 이와 함께 별도로 ‘설치·운영기준’ 조항을 마련했으나, 「박미법」에서는 ‘설치·운영기준’ 조항을 폐지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등록요건’으로 변경함
  - 그럼으로써 설립계획 승인 단계(사립관) 및 설립 협의(국립관) 단계에서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연계성이 상실되었고, 설립·운영기준 자체가 부재한 상태에서 설립계획 승인 및 설립 협의가 진행됨
- 등록제도의 보강: ‘박물관·미술관’ 명칭 사용금지 등의 규제장치 신설
  - 설립과 등록의 연계성이 사라지는 대신, 「박미법」은 국립관 및 등록관이 아닌 경우에는 ‘박물관·미술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과태료 처분을 하게 함

- 이와 함께 등록신청 시 제출서류를 추가함: 시설의 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 연간수지계 획서,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게 함
- 또한 등록취소 사유도 「박물관법」에 비해서 추가적으로 보강하였으며, 경비 보조의 경우에도 설립승인을 받은 경우와 등록한 경우로 구분하여 전자에는 설립 경비 일부를, 후자에는 운영 경비 일부를 보조함

## □ 설립·운영주체 및 등록요건 등의 완화 조치

- 설립·운영주체 면에서의 규제완화: 법인 외 단체 및 개인까지 확대
  - 「박물관법」은 사립박물관의 설립·운영주체를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한 법인으로 한정함
  - 그러나 「박미법」은 제정 당시부터 이러한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주체를 최대한 확대하 여, 「민법」, 「상법」, 「특별법」에 의한 법인, 단체, 개인까지를 포괄함
  - 정책적으로 비법인 설립·운영주체를 허용, 촉진한 조치로서, 실질적으로는 누구나 박물관·미술관 을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되었음: 그 결과 국제적인 박물관·미술관 정의의 골자 중 하나인 ‘비영리 성(non-profit)’을 국내법에서 규정하는 근거가 사라지게 됨
  - 이러한 설립·운영주체의 확대가 등록요건의 완화 및 대상범위 확대 조치와 맞물리면서 전반적인 박물관·미술관의 소규모화와 영세화, 박물관·미술관의 정체성 모호화를 초래하였고, 이는 사립관 을 넘어서 증가 추세를 보인 국·공립관에까지도 영향을 미침
  - 특히 소장품은 물론 인력 규모에서의 전반적인 최소화 경향이 확산되고, 각종 공공 지원사업을 통해서 인력을 충원하는 방식이 설립·운영주체의 차이를 불문하고 박물관·미술관 운영에서의 지배적인 모델로 정착하게 됨
- ‘전문박물관’ 개념의 신설: 작은 규모의 민간 박물관·미술관 확대를 위한 법제화
  - 「박미법」이 제정되면서 ‘종합박물관’과 ‘전문박물관’ 개념을 도입해 ‘종합박물관’보다 수량면에서 완화된 ‘전문박물관’ 요건을 제시하자, 1992년에는 6개월 만에 55관의 박물관 등록이 이루어 지는 효과를 거둠
  - 1995년 「박미법 시행령」 개정 당시에 제시된 주요 목적은 **민간참여에 의한 작은 규모의 특색 있는 전문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 촉진, 등록대상 박물관 유형의 다양화 및 등록요건의 완화** 등이었는데, 이 목적에서 ‘전문박물관’ 개념의 도입 의도가 잘 드러남
  - 즉 ‘전문박물관’ 개념은 어디까지나 작은 규모의 박물관·미술관 건립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었으 며, 특히나 국가나 지자체가 아닌 민간 주체들의 건립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었음
  - 기존 박물관을 ‘종합박물관’이라 규정하고, 그보다 작은 규모의 ‘전문박물관’ 개념을 법제화함으 로써 민간주체들의 박물관 건립을 유도해 손쉽게 양적 확충이라는 정책 기조를 실현하고자 한 것임
  - 나아가 ‘전문박물관’보다 더 작은 규모의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라는 정책 범주를 새롭게

제시함으로써 등록요건을 한층 더 완화하게 됨

- 학예직원 2인 이상(설립·운영기준) ⇨ 전문직원 1인 이상(등록요건): 경력인정 기간의 단축 포함
  - 「박물관법」에서는 학예직원 배치를 의무화하고 설립·운영기준으로서 ‘학예직원 2인 이상’을 최소한의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박미법」 제정 시에는 ‘학예직원’을 ‘전문직원’으로 개명하고 그 배치에 관한 의무사항을 등록요건 중 ‘전문직원 자격요건’으로 규정하면서 일괄 ‘1명 이상’으로 조정함
  - 또한 문화부장관에 의한 학예직원 보수교육 강제조항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하고, 그 자격요건의 계층적 세분화 및 경력인정 기간의 완화(단축)가 이루어짐
- 의무 개방일수의 완화 및 추가 단축 허용
  - 「박물관법」은 의무 개방일수를 1년에 120일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나, 「박미법」은 1년에 90일 이상(1일 4시간 이상)으로 완화함
  - 동시에 이 완화된 의무 개방일수를 추가적으로 단축하고자 할 경우 이를 승인하는 조항을 신설함
- 관람료/(자료)이용료 제한 및 보수교육 의무화 조항 유지: 국민 접근성 및 인력 전문성 보장
  - 관람료 및 자료 이용료는 「박물관법」에서 이용자별로 차등화하여 금액을 규정하였으며, 「박미법」 제정 이후에도 이러한 규정은 유지되었고, 사립관의 경우에도 이 규정을 지나치게 벗어나 관람료 및 이용료를 높게 책정할 수 없도록 제한함
  - 박물관·미술관 관람 및 이용과 관련해 국민들의 차별 없는 접근성을 위한 기본적인 조치로서, 이에 관한 규정은 변동 없이 유지된 것이라 하겠음
  - 이와 함께, ‘전문직원 자격요건’이 「박물관법」보다 최소 인원을 1명 이상으로 감축/완화하는 한편, ‘전문직원’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조치로서 등급화된 자격요건 내에서 근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을 국립관과 등록관으로만 한정하는 조항을 신설함
  - 또한 문화부장관에 의한 직원보수교육 의무화 조항은 완화되었으나, 문화부장관이 사전에 ‘학예직원보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 것과 전문직원의 보수교육을 위한 편의 보장을 의무화하는 조항은 존치함

#### □ 사립관 대상 설립 관련 인·허가 의제 처리, 설립·운영 경비 보조, 세제혜택 도입

- 설립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처리 도입
  - 일률적으로 설치·운영기준을 규정했던 「박물관법」과 달리, 「박미법」은 사립관의 설립계획 승인을 별도로 추진하면서, 승인을 받았을 경우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하는 조항을 신설함
  - 제정 당시, 도시계획사업 시행의 허가,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도로의 점용 허가,

- 전용수도의 부설 인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농지전용 허가, 개발촉진지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농지전용의 허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가 의제처리되도록 하였음
- 현행 「박미법」에서는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의 지정, 실시계획의 인가, 도로 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도로의 점용 허가, 전용상수도의 인가,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산지전용 허가 및 산지전용 신고, 산지 일시사용 허가·신고,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등이 의제 처리됨
- 이에 더해 현행 「박미법」에 의하면, 지자체 소유의 유휴 부동산 또는 건물을 박물관·미술관, 문화의집 등 지역문화공간으로 용도변경하여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중 폐교시설의 활용 역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제19조)
- 즉, 「박미법」 제정 당시에 인허가 의제처리 사항은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확대되는 흐름을 보여 왔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도로 점용, 농지·산지·산림보호구역 등의 사용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있고, 국유지나 공유지를 유·무상으로 대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설립·운영 경비 일부 보조의 유지: 등록 여부와 무관한 설립 경비 보조

- 「박미법」 제정 당시, 사립박물관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으로 (1)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박물관에 대해 설립 경비의 일부를, (2) 등록 박물관에 대해 운영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
- 그 외 박물관자료를 국영수송기관이 수송할 경우에 운임 및 기타 요금의 할인이나 감면을 가능케 함
- 이는 현행법에서도 거의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다만 2009년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이나 운영 경비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됨
- 설립계획 승인 및 그에 대한 경비 지원의 경우, 등록요건의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박물관의 양적 확충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즉 설립계획 승인을 받는 단계에서 등록요건 충족 여부가 전제되지 않으며, 설립과 함께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이 법적으로 제시되지 않음(따라서 국가 차원의 박물관·미술관 통계가 ‘등록’ 박물관·미술관을 근거로 작성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봤을 때, 설립계획 승인과 등록제도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문제적이라 할 것임)
- 또한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사립관에 대해 설립 경비를 지원할 경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지원 기준이나 방법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음: 설립비 총액 중 국고지원 비중이 50%를 넘어가거나 심지어 100%를 차지하는 경우, 나아가 운영 경비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도 실재하나, 이러한 유형의 박물관·미술관을 ‘사립’으로 분류하다 보니 분류상의 혼란뿐 아니라 공적 재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성이 상실되는 문제를 초래함

○ 세제혜택 도입: ‘등록한 박물관·미술관자료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로 출발

- 이전 「상속세법」의 제8조의3은 원래 문화재에 대한 상속세 징수유예에 관한 조항이었으나(1981년 신설), 1990년 12월의 개정으로 문화재뿐 아니라 「박물관법」에 의한 박물관자료로서 박물관

- 에 전시 또는 보존 중에 있는 것도 그 대상으로 포함함: 이때 박물관자료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유상으로 양도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유예한 상속세액의 징수 절차를 밟도록 함
- 이러한 상속세 징수유예 혜택은 1991년 말, 「박미법」 제정에 의해 ‘등록한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로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전시 또는 보존 중에 있는 것’으로 개정됨
- 이 조항은 등록 박물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자료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된 자료만을 한정하여 징수유예 혜택을 부여한 것으로 보임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개정(1995)에 따른 주요 변화

- ‘제2종 박물관’ 범주의 등장: 더 작은 규모의 ‘준박물관시설’로의 확대 법제화
  - 1995년에 「박미법」을 개정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외의 유물관, 사료관, 전시관, 자료관 등 유사 시설들까지 ‘제2종 박물관’으로 등록하도록 박물관 등록요건을 완화함
  - ‘제2종 박물관’이라는 용어는 「박미법」 상에서 명확한 개념 정의 없이 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조항을 근거로 삼고 있으며, 이 조항과 연동하여 「박미법 시행령」에 의해 제1종과 제2종을 구별한다는 조항과 ‘별표’에 의한 등록요건에서 분류항목으로 사용됨
  - 분명한 정의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 제2종 박물관은 한편으로는 유사 시설로의 법 적용 대상범위의 확대(「박미법」), 다른 한편으로는 기존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요건을 보다 완화한 최소한의 박물관 또는 미술관(「박미법 시행령」)이라는 이중의 의미로 규정되었다가, 등록요건의 수량적 규정이 보다 우세하게 활용되는 현실 속에서 후자의 의미로만 통용되는 결과를 초래함
  - 즉, 박물관 유사 시설 또는 「박물관법」에서의 ‘준박물관시설’들에 편의상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라는 명칭을 허용하고, 나아가 등록요건 상의 수량 기준을 낮춰줌으로써, 현실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서의 최소 요건이 하향화되는 결과를 초래함: 종합박물관(분야별 자료 100점 이상, 분야별 학예사 1인 이상), 전문박물관(자료 100점 이상, 학예사 1인 이상), 2종 박물관(자료 60점 이상, 학예사 1인 이상)의 수량적 계층으로 재편됨
- 시설 운영 면에서의 규제완화: 대관의 제한적 허용 및 편의시설의 무제한 허용
  - 1995년 12월의 「박미법 시행령」 개정 시, 대관 및 편의시설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이전까지는 ‘대관’ 관련 조항이 부재했으나, 이 개정을 통해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 그 시설의 일부를 연 개방일수의 3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대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되어 대관을 허용함
  - ‘편의시설’에 관해서는 “설립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매점·기념품판매소, 기타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하였으나, 이에 관한 설치·운영기준을 별도로 정하지 않아, 실제로 편의시설이 물리적 시설이나 재정 규모 면에서나 사업의 비중 면에서 박물관·미술관의 운영과 기능을 그에 부수되는 것으로 만드는 역전 현상, 박물관·미술관 운영의 형식화나 제도적 악용 등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조치를 위한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태임

##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전부개정(2000)에 따른 주요 변화

### □ 전부개정의 목적 및 주요 개정 사항

#### ○ 전부개정 목적

- 21세기 문화의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박물관 및 미술관을 핵심적인 문화기반시설로 육성

#### ○ 전부개정의 방향

- 등록대상을 확대하여 운영의 효율화 및 경영합리화 여건을 마련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 주요 개정 사항

- 법 적용대상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외에 교육관, 향토관, 민속촌, 기념관, 문화의집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5조)

- 등록된 국·공·사립박물관 및 미술관별로 운영의 효율화와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전문가, 주민 등의 참여에 의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제7조)

- 박물관 및 미술관 발전과 자료 확충, 전문직원의 자질 향상 등에 필요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하도록 함(제8조)

-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으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부금품을 기부받거나 모집할 수 있도록 함(제9조)

- 박물관·미술관 설립 후 다른 용도로의 전용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이 설립계획의 승인을 얻은 후에 당초 설립 용도를 다른 목적으로 변경한 때에는 「도시계획법」 등에 의한 허가 또는 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도록 함(제20조)

- '박물관·미술관진흥위원회'를 설치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정책 등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기구로 운영함(제31조)

### □ 법 제정 목적의 수정: '문화교육'에서 '문화향수'로

#### ○ 제정 「박미법」의 경우

- 「박물관법」 당시부터 '박물관(미술관)의 건전한 육성'이라는 제정 목적은 일관되게 유지됨

- 그러나 이 '건전한 육성'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법 또는 정책의 목표가 변화했는데, 「박물관법」은 '문화·예술·학문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었다면, 「박미법」은 이에 더해서 '일반공중의 문화교육에 기여'하는 것이 추가됨

#### ○ 전부개정에 의한 변화: 국민 문화향수권 신장과 박물관·미술관의 관계설정

- 전부개정 시, 「박미법」의 제정 목적은 대체적으로 유지되었으나, 제정 당시의 '문화교육'이 '문화

향수'로 수정됨

- '문화향수'는 제6공화국 수립 후 <문화발전 10개년 계획> 수립 및 문화부 신설과 함께 문화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정부의 국민 동원 및 선전수단으로 기능한 문화정책을 국민의 문화복지 및 삶의 질 향상 차원에서 재정립하면서 등장한 개념임
- 이 시기에 정부는 "만인의 문화를 골고루 나누어 갖는 '문화의 향수권'과 누구나 그것을 자유롭게 창조하는 '문화의 참여권'을 선언"하며 문화정책에 대한 새로운 의지를 표명함<sup>2)</sup>
- 당시 이어령 문화부 장관은 <문화발전 10개년 계획>을 통해 한국인의 문화적 동질성 회복,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 문화창조역량의 향상 등을 목표로 문화정책을 추진할 것을 발표하고, 국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방안으로서 '전 국토의 문화공간화'를 주창했는데 박물관·미술관이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포함됨
- 그러나 제정 당시 「박미법」에는 이러한 '문화향수' 개념이 반영되지 않았다가, 2000년 전부개정 당시에 법 제정 목적으로 뒤늦게 명시되게 되고, 박물관, 미술관 등에 관한 정의 조항에도 반영됨
- 하지만 현행 「박미법」에서는 '문화향수' 대신 '문화향유'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2007년에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률을 전부개정하면서 변경된 것임
- 이 '문화향유' 개념은 2014년에 제정된 「문화기본법」에 의한 '문화권' 개념에 의해 법적으로 규정되고 있으나, 「박미법」은 「문화기본법」이 아닌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문진법」의 '문화시설' 개념과 연계되어 있을 뿐임

#### □ 설립·운영주체 관련 규제완화: 법 적용대상 확대 및 박물관·미술관의 제도적 경계의 혼란

##### ○ 법 적용범위의 확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확대

- 1995년의 「박미법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구분이 박물관·미술관이 아닌 유사시설로서 유물관, 사료관, 전시관, 자료관 등을 규정함
- 2000년 「박미법」 전부개정과 함께 이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범주는 다종다양한 명칭과 기능의 유사시설을 실질적으로 모두 포괄하여 확장됨: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집, 야외전시공

2) KBS 뉴스, 1990.1.15. 당시 노태우 대통령의 문화정책 관련 메시지에에는 다음과 같이 문화향수권과 문화참여권에 대한 선언이 포함되어 있었음.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1990년대의 새로운 문화정책은 문화부를 신설함으로써 이미 그 반을 완성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모든 문화정책은 바로 문화부를 신설한 그 의지와 구조 속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문화예술은 정치와 경제의 크고 급한 문제들에 밀려 항상 역사의 뒷전에서 소외되어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우선 우리 국민들이 문화예술을 향해 고개를 돌리고 그 분야에서 일하는 문화예술가들이 잃었던 자존심을 되찾게 하는 새 환경을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단지 먹고 자고 입는 생존이 아니라 꿈꾸고 표현하고 참된 것을 추구하는 생활문화의 축제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는 만인의 문화를 골고루 나누어 갖는 <문화의 향수권>과 누구나 그것을 자유롭게 창조하는 <문화의 참여권>을 선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미 작년에 약속한 대로 문예진흥기금 3천억 원을 1992년까지 조성할 것이며 문화진흥에 관계된 여러 제도, 법령 등 기본적인 지원체제를 완비하는데 전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이러한 생활문화의 선언으로 <잘 살아보자>는 구호는 이제 <인간답게 살아보자>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고 있는 문화시설”

- 이것은 박물관·미술관인가?: ‘문화의집’까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범주에 포함
  - 실질적으로 박물관·미술관의 기본 설립목적이나 기능과 이질적인 문화의집을 ‘제2종’ 범주에 포함시킨 것은 제1종과 제2종의 범주구분이 여전히 박물관/준박물관시설이라는 구분기준을 내포함을 시사함
  - 즉, ‘제2종’이라는 범주구분은 단순히 수량적 계층화에 따른 등록요건의 규제완화 차원에 머물지 않고 여전히 유사 시설 또는 ‘준박물관시설’, 보다 정확히는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아닌 시설까지 「박미법」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그로 인해 분류체계의 혼란은 물론,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개념정의와 기능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 등록대상의 확대: 대학관의 포괄
  - 설립·운영주체에 따른 구분에서 대학박물관·미술관을 포함함으로써 등록 대상을 확대함
  - 이때 대학박물관·미술관이 ‘교육지원시설’로 설립·평가되어야 함을 규정했으나, 실질적으로 타 법령에 의해 ‘교육지원시설’에서 제외된 관계로 그 실효성은 없는 당위적 규정에 그침
- 박물관·미술관자료 관련 규제완화: 무형적 증거물로까지 확대(2009)
  - 이전까지 ‘박물관·미술관자료’의 정의가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 증거물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을 무형적 증거물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확대함
  - 이는 무형적 증거물을 주요 대상으로 한 박물관·미술관의 사업대상을 제한하고 다원화된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이유에서임
  - 박물관·미술관자료 범위에 무형적 증거물을 추가함으로써 무형적 증거물을 특히 디지털화된 다양한 자료의 활용이라는 차원에서 허용함

#### □ 등록제도 및 ‘학예사’ 자격제도에서의 규제완화

- 국립관 및 등록관 외 ‘박물관·미술관’ 명칭 사용 금지 조항 폐지
  - 설립승인과 등록여부를 분리하고 등록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한 「박미법」이 제정 당시에 국립 및 등록관에 대해서만 ‘박물관·미술관’ 명칭을 허용하였음
  - 그러나 2000년 전부개정 시에 이 조항 및 그에 따른 과태료 부과 조항을 폐지함
  - 그 결과, 실제로 등록하지 않은 관들까지 해당 명칭 사용이 가능해졌으며, 박물관·미술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시설, 유사시설을 넘어서 전혀 다른 업종이나 상업적 사용까지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함
  - 전부개정 시에 ‘등록표시 의무화’ 규정은 존치되었으나, 실제로 등록여부가 법적으로 박물관·미술관의 요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의미한다는 것을 국민들이 인식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등록표시를 위한 통일된 방법이나 요건도 제시되지 않아 그 실효성에도 한계를 보임

-설립승인과 등록여부를 연계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이 명칭 사용 금지를 해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설립이 증가하더라도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명칭 사용에 제약이 없으므로,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조치였다고 할 수 있음

○ 등록신청 서류의 최대한 간소화: 등록심사의 형식화

-「박미법」 제정 시에는 ‘등록’ 여부를 박물관 정의 조항에서 삭제하고, 설립·운영기준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데 대한 보완적 조치로서, 등록 신청 시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박물관법」 시기보다 더 많이 요구함: 시설명세서, 자료 목록(사진첨부)\* 및 자료내역서, 전문직원 명단\* 및 이력서, 설치·운영조례 사본(공립박물관·미술관), 시설의 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사립박물관·미술관\*, 관람료 및 자료 이용료 및 연간수지계획서\*,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계획서\*

(\* : 「박미법」 제정 시 추가된 서류)

-그러나 2000년에 전부개정을 통해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등록요건 항목에 상응하는 정도로 최대한 간소화됨: 시설명세서, 자료 목록, 학예사 명단, 관람료 및 자료 이용료

-이로 인해 무엇보다도 등록심사가 형식화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조성되었고, 연간수지계획 및 이와 관련된 ‘재정건전성’ 여부, 설립목적 및 사업계획 관련 ‘운영건전성’ 여부가 등록심사 및 이후 등록제도의 운영 관련해서 제외되는 계기가 됨

○ ‘학예사’ 정의의 간소화: 박물관·미술관자료와의 관계성 및 전문성에 관한 정의 규정 삭제

-「박물관법」 제정 시에는 ‘학예직원’, 「박미법」 제정 시에는 ‘전문직원’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으며, ‘박물관·미술관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연구 기타 이와 관련되는 전문적 사항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정의됨

-「박물관법」 및 「박미법」은 전반적으로 법에서 사용하는 중요한 개념들에 관한 정의를 정의 조항을 통해서 통합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각 조항에 용어 정의가 산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고, 그러다 보니 수 차례의 제·개정을 거치면서 이러한 용어들에 관한 정의가 사라지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함

-학예직원, 전문직원, 학예사로 변경되어 온 명칭 역시 그러한 정의 조항의 산재 및 상실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라 할 수 있음

-그 결과, 2000년 전부개정 당시 ‘학예사’라는 명칭을 새롭게 도입할 때에 이전에 있었던 ‘전문직원’에 관한 정의 자체가 함께 삭제되고, 학예사는 단지 박물관·미술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한 조항에 열거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만 규정됨

-박물관·미술관이 수행하는 사업에 관해, 「박미법」은 여전히 ‘박물관·미술관자료에 관한’ 업무임을 반복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학예사’에 관한 규정에서 이러한 핵심적 사항이 삭제되고, 박물관·미술관자료에 관한 수집·관리·보존·연구·전시 등의 ‘전문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라는 정의 규정 역시 삭제됨

-이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라는 직업 또는 그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명확하게 규정해온

정의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박물관·미술관 종사자 또는 직원 일반과의 구별을 모호하게 만든 제도적 오류라 하겠음

○ 학예사 자격요건의 등급화 및 '준학예사' 시험제도 신설: 전문성 요건 완화 또는 해제

- 학예사의 자격요건을 등급화하는 규정을 처음 도입하고, 준학예사 시험제도를 신설함
- 1~3급 정학예사의 경우, 박물관·미술관 관련 분야 학위 및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을 통해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한 자격요건을 제시함
- 그러나 '준학예사'의 경우, 박물관·미술관 관련 분야가 아닌 학사 및 전문학사 졸업은 물론, 학사·전문학사 졸업 여부와 상관 없이 '준학예사' 시험만 합격하고 소정의 실무경력만으로 자격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의 중요한 요건인 관련 분야 학위를 취득하지 않은 사람도 학예사가 될 수 있도록 함
- 또한 등록 박물관·미술관에서 학예사로 재직할 경우를 경력인정대상기관 여부에 관계없이 재직 경력으로 인정한다는 단서 조항을 부기했는데, 이는 학예사 자격제도를 신설함에 따르는 '경과조치'로서 다루어야 할 사항을 등급별 자격요건의 일부로 포함시킨 것으로 추정됨
- 따라서 박물관·미술관 관련 분야에서의 학위 요건이 실질적으로 해제되고, 경력인정대상기관이 아닌 등록관 근무경력만으로도 실무경력을 인정함으로써 경력인정대상기관 제도의 실효성 또한 취약하게 만드는 혼란스러운 요건이었다 할 수 있음

○ 학예사 보수교육 의무 조항 폐지: 전문성 요건의 취약성 가중

- 「박물관법」 당시부터 의무화되어 있었던 학예직원(또는 전문직원)의 보수교육 관련 의무조항은 「박미법」 제정 시부터 완화되는 경향을 보임
- 「박미법」 제정 시에 문화부장관이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부장관에 의한 '학예직원 보수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규정은 존치되었고, 박물관·미술관이 직원의 보수교육 편의를 보장해야 한다는 조항도 존치됨
- 그러나 2000년에 전부개정을 하면서 보수교육 관련 조항은 전면적으로 삭제됨
- 이는 학예사 자격제도가 박물관·미술관 관련 분야의 학위 요건을 필수로 삼지 않게 된 만큼, 학예사의 '전문성'을 위해 더욱 강화해야 마땅한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면적으로 법적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전문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의 취약성을 가중시킴

○ 학예사의 ICOM 윤리강령 및 국제협약 준수 의무 신설

- 한편으로 학예사 보수교육 관련 조항이 폐지된 대신에 신설된 것이 학예사에 대한 ICOM 윤리강령 및 국제협약 준수 의무 조항임
- 그러나 학예사의 업무 일체에 관한 의사결정 권한은 박물관·미술관 설립주체 또는 관장에게 있어, 이를 학예사에 특정하여 준수 의무로 규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조항이라 하겠음

- 또한 해당 윤리강령 및 국제협약에 대한 내용적 검토를 통해 「박미법」을 개정 또는 보완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준수 의무를 부과할 경우 현실적으로 준수할 수 없는 사항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조치 역시 부재하므로 역시 실효성을 갖지 못함
- 학예사를 포함한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주체나 종사자들에 대한 해당 윤리강령 및 국제협약에 대한 고지나 교육 과정이 부재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이를 인식하고 준수하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없는 일이라 할 것임

## □ 박물관·미술관자료에 대한 국민 접근성 관련 조항 폐지

### ○ 관람료 및 자료 이용료 관련 기준 및 사립관에 대한 시정명령 조항 폐지

- 「박미법」 제정 시에도 존치되었던 관람료 및 자료 이용료 기준이 2000년의 전부개정 당시에 폐지됨
- 그에 따라 사립관이 지나치게 높은 관람료 및 자료 이용료를 부과할 경우 시정명령을 하도록 한 조항도 함께 폐지됨
- 이는 박물관·미술관자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근거의 삭제인 동시에, 사립관은 물론 국·공립관의 경우에도 관람료 및 자료 이용료 책정에 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지불능력 격차에 따른 접근성 격차를 초래하여 ‘국민 문화향유 증진’이라는 법의 목적에도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음

### ○ ‘운영 자율성 확대’를 명분으로 한 대관일수 제한 조항의 폐지 예고

- 2000년 「박미법」 전부개정과 함께 「박미법 시행령」의 대관 관련 조항은 내용면에서는 변동이 없으나,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다”고 한 뒤, “이 경우 대관일수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연간 개방일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고 대관일수의 제한 규정을 단서조항으로 분리함
- ‘대관’은 박물관·미술관자료를 중심으로 각종 사업이 수행되어야 하는 박물관·미술관의 설립목적 및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로서 박물관·미술관자료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에도 제약을 가하는 관계로 제한적으로 허용하였으나, 이후 이러한 제한이 전면 폐지되어 현재에 이르게 됨
- 2015년 1월 6일,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명분하에 대관일수를 개방일수의 3분의 1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함
- 그 결과 실질적으로 박물관·미술관 운영 시 대관이 운영상 주된 방법이 되어 박물관·미술관의 고유목적과 기능을 교란시키더라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사라지게 되었음
- 현행법령에서 “설립목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관을 허용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으나, 각 박물관·미술관의 ‘설립목적’이 제도적으로 어떤 의미와 실효성을 갖는지가 모호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활용될 여지가 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대관의 무제한적 허용을 가능케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 박물관·미술관 정책 추진체계 및 거버넌스 보강: ‘운영 효율화·경영 합리화’의 모호성

- 기본시책(문광부장관)-진흥계획(중앙행정기관장 및 지자체장) 수립·시행 규정
  - 문광부의 기본시책 수립 의무화: 국·공·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등을 목적으로, 문광부장관이 박물관·미술관 정책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하도록 정함
  - 이 기본시책을 따라 국립박물관·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박물관·미술관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함
  - 이로써 문광부가 박물관·미술관 정책에 대한 일종의 총괄청 기능을 하고,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까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그러나 이 기본시책의 수립·시행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독립적인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기본시책이 거의 수립되지 못하다가, 2010년대에 들어 2차례 수립, 발표함: 그러다보니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에 의한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또한 이와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못함
- 박물관·미술관진흥위원회의 신설: 기본시책 및 진흥계획과의 연계 미흡
  - 박물관·미술관의 발전·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할 목적으로 문광부 소관 위원회로 설치 규정
  - 이 위원회는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 (2) 박물관 및 미술관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예사의 자격과 양성에 관한 사항, (5) 박물관 및 미술관의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박물관 및 미술관의 발전과 운영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등의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
  - 따라서 위원회의 성격이 기본시책(문광부) 및 진흥계획(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과 긴밀하게 연동하는 핵심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기본시책 및 진흥계획의 수립·시행과의 연계성이 명시되어 있지 못함
  - 또한 위원회의 구성에서도 문광부차관, 국립중앙박물관장·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부위원장)을 중심으로, 박물관·미술관계, 학계 및 문화·예술계 등에서 활동하는 박물관·미술관 분야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 문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를 아우르는 위상을 갖지 못함
- 박물관·미술관학예사운영위원회의 신설: 박물관·미술관진흥위원회와 관계설정 미비
  - 박물관·미술관진흥위원회와 별도로 학예사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박물관·미술관학예사운영위원회를 신설하여 운영하는 조항이 마련됨
  - 이 위원회 역시 문광부 소관으로 박물관·미술관계 및 학계 등의 인사를 문광부장관이 10인 이내로 위촉하여 구성함
  - 심의사항은 (1) 준학예사시험의 기본 방향, (2) 학예사자격 취득 신청자의 등급별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3)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인정, (4)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 분야의 인정 등으로,

학에서 또는 박물관·미술관 인력 전반에 관한 정책적 의사결정이나 심의기구가 아니라, 정책실행 또는 제도운영과 관련된 실무적인 심의·의결기구의 성격을 가짐

- 그러나 이 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이 상위 정책위원회라 할 박물관·미술관진흥위원회와 어떤 관계를 갖는지, 기본시책 및 진흥계획과는 어떻게 연계되는지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소관 업무 중 하나로 분립·운영되고 있어, 정책실행 관련 기구로서 존치되고 있으나, 박물관·미술관 정책 전반과의 정책적인 연계성이나 통합성은 취약한 특징을 보임

○ 박물관·미술관협력망의 유지 및 보강: 박물관·미술관자료 통합정보처리시스템 구축 및 상호활용 목적, 정책실행체계로서의 위상은 취약

- 「박미법」 제정 시, 정부가 박물관·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의 효율화, 각종 박물관·미술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조체제로서 협력망을 구성하도록 하고(문화부장관이 ‘협력망운영계획’ 수립·시행),
- 박물관·미술관은 그 설립목적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사업조성법」 및 「도서관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도서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도록 의무규정을 신설함
- 이때 협력망의 기능은 (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2) 박물관·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 종합목록·상호대차 등 박물관·미술관 운영의 효율화, (4) 기타 박물관·미술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됨: 이는 박물관·미술관 간의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상호공유하는 협력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에 있는 모든 박물관·미술관자료의 표준화된 정보처리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상호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음
- 이를 위해서 박물관협력망과 미술관협력망으로 구분하고, 박물관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민속박물관, 미술관협력망의 중앙관은 국립현대미술관으로 지정했으며, 지역대표관(시도지사가 지정해 중앙관에 통보)을 함께 두도록 함
- 그러나 박물관·미술관자료의 통합정보처리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자료 목록 및 자료 카드 비치 의무 조항은 2000년 전부개정 당시 삭제되었고, 박물관·미술관협력망 자체가 개별 박물관·미술관의 거버넌스 구성이나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추진체계와 연계하여 설계·도입된 것이 아니라 한계를 안고 있음
- 애초에 문화부장관이 ‘협력망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나, 이 계획이 문화부의 종합적인 기본시책 수립 사항으로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서 박물관·미술관진흥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만 적시되어 있는 점 등도 그 정책적 실효성을 높이는 데 한계로 작용하는 점이라 하겠음

○ 국·공립관 대상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사립관은 대상에서 제외

-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과 경영합리화를 목적으로 국·공립관에 의무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관장을 포함해 관장이 위촉하는 박물관·미술관 소재 지역 내 문화·예술계 인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함
- 운영위원회는 (1)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미술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미술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함
- 그러나 사립관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아, 사립관 운영에 관해서는 설립·운영주체(또는 관장)의 의사결정권한이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지속됨

[표 2-4] 박물관·미술관 법령의 주요 변경 사항 개관(1990~2000)

구분	「박물관법」(199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99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전부개정(2000)
목적	박물관 설치·운영 사항 규정 → 박물관의 건전한 육성 → 문화, 예술, 학문 발전에 기여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 사항 규정 → 박물관·미술관의 건전한 육성 → 문화·예술·학문 발전 및 일반공중 문화교육 기여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 사항 규정 → 박물관·미술관의 건전한 육성 → 문화·예술·학문 발전 및 일반공중 문화향수 기여
정의·구분·적용범위 (대상)	정의를 (1) 인류·역사·고고·민속·예술·자연과학·산업 등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일반 공중의 사회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지방자치단체, 민법에 의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법인이 설치한 것으로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 • 설립·운영주체 제한: 민법 및 특별법의 범위 • 박물관 정의를 '등록한 경우로 한정(등록의무) • 대상의 제한: 공립 및 사립만 포함 • '준박물관시설'의 지정 및 해제	설립·운영주체 제한 폐지: 국가, 지자체, 민법상법·특별법에 의한 법인·단체, 개인으로 확장 박물관·미술관 정의에서 '등록' 제한 폐지: 등록의 임의규정화 • 대상의 확장: 국립, 공립, 사립 • 자료 취급범위에 따른 차별화: 종합전문 박물관·미술관 • 박물관/준박물관시설 → 1종/2종 박물관·미술관 • 적용범위 조항 신설: (1) 과학·기술 관련 전문박물관 및 (2) 「교육법」에 의한 각급학교 설치·운영 박물관·미술관 제외	(1) 박물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 (2) 미술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시설 (3) 박물관자료: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4) 미술관자료: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
사업	1. 박물관자료의 수집·보존·관리 및 전시	<준치>	<준치>

2. 박물관자료에 관한 전문적·학술적 조사·연구
3. 박물관자료의 보존·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인 조사·연구
4.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강습회·영사회·연구회 등의 개최
5. 박물관자료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6. 다른 박물관과의 박물관자료·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 등 유기적인 협력
7. 기타 박물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설치·운영 기준	구분	기준	<삭제>
→설립 계획승인 (사립)	박물관자료	100점 이상	• 국립박물관 설립 협의 강제조항 존치: 국립관에도 적용
	박물관 자료의 전시·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시설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수장고·작업실 또는 준비실	•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및 인허가 의제처리 존치 고자 하는 자의 신청 → 문화부장관의 승인 • 사업추진실적 극히 불량 시 승인취소 가능: 승인취소 시 청문(의견 진술 기회 부여) 의무화
→설립 협의(국립)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직원	하에직원 2인 이상	• 국립관 설립 운영: 문광부 소속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 설립·운영 및 지방분관 설치 관련 법적 근거 마련
	박물관 운영 및 사회교육에 필요한 시설	사무실 또는 연구실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 국가대표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국가대표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규정 [국가대표박물관·미술관·국립민속박물관의 업무] 1. 국내·외 문화재의 보존·관리 2. 국내·외 박물관자료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3. 국내 다른 박물관에 대한 지도·지원, 업무협조 4. 국내 박물관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5. 기타 국가 대표 박물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설립·운영주체별 설립·운영 규정	[동물원·식물원·수족관: 위 기준에 추가 기준 제시]	기준	• 국가대표박물관(국립중앙박물관), 국가대표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규정
	동물원	위 기준+동물사육 및 수용시설, 동물진료 및 검역시설, 사료창고, 오물 및 오수처리시설	평면도, 박물관·미술관자료 내역서, 조직 및 정원) 문화부장관에 제출
식물원	위 기준+육종실, 묘포장, 식물병리시설,	제3조) 1. 박물관·미술관의 방화 등 설비 조항 존치(시행규칙 제3조) [사립관 설립계획승인서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토지의 조서(위치·지번·지목·면적·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기타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 국립관 설립 운영: (1)지역사회의 박물관·미술관자

구분	「박물관법」(199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99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00)
	비료저장시설	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것)	<b>로의 구입·관리·보존·전시, (2)지역문화발전, (3)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증진 목적으로 설립</b>
수족관	위 기준+전시수조, 예비수조, 순환장치, 수족치료 시설	3. 건물의 조서(위치·지반·건물구조·바다면적·연면적·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소유자와 전세권·저당권·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기타 건물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것)	<b>공립관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체적 조폐로 규정 하도록 위임</b>
	[박물관의 방화 등 설비: 시행규칙 제3조]	4. 도시계획시설관계확인서 또는 국토이용계획확인서의 소유인 경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b>사립관 설립 운영에 관한 국가 및 지자체 의무 규정: (1) 박물관·미술관 설립 조장, (2) 문화유산의 보존·계승·창달, (3) 문화향수 증진을 위한 문화기반시설로서 사립관의 지원·육성 의무</b>
	• 박물관 설치지는 자료 보존에 필요한 화재·먼지·벌레 등의 피해를 막는 설비, 온도·습도·빛 및 통풍조절 설비, 파손 및 도난 방지 설비를 갖추도록 노력	5. 부동산등기부등본 6. 부동산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부동산이 타인의 소유인 경우에 한한다) 7.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대대장등본 8. 위치도 9. 개략설계도서 10.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목록 및 내역서	<b>사립관 설립 운영주체의 의무 규정: 법 제1조(목적) 및 제2조(정의) 규정에 의한 목적과 기능에 부합되도록 설립·운영하도록 의무 부여</b>
	[사립관 설립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처리 사항]	[사립관 설립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처리 사항]	<b>대학관 설립·운영: (1) 대학의 '교육지원시설'로서 설립, (2) 박물관·미술관자료의 효율적 보존·관리, 교육·학술자료로의 활용 목적으로 지원·육성 의무</b>
	1.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의 허가(설립계획 관련 사업을 도시계획 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	[대학관 업무]	[대학관 업무]
	2.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1. 교수와 학생의 연구·교육 활동에 필요한 박물관·미술관자료의 수집·정리·관리·보존·전시	1. 교수와 학생의 연구·교육 활동에 필요한 박물관·미술관자료의 수집·정리·관리·보존·전시
	3. 「수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의 부설인가	2. 박물관·미술관자료의 학술적인 조사·연구	2. 박물관·미술관자료의 학술적인 조사·연구
	4.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3. 교육과정의 효율적 지원	3. 교육과정의 효율적 지원
	5.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4. 지역 문화활동과 사회문화교육에 대한 지원	4. 지역 문화활동과 사회문화교육에 대한 지원
		5. 국·공립관, 다른 박물관·미술관과 교류·협조	5. 국·공립관, 다른 박물관·미술관과 교류·협조
		6. 박물관·미술관 이용의 체계적 지도	6. 박물관·미술관 이용의 체계적 지도
		7. 기타 교육지원시설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7. 기타 교육지원시설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b>[사립관 설립계획승인서 구비서류: 5~7의 서류 제외로 간소화]</b>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6.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  
 지역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동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7.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사립관 설립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처리 사항: 변경  
 없음]

학예직원 배치 →전문직원 자격요건 →학예사 자격제도	• 학예직원 배치 의무화 조항 삭제 →등록요건 전문직 원 1인 이상으로 대체(시행령) • 전문직원(박물관·미술관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 시·조사·연구 기타 이와 관련된 전문적 사항을 담당하는 직원) 자격요건의 세분화 및 경력기간의 완화 • 문화부장관이 지정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는 박물관 등의 근무경력 산정 시 그 교육기관을 산입 가능 • 전문직원 자질 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실시 가능: 문화부장관이 사전에 학예직원보수교육계획 수립 (보수교육 기간 및 방법,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관련 사항 포함),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박물관 설치자는 전문직원의 보수교육에 필요한 편의 제공 의무화 •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제한: 국립관 및 등록관(가급적 교 박물관·미술관, 과학관 포함)	• ‘학예사’ 명칭의 사용: 법 제6조(사업)에 의한 박물관 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정의 간소화 • 학예사 자격제도의 도입: 등급제(1급정학예사, 2급정학예사, 3급정학예사, 준학예사) 실시 • 준학예사 시험 도입 • ‘경력인정대상기관’ 정의 도입(시행령 별표1): 국립 중앙박물관, 국·공립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공립 미술관 및 국립민속박물관과 박물관·미술관·미술관학예사 운영위원회가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등록된 대학박물관·미술관 및 외국박물관 등의 기관 중에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에 대한 전문가의 실사를 거쳐 인정한 기관 • 학예사 보수교육 관련 조항 삭제 •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의 윤리강령과 국제협약 준수 의무화
[학예직원의 자격: 시행령 제3조] 1. 연구직 공무원의 계급 구분과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당해 박물관자료의 관련 직렬의 연구직 공무원 또는 연구직 공무원이었던 자 2. 지방 연구직 공무원의 계급 구분과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당해 박물관자료의 관련 직렬의 연구직 공무원 또는 연구직 공무원이었던 자 3.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당해 박물관자료의 관련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 등급 자격요건 1급 2급 정학예사 자격 취득 후 경력인정대상기관

구분	「박물관법」(199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99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전부개정(2000)
4.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당해 박물관자료의 관련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립박물관·사립박물관·준박물관시설 또는 연구기관에서 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전문적 사항을 2년 이상 담당할 자	4.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박물관 또는 당해 박물관자료의 관련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립박물관·사립박물관·준박물관시설 또는 연구기관에서 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전문적 사항을 2년 이상 담당할 자	4.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박물관 또는 당해 박물관자료의 관련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립박물관·사립박물관·준박물관시설 또는 연구기관에서 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전문적 사항을 2년 이상 담당할 자	정학에서 2급 3급 정학에서 자격 취득 후 경력인정대상기관 정학에서 2급 3급 정학에서 1.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3.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재직경력이 7년 이상인 자
5. 「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립박물관·사립박물관·준박물관시설 또는 연구기관에서 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전문적 사항을 5년 이상 담당할 자	5.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당해 박물관자료의 관련학과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전문적 사항을 10년 이상 담당할 자	5.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박물관 또는 박물관 등의 관련학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박물관 등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1.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2.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3. 학사 또는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준학예사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6.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립박물관·사립박물관·준박물관시설 또는 연구기관에서 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전문적 사항을 10년 이상 담당할 자	6.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박물관 또는 박물관 등의 관련학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박물관 등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자	6. 「교육법」에 의한 전문대학에서 박물관 또는 박물관 등의 관련학을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박물관 등의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1.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 분야: 고고학·미술학·예사학·민속학·인류학·서지학·자연사·과학사·박물관학·역사학 및 보존과학과 박물관·미술관학예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관련 분야 2. 실무경력: 재직경력·실습경력 및 실무면수과정 이수경력 등을 포함

구분	「박물관법」(199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99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전부개정(2000)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 운영 위원회	「박물관법」(1990)	연구기관에서 박물관·미술관자료에 관련된 전문적 사항을 5년 이상 담당할 자 [근무경력이 인정되는 박물관·미술관의 범위] 1. 국립박물관 또는 국립미술관 2. 등록박물관 또는 미술관 3. 「교육법」 제81조에 의한 각종 학교가 설치·운영하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4. 「과학관육성법」 제3조에 의한 국립과학관·공립과학관 및 동법 제6조에 의해 등록한 과학관	3. 등극 박물관·미술관에서의 학예사 재직경력을 경력인정 대상기관 여부에 관계없이 인정						
			[준학예사 시험]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458 174 496 427">구분</th> <th data-bbox="458 427 496 696">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496 174 534 427">공통과목 (개관식)</td> <td data-bbox="496 427 534 696">박물관 및 외국어(영어·불어·독어·일어·중국어·한문·스페인어·러시아어 및 이탈리아어) 중 1과목 선택</td> </tr> <tr> <td data-bbox="534 174 572 427">선택과목 (주관식)</td> <td data-bbox="534 427 572 696">고고학·미술사학·예술학·예술헌·민속학·서지학·한국사·인류학·자연사·과학사·문화사·문화사·보존과학 및 전시기획론 중 2과목 선택</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공통과목 (개관식)	박물관 및 외국어(영어·불어·독어·일어·중국어·한문·스페인어·러시아어 및 이탈리아어) 중 1과목 선택	선택과목 (주관식)	고고학·미술사학·예술학·예술헌·민속학·서지학·한국사·인류학·자연사·과학사·문화사·문화사·보존과학 및 전시기획론 중 2과목 선택
구분	내용								
공통과목 (개관식)	박물관 및 외국어(영어·불어·독어·일어·중국어·한문·스페인어·러시아어 및 이탈리아어) 중 1과목 선택								
선택과목 (주관식)	고고학·미술사학·예술학·예술헌·민속학·서지학·한국사·인류학·자연사·과학사·문화사·문화사·보존과학 및 전시기획론 중 2과목 선택								
			1. 연 1회 실시 2. 100점 만점 기준, 매 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 시 합격						
			<신설> [운영위원회 구성] 1. 박물관·미술관계 및 학계 등의 인사 중 문광부장관이 위촉하는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1. 준학예사시험의 기본 방향 2. 학예사자격 취득 신청자의 등급별 학예사 자격요건의 심사 3.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인정 4. 박물관 또는 미술관 관련 분야의 인정						
		[문화재위원회(문화재보호법) 지문 임의규정 사항]	<준치>						
	[문화재위원회(문화재보호법) 지문 의무 사항]	[문화재위원회(문화재보호법) 지문 임의규정 사항]							
	[문화재위원회(문화재보호법) 지문 의무 사항]								

구분	「박물관법」(199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99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전부개정(2000)
자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박물관의 설치·운영기준에 관한 사항</li> <li>2. 박물관의 등록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li> <li>3. 준박물관시설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li> <li>4. 기타 박물관 관련 문화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li> </ol>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박물관·미술관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li> <li>2. 국립관 설립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 협의요청에 관한 사항</li> <li>3. 사립관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li> <li>4. 기타 박물관·미술관 관련 문화부장관이 지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p>&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가 박물관·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의 효율화, 각종 박물관·미술관의 상호협력 도모 위한 협조체로서 협력망 구성 가능</li> <li>• 박물관·미술관은 그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문화사업조성법 및 도서관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도서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 의무화</li> <li>• 박물관협력망과 미술관협력망으로 구분: 중앙관(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과 지역대표관(시·도지사가 지정해 중앙관에 통보)</li> </ul> <p>[협력망의 기능]</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li> <li>2. 박물관·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li> <li>3. 종합목록·상호대차 등 박물관·미술관 운영의 효율화</li> <li>4. 기타 박물관·미술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li> </ol>	<p>&lt;존치&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협력망의 중앙관에 국립민속박물관 추가</li> </ul>	
운영	<p>&lt;신설&gt;</p>		<p>&lt;신설&gt;</p>

## 위원회

- **등록한 국·공립관 대상 의무규정**
- **전문성 제고와 공시시설로서의 효율적 운영과 경영합리화 목적**

[운영위원회 구성]

1. 위원장 1인 포함 10~15인(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
2. 위원은 당해 박물관·미술관 소재 지역 내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 당해 박물관·미술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당해 박물관·미술관의 장으로 구성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1.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미술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3. 박물관·미술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4. 다른 박물관·미술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 진흥시책

## 수립

&lt;신설&gt;

- **문광부장관의 기본시책 수립 의무화: 국·공·사립 박물관·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문화시설로서의 지원 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미술관 진흥 등 목적**
- **국립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본시책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진흥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장이 기본시책에 따른 지자체 박물관·미술관 진흥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박물관·  
미술관  
진흥  
위원회

<신설>

- 목적: 박물관·미술관의 발전·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문광부 위원회)**

[심의사항]

1.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기본정책
2. 박물관 및 미술관협력망의 구성 및 운영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학예사의 자격과 양성에 관한 사항
5. 박물관 및 미술관의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타 박물관 및 미술관의 발전과 운영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 구성]

1. 위원장 1인, 부위원장 3인 포함한 10~15인
2. 위원장은 문광부장관, 부위원장은 국립중앙박물관장·국립현대미술관장, 국립민속박물관장, 위원은 박물관·미술관계, 학계 및 문화예술계 등에서 활동하는 박물관·미술관 분야에 대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 문광부장관이 위촉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
4.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1인: 문광부 소속 공무원 중 문광부장관이 임명

등록

- 등록신청(박물관 설치하고자 하는 자)→등록신청 수리(서울특별시·광역시·도지사→문화부장관)  
    • 등록증 교부 및 등록표시 의무 규정 존치: **우외간판** 등에 '문화관광부 등록 제00호'를 표시
- 설치·운영기준 충족 시에만 박물관등록부에 기재  
    • 문화부장관의 등록증 교부 의무  
    • 등록 제외 대상 규정: 국립중앙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구분	「박물관법」(199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99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00)																											
<p>[등록신청 시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설내역서 1부</li> <li>2. 박물관자료내역서 1부</li> <li>3. 학예직원 이력서 1부(학예직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재직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중 해당되는 서류 각 1부 포함)</li> <li>4. 설치·운영조례 사본 1부(공립박물관)</li> <li>5. 법인 등기부등본·정관 및 기본재산내역서 각 1부(사립 박물관)</li> <li>6. 관람료 및 이용료(박물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의 연간수입계획서 1부</li> </ol>	<p>• 국립관 및 등록관 외 박물관·미술관 명칭 사용 금지</p> <p>조항 신설: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부과·징수(문화부장관)</p> <p>• 과태료 처분 불복 시 고지받은 날 이후 30일 이내에 문화부장관에 이의제기 → 문화부장관이 관할법원에 통보 → 관할법원이 과태료 재판 실시</p> <p>• 이의제기 없이 과태료 미납 시 국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p> <p>[등록요건]</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자료</th> <th>전문직원</th> </tr> </thead> <tbody> <tr> <td>분야별</td> <td>100점 이상</td> <td>분야별 1인 이상</td> </tr> <tr> <td>시설</td> <td></td> <td></td> </tr> <tr> <td>총합</td> <td>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당해 전시 면적</td> <td></td> </tr> <tr> <td>박물관</td> <td>2. 수장고</td> <td></td> </tr> <tr> <td></td> <td>3. 작업실 또는 준비실</td> <td></td> </tr> <tr> <td></td> <td>4. 사무실 또는 연구실</td> <td></td> </tr> <tr> <td></td> <td>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td> <td></td> </tr> <tr> <td></td> <td>100점 이상</td> <td>1인 이상</td> </tr> </tbody> </table> <p>전문</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00제곱미터 이상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 야외전시장</li> </ol> <p>박물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수장고</li> <li>3. 사무실 또는 연구실</li> <li>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li> </ol>	구분	자료	전문직원	분야별	100점 이상	분야별 1인 이상	시설			총합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당해 전시 면적		박물관	2. 수장고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100점 이상	1인 이상	<p>관, 국립현대미술관</p> <p>• 국립관 및 등록관 외 등록관 의 ‘박물관·미술관’ 명칭 사용 금지 포함 폐지</p> <p>• 등록요건에 화재·도난방지시설, 온습도조절장치 추가</p> <p>[등록사항: 변경 없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설명세서</li> <li>2. 자료 목록</li> <li>3. 학예사 명단</li> <li>4. 관람료 및 자료 이용료</li> </ol>	<p>「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00)</p>
구분	자료	전문직원																												
분야별	100점 이상	분야별 1인 이상																												
시설																														
총합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당해 전시 면적																													
박물관	2. 수장고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100점 이상	1인 이상																												

구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99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99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전부개정(2000)
	자료	전문직원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수장고</li> <li>3. 사무실 또는 연구실</li> <li>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100종 이상</b></p> <p style="text-align: center;"><b>1인 이상</b></p>	
동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300제곱미터 이상 야외전시장(전시실 포함)</li> <li>2. 사무실 또는 연구실</li> <li>3. 동물사육 및 수용시설</li> <li>4. 동물진료 및 검역시설</li> <li>5. 사료창고</li> <li>6. 오물 및 오수처리시설</li> </ul>	<p>실내: 100종 이상</p> <p>야외: 200종 이상</p>	
식물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0제곱미터 이상 전시실 또는 6,000제곱미터 이상 야외전시장</li> <li>2. 사무실 또는 연구실</li> <li>3. 육종실</li> <li>4. 묘포장</li> <li>5. 식물병리시설</li> <li>6. 비료저장시설</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100종 이상</b></p> <p style="text-align: center;"><b>1인 이상</b></p>	
수족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00제곱미터 이상 전시실</li> <li>2. 사무실 또는 연구실</li> <li>3. 수족치료시설</li> <li>4. 순환장치</li> <li>5. 예비수조</li> </ul>		

[등록사항]

1.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명칭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소재지
3.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설립자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法人 또는 團體인 경우에는 法人 또는 團體의 명칭, 主事務所의 所在地, 代表者의 姓名, 住所等)
4. 시설명세서
5.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목록
6. 전문직원의 명단
7.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사립관 한정)

[등록신청 시 구비서류]

1. 시설명세서 2부
2. 자료 목록(사진첨부) 및 자료내역서 각 2부
3. 전문직원 명단 2부 및 이력서 1부(자격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졸업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중 해당되는 서류 각 1부 포함)
4. 설치·운영조례 사본 1부(공립박물관)
5. 시설의 소유 또는 임차를 증명하는 서류 1부(사립박물관)
6. 관람료 및 자료 이용료 2부와 연간수지계획서 1부
7.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계획서 1부

시정 및  
정관명령

- 「박물관법」의 규정 또는 이 법에 의한 박물관 설치목적 위반 시 시정명령(문화부장관)→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정관명령
- 박물관·설치목적: 인류·역사·고고·민속·예술·자연과

<준지>

- 등록권이 이 법의 규정 또는 설립목적 위반 시 시정명령(문화부장관): 관람료 및 이용료 높을 경우 포함
- 시정요구 대상을 등록관으로 한정하지 않음
- 관람료 및 자료 이용료 2부와 연간수지계획서 1부
- 설립목적 및 주요사업계획서 1부
-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명령 불이행 시 6개월 이내의

학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이를 조사·연구하여 일반공중의 사회교육에 이바지하는 것

[시정·정관명령 절차]

시정명령 서면통지(위반 내용, 시정 사항 및 기한)

정관명령 서면통지(정관 사유 및 기한: 정관 기간은 6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 정관명령 가능: 개관 및 휴관 규정 위반 경우는 제외

• 정관명령 시 청문(의견을 진술할 기회 부여) 의무화

[시정·정관명령 절차: 동일함]

등록취소  
 • 등록취소(문화부장관) 사실 지체 없이 박물관 설치 자에게 통지 → 박물관 설치자(또는 대리인)의 의견진술 기회 부여 → 등록종의 문화부 반납(박물관 설치자)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부터 2년간은 등록취소 대상에서 제외  
 • 의견진술 절차 별도 규정(시행령 제5조)

[등록취소 사유]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설치·운영기준을 유지하지 못하여 이 법에 의한 박물관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정관명령을 받고도 박물관을 정관하지 않은 경우

<준치>

• 등록취소(문화부장관) 사실 지체 없이 박물관 설치 자에게 통지 → 청문(의견진술 기회 부여) → 등록종류 불가로 개정  
 • 등록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재등록 불가로 개정

• 등록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재등록 불가 조항 신설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해 박물관·미술관 사업 수행 불가 시, 그 사유 소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등록취소 불가

[등록취소 사유]

1. 상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때
2.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때
3. 등록요건을 유지하지 못해 법에 규정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4.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위반한 때
5. 정관명령을 받고도 정관하지 않은 때
6. 이 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설립목적에 위반하여 박물관·미술관자료를 취득·알선·중개·관리할 때

개관·휴관·폐관신고

- 개관: 1년에 120일 이상 개관 의무
- 휴관: 120일 이상 개관 불가 또는 1개월 이상 휴관 시, 문화부장관의 사전승인 필요
- 폐관신고(박물관 설치자, 폐관예정 30일 전까지 신고)→등록말소(문화부장관)

<준치>

- 개관: 국립관 및 등록관은 연간 90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방 의무(개방일수 단축승인 신설)
- 휴관: 등록관의 2개월 이상 계속 휴관 시 문화부장관에게 신고 의무(휴관예정일 7일 전까지)
- 폐관유고(등록관 설립·운영자, 폐관예정 30일 전까지 신고 및 등록증 반납)→등록말소(문화부장관)

관람료 및 이용료

- 관람료 및 이용료(자료 이용 대가) 허용
- 국립박물관의 관람료·이용료 기준 규정(문화부)→ 지자체 조례로 관람료·이용료 규정
- 국립박물관 관람료·이용료 시정명령(문화부장관, 박물관 설치목적 대비 지나치게 높다고 인정될 때)

[공립박물관 관람료 기준: 시행규칙 제9조]

구분	금액		비고
	개인	단체 (20인 이상)	
어른	500원	400원	19~64세
어린이	250원	200원	7~12세
청소년/군인	250원	200원	13~18세/하사 이하 군인
노인	250원	200원	65세 이상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중 2 이상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관람료의 200퍼센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공립박물관 이용료 기준: 시행규칙 제9조]

- 관람료 및 자료 이용료 허용
- 국립박물관의 관람료·이용료 기준 규정(문화부)→ 지자체 조례로 관람료·이용료 규정
- 국립박물관 관람료·이용료 시정명령(문화부장관, 박물관 설치목적 대비 지나치게 높다고 인정될 때)

[공립박물관 관람료 기준: 시행규칙 제9조]

구분	금액		비고
	개인	단체 (20인 이상)	
어른	500원	400원	25~64세
어린이	250원	200원	7~12세
청소년/군인	250원	200원	13~18세/하사 이하 군인
노인	250원	200원	65세 이상

\*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중 2 이상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관람료의 200퍼센트에 상응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공립박물관 이용료 기준: 변경 없음]

구분	「박물관법」(199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99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전부개정(2000)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수량</th> <th>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사진촬영</td> <td>1점</td> <td>20,000원</td> </tr> <tr> <td>사진원판이용</td> <td>1매</td> <td>10,000원</td> </tr> </tbody> </table>	구분	수량	금액	사진촬영	1점	20,000원	사진원판이용	1매	10,000원		
구분	수량	금액										
사진촬영	1점	20,000원										
사진원판이용	1매	10,000원										
지도·조언	박물관의 설치·운영 관련 전문적·기술적 지도·조언 또는 보고 지시(문화부장관→박물관)	<존치>	<삭제>									
경비 보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나 지자체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립박물관에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 보조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나 지자체는 <b>설립계획 승인을 얻는 자에 대해 설립 필요 경비 일부, 등록관에 대해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b>를 예산 범위 내에서 각각 보조 가능</li> </ul>	<존치>									
박물관 자료의 특별취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국영수송기관에 의한 박물관자료 수송 시 운임이나 기타 요금 할인 또는 감면</li> <li>모든 수송기관: 박물관자료 수송 시 필요한 최선의 안전조치 강구 의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 국영수송기관에 의한 박물관자료 수송 시 운임</li> <li><b>경비 보조 조항에 통합</b></li> </ul>	<존치>									
박물관 자료의 교환·양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물관 상호간 자료의 교환, 양여, 대여, 보관위탁 가능</li> <li>국가나 지자체가 박물관자료로 활용 가능한 자료를 국립박물관에 무상 양여, 대여, 보관위탁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나 지자체가 박물관·미술관의 <b>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b> 조항 추가</li> <li>국가·지자체가 박물관·미술관에 자료를 위탁할 때 <b>보존·처리, 관리 소요 경비 지원</b> 조항 추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가나 지자체가 박물관·미술관의 <b>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b> 조항 추가</li> <li>국가·지자체가 박물관·미술관에 자료를 위탁할 때 <b>보존·처리, 관리 소요 경비 지원</b> 조항 추가</li> </ul>									
장부 비치	장부(자료대장 및 자료카드) 비치 의무화	자료목록 및 자료카드 비치 의무(등록관 대상)	<삭제>									
박물관 협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물관 설치자가 박물관 상호간 자료교환, 운영 등 관련 연구, 외국 박물관과의 교류를 위해 박물관협회 설립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하는 자가 박물관·미술관 관련 정보자료 교환 및 업무협조, 운영·관리 등 관련 연구, 외국 박물관·미술관과의 교류, 박물관·미술관 <b>종사자의 지질 향상 및 공공의 증진을 위하여 설립 가능(문화부장관 인가 필요)</b></li> </ul>	<존치>									

• **법인으로 설립(「민법」의 사단법인 규정 준용)**

준박물관      • **박물관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시설로서 그 전시 <삭제>**

시설의            **자료의 내용이 문화·예술·학문의 연구와 일반공중의**

지정·해제        **이용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시설의**

**신칭에 의해 준박물관시설로 지정 가능**

• **지정 시설에 대해 시정 및 정관명령, 관람료 및 이용  
료, 지도 및 조연, 박물관자료의 특별취급, 장부비치  
등의 규정 준용**

• **지정 시설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해제 가능**

• **폐지신고: 폐지예정일 30일 전까지 문화부에 신고**

[지정 신청 시 구비서류]

1. 자료 및 시설내역서 1부
2. 직원의 이력서 1부
3. 관람료 및 이용료의 연간수입계획서 1부

[지정 요건]

1. 박물관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와 시설이 있을 것
2.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연구 기타 이와 관련 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것
3. 일반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연 100일 이상 공개할 수 있을 것

[지정해제 사유]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구분	「박물관법」(199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99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전부개정(2000)
2. 지정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사업정지명령을 받고도 정지하지 않은 경우			
권한 위임·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법의 권한 일부를 지자체 장에게 위임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 법의 권한 일부를 서울특별시·직할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협회에 위탁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협회 위탁 삭제</b></li> <li><b>시도지사 위임사항 명시: 분기별 장관 보고</b></li> </ul>
		[시도지사 위임사항]	
재산 기부	<p>&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법」·「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미술관 시설의 설치, 박물관·미술관자료의 획득 등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 기타 재산을 박물관·미술관에 기부 가능</li> </ul>	<p>&lt;존치&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립관의 설립계획의 승인·변경승인, 소관 행정기관과의 협의, 설립계획승인의 취소, 소관 행정기관-이해관계인에 대한 통보, 관보에의 공고</li> <li>등록관에 대한 시정요구·정관명령, 자료제출요구</li> <li>청문의 실시</li> </ol>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물관의 등록, 등록취소, 폐관 및 준박물관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폐지 시, 문화부장관이 관보에 7일 이내 공고 의무</li> </ul>	<p>&lt;존치&gt;</p>	
보고	<p>&lt;신설&g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록관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운영현황보고서를 작성해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부장관에게 제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도지사의 의무사항으로 개정: 매년 관할 등록관의 관리·운영, 관람료 및 이용료, 지도·감독현황 등의 운영현황을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li> </ul>	

(표 2-5) 박물관·미술관 법령의 박물관·미술관 범주 관련 주요 개정 내용

연도	개념체계	내용
1984 「박물관법」	박물관	인류·역사·고고·민속·예술·자연과학·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일반공중의 사회교육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b>지방자치단체, 민법에 의한 법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의 법인(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치하는 것으로 이 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b> [설치·운영기준] 1. 박물관자료와 그 전시·보존·관리등에 필요한 시설 2. 박물관운영에 필요한 직원 3. 박물관운영 및 사회교육에 필요한 시설 [박물관자료] 박물관이 수집·보존·전시하는 인류·역사·고고·민속·예술·자연과학·산업 등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
		<b>공립박물관</b>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박물관
	<b>사립박물관</b> 「민법」에 의한 법인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설치하는 박물관	
	준박물관 시설	박물관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시설로서 그 전시하는 자료의 내용이 문화·예술 및 학문의 연구와 일반공중의 이용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신청에 의하여 준박물관시설로 지정 [준박물관시설 요건] 1. 박물관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와 시설이 있을 것 2.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조사·연구 기타 이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직원이 있을 것 3. 일반공중의 이용을 위하여 연 100일 이상 공개할 수 있을 것
199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인류·역사·고고·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b>문화·예술 및 학문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교육에</b>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박물관자료] 박물관이 수집·보존·전시하는 인류·역사·고고·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 [적용범위] <b>과학·기술에 관한 전문박물관,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제외</b>
		<b>국립박물관</b>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b>*설립·운영 주체별</b>	<b>공립박물관</b>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b>*자료 취급범위별</b>	<b>사립박물관</b> 「민법」·「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b>종합박물관</b> 서로 다른 2개 분야 이상의 박물관자료를 취급하는 박물관

연도	개념체계	내용
	<b>전문박물관</b>	역사·과학·산업·민속 및 향토사료 등 특정 분야의 박물관자료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박물관
	<b>미술관</b> *설립·운영 주체별	<b>박물관으로서</b>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하고 이들을 조사·연구하여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공중의 문화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 [미술관자료] 미술관이 수집·보존·전시하는 미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
	<b>국립미술관</b>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미술관
	<b>공립미술관</b>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미술관
	<b>사립미술관</b>	「민법」·「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미술관
	<b>등록요건 범주</b>	종합박물관, 전문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199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1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종합박물관, 전문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	유물관, 사료관, 전시관, 자료관 (*등록요건의 시설, 전문직원, 자료 규모 완화한 범주)
200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1종 박물관 · 미술관	<b>국립박물관·미술관</b> 국가가 설립·운영 <b>공립박물관·미술관</b>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 <b>사립박물관·미술관</b> 「민법」·「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 <b>대학박물관·미술관</b> 「고등교육법」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대학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
	<b>종합박물관 전문박물관</b>	법률상 정의 조항 삭제, 등록요건에만 잔존
		동물원/식물원/수족관 (*‘준박물관시설’ 개념의 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2종 적용 범위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집, 야외전시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고 있는 문화시설 (*‘준박물관시설’ 개념의 연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록 요건 범주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집
2009 「박미법」	<b>박물관자료 범위 확대</b>	박물관자료 정의에 ‘무형적 증거물’ 추가: 디지털화된 다양한 자료 활용 가능 (“무형적 증거물일 경우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나 정보일 것”)
	<b>적용범위 제한</b>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 제외

## □ 사립관의 증가를 촉진하기 위한 세제혜택 및 각종 지원 확대: 규제완화 효과의 극대화

- 설립·운영 관련 세제혜택 도입: <2000년대를 준비하는 『국민의 정부』 새문화정책>(1998)과 <순수예술진흥종합계획>(1998)
  - 국민의 정부는 문화의 경제적 가치에 초점을 두고, 문화유산의 상품화, 문화관광 강조(문화관광부 발족), 지역의 전통, 설화, 특산물 등을 관광상품으로 개발하도록 하여 지역축제가 번성함
  - <순수예술진흥종합계획>에서는 박물관 등록 시 사립박물관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증여세 면제, 시설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 시설세 면제 등의 세제 혜택을 부여함
  - 박물관 등록 규제 완화가 등록된 박물관 수의 확충을 목표로 한 것이었다면, 등록기관에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박물관 등록을 정책적으로 장려한 것은 박물관의 질적 향상을 노린 것이었음
  - 등록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시설, 인력 및 학예사, 등록 자료, 향후 박물관 계획 등 정해진 기준을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고자 다수의 기관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함으로써 박물관 전체의 수준 향상을 노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세제혜택의 확대 및 「박미법」의 경계를 넘어선 지원/특례의 확장: 등록제도의 무력화
  - 세제혜택을 도입할 당시, 적용 대상은 ‘등록 박물관·미술관으로 한정함’으로써 등록을 유도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 그러나 실제 세제혜택 관련 타 법률들을 확인해 보면, 「박미법」에 따른 등록 박물관·미술관에 제한되지 않는 사례들이 다수 존재함함
  - 특히 「박물관법」 시절에는 박물관·미술관 정의에 ‘이 법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이라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으나, 「박미법」 제정 이후에는 정의 조항에서 ‘등록 여부를 삭제함으로써, 「박미법」의 정의 조항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또는 「박미법」도 인용하지 않은 채 ‘박물관·미술관’으로 세제혜택 대상을 지정할 경우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세제혜택을 받게 됨
  - 이는 「박물관법」 폐지 후 「박미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타법 개정이 수반되면서, 「박미법」의 정의 조항 변경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은 채 법령명만을 개정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애초 법 취지에 맞도록 ‘등록’ 박물관·미술관으로 통일하여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경향은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 자체를 공익적 활동으로 간주하여 「박미법」 외 각종 법률에 의한 행·재정적 지원 및 특례를 정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확인되며, 이러한 법률이 지속적으로 추가 신설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등록’ 박물관·미술관으로 명시한 사례는 오히려 소수임
- 박물관·미술관과 ‘전시시설’ 규정의 상충: 박물관·미술관의 특성 및 등록제도에 대한 인식 부재
  - 나아가 박물관·미술관을 적용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박미법」이 아니라 「문진법」에 의한 ‘전시시

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그 하위범주로서의 ‘전시시설’)로 특정하고 있는 사례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박미법」에 따른 ‘등록’ 박물관·미술관을 특정하고 있지 않음

- 「문진법」에 따른 ‘전시시설’의 경우, 비상업시설(소장품 매매·중개·알선 불가)인 박물관·미술관과 상업시설(작품 매매가 목적)인 화랑을 같은 범주로 묶어 양자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으며, 나아가 예술인 창작공간인 다중이용시설 및 예술인 창작물의 전시시설까지를 추가로 포함함으로써 박물관·미술관 및 화랑 사이의 경계를 더욱 모호하게 하고 있음: 여기에 종합시설까지 포함시키되, 종합시설일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나 기준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전시시설’이라는 기능으로 포괄함
- 이와 같은 범주 구분 위에서 「문진법」은 ‘문화예술공간’(=문화시설)의 설치를 권장하는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형 건축물에 문화시설 설치 권장(해당 사항에 관한 지자체 조례 제정 및 반영), 국·공립 문화시설의 비영리법인·단체 및 개인에의 위탁운영 허용 등이 함께 포함되어 있음: 이는 「박미법」에 의해 규정되지 않은 사항인 바, 「문진법」에 의해 「박미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이 추가적인 규제완화 효과를 갖게 하는 조항임
- 「건축법 시행령」의 용도별 구분에서도 ‘전시시설’에 박물관·미술관 외에 그와 유사한 시설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문진법」의 ‘전시시설’이 내포하고 있는 설립목적 자체의 명백한 차이를 무화하고 있음
- 또한 「문진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전시시설’ 범주에서는 공통되게 박물관과 미술관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를 ‘등록’ 박물관·미술관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박미법」에 따른 등록제도는 「박미법」이라는 자체의 규제완화적 속성에 의해서뿐 아니라, 타 법률들이 박물관·미술관을 규정하고 분류하는 방식에 의해서 상당 부분 유의미하게 인식·적용되지 못하고 실효성을 크게 위협받는 제도가 되고 있다 할 수 있음

[표 2-6] 박물관·미술관 세제혜택 현황

(2022.5. 기준)

구분	세제혜택	근거	비고(적용대상)	
설립 시 세제혜택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	등록 박물관·미술관	
	과세기준일 현재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제외)에 대해 해당 부동산 취득일 이후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박물관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설립계획 승인을 얻은 사립박물관·미술관 (비영리법인이 설립한 경우만 해당)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조세감면, 국공유재산 임대·임대료 감면·매각, 지자체의 외국인투자유치활동 지원, 외국인 투자에 대한 현금지원 등) 및 투자지역 지정 시 적용대상으로 포함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25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호,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중 법인이 설립·운영하는 경우	
운영 시 세제혜택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해당 사업과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 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산입 가능(교육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등록 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서화, 골동품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박물관·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에 진열하거나 교재로 사용하기 위한 표본 또는 참고품의 개별소비세 면세	「개별소비세법」 제18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박물관·미술관 “입장료”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17호	등록 박물관·미술관	
	박물관·미술관 “교육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6호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등록 박물관·미술관	
	박물관에 진열하는 표본 및 참고품·교육용의 촬영된 필름, 슬라이드, 레코드, 테이프 또는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매개체와 이러한 시설에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수입승인 면세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	박물관 또는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설	
	등록 박물관(사립박물관·미술관의 경우 공익법인에 해당) 등에 유증이나, 「문화재보호법」 상의 토지 등을 출연하는 재산에 대한 상속재산의 상속세 및 증여세 비과세 징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공공 박물관	

구분	세제혜택	근거	비고(적용대상)
		제1항 3호	
	등록한 사립박물관·미술관(공익법인 등에 해당할 경우만)에 전시 중이거나 보존 중인 등록 자료는 상속세·증여세 징수 유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4조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등록 박물관·미술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입장권 구입비용 대상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0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박물관의 학술연구용품 감면세	「관세법」 제90조	박물관
	계약전력 4kW 이상으로 교육용 전력이금을 적용받는 전기료 할인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58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및 부대시설
	국영 수송기관에 박물관·미술관 자료의 수송을 맡길 경우 운임 등 기타 요금의 할인 및 감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사립박물관·미술관, 등록 박물관·미술관
	평생교육시설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소비성서비스업 외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1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투자한 경우, 각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시행규칙 제14조	등록 박물관·미술관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다음 박물관 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박물관 등의 건물과 부속토지를 2022년 12월 31일 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시설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5년의 기간 동안 분할납부 가능	「조세특례제한법」 제83조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접대비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5조) 특례 적용: 박물관 입장권 구입, 국가등록문화재 관람 입장권 구입, 문화예술 관련 강연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 강연료 등,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행사비, 문체부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행사 지출 경비, 미술품 구입(취득금액이 거래단위별 1백만 원 이하)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표 2-7) 박물관·미술관에 관한 법률적 범주의 비교

법령 구분	내용
<p>「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lt;개정 2007. 7. 27., 2009. 3. 5., 2016. 2. 3.&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li> <li>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li> </ol> <p><b>제16조(등록 등) ①</b>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예사와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 및 시설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국립 박물관 및 미술관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대학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등록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개관 전까지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부터 40일 이내에 등록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④ 제3항에 따른 등록, 심의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b>제18조(사립박물관·사립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①</b>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미술관을 설립하려는 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 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설립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면 미리 제20조제1항 각 호 해당 사항의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p> <p>④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사업 추진 실적이 극히 불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p> <p>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설립 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거나 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3항에 따른 협의 기관이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p>
<p>「문화예술진흥법」</p>	<p>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li> <li>2.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 용품을 산업 수단에 의하여 기획·제작·공연·전시·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li> <li>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li> </ul> </li> </ol>

법령 구분	내용
-------	----

-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관 시설  
 라. 「문학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학관  
 마.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바.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별표1

전시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술관
지역문화 활동시설	화랑: 회화·서예·사진·공예 등의 작품을 전시·매매하는 시설
	조각공원: 조각작품을 전시하는 공원
종합시설	문화의 집: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
	공연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과 전시시설, 도서관(도서관, 작은도서관), 지역문화활동시설(문화의집, 문화체육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문화보급·전수 시설(지방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이 복합되어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에 이용될 수 있는 시설

「건축법」 제2조(정의) ②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법령 구분	내용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24. 방송통신시설 25. 발전시설 26. 묘지 관련 시설 27. 관광 휴게시설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1
	가. 공연장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나. 집회장[예식장, 공회당, 회의장, 마권 장외 발매소, 마권 전화투표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5. 문화 및 집회시설	다. 관람장(경마장, 경륜장, 경정장, 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과 체육관 및 운동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b>라.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화관, 체험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b> <b>마.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b>

(표 2-8) 박물관·미술관 지원·특례 현황

(2022.5. 기준)

구분	지원/특례	근거	비고(적용대상)
설립 관련 지원 / 특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에 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등에 관하여 재정적·행정적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의 3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11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국가 외의 자는 국유재산에 건물, 교량 등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의 사회기반시설 중 주민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회기반시설을 해당 국유재산 소관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총괄청의 승인을 받아 축조하는 경우 허용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 2	박물관, 미술관 또는 과학관 (사회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시설)

구분	지원/특례	근거	비고(적용대상)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이나 그 밖의 공작물의 건축 및 설치 허용: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시설 대상 <sup>3)</sup>	「수도법 시행령」 제13조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라목의 박물관, 미술관
	국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에 박 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을 우선 설치 또는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문화시설을 거점지 구에 설치하거나 이전하려는 자에 대해 우선적 으로 인허가 가능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6조	박물관 등 문화시설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한계농지 등 정비지구 지정 및 고시한 지역에 전시장·박물관 등 문화예 술 관련 시설 설치 가능	「농어촌정비법」 제92조 및 제94조	박물관 등 문화예술 관련 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농경 문화, 농경 유물, 전통 농업, 재래종의 가축·농작물 및 농촌 공동체를 유지·계승하고, 관련된 농업 박물관· 관람 시설물 등의 전시, 교육, 홍보 등에 대해 필요한 정책 수립·시행 의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5조	농업 박물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 어업 문화, 어업 유물, 전통 어법, 재래종의 수산 생물자원 및 어촌 공동체를 유지, 계승하고, 그와 관련된 수산업 박물관·관람 시설물 등의 전시, 교육, 홍보, 어업유산의 지정, 관리 등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시행 의무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6조	수산업 박물관
	농촌융복합사업자의 인증 또는 농촌융복합시 설 사업계획 승인 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른 박물관, 미술관 등록 허가 의제 처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체험관 한정)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반환공여구역, 반 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 도서관, 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등이 적절 히 설치·유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 지원, 우선적으로 인허가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6조	박물관 등 문화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서해 5도에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등이 적절히 설치, 유지되도록 노력(통일교육 및 문 화관광시설 등에 대한 우선지원)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17조	박물관 등 문화시설
	생태·경관보전지역 내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 훼손행위 금지에도 불구하고, 완충구역 내에서 생태탐방, 생태학습 등을 위한 시설 설치 허용: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자연학습장, 생태 또는 산림박물관, 수목원, 식물원, 생태숲, 생태

구분	지원/특례	근거	비고(적용대상)
	자연환경의 교육, 홍보, 연구 시설		체험장, 생태연구소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접경지역에 각급 학교, 문예회관·도서관·박물관 등을 포함한 문화시설 등의 설치 및 유치 노력, 설치나 이전하려는 자에 대한 우선적 인허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보조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	박물관 등 문화시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받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 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처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8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사립박물관·미술관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의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상대보전지역’ 지정 시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이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금지되나, 그 금지 대상에서 제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6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운영 관련 지원 / 특례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박물관·미술관을 특화 사업으로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4개 이하의 다른 박물관 또는 미술관과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음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	등록 박물관·미술관 (종합박물관 제외)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해당 기업도시의 성격에 맞는 규제특례 사항을 선택적으로 적용받기 위한 계획수립 가능: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공동으로 학예사를 둘 수 있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34조의 2	등록 박물관·미술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 신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된 낚시도구(유해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 저장, 운반, 진열할 수 없으나, 학술연구나 관람 또는 전시 등은 예외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남극활동의 허가를 받은 자가 남극토착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거나 남극지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남극토착동식물 외의 동식물을 남극지역으로 반입하는 행위, 남극토착동식물의 서식환경에 심각한 훼손을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 외교부 장관에게 승인받을 수 있는 경우: 박물관, 식물원, 동물원, 교육기관, 문화기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 등

구분	지원/특례	근거	비고(적용대상)
	관 등에 전시할 목적일 경우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의 표시나 설치를 제한하는 대상에서 제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박물관 및 그 부속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연구 활동 지원 및 성과 활용, 인문교육의 체계적, 연속적 실시, 국민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 참여활동 활성화 지원, 인문정신문화 향유 공간의 활성화 및 전문 인력 양성 활용 지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관리 지원, 국내·외 교류협력 지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등	인문교육실시기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인문정신문화 향유공간(「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시설)
	공원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 시, 공원사업 및 공원시설 관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가 보조	「자연공원법」 제20조,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공원시설(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전시장, 공연장, 자연학습장 등의 문화시설)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적용: 박물관·미술관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 속하는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에서 제외: 토지, 박물관의 유물 및 건설 중인 고정자산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34조	박물관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을 승인받는 자에게 설립에 필요한 경비, 등록한 박물관·미술관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각각 보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사립박물관·미술관, 등록 박물관·미술관

3)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에 따르면, 해당 요건은 1)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시·군계획시설이 이미 입지한 부지에 불가피하게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일 것, 2) 규모는 3층 이하이고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3) 해당 시설이 소재하는 지역의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오수나 폐수가 상수원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하고, 시설건축에 따른 수질 오염부하량이 증가하지 않도록 수질오염물질을 저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할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및 사립박물관·미술관 관련 정책

### 가.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 1)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의 제정 현황

#####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 및 구분

- 설립·운영 조례: 공립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에 관한 권한 위임
  - 2000년의 「박미법」 전부 개정 시, 공립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항이 정비됨
  - 이때 **공립박물관·미술관의 법정 ‘설립목적’은 (1) 지역사회 박물관·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2) 지역문화발전, (3)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증진**으로 규정됨
  - 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지자체 조례’에 위임하도록 규정함
  - 따라서 지자체가 박물관·미술관을 설립·운영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개별 박물관·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진흥 조례: 지자체 소관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진흥’ 정책의 수립·시행
  - 마찬가지로 2000년의 「박미법」 전부개정 시, 문체부 장관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진흥 기본시책에 따라, 중앙 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 장이 각각 소관 국립박물관·미술관, 지자체의 박물관·미술관에 관한 진흥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함
  - 공립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과 관련된 법적 규정과는 별도로, 해당 지자체 내 박물관·미술관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자치법규의 성격을 가지고 사립박물관·미술관을 주 대상으로 하며, 일반적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라는 명칭으로 제정됨: 개중에는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라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함
  - 그러나 「박미법」 제9조에 의해 지자체의 박물관·미술관 진흥계획의 수립과 시행이 의무규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지자체가 이에 따른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는 않으며,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 역시도 마찬가지임
  - 이러한 상황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박물관·미술관 정책 추진체계가 여전히 미비한 상황을 반증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지자체 조례 관련 조항

제9조(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책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공·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확충, 지역의 핵심 문화시설로서의 지원·육성, 학예사 양성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소관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시책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설립과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박물관자료 및 미술관자료의 구입·관리·보존·전시 및 지역 문화 발전과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권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광역자치단체의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제정 현황

#### ○ 도 단위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제정 현황

- 전국 9개의 광역 도 중에서 진흥 조례가 제정되었다가 폐지된 경상남도를 제외하고 8개의 도가 모두 진흥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음<sup>4)</sup>

- 2006년에 경기도가 가장 먼저 제정하였고, 그 뒤를 이어서 충청남도가 2008년에 진흥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2010년대 들어서 제정됨

#### ○ 시 단위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제정 현황

- 울산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6개의 시가 모두 진흥 조례를 제정함

- 인천광역시(2010)를 필두로 하여 2010년대 들어서 제정됨

- 서울특별시 박물관 131개, 미술관 47개. 인천광역시 박물관 29개, 미술관 5개. 대구광역시 박물관 17개, 미술관 4개. 대전광역시 박물관 15개, 미술관 5개. 부산광역시 박물관 32개, 미술관 8개. 광주광역시 박물관 12개, 미술관 14개. 울산광역시 박물관 11개 미술관 0개로, 울산광역시가 박물관·미술관의 수가 가장 적으며 진흥 조례가 제정되지 않음

### □ 기초자치단체의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제정 현황

#### ○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총 33개가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됨

- 기초자치단체의 ‘진흥 조례’ 제정 여부는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사립관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 경우, 7개의 기초자치단체(고양시, 남양주시, 시흥시, 안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화성시)가 진흥 조례를 제정함

4)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폐지 이유는 일부 조항이 도민 권익침해 우려가 있고,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내용은 「경상남도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중복되어 조례 규정의 실익이 없다는 것이었음(문화복지위원회, 2017).

- 그 다음으로는 경상남도에서 6개의 기초자치단체(사천시, 김해시, 합천군, 창원시, 통영시, 밀양시), 충청남도에서 5개의 기초자치단체(당진시, 아산시, 예산군, 공주시, 서산시), 강원도에서 4개의 기초자치단체(속초시, 춘천시, 강릉시, 영월군), 경상북도 3개(의성군, 봉화군, 안동시)가 진흥 조례를 제정함
  - 그 외, 전라남도 2개(순천시, 해남군), 전라북도 2개(전주시, 남원시), 충청북도 2개(충주시, 제천시), 대구광역시 1개(수성구), 인천광역시 1개(미추홀구) 등이 진흥 조례를 제정함
  - 전주시(2001)와 아산시(2007)를 제외하면 나머지 기초자치단체의 진흥 조례는 모두 2010년대 이후에 제정되었으며, 2020년대에 들어 제정된 경우도 9개에 달함
- ‘사립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 조례’로 특정한 경우 다수: 26개 기초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진흥 조례를 사립관에 특정하여 제정한 경우가 전체 33개 중에서 26개에 이를 정도로 다수를 차지함
  - 이러한 조례의 명칭 사용은 ‘진흥 조례’가 사립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음
  - 이러한 특정 방식은 대학 박물관·미술관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진흥’ 대상으로서 명확한 인식을 하고 있지 않음을 반증함

(표 2-9)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박물관·미술관 진흥조례’ 제정 현황

구분	진흥 조례 명칭	제정연월일	
광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2011.07.28.
	강원도	강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2015.08.07.
	경기도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2006.04.03.
	경상남도	폐지	
	경상북도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2016.07.01.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2011.05.13.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2016.04.01.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2015.08.14.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2011.02.16.
	울산광역시	미제정	
	세종특별자치시	미제정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2010.01.18.
	전라북도	전라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2012.04.06.
	전라남도	전라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2015.07.0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2013.07.26

구분			진흥 조례 명칭	제정연월일
충청남도			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2008.07.30.
충청북도			충청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2018.01.11
기초	강원도 (4)	속초시	속초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2015.12.11.
		춘천시	춘천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2021.11.11.
		강릉시	강릉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2019.05.15.
		영월군	영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	2008.08.01.
경기도 (7)	고양시	고양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2021.07.13.	
	남양주시	남양주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2021.04.08.	
	시흥시	시흥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2022.02.03.	
	안산시	안산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2016.04.20.	
	용인시	용인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2021.12.13.	
	의정부시	의정부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2018.03.15	
	화성시	화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2020.09.28.	
경상북도 (3)	의성군	의성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2016.12.30.	
	봉화군	봉화군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	2017.11.16.	
	안동시	안동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	2022.01.07.	
경상남도 (6)	사천시	사천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2016.06.16.	
	김해시	김해시 사립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2021.05.21.	
	합천군	합천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2021.11.17.	
	창원시	창원시 사립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2013.01.09.	
	통영시	통영시 사립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2013.05. 4.	
밀양시	밀양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2019.08.08.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2017.09.2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2014.03.31	
전라남도 (2)	순천시	순천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2019.12.16.	
	해남군	해남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2016.06.01.	
전라북도 (2)	전주시	전주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2001.09.29.	
	남원시	남원시 사립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2021.02.05.	
충청남도 (5)	당진시	당진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2015.02.03.	
	아산시	아산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진흥 조례	2007.11.22.	

구분	진흥 조례 명칭	제정연월일
예산군	예산군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진흥 조례	2021.02.01.
공주시	공주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에 관한 조례	2018.08.16.
서산시	서산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	2022.04.20.
충청북도 (2)	충주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진흥 조례	2013.05.10.
	제천시 사립박물관 지원 조례	2016.06.10.

※ 자료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재정리.

## 2) 지방자치단체 ‘박물관·미술관진흥 조례’의 주요 내용

### □ 지방자치단체 ‘박물관·미술관진흥 조례’의 조항 구성

- 각 지자체의 진흥 조례는 「박미법」에서 정한 지자체의 진흥정책 수립·시행 규정 및 기타 「박미법」에 의한 규정들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대체적으로 조항의 구성은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시행 근거, 방법, 절차, 기구 등을 내용으로 함
- 조항 구성: 목적, 정의, 지방자치단체 장의 책무, 경비지원, 지원신청, 지원경비 관리, 지원경비 관련 보고 등, 박물관·미술관진흥위원회 설치, 위원회 구성, 위원회 직무(기능), 위원회 회의, 위원 해촉, 간사, 수당, 시행규칙 위임 조항 등
- 조항의 수나 조문 내용은 각 지자체의 사정에 따라 상이한데, 대전광역시의 경우 가장 짧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경비지원과 관련된 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총 5개조로 구성됨
- 광역자치단체의 진흥 조례 중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자체 차원의 평가인증제를 실시하여 그와 관련된 조항들이 반영되어 있음
- 「박미법」과 진흥 조례의 연계성 미흡
  - 전반적으로 「박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흥’을 위한 조항들과 지자체 진흥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진흥’을 위한 조항들이 연결되는 지점도 있지만 연결되지 않은 지점도 많음
  - 특히 지자체 조례별로 일부 조항이 차이가 있고 박미법에서 규정한 많은 조항에 비해 조항의 수, 내용에서 미흡한 면을 보임
  - 「박미법」에서 규정한 여러 조항이 지자체의 ‘박물관·미술관진흥 조례’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박미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지점이라 하겠음

[표 2-10] 경기도와 강원도의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조항 비교

구분	경기도	강원도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관할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육성을 통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경기도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강원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원·육성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이 조례에서 “ <b>박물관 및 미술관</b> ”이란 「 <b>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b> 」(이하 “ <b>법</b> ”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 <b>박물관 및 미술관</b> ”이란 「 <b>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b> 」(이하 “ <b>법</b>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제2호의 시설을 말한다.
육성 및 발전 (도지사의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b>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문화향수를 증진</b> 하기 위하여 <b>박물관·미술관 및 이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단체(이하 “박물관등”이라 한다)</b> 를 육성 및 발전시켜야 한다. ② 도지사는 <b>경기도가 설치·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에 법 제2조의 자료 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b> 한다.	강원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경비 지원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b>등록한 박물관등</b> 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보관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도지사는 법에 따라 <b>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b> 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에서 경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에 필요한 경비 2. 소장자료 연구에 필요한 경비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보관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지원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경비 관리	① 제4조에 따라 <b>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등</b> 은 회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경우 그 박물관등에 대해서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① 제4조에 따라 <b>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b> 은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목적에 위반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지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강원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은 회수한 날부터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구분	경기도	강원도
보고 등	제4조에 따라 <b>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b> 등은 도지사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에 따라 <b>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b> 은 도지사가 자료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박물관 · 미술관 진흥 위원회 설치	① 도지사는 박물관등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기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7조의 심의 사항이 있을 경우에 설치·구성하고, 심의가 종료하는 때까지 존속한다.	①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강원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 2. 제6조에 따른 회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2. 경기도의회 의원 3. 관련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의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야 한다. ⑤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문화예술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 2. 강원도의회 의원 <개정 2019.11.8.> 3.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장 직무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 2.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도지사가 회의를 소집하고자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개

구분	경기도	강원도
	<p>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전 까지 알릴 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있다.</p>	<p>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 이해관계가 직접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p>
위원 해촉		<p>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li> <li>2.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li> <li>3. 위촉위원이 위원사임을 원할 때</li> </ol>
간사 등	<p>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시설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p>	<p>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p>
수당 등	<p>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경기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에서 수당 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시행규칙	<p>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합계	총 14조	총 15조

※ 자료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재정리.

###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주요 조항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 및 미술관의 건전한 육성과 공공서비스 기능을 활성화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도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관련 법인·단체"란 「민법」·「상법」 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진흥 계획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이하 "진흥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따른 진흥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1.23., 2021.12.31.>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 수집, 보존, 활용방안
3.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점검 및 평가
4. 박물관 및 미술관 통계의 조사, 작성, 분석 및 보급
5. 박물관 및 미술관의 조사, 연구 및 교육, 홍보
6. 박물관 및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운용방안
8. 박물관 및 미술관 환경 및 서비스 개선
9. 박물관 및 미술관의 상호교류 및 협력망 구축
10.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단체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교육, 체험 프로그램, 연구사업 등의 운영 및 컨설팅
2.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활용 및 양성
3. 소장품 보존시설, 전시시설, 보안시설 등 관련 개·보수
4. 법 제23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료의 보관
5. 박물관 및 미술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6. 박물관 및 미술관 공동마케팅 및 홍보
7. 문화향유 취약계층의 이용확대를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개선·확충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평가인증제)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리·운영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공공성 보안을 위하여 별도의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인증은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며, 평가 인증을 신청하려면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일로부터 최소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④ 도지사는 평가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평가인증 신청 및 절차, 평가기준, 사후관리 등 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정서 및 인증마크)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평가인증을 받은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지정서 교부 및 인증마크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은 도지사가 지정하는 평가인증 지정 마크를 게시하거나 홍보물, 광고 등에 지정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③ 인증마크를 부여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3년마다 재평가를 받아야 하며, 인증마크는 다음 인증평가를 받을 때 까지만 유효하다.

제7조(인센티브) ① 도지사는 평가인증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지정결과에 대해 인쇄물·TV·라디오·인터넷 등 홍보매체에 우선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②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는 인증 유효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1.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 건전육성을 위한 포상금 지급
2. 제주자치도 시책 및 평가 가산점 부여 및 행정시책 참여 우선권 부여
3. 박물관 및 미술관 특성화 위한 장비구입, 프로그램 운영, 홍보 마케팅 등 사업비 일부 우선지원 등

제8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① 도지사는 평가인증 이후의 사후관리를 위한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평가인증에 따른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 지정 후에도 품질관리를 위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 개선을 요구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지체없이 개선 또는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에 의한 인증 평가기준이 유지되지 않거나 개선요구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때
2.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법규를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
3. 박물관 및 미술관 이용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거나 이용불편사항 발생이 빈번하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

④ 도지사는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 지정이 취소될 경우, 홍보 및 지원중단, 평가인증 지정마크 사용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①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하여 각종 사업의 심사·평가·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1.23.>

1. 제3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6조 및 제27조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과 취소에 관한 사항
3. 법 제18조에 따른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사전 심의·의결, 평가, 지원중단에 관한 사항
5. 제5조에 따른 평가인증제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주자치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 담당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6.11.23.>

1.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 전문가
2. 문화예술 및 문화재 분야 전문가
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관련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박물관진흥분과위원회
2. 미술관진흥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에 따른 규정을 준용한다.

## □ 조례의 ‘박물관·미술관’ 정의 및 적용 대상

- ‘박물관·미술관’ 정의: 「박미법」의 정의를 조항을 인용
- 광역자치단체 조례의 적용대상
  - 가장 이른 시기에 진흥 조례를 제정한 경기도는 (1) 「박미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2) 그와 관련된 비영리 법인·단체, (3) 도립 박물관·미술관(자료 확보 관련 시책 마련) 등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경비지원 대상은 등록 박물관·미술관 및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로 규정함
  - 한편, 서울특별시, 강원도, 충청남도, 경상북도 등의 경우와 같이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적용대상을 특정하거나 구분하지 않고, 행정구역 내 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방식이 보다 일반적임
  - 관련 법인·단체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충청남도) 또는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중 박물관 및 미술관과 관련된 법인·단체”(서울특별시)로 정의하기도 함

## □ 박물관·미술관 진흥계획 수립 및 박물관·미술관진흥위원회의 설치·운영

- 박물관·미술관 진흥(육성 및 지원) 시책(계획)의 수립 규정
  - 「박미법」 제9조에 의거하여 광역자치단체의 진흥 조례는 기본적으로 진흥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음: 단, 경기도의 경우, 공립관의 자료 확보와 관련된 시책 마련 규정 외에 포괄적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조항이 없음
  - 제주도의 경우,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 수집, 보존, 활용방안, (3)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점검 및 평가, (4) 박물관 및 미술관 통계의 조사, 작성, 분석 및 보급, (5) 박물관 및 미술관의 조사, 연구 및 교육, 홍보, (6) 박물관 및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7)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운용방안, (8) 박물관 및 미술관 환경 및 서비스 개선, (9) 박물관 및 미술관의 상호교류 및 협력망 구축, (10)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박미법」보다 진흥계획의 체계성과 구체성을 잘 규정하고 있음
  - 경상북도 및 대구광역시의 경우, 진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 (2) 박물관 및 미술관 통계의 조사, 분석 및 보급,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필요한 재원확보 및 운용방안, (4)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모니터링 및 지원사업의 평가방안, (5) 박물관 및 미술관 환경 및 서비스 개선, (6)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을 다음과 같은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박미법」의 한계를 드러내는 동시에 보완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음: (1) 지역 문화자원으로서 가치 증진, (2) 문화예술의 질적 수준 향상, (3) 시민의 문화 향유능력 신장,

#### (4) 지역사회 평생학습기관으로서 공공성 증진

- 광주 및 대구와 마찬가지로 서울특별시도 별도의 조항을 통해 박물관·미술관 진흥정책의 기본방향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1) 박물관·미술관 육성을 위한 노력, (2) 사립박물관·미술관이 「박미법」 제1조 및 제2조에 따른 목적과 기능에 맞도록 설립·운영하는 데 필요한 시책 마련, (3)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박물관 및 미술관을 지역 문화시설로서 지원·육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치구,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법인·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4) 시민의 박물관·미술관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홈페이지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공
- 인천광역시도 시장의 책무로서 진흥(지원·육성)의 기본방향을 규정하고 있는데, (1) 박물관·미술관의 가치 증대, (2)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교육, (3)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견지 등으로 「박미법」이나 다른 지자체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중요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 박물관·미술관진흥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 광역자치단체의 진흥 조례에는 진흥계획 수립과 더불어 ‘박물관·미술관진흥위원회’의 설치나 그에 준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음: 이 역시 「박미법」에 결여되어 있는 부분인데, 「박미법」은 박물관·미술관 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 및 의사결정 기능을 갖는 기구인 박물관·미술관진흥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정책 추진체계가 상응하지 않는 한계를 드러냄
- 대구광역시의 경우, 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1) 진흥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경비 보조, (3) 지원의 해지, (4) 박물관 및 미술관의 등록, (5)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으로 「박미법」에 충실하게 포괄적으로 규정함
- 반면, 경상북도는 진흥 관련 자문·심의기구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의한 문화재위원회에 (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도록 하고 있음
- 서울특별시와 충청남도의 경우, 진흥위원회의 기능을 (1) 경비지원, (2) 지원 취소, (3) 박물관·미술관 등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정하여 진흥계획에 대한 심의기능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경기도와 강원도의 경우, 서울시 및 충청남도보다 더 제한적으로 진흥위원회의 기능을 (1) 지원 사업, (2)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과 같이 경비지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함
- 위원회 구성: 서울특별시의 경우와 같이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2) 박물관 및 미술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여기에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아야 한다”(경기도)는 규정을 추가하거나, 학예사를 포함시킨 경우(부산광역시) 등은 특기할 필요가 있음

## □ 경비지원 관련 사항

### ○ 경비지원 사항

- 제주도의 경우, 가장 많은 항목의 경비지원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 개보수 및 네트워크 구축 등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없는 사항들까지 담고 있음: (1) 전시·교육, 체험 프로그램, 연구사업 등의 운영 및 컨설팅, (2)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활용 및 양성, (3) 소장품 보존시설, 전시시설, 보안시설 등 관련 개·보수, (4) 위탁받은 자료의 보관, (5) 박물관 및 미술관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6) 박물관 및 미술관 공동마케팅 및 홍보, (7) 문화향유 취약계층의 이용확대를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개선·확충, (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경상북도와 충청남도의 경우, 경비지원 사항으로 (1) 전시·교육, 체험 프로그램, 연구사업 등의 운영 및 컨설팅, (2)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 활용 및 양성, (3) 박물관 및 미술관 공동마케팅 및 홍보, (4) 문화향유 소외계층의 이용확대를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 개선·확충, (5)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음
-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경우,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위탁받은 자료의 보관에 필요한 경비,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소장자료 연구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으로 규정함
- 서울특별시의 경우,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에 한해서는 관련 법인·단체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또한 광주광역시와 대구광역시는 지원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1) 수장 및 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2)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 완성도, (3) 연구업적 및 활용능력, (4) 지역사회 공헌도 및 파급효과, (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 ○ 경비 회수 등의 사항: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 적용

- 「박미법」에서는 경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을 뿐, 경비 지원과 관련된 관리나 위법적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후 조치 등에 관해서는 규정이 부재함
- 반면, 모든 진흥 조례는 경비 지원을 중요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지자체에 의한 경비 지원 시, 부정적 수령이나 위법적 사용에 관해서는 지자체의 보조금 관련 조례를 근거로 하여 대응하는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음
-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지자체보다 국가에 의한 경비 지원 규모나 종류가 큰 점을 고려할 때, 「박미법」에 경비지원과 관련한 관리 및 제재 조치가 법적으로 명시될 필요성을 시사함

## □ 기초자치단체의 ‘사립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의 특징

- 기본적인 조례의 구성체계: 광역자치단체의 조항 구성체계를 채택하고 있음
- 지역 문화기반시설로 사립박물관·미술관을 지원·육성하는 기조
  - 강릉시의 경우, 조례의 제정 목적에 “강릉시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시민의 문화향유를 증진하는 문화기반시설로 지원·육성”을 위하여 사립관 진흥을 도모한다고 명시함: 이에 따라 사립관은 「박미법」에 규정된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고 시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시의 진흥 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함을 규정함
  - 속초시의 경우도, 사립박물관·미술관을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문화향수를 증진하는 문화기반시설로서 지원·육성”함을 지자체 장의 책무로 규정함
  - 공주시의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 시민의 문화향유 증진, 사립관의 가치 증대, 교육 및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증진을 목적으로 지원함을 명시함
- 경비지원 대상, 지원사항, 지원기준 등의 범위
  - 지원대상: 「박미법」에 의한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당진시, 대구 수성구, 창원시, 춘천시, 충주 시, 안동시, 통영시 등의 경우, 조례 적용대상은 박물관·미술관과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고 있는 시설”로 하되, 경비지원 대상은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으로 한정함)
  - 한편, 봉화군, 영월군, 제천시 등은 지원대상에 등록관 외에도 (1) 「박미법」에 의해 설립계획 승인을 받고 설립 추진 중인 사립관, (2) 박물관의 효율적 관리와 상호협력을 위해 설립된 법인 및 협회, (3) 그 밖에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 중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등을 추가하여, 가장 광범위한 대상을 포괄하여 규정함: 실질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경비지원을 허용하고 있음
  - 강릉시의 경우, (1) 전시·교육사업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보급사업, (2) 특별전 개최, 도록 발간 등 학예활동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규정함
  - 공주시의 경우, (1) 전시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시민에 대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보안시설 및 작품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 (4)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의 보관·위탁 등에 따른 소요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함
  - 김해시의 경우, (1) 김해시와 협의하여 신청한 공모사업이 선정되었을 경우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시비부담금, (2) (1)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기, 상·하수도료 등 공공요금으로 명시함
  - 남원시의 경우,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1)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경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등을 지원함
  - 당진시의 경우,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1)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 (3) 박물관 및 미술관의 조사, 연구, 학술활동 등에 소요되는 경비, (4) 자료의 보관·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경비 등으로 규정함

- 봉화군의 경우, (1) 박물관 유치를 위한 지원경비, (2) 박물관 개·보수 및 신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 (3) 박물관 운영경비, (4) 자료의 보관 및 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경비 등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 지원범위가 큼
- 영월군은 여기에 더해 전시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항목으로 포함시키고, 관람객 대상 마일리지제도(박물관 문화상품권 교환, 박물관 입장권 교환, 박물관 체험프로그램 사용 등)를 운영함
- 의성군의 경우, 다른 지자체와 달리 박물관의 임차료에 사용되는 경비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주시는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에 필요할 경우에는 시 소유 건물의 유·무상 임대도 지원 사항으로 포함시킴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 경우, (1) 전시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구민 교육과 체험 행사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3) 보안시설과 작품 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 (4) 보관·위탁 등에 필요한 경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박물관과 미술관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을 지원함. 단, 지원기준으로 (1) 전시물, 작품의 질적 수준 등 수장·전시자료의 가치성과 우수성, (2) 기획, 구성, 전시 등 사업의 완성도, (3) 운영과 재정 능력, (4) 연구·활용 능력, (5) 지역사회 공헌도와 파급 효과,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설정하고 있음
- 예산군의 경우, 위와 같은 지원기준을 규정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지원받고자 하는 사립관에 대해서 지원기준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해 군수에게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 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립박물관·미술관 관련 정책

### □ 서울특별시의 박물관·미술관 정책(서울특별시 문화정책과, 2016)

-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정책은 각 지자체 사이트 정보 공개를 통해 주요 업무 계획으로 제시되고 있음
- 서울특별시는 지난 2016년 6월 28일 문화 분야 중장기 기본계획인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이하, ‘비전 2030’)을 발표함
  - 2013년부터 TF를 구성하고 2014년 기본 구성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서울문화계획위원회를 구성한 이후 55회 이상 열린 라운드테이블에는 약 1,000명의 전문가와 시민이 참여함. 2014년 말 설문조사를 통해 시민 5,000명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차례의 검토를 거친 끝에 최종 계획을 완성함
  - 개인의 삶을 둘러싼 5개 차원(개인, 공동체, 지역, 도시, 행정)별 비전하에 10대 추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25개 추진과제를 도출함. 비전은 ‘문화시민도시, 시민행복도시’, 목표는 ‘시민 개개인의 문화행복’, ‘시민 개개인의 삶을 둘러싼 문화계획’ 으로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자치구 단위의 주민 밀착형 지원을 계획함

○ 추진 과제 중 하나인 ‘지역 간 문화격차를 없애겠습니다.’의 세부 과제 중 하나로 ‘권역별 시립미술관 및 어린이미술관 건립’을 추진함

-문화시설이 부족한 서서울 지역에 시립미술관 분관 건립을 통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혁신파크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박물관 건립을 통해 지역의 새로운 문화거점으로 발전을 도모함

○ 또 다른 추진 과제인 ‘모든 시민들이 서울의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의 세부과제로 ‘역사와 현대를 공존시키는 다양한 유형의 박물관 조성’과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지원을 강화하여 시민자산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세움

-**(역사와 현대를 공존시키는 다양한 유형의 박물관 조성)** 도시 곳곳에 지역의 역사와 생활, 이야기를 보존하는 마을박물관, 에코뮤지엄, 테마마을 등 13개의 박물관 조성/고려박물관 등 시대별 역사보존 기반 마련/지역별 동네역사관 설립 지원/이말산, 초안산, 망우리 분묘군 등 역사자원의 정비·보수를 통한 <에코뮤지엄> 조성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지원을 강화하여 시민자산으로 육성)** 사립박물관·미술관 진흥 및 공공성 확대를 위한 지원강화→일상적인 시민문화교육의 장으로 활용

####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프로그램

- 박물관 유형 및 규모, 성격에 기초한 평가지표 개발→박물관 평가인증제 운영
-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고도화→시민생활문화시설로
- 기존 문화사업비 외 특화사업비 지원으로 박물관·미술관이 문화예술교육공간으로 운영되도록 지원

○ 서울시 문화정책에서 사립박물관·미술관의 비중은 작으며 대부분 공립박물관·미술관 건립에 관련된 지원을 계획하고 있음. 사립박물관·미술관에 관련된 정책은 사립관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 경기도의 박물관·미술관 정책(김성하 외, 2020)

○ 경기도는 2020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인 <경기도-문화예술진흥-중단기-종합계획 2020~2024>을 수립함

-2019년에 경기도민 1,500명(경기 북부 400명, 경기 남부 1,100명)과 예술인 93명, 문화재단 및 문화원 종사자 11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경기도민 및 관계자 의견수렴을 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함

-비전은 ‘예술로 열고 문화로 공감하는 경기도’로 추진 전략은 ① 문화 자치 기반 구축, ② 문화

주체로 거듭나기, ③ 예술 활동 기반 조성, ④ 공정한 문화자본 구축을 도출함

- 추진 전략 중 하나인 ‘공정한 문화자본 구축’의 정책과제로 총 4가지를 제시함
  - 그 중 신규 정책과제에서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경기도 뮤지엄 재도약’이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정책과 관련되어 있음
  -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경기도 뮤지엄 재도약’의 실행 과제는 총 6가지임

- ① 광역 공공수장고 조성·운영
  - 광역 공공수장고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과 건립 방안 수립을 통해 광역 공공수장고 건립 설계용역 완료 및 착공
- ② 경기도립 뮤지엄 릴레이 바캉스 페스티벌
  - 6개 경기도립 뮤지엄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여름기간(7월 중순~8월 중순)에 맞추어서 릴레이 페스티벌 개최. 뮤지엄 전시를 주축으로 놀이·문화체험·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등 기획 운영
- ③ 뮤지엄 전문인력 확충
  - 경기도립, 경기도 공립·사립 뮤지엄 아키비스트 확충하여 뮤지엄 고유 기능 강화
- ④ 움직이는 분관형 뮤지엄
  - 경기도민의 문화적 수혜 범위 확대를 위해 움직이는 분관형 뮤지엄 조성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
- ⑤ 뮤지엄 내 동호회 활동 지원
  - 공립·사립 뮤지엄을 대상으로 뮤지엄 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사업을 공모
- ⑥ 경기도 뮤지엄 네트워크 구축
  - 경기도 뮤지엄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업 프로젝트 개발

## □ 광역자치단체의 박물관·미술관 정책

- 종합계획의 일부로 문화 정책이 포함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단독으로 수립한 광역도를 위주로 분석함
- ‘지방자치’와 분권이 핵심 국정과제(문재인 정부)로 채택된 상황에서 각 지자체에서 지역문화의 분권과 자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함
  - 지방 소멸이 화두인 상황에서(한국고용정보원 조사 결과 2020년 5월 기준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42%가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 지역 혁신과 발전을 위해 문화·예술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함
  - 오랜 기간 팬데믹이 지속되고 사회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문화 향유의 방식이 ‘언택트’ 위주로 소비됨. 체험형 문화예술인 공연, 전시 등 각종 문화프로그램의 생산과 소비가 어려워지면서 박물관, 미술관도 잦은 휴관을 반복함. 특히 사립관의 경우 국·공립에 비해 재정 상황이 더욱 열악해짐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고 지역 문화의 여건은 여전히 취약함. 중앙정부 주도에서 벗어나서 지자체가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중장기 문화정책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옴

[표 2-11] 광역도 박물관·미술관 정책과 지원사업

지역명	계획명	박물관·미술관 정책과 지원사업
강원도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중장기종합계획’ (2014~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 역량 강화사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예인력 지원사업 추진(우선 사립박물관·미술관 대상)</li> <li>- 박물관 전시 및 프로그램 사업비 지원(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관광 자원화사업)</li> <li>- 박물관협력망 지원</li> </ul> </li> <li>• 작은 미술관 건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미술관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작은 미술관 조성</li> </ul> </li> </ul>
충청남도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 (2015~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발굴·정비·복원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장문화재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li> <li>- 무형문화재 전승기반 구축</li> <li>- 문화재 사전예방 체계구축 및 정비 체계화</li> <li>- 미래지향적 보존관리체계 구축</li> </ul> </li> <li>• 문화유산 발굴과 보존, 문화 지원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사립박물관·미술관을 위한 정책은 따로 존재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 내에서 ‘사립박물관·미술관 홍보 활성화 지원’과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 지원’ 지원금은 꾸준히 지원하고 있음</li> </ul> </li> </ul>
전라남도	‘자생과 혁신의 문화전남’ -제2차 전라남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2020~2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 주간행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매년 5월 중 박물관 미술관 주간에 국제박물관협회(ICOM) 선정 공통 주제에 맞춰 지역별 특색 있는 행사 추진</li> </ul> </li> <li>• 실감콘텐츠 제작기술을 활용한 향유 서비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 대상 홀로그램, XR, IoT 등 첨단기술 기반 체험형 전시·교육콘텐츠 복합 문화공간 조성</li> </ul> </li> <li>• 박물관·미술관 열린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 실태조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공공 문화시설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도내 박물관·미술관 실태 파악</li> <li>- (박물관·미술관 인증 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인증 신청시설 인증비 및 각종 편의시설 지원방안 마련</li> </ul> </li> </ul>
경상남도	‘참여와 자치의 지역문화로 혁신하는 경남’ -제2차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2020~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도서관 등 공공시설 생활문화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시설 기능향상을 위한 복합화사업 권장</li> </ul> </li> <li>• 박물관·미술관 주간행사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박물관의 날 계기 박물관·미술관 주간 행사 개최</li> <li>- 박물관·미술관별 프로그램 기획전시 운영비 지원</li> </ul> </li> <li>• 문화기반시설 무장애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기반시설 무장애 환경 및 이용자 실태조사</li> <li>-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에 무장애 시설개선 조성지원</li> </ul> </li> </ul>
제주도	‘제주의 가치창조, 문화예술의 섬 구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 주간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네트워크 강화) 박물관·미술관 주간에 권역별 박물관·미술관과의 상생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공동) 프로그램 추진</li> </ul> </li> <li>• 박물관·미술관 열린 환경 조성(무장애시설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노약자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내 공립 박물관·미술관</li> </ul> </li> </ul>

지역명	계획명	박물관·미술관 정책과 지원사업
	문화진흥 시행계획 (2020~20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 추진(공립 먼저)</li> <li>지역의 문화자원 활용한 관광 활성화(공립·사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물관·미술관 관광자원화) 도내 산재한 박물관·미술관 갤러리 등을 연계하여 관광자원화 추진</li> <li>도민 또는 제주도 방문자들이 제주도내 공·사립미술관 갤러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미술관지도(art-map) 제작 추진</li> </ul> </li> </ul>

- 학예 인력 지원 사업은 대상자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사립박물관·미술관으로 한정됨. 최근에는 박물관·미술관 주관 행사를 위해 전시 및 프로그램 사업비를 지원하기도 함. 또한 박물관과 미술관이 장애인과 노약자가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시설’이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일어나면서 각종 편의 시설 지원 방안과 개선 지원에 관한 정책 과제가 등장함
- 박물관·미술관 대상으로 첨단 기술 기반 체험형 전시·교육콘텐츠 복합 문화공간 조성에 관한 정책이 일부 지자체 문화 정책 계획에서 등장함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2년 스마트 공립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지자체 주도로 박물관과 미술관에 첨단 기술을 도입하려는 시도는 많지 않고 비용과 여건의 문제로 다른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국가 주도로 진행하고 있음
-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립박물관·미술관에 초점을 맞춘 정책과 지원 사업은 문화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음
  - 생활문화시설의 수를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도립·시립 박물관·미술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우거나 작은 미술관을 조성하는 등 시설의 수를 늘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지자체에서 계획하거나 시행하고 있는 박물관·미술관 정책은 국·공립에 큰 비중을 두고 그 범주 안에 사립관을 포함해서 국·공립과 사립을 함께 지원하고 있음
  - 사립관에 대한 운영 지원은 지자체에서 지원금을 배분하는 식으로 하고 있지만 그 비용이 크지 않고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미술관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행정 인력과 지원금이 도립과 시립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음

## 다.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

### 1)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

#### □ 시행 배경

- 제주특별자치도는 박물관·미술관이 도민 8,000명당 1곳이 운영되고 있는 곳으로, 우리나라 평균 5만 3,000명당 1곳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임
- 이러한 제주의 박물관·미술관은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나, '유사 박물관의 지나친 상업성'과 같은 부정적인 면이 지적받아 옴
- 이에 박물관·미술관의 질적 성장을 위해 2015년 11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2016년 8월 전국 최초로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를 시행함(헤드라인 제주, 2017.08.22.)

#### □ 추진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5조

-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의 관리운영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공공성 보안을 위하여 별도의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을 실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인증은 등록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며, 평가 인증을 신청하려면 박물관 및 미술관 등록일로부터 최소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 ③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 ④ 도지사는 평가인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별도의 평가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 ⑤ 도지사는 평가인증 신청 및 절차, 평가기준, 사후관리 등 인증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 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및 등록에 관한 지침 제정

- 평가인증제도의 시행과 함께 제주도는 「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 승인 및 등록에 관한 지침」(이하 「박물관·미술관 지침」)을 제정하여 박물관·미술관 설립 허가 요건을 강화함
- 설립계획 승인 단계에서 정성평가를 실시해 기존 시설과 유사성이 인정되면 설립계획을 보완하거나, 승인 신청 철회를 권고하도록 함

- 또한 설립계획 승인 및 등록 심의 과정에서 3회 이상 보완 요청을 받은 경우, 2년 이내에 재심의 요청이 불가능함
- 별다른 사유 없이 장기 휴관하는 시설은 2차례 개관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등록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음

□ 주요 운영방식

- 2016년 전국 지자체 최초 사립박물관·미술관 인증제를 시행했고(22개소), 이후 평가주기를 2년으로 하여 홀수년도 격년제로 운영함
- 2021년 기준 평가대상은 26개소(박물관 1종 7개관, 박물관 2종 8개관, 미술관 11개관)임
- 평가주체는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추진위원회(8명 이내)이며, 조례에 의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중 분야별 전문가로 이루어짐
- 인증기준은 총 100점(절대지표 30점, 정성지표 70점) 중 60점 이상 취득한 경우에 한해 인증함. 단, 2개 지표에 각 60% 이하일 경우에는 인증 대상에서 제외함

□ 평가지표

- 절대지표: 최대 15개 항목으로 종합 30점(박물관·미술관 개별요건에 따라 법정 항목 수는 상이함)
  - 소장품/학예사/전시실 /수장고/작업실 또는 준비실/사무실 또는 연구실/자료실/도서실, 강당 중 1/도난 방지시설/온습도 조절장치/소방시설 설치/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육종실/묘포장/식물 병리시설/비료저장시설
  - 「박미법 시행령」 별표2 ‘유형별 등록요건’에 의거해 차등 점수 부여: 100%(30점), 80% 이상(25점), 50% 이상(19점), 50% 이하(탈락)
- 정성지표: 15개 항목으로 종합 70점
  - 4개 항목으로 시설관리, 전시관리, 프로그램 운영, 재정 및 홍보로 나뉨

[표 2-12] 제주도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 정성지표

항목	평가항목	세부 지표	배점
시설 관리 (15점)	1. 관장 시설 상주 관리	• 관장이 상주관리	3
		• 관장이 상주는 않지만 동일한 권한 대행자가 상주	2
		• 관장이 상주를 않고 지시를 받아 정책 결정	1

항목	평가항목	세부 지표	배점
	(5점) 시설 위탁	• 직영관리(매장 등 부속시설)	2
		• 위탁관리(매장 등 부속시설)	1
	2. 부지 활용 (5점)	• 건폐율 전체를 본시설 및 부속시설로 활용(* 주차장, 매점 포함)	5
		• 전체 대지 면적의 50% 이상을 전용 및 부속시설로 활용	4
		• 전체 대지 면적의 50% 이하를 전용 및 부속시설로 활용	2
	3. 시설 공간 활용(3점)	• 시설 공간 전체면적의 70% 이상을 전시공간으로 활용	3
		• 시설 공간 전체면적의 50% 이상을 전시공간으로 활용	1
4. 방문객 안전 관리 (2점)	• 방문객 및 시설 관련 보험 가입(재난배상책임보험 이외) 및 청정 소화기(분말소화기 제외) 비치	2	
	• 방문객 및 시설 관련 보험 가입(재난배상책임보험 이외) 또는 청정 소화기(분말소화기 제외)중 1가지	1	
전시 관리 (25점)	1. 전시 소장품 (10점)	• 시설의 이미지 및 컨셉에 맞는 원형을 전시	10
		• 시설의 이미지 및 컨셉에는 상이하나 원형을 전시	5
	2. 지역성 반영 (5점)	• 제주의 환경, 역사와 문화 확산 목적 시설	5
		• 제주를 제외한 환경, 역사와 문화 확산 목적	2
		• 환경, 역사와 문화와 관계없는 주제의 시설	1
	3. 전시품 설명 (5점)	• 전시기법 도입, 시설물 목적 등 설명에 반영	5
		• 단순 설명	2
	4. 비전시 소장품 관리(5점)	• 수장고 내 관리(온습도조절장치 有)	5
		• 수장고 내 관리(에어컨과 제습기 有)	3
		• 수장고 내 관리(에어컨과 제습기중 1개 有)	2
프로 그램 운영 (15점)	1. 기획 전시 (5점)	• 시설 목적에 부합하여 교육 또는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	5
		• 시설 목적에 관계없지만 교육 또는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추진	3
		• 단순 전시를 목적으로 함	2
	2. 교육 프로그램 (5점)	• 시설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5
		• 시설 목적에 관계없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3
	3. 연구 활동 (3점)	• 도록 제작 등 교육자료 제작 또는 세미나 개최(자체)	3
		• 도록 제작 등 교육자료 제작 또는 세미나 개최(지원)	2
	4. 사회 봉사 (2점)	• 년 5회 이상(재능기부, 무료관람 등)	2
		• 년 1~4회 실시	1
	재정 및	1. 판매 물품 (5점)	• 전시 물품과 유사한 제품을 캐릭터(재편집)화하여 판매

항목	평가항목	세부 지표	배점
홍보 (15점)	2. 관람료 (5점)	• 전시물품과 관계없는 음료, 캐릭터 등 판매	2
		• 가격 정찰제 운영	5
	3. 홍보 추진 (5점)	• 입장료의 30% 이내에서 계약체결(+여행사)	3
		• 입장료의 30% 이상도 계약체결 가능(+여행사)	1
		• 홈페이지 구축 및 홍보물 등 모두 활용 홍보	5
	• 홈페이지 구축 또는 홍보물 등 활용 홍보	3	

※ 자료원: 제주특별자치도, 2021, <2021년 사립박물관·미술관 인증제 평가계획> 재정리.

## □ 시사점 및 한계

- 국·공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가 국가 주도로 시행되고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화두로 제시된 상황에서 앞서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를 시행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는 매우 의미가 있음
  - 박물관·미술관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민의 문화향유에 기여하고 있으면서도 지나친 상업성을 띤 ‘유사 박물관·미술관’이 난립하고 있는 것은 박물관 천국인 제주특별자치도의 양면적인 모습임. 그리고 이러한 ‘문제 인식’을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해결책 마련을 추진하여 진흥 조례에 관련 조항을 넣고 평가인증제를 시행한 것은 주목할 만한 점임
  -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단독으로 수립하는 ‘문화정책’의 일부에 박물관·미술관 지원 사업이 포함되어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을 수립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제주도는 평가인증제 중심의 사립 미술관 역량 제고를 꾀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의 평가지표는 기존의 박물관·미술관 등록제도 보다는 조금 더 세부적이고 엄격한 기준에서 평가내용을 갖추고 있으나, 「박미법」과 연관되는 평가내용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못함
  - 기본적으로 「박미법」 제 13조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립박물관을 지원·육성하는 목적 및 근거는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기반시설”이기 때문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적 근거로부터 도출되는 사립관의 ‘공공성’ 강화라는 정책 기조(또는 규범)를 반영한 평가 항목이 따로 존재하지 않고, 세부 지표를 통해 ‘일반 공중의 문화 향유’에 관한 ‘지역성 반영’, ‘기획전시’ 등을 평가함
  - 또한 조직 및 인력관리에 대한 평가 항목이 단순 전문인력 수와 같은 절대 지표로만 존재함: 박물관·미술관 본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예인력이 필수적이고 박물관·미술관 등록요건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단순히 학예인력의 존재 여부 정도만 평가하고 있어서 ‘조직구성의 적정성’ 등과 같은 성과평가 체계와 환류 현황, 직무역량 강화 교육 여부에 대해 알 수 없음

- 국·공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처럼 더욱 엄격한 평가지표와 체계를 갖추어서 사립관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해야 할지, 사립관의 여건상 엄격한 평가지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여 기본적인 요건에 초점을 맞추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
-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질적 성장을 위해 시행한 평가인증제지만 실질적인 효용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평가인증 결과가 좋다고 해도 박물관·미술관이 얻는 실질적인 인센티브는 미약하다는 비판이 존재함
  - 관람객 수 증가 등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고 관람객이 인증기관임을 알 수 있는 경로가 없기 때문에 인증기관으로 선정되면 지자체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혜택은 사립 박물관·미술관에 직접적인 동기부여로서는 어려움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제7조(인센티브)에 따르면 지정 결과에 대해 인쇄물·TV·라디오·인터넷 등 홍보 매체에 우선적으로 홍보할 수 있고, 우수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는 인증 유효기관 중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일 뿐 의무는 아니며 인센티브가 제대로 제공되고 있는 여부도 확실치 않음

## 2) 서울특별시 ‘서울형 평가인증제’ 시행 계획

- 추진 배경: <서울시 박물관 진흥계획> 수립(2013)과 사립관 대상 ‘서울형 평가인증제’
  - 서울시는 2013년 박물관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 방향으로 ① 다양한 박물관 확충을 통해 문화향유 기회 제고, ② 사립박물관의 진흥: 지원확대 및 공공성 확보, ③ 수요자 중심의 새로운 박물관 역할 정립, ④ 체계적인 박물관 진흥 기반 구축을 제시
  - ‘사립박물관 진흥’의 세부 계획은 컨설팅제 도입, 사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활용, 사립박물관 지원 확대 및 공공성 확보, 사립박물관 자매결연 지원, 사립박물관 유물에 대한 보존과학적 지원으로 구성됨
    -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이 되어 국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시기였던 만큼, 사립박물관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제를 도입하여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었음
    - 또한 사립박물관은 의무가 아닌 희망하는 박물관에 한해 시행할 예정이었으며, 박물관 유형, 규모, 성격에 따른 차별화된 평가지표를 통해 국·공립박물관 평가지표와 차별화하고자 함
    - 지방자치단체의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 도입 사례로서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관심을 모았으나, 현재 시점에서 제주특별자치도만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를 도입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함

- 2016년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진흥방안에 관한 연구』에서도 <서울시 박물관 진흥 계획>(2013)을 언급하며 평가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명시함
- 정부의 평가인증제 확대 시행에 맞춰 서울에 맞는 ‘서울형 평가인증제’ 도입·실행의 필요성을 언급함

□ ‘서울형 평가인증제’ 운영계획 및 평가지표(안)

- 시설 유형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형별로 배점표를 구성함
  - 유물, 프로그램, 인프라(학예사, 시설), 비전의 배점을 **소장품형, 전시교육형(비소장품형), 테마형**에 따라 다르게 구성함
- **평가 등급에 따른 지원사업 차등화**
  - 평가 등급은 1~5등까지 총 5가지 등급으로 구성
  - 1~2등급은 개별지원 사업대상으로 선정/3등급은 컨설팅 후 지원과 개별사업 지원/4등급은 컨설팅 후 지원과 공동형 사업만 지원/5등급은 재평가와 컨설팅 후 가능성을 검토한 뒤 공동형 사업의 제한적 지원

[표 2-13] 서울형 평가지표 체계의 구성(안)

항목	지표	내용
유물	유물의 관리 및 활용실태	유물관리시스템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체육관광부 시범평가 기준 준용</li> </ul> 등록유물의 보존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존상태(평가단 확인)</li> <li>• 활용실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동 시설 내 전시 여부</li> <li>-다른 시설 프로그램에 전시실적</li> <li>-기타 시민 활용 실적</li> </ul> </li> </ul>
	프로그램	각종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추진 여부
인프라		학예사 수
	수장고	수장고 운영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체육관광부 시범평가 기준 준용</li> </ul>

항목	지표	내용	
기획/특별 전시실	기획/특별전시실 운영	• 문화체육관광부 시범평가 기준 준용	
운영	비전과 전략	비전의 적절성	• 관장의 미래전망 및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여부 • 비전에 대한 운영진의 동의 정도
		전략의 적절성	• 적절한 운영프로그램 및 전략
	자생노력	지역사회와 협력	• 지역사회와 협력 정도 - 지역사회 기관 협력, 주민과의 협력
		관객개발 노력	• 관객개발 프로그램의 운영 • 지속가능한 운영전략

※ 자료원: 서울특별시, 2016,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진흥방안에 관한 연구』 재정리.

## □ 시사점 및 전망

-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 운영에 대한 계획은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에서도 언급되어 있으나, 그 비중이 크지 않음
  - 서울시 문화정책에서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진흥 정책은 중요도가 크지 않고 대부분 공립 박물관, 미술관 건립에 관련된 지원이 강조되어 있음
-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에서 서울시는 박물관·미술관의 내실을 견고하게 하는 정책보다는 인프라 확충에 역점을 두어, 지역의 역사와 생활, 이야기를 보전하는 마을박물관, 에코뮤지엄, 테마마을 등 13개의 박물관 조성을 세부과제로 제시하였음
- 많은 선행연구에서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 도입을 위해서는 지원사업의 혁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등록제도의 문제와 지원사업의 한계가 개선되지 않는 상태에서 서울시의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 도입은 그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임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를 도입하였으나, 인센티브 등 사후관리가 권고사항일 뿐 의무가 아니어서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임

## 4절 사립박물관·미술관 관련 정책적 쟁점들

### 가. 사립관 의존적 ‘확충’ 경향과 그 특성: 사립박물관·미술관 증가 양상 및 지역별 분포

□ 규제완화 계기별 사립박물관 확충 효과: 지속 증가 이후 감소하는 변곡점 출현

○ 사립박물관의 개관연도별 증가 추세: 규제완화 및 지방분권 시책과의 상관성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전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는 사립박물관의 설립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1936년 송광사성보박물관(전라남도 순천시), 1938년 간송박물관(서울특별시 성북구), 1964년 한독의약박물관(충청북도 음성군), 1967년 한국천주교순교자박물관(서울특별시 마포구), 1978년 농경생활사박물관(대구광역시, 달성군)과 온양민속박물관(충청남도 아산시), 1979년 원불교역사박물관(전라북도 익산시) 등의 순으로 1년에 약 1개관 정도의 사립박물관이 개관하다가, 1980년대에 서울아시안경기대회 및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박물관법」이 제정되면서 이전 대비 연간 2~3개관이 더 개관하는 경향 보임

- 그러다가 「박미법」 제정·시행 직후에 연간 3~4개관으로 증가하는 듯하다가, 「박미법 시행령」 개정 직후인 1995년 이후부터 이전에 비해 가파른 증가 추세를 보임: 특히 설립계획 승인 등의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 2000년 전부개정, 2003년 행정권한 지방이양 관련 개정 이후에 급증세를 보임

- 193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7.9개관이 개관했는데, 1994년까지는 연간 1~4개관이 개관하다가 1995년을 기점으로 연간 6개관 이상이 개관하였고,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전에 비해 폭증하는 형태로 가파른 증가세를 보임(2000년대에 150개관 개관, 연평균 15개관 개관): 연도별로 2008년 25개관, 2013년 23개관, 2012년에 21개관 등의 순으로 많이 건립됨

- 그러나 2015년 이후로는 현재까지 그러한 증가 추세가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일종의 변곡점이 확인됨



〈그림 2-1〉 전국 사립박물관 개관연도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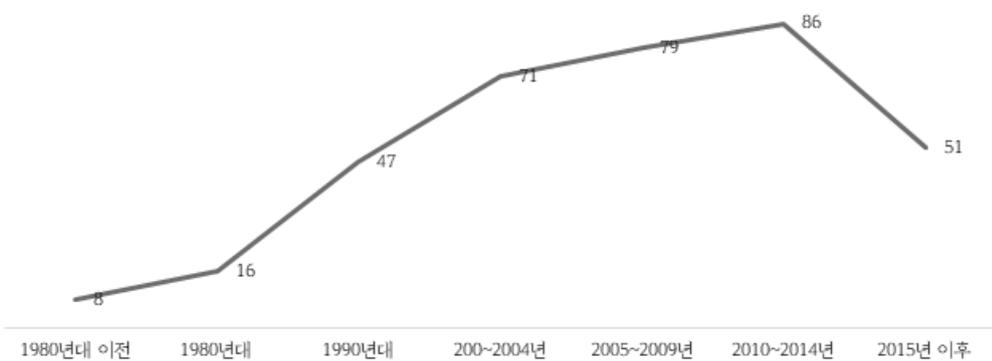
(n= 358)

〔표 2-14〕 전국 사립박물관 개관연도별 분포

(n=358)

개관연도	1936	1938	1964	1967	1978	1979	평균					
사립박물관 수	1	1	1	1	2	1	1.2					
개관연도	1980	1981	1982	1986	1987	1988	1989					
사립박물관 수	1	1	3	2	3	4	2	2.3				
개관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사립박물관 수	2	1	4	3	2	6	6	7	10	6	4.7	
개관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사립박물관 수	9	15	17	15	15	12	13	14	25	15	15.0	
개관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사립박물관 수	14	15	21	23	13	16	6	11	2	7	9	12.5

※ 자료원 :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그림 2-2〉 전국 사립박물관 개관시기별 분포

(n=3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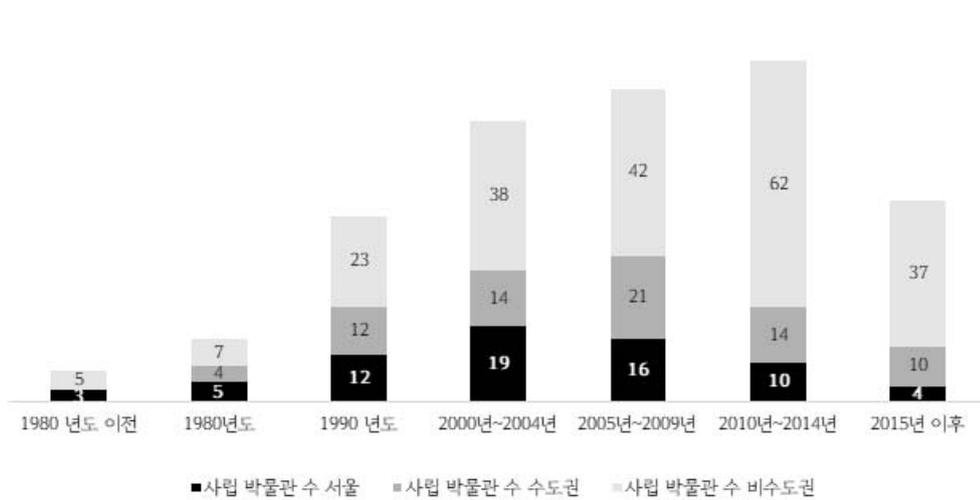
- 지역별 증가 추세의 차등화: 수도권외의 둔화, 비수도권의 추월, 최근 감소세로 전환
  - 전체적으로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는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였음: 이 시기에 새로 개관한 사립박물관 수(283개관)가 전국적으로 현재 사립박물관 수(358개관)에서 지배적인 비중(79%)을 차지하고 있음
  - 1990년대까지는 신규 개관한 박물관 중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박물관 수가 비수도권 지역의 박물관 수보다 많았음
  - 2000년대 이후에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사립박물관의 개관 수보다 비수도권의 신규 개관 사립박물관 수가 더 많아지는 경향을 보임: 2010년대에는 비수도권의 신규 개관 사립박물관 수가 서울 및 수도권에 비해 약 2배에 달하고, 그 중 수도권도 서울의 2배 가량 새로 개관함: 서울 및 수도권의 사립박물관 신규 개관 수가 감소하는 반면, 비수도권에서는 2014년까지 신규 개관 수가 증가했기 때문임
  - 서울의 경우, 2000년대까지 지속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대 들어 현저하게 감소세로 전환하였고, 수도권의 경우, 2000년대말까지 증가세가 계속되다가 2010년대 들어서 감소세가 두드러지고 있음
  - 비수도권의 경우,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에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였으나, 2015년 이후에는 2010년대 전반에 비해 신규 개관 수가 크게 감소하는 추세임
  -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이 일종의 도미노와 같이 증가세와 감소세가 다소의 시차를 두고 나타나 되, 2015년 이후에는 신규 개관한 박물관 수가 모든 권역에서 감소세를 동일하게 보임

(표 2-15) 소재 권역에 따른 사립박물관 개관시기별 분포

(n=358)

구분	개관시기							계
	1980년 이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 2004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4년	2015년 이후	
전체	8	16	47	71	79	86	51	358
서울	3	5	12	19	16	10	4	69
수도권	0	4	12	14	21	14	10	75
비수도권	5	7	23	38	42	62	37	214

※ 자료원 :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그림 2-3〉 소재 권역에 따른 사립박물관 개관연대별 분포

(n=358)

○ 사립박물관의 지역별 분포: 비수도권의 비중 우세 및 시도별 불균형 분포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사립박물관은 총 358개관임
-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아우르는 수도권 소재 사립박물관이 145개관(40.5%)을 차지하나, 그 외 비수도권 소재 사립박물관이 213개관(약 59.5%)으로 우세한 양상을 보임
- 행정구역 단위별로는 8개 도(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207개관(57.8%)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에 70개관(19.6%), 제주특별자치도에 44개관(12.3%), 6개 광역시에 33개관(9.2%) 등의 순으로 나타남: 서울시를 제외하고 시 단위보다 도 단위에 다수 분포하는 경향을 보임
- 광역자치단체별로는 서울특별시 70개관(19.6%), 경기도 63개관(17.6%), 제주특별자치도 44개관(12.3%), 강원도 41개관(11.5%), 경상남도와 경상북도가 각 22개관(각 6.1%), 충청남도 20개관(5.6%) 등의 순으로 많고, 광역자치단체별 격차가 큰 것을 알 수 있음
- 기초자치단체별(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외)로는 구에 100개관(32.3%), 시에 139개관(44.8%), 군에 71개관(22.9%)이 설립·운영되고 있음
- 이는 어디까지나 사립박물관의 분포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국·공립박물관의 지역별 분포를 포함하고 있지 않음. 단, 사립박물관이 전체적으로 비수도권 지역에서 신규 개관이 급증해온 점과 그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에 다수 분포하고 있는 점은 두드러지는 특징이라 하겠음

(표 2-16) 전국 사립박물관 행정구역(광역자치단체)별 분포

(n=358)

구분	행정구역 (광역자치단체)	사립박물관 수		비율(%)	
		수	합계	비율	합계
특별시(1)	서울특별시	70	70	19.6%	19.6%
광역시(6)	부산광역시	7	33	2.0%	9.2%
	대구광역시	6		1.7%	
	인천광역시	12		3.4%	
	광주광역시	3		0.8%	
	대전광역시	4		1.1%	
	울산광역시	1		0.3%	
특별자치시(1)	세종특별자치시	4	4	1.1%	1.1%
도(8)	경기도	63	207	17.6%	57.8%
	강원도	41		11.5%	
	충청북도	12		3.4%	
	충청남도	20		5.6%	
	전라북도	9		2.5%	
	전라남도	18		5.0%	
	경상북도	22		6.1%	
	경상남도	22		6.1%	
특별자치도(1)	제주특별자치도	44	44	12.3%	12.3%
<b>사립박물관 전국 총계</b>		<b>358</b>		<b>100%</b>	

※ 자료원 :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표 2-17) 전국 사립박물관 행정구역(기초자치단체)별 분포

(n=310, 세종특별자치시 4개관, 제주특별자치도 44개관 제외)

구분	행정구역	시	군	구	합계
특별시 (1)	서울특별시			70	70
광역시 (6)	부산광역시			7	7
	대구광역시		1	5	6
	인천광역시		1	11	12
	광주광역시			3	3

구분	행정구역	시	군	구	합계
	대전광역시			4	4
	울산광역시		1		1
도 (8)	경기도	60	3		63
	강원도	19	22		41
	충청북도	5	7		12
	충청남도	11	9		20
	전라북도	5	4		9
	전라남도	2	16		18
	경상북도	19	3		22
	경상남도	18	4		22
합계		139 (44.8%)	71 (22.9%)	100 (32.3%)	310 (100%)

※ 자료원 :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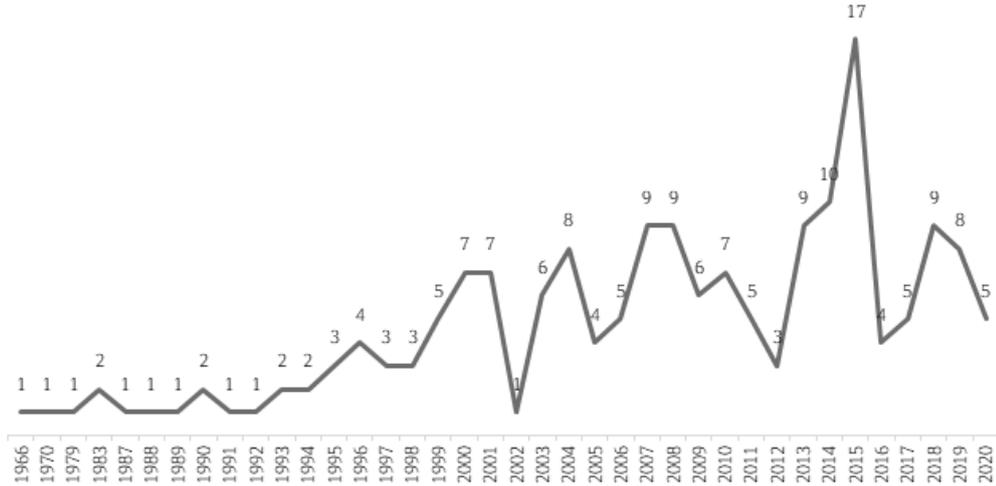
## □ 규제완화 계기별 사립미술관 확충 효과: 신규 개관의 증가세 및 비수도권의 급증

### ○ 사립미술관의 개관연도별 증가 추세: 규제완화 및 지방분권 시책과의 상관성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전반적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는 사립미술관의 설립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 1990년대 초까지는 1966년 금구원야외조각미술관(전라북도 부안군), 1970년 한광미술관(부산광역시 중구), 1979년 아르코미술관(서울특별시, 종로구) 등의 순으로 연간 1개관 정도의 사립미술관이 개관함
- 1992년 「박미법」 제정 이후 연간 2~3개관으로 증가하고, 1995년 「박미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 매년 3~5개관의 신규 개관이 이루어지다가, 2000년에 「박미법」 전부개정을 계기로 연간 개관하는 사립미술관 수가 이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설립계획 승인 등의 업무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는 2000년 전부개정, 2003년 개정을 통한 지방이양의 영향이 사립미술관에서도 추정 가능함
- 이처럼 2000년을 기점으로 한 사립미술관의 신규 개관 증가세는 2010년대 들어서 더 큰 증가폭을 보였고, 특히 2015~20년에 가장 많은 수의 사립미술관(82개관)이 새로 개관함: 연도별로 2015년 17개관, 2014년 10개관, 2007년과 2008년에 각 9개관 등의 순으로 신규 개관한 수가 많음
- 10년 단위로 볼 때, 1990년대 이전이 평균 1.1개관, 1990년대가 평균 2.6개관, 2000년대가 평균

6.2개관, 2010년대가 평균 7.5개관이 신규로 개관함으로써, 평균값으로는 지속적인 증가세가 확인됨

- 그러나 2015년에 새로 17개관이 개관하여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6년부터는 연간 5~9개관 정도가 개관하는 수준을 지속하는 중임



〈그림 2-4〉 전국 사립미술관 개관연도별 분포

(n=1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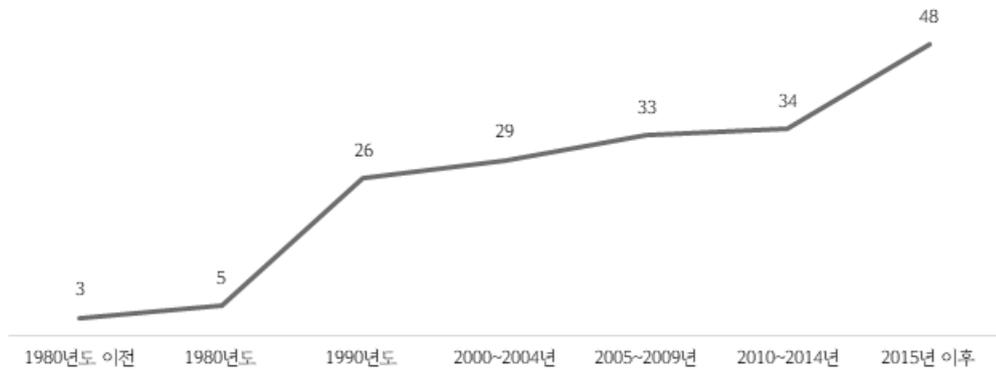
- ※ 권진규미술관(현재 휴관)이 개관연도를 기재하지 않아 178개관 대상으로 개관연도 분석.
- ※ 자료원 :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표 2-18〕 전국 사립미술관 개관연대별 분포

(n=178)

개관연도	1966	1970	1979	1983	1987	1988	1989	평균				
사립미술관 수	1	1	1	2	1	1	1	1.1				
개관 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평균	
사립미술관 수	2	1	1	2	2	3	4	3	3	5	2.6	
개관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평균	
사립미술관 수	7	7	1	6	8	4	5	9	9	6	6.2	
개관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사립미술관 수	7	5	3	9	10	17	4	5	9	8	5	7.5

- ※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세종-충무공이야기(2009.10.9.)', '세종미술관(2015.4.6.)', 소마미술관의 경우 '2004.9.16.', '2018.9.14.'로 개관 일자가 두 개로 기재됨. 이에 앞선 기간을 미술관 개관 연도로 간주함.
- ※ 자료원 :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그림 2-5〉 전국 사립미술관 개관연대별 분포

(n=178)

※ 자료원 :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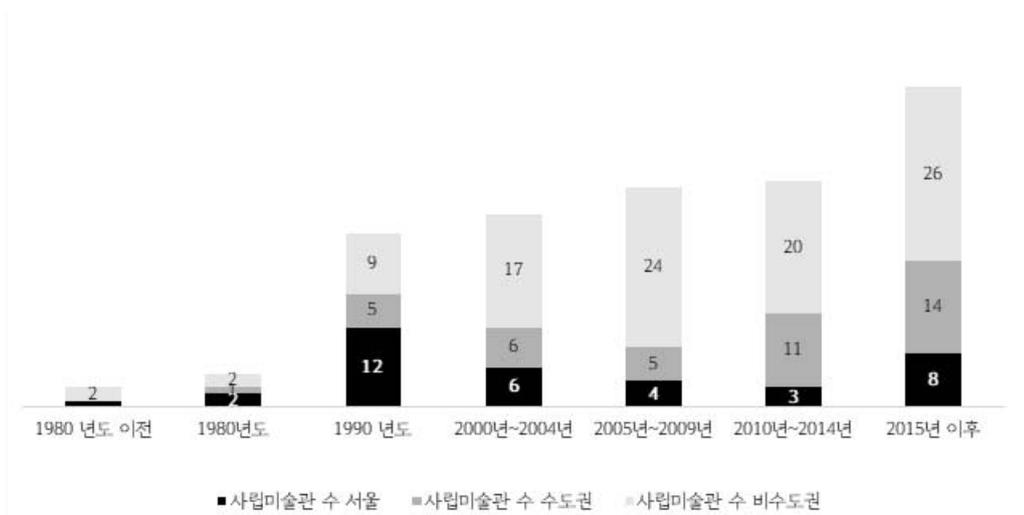
- 지역별 증가 추세의 차등화: 서울 비중의 약화, 수도권에 점진 증가, 비수도권의 급증
  - 소재지별로 서울에서는 1990년대에 12개관이 새로 개관하면서 정점을 맞았고, 이후 2000년대, 2010년대에도 거의 비슷한 수로 신규 개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2015년 이후에 8개관으로 신규 개관이 증가함
  - 수도권의 경우, 1990년대에 새로 5개관이 개관한 이래, 2000년대에 그 2배 가량의 신규 개관이 이어졌고, 2010년대에는 2000년대 대비 약 2.5배에 달하는 신규 사립미술관이 개관함
  - 비수도권의 경우, 1990년대에 9개관으로 신규 개관 수가 급증하기 시작해, 2000년대에는 1990년대 대비 약 4.5배에 달하는 사립미술관이 새로 개관했고(41개관), 2010년대에는 2000년대의 신규 개관 수를 약간 상회하는 45개관이 새로 문을 열었음
  - 수량면에서 2000년대 이후 신규 개관 수는 서울의 증가세가 거의 완만한 데 비해, 수도권의 증가세가 서울을 앞섰고, 비수도권이 전체적인 신규 개관 수의 급증을 견인해 왔다고 할 수 있음

〈표 2-19〉 소재 권역에 따른 사립미술관 개관연대별 분포

(n=178)

구분	개관연도							계
	1980년 이전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 2004년	2005년~ 2009년	2010년~ 2014년	2015년 이후	
전체	3	5	26	29	33	34	48	178
소								
재								
지								
서울	1	2	12	6	4	3	8	36
수도권	0	1	5	6	5	11	14	42
비수도권	2	2	9	17	24	20	26	100

※ 자료원 :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그림 2-6〉 소재 권역에 따른 사립미술관 설립연대별 분포

(n=178)

※ 자료원 :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사립미술관의 지역별 분포: 비수도권 비중 다소 우세 및 시도별 불균형 분포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사립미술관은 총 179개관임
- 서울, 경기도, 인천광역시를 아우르는 수도권 소재 사립미술관이 78개관(43.6%)을 차지하고, 그 외 비수도권 소재 사립미술관이 101개관(약 56.4%)으로 다소 우세한 양상을 보임: 사립박물관에 비해서 수도권 집중세가 좀 더 크다고 할 수 있음
- 행정구역 단위별로는 8개 도(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112개관(62.6%), 서울특별시에 35개관(19.6%), 4개 광역시(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에 18개관(10.1%) 등의 순으로 다수를 차지함
- 광역자치단체별로는 경기도 39개관(21.8%), 서울특별시 35개관(19.6%), 전라남도 24개관(13.4%), 강원도 16개관(8.9%), 제주특별자치도 14개관(7.8%)등의 순으로 많음
- 기초자치단체별(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제외)로는 구에 40개관(30.3%), 시에 75개관(45.5%), 군에 40개관(24.2%)이 설립·운영되고 있음

〔표 2-20〕 전국 사립미술관 행정구역(광역자치단체)별 분포

(n=179)

구분	행정구역 (광역자치단체)	사립박물관 수		비율(%)	
		수	합계	비율	합계
특별시 (1)	서울특별시	35	35	19.6%	19.6%
광역시 (6)	부산광역시	4	18	2.2%	10.1%
	대구광역시	0		0.0%	

구분	행정구역 (광역자치단체)	사립박물관 수		비율(%)	
		수	합계	비율	합계
	인천광역시	3		1.7%	
	광주광역시	8		4.5%	
	대전광역시	3		1.7%	
	울산광역시	0		0	
특별자치시 (1)	세종특별자치시	0	0	0	0.0%
도 (8)	경기도	39	112	21.8%	62.6%
	강원도	16		8.9%	
	충청북도	6		3.4%	
	충청남도	6		3.4%	
	전라북도	11		6.1%	
	전라남도	24		13.4%	
	경상북도	5		2.8%	
	경상남도	5		2.8%	
특별자치도 (1)	제주특별자치도	14	14	7.8%	7.8%
사립박물관 전국 총계		179		100%	

※ 자료원 :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표 2-21〕 전국 사립미술관 행정구역(기초자치단체)별 분포

(n=179)

구분	행정구역	시	군	구	합계
특별시 (1)	서울특별시			35	35
광역시 (6)	부산광역시			4	4
	대구광역시				0
	인천광역시		3		3
	광주광역시			8	8
	대전광역시			3	3
	울산광역시				
도 (8)	경기도	34	5		39
	강원도	10	6		16

구분	행정구역	시	군	구	합계
	충청북도	6			6
	충청남도	5	1		6
	전라북도	7	4		11
	전라남도	6	18		24
	경상남도	5			5
	경상북도	2	3		5
사립미술관 전국 총계		75 (45.5%)	40 (24.2%)	50 (30.3%)	165 (100%)

※ 자료원 :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나. 설립과 등록의 연계 취약: 사립박물관·미술관 등록 현황

### □ 사립박물관의 등록 현황

#### ○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직후부터 등록관 수의 급증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사립박물관 중 98%(351개관)가 등록함
- 2003년 5월 「박미법」 개정(2004년 1월 1일 시행)으로 각 지방의 지역적 특성에 알맞은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계획 승인, 등록 관련 각종 행정 권한이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양되면서, 2004년부터 등록 사립박물관 수가 급격히 증가함
- 「박미법」 제정 이전에 등록한 사립박물관은 3개관에 불과함: 1987년 농협농업박물관(1987년 개관, 서울특별시 중구), 1989년 전쟁기념관(1994년 개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1990년 삼성출판박물관(1990년 개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 2003년의 법 개정 이전까지 문화부를 통해 등록한 사립박물관은 70개관, 연평균 4.4개관이었으나, 2004년부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통해 등록한 사립박물관은 281개관, 연평균 16.5개관으로 등록처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양되면서 급증함

[표 2-22] 전국 사립박물관 등록연도 분포

(n=351)

등록연도	1987	1989										평균
등록 사립박물관 수	1	1										1
등록연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등록 사립박물관 수	1	0	6	8	1	1	5	3	1	11	3.7	
등록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등록 사립박물관 수	4	13	7	7	10	9	22	19	26	20	13.7	
등록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등록 사립박물관 수	18	15	27	21	13	24	9	13	10	8	17	17.5

※ 자료원 :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종별 등록 및 미등록관 현황

- 등록관 중 제1종 박물관이 279개관(79.5%), 제2종 박물관이 72개관(20.5%)을 차지함
- 제1종 박물관의 경우, 종합박물관보다는 전문박물관의 형태를 띠는 사립박물관이 다수임
- 제2종 박물관의 경우, 기념관, 유물관, 전시관 등으로 등록함
- 미등록 7개관(2%)은 2000년대 이후 개관한 사립박물관임: 강원도 3관, 충북 2관, 인천/전북 각 1관

[표 2-23] 미등록 사립박물관 목록

(2021.1.1. 기준)

소재지역	박물관 명	
강원도(3)	고성군	금강산자연사박물관(휴관)
	정선군	강원랜드 뿌리관, 아라리인형의집 박물관
인천광역시(1)	중구	재미난박물관
충청북도(2)	음성군	매괴박물관
	제천시	한국차문화박물관
전라북도(1)	완주군	천호가톨릭성물박물관

※ 자료원 :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사립미술관의 등록 현황

○ 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직후부터 등록관 수의 급증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사립미술관 중 95.5%(171개관)

가 등록함: 사립박물관에 비해 등록률이 다소 낮음

- 「박미법」 제정 이전에 등록된 사립미술관은 없으며, 제정 직후인 1992년에 아트센터나비미술관, 장전미술관(휴관), 우양미술관 순으로 등록하기 시작함
- 2003년 법 개정 이전까지 문화부를 통해 등록된 사립미술관은 38개관, 연평균 3.2개관이며, 2004년부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통해 등록된 사립미술관은 133개관, 연평균 11.1개관으로 등록처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이양되면서 등록 사립미술관 수가 급증함

(표 2-24) 전국 사립미술관 등록연도 분포

(n=171)

등록연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평균			
등록 사립미술관 수	3	4	1	2	6	2	3	1	2.75			
등록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평균	
등록 사립미술관 수	1	5	6	4	5	6	8	14	5	2	5.6	
등록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등록 사립미술관 수	6	9	10	9	6	15	7	10	8	8	5	8.5

※ 자료원 :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 미등록관 현황

- 미등록 8개관(4.5%)은 2000년대 이후 개관한 사립미술관임(권진규미술관 제외)

(표 2-25) 미등록 사립미술관 목록

(2021.1.1. 기준)

소재지역	미술관 명	
서울특별시(1)	송파구	롯데뮤지엄
강원도(4)	동해시	권진규미술관(휴관)
	춘천시	월산미술관, 이상원미술관, 춘천미술관
충청북도(1)	충주시	성마루미술관
전라남도(1)	고흥군	연홍미술관
제주특별자치도(1)	서귀포시	빛의 벙커(제주 성산 AMIEX 전시관)

※ 자료원 :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 사립박물관·미술관의 등록지체 현상: 설립(개관)과 등록의 시차

#### ○ 「박미법」의 등록 임의규정의 한계

- 등록을 박물관으로서의 법적 정의의 일부로 규정한 「박물관법」과 달리, 「박미법」은 제정 시부터

등록을 임의규정으로 전환하였고, 이 등록제도와 설립승인 사이의 관계규정이 부재하였음  
 - 현재는 국·공립관에 대해서는 등록을 강제규정으로, 사립관 및 대학관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으로 구별하여 적용하고 있음

- 그러다 보니 사립관의 등록은 선택적 사항이 되고, 개관 후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등록하는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며, 등록하지 않는 사례들도 여전히 존재함

○ 설립·운영기준의 부재, 설립과 등록의 연계성 모호, 등록표시의 정책효과 취약

- 그러나 강제규정이든 임의규정이든 박물관·미술관으로서의 설립·운영기준이 부재하고, 그로 인해 설립계획을 수립할 때에 등록과의 연계성을 명시하고 있지 않은 점이 실질적으로 박물관·미술관 운영 관련 질적 수준을 담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인 등록제도를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그러한 상황에서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박물관·미술관의 명칭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등록 표시의 제도적 의미가 국민들에게 명확하게 인식되고 있지 않아, 등록표시만으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된) 명칭 사용 금지 제도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움

- 이러한 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이상 등록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게 되므로, 사립관의 등록지체 및 미등록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음

○ 사립박물관의 등록지체 현상

- 개관 이후 1년 이내에 등록한 사립박물관이 43.0%(151개관)에 불과하며, 이 중 개관연도에 등록한 사립박물관은 28.5%(100개관)임

- 심지어 개관 후 10년이 지나서 등록한 경우도 8%(28개관)로 나타나며, 그 중에는 30년이 지나서 등록한 경우도 2.3%(8개관)를 차지함

- 또한 개관 이전에 등록한 사립박물관도 17.1%(60개관)를 차지하는데, 그 원인에 관해서는 별도의 연구조사를 통해 규명할 필요가 있음

[표 2-26] 사립박물관 개관연도와 등록연도 비교

(n=351)

구분	개관 이전 등록	개관 연도 등록	개관 후 1년 이내	개관 후 1년 이후 3년 이내	개관 후 3년 이후 5년 이내	개관 후 5년 이후 10년 이내	개관 후 10년 이후 30년 이내	개관 후 30년 이후
박물관 수	60	100	51	44	20	48	20	8
비율	17.1%	28.5%	14.5%	12.5%	5.7%	13.7%	5.7%	2.3%

※ 자료원 :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사립미술관의 등록지체 현상

- 개관 이후 1년 이내에 등록한 사립미술관은 47.4%(81개관)를 차지하며, 이 중 개관연도에 등록한 사립미술관은 36.3%(62개관)임

- 역시 개관 후 10년이 지나서 등록한 경우도 6.4%(11개관)로 나타나며, 그 중 30년이 지나서 등록한 경우로 간송미술관 1개관이 확인됨: 개관 시기가 1930년대로 가장 앞서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간송미술관의 위상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2019년에 이르러서야 등록한 점은 등록제도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 할 것임
- 사립박물관과 마찬가지로 개관 이전에 등록한 사립미술관도 17.5%(30개관)로 나타나고 있어, 함께 원인규명이 필요함

(표 2-27) 사립미술관 개관연도와 등록연도 비교

(n=171)

구분	개관 이전 등록	개관 연도 등록	개관 후 1년 이내	개관 후 1년 이후 3년 이내	개관 후 3년 이후 5년 이내	개관 후 5년 이후 10년 이내	개관 후 10년 이후 30년 이내	개관 후 30년 이후
미술관 수	30	62	19	23	14	12	10	1
비율	17.5%	36.3%	11.1%	13.5%	8.2%	7.0%	5.8%	0.6%

※ 자료원 :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 등록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정책적 책무의 분산과 그 한계

##### ○ 국가통계의 신뢰성 및 행정정보의 연계성 취약: ‘운영평가’에서 ‘운영현황보고’로

- 설립계획 승인 및 등록업무가 지방이양된 이후 상기한 바와 같이 신규 설립 및 등록이 증가한 반면, 설립과 등록 사이에 시차가 크게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행정권한이 지방이양된다고 하더라도 국가 차원의 박물관·미술관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는 체제가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체제의 정비와 운용이 미비한 상태에서 우선적으로 행정권한이 이양되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나 IMF 경제위기 직후에 출범한 국민의정부는 신공공관리론 패러다임을 적극 수용하여 공공부문에 각종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했는데, 문화정책과 관련해서는 ‘7대 국정개혁과제’ 중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문화기반시설의 건립 촉진 중심 정책을 바람직한 운영과 그 효과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면서,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가 1998년부터 도입·시행됨(이원태 외, 2003)
- 이 평가사업은 (1) 문화기반시설 운영 실태의 체계적 파악을 통한 정책지표로의 활용, (2) 우수 문화기관 선정자료로 활용하여 국고보조금사업 선정 시 차등 인센티브 지원, (3) 문화기반시설의 바람직한 방향성을 토대로 개발한 평가지표를 통해 문화기반시설 경영의 자발적 혁신 유도로 경쟁력 강화, (4) 지역별 문화시설 조성·운영 수요 파악으로 균형발전 기반의 구축, (5) 정부의 문화기반시설 중장기정책 수립·추진을 위한 정책지표 및 자료로 활용, (6)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모델의 정립 등을 목표로 시행됨(이원태 외, 2003)<sup>5)</sup>

5) 이러한 평가 시행과 관련해서는 각종 문화기반시설들이 지역 특성에 따라 차별화되지 못하고 획일적으로

- 참여정부는 <문화비전 중장기 기본계획(2004~2008)>(2003)을 발표하면서 문화기반시설 관리 운영평가를 수정·보완하여 계속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실제로 문화기반시설운영평가사업은 중단되고 운영현황에 관한 행정보고(2000년 「박미법」 전면개정 시에 신설된 제28조 근거)만이 남게 됨
- 현재 국가 차원의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수립, 시행, 평가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유일한 관련 국가통계는 「박미법」에 의한 ‘운영현황보고’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는 각 소관 행정주체가 항목별 자기기입식 자료를 수합하여 이를 소관부처인 문체부에서 최종 정리, 발표하는 형태로 매년 운영되어 왔음
- 2012년 시범조사 실시 이후 2013년부터 3년 주기로 ‘지역문화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가 실시되고 있으나, 이 조사는 어디까지나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현황통계분석으로서,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을 자료로 활용하여 집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운영현황보고’는 국가통계의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수합된 자료에 대한 확인이나 정정 절차가 없어서 ‘문화기반시설총람’으로 발간되기 전의 원데이터 상의 오류가 적지 않아, 국가통계로서의 신뢰성과 정책적 유용성이 낮다고 할 수 있음
- 실제로 이 운영현황보고는 등록 및 미등록 박물관·미술관을 포괄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 모든 대상을 포괄하지 못하고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애초에 ‘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가 지향한 정책적 방향을 조사항목을 통해서 충실히 반영, 분석하고 있지 못해 그 정책적 기능 면에서 한계가 크다고 하겠음
- 설립신청 및 승인, 등록신청 및 승인, 변경등록, 시정요구, 정관명령, 폐관신고 등과 같은 행정기록은 포함되지 않고, 지자체간 이전 등의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행정적 이력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등록 자료 등에 관한 정보나 등록심사 내용 등을 조회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음

---

건립되고, ‘효과적인 경영’보다는 ‘설치행정’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공공 문화공간의 역할과 경영 전반에 걸쳐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는 문제의식이 내포되어 있었음(임학순 외, 1999).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1) 운영실태의 종합적 파악으로 우수시설의 격려 및 운영부진 시설의 자발적 개혁·발전 고무, (2) 전반적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정부가 구체적으로 박물관·미술관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시행됨.

(표 2-28) 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 중 박물관 세부평가지표

(2000. 기준)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가중치	배점	
목표설정 및 비전	1. 중장기 발전계획(3년 이상)수립 및 추진실적	3	15	
	2. 경영혁신을 위한 계획수립 및 실천 여부	3	15	
	3. 특성화 및 우수 운영 사례	4	20	
	소계	10	50	
조직 및 인력	4. 조직 구성과 업무분장	1	5	
	5. 관장의 전문성	2	10	
	6. 직원 현황	1	5	
	7. 학예연구원의 수	2	10	
	8. 전문직원의 종류와 수	1	5	
	9. 전문성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체계	2	10	
	10.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외부 전문인력 참여 여부	1	5	
	11. 자원 봉사자 및 외부인력 활용	1	5	
	12. 인턴 제도 시행 여부	1	5	
	소계	12	60	
	재정	13. 예산의 규모 및 구조	1	5
		14. 사업비 비율	2	10
15. 자원개발 및 외부지원금 확보와 활용 여부		1	5	
16. 재정 건전성		1	5	
소계		5	25	
시설	17. 박물관 공간구비 현황	2	10	
	18. 이용자 편의시설 수준	2	10	
	19.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여부	1	5	
	20. 작년도 박물관 시설·설비 개선 실적	1	5	
	21. 정기점검 실시 여부	1	5	
	소계	7	35	
소장품관리	22. 전체 소장품 수	2	10	
	23. 작년 소장품 수집 실적	2	10	
	24. 소장품 취득 방법 및 절차	1	5	
	25. 소장품 구입비 비율	1	5	
	26. 소장품 등록카드 및 총목록 작성 비율	2	10	
	27. 소장품 목록의 데이터베이스화 정도	2	10	
	28. 소장품 보험가입 여부	1	5	
	29. 진열실 및 수장고 소장품 보존상태 점검빈도	2	10	
	30. 소장품 보호관리 대책	2	10	
	31. 보존 처리실 유무	2	10	
	32. 조사연구 용도로의 소장품공개	1	5	
	33. 소장품 대여	1	5	
	34. 소장품 도록 발간	1	5	
	소계	20	100	

평가지표	세부평가지표	가중치	배점	
조사연구	35. 작년 조사연구사업 건수	2	10	
	36. 조사연구사업비	2	10	
	37. 조사연구분야 중장기 계획 유무	2	10	
	38. 조사연구보고서 발간 건수	2	10	
	39. 자료실 유무 및 소장자료 규모	2	10	
	소계	10	50	
전시	40. 상설전시 교체 여부	2	10	
	41. 기획전시 건수	2	10	
	42. 순회전시 개최 여부	1	5	
	43. 전시관련 예산비율	2	10	
	44. 전시분야 중장기 계획 유무	2	10	
	45. 전시이해를 돕는 보조수단	2	10	
	46. 전시도록 발간 여부	2	10	
소계	13	65		
교육	47. 교육강좌 건수	2	10	
	48. 교육강좌 내용	2	10	
	49. 교육관련 예산비율	1	5	
	50. 교육자료	2	10	
	51. 교육전문 담당직원 여부	1	5	
	52. 수강생 수	2	10	
	소계	10	50	
교류협력	홍보	53.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내역	2	10
		54. 홍보 활동 내역	1	5
		55. 연감 및 소식지 발간 여부	1	5
	마케팅	56. 회원제도 활용여부와 방법	1	5
		57. 기념품점 운영 여부 및 자체제작 또는 디자인한 기념품 여부	1	5
		58. 관람객 조사 및 개발노력 여부	2	10
		59. 연간 이용자 수	2	10
	협력관계	60. 지역 내 타 문화기관과의 협력관계	1	5
		61. 타 지역 및 국제간 교류사업	1	5
		62.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도	1	5
소계	13	65		
계		100(%)	500(점)	

※ 자료원: 이원태 외, 2003, 『전국문화기반시설관리운영평가 개선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pp. 43~44.

(표 2-29)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최종지표 및 자료수집 출처

대분류	중분류	지표명	자료출처
문화 정책	정책 사업	1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기획 발주 문화관련 사업 선정 건 수(2019년, 2020년)*	지자체
		2 전체 문화·예술사업 중 지방자치단체 자체 문화사업 비율(2019년, 2020년)*	지자체
	정책 환경	3 지역문화진흥기관 설치 개수(2020년)*	지자체/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4 문화관련 조례 제정 건 수(2020년)*	지자체
		5 공무원 현원 대비 문화분야 행정인력 비율(2020년)*	지자체
	문화 예산	6 기준년도 총예산 대비 문화관련 예산 비율(2020년)	기준년도 예산계획서
		7 인구 1명당 문화관련 예산액(2020년)	기준년도 예산계획서
		8 지역문화기금 설치 여부(2020년)	지자체
		9 전체 문화 관련 예산 대비 문화유산 보존관리 예산(2020년)	지자체/ 기준년도 예산계획서
문화 자원	문화 유산	10 시·도 지정 문화재 수(2020년)	문화재청
		11 문화보급·전수 시설 수(2020년)	국립무형유산원
	기반 시설	12 인구 천 명당 문화기반시설 수(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13 인구 만 명당 생활문화시설 수(2020년)	문체부 자료/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지역문화진흥원
		14 공공 문화기반시설 중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 비율(2020년)	장애인인증개발원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15 공공 문화기반시설 중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비율(2020년)*	지자체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자원 활용	16 문예회관 공연장 공연일 수(2019년,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17 공공 도서관 주당 평균 개방 시간(2019년, 2020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18 전국 지역축제 총괄표 기준 평균 지역축제 예산(2019년, 2020년)	전국지역축제총괄표
19 자치단체 지원 마을축제 건 수(2019년, 2020년)*		지자체	
문화 활동	활동 조직	20 지역문화예술법인·단체 수(2020년)	예술경영지원센터
		21 문화예술 관련 사회적 기업 수(2020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활동 인력	22 인구 만 명당 등록예술인 수(2020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3 학예전문인력 및 문화재 관리인력(2020년)*	지자체
		24 인구 만 명당 문화예술교육사 수(2020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5 문화관광해설사 수(2020년)*	지자체
		26 법정사서직원 확보율(2020년)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27 문예회관 500객석 당 무대예술 전문인력 수(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문화 향유	지역 주민	28 인구 만 명당 자체 기획 문화예술 공연 건 수(2019년, 2020년)*	지자체
		29 '문화가 있는 날' 자치단체 기획사업 건 수(2019년, 2020년)*	지자체
	소외 계층	30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202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1 장애인·노인·저소득자·위기청소년·교정시설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 수(2019년, 2020년)*	지자체
		32 다문화·새터민·성소수자·이주노동자 대상 특화 문화프로그램 건 수(2019년, 2020년)*	지자체

※ 자료원: 장훈 외, 2022,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p. 11.

○ 박물관·미술관 정책 추진체계의 취약

- 박물관·미술관 정책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종합적인 기본시책이 정기적으로 수립, 시행되는 체계가 법적으로 근거위쳐 있지 못하여, 소관부처인 문체부의 종합계획의 수립, 발표, 시행, 평가 등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한계가 상존함
- 이로 인해 종합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지자체 및 타 중앙부처의 박물관 설립, 운영, 지원, 관리감독 등의 행정행위와의 연계성이 취약하고, 종합계획에 따른 타 중앙부처나 지자체의 실행계획 수립 및 실행, 평가 등에 연계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뿐만 아니라 문체부 소관 각종 정책과의 연계성도 취약하여 최근의 지역문화정책, 문화예술정책, 예술인정책, 문화산업정책, 문화예술교육정책 등과의 정책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해서도 박물관·미술관 정책은 물론 해당 분야 종사자들에 대한 고려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을 보임
- 다양한 정책수요로 인해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이 증가해 왔고 현재도 여전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전반적인 정책 추진체계의 취약성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계승이나 국민의 문화권 보장과 같은 기본적인 박물관·미술관의 사회적 역할과 해당 분야 종사자의 권리와 지위 보장 등의 중요한 정책적 과제들을 충실히 수행하는 데에 장애요인이라 하겠음
- 2003년 「박미법」 개정 시, 중앙부처의 행정권한을 대대적으로 지방이양하면서 2000년 전부개정 시에 신설한 ‘박물관·미술관진흥위원회’ 조항을 삭제하고 이 위원회의 기능을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위원회로 통합함: 성격이 상이한 두 개의 심의·자문기구가 공존하던 것을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하여 간소화한 조치로 보이나, 원래 전자의 진흥위원회는 ‘박물관·미술관진흥시책’의 수립·시행과 연계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서 설치되었던 것임. 이러한 위원회를 폐지하고 박물관·미술관 정책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아닌 문화재청 소관 문화재위원회에 정책심의기능을 부여한 것은 그 실효성 있는 운영을 기대하기 어렵게 함
- 이후 이러한 취약성으로 인해 ‘박물관정책위원회(가칭)’ 설치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현재까지 현실화되지는 못함

## 다. 법적 분류체계로서의 ‘사립’: 설립·운영주체 구분의 복잡성 및 쟁점

□ ‘사립’이라는 법적 범주의 복잡성과 공/사 경계의 혼란

○ ‘사립’=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 외 모든 설립·운영주체 포괄

- 현행 「박미법」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에 따라 박물관·미술관은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국립, 공립, 사립, 대학 박물관·미술관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 중 사립박물관·미술관은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미술관으로 규정함
- 국립, 공립, 대학 박물관·미술관이 각각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으로 설립·운영주체가 명확하게

한정되어 있는 반면, 사립의 경우는 이 국가, 지자체, 대학을 제외한 모든 설립·운영주체를 포괄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음

○ ‘사립’ 아닌 사립관들: 국가/지방자치단체 외 공공기관 및 공적 자원 출연 사례도 포함

- 「박물관법」에서 사립관은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한 법인으로 그 설립·운영주체를 규정했다가, 「박미법」 제정 시에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확장됨
- 이때의 ‘사립’이라는 범주구분은 사인(私人)들로 구성된 민간영역의 주체들을 구체적으로 지칭한다기보다는 공법(公法)과 사법(私法)을 구별하는 법체계로부터 기인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 일반 사인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민법」과 상인이라는 특수한 사인에게 적용되는 법으로서 「민법」에 대한 특별법이라 할 「상법이 이에 해당함: 사법은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상의 기본원리로 삼고, 경제생활관계 및 친족생활관계와 같은 사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함(김학동, 2010)
-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때 「박미법」의 적용대상에 국한해 보면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의 경우, 공법과 사법의 구별을 적용하지 않는 포괄성을 띠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국유재산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공공단체’ 등을 아우르며, 국가 및 지자체로 한정하기 어려운 사례를 모두 ‘사립’의 범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공공기관’이나 ‘공공단체’로서 설립·운영주체가 특정되지 않더라도 「박미법」의 설립 및 운영 관련 경비 일부 보조 조항을 근거로 설립 시의 기본재산 또는 자본금을 국가가 출연한 경우 또는 연간운영비 지출액을 초과하는 경비를 국가가 지원하는 경우도 ‘사립’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음
- 심지어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을 작성하는 기본 데이터인 ‘운영현황보고’ 자료에 의하면,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관(진도군 소전미술관)이 사립관으로 분류되어 있기까지 함: 이는 단순한 입력 오류로 간주할 수도 있으나, 「박미법」의 설립·운영주체에 따른 분류체계의 모호성과 혼란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고 하겠음
- 현재 위 자료에 의해 사립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곳 중 지자체 설립(공립) 및 지자체 매입 추진 2개관을 비롯해, 「공운법」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 및 「국유재산법」에 의한 공공단체,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37개관 정도로 확인됨: 애초에 공공기관의 성격으로 설립된 것을 기준으로 작성했으며, 이후 매각되거나 공공기관 지정 해제가 되어 현재는 공공기관의 법적 위상을 갖지 않는 경우를 별도 표기함
- 이에 더해 의재미술관의 경우, 건립 당시에 미술관자료 및 민간후원뿐 아니라 국고 40억 원이 투입되어 재단법인을 설립했는데, 국고의 비중이 50% 이상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됨. 당시 국고는 미술관 건립비용으로 충당되었음. 또한 덕유산국립공원 내에 미술관이 설립된 점은 미술관 설립승인 시에 국립공원인 산지 사용 및 벌목 허가 등의 인허가 의제처리가 이루어진 것이라 하겠음. 최근 건물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자체를 통해서 국고 16억 원을 지원받았다고 하며, 매년 인건비 지원을 비롯한 국고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음.<sup>6)</sup> 이러한 경우, 「공운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대상 요건 중 정부가 50% 이상의 지분을 갖는 것에 해당할 수 있으며, 총수입액의 50% 이상이 정부지원액인 경우에도 해당할 수도 있음. 따라서 설립·운영주체의 법적 성격뿐 아니라 설립·운영에 투입된 재원의 성격을 함께 반영하여 법적 분류체계를 제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 관련 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등)** ① 이 법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이 법과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이 법에서 그 법률을 따르도록 한 때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3조(자율적 운영의 보장)** 정부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기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되고 정부가 출연한 기관
2. 정부지원액(법령에 따라 직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기관
3.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4. 정부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단독으로 또는 두개 이상의 기관이 합하여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설립하고, 정부 또는 설립 기관이 출연한 기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지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정부지원액과 총수입액의 산정 기준·방법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실상 지배력 확보의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한다.

1.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 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2. 기타공공기관: 제1호에 해당하는 기관 이외의 기관

6) 본 연구의 현장사례연구 인터뷰 중 일부 발췌, 2022.

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른 법률에 따라 책임경영체제가 구축되어 있거나 기관 운영의 독립성,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높은 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자산규모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자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자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수입액 및 총수입액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방법 및 제5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의 종류와 분류의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공공기관 등의 지정 절차)**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을 해제하거나, 구분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제4조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설된 경우: 신규 지정

2.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민영화, 기관의 통합·폐지·분할 또는 관련 법령의 개정·폐지 등에 따라 이 법의 적용을 받을 필요가 없게 되거나 그 지정을 변경할 필요가 발생한 경우: 지정 해제 또는 구분 변경 지정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이하 “주무기관”이라 한다)의 장과 협의한 후,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해제 또는 변경지정할 경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존의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을 함께 고시할 수 있다.

④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지정해제와 고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기관 신설에 대한 심사)** ① 주무기관의 장은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신설하고자 할 때에는 그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그 기관 신설의 타당성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법률안에 정부의 출연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기관

2. 정부지원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으로 추계되는 기관

3. 법률안에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합하여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기관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관 신설 및 재정지원 등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관 신설의 타당성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총수입액: 해당 기관이 사업을 수행하거나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아 획득한 수입액과 이에 파생하여 발생한 수입액 중 미래 상환의무가 있는 금액 등을 제외한 것
- ※ 정부지원액: (1) 출연금, 보조금 등 정부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및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른 부담금 등 법령상 강제규정에 따라 민간 등으로부터 이전받은 수입액, (2) 법령에 당해 기관의 업무로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에 규정된 위탁근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로 인한 수입액 또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법령의 근거에 따라 부여된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이 경우 수입액은 수수료·입장료·사용료·보험료·기여금·부담금 등 그 명칭에 불구하고 위탁업무 또는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모든 수입액을 말한다), (3) (1)과 (2)의 운용으로 발생한 부대수입액

[표 2-30] 설립·운영주체가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사립박물관·미술관' 목록

설립/운영주체 유형	설립(관리)/운영주체명	근거법령/소관부처	박물관·미술관
국가/특수법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법」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국가/특수법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문체부/국민체육진흥공단 문체부/국민체육진흥공단 문체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문체부)/ 「문화예술진흥법」 (문체부)	서울올림픽기념관 (후관) 소마미술관 아르코미술관
국가/특수법인 (기타 공공기관)	문체부/예술의 전당	「문화예술진흥법」 (문체부)	한가람 디자인미술관 한가람미술관 서울서예박물관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 (교육부)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국가/특수법인 (준시장형 공기업)	공군본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행안부/국토부)	제주항공 우주박물관
국가/특수법인 [→기업]	한국주택은행 [→(주)국민은행]	「한국주택은행법」/ (2001. 국민은행에 합병)	복권박물관
국가/특수법인 (공공기관 지정대상 제외)	한국은행	「한국은행법」	한국은행 화폐박물관
국가/특수법인 (기타 공공기관)	전쟁기념관사업회	「전쟁기념관사업회법」	전쟁기념관
특수법인	농협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	농업박물관

설립/운영주체 유형	설립(관리)/운영주체명	근거법령/소관부처	박물관·미술관
국가/특수법인 (시장형 공기업)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공사법」 (산자부)	전기박물관
	강원랜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산자부)	강원랜드뿌리관
국가/특수법인 (준시장형 공기업)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자원공사법」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대청댐물문화관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국토부)	LH토지주택박물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법」 (국토부)	철도박물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방송통신위원회)	한국광고박물관
	한국마사회	「한국마사회법」 (농축산부)	말박물관
	한국조폐공사	「한국조폐공사법」 (기재부)	한국조폐공사 화폐박물관
국가/특수법인 (기타 공공기관 →2015.공공기관 해제)	한국거래소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200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금융위원회)	자본시장 역사박물관
국가/특수법인 (기타 공공기관 →2022.공공기관 해제)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거래법」(197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위원회)	증권박물관 증권박물관(부산)
국가/특수법인 (기타 공공기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과기정통부)	지질박물관
국가/공익법인 (현충시설) *국가소유기념관/ 위탁운영	국가보훈처/ (사)국제평화기념사업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유엔평화기념관
	국가보훈처/ (사)안중근의사숭모회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안중근의사기념관 백범김구기념관

설립/운영주체 유형	설립(관리)/운영주체명	근거법령/소관부처	박물관·미술관
	(사)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 협회		
	국가보훈처/ (사)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 협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처)	매헌윤봉길의사 기념관
국가/공익법인	의재문화재단		의재미술관
지자체	진도군	「진도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진도군)	소전미술관
지자체/특수법인	세종문화회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설립·운영 조례」 (서울특별시)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경상북도	「재단법인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설립 및 지원 조례」 (경상북도)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경북문화재단	「경북문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경북문화재단 문화재연구원 박물관
	부천산업진흥원	「부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부천시)	부천 로보파크전시관
지자체/공익법인 (현충시설)	서울시/(사)도산기념사업회	*강남구에 건물 기부채납/사업회가 운영권 보유	도산안창호기념관
지자체/지방공기업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거제시)	포로수용소 유적박물관 (포로수용소유적공 원 내 전시시설)
영리형 뮤지엄기업 [→지자체 매입/국가 지원 추진중 <sup>7)</sup> ]	(주)제주평화박물관 [→제주도/문화재청]	-	제주평화박물관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구성.

7) <http://jeju.news1.kr/news/articleView.html?idxno=48369>, 참고.

□ ‘비영리기관’이라는 규정과 비영리/영리의 현실적 구분 부재: 법제도 내에서의 상충성

○ 「박미법」의 박물관·미술관 정의 조항의 한계: ICOM 윤리강령 및 국제협약 준수 규정과 상충

- 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정의는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로서 ‘비영리기관’의 정의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
- 그러나 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제5항은 “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회의 윤리강령과 국제협약을 지켜야 한다”고 명시함
- 현행법에서 학예사는 박물관·미술관의 전문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박물관·미술관이 수행하는 사업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직원을 의미하므로, 이 직원들에 대해 ICOM 윤리강령 및 국제협약 준수를 의무화한 것은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주체 및 그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ICOM 윤리강령 및 국제협약의 준수를 전제로 하는 것임
- 또한 ICOM의 윤리강령은 ICOM의 뮤지엄 정의를 토대로 하여 성립되는 것인 만큼 「박미법」이 이 정의를 준수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
- 그러나 ICOM의 뮤지엄 정의에서 규정한 ‘비영리성’이 「박미법」 본문의 박물관·미술관 정의에 명시되지 않고, 「상법」에 따른 법인·단체 및 개인까지 설립·운영주체로서 허용함으로써, 「박미법」을 구성하고 있는 조항 간의 상충 문제 또는 자의적 해석의 문제가 발생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7., 2009.3.5., 2016.2.3.>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6조(박물관·미술관 학예사)**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학예사는 1급 정(正)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및 준(準)학예사로 구분하고, 그 자격제도의 시행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학예사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실무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자격요건의 심사와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준학예사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2019.11.26.>

④ 제3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12.30.>

⑤ 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의 윤리 강령과 국제 협약을 지켜야 한다.

- 「박미법」에 ‘비영리성’이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박물관·미술관 정의에 의한 공공적인 설립목적 및 기능(문화·예술·학문의 발전 및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평생교육 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한 각 분야별 전문자료의 수집, 관리, 보존, 조사, 연구, 전시, 교육 기능)은 ICOM 윤리강령에 의한 ‘비영리의 항구적 기관’이라는 정의를 충족함으로써만 온전하게 실행될 수 있는 것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비영리법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은 법인을 말함: 이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이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등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고, 비영리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하여 그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영리행위는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함
- 비영리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통해 설립되는 데 비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는 주무관청에 ‘등록’만 하면 되는데,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하며,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 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함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만큼, 이 법은 지원사업의 선정, 조세감면, 보조금 환수 및 벌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이러한 법적 규정은 세법에 따른 세제혜택과도 연동하는데, 「법인세법」에 따른 ‘지정기부금단체’(비영리법인),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법인이 아닌 비영리민간단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공익법인등’(지정기부금단체 및 기부금대상민간단체도 포함)이 이에 해당함
- 이와 같은 국내법의 영리/비영리 구분을 바탕으로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주체를 살펴보면, (1) 공공부문(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출연·설립·운영하는 사립박물관·미술관, (2) 기업(인) 설립·운영하는 사립박물관·미술관 (3) 기업 외 비영리법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박물관·미술관, (4)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사립박물관·미술관 (5) 기업형 박물관·미술관 영리법인(설립·운영주체가 박물관 설립·운영을 통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영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으로 영리/비영리가 복잡하게 혼재함을 알 수 있음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사립박물관 358개관 중 318개관의 설립·운영주체를 확인한 결과, 개인사업자 101개관(31.8%), 기업(인) 설립 외 비영리법인 85개관(26.7%), 기업형(주식회사 등) 63개관(19.8%), 기업(인) 설립 38개관(11.9%), 공공부문 31개관(9.7%) 등으로 나타남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사립미술관 179개관 중 151개관의 설립·운영주체를 확인한 결과, 개인사업자 87개관(57.6%), 기업(인) 설립 33개관(21.9%), 기업(인) 설립 외 비영리법인 14개관(9.3%), 기업형 10개관(6.6%), 공공부문 7개관(4.6%)으로 나타남

[표 2-31] 영리/비영리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특성 비교

구분	해설	비고
법인	<p><b>특수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정책상 필요나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민법」 또는 「상법」 외의 특별법(개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li> </ul>	공공부문
	<p><b>비영리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법」에 의해 설립되는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li> <li>• 공익법인: 사단법인과 재단법인 중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에 열거된 공익사업을 따라 '협회, 영위하는 법인</li> <li>• 「민법」 외에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립되는 재단법인: 학교법인(「사립학교법」), 의료법인(「의료법」),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사업법」) 등</li> <li>• 법인으로 보는 단체: 「국세기본법」에 의해 법인이 아님에도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외형적으로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형태)</li> </ul>	비영리/법인 성격에 따라 '협회, 문중, 조합, 종교 등'에 따른 유형별 세분
	<p><b>영리법인*</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법」법인: 「상법」에 의거하여 영리목적에 위해 결합한 사람의 집단</li> <li>• 기본적으로 사단법인에 속함(법인의 사업이익을 구성원 또는 사원 개개인에게 배분)</li> <li>•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조합(회사 형태가 아니라 법인격 없는 '조합체(등기 가능)')</li> </ul>	영리
개인사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으로 영리단체에 속함. 단, 임의단체를 구성하면서 상거래적인 이유로 단체의 대표자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법 또는 형태만 영리단체이고 내용적으로는 비영리단체</li> <li>• 임의단체: 설립자 및 재단 등이 임의로 구성.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음(대부분의 경우 임의단체로 운영하면서 상거래 등의 필요에 의해 임의단체의 대표자가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도 많음)</li> <li>• 구분: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고유번호 부여 단체(임의단체: 비영리 사업만 가능)</li> </ul>	영리/비영리

※ \* '영리법인'의 경우, 박물관·미술관 설립주체로서는 공기업을 제외하고 다시 세 가지 경우로 구분됨:  
 (1) 영리법인(모기업)이 문화재단과 같은 공익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이 공익법인 또는 재단법인이 박물관·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2) 영리법인(모기업)이 직접 박물관·미술관을 설립하여 기업 소속기관으로 운영하는 경우,

- (3) 영리 목적으로 박물관·미술관을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을 설립하였거나, 박물관·미술관 운영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영리를 추구하는 영리법인의 경우(기업형 박물관·미술관 영리법인)
  - 기업박물관·미술관[(1), (2)]과 기업형박물관·미술관[(3)] 구분
- ※ \*\*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리와 비영리 성격이 혼재하며, 현행법상 비영리임을 분명하게 특정할 수 있는 주체는 ‘고유번호 부여 임의단체’에 한정됨

○ 비영리기관으로 간주되는 ‘등록 박물관·미술관’이라는 법적 위상의 모순: 법과 현실의 괴리

- 현실에서는 위와 같이 영리/비영리의 주체들이 혼재하고 있으며, 최근 개인사업자뿐 아니라 영리법인인 기업이 별도의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직접 기업 소속으로 설립·운영하는 경우가, 영리 목적으로 박물관·미술관 회사를 설립·운영하는 경우도 급증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현실과는 달리, 각종 법률에 의한 조세감면, 행·재정적 지원이나 특례 등은 기본적으로 등록 박물관·미술관, 나아가 박물관·미술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비영리의 공익적 활동을 하는 기관으로 간주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따라서 「박미법」이 변화한 현실에 기초하여 박물관·미술관의 영리/비영리가 혼재하는 상황을 법적으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체계화하여야만 이러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공익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세제혜택과 지원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상황은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주체들도 체감하고 있는 상황으로, 영리형과 비영리형이 혼재하는 데에 대한 문제제기는 물론, 이에 대한 체계적인 구분과 지원·혜택의 연계를 통한 박물관·미술관의 국민적 신뢰도 향상 및 운영의 질적 제고를 요청하는 입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나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지 못함
- 특히나 영리형 운영은 고액의 관람료 등을 부과하여 국민의 접근성 및 문화권을 보장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며, 소장자료의 매매 및 알선, 거래의 중개 등과 같이 박물관·미술관의 정체성에 반하는 상업적 활동을 하는 사례들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고 나타나는데, 현행의 「박미법」이 이에 관한 명확한 규정과 정책적 입장이 부재한 데 대한 문제제기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립’으로 통칭되어 있는 복잡한 설립·운영의 주체 및 재원에 따른 분류체계를 재정립하고, 영리/비영리에 대한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기준과 정책방향을 명확하게 세우는 것이 시급함

[표 2-32] 사립박물관의 설립·운영주체 구분 및 비중

(n=318)

대분류	소분류	사립박물관 수	비율(%)
공공부문	국가/특수법인	4	31 9.7%
	국가/공익법인	5	
	국가/기타 공공기관	1	
	특수법인	3	
	시장형 공기업	2	
	준시장형 공기업	6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1	
	기타 공공기관	4	
	지자체/특수법인	2	
	지자체/공익법인	1	
	지방공사공단	1	
	지자체 매입추진	1	
	기업(인) 설립	공익법인	
개인사업자		3	
기업(인) 소속		24	
기업(인) 설립 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28	85 26.7%
	「민법」법인	14	
	「민법」 외 법인	7	
	종교관계 비영리법인*	36	
개인사업자	비영리(고유번호 부여 단체)	25	101 31.8
	영리(사업자등록)**	76	
기업형	주식회사, 유한회사, 조합 등	63	63 19.8%
합계		318	318 100%

※ \*: 종교관계 비영리법인은 「문화관광부 종교법인 행정지침」 제3조(용어의 정의) 순수신앙활동, 종교 교리의 전파, 종교단체의 재산관리, 종교간 연합활동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으로 구분함

※ \*\*: 개인사업자 중 사업자등록 유형별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40개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26개관, 유형 미확인 기관이 10개관임

[표 2-33] 사립미술관의 설립·운영주체 구분 및 비중

(n=151)

대분류	소분류	사립미술관 수		비율(%)
공공부문	국가/특수법인	5	7	4.6%
	지자체/특수법인	1		
	지자체/공익법인	1		
기업(인) 설립	공익법인	19	33	21.9%
	비영리법인	2		
	기업(인) 소속	12		
기업(인) 설립 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7	14	9.3%
	「민법」법인	4		
	「민법」 외 법인	1		
	종교관계 비영리법인*	2		
개인사업자	비영리(고유번호 부여 단체)	37	87	57.6%
	영리(사업자등록)**	50		
기업형	주식회사, 유한회사 등	10	10	6.6%
합계		151	151	100%

※ \*: 종교관계 비영리법인은 「문화관광부 종교법인 행정지침」 제3조(용어의 정의) 순수신앙활동, 종교 교리의 전파, 종교단체의 재산관리, 종교간 연합활동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으로 구분함

※ \*\*: 개인사업자 중 사업자등록 유형별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36개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13개관, 유형 미확인 기관이 1개관임

## 제3장 박물관·미술관 인력정책과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

1절 박물관·미술관 인력정책 개관: 특징과 문제점

2절 사립박물관 인력지원사업

3절 사립미술관 인력지원사업

4절 사립박물관·미술관 인력지원사업의 쟁점과 과제



# 1절 박물관·미술관 인력정책 개관

## : 특징과 문제점

### 가. 사립박물관·미술관 인력 규모 및 학예사 자격제도 현황

#### 1) 인력 규모 현황: 사립관의 인력 과소성

□ 2021년 기준 사립박물관의 학예인력 전국 평균은 1.9명으로 나타남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에 따르면, 박물관 1개관 당 평균 박물관 직원은 11.19명, 학예직원은 3.53명, 소장자료는 15,193점, 연 관람 인원은 약 33,097명으로 나타남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지방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수도권이 지방보다 시설 수는 적지만 시설 평균 인력 및 소장자료 관점에서 운영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 2021년 기준 박물관 운영주체별 평균지표 현황

(n=900, 명, 점, 명)

운영주체	박물관수	1개관 당 평균			
		직원 수	학예인력 수	소장자료 수	연 관람인원
국립박물관	51	63.53	21.63	89,125	145,946
공립박물관	386	10.48	2.87	6,060	33,348
사립박물관	358	6.23	1.88	12,546	25,769
대학박물관	105	5.33	2.80	21,880	2,348
총계	900	11.19	3.53	15,193	33,097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전국 기준 사립박물관(358개소)의 학예인력은 평균 1.88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박물관 학예인력 3.53명보다 1.7명 적은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나타난 사립관 중 독립기념관 등 보존처 소속 박물관 및 타 부처 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국·공립으로 명시되지 않은(예: 경남 도시주택전시관의 경우 LH 소속 이지만, 사립으로 분류됨) 경우를 제외할 경우 평균 학예인력 수는 더욱 낮아질 수 있음

- 사립관 운영 특성상 학예직으로 관장 외에 별도의 학예인력 배치가 어려운 상황임을 알 수 있음
- 사립박물관 인력 중 일반직원의 평균 인력수가 3.7명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학예직 외 전문직 인원의 경우 평균 2.0명으로 인턴을 제외하고 가장 낮게 나타남
- 인력 규모가 작은 사립관에서 학예인력보다 행정 및 시설 관리를 위한 일반 직원 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표 3-2] 전국 사립박물관 인력 평균

(n=358)

지역	박물관수	학예 인력	기타 인력			자원 봉사자
			학예직 외 전문직수 (교육, 전시 등)	일반직원	인턴	
서울	69	3.2	3.9	6.2	1.1	35.6
부산	8	2.4	1.5	5.8	2.0	16.0
대구	6	1.8	1.0	1.3	0.0	1.0
인천	12	2.1	1.0	2.4	0.0	8.5
광주	3	1.0	1.0	1.0	1.0	0.0
대전	4	2.0	2.0	1.5	0.0	0.0
울산	1	2.0	1.0	1.0	0.0	0.0
세종	4	2.7	0.0	0.0	0.0	11.5
경기	63	2.0	2.1	2.0	1.0	9.8
강원	42	1.6	1.5	4.0	1.0	13.7
충북	12	2.8	3.0	2.0	1.0	3.0
충남	19	4.9 <sup>8)</sup>	2.7	11.6	1.0	7.0
전북	9	1.1	5.0	1.5	1.0	7.0
전남	18	1.5	1.0	1.4	0.0	1.5
경북	22	2.3 <sup>9)</sup>	2.0	2.2	1.5	4.3
경남	22	3.4 <sup>10)</sup>	2.8	7.5 <sup>11)</sup>	2.0	71.8 <sup>12)</sup>
제주	44	1.4	3.1	11.1	2.0	1.5
<b>총계/ 전체 평균</b>	<b>358</b>	<b>1.88</b>	<b>2.0</b>	<b>3.7</b>	<b>0.9</b>	<b>11.3</b>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8) 충남 천안시에 위치하고 있는 독립기념관은 보존처 소속으로 국·공립박물관으로 명시되지 않고 사립관으로

□ 2021년 기준 사립미술관의 학예인력 전국 평균은 2.16명으로 나타남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따르면, 미술관 1개관 당 평균 직원은 10.34명, 학예직원은 3.11명, 소장자료는 675점, 연 관람인원은 약 27,120명임
- 이 중 사립미술관의 학예인력 평균은 2.16명으로 국립의 75명, 공립의 평균 4.66명보다 훨씬 적은 것을 알 수 있음
  - 사립미술관 학예인력은 사립박물관 학예인력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일반 직원과 학예인력과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다만, 전체 인력 수로 봤을 때 박물관에 비하여 미술관 전체 인력을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3-3] 2021년 기준 미술관 운영주체별 평균지표 현황

(n=271, 명, 점, 명)

운영주체	미술관 수	1개관 당 평균			
		직원 수	학예인력 수	소장자료 수	연 관람인원
국립미술관	1	640	75	8,782	823,455
공립미술관	76	14.84	4.66	1,108	27,044
사립미술관	179	5.39	2.16	474	24,382
대학미술관	15	4.67	1.93	351	7,096
총계	271	10.34	3.11	675	27,120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서울지역 사립미술관 학예인력 수가 가장 높으며, 상대적으로 사립미술관 수가 적은 지역일수록 학예인력 평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강원도의 경우 미술관 수가 16개소로 서울 경기 지역 다음으로 많은 것에 비하여 학예인력 수보다 일반 직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분류됨. 학예인력만 39명이 제시되고 있어, 충남 사립관 학예인력 평균을 높이는데 큰 영향을 미침.

- 9) 경북 안동시의 경상북도독립운동기념관 역시 충남 천안시 독립기념관과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공립인 보훈처 소속기관이나 사립관으로 분류됨. 학예인력이 7명 배치되어 경북 전체 평균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침.
- 10) 경남 진주시 토지주택박물관의 경우 사립 1종으로 표기되어있으나 LH 공사가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 공시된 박물관 명칭에서도 LH토지주택박물관으로 호칭이 명시되어있음. 학예인력 수가 14명으로 동일 지역의 타 사립박물관의 학예 인력이 2명 미만인 것에 비하여 상당히 많은 인력이 배치되어 경남 학예인력 평균에 영향을 미침.
- 11) 경남 거제시 외도조경식물원의 경우 식물원 특성상 학예인력이 아닌 식물원 관리 인력으로 35명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경남도 전체 평균을 높임.
- 12) 경남 양산시 통도사성보박물관의 경우 자원봉사자 명수를 150명으로 제시함.

[표 3-4] 전국 사립박물관 인력 평균

(n=179)

지역	미술관수	인력현황(사립/사립대학)				자원 봉사자
		학예 인력	기타 인력		인턴	
			학예직 외 전문직수 (교육, 전시 등)	일반 직원		
서울	35	3.9	3.9	5.9	2.1	87.7
부산	4	2.8	1.0	1.0	1.0	3.0
대구	-	-	-	-	-	-
인천	3	1.5	2.0	1.5	0.0	0.0
광주	8	2.6	1.0	1.3	1.4	40.0
대전	3	-	-	-	-	-
울산	-	-	-	-	-	-
세종	-	-	-	-	-	-
경기	39	2.3	2.1	1.8	1.4	152.2
강원	16	1.7	3.4	4.4	1.0	7.8
충북	6	2.0	1.0	0.0	1.3	0.0
충남	6	1.6	2.5	2.5	1.0	0.0
전북	11	2.5	2.0	2.6	1.0	1.0
전남	24	1.7	1.5	1.0	1.5	2.3
경북	5	2.6	1.0	1.5	1.3	3.0
경남	5	3.5	1.0	1.7	1.0	1.5
제주	14	1.5	1.7	4.9	1.0	0.0
<b>총계/ 전체 평균</b>	<b>179</b>	<b>2.16</b>	<b>1.9</b>	<b>2.3</b>	<b>1.2</b>	<b>23.0</b>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대구, 대전, 울산, 세종의 경우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 제공된 데이터가 없거나, 지역 내 등록 사립미술관이 없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 2018년<sup>13)</sup>과 2021년을 비교하였을 때, 사립박물관의 경우 1관당 직원수, 학예인력 평균이 줄었으며, 사립미술관의 경우 약간 상승하였으나 그 상승 폭이 크다고 보기 어려움

○ 사립관의 경우 박물관의 경우 직원 수는 줄어들었으며, 학예인력 수 역시 1명도 채 상승하지 못함을 알 수 있음

-국·공립관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직원 수와 학예인력수 모두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국립미술관의 경우 청주관 등 인프라 확장에 따른 인력 확충 등으로 인하여 직원 수 및 학예인력수의 증가가 매우 큰폭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음

○ 상대적으로 미술관의 경우 직원 수와 학예인력이 모두 상승하였으나 역시 평균 1명 이하의 상승으로 큰 상승 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립박물관의 경우 2018년 대비 2021년 1관당 소장품 평균수가 상승된 것<sup>14)</sup>에 반하여 인력 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는 소장품 1점당 관리 인력 수급 등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음

-반면 사립미술관의 경우 2018년 대비 2021년 1관당 소장품 평균수가 감소<sup>15)</sup>했는데, 인력수는 소폭이지만 상승했음을 알 수 있음

[표 3-5] 2018년과 2021년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인력 평균 비교

2018년 기준	박물관-직원수	박물관-학예인력수	미술관-직원수	미술관-학예인력수
국립	49	8.57	337	45.00
공립	9	1.28	10	2.18
사립	7	1.65	5	1.86
대학	5	1.94	3	1.40
총계	10	1.92	8	2.09
2021년 기준	박물관-직원수	박물관-학예인력수	미술관-직원수	미술관-학예인력수
국립	63.53	21.63	640	75
공립	10.48	2.87	14.84	4.66
사립	6.23	1.88	5.39	2.16
대학	5.33	2.80	4.67	1.93
총계	11.19	3.53	10.34	3.11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18, 2021, 『2018,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13) 2018년 <박물관·미술관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었으며, 해당 계획은 2018~2023년 5개년 계획으로 현재 시점의 인력 증가에 대한 기준점으로 삼았음.

14) 사립박물관 기준 2018년 1관당 평균 소장품수는 11,577점이었으며, 2021년에는 1관당 평균 소장품수가 12,546점인 것으로 나타남.

15) 사립미술관의 경우 2018년 1관당 평균 소장품 수가 606점 이었던 것에 반하여 2021년의 경우 467점인 것으로 나타남.

## 2) 학예사 자격제도 현황: 자격증 취득자의 증가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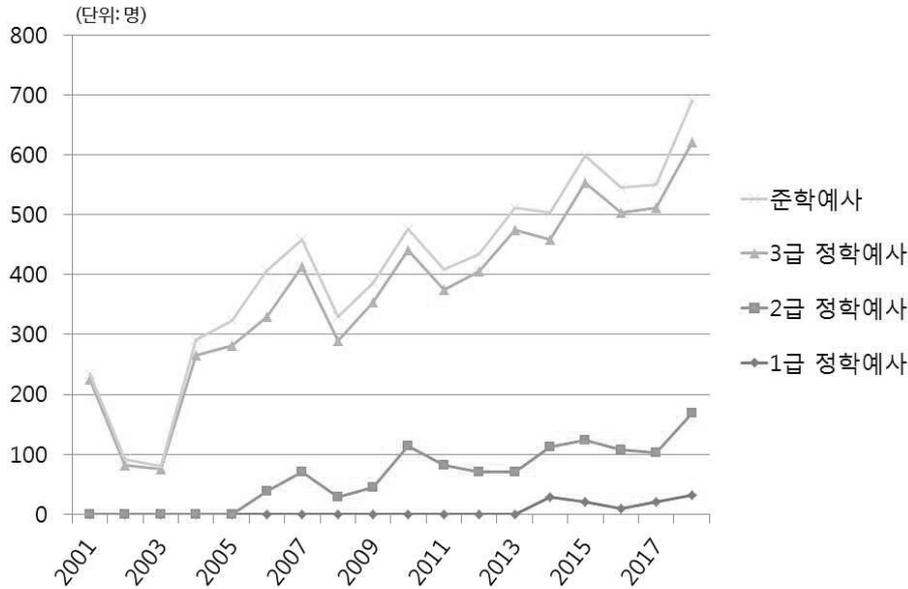
### □ 사립박물관·미술관 인력 관련 제도로는 학예사 자격제도가 가장 대표적임

- 「박미법」에서 학예사에 대한 역량 범위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지 않으며, 학예사 제도를 통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의 사업을 담당하는 전문 자격 확보를 명시하고 있음
  - 동법 제6조에 따르면 “박물관과 미술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사업을 담당하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이하 “학예사”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학예사가 ‘어떠한 특수성을 지니는’ 인력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
  - 제6조제5항에 학예사는 국제박물관협회의 윤리강령과 국제 협약을 지켜야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국내 법령 기준으로 학예사의 역량과 특수성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보기 어려움
- 학예사와 유사한 전문연구인력으로서 도서관 사서의 경우에는 「도서관법」 제 43조 1항에서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도서관 및 문헌정보에 관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에게 사서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도서관 및 문헌정보에 관한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사람이라는 역량을 제시하고 있음
- 문화예술정책과 관련한 타 법령(예: 「지역문화진흥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등) 등에서도 해당 분야 전문인력(예: 지역문화전문인력, 여가전문인력)의 역량과 역할을 정의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학예사의 경우 자격증을 취득을 중심으로 규정함<sup>16)</sup>
- 2018년 발급 통계 기준으로 총 7,322명의 자격증 소지자가 있었으며, 지속적인 증가 추이로 봤을 때, 2022년 기준 8,000여명의 자격증 소지자 수를 예상할 수 있음(김혜인 외, 2018)<sup>17)</sup>
  - 학예사 자격제도의 경우, 학예사 등급을 1급 정학예사, 2급 정학예사, 3급 정학예사, 준학예사로 구분하고 있으며 학예사 등급별 자격요건은 학위별 차이가 있으며 각 이전 자격을 취득 후 재직 경력이 일정 기간 지난 후 승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학예사 자격증 발급 통계(2018년 기준)를 살펴보면, 총 7,322명의 자격증 소지자가 있으며 1급 정학예사 109, 2급 정학예사 1,027명, 3급 정학예사 5,525명, 준학예사 661명으로 집계됨
  - 3급 정학예사 취득 후 5년이 지나면 2급, 2급 취득 후 7년 재직경력을 충족하면 1급 정학예사

16)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 8항에 따르면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제3조 5항에 따르면 “여가전문인력”이란 여가교육, 여가 조사 및 연구, 여가시설 운용 및 관리, 여가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여가산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함.

17) 김혜인 외(2018)에 기초한 데이터를 통해 연간 약 100명 내외의 증가율을 보인다고 가정했을 때, 8,000여 명을 유추할 수 있음.

자격 취득이 가능하나, 2001년 3급 취득자 수가 이미 200명을 상회한 점에 비해 2018년의 1급 학예사 수가 109명인 것은 실제 관련 분야 경력의 중도이탈이나 퇴직, 승급신청을 하지 않을 사정의 발생 등 경력중단 요소가 크다고 볼 수 있음



〈그림 3-1〉 학예사자격증 발급 통계

(2018년 기준)

※ 자료: 김혜인 외, 2018, 『박물관 및 미술관 종합발전 계획 수립 연구』.

□ 『박물관 및 미술관 종합발전 계획 수립 연구』(2018)에서는 학예사 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제기하고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를 제안하였음

- 이와 관련해 전문인력에 대한 실태조사가 우선되어야 함을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한 개선 필요성이 강조됨
  - 2018년 작성된 보고서에서는 박물관·미술관에 종사하는 학예인력의 전체 규모(2018년 기준 자격증 소지자 7,322명) 외 고용형태, 처우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이 미흡하며, 학예사 자격증과 실제 채용이 연동되지 않는 데다 경력인정대상기관의 현실적 한계 등이 발생하고 있어, 학예사 자격제도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관련 설문조사 결과, 학예사 자격제도 개선 필요 이유는 ‘자격제도가 실제 채용과 연동되지 않아서’(36.8%, 1순위),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전문성이나 현실성 문제로 인하여’(33.5%, 2순위)’ 등이 높은 응답률을 기록함
- 또한 좁은 의미의 학예인력을 넘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문적인 교육과정의 마련을 강조함
  - 국·공립관의 행정인력의 경우 순환보직으로 인해 박물관·미술관 시설의 특수성 및 전문성에 대한 인식 및 이해도가 저조한 편임

-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시·교육 외 행정, 경영, 국제교류, 고객관리, 연구출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 필요함
  - 학예사 전문 교육과정의 경우, (예비)학예인력 대상 단기과정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 체계의 한계가 있음을 강조함
- 박물관·미술관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이 보다 더 강조되고 확대됨에 따라(김현경 외, 2017), 문화분야의 중요한 전문인력인 학예사에게도 이에 상응하는 역량이 요구되고 있음
- 문화정책 내 다양한 전문인력과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역할과 역량, 박물관·미술관의 고유 기능을 확장적이고 전문적으로 재정립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상황임(윤소영 외, 2020)

(표 3-6) 문체부 소관 법령에서의 '전문인력' 범위와 관련 사업 주관기관

인력(자격)명	시행근거	주관(시행)기관
인문학 전문인력	「인문학법」 제15조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여가 전문인력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3조	미확인
문화 인력	「문화기본법」 제10조	미확인
한국어교원자격	「국어기본법」 제19조	자격증 발행(국립국어원) 교육(대학)
점역·교정사(점자 전문인력)	「점자법」 제18조	현재 민간자격
국제문화교류전문인력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9조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문학진흥전문인력	「문학진흥법」 제12조	문학번역원, 한국문학관협회, 출판문화산업진흥원 등
문화예술전문인력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무대예술전문인	「공연법」 제14조	재교육(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자격검정위원회 운영(국립극장)
공예문화산업전문인력	「공예문화산업진흥법」 제9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공디자인전문인력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중등 및 고등 교육기관의 건축, 도시, 조경 학과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전문인력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방 양성기관 지정)
사서	「도서관법」 제43조	국립중앙도서관(재교육)
아시아문화중심도시전문인력	「아시아문화도시법」 제14조	광주광역시
콘텐츠전문인력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	한국콘텐츠진흥원

인력(자격)명	시행근거	주관(시행)기관
콘텐츠산업전문인력	「콘텐츠산업진흥법」 제14조	
게임산업전문인력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만화가 및 전문인력	「만화진흥에 관한 법률」 제5조	
음악산업전문인력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	
방송영상산업인력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등)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정기간행물전문인력	「정기간행물법」 제14조	한국잡지협회
(글로벌)출판전문인력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5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인쇄문화산업전문인력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7조	미확인
학예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6조	국립중앙박물관
국제회의전문인력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한국MICE협회, 한국PCO협회

※ 음영으로 표시한 기관은 교육인원이 연간 1천 명 이상의 기관으로 이외의 기관에서 연간 최대 교육인원은 2백 명 정도인 상황임

※ 자료: 김홍규, 2019, 『2019 문화예술교육 전문연수원 건립 타당성 조사 연구』, p.9.

## 나. 고용구조: 학예사 자격제도, 경력인정대상기관, 국고보조사업의 상관성

### □ 정부 지원사업(국고보조사업)에 의존한 사립관의 고용구조 및 그 문제점 가시화

- 사립박물관·미술관에서의 인력 고용은 정부 지원의 인력 사업을 통해 다수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인력 고용은 정부 인력 지원사업을 통해서 다수 이뤄지는 형태로 구조화되어 있음
  - 2000년부터 시작된 학예사자격검정제도에 따라 실무경력 충족의 조건이 학예사자격에 중요요건으로 활용되었으며,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건으로 사립관들이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볼 수 있음(문화관광부, 2007)
- 본 연구의 양적/질적 조사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대부분의 사립관이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점이 관장 및 학예사 모두에게서 높은 비중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그 시급한 개선이 요청되고 있음

## □ 학예사 고용의 이분화된 구조: 국·공립관 vs 사립관

-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의 경우, 정부의 법령과 국제적 기준에 따라 정의되고 있는데, 이는 학계와 문화정책, 박물관·미술관 현장 실무와의 밀접한 연관을 맺으며, 이러한 전문인력으로서의 규정은 국내 상황에 국한된 특수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공통된 경향임
- 사립관의 경우: 이러한 규정에 입각해 사립관의 학예인력 채용은 문화분야의 전문인력으로서 자격제도에 근거하여 채용되고 있는데, 이는 사립관들의 지원사업 의존도가 높은 경향과 맞물려 고착화, 확산되는 경향이 강함
- 국·공립관의 경우: 문화분야 전문인력으로서 학예인력의 자격을 공인하고 있으나, 개별 국·공립관의 채용은 일괄된 자격이나 전공 기준에 의하지 않고 각각의 채용조건에 따라 진행되며, 그 안에서 학예사 자격증 소지 여부는 반드시 필수요건이 아닌 우대 요소로 취급되어지기도 함
- 이러한 경향은 문체부 소속의 국립관들에서 두드러지는데, 국·공립박물관·미술관 운영 모델이 되는 이 국립관들에서 오히려 법정 학예사 자격제도가 필수요건이 아닌 우대요건으로만 인식되는 경향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필요함
  - 기존 연구에서는 이런 점에 대해 학예사 자격제도가 학예인력의 전문성을 입증하고 담보하는 주요한 정책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하기도 했음(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 그러나 이러한 채용방식을 취하게 된 이유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는 현행 학예사 자격제도의 한계점과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음
  - 특히 위의 국립관들이 요구하는 고도의 전문성이 고등교육과정(대학 및 대학원)에서의 전공적합성 및 학위(석사 및 박사학위)와 연계되어 있는 반면, 준학예사 시험을 통해 입직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기가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참고로 도서관 사서의 경우에는 고등교육기관에서의 학력과 전공적합성을 중심에 두고 전문성을 제도화하여, 준학예사 시험에 해당하는 자격시험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음
- 이와 같이 학예사 자격제도가 국·공립관과 사립관에서 다른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어, 학예인력 입장에서는 박물관·미술관 고용 생태계가 국·공립관과 사립관으로 양분되어 있음을 체감하게 됨

## □ 학예사 자격제도의 고용수급 문제와 경력인정대상기관: 사립관·대학관만이 실질적인 경력인정대상기관 역할을 담당

- 학예사 자격제도가 '전문성'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력 상의 전공 분야 제한 없이 누구나 학예사 자격시험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 실제로 이 시험에 합격해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 다수가 박물관·미술관과 관련된 학과의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로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취업하여 준학예사가 되기 위한 경력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충족시키고 있음
  - 현재 이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학예사 자격에 대한 정보를 공지하고 있음: 이 내용은 「박미법」에 의한 법정 사항을 정확하게 공지하고 있지 않아,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제고와 관련해서도 정정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진로 및 전망에 관한 내용에서도 학예사 수요의 증가를 전망하면서도, 취업 여건에 관해서는 추상적으로 ‘취업 경쟁률’이 높을 것이라는 내용만이 제공되고 있으며, 준학예사 시험과 관련한 통계로서는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의 특성상, 응시율과 합격률만을 집계하여 공개하고 있음
- 그런 까닭에 ‘준학예사’ 시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인력교육 및 경력개발 기능이 중요하게 전제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법정 경력인정대상기관인 국·공립관은 ‘준학예사’ 시험 합격자나 ‘준학예사’ 자격 소지자를 채용하지 않고, 등록 사립관 또는 대학관에서만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임
  - 2022년 현재, 등록 국·공립관(국·공립관의 경우 등록 의무화) 외에, 등록 사립관 207개관, 등록 대학관 78개관이 경력인정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폐관, 휴관, 포기, 취소 등의 이유로 지정 해제된 기관이 46개관임: 등록 사립관 및 대학관의 상당 수가 경력인정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음

#### □ 학예인력 고용수급의 중심이 된 사립관: 지원사업에 의존한 불안정고용 일반화

- 사립관에 의존한 학예사 자격제도의 실무 경력기간 취득과 국고보조사업(인력지원사업)에 의존한 사립관의 전문인력(학예사) 채용
  - 학예인력의 이분화된 고용구조가 고착화되어 있는 한편, 학예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자격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공인받고 고용시장에 진입하게 되는데,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등록 박물관·미술관에서의 실무 경력기간임
  - 학예사의 실무경력 확보라는 이해관계와 사립관의 인력수급이라는 이해관계를 동시에 충족시켜 주는 것이 정부의 국고보조사업(학예인력 및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임
  - 사립관에서의 인력 고용이 상당 부분 정부지원사업에 의존해 이뤄지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 지원사업이 1년 미만의 한시적 고용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박물관·미술관의 전문성 확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임
- 등록요건(학예사 1명 이상)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자격(학예사 2명 이상) 충족의 맹점: 자체고용이 아닌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자격 충족
  - 2000년 이후 20년이 지난 현시점(2022년)을 기준으로 제도화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립관에서

의 인력 고용에 있어 정부지원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애초에 「박미법」에 의한 등록요건인 ‘학예사 1명 이상’은 박물관·미술관의 자체 고용 인력 수의 최저기준으로서 규정된 것이었으나, 현재 상황에서 적지 않은 사립관이 이 등록요건을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충족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경력인정대상기관 지정제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
- 즉, 경력인정대상기관이 2명 이상의 학예인력을 채용하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자체 재원에 의한 채용이 아니라 국고지원사업에 의한 1년 이내의 단기 인력채용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심지어 국고지원사업에 의한 인력지원사업 기간에 의해 등록요건인 1명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시기가 발생하기도 함
- 또한 다수의 사립관은 경력인정대상기관의 학예사 2명 이상을 산정할 때 관장을 포함하고 있어, 이는 사립관의 영세성을 말해준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은 법적인 규정이 등록요건이나 경력인정대상기관 자격으로 요구되는 학예사의 고용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이미 이러한 방식이 장기적으로 고착화되어 있어 국고보조사업이 없으면 등록요건이나 경력인정대상기관 자격을 유지하기 어려움

○ 학예사 자격제도 및 학예인력 고용을 지탱하는 사립관 대상 국고보조사업: 법정 경력인정대상기관인 국·공립관의 책임·역할 상실로 인한 문제점 가시화

- 이처럼 학예사 자격제도에서 요구하는 실무경력 인증기관으로서 사립관이 주요한 이해관계자로 위치하게 됨에 따라, 사립관에 대한 인력지원사업은 학예사 자격제도를 유지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요소가 된 것이 현실임
- 이와 같은 현실에 대한 가치판단 이전에,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고 학예사 자격제도 및 학예인력 고용구조에 대한 정책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주목할 점은 첫째, 사립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인건비, 사업비 중에서 직간접적으로 공공재원이 투입되는 비중이 크다는 점이며, 특히나 인건비와 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에 의해서 충당되고 있는 만큼, 사립관의 자원구조에서 공적 자원 비중이 높아 이를 단순히 ‘사유재산’ 영역으로만 인식하기 어렵다는 것임
- 법정 운영현황보고 항목으로 모든 등록관의 재정 현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로 거의 자료공개 및 집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공적 재원에 의한 예산 확보나 운영비 경감에 관한 사항이 정확하게 파악되지 못하고 있음. 그 결과 사립관의 운영현황에서 공적 자원의 비중을 정확히 파악한 위에서 정책설계나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둘째, 학예인력의 양성 및 고용과 관련된 제도 및 지원사업이 이처럼 사립관을 중심으로 불안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 비해, 경력인정대상기관에 당연히 포함되는 국·공립관이 실질적으로 경력인정대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임
- 국·공립관에 비해 영세한 사립관에게 학예인력 양성, 즉 경력개발과 관련된 역할이 전가되어 있고, 고용 면에서도 국·공립관의 적극적인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학예인력의 고용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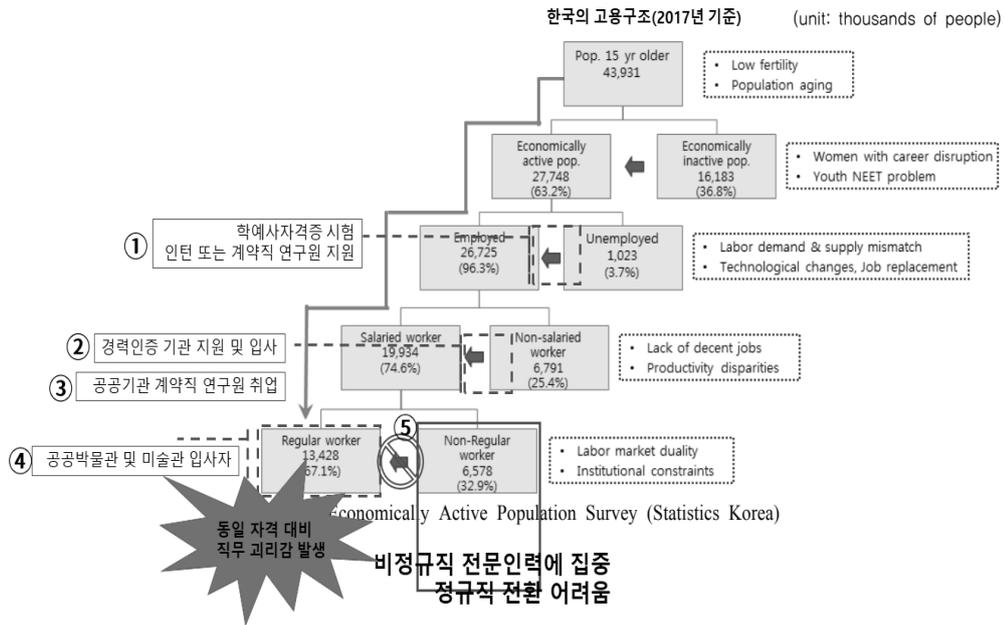
사립관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불안정한 고용과 안정적인 국·공립관 취업을 위한 치열한 경쟁으로 양분화되는 경향을 보임

## 다. 학예사 자격제도와 고용현실의 괴리: 전문성과 고용불안정의 관계

### □ 경력인정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을 통한 전문성 확보 방안 부재: 준학예사 교육 프로그램 부재한 실무경력기간의 운영

- 학예인력의 경우 학사 이상, 대학원 석사 졸업 이상의 학력을 지니고 전문인력으로서 경력인정과정까지 거쳤을 때, 전문성을 인정받아 정학예사 자격을 획득하게 됨  
- 다른 한편으로는 학사졸업 이후 자격시험을 통하여 자격을 취득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도 경력인정기관에서의 실무경력이 필수적임(〈그림 3-2〉 ①번에서 ②번)
- 일반적으로 대학 졸업 후 2년 이상의 숙련 기간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기간 중 예비 학예인력이 국·공립관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자격 취득과 거의 무관하게 학예사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음(〈그림 3-2〉 ⑤번)
- 반면, 사립관을 통해서 실무 경험을 축적하는 경우, 숙련 기간의 고용형태는 1년 미만의 계약직이고, 인건비는 전술한 국고보조사업(정부인력지원사업)에 의해 충당됨(기관 매칭을 하고 있으나, 그 비중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  
- 사립관의 학예사 정규직 채용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높으나, 실제로 다수의 사립관이 규모의 영세성과 운영난을 이유로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학예인력 및 예비 학예인력 인건비를 확보하고 있음: 이는 개인 사립관이 아닌 경우, 즉 기업(인)이 출연한 재단법인 사립관의 경우에도 초기 채용 과정(paths)으로 빈번하게 활용하는 경향을 보임
- 이 과정에서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예비 학예인력은 학예사에 요구되는 전문성을 위한 경력기간을 충족한 뒤 정학예사 자격증을 확보해야 본격적으로 학예인력으로서 고용시장에 신규 진입하게 된다고 할 수 있음(〈그림 3-2〉 ⑤번)
- 이러한 과정은 시험 합격자는 물론 ‘준학예사’가 ‘정학예사’가 되기 위한 수련과정에 있음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수련과정을 위한 표준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므로, 개별 관의 여건에 따라 학예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실무기간을 충족시키게 됨
- 따라서 준학예사 기간을 어떻게 보냈는지는 그 편차가 클 수밖에 없으며, 인력지원사업이 영세한 사립관의 운영보조 성격을 띠면서, 수련과는 거리가 먼 형태의 인력수급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오히려 인력채용을 하는 사립관의 설립·운

## 영주체로부터 인력 역량 부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기도 함



〈그림 3-2〉 한국의 고용구조 내 학예(예비)전문인력의 커리어 패스(paths)

※ 자료원: 통계청, 2017,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Statistics Korea 2017) 재정리.

### □ 학예사 등급제도와 고용 안정성의 연계 취약 고착화

- 학예사 등급제도는 일견 학예사의 전문성 또는 학력·경력에 따른 숙련도가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경향이 있으나, 현실에서는 안정된 일자리의 절대적 부족, 정학예사 등급이 높아져도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일반적임
  - 국·공립관이든 사립관이든 정규직 학예인력 채용 기회는 경력확보 기간을 포함하여 고용시장에 진출한 전문인력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국·공립관의 경우에도, 전문성을 기 확보한 인력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 보다는 다시 계약직 형태로 채용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구조이며, 사립관의 경우에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자체 예산에 의해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함<sup>18)</sup>(〈그림 3-2〉 ②번에서 ③번)
- 이러한 불안정 고용의 확대 내지 일반화 현상은 학예인력의 처우를 열악하게 만들 뿐 아니라, 학예사 등급제도가 현실에서는 거의 작동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음을 말해 줌
  - 예비 학예인력 및 학예인력의 고용 처우를 보면, 국·공립관의 계약직/공무직 채용방식의 증가로 인한 불안정성 증가와 더불어, 사립관에서는 정규직일 경우에도 그 연봉 수준이 국·공립관 계약직 인력의 연봉 수준보다 높지 않은 경향을 보임

18) 현장사례연구분석 결과토대로 작성.

- 이러한 현실은 오랫동안 학예사 등급제도의 현실화(등급 간소화)를 대안으로 검토하게 했으나, 보다 중요한 점은 등급을 간소화하더라도 학예인력의 전반적인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지는 못한다는 점임
- 따라서 준학예사와 정학예사의 등급 간소화와 더불어 보다 장기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은 첫째, 준학예사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상용화, 둘째, 학예인력의 고용 불안정성 및 처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학예인력 고용·노동정책의 개발과 이행이라 할 수 있음
  - 이때 준학예사 교육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공립관의 경력인정대상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역할 의무이행, 학예인력 보수교육의 의무 실시, 관장 및 설립·운영주체 대상의 윤리규정 제정 및 교육 실시 등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임

□ 전시·교육 프로그램 중심의 사립관 운영: 국고보조사업에 의존한 사업비 마련의 한계

- 특히 소규모 사립관일수록 컬렉션에 대한 전문적인 관리 및 연구를 기반으로 중장기적 운영계획에 따라 운영되기보다는 이용자 모객에 용이한 전시, 행사, 교육 등 단기적·일회적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은 기관의 주요 기능인 동시에 관람객들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으로서 중요함
- 동시에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은 기본적으로 소장품 중심의 다양한 연구를 기반으로 함으로써 보장되는 것이며, 소장품 기반 연구 활동은 박물관 및 미술관이 학술활동과 교육활동(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매개하는 데 필수적임
  - 따라서 학예인력의 조사연구 활동을 활성화하여야만 대국민 서비스인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이 보다 지식생산과 공유 차원에서 유의미한 질적 수준을 확보할 수 있음
- 그러나 사립관의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국고보조사업을 재원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업들은 박물관·미술관의 고유한 조사연구기능과는 별도로 전시·교육 프로그램에 특정하여 지원을 하고 있어, 사립관들이 박물관·미술관 기능을 이러한 지원사업에 맞춰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고착화함
  - 이는 한편으로 박물관·미술관의 고유기능에 대한 사립관의 인식과 운영방식을 지원사업에 따라 제한하고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그러한 구조 속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학예인력의 직무 영역과 성격에도 영향을 주게 됨
- 인건비와 마찬가지로 사업비에서도 국고보조사업 의존도가 절대적인 점을 고려한

다면, 이는 국고보조사업이 박물관·미술관의 기능 중 핵심인 조사·연구 및 소장품 보존·관리 부문에서는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내는 현실이기도 함

□ 연구·교육 기능(역량)의 주변화와 전문성의 약화: 연구·교육기관으로서의 박물관·미술관 정체성 및 ‘연구·교육 인력으로서의 학예사 전문성’ 쇠퇴

○ 박물관·미술관은 기본적으로 컬렉션 기반 연구를 수행하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해석을 대중과 공유·소통하는 방식으로 전시, 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 전문적인 기관이며, 이를 수행하는 학예인력의 전문성은 우선적으로 연구 역량에서 발휘되는 것이어야 함

- 최근 ICOM을 비롯한 국제적 차원의 논의와 실천에서도 이러한 연구기능 및 연구역량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야 한다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정책적, 제도적으로 이러한 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기반이 여전히 취약함

○ 게다가 「문진법」 등에서 기본적으로 박물관·미술관을 ‘전시시설’로 규정하고 있는데에서 알 수 있듯이, 박물관·미술관을 연구·교육기관으로 인식하는 대신 추상적인, 즉 정확히 규정되지 않은 개념인 ‘국민 문화향유’ 기관으로 규정하고 지식생산과는 거리가 먼 일시적 오락이나 여가활동 기능에 주력한 정책이 시행되어 왔음

○ 이러한 제도적 접근의 결과로서, 다수의 박물관·미술관이 본연의 연구·교육 기능보다는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중심으로 운영됨으로써, 정작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의 질을 보장하는 조사·연구 기능을 담당할 학예인력의 부재, 나아가 조사·연구 기능을 최소화한 박물관·미술관 운영 행태가 일반화됨

○ 이러한 상황에서 일선 박물관·미술관의 실무경력이나 경력개발을 위한 ‘준학예사’ 경력인정(수련)은 연구기능이나 연구역량을 활성화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음

□ 소규모 사립관의 구조적 딜레마와 ‘더 안정적인 정부지원사업’ 요구 비등

○ 학예사 1~2명의 소규모로 운영되는 사립관의 경우, 조사연구 기능을 활성화하고 소장품 보존·관리를 전문화할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못함

- 현장사례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장고의 물리적 컨디션이 제대로 갖추어진 곳을 찾기 어렵고, 대부분은 항온항습이 적절한 환경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며,

- 매우 협소한 공간을 수장고로 활용해 수장고 내 유물이나 작품을 확인하고 그 컨디션을 유지하면서 조사연구를 하기가 매우 곤란함

○ 또한 인력지원사업을 통해서 채용된 단기 인력들을 기반으로 소규모 사립관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며, 이들의 전공 분야와 소장품과의 전공 적합성을 확보하기도

쉽지 않아, 이들에 의한 소장품 연구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움

- 더욱이 사립관 관장들은 지원사업에 의해 채용된 단기 인력들에게 수장고를 개방하거나 소장품 관리를 맡기는 것을 불가하다고 인식하여, 학예인력이든 예비학예인력이든 소장품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음
  - 결국 소장품의 전모를 파악하고 접근할 수 있는 주체는 관장이나 자체 채용하여 장기 근속한 학예인력 1명에 한정되는 경우가 다수라 할 수 있음
  - 이에 인력지원사업에 의한 단기 채용 인력은 아예 소장품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고 단기적인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업무를 담당할 수밖에 없으며,
  - 기능적으로는 사립관이 소장품의 보존, 관리, 조사연구 등과 같은 기본 기능을 수행하지 않고, 장기간 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 현실을 초래하므로, 국가적으로나 국민적으로 큰 손실이자 문제점임
- 이는 결국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정규직 인력 채용이나 자체 채용해 장기근속하는 인력이 소장품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및 보존·관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건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사립관이 자체적으로 정규직 채용을 통해 이를 해결할 의지나 여건은 희박함
- 따라서 이에 대한 사립관 종사자들의 입장은 관장이나 학예인력이나 모두 정부지원사업의 구조를 바꾸어 현재와 같은 단기 인력지원이나 단기 사업지원 방식이 아닌 보다 안정적인 지원사업 구조의 설계와 실행이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있음
  - 이러한 현장의 요구는 ‘더 안정적인 정부지원사업’의 대상을 엄격하게 분별하는 기준 마련의 병행을 통해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동반하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분별을 위해 요구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요건에 대해서는 인식차가 존재하고 있으며, 설립주체에 따라서는, 특히 개인 설립관을 중심으로 자체 재원회화이나 운영계획의 투명한 운영·공개 등에 관해 부정적·회의적인 의견도 적지 않음

□ ‘전문성’의 분업체계 및 조직구조의 미비: 소규모 사립관의 ‘1인 학예사 체제’ 또는 ‘관장 학예사-단기채용 학예사 체제’에서 요구되는 ‘전문성’과 지원사업의 영향

- 사립관의 경우 학예사가 2개 이상의 직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일상적임
- 박영미(2016)에 따르면, 국립미술관의 학예사 업무가 조사·연구 및 전시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사립미술관의 경우 조사·연구에서부터 소장, 교육, 재원조성, 홍보, 마케팅에 이르는 모든 영역을 아우르고 있음
  - 이는 각 직무의 기능적 특수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환경임을 의미함: 기능적 차원에서 조사연구-

전시-교육의 직무상 연계성은 높지만, 채용조성, 홍보마케팅의 경우 조사-연구-전시-교육을 아우르는 학예 직무와는 별도의 경영적 전문지식과 역량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박영미(2016)에 따르면 사립미술관의 경우 모든 업무를 1인 학예사가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장사례연구 결과에 따르면, 프로그램 기획 차원에서 학예와 교육을 동시에 수행하기도 하며, 프로그램 기획 업무 외 기관 운영에 필요한 행정 업무 등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도 다수 나타나고 있어 박영미(2016)의 연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음

- 다른 한편, 사립관의 학예 직무가 분업화되는 방식은 역시나 국고보조사업에 의해 큰 영향을 받음
- 정부지원사업이 학예인력, 예비학예인력, 교육, 소장품 DB 구축 등으로 구분하여 인력 채용이 이루어지도록 구조화되어 있고, 이러한 직무별 지원사업이 소규모 사립관의 인력 안정성을 도모하기 보다는 단기 채용과 전문성 약화를 초래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
- 결국 소규모 사립관에서 기대되는 '전문성'이 미술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와 역량을 요구하는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인력'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소규모 사립관을 대상으로 한 지원사업과 그 외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지원사업이 구별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다수의 학예사 자격증 취득자들이 현재와 같이 소규모 사립관을 경력인정의 기반으로 삼고 있는 상황이 일시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현재의 운영구조를 고려하면서 학예인력의 전문성을 증진하는 방식이 지원사업에 반영되어야 함
- 다만, 이때 유의할 점은 복합적 또는 융합적 전문 역량을 체득할 수 있도록 하더라도, 이러한 방식이 소수 학예인력의 업무 과중과 전문성 약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인력 양성 vs 운영 영세성에 따른 업무 과중

- 소규모 사립관 학예인력의 '전문성'이 융합화 경향을 띠는 것은 영세한 운영 여건 및 인력 채용방식에 기인하는 것임
-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1인당 업무량이 무리하게 책정될 수 있는 부정적 가능성과 함께 실무 과정을 통해 전문 역량을 높이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됨
  - 현장사례연구 결과, 사립관 관장의 경우 멀티태스킹이 가능한 인력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 지배적인데, 이는 다양한 업무 경험을 통해 전문 역량을 복합적으로 향상시킨다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멀티태스킹의 업무 경험이 반드시 각 직무에 대한 전문성을 심화한다고 보긴 어려우므로 별도의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무 대비 급여 수준의 현실화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음

- ‘업무량에 비해 적은 월급’이라는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멀티태스킹을 요구하는 소규모 사립관의 현실이 업무 과중을 수반하고 그에 비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겠음

#### □ 소규모 사립관에 특화된 ‘전문성’에 대한 제도적 인식의 미비

- 소규모 사립관일수록 더 필요한 경영 전문성: 박물관·미술관 재원조성 등의 역량 취약
  - 박영미(2016)는 국·공립 및 사립미술관, 갤러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를 분석한 결과, 동일 직군 내에서의 직무 중요도가 차등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았음
  -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립관의 경우 국·공립관 대비, 재원조성이 중요한 직무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림 3-2>), 전시와 교육 업무가 동일한 학예인력에 의해 수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박영미, 2016)
- 그러나 정부지원사업에서는 소규모 사립관의 경영 전문성을 증대할 수 있는 특화된 정책이나 지원사업이 설계되어 있지 못함
  - 이러한 경영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나 정책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소장 품 기반의 연구활동을 중심에 둔 박물관·미술관의 고유 기능 또한 ‘학예연구인력’의 임무<sup>19)</sup>를 실현하는 쪽으로 내실화하기 어려움
  - 결국 부족한 인력으로 소규모 사립관의 현실을 꾸려나가기야 하는 상황이라, 상이한 전문성을 한 사람이 능숙하게 다루기를 기대하는 만능의 ‘전문성’을 기대하게 하나, 현실적으로 이러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채용하기는 어려우며, 이러한 전문성 모델 내지 경력개발 방식이 업무 과중과 불안정 고용을 해소하지 못하고 심화할 가능성도 높음
- 따라서 소규모 사립관에 요청되는 특수한 전문성, 즉 경영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지원사업의 개발을 통해 박물관·미술관 고유의 학예업무를 내실화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함

19) 여기서 말하는 임무란 의무화된 duty로서 학예인력이 반드시 갖추고 수행해야하는 과업의 묶음을 말함. ICOM 윤리강령 8.4에 따르면 박물관이 전문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박물관 인력은 과학적 학술 연구를 기반으로 활동해야함을 명시하고 있음.



- 상기의 도식에 따르면, 국립미술관의 경우 학예인력(큐레이터)은 조사·연구에 기반을 둔 소장품 관리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통해서 전시를 준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사립미술관 1, 2의 경우 국립관에 비하여 전시와 교육 영역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국립관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자원조성 영역이 책무에 있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상업갤러리와 비교하였을 때, 크게 책무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그림 3-3〉 기관별 큐레이터 책무도

※ 자료원: 박영미, 2016, 사진 전문 기관을 중심으로 한 큐레이터 직무 분석 재정리.

## 2절 사립박물관 인력지원사업

### 가. 사립박물관 지원사업 현황 및 인력지원사업 분석 필요성

#### □ 사립박물관 지원사업 현황

-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박미법」의 제13조(설립과 육성) 제2항, 제24조(경비 보조 등) 제1항, 제34조(협회)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수행하고 있음

**제13조(설립과 육성)** ② 국가나 지방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暢達)과 문화 향유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제24조(경비 보조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 제1항에 따라 사립박물관이나 사립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제34조(협회)**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정보 자료의 교환과 업무협조,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한 연구, 외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과의 교류,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박물관 협회 또는 미술관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각각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지원대상은 법 제24조에 따라서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한정되며, 현재 지원사업은 등록 박물관일 경우, 국립을 제외한 공립, 사립, 대학박물관을 모두 범위에 포함시켜 시행되고 있음
  - ‘학예인력 지원사업’의 경우, 사립 및 사립대학 박물관을 지원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소장품 DB화 사업’은 공립, 사립, 사립대학 박물관을 지원대상으로 함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또한 공립, 사립, 대학박물관 등을 포괄하여 지원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 박물관에 대한 지원사업은 유형별로 운영지원, 향유(서비스)지원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운영지원사업은 다시 인력지원과 사업지원으로 구분 가능함
  - 인력지원에는 ‘전문인력 지원사업’, ‘예비 학예인력 지원사업’, ‘소장품 DB화 사업’ 등이 포함됨
  - 사업지원에는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조성사업’, ‘1관 1단 사업’ 등이 포함됨

○ 지원사업별 주관기관

- ‘학예인력지원사업’, ‘소장품 DB화 사업’,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사업은 (사)한국박물관협회가 주관함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관이 주관하고 있음

□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 예산(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

-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은 문체부의 문화예술 부문 예산 중 지역문화정책관 소관의 일반회계 예산 내에 주로 편성되어 있음
- 2022년도 예산 현황에 따르면, 박물관·미술관 관련 다수의 예산 항목이 국·공립박물관·미술관을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립관 지원은 상대적으로 항목 및 규모가 제한적이라 할 수 있음

[표 3-8]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현황: 박물관 및 미술관

(단위: 백만 원, %)

구분	전체	박물관·미술관	사립박물관·미술관
합계	73,968,000	100	894,088 100
문화예술 부문	24,975,000	34	886,449 99.1
문화정책관	국어문화진흥)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 지원) 박물관 길위의 인문학		26,749 3.0 3,000
예술정책관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 국립디자인박물관 콘텐츠 수집 및 아카이브 구축	100	0.0
지역문화 정책관	박물관 정책 활성화) 박물관 운영 활성화 공·사립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DB화 박물관·미술관 협력 강화 스마트박물관·미술관 기반조성 지원 국립융복합뮤지엄 확충 국보 보유 사립·대학박물관 내진시설 보강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국·공립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 국·공립 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주말 프로그램 운영	42,561	4.8 7,619 ○ 693 ○ 1,500 10,700 ○ 300 1,800 ○ 19,617 2.2 18,897 720

구분	전체	박물관·미술관	사립박물관·미술관
	문화시설 확충(지역자율) 공립박물관 건립	16,455	1.9
소속기관	소속기관 지원)	780,967	88.1
	국립중앙박물관	164,919	
	국립민속박물관	21,49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2,545	
	국립한글박물관	12,711	
콘텐츠 부문	11,455,000	16	- -
관광 부문	14,496,000	20	1,751 0.2
관광진흥 개발기금	외래관광객유치) 문화재 해외전시 및 박물관 고객 서비스 강화 지원	1,751	100
체육 부문	19,303,000	26	5,888 0.7
국민체육 진흥기금	생활체육시설지원) 국립체육박물관 건립 스포츠역사보존사업	5,888 4,496 1,392	100 76.4 23.6
문화행정 일반	3,739,000	5	- -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2,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개요」 재정리.

- 2022년도 문체부 예산 중 지역문화정책관 예산(일반회계)은 전년 대비 약 220억이 감소했으며, 이 중 도서관 예산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 박물관·미술관 예산(박물관·미술관 진흥 및 국민문화향유권 확대 지원)은 약 211억 감소, 지역문화 진흥 예산은 약 20억 감소를 보여, 전체적으로 박물관·미술관 예산이 주로 삭감됨
  - 세목에서는 박물관 운영 활성화는 소폭 증가했고, 문화가 있는 날 예산의 감소, 그 외 해외 박물관 한국실 지원 삭감, 국립관 운영 관련 예산이 주로 삭감된 것으로 나타남
- 반면 균특회계 중 지역자율계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계정, 세종특별자치도 계정에서 문화시설 확충 및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산업 예산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여, 박물관·미술관 정책에서 공립관 확충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
- 2020년도 예산 총괄표에 따르면, 박물관 운영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사립박물관 인력 지원이 4,469백만 원, 박물관·미술관 청년인재 단기 체험형 일자리 지원 1,890백만 원, 공·사립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DB화를 위해 693백만 원이 배정되었음
  - 이 중 '국민문화향유권 확대'에 의재미술관에 한정된 '안전하고 편안한 관람환경 조성'(리모델링)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점이 특이사항임

(표 3-9)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정책관 예산 집행 보고자료

(단위: 백만 원)

코드	사업명	2019 예산	2020 예산	증감	
		(A)	(B)	(B-A)	%
	<b>일반회계</b>	230,342	185,100	△45,242	△19.6
2133-300	<b>박물관·미술관 진흥지원</b>	7,649	21,976	14,327	187.3
	- 박물관 운영 활성화	4,406	7,408	3,002	68.1
	(내내)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	3,357	4,469	1,112	
	(내내) 박물관 미술관 청년인재 단기 체험형 일자리 지원	-	1,890	1,890	
	(내내) 박물관 평가인증제 운영	152	154	-	
	(내내) 문화기반시설 정책 개발	167	165	-	
	(내내) 박물관 운영활성화	180	180	-	
	(내내) 대학박물관 진흥 지원	550	550	-	
	- 공·사립박물관 소장 국가문화유산 DB화	693	693	-	-
	- 해외박물관 한국실 운영지원	2,550	2,550	-	-
	- 박물관·미술관 협력 강화	-	11,325	11,325	순증
	(내내) 국제교류 전시지원	-	500	500	
	(내내) 실감콘텐츠 활용 전시 프로그램 등 지원	-	10,000	10,000	
	(내내) 박물관 미술관 주간 연계 협력프로그램 운영 지원	-	825	825	
2133-301	<b>국민문화향유권 확대</b>	34,381	38,858	4,477	13.0
	- 국·공립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	20,022	23,208	3,186	15.9
	(내내)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6,740	19,893	3,153	
	(내내) 국립박물관 야간개장	2,396	2,449	53	
	(내내) 국립중앙도서관 개관시장 연장	324	291	△33	
	(내내) 국립현대미술관 야간개장	495	506	11	
	(내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야간개장	67	69	2	
	- 국립박물관 미정리 유물 등록 및 정리	7,572	7,735	163	2.2
	(내내) 국립중앙박물관	4,945	5,091	146	
	(내내) 국립민속박물관	1,081	1,125	44	
	(내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093	1,125	32	
	(내내) 국립한글박물관	453	394	△59	
	- 휴관없는 국립박물관·미술관 운영	6,067	6,195	128	2.1
	(내내) 국립중앙박물관(경주, 광주, 전주 포함)	2,556	2,636	80	
	(내내) 국립민속박물관	625	631	6	
	(내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466	479	13	
	(내내) 국립한글박물관	570	569	△1	
	(내내) 국립현대미술관(서울관)	1,850	1,880	30	
	- 국·공립 문화시설 문화가 있는 주말 프로그램 운영	720	720	-	-
	- <b>안전하고 편안한 관람환경 조성(의재미술관)</b>	-	1,000	1,000	순증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0년도 지역문화정책관 예산 집행계획」 재정리.

- 지자체의 박물관 지원사업은 상설화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그동안 이루어진 운영 및 인력, 사업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그 규모나 기간이 상당히 적고 일회적 성격이 강했음(박소현 외, 2017)
- 이처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규모에서 격차가 확인되는 만큼, 사립관이 중앙정부 지원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으며, 그만큼 지원사업을 통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음

#### □ 인력지원사업 분석의 필요성 및 사립박물관 지원사업 분석 범위 설정

- 사립박물관 수가 전체 박물관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사립박물관의 학예인력 규모는 크게 변하지 않고, 국·공립 및 대학관에 비해 평균 학예인력 수는 여전히 제일 적은 것으로 나타남
  - 국립박물관 1관 당 평균 학예인력 수는 21.63명, 공립박물관은 2.87명, 대학박물관은 2.80명인데 비해 사립박물관은 1.88명으로 제일 적음
  - 공립박물관의 경우 평균 소장자료 수가 6,060개 연 관람 인원이 33,348명에 학예 인력이 2.87명이고, 대학박물관의 평균 소장자료 수가 21,880개, 연 관람 인원이 2,348명이며 학예인력 수가 2.80명인 것과 비교할 때, 사립박물관은 소장자료 수 12,546개, 연 관람 인원 25,769명인 수준에 1.88명으로 전문적으로 자료를 관리하고 사업을 진행할 인력이 부족한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정책적으로 학예인력의 현황을 개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경우, 사립관의 학예인력 현황은 전체적인 학예인력정책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실제 사립관을 중심으로 한 학예인력 현황의 파악은 실태조사 등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공식적인 기초자료가 마련되어 있지 못함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운영현황 보고에 의한 학예인력 현황 파악이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인력지원사업을 분석 대상으로 삼아, 학예인력 관련 현황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함
- 분석 대상으로 삼은 지원사업은 사립박물관 인력지원사업 중 가장 오래 유지되고 있는 ‘학예인력 지원사업’(‘전문인력 지원사업’과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과 그 속성상 인력지원에 해당하는 ‘국가문화유산 DB화 사업’임

## 나. 전문인력 지원사업

### □ 사업개요

구분	내용
추진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07년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학예인력 지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작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li> <li>(2)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계기를 마련하며,</li> <li>(3) 박물관·미술관의 창의적 콘텐츠 생성과 운영 활성화 도모,</li> <li>(4) 소장 자료 관리 및 활용의 전문성 제고를 목표로 설정함</li> </ol> </li> <li>-전문인력 일자리 창출이라는 직접적인 인력지원사업을 통해서 (1), (3), (4)의 정책적 효과를 도모하고자 한 사업임</li> <li>2017년까지 학예인력 지원사업과 교육인력 지원사업으로 나누어져 있던 사업이 2018년 전문인력 지원사업으로 통합되었음</li> <li>2020년부터 청년인턴(체험형) 형태로 예비학예인력을 지원하는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과 구별하여 진행되고 있음</li> </ul>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처음 시작했을 때의 기본적인 사업의 목적은 전반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립 및 사립대학박물관에 전문인력을 지원하여 국민에게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박물관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의 계기 마련</li> <li>(2) 박물관의 창의적 콘텐츠 생성과 운영 활성화 도모</li> <li>(3) 박물관 소장자료 관리 및 활용의 전문성 제고</li> </ol> </li> <li>여기에 새로 ‘경력별 차등지원을 통한 지원금의 현실화 및 근로의욕 고취’가 추가되어 운영되고 있음</li> </ul>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물관 환경 및 여건과 활동 수준 등을 파악한 사업 추진</li> <li>지원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하여 전문성 및 역량 강화</li> <li>인력 배치부터 종합 평가 단계까지 총체적인 평가를 통한 운영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모색</li> </ul>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립 및 사립대학박물관 대상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li> <li>정부지원금과 대상관 자부담금을 매칭하는 일부지원 방식</li> </ul>

※ 자료원: (사)한국박물관협회, 2020, 『2020 사립 및 사립대학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재정리.

### □ 예산규모 및 예산집행 방법의 변화 추이

#### (1) 예산규모의 변화(2007~2020)

- 2007년에 박물관·미술관을 합산해 18억 원이고, 이 중 박물관 예산은 약 13억 원임
- 이후 2010년까지 13억 원 규모로 유지되다가, 2013년에 약 21억 원으로 상향되었음

며, 이후 2016년까지 약 19억 원, 2017년에는 약 18억 원 규모로 집행됨

- 전문인력 지원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된 2018년 이후, 2018-2019년에는 33억 원, 2020년에는 약 44억 원 규모로 확대됨

## (2) 예산집행 방법의 변화(2015-2020)

연도	내용
20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 지원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로 동결됨</li> <li>- 인건비 예산 현황에 따라 박물관은 단수지원, 미술관은 복수지원 시행</li> <li>- 학예인력 등급에 따라 인건비가 차등 지급</li> </ul>
2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의 예산 책정</li> <li>- 박물관·미술관 학예인력 지원사업의 위탁운영 주체 분화((사)한국박물관협회와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li> <li>- 학예인력 등급에 따라 인건비를 차등 지급</li> </ul>
20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대비 삭감</li> <li>- 종합평가결과에 따라 문제가 없을 시, 관 2년 연속 지원 조항이 추가</li> <li>- 지원서류접수·예산집행 등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을 기획재정부 국가보조금 시스템 e-나라도움 사이트를 통해 진행</li> </ul>
2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의 예산 책정</li> <li>- 공모를 통한 경쟁 입찰방식으로 사업 주체를 선정함에 따라 전체적인 사업 시작이 지연</li> <li>- 기존에 분리되어 있던 학예인력 및 교육인력 사업 운영 주체를 통합하여 진행</li> <li>-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합동지침 및 감사원 지적 사항을 반영하여 반복 참여 인력은 제한</li> </ul>
20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와 동일한 규모의 예산 책정</li> <li>- 전년도와 동일하게 공모를 통한 경쟁입찰방식으로 사업 주체를 선정했으나 전년대비 일찍 시작</li> <li>- 출결기 시스템을 지원대상 관에 설치하여 근태관리를 강화</li> </ul>
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 대비 약 11억 원의 예산 추가 책정</li> <li>- 공모를 통해 경쟁입찰방식으로 사업 주체를 선정했으나 전년 대비 다소 늦게 시작</li> <li>- 2019년도 종합평가 환류를 통해, 우수관(A등급)의 경우 적격 여부 확인 후 우선 지원 및 복수인력을 지원</li> <li>-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방식의 면접과 집합 교육 방식의 직무교육을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시행</li> </ul>

## □ 추진방식 및 단계별 주요사항

(표 3-10) 사립박물관 학예인력 지원사업 업무흐름도

업무흐름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박물관협회 (사업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 계획 수립</li> <li>• 사업 전반적인 관리·감독, 사업 평가 및 환류</li> <li>• 지원대상관 심사 및 선정</li> </ul>

업무흐름	내용
↓ 사업지침	
한국박물관협회 (사업집행담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 및 사립대학박물관과 인력의 연결</li> <li>• 사업대상 박물관과 약정체결</li> <li>• 박물관과 인력의 조정기구 운영(전문인력 커뮤니티)</li> <li>• 사업설명, 인력 교육 프로그램, 워크숍 운영</li> <li>• 심사위원회운영 및 최종평가</li> <li>• 분기별 사업비 교부, 사업 정산 및 결산</li> </ul>
↓ 사업약정체결	
사립박물관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침, 약정 및 근로계약 준수</li> <li>• 인력의 운영 및 관리</li> <li>•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확인</li> </ul>
↓ 근로계약체결	
인력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침, 약정 및 근로계약 준수</li> <li>•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작성, 협회에 제출</li> </ul>

※ 자료원: (사)한국박물관협회, 2020, 『2020 사립 및 사립대학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재정리.

### (1) 지원대상의 자격요건

- 지원대상: 사립(대학)박물관(지원기관) 및 학예·교육인력(지원인력)으로 구성
- 지원기관의 신청자격
  -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박물관으로 등록요건 유지관
  - 대학박물관은 교육부 지정 당해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
  - 선정 시 국립중앙박물관 보급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나라도움 사이트 활용 필수
  - 공공기관이 설립한 실질적인 공립박물관 및 대기업(산하 문화재단)이 설립한 사립박물관은 제외
  - 전년도 학예 및 교육인력 지원사업 진행 시 의무 불이행 관, 성범죄 이력 확인 관은 제외<sup>20)</sup>
- 지원인력의 신청자격
  - 학예인력: 학예사 자격증 취득자 및 준학예사 시험 합격자  
2022년의 경우 학예사자격증 취득자 및 준학예사 시험합격자로서 1년 이상 경력자로 한정됨
  - 교육인력: 교사·문화예술교육사·학예사자격증 취득자 혹은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서 박물관 및 문화예술교육 관련 기관 2년 이상 근무경력자

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름.

## (2) 지원대상 선정기준

### ○ 지원관 선정기준

- 정량평가(운영여건 및 현황, 평가 및 실적, DB구축 실적)와 정성평가(인력활용계획, 사업계획)를 통해 선정하고 있음

기준	배점	세부기준	
정량평가	50	운영여건 및 현황 (등록요건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인력(학예사, 교육사 등) 및 시설(전시, 교육, 소장품) 현황</li> <li>•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보유현황 등</li> <li>• 최근 3년간 전시 개최 실적 및 교육 프로그램 실적</li> <li>• 최근 3년간 관람객 증감 현황</li> </ul>
		평가 및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년도 평가점수 반영</li> </ul>
		DB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활용 소장품 DB 구축 실적 (전년도 미지원관: 시스템 사용 여부로 판단)</li> </ul>
정성평가	50	인력 활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인력 운영계획(지원인력 세부직무)</li> </ul>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교육, 교류 등 목적사업 계획 실행의 가능성</li> </ul>
합계	100		

### ○ 지원인력 선정기준

- 선정관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인력 공개모집 진행
- 진행 과정: 공고→인력 신청접수→서류 심사(협회)→면접 심사(전체 협회 면접 진행)→인력 채용

구분	주요사항	참고사항
심사 항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문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예(교육)업무의 경력 및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최종 전공과의 부합성</li> <li>-해당 관의 설립 취지, 특성 및 전시, 소장 자료에 대한 이해도</li> <li>-박물관 학예(교육)업무에 대한 이해도</li> <li>-학예(교육)업무 관련 능력(자격증)</li> </ul> </li> </ul> </li> <li>2. 업무수행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 이해도 및 사업운영 능력</li> <li>• 업무수행에 필요한 컴퓨터활용 능력</li> <li>• 업무수행의 의지력, 창의력 및 발전 가능성, 어학 능력 등</li> </ul> </li> <li>3. 인성 및 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인력으로서의 품위, 건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li> <li>• 기획력, 추진력, 책임감 등</li> </ul> </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항목의 총합계 점수는 100 점을 원칙으로 함</li> <li>-지원인력 1명: 절대평가(70점 이상)에 대한 적격 여부로 선정</li> <li>-지원인력 2명 이상: 평가점수 합산으로 최상위자 선정 (지원인력 모두 70점 미만의 경우 해당자 없음)</li> </ul>

구분	주요사항	참고사항
	4.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적 접근성(교통, 주거여건)</li> <li>• 주 40시간 근무 가능 여부</li> </ul> 5. 가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년층(만35세 미만) 및 취약계층</li> </ul>	

※ 주의사항: 동점자가 발생하지 않게 신중히 점수 부여.

### (3) 계약방식

- (사)한국박물관협회와 지원 대상 선정관 사이의 사업 약정 체결(Ⅱ부록 3-1Ⅱ 학예 인력지원사업 운영약정서 참조)
  - 배치 인력에 대한 지원 기간 중 직무 교육 참여 동의
  - 사업 관련 근무 실적 자료 및 평가, 통계자료 작성 등에 관련 정보 제공
  - 인건비 관의 자부담 매칭 부분 지급 및 기타 협약 준수 의무
  - 지원 선정관은 원활한 지원금 관리를 위해 이체내역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지원대상 사립박물관과 지원인력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 각 사립박물관에 배치된 인력과 박물관이 근로계약 체결
  - 사립박물관과 인력은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 체결(급여, 근무 사항, 교육 참여 동의 등)
  - 근무형태: 「근로기준법」에 준함(단, 각 기관별 특성 및 근무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 대상관의 준수사항
  - 선정기관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활용 의무화
  - 배치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참여 동의
  - 사업 관련 평가, 통계자료 작성 등 관련 정보 제공
  - 기타 협약 준수 의무(학예인력 업무범위, 근무시간 준수 등)
  - 인건비 중 자부담 매칭 부분 지급 준수
- 인건비 자부담 매칭에 따른 학예사 등급별 지원금 차등화
  - 2010년까지는 지원기관(박물관)의 자부담 매칭이 없었으나, 2011년부터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와 준학예사 시험 합격자에 대한 차등지급과 함께 박물관의 자부담 매칭(현재 일괄 40만원)을 도입함
  - 현재는 학예사 자격등급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정하면서 자부담 매칭도 각 박물관이 40만원 이상 자율적으로 책정하는 방식으로 재설정됨

[표 3-11]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등급별 월 지원금 구성

(단위: 만 원)

구분	등급	국고지원	관부담	월지원금
학예인력	정1급	180	40+∞	220+∞
	정2급	170	(4대보험 기관	210+∞
	정3급	160	부담금 별도)	200+∞
	준학예사	150		190+∞
	준시합격	145		185+∞
교육인력	자격증취득자	155		195+∞
	관련경력자	145		185+∞

○ 지원인력 업무범위

- 업무범위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명시되어 있음
- 학예인력은 연구·전시기획, 소장품 관리, 교육의 업무, 교육인력은 교육 업무로 범위를 지정함
- 그러나 근로계약서 작성 시 본 세부 업무 범위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해야 하며, 범위 외 업무와 관련해서는 필히 인력과 합의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구분	업무	세부 업무 범위
학예인력	연구·전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연구] 소장품/자료 조사, 자료집/학술지 발간</li> <li>• [서류 작성]</li> <li>• [자료 분석]</li> <li>• [도록/책자 제작] 관련자료 번역, 사진촬영, 원고 작성/교정, 편집</li> <li>• [전시] 기획/전시, 전시보조자료 제작, 홍보물 제작, 전시 안내</li> </ul>
	소장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장품 수집]</li> <li>• [소장품 관리 및 보존수복] 전시 공간 환경 유지, 소장품 보존처리</li> <li>• [소장품 등록 및 관리] 분류/입력/전산, 출/격납, 운송, 포장, 상태검사, 대여 등</li> </u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전시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자료제작 등</li> </ul>
교육인력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설 교육] 박물관 내 상설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진행</li> <li>• [전시 연계 교육] 박물관 상설 전시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li> <li>• [교육 사업] 길 위의 인문학 등 박물관 교육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li> <li>• [자료 제작] 교육 프로그램 워크북 및 관련 자료 제작</li> <li>• [홍보 및 만족도] 교육 프로그램 관련 홍보 및 만족도 조사</li> </ul>

□ 사업관리 및 평가

(1) 지원관 및 인력 평가

- 현장평가와 학예인력의 근무평가, 평가위원회의 논의 및 조정을 기본적인 평가방법

및 절차로 채택하고, 여기에 평가방법 및 항목을 추가하거나 조정해 왔음

- 이전에는 사업평가에서 1차 지원대상인 지원인력(학예사)에 대한 관리 및 평가(근무평가를 중심으로 한 사업관리방식)만 진행하여, 지원관과 지원 인력을 아우르는 연쇄적인 정책효과를 포괄적으로 사업평가에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었음
- 현재는 현장 평가위원이 지원서류 및 서면조사 서류를 파악한 뒤, 지원관을 방문하여 평가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항목에 따라 평가하고 컨설팅을 진행함

## (2) 지원관 평가방법 및 기준(2020년 기준)

평가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인력 지원관(학예인력 118개관/교육인력 99개관)</li> <li>- 2020년 기준, 지원관 수 217개관(중복관 포함), 지원인력 수 254명(퇴사자 포함)</li> </ul>
평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컨설턴트(평가용역업체)</li> <li>• 문화기반시설 전문가(관련학과 대학교수 및 국·공립관 관장·학예실장급 등)</li> </ul>
현장평가 요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문인력 현장근무 현황(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원칙), 해당 관의 지구적 노력, 지원인력 활용 및 지원금 지급의 투명성, 기여도 및 파급효과 등</li> </ul>

### ○ 현장평가 기준 수립 및 결과 도출 절차

- 현장평가 운영자문위원회 개최→평가 기준 및 방법 논의→기관별 평가(현장실사, 소장품 정보화 실적, 근무실적 월별보고서, 직무교육 이수, 사무국 모니터링, 근태서류 제출)→2차 운영자문위원회 개최

### ○ 평가결과 등급표

- 최종평가는 현장평가+사무국집계(소장품 정보화+월별보고서+직무교육 이수+근태서류 접수) 후 2차 운영위원회 점수를 합산하여 종합등급을 결정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음

[표 3-12]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기관 평가방법 및 기준

(2020년 기준)

구분	평가지표	점수	배점기준
현장 평가	현장평가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수행, 운영 및 기여도, 소장품정보화 총 30점</li> <li>• 지원인력의 업무수행능력, 근무태도 총 30점</li> </ul>
사무국 집계	소장품 정보화 (계획대비 등록률)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년 문화유산표준관리 시스템 등록률 (* 12월 18일 기준 국립중앙박물관 유물부 자료로 등록률 확인)</li> <li>-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최소입력 항목 8개: 유물번호, 명칭, 국적/시대, 재질, 수량, 사진, 입수 연유, 치) 계획대비 등록률</li> </ul>
	월별보고서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별 A:10점, B:8점, C:6점, 미제출:0점</li> <li>• 평가 후 평균 집계 (* 12월은 제출 일자가 종합 평가 시점 이후로 제외)</li> </ul>

구분	평가지표	점수	배점기준
	직무교육 이수	10	• 인력 필수 참석 교육 참가에 따른 점수 - 의무교육 3회: 기본연수, 국제학술대회, 심화연수
	근태서류	10	• 제출 시기에 따라 매달 0~10점으로 평가 후 평균 집계
합 계		100	

[표 3-13]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평가결과 등급표

평가 반영도(100점 만점) (평가 반영도는 운영위원회 결정사항)				점수(점)	등급	
현장평가	소장품 정보화	월별 보고서	직무교육 이수	근태서류	90~100	A
	(계획대비 등록률)				80~89	B
					70~79	C
					60~69	D
					0~59	E

○ 평가 시 감점 사항

- 기 제출한 전시, 교육, 소장품 관리 등 연간 계획서 대비 실적이 부진한 경우
- 해당 연도 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관
- 인력의 잦은 퇴사가 발생한 관
- 업무 협조가 이행되지 않거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
- 근태서류 제출 지연 및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

○ 평가결과 환류

- 최종 평가결과는 다음 해 사업 지원관 선정 시 반영함
- 등급 C, D, E관의 경우 차년도 사업 진행 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심층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관리를 강화함

(3) 지원인력 평가방법 및 기준

- 현재 지원인력에 대해서는 근태관리, 근무 현황 보고자료, 직무교육 이수점수를 결과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 박물관 전문인력의 직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제공 및 사업대상 전문인력의 근무 현황 보고의 체계화·자료화를 통해 근무 현황을 파악하고 공유하기 위해 '직무 교육 및 관리 강화'를 세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전문인력 지원사업으로 진행되는 필수교육은 기본연수, 심화연수, 결과보고세미나이며, 이 외에

협회 주관 관련 교육(한국박물관국제학술대회)에 한하여 직무교육 이수 가능하며, 총 10학점 만점 이수로 하여 전문인력 지원사업 관련 필수교육 이수 시 각각 차등점수를 부여하여 인정함  
 -준학예사 자격증 시험합격자 및 근무 경력 2년 미만 학예인력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 온라인교육 수강을 통한 전반적인 업무 관련 지식 및 자기계발을 권고하고 있음

(표 3-14)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직무교육 대상 및 내용

(2020년 기준)

대상	분기	형태	내용
지원대상학예사	1/4	기본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0년 전문인력 사업설명회</li> <li>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 사용방법 안내</li> </ul>
	3/4	한국박물관 국제학술대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협회 주관 키노트 세션 참여</li> <li>국내외 박물관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수준 높은 강의 참관</li> </ul>
	3/4	심화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문인력의 역할과 기본 소양</li> <li>전시, 교육, 소장품, 보존 등 실무 위주로 기획 및 운영</li> </ul>
	4/4	결과보고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나라도움 정산 안내</li> <li>2020년도 전문인력 지원사업 종합평가</li> </ul>

#### □ 중도퇴사자 발생 및 인력 재모집 반복 경향 지속

○ (사)한국박물관협회는 중도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지원인력 제공모를 통해서 지원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음

-2011년 이후의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관 모집공고는 매년 1회만으로 모집이 완료되었으나, 지원 인력의 경우는 적으면 1년에 10차, 많으면 17~18차까지 재모집공고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특히 벽지 지역 박물관은 지속적인 공고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관이 인력 채용이 되지 않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신청 인원이 현저하게 떨어져 매칭의 어려움이 있음

○ 이러한 지원인력 재모집공고의 횟수는 중도 퇴사자 수와 상관관계가 뚜렷이 나타나는데, 2011년에 37명이었던 중도퇴사자 수가 2013년에는 56명으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2015년에 감소했다가 2016년에는 다시 49명으로 증가함(연평균 약 26% 차지)

○ 한편 중도퇴사자가 발생하는 박물관 수는 뚜렷하게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원인력의 중도퇴사 이후 대체인력의 추가 채용 이전의 공백기간이 발생하는 경우도 꾸준히 확인됨

○ 2020년에는 학예 전문인력의 경우 전체 118개관의 136명 중 22명(16.2%), 교육 전문인력은 99개관의 118명 중 21명(17.8%)이 중도 퇴사함

(표 3-15)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인력 모집 현황

(2020년 기준)

차수	구분	신청 가능관	신청인원	합격자
1	학예/교육	34/21	55/32	29/20
2	학예/교육	85/78	77/62	49/47
3	학예/교육	47/37	42/33	30/18
4	학예/교육	16/20	8/13	2/6
5	학예/교육	27/30	21/25	8/11
6	학예/교육	20/21	9/17	5/5
7	학예/교육	21/15	6/6	4/3
8	학예/교육	26/26	14/10	8/3
9	학예/교육	19/17	7/3	3/2
10	학예/교육	18/13	3/0	2/0
총	학예/교육	313/278	242/201	140/121

※ 자료원: (사)한국박물관협회, 2020, 『2020 사립 및 사립대학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재정리.

#### □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인력 통계

- 지원인력의 성별은 지속적으로 남성보다 여성의 비중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해 왔음
- 학예인력으로 지원받은 경우, 학예사 자격의 등급별 비율은 3급 정학예사가 50% 이상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준시 합격자(22.8%) 및 준학예사(13.2%)를 차지하고 있음
  - 이러한 경향은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인력 양성, 즉 학예인력의 역량 및 경력 개발 차원에서 직업(재)교육의 성격을 강화해야 함을 시사함
- 교육인력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의 비중이 66%에 해당하는데, 이 역시 준학예사 등급 이하인 경우가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전문적인 교육이 강화될 수 있도록 사업을 보완해야 할 것임
  - 특히나 학예사 자격제도에서의 경력기간 산정은 교육인력이나 학예인력의 구분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원사업의 구분을 통합하여 학예인력으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적용이 시급함

(표 3-16)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인력 지원 통계

(2020년 기준)

구분	성별	성별	성별	급수별	급수별	급수별
학예	남	32	23.5%	1급	2	1.5%
				2급	14	10.3%
				3급	71	52.5%
				준학예사	18	13.2%
	여	104	76.5%	준시합격	31	22.8%
교육	남	21	17.8%	자격증소지자	78	66.1%
	여	97	82.2%	관련경력자	40	33.9%

※ 자료원: (사)한국박물관협회, 2020, 『2020 사립 및 사립대학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재정리.

## □ 사업성과 보고서 분석(2020년 기준)

### (1) 사업성과

- 목표설정: 학예인력 지원 1관당 기획전시 2.5회 개최, 교육인력 지원관 전체 총 71만명 교육 프로그램 참여 목표
- 목표 대비 달성도: 학예인력 118개관 총 239건의 기획전이 개최되어 달성도 81%, 교육인력 프로그램 수혜자 수 220천명으로 달성도 31%로 확인됨
  -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 박물관의 관람객이 대폭 감소하고, 운영여건이 열악한 사립관은 전시·교육콘텐츠 온라인화도 어려웠기 때문으로 추정됨
- **목표설정의 문제점: 본 지원사업의 목표가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및 박물관 인력 고용 안정화에 기여하는 것임을 목표설정에 반영하지 못함**
  - 협회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전문인력 재배치를 지원하고 있으나 실제 계속해서 지원인력 지원자 수가 적어지고 중도퇴사자가 발생하는 것은 그 목표가 잘 달성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기간이 사업에 선정되는 3~4월부터 12월 31일까지로 채 1년이 되지 않는 짧은 기간 동안 운영되어 일자리의 안정성이 낮고, 이에 따라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쌓을 수 있는 사업 운영 경험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하는 취지와 부합하기 어려움

### (2) 자체평가 결과

- 사업 추진결과 잘된 점
  - 사업 초기 시 사업성과 지표 및 전문인력 활동 실적 지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진행사항

관리 및 독려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지원관 및 인력의 활동성과 제고에 기여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활용을 통한 고품질 소장품DB 구축으로 국가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 및 대국민 공개와 활용성 확대
- 배치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근태 현황 관리 및 신규 인력에 대한 사업수행도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 코로나 19에 따른 대면 면접 및 직무교육이 불가한 상황에서 빠르게 온라인 면접 및 직무교육 시행을 함으로써 방역관리 강화
- 커뮤니티와 뮤지엄 뉴스레터를 연계하여 홍보 활동이 어려운 지역 박물관의 홍보 활성화에 기여함
- 지원대상 관의 관리자 및 대상 인력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상호 유대감 및 친밀함을 바탕으로 원활한 사업수행 가능
- 체계적인 근무 현황파악 및 관리

- 현장평가: 전문 평가용역업체를 선정하여 더욱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평가 진행
- 현장모니터링: 모든 지원관을 사업 담당자가 현장방문을 통하여 지원대상 인력 및 관장, 관계자와 면담 후 박물관 운영 실태 등 파악
- 근무실적 월별보고서: 기존 분기별 수합에서 매일 수합으로 변경하여 근무 인력의 업무 내용을 즉시 파악 가능
- 전화모니터링: 지원대상 관의 인력 근태 현황파악에 대한 현장실사 보완책으로 전화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 민원 발생관 또는 특이사항의 경우, 현장실사 재실시 등 지속하여 관리 강화

### ○ 주요 건의사항(지원인력)

- 직무훈련: 인력마다 연차가 다른 점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근태관리(출퇴근기기 사용 관리): 오류 발생이나 외근, 출장, 업무변동 등으로 출퇴근 등록을 하지 못했을 경우 이를 매번 서류 등으로 증빙해야 해서 업무가 증가한다고 느껴짐**
- 현장평가: 현장평가 후 결과를 공유하여 실제 현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안이 도출되었으면 좋겠음**
- 처우 개선: 인건비 증액 및 박물관 근무환경 개선**

- 1, 2월에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는 것이 큰 문제점인 것 같음. 1년 기준으로 12개월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
- 인력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저임금이기 때문에 국고지원금이나 자부담금을 더 늘렸으면 좋겠음
- 인건비 지원도 중요하지만 박물관의 근무환경도 잘 살펴주면 좋겠음

## 다.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 □ 사업개요

구분	내용
추진경위	• 2020년부터 청년 인턴(체험형) 형태로 예비학예인력을 지원(사업예산: 약 990백만원)
사업목적	• 준학예사 필기시험 합격자 및 관련 학과 졸업생 대상 박물관 현장경험 제공 및 학예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일자리 지원] • 박물관 예비학예분야 일자리 창출 및 경력인정 계기 마련 • 특화된 사립박물관에 필요한 예비학예인력 양성을 통해 박물관 운영 활성화 및 만족도 높은 문화서비스 제공
추진방향	• 박물관 환경 및 여건과 활동 수준 등을 파악한 사업 추진 • 지원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박물관인으로서의 소양 및 역량 강화 • 인력 배치부터 종합평가 단계까지 총체적 평가를 통한 운영성과 분석 및 발전 방안 모색
사업내용	• 사립 및 사립대학박물관 예비학예인력 인건비를 지원함 -정부지원금과 대상관 자부담금을 매칭하는 일부지원 방식임 • 지원대상에 대한 직무 역량 강화 연수 지원

※ 자료원: (사)한국박물관협회, 2020, 『2020 사립 및 사립대학박물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재정리.

### □ 추진방식 및 단계별 주요 사항

- 지원인력은 협회를 통해 인력공고 및 모집에 따라 이메일로 지원을 접수  
-미달인력 및 중도퇴사로 인한 인력 공백에 따라 재공고가 진행되어 지원 시작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표 3-17] 사립박물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업무흐름도

업무흐름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박물관협회 (사업총괄)	• 기본 계획 수립 • 사업 전반적인 관리·감독, 사업 평가 및 환류 • 지원대상관 심사 및 선정
↓ 사업지침	
한국박물관협회 (사업집행담당)	• 사업운영 지침 안내 • 지원관 및 지원인력 공모 진행 •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운영 • 지원대상 박물관과 약정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관 및 지원인력간의 연결, 모니터링 진행</li> <li>• 지원관 및 지원인력 대상 직무교육 운영</li> <li>• 관별 사업 관리 및 평가</li> <li>• 월별 인건비 교부</li> <li>• 회계 결산 및 결과보고서 작성</li> </ul>
↓ 사업약정체결	
사립박물관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침, 약정 및 근로계약 준수</li> <li>• 인력의 운영 및 관리</li> <li>•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확인</li> </ul>
↓ 근로계약체결	
인력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침, 약정 및 근로계약 준수</li> <li>• 직무교육 이수</li> <li>• 지원사업 성과보고서 작성, 협회에 제출</li> </ul>

※ 자료원: (사)한국박물관협회, 2020, 『2020 사립 및 사립대학박물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재정리.

## (1) 지원대상의 자격요건

- 지원대상: 사립(대학)박물관(지원기관) 및 예비학예인력(지원인력)의 양자로 구성됨
- 지원기관: 경력인정대상기관인 사립(대학)박물관
- 지원기관의 신청자격
  - 등록 사립 및 사립대학박물관으로 등록요건 유지관
  - 대학박물관은 교육부 지정 당해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
  - 선정 시 국립중앙박물관 보급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및 e나라도움 사이트 활용 필수
  - 공공기관이 설립한 실질적인 공립박물관 및 기업에서 설립·운영하는 박물관과 대기업(산하 문화재단)이 설립한 사립박물관은 제외
  - 성범죄 이력 확인 관은 제외<sup>21)</sup>
- 지원인력의 신청자격
  - 예비학예인력: 박물관 관련학과 졸업생 및 준학예사 필기시험 합격자(만 34세 이하)

## (2) 지원대상 선정기준

- 지원관 선정기준
  - 정량평가(운영여건 및 현황, 평가 및 실적, DB구축 실적) 및 정성평가(인력활용계획, 사업계획)

2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름.

기준	배점	세부기준
정량평가	50	운영여건 및 현황 (등록요건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및 전문인력 보유현황(학예사, 교육사 등)</li> <li>• 최근 3년간 전시 개최 실적 및 교육 프로그램 실적</li> <li>• 최근 3년간 관람객 현황</li> <li>• DB구축 필요 여건 현황(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사용 여부)</li> </ul>
정성평가	50	인력 활용계획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인력 운영계획(지원인력 세부직무)</li> <li>• 전시, 교육, 교류 등 목적사업 계획 실행의 가능성</li> </ul>
합계	100	

※ 자료원: (사)한국박물관협회, 2020, 『2020 사립 및 사립대학박물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재정리.

## ○ 지원인력 선정기준

- 선정관 전체를 대상으로 지원인력 공개모집 진행
- 진행 과정: 공고→인력 신청접수→1차 서류심사(협회)→2차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지원선정관)→심사결과 보고검토(협회)→최종 합격자 발표(협회 홈페이지)

구분	주요사항
심사항목	1. 직무관련 교육 및 자격사항 - 직무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전 교육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판단(전공의 부합성, 교육사항, 자격사항, 외국어사항 등) 2. 직무관련 이해도 - 지원관 및 직무에 대한 이해도 판단(지원관의 설립 취지, 특성 및 전시, 소장자료에 대한 이해도 등) 3. 직무관련 기초능력 - 기초적 문장기술능력 및 논리력 - 문서작성능력 - 업무 수행 의지력 및 책임감 -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 문제 해결 능력 및 갈등 관리 능력 4. 채용적합성 - 본 사업의 이해도 및 사업 수행 능력 - 지원 동기 및 직무능력 발전 가능성 - 지역적 접근성 및 상근 근무 가능 여부
가산점	취업 취약계층

※ 자료원: (사)한국박물관협회, 2020, 『2020 사립 및 사립대학박물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재정리.

### (3) 계약 방식: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동일

- (사)한국박물관협회와 지원 대상 선정관 사이의 사업약정 체결(Ⅱ 부록 3-2 Ⅱ 예비 학예인력지원사업 운영약정서 참조)
  - 배치 인력에 대한 지원 기간 중 직무 교육 참여 동의
  - 사업 관련 근무 실적 자료 및 평가, 통계자료 작성 등에 관련 정보 제공
  - 인건비 관의 자부담 매칭 부분 지급 및 기타 협약 준수 의무
  - 지원 선정관은 원활한 지원금 관리를 위해 이체내역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지원대상 사립박물관과 지원인력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 각 사립박물관에 배치된 인력과 박물관이 근로계약 체결
  - 사립박물관과 인력은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 체결(급여, 근무 사항, 교육 참여 동의 등)
  - 근무형태: 「근로기준법」에 준함(단, 각 기관별 특성 및 근무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기관의 준수사항
  - 선정기관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활용 의무화
  - 배치인력에 대한 직무교육 참여 동의
  - 사업 관련 평가, 통계자료 작성 등 관련 정보 제공
  - 기타 협약 준수 의무(학예인력 업무범위, 근무시간 준수 등)
  - 인건비 중 자부담 매칭 부분 지급 준수
- 인건비 자부담 매칭에 따른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와의 차등 지급

(표 3-18) 사립박물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월 지원금 구성

(2020년 기준, 단위: 만 원)

구분	국고지원	관부담	월지원금
예비학예인력	160	20+∞	180+∞

(4대보험 기관 부담금 별도)

※ 자료원: (사)한국박물관협회, 2020, 『2020 사립 및 사립대학박물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재정리.

- 지원인력 업무범위
  - 업무범위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명시되어 있음
  - 예비학예인력은 학예업무와 교육업무를 지원하는 것으로 업무로 범위를 지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 작성 시 본 세부 업무 범위 내용을 참조하여 작성해야 하며, 범위 외 업무와 관련해서는 필히 인력과 합의된 내용이 계약서 상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음

구분	세부 업무 범위
학예업무 지원	[전시·기획·조사·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기획 및 전시보조자료 제작 보조</li> <li>• 전시 안내 및 홍보 지원 보조</li> <li>• 소장품 조사 및 연구 지원 보조</li> </ul>
	[소장품 수집 및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유산표준관리 시스템 입력 및 촬영 보조</li> </ul>
교육업무 지원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 내 상시 교육 프로그램 및 연계교육 프로그램 운영 보조</li> <li>• 교육 자료 제작 지원 보조(프로그램 워크북 및 관련 자료)</li> <li>• 프로그램 리서치 및 개발 지원 보조</li> </ul>

※ 자료원: (사)한국박물관협회, 2020, 『2020 사립 및 사립대학박물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재정리.

## □ 사업관리 및 평가

### (1) 지원관 평가방법 및 기준

#### ○ 현장평가 방법

- 공모 및 심사를 통해 평가용역 업체 선정 후 자문위원회를 통해 세부 평가 계획 수립 및 평가결과 보고
- 평가용역업체에서 문화기반전문가를 동반하여 현장상황 파악 후 평가자료를 기반으로 평가표의 항목에 맞게 평가 및 컨설팅 진행

#### ○ 현장평가 절차

- 평가기관 공모 및 선정(협회)→현장 평가 1차 자문위원회 개최(협회, 평가기관)→박물관 세부정보 공유(협회)→월별 현장점검 계획안 제출(평가기관)→최종 방문일정 수립(평가기관)→기관별 평가(전수시행/현장실사, 소장품 정보화 실적, 근무실적 월별보고서, 직무교육 이수, 사무국 모니터링, 근태서류 제출)→현장평가 2차 운영위원회 개최(협회, 평가기관)→평가보고서 제출(평가기관)

#### ○ 현장평가 세부 평가항목

- 지원관: 사업이해도(인력 활용 계획의 적정성), 인력 활용 및 관리 현황(관내 협조도, 담당업무 범위 준수 여부)
- 지원인력: 업무수행 능력(업무 이해 수준 및 참여도, 업무 성실도)
- 검토사항: 예비학예인력 현장근무 현황(1일 8시간, 주 5일 근무가 원칙), 해당관의 자구적 노력, 지원인력 활용 및 지원금 지급의 투명성, 기여도 및 파급효과 등

(표 3-19) 사립박물관 예비전문인력 지원사업 지원관 및 인력 평가항목

(2020년 기준)

구분	평가항목	내용	
지원관	사업이해도	인력 활용 계획의 적정성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 취지 부합 등	
	인력 활용 및 관리 현황	관내 협조도	관내 업무 협조 및 교육, 직무교육 참석 협조 등
		담당업무 범위 준수 여부	전시/기획/소장품 조사 및 연구 보조, 시스템 등록 및 촬영 보조,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보조 등
지원 인력	업무수행 능력	업무 이해 수준 및 참여도	전시, 교육, 소장품 정보화 등 지원업무에 대한 이해도 및 참여도 등
		업무 성실도	월별보고서, 교육이수보고서 작성 및 교육이수 현황 등

※ 자료원: (사)한국박물관협회, 2020, 『2020 사립 및 사립대학박물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재정리.

### ○ 종합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평가는 운영위원회를 통한 평가기준 및 방법 수립, 평가기준에 따른 점수 산정을 통해 종합평가 등급화를 결정함</li> </ul>
진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차 운영위원회 시 평가 기준 및 방법 논의 → 기관별평가(현장실사, 직무교육 이수, 월별보고서 및 근태서류 제출.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활용 여부) → 2차 운영위원회 개최를 통한 종합평가 등급화 결정</li> </ul>
평가 시 감점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해당 연도 교육 이수율이 저조한 관</li> <li>• 인력의 잦은 퇴사가 발생한 관</li> <li>• 업무 협조가 이행되지 않거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li> <li>• 근태서류 제출 지연 및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li> </ul>
평가결과 환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최종 평가결과는 다음해 사업 지원관 선정 시 반영함</li> <li>• 등급 C, D, E관의 경우 차년도 사업 진행 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심층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관리를 강화함</li> </ul>

※ 자료원: (사)한국박물관협회, 2020, 『2020 사립 및 사립대학박물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재정리.

(표 3-20) 사립박물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기관 평가방법 및 기준

(2020년 기준)

구분	평가지표	점수	배점기준
현장 평가	현장평가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관의 사업이해도, 사업수행 등 총 30점</li> <li>• 지원인력의 업무이해도 및 참여도, 성실도 등 총 30점</li> </ul>
사무국 집계	직무교육 이수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교육 및 역량강화교육 참여에 따른 점수 합산으로 최종 점수 산정</li> <li>- 기본교육(5점): 필수 참석 교육 참가에 따른 점수로, 필수교육은 기본연수, 사전교육, 국제학술대회, 심화연수의 총 4회임</li> </ul>

구분	평가지표	점수	배점기준
			-역량강화교육 이수(20점): 원점수를 기준으로 이수점수에 따른 점수/ A: 20점, B: 18점, C: 15, D: 10점, E: 8점, F: 5점
	월별보고서 및 근태서류	12	• 작성의 충실성 및 제출일 준수 여부의 평균값으로 최종 점수 산정 -작성의 충실성(9점): A: 9점, B: 6점, C: 3점, 미제출: 0점 -제출일 준수 여부(3점): A: 3점, B :2점, C: 1점, 미제출: 0점
	소장품 정보화	3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활용여부 -등록: 3점, 미등록: 1점, 미사용: 0점
<b>합 계</b>		<b>100</b>	

※ 자료원: (사)한국박물관협회, 2020, 『2020 사립 및 사립대학박물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재정리.

[표 3-21] 사립박물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평가결과 등급표

(2020년 기준)

평가 반영도(100점 만점)				점수(점)	등급
현장	직무교육 이수	월별 보고서	소장품 정보화	90~100	A
평가		및 근태서류		80~89	B
				70~79	C
				60~69	D
				0~59	E

※ 자료원: (사)한국박물관협회, 2020, 『2020 사립 및 사립대학박물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재정리.

## (2) 지원인력 평가방법 및 기준

- 현재 지원인력에 대해서는 근태관리, 근무 현황 보고자료, 직무교육 이수점수를 결과평가에 반영하고 있음
- 예비학예인력의 직무수행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 기회 마련을 위해 직무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표 3-22] 사립박물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직무교육 일정

(2020년 기준)

일정	구분	내용	
5월	기본	기본연수(사업설명회)	연간
	역량강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강의 및 실습	국립중앙박물관
			이러닝 교육
7월	기본	사전교육	자율 이수
8월	기본	국제학술대회	

일정	구분	내용
	역량강화	[국립민속박물관] 예비학예인력 양성교육
9월	기본	심화연수
10월	역량강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강의 및 실습
11월	역량강화	문화기반시설 자율 탐방(교육, 전시 및 문화행사)
12월	기본	결과보고세미나

※ 자료원: (사)한국박물관협회, 2020, 『2020 사립 및 사립대학박물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재정리.

#### □ 중도퇴사자 발생 및 인력 재모집 반복 경향

- (사)한국박물관협회는 중도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지원인력 재공모를 통해서 지원인력을 추가 채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음
- 지속적인 공고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관이 인력 채용이 되지 않으며, 하반기로 갈수록 신청 인원이 현저하게 떨어져 매칭의 어려움이 있음

[표 3-23] 사립박물관 지원인력 공고 신청 현황 및 지원인력 선정 결과

(2020년 기준)

차수	신청 가능관	신청인원	합격자	비고
1	33	74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채용 기관 중복 포함</li> <li>• 지속적인 공고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관이 인력 채용이 되지 않음</li> <li>• 하반기로 갈수록 신청인원이 현저하게 떨어져 매칭의 어려움이 있었음</li> </ul>
2	16	50	11	
3	7	7	3	
4	3	3	1	
5	13	23	6	
6	7	8	2	
7	6	2	1	
8	5	2	1	
9	16	18	7	
10	9	6	5	
11	12	19	5	
12	9	5	2	
13	7	2	1	
14	7	2	1	
신청인원 총계		221		

※ 자료원: (사)한국박물관협회, 2020, 『2020 사립 및 사립대학박물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재정리.

- 지원인력 재모집공고의 횟수는 중도 퇴사자 수와 상관관계가 뚜렷이 나타나는데, 2020년에는 전체 49개관 65명 중 10명(15.4%)이 중도퇴사함

## □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을 통한 지원인력 통계

- 지원인력의 경우, 준학예사 시험 합격자에 비해 관련 학과 졸업자가 다수를 차지함

[표 3-24] 사립박물관 지원인력 지원 결과

(2020년 기준)

지원관 수(관)		지원인력 수(명)	
사립	41	관련학과 졸업	51
대학	8	준시합격	14
총	49	총	65

※ 자료원: (사)한국박물관협회, 2020, 『2020 사립 및 사립대학박물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재정리.

## □ 사업성과 보고서 조사결과 분석(2020년 기준)

### (1) 사업성과

- 예비학예인력은 지원관의 전시 중 95.1%(82건 중 78건), 교육 중 84.4%(180종 중 152종), 홍보 중 7.8%(68,123건 중 5,314건)의 비율로 참여하였음
- 지원관 중 14개관의 경우, 지원 예비학예인력을 추후 지속 채용하여 활용하고자 함으로써 본 사업의 참여를 통해 예비학예분야의 인재를 확보하고 양성하고자 함  
- 그러나 해당 인력을 정규직으로 고용하려는 계획은 6.1%(3명)이며, **국고지원사업 지원인력(전문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하려는 계획이 12.2%에 가장 많고**, 단기계약직 형태도 10.2%로 그 다음으로 많음(총 전체의 28.6%)

### (2) 자체평가 결과

- 사업 추진결과 잘된 점
  - 코로나19 확산 및 지속에 따라 인력 운용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정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의무 자부담금액의 일부 지원: 지원관은 지원인력 월 급여 총액의 5%(90,000원)에 대하여 자부담금을 집행하며 의무 자부담금의 차액은 국고지원금으로 추가 지원
  - 지원관 및 지원인력 관리를 통한 사업 수행도 제고
  - 예비학예인력 커뮤니티를 운영하여 교육 공지만 아니라 사업 운영 시 제출이 필요한 서류를 업로드하고 매뉴얼 및 서식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
  - 뮤지엄 뉴스를 통해 사업 홍보 및 참여후기 공유
  - 직무교육을 통한 예비학예인력의 자기계발 기회 마련
    - 1) 박물관인으로서의 미션을 기반으로 박물관 업무에 필요한 기본 소양 교육 및 박물관 업무

및 학예직에 대한 컨설팅 제공

1) 실무 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예비학예인력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 제공

3) 지원 인력들에게 실질적으로 유익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함으로써 교육 이수 참여도 제고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코로나19 확산 및 지속에 따라 박물관 운영이 잠정 중단되는 등 운영실정이 어려워 참여관 모집에 어려움이 있었음

-2020년도 최초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이해도에 있어 기존 인력 지원사업 간의 혼선 발생  
→ 개선방안: 지원관 관장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설명회(기본연수) 의무참여를 통해 단순 인력 충원이 아닌 박물관 업무에 관심을 가진 청년들에게 박물관 고유 업무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예비학예인력을 육성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목표 제고 필요

-예비학예인력을 집중적으로 교육 및 관리할 담당자로서 기존 학예사들의 업무 가중

→ 개선방안: 본 사업을 추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경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인식 제고 필요. 또한 담당자 및 지원인력이 달성해야하는 미션을 부여하는 방법이나 담당자 책임부여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고려

-전시 및 교육부터 홍보까지 다양한 업무를 고루 경험할 수 있으나 업무 범위가 다소 포괄적인 면이 있어 명료화 필요

→ 개선방안: 박물관 고유 업무를 전반적으로 경험하되 특정 기획 업무의 일원으로서 깊이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지원 시 인력 활용 계획을 명확히 하고, 지원인력의 관심 분야에 따라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권고 필요

-인력 미배치관 및 인력 중도 퇴사관 발생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력공고를 진행함에도 불구하고 구인난 지속

→ 개선방안: 본 사업 및 공고를 홍보할 수 있는 다양한 홍보 채널 확보 및 인력 구인을 위한 지원관의 자구적인 노력 권고 필요

○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사립박물관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결과적으로 사립 박물관의 운영 및 문화예술분야의 활성화하는 것이 사업의 목적임에 따라 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 제고 필요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 이해도가 있는 기관 및 인력이 지원해 선정될 수 있도록 선정기준 및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고지

-지원신청 시 기관의 경우 지원인력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직무훈련 교육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인력의 경우 업무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

-사업설명회 및 사전교육 진행 시 충분한 안내를 통해 본 사업의 목표 제고: 사업 운영단계에서는

- 상시 유선 모니터링, 현장 모니터링 및 월별 보고서 검토를 통해 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 진행
- 지원관 및 인력 공고 홍보 강화: 중앙단위의 홍보와 더불어 각 지역협의체와의 홍보 협조를 통해 적극적인 홍보 진행
  - **교육 프로그램 및 운영체계 정립**: 연간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 체계 마련 필요(기본실무-역량강화)
  - 의무 또는 필수 점수 이상 자율 이수 교육이 최대 10회 이상으로 지원관 및 지원
  - 인력뿐만 아니라 사무국에서도 교육 이수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 필요

## 라. 국가문화유산 DB화 사업

### □ 사업개요

구분	내용
추진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5년 처음 시작될 당시에는 국립박물관을 대상으로 한 ‘국립박물관 소장유물 DB화 사업’으로 출발함</li> <li>• 2016년부터 지원대상이 국립박물관뿐 아니라 사립 및 대학박물관을 포괄해 확대되어, ‘전국 공·사립·대학박물관 소장품 DB화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됨</li> </ul>
사업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 소장품 DB구축 및 소장품 분류 표준화의 질적 향상 도모</li> <li>• 박물관 소장품 관리체계 개선 및 활용도 제고</li> <li>• 등록된 소장품을 기반으로 한 대국민 공개 서비스(e뮤지엄) 확대</li> <li>• 박물관 소장품 등록 및 촬영 전문인력 양성과 관련분야 일자리 창출</li> </ul>
추진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 환경 및 여건과 활동 수준 등 기본적인 여건을 파악하여 사업 추진</li> <li>• 사업 활동의 양적 실적 위주의 지표보다 지원인력 활동의 적절성과 노력 정도 평가</li> <li>• 인력배치부터 현장평가 및 2차 운영위원회 단계까지 모든 영향 요인에 대한 총체적인 평가를 통해 운영성과 분석 후 발전방안 모색</li> <li>• 박물관 현장평가 및 2차 운영위원회 시 모든 관에 동일한 평가기준을 적용하되, 공정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관별, 지역별 환경 특성에 맞는 평가 기준 적용</li> </ul>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 및 사립대학박물관의 소장품 DB 등록 및 관리를 위한 인건비를 지원함</li> <li>-정부지원금과 관 자부담금을 매칭하는 일부지원 방식임</li> <li>• 지원대상에 대한 직무 역량 강화 연수 지원</li> </ul>

### □ 추진방식 및 단계별 주요 사항

#### (1) 추진일정

- 지원관은 2월, 지원인력은 3월~10월 사이 협회를 통한 공고 및 모집절차를 따름

- 지원인력의 경우 3월부터 최초 공고 시작, 미달인력 및 중도퇴사로 인한 인력 공백에 따라 재공고가 진행되어 지원 시작 시점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지원대상의 범위 및 자격요건

구분	내용
지원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인력과 촬영인력으로 구성</li> <li>• 지원인력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록인력: 박물관 소장품 등록 업무 경험자(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li> <li>-촬영인력: 사진학 전공자(전문학사 이상), 소장품 등록 촬영 경험자</li> <li>-박물관 대표 및 설립자와의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지원 불가(친인척 미신고 시 보조금 환수)</li> </ul> </li> </ul>
지원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립, 사립, 대학 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5년 사업이 처음 시행될 당시 지원대상관은 공립박물관에 한정하여 시작되었으나, 2016년에는 전국 공립, 사립, 대학박물관, 2017년도에는 전국 공립, 사립, 사립대학박물관으로 변경되었음</li> </ul> </li> <li>• 지원기관의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5년에는 공립박물관 중에서 1년간 1명 이상 학예사(자격증 취득자)를 고용한 관이었음</li> <li>-2016년에는 전국 공·사립·대학박물관이었음</li> <li>-2017년에는 공·사립(사립대학)박물관으로 변경되었고(대학박물관의 경우, 교육부 지정 2017년 정부재정지원 가능 대학 중 사립대학박물관만으로 한정),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필수 사용이 신청자격으로 부가됨</li> <li>-2020년, 전국 공·사립·대학박물관으로 등록요건 유지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활용관으로 규정</li> </ul> </li> <li>• 지원기관의 신청자격 제외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기업(산하 문화재단) 설립관</li> <li>-국립박물관 및 국·공·사립·대학미술관</li> <li>-성범죄 이력 조회 시 문제가 있는 관(지원관 대표 성범죄 이력 조회)</li> </ul> </li> </ul>

[표 3-25] 사립박물관 소장품 DB화사업 사업추진 절차

(2020년 기준)

문화체육관광부 (사업총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계획수립</li> <li>• 사업 전반적인 관리·감독, 사업 평가 및 환류</li> </ul>
↓ 사업지침	
(사)한국박물관협회 (사업진행·예산 집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박물관 선정 및 인력의 연결</li> <li>• 사업대상 박물관과 약정체결</li> <li>• 직무교육 프로그램 운영</li> <li>• 운영·심사위원회 개최 및 최종평가</li> <li>• 매월 인건비 집행, 사업 정산 및 결산</li> </ul>
↓ 사업약정체결	

공·사립·대학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침, 약정 및 근로계약 준수</li> <li>• 인력의 운영 및 관리</li> <li>• 지원 사업 성과보고서 확인</li> </ul>
↓ 근로계약체결	
인력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지침, 약정 및 근로계약 준수</li> <li>• 직무교육 참석</li> <li>• 근태서류 작성, 협회에 제출</li> </ul>

## □ 지원대상 선정기준

### ○ 지원관 신청 시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신청관 현황표, 지원인력 활용계획서, 사업계획서, 소장품 DB화 현황 및 계획서, 재직중인 학예사의 자격증 및 4대보험 가입증명서, 재직증명서(해당관에 한함), 박물관 등록증 사본(해당 관에 한함) 등(총 8종)

### ○ 지원관 선정기준

- 운영여건 및 현황,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활용에 대한 정량평가, 사업실행 계획의 정성평가  
- 가산점 항목: 신규참여, 재난지역, 소장품 훼손 관련 보험, 추가 자부담 계획

기준	배점		세부기준
정량평가 (60)	20	운영여건 및 현황 (등록요건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근무</li> <li>• 자격증 소지자 외 전문인력(교육사 등) 근무 여부</li> </ul>
	40	문화유산표준관리 시스템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스템 활용여부, 등록실적(수량) 및 등록률</li> <li>• 등록 자료 대국민 공개율(e뮤지엄)</li> </ul>
정성평가 (40)	40	사업실행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실행계획</li> <li>• 운영여건</li> <li>• 인력활용계획</li> <li>• 방향의 적합성</li> </ul>
가산점 (55)	55	신규참여, 재난지역, 소장품 훼손 관련 보험, 추가 자부담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신규참여관, 특별 재난 지역 소재 박물관, 유물훼손관련 보험, 추가 자부담 계획관</li> </ul>

### ○ 지원인력 신청 시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자기소개서, 신청동기, 학예사자격증(해당자에 한함),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사본 1부, 그 외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성범죄 이력조회 동의서 1부(총8종)

○ 지원인력(소장유물 등록·촬영 인력) 선정기준

-전공 및 전문성(25), 업무 수행 능력(30), 인성 및 태도(20), 근무여건(25)

□ 계약방식

계약 구분	계약 내용 등
(사)한국박물관협회와 지원 대상 선정관의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치 인력에 대한 지원 기간 중 직무 교육 참여 동의</li> <li>사업 관련 근무 실적 자료 및 평가, 통계자료 작성 등에 관련 정보 제공</li> <li>인건비 관의 자부담 매칭 부분 지급 및 기타 협약 준수 의무</li> <li>지원 선정관은 원활한 지원금 관리를 위한 이체내역 증빙자료 제출 필수</li> </ul>
소장품 등록인력과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박물관에 배치된 인력과 근로계약 체결 (한국박물관협회↔지원관↔지원인력 계약 체결이라는 이중구조로 학예인력지원사업과 동일함)</li> <li>계약사항: 박물관과 인력은 표준근로계약 체결(급여 및 근무 사항, 교육 참여 동의 등)</li> <li>근무형태: 「근로기준법」에 준함(단, 각 기관별 특성 및 근무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음)</li> <li>급여이체방법: e나라도움(e호조) 시스템 활용(현금지급 불가)</li> </ul>
소장품 촬영인력과 계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한국박물관협회와 직접 근로계약 체결 후 파견 (등록인력과 달리 (사)한국박물관협회↔지원인력 계약)</li> <li>계약사항: 표준근로계약 체결(월 급여 및 근무 사항 등)</li> <li>근무형태: 표준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음</li> <li>급여이체방법 및 절차: 인력 급여통장으로 매달 말일 교부</li> </ul>

○ 지원인력 업무범위

-등록인력: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소장품 등록 및 소장품 관리 제반 업무

-촬영인력: 사업 지원관에 소장하고 있는 등록 대상 소장품 사진 촬영 업무

구분	세부 업무 범위
등록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표준유물 관리시스템(구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관리/운영]</li> <li>[소장품 등록] 분류/입력/전산</li> <li>[서류작성] 유물수입명세서 작성</li> <li>[조사/연구] 소장품/자료 조사</li> <li>[소장품 관리] 수장 및 전시 공간 환경 유지, 출/격납, 운송, 포장, 상태검사, 대여</li> </ul>
촬영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진촬영] 본 사업 지원관의 등록대상 유물의 사진 촬영</li> <li>[사진보정] 공개서비스를 위해 촬영한 사진의 보정 수행</li> <li>[사진이미지 관리 및 납품] 관별 사진이미지 관리 및 촬영 결과물 납품</li> </ul>

○ 지원인력에 대한 월 지급액

- 등록인력: 국고지원 예산(140만원)에 지원관 매칭(60만원)으로 월 총 급여액 200만원(+a) 지급
- 촬영인력: (사)한국박물관협회와 촬영인력 간의 직접계약으로, 지원관 매칭 없이 국고지원 예산으로 250만원 지급(숙박지원금 포함)

[표 3-26] 사립박물관 소장품 DB화사업 지원금 지급규모

(월 지급액, 단위: 천 원)

구분	국고지원	관 매칭	총급여
소장품 등록	1,400	600+a	2,000+a
소장품 촬영	2,500(숙박지원금 포함금액)	-	2,500

□ 직무교육

구분	내용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인력의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제공</li> <li>• 사업운용 현황 보고의 체계화·자료화를 통한 파악 및 공유</li> </ul>
사업설명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매년 사업방향 및 세부내용에 대한 전달, 지원선정관 및 배치 인력 선정 절차, 계약서류 작성 설명 및 사업 진행과정 안내</li> <li>• 대상: 지원 선정관 소장품관리 담당자 및 박물관 관계자</li> </ul>
등록인력 직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교육</li> <li>• 내용: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의 활용 및 소장품 관리 교육</li> <li>• 대상: 등록인력 선발자</li> <li>• 신규 등록인력 상반기 직무교육 의무 참여 및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에서 정기적으로 개설하는 시스템 교육 참여 유도</li> </ul>
촬영인력 직무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소장품촬영에 대한 실무 교육 진행</li> <li>• 대상: 소장유물 DB화사업 촬영인력 선발자</li> <li>• 실습과 이론을 병행한 효율적인 교육과정 수립: 유물촬영의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유물촬영 이론 강의를 통해 실무 내용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 및 역량 강화에 기여</li> </ul>

※ \*: 국립중앙박물관 유물관리부 협조

□ 사업관리 및 평가

(1) 사업관리: 사무국 모니터링

- 목적: 보다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하여 운영이 미비한 지원관 및 우수사례 발굴, 등록인력과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사무국 실무자와 모니터링 진행

- 방법: 월별 현장점검 계획 수립→등록직 근무일 체크 및 방문일정 확정→방문예정 2주 전 박물관에 방문 공지→모니터링 진행(인터뷰형식 질의응답, 필요시 문체부 1인 동행)→모니터링 결과 작성

## (2) 지원관 및 인력 평가

### ○ 평가개요

목적	• 현장점검을 통하여 서면으로 인식하지 못했던 부분을 시정 및 개선 가능
방법	• 지원관을 직접 방문하여 및 현장상황 파악
평가시기	• 9월~11월
평가자	• 한국능률협회컨설팅 컨설턴트 • 문화 전문가 (관련학과 대학 교수 및 전문가, 국·공립 기관의 관장, 학예실장·연구관 등)
평가절차	• 평가기관 선정((사)한국박물관협회)→박물관 세부정보 공유(사무국)→월별 현장점검 계획(안) 제출(평가기관)→최종 방문 일정 수립→현장방문→평가보고서 제출

### ○ 현장평가

사업 이해도	• 인력 활용 계획의 적정성 및 실천성, 관내 협조도 등
자료관리 현황	• 시스템 등록을 위한 사전 준비 수준, 등록 및 디지털화를 위한 별도 설비 수준
인력활용 및 관리현황	• 지원인력 담당업무 범위 준수 여부, 전문성, 적정 근로환경 제공 여부 등
사업수행 성과	• 계획 대비 목표 달성도, 대국민 공개 서비스 관리 수준

### ○ 사무국 점검 요소

근태서류 및 증빙서류 제출	• 서류 제출 날짜 준수 및 서류 누락 여부 등
직무교육 이수	• 등록인력 의무 교육(직무교육) 이수 등
전화·사무국 모니터링	• 근태상황 및 업무진행 여부, 업무 숙지도 확인 등

(표 3-27) 사립박물관 소장품 DB화사업 평가방법 및 기준

(2020)

구분	평가지표	점수	배점기준
현장 평가	현장평가	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이해도 총 14점</li> <li>• 자료관리현황 총 14점</li> <li>• 인력활용 및 관리현황 총 24점</li> <li>• 사업수행성과 총 18점</li> </ul>
사무국 집계	근무일지 및 증빙서류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태서류 제출(1~10점으로 평가 후 평균을 5점으로 환산)</li> <li>-제출일 준수 여부 5점</li> <li>-제출서류 성실도 5점</li> </ul>
	직무교육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인력 의무 교육 이수</li> </ul>
	모니터링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무국 모니터링 결과 반영(현장 및 전화)</li> </ul>
	등록률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 계획대비 소장품 등록률</li> </ul>
	대국민공개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내 등록된 소장품 공개 서비스 제공 여부</li> </ul>
합 계		100	

(표 3-28) 사립박물관 소장품 DB화사업 평가결과 등급표

현장 평가 (70)	평가 반영도(100점 만점)					사무국 점수	점수(점)	등급
	서류 제출 (10)	직무 교육 (5)	모니터링 (5)	시스템 등록률 (5)	대국민 공개 (5)			
						90~100	A	
						80~89	B	
						70~79	C	
						60~69	D	
						0~59	E	

○ 평가 시 감점 사항

- 기 제출한 연간 계획서 대비 등록 실적이 부진한 경우
- 당해 연도 교육 이수율 저조한 관
- 업무 협조가 이행되지 않거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될 때
- 근태서류 제출 지연 및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관

○ 평가결과 환류

- 최종 평가결과는 다음해 사업 지원관 선정 시 반영해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시행지침, 약정서, 사업계획서, 근로계약서 등에 대한 경미한 위반을 한 경우 주의, 경고 등의 조치

□ 중도퇴사자 및 재모집 반복 경향

○ 2020년도 기준, 등록인력 모집공고는 총 6차까지 진행됨

[표 3-29] 사립박물관 소장품 DB화사업 인력모집 현황

차수	지원관수	모집인원	응시자수	합격자수
1차	19개관	41명	63명	31명
2차	7개관	9명	16명	8명
3차	7개관	12명	10명	7명
4차	4개관	6명	6명	2명
5차	4개관	8명	6명	5명
6차	3개관	4명	6명	4명

□ 사업성과 보고서 분석

(1) 사업성과 요약(2015~2020)

[표 3-30] 사립박물관 소장품 DB화사업 사업성과

(2015~2020)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달성도(%)			
2015	관수	지원인력	지원개월 수	35	70	700	35	60	355	100	85.7	50.7
	인건비(원)		등록인력	980,000,000			516,836,330			52.7		
			촬영인력	223,610,000			190,770,630			85.3		
2016	관수	지원인력	지원개월 수	35	70	700	59	92	619	168.6	131.4	88.4
	인건비(원)		등록인력	980,000,000			910,667,080			92.9		
			촬영인력	280,000,000			246,420,900			88		
2017	관수	지원인력	지원개월 수	50	92	920	71	118	937	142	128.3	101.1
	인건비(원)		등록인력	1,288,000,000			1,251,189,070			97.1		
			촬영인력	225,000,000			220,161,290			97.8		
2018	관수	지원인력	지원개월 수	50	83	830	64	99	638	128	119.3	76.9
	인건비(원)		등록인력	919,880,000			892,356,220			97		
			촬영인력	210,000,000			210,000,000			100		
2019	관수	지원인력	지원개월 수	20	32	301	29	41	300	145	128.1	99.7
	인건비(원)		등록인력	421,400,000			407,379,200			96.7		
			촬영인력	120,000,000			118,666,670			98.9		
2020	관수	지원인력	지원개월 수	18	37	327	23	51	340	127.7	137.8	103.9
	인건비(원)		등록인력	460,600,000			455,828,500			96.2		
			촬영인력	85,200,000			85,161,300			99.9		

- 사업 공고 및 지원관 모집은 계획대로 원활히 진행되었다고 서술되어 있음
- 인력의 중도퇴사 및 지원관의 사업 포기로 인해 일부 불용액이 발생함
- 인건비 예산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후보관 지원을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등록인력의 추가 배치를 진행하여 효율적으로 예산 운용이 이루어지고 지원사업의 목표치도 달성했다고 보고하고 있음

## (2) 자체평가 결과(2020년도 기준)

- 사업 추진결과 잘된 점
  - 지원관 내 소장품 등록 업무의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일원화된 소장품관리체계 구축
  - 의무적으로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시스템 내 소장품 데이터베이스화 목표 달성
  - 대국민 공개 서비스 구축을 통한 박물관 이미지 제고 및 홍보 효과 기대
  - 매월 지원인력의 근태 및 업무 내용 관리, 결원 발생 시 신속한 추가 지원으로 사업수행도 강화
  - 등록, 촬영인력 면접 및 직무교육 등을 모두 비대면으로 전환함으로써 방역 시스템 강화
  - 체계적으로 현장평가 및 사무국 모니터링을 진행하여 현장의 애로사항 및 개선점 파악
- 예상외 변수 등으로 부진한 점, 사업추진 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등
  - 지원인력 배치 및 활용: (1) 도서산간 지원관의 인력 구인난, (2) 박물관 실무 경험이 없거나 관련 전공이 아닌 경우 등록 업무의 어려움 발생
  - 인력직무교육 관련 사항: (1) 일괄적으로 DB 교육 진행으로 지방 지원관의 비용 및 시간 부담, (2) 실무교육 외에 박물관 및 전시 전반에 관한 다양한 주제의 교육 프로그램 필요
  - 소장품 관리 업무 전반을 정량화하여 평가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
  - 공립박물관의 경우, 지원사업 운영시기 미확정과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연속적인 사업 참여 곤란: 차년도 사업 수행 일정을 사전 공지하거나 월별 교부액을 일괄교부하는 방안 모색 필요
-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 방안
  - 인력 채용 조건 및 관리 방안 개선
    - 등록인력 채용 공고 시, 지원관에서 서류 검토 후 협회로 검토 의견 제출(서류검토 1차 협회, 2차 지원관)
    - 협회의 중앙 면접 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관 사정(필요 전공 등)에 따라 1회 채용 여부 선택
    - 지원인력 공고 시 지원관별 필요 전공을 추가하여, 미채용 건 감소를 위한 노력 필요
    - 등록인력의 인건비가 동결되어 있어 향후 사업 진행 시 인상 필요
  - 인력 직무교육 확대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교육뿐 아니라 시스템 등록을 위한 제반 업무 및 소장품 관리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문교육으로 확대

- 박물관별 소장품 특성에 맞는 자료 관리를 위한 심화교육 진행
- 촬영인력 직무교육 프로그램 체계화 및 보완을 통해 촬영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촬영 결과물 품질 개선

-촬영팀 관련 사항

- 촬영인력 여비의 현실화를 위해 주거지를 기준으로 한 세부적인 거리비례 여비 지원 방안 필요
- 촬영장비 대부분이 사업 초기에 구비되어, 촬영장비의 수리 및 추가 구입 필요

## 3절 사립미술관 인력지원사업

### 가. 사립미술관 지원사업의 범위 및 특징

#### □ 중앙정부의 사립미술관 지원사업

##### ○ 법적 근거

- 사립미술관 지원사업은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박미법」의 제13조(설립과 육성) 제 2항, 제24조(경비 보조 등) 제1항, 제34조(협회) 제2항을 근거로 하여 수행하고 있음

##### ○ 지원대상: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으로 한정

##### ○ 설립·운영주체에 따른 지원사업별 대상 설정

- 공립, 사립, 사립대학미술관 대상 사업: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등

- 사립 및 사립대학 미술관 대상 사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 ○ 지원사업의 유형 구분: 운영지원(인력지원, 사업지원), 향유(서비스)지원

- 인력지원: 전문인력 지원사업,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 사업지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등

#### □ 지방정부의 사립미술관 지원사업

##### ○ 법적 근거

- 「박미법」 제24조(경비 보조 등)

- 각 지방자치단체의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 ○ 지방정부 사립미술관 지원사업의 특징

- 각 지자체의 미술관 지원사업은 상설화하여 운영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곳은 서울시가 대표적임

- 지원 유형은 인력지원, 운영안정화 지원, 사업지원 등으로 구분 가능함

- 사업예산의 규모 면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사업 예산 규모에 비해 작고, 지원대상의 규모나 지원기간 역시 상당히 적고 일회성이 강함

[표 3-31] 지방정부의 사립미술관 지원사업 사례

구분	지역	사업명 및 사업내용	시행주체	사업비
사업지원	서울	사립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지원 문화사업	서울특별시	9천5백만 원(2022)
인력지원	경상북도	박물관 및 미술관 인턴사업 지원사업	경상북도	3명 지원 (월 급여 1,915천 원 기준 70% 지원)(2022)
운영지원	경상남도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 안정비 지원사업	경상남도	1개소 당 100만원(2021)

※ 자료원: 각 지자체 홈페이지 고시공고 재정리.

- 사립박물관과 마찬가지로, 지자체 지원사업의 작은 규모와 일회적 성격을 고려한다면 다수의 사립 및 대학미술관이 중앙정부 지원사업에 높은 의존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지원사업을 통한 중앙정부의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음

## 나. 전문인력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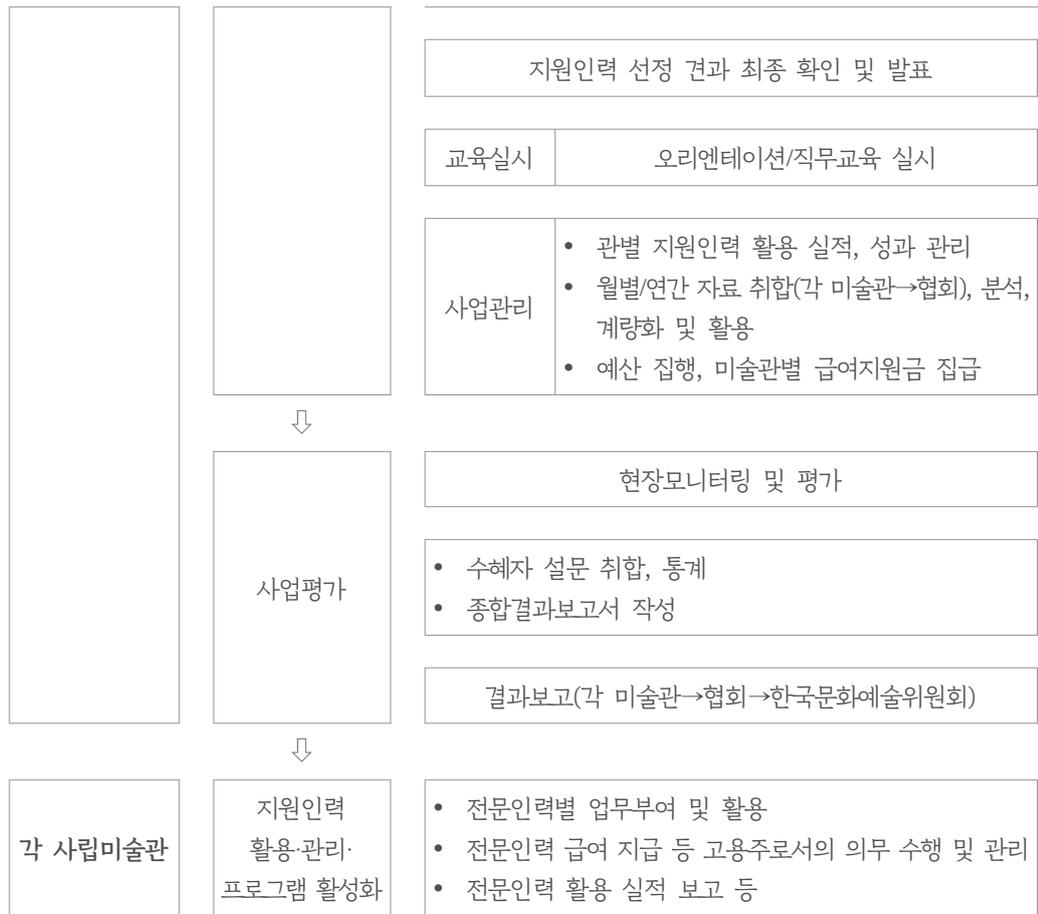
### □ 사업개요

#### (1) 주관기관 및 추진방법

- 사업주관: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 추진방법 및 일정: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추진

[표 3-32]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추진주체별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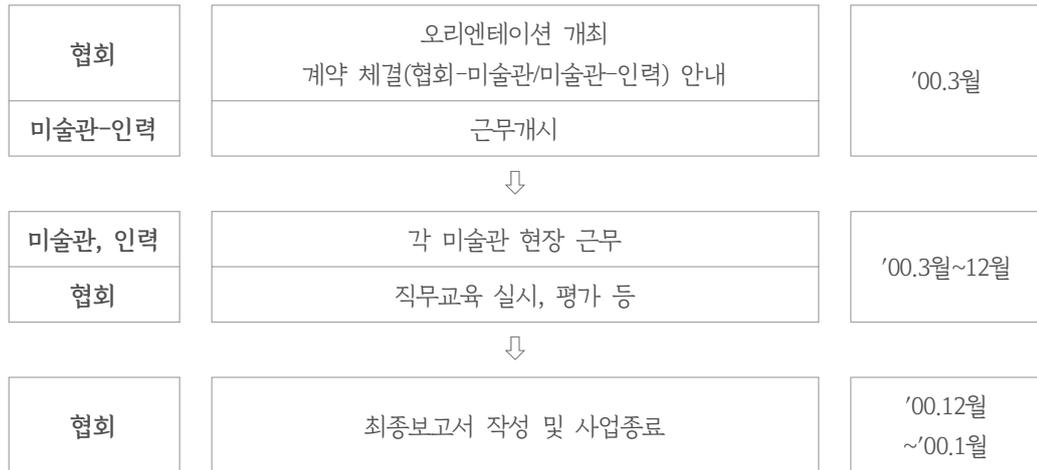
주관	구분	역할
한국사립 미술관협회	기본계획수립	사업 운영 방안 수립
	↓	
	사업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공고</li> <li>• 사업신청접수(전국 등록 사립미술관)</li> <li>• 신청서류 검토</li> </ul>
	↓	
	사업추진	심사위원회      지원관 확정



※ 자료원: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19~2021,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재정리.

[표 3-33]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추진일정

주체	내용	기간
미술관→협회	기관신청서 접수	'00.1월
	↓	
협회	기관심사 (신규 지원신청관 현장방문, 지원확정관·후보관 선정)	'00.1월~2월
	↓	
미술관	인력모집	'00.2월
	↓	
미술관	채용예정자 협회 통보	'00.2월
협회	최종 합격자 발표	'00.3월
	↓	



※ 자료원: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19~2021,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재정리.

## (2) 사업목적

- 사립미술관·사립대학미술관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사립대학미술관에 기획 전문 학예사인 큐레이터와 교육 전문인력인 에듀케이터를 지원하여 전시·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및 전문인력의 현장 커리어 강화 및 보다 안정적인 고용 환경 제공
- 전문인력 일자리 안정화를 통한 미술관의 공공성 향상
  - 전문인력 지원으로 미술관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활성화하고 미술관이 국민의 미적 소양을 증진시키고 국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예술 기관으로 자리매김
  - 미술관의 고유기능인 전시·교육 및 관객 프로그램이 장기적인 계획 하에 전문적으로 운영 가능해짐으로써 미술관 전문인력의 안정적인 고용창출 뿐만 아니라 미술관에 대한 인식 향상에 기여
-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 이러한 전문인력 지원은 비영리기관인 사립미술관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여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공익기관으로서의 소명에 부합함
-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와 변화에 대응
  -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문화적 활동 제약에 따라 문화예술 기관 역시 운영 방식에 변화를 요구받게 되었음
  - 2020년부터 기존 업무에 방역대책 수립 및 시행, VR 등 온라인 콘텐츠 제작, 미술관 SNS채널 운영 등으로 업무를 확장하고 새로운 운영방안의 수립으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강화가 사업목적과 기대효과에 추가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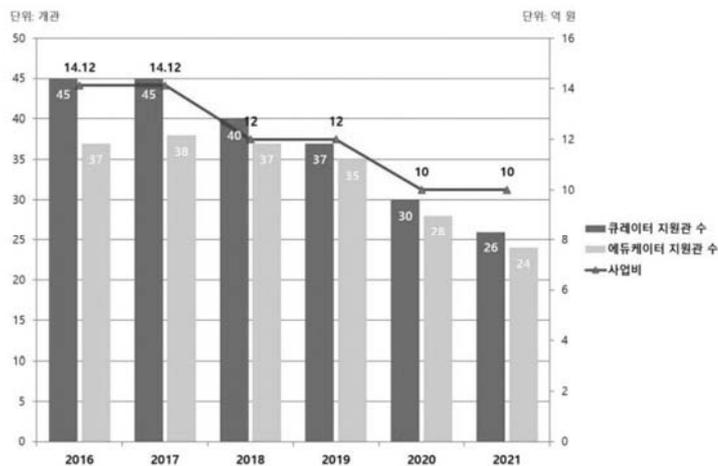
### (3) 추진방향

-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사립대학미술관에 기획 전문 학예사인 큐레이터와 교육전문 인력인 에듀케이터 지원
- 전시·교육 프로그램 및 미술관 운영 활성화
- 전문인력에 의한 미술관 콘텐츠의 생성 및 활용 등으로 전문인력의 현장 능력 강화

#### □ 예산규모 및 예산집행 방법의 변화 추이

##### (1) 예산규모의 변화: 예산의 감소 추세

- 2016년도에 비해 2021년 전체 사업비는 4억원 가까이 감소하였고, 선정 지원관 수 역시 45개관에서 26개관으로 줄었음
- 이에 지원사업 주관단체인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는 지원사업 최종보고서를 통해 사립미술관 수의 증가 추세와 미술관의 교육 기능 확대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등 내외부의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예산의 증액과 지원 대상관, 지원 전문인력 수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음을 역설함



〈그림 3-4〉 사립미술관 연도별 사업비 및 지원관 비교

(최초 선정관 수 기준)

※ 자료원: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19~2021,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재정리.

[표 3-34] 사립미술관 연도별 사업비 및 지원관 수

(최초 선정관 수 기준)

구분/년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업비	14억 1200만원	14억 1200만원	12억 원	12억 원	10억 원	10억 원
학예인력 지원관 수	45개관	45개관	40개관	37개관	30개관	26개관
에듀케이터 지원관 수	37개관	38개관	37개관	35개관	28개관	24개관

※ 자료원: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19~2021,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재정리.

## (2) 예산집행 방법의 변화

- 2014년 이후 사립미술관 지원사업은 복수지원이 가능하며, 인건비를 차등지급하고 있음
- 그러나 학예인력·에듀케이터 동시 지원관 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음  
- 2019년 12개관, 2020년 1개관, 2021년 6개관(1개관 인력교체로 최종 5개관)

## □ 지원대상의 자격 및 선정기준

### (1) 지원대상의 범위 및 자격요건

- 지원대상은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다고 간주할 수 있는 사립미술관(사용자)와 전문인력(근로인력인 학예인력과 에듀케이터)를 동시에 지원하는 양자 지원 모델을 채택하고 있음

지원대상	• 사립미술관과 전문인력
지원기관 신청자격	• 「박미법」에 의거한 등록 미술관으로서 “ <u>학예사 자격증 소지한 학예사 1인 이상을 자체 채용</u> ” 중인 1종/2종 등록 사립미술관·사립대학미술관
지원인력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예인력: 「박미법」 제6조 제2항(박물관·미술관 학예사)과 제3항에 따른 학예사 자격증 소지자 및 학예사 자격증 미소지자</li> <li>• 에듀케이터: 문화예술교육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였거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등록 미술관 또는 비영리 문화예술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 경력 -에듀케이터 우대 조건: 문화예술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 미술교육 전공 또는 박물관·미술관 교육전공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 등록 미술관에서 교육 경력 2년 이상</li> <li>• 관의 대표와 친인척 관계인 자는 신청자격에서 배제됨</li> <li>• 지원인력 등급 구분</li> <li>• 인력 불안정 처우 개선 노력: 인력 연속 채용 시 급여 소급 지원</li> </ul>

## (2) 지원대상 선정기준

### ○ 지원관 선정기준

- 지원년도 사업계획, 인력운영계획과 최근 3년간 지원사업 평가 실적에 각각 40점, 40점, 20점을 배점해 지원관을 심사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동 사업평가 및 실태조사 결과 및 미술관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파악된 관은 추가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시정명령 후 문제점 개선 확인 전까지 지원에서 배제하고 있음
- e나라도움 시스템 사용에 있어 지적사항이 발생한 관은 2년간 지원이 유예됨
- 대표자와 지원인력의 친인척 여부와 관련하여 가족관계증명자료를 제출해 허위로 드러날 경우 지원사업이 취소되고 향후 2년간 지원에서 배제됨
- 전년도 동사업 평가실적 하위 약 10개관 이내와 신규 지원신청관은 지원관 선정심사에 앞서 심사위원회 현장실태조사를 먼저 거친 후 지원 여부가 결정됨
- 전년도 우수인력 배출관에는 가산점을 부여함
- 2021년에는 코로나19 발발에 따라 비대면 사업을 강화하거나 비대면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는 관에도 가산점을 부여하였음

심사항목	배점
• 지원년도 미술관 사업 계획 (목표의 구체성, 계획의 충실성, 적절성, 실현가능성, 기획의 참신성, 효과성 등)	40
• 지원년도 지원 학예인력·에듀케이터 활용 계획 (목표의 구체성, 계획의 충실성, 적절성, 실현가능성, 기획의 참신성, 효과성 등)	40
• 최근 3년간 평가 실적 (평가실적 하위 10% 이내 및 신규 지원신청관은 심사위원회가 현장방문하여 사전평가 진행)	20
<b>총점</b>	<b>100</b>

※ 자료원: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19~2021,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재정리.

### ○ 연도별 선정 지원기관(2019~2021)

- 학예인력 지원기관: 2019년 37개관, 2020년 30개관, 2021년 31개관(연평균 33개관 선정)
- 교육인력 지원기관: 2019년 35개관, 2020년 28개관, 2021년 24개관(연평균 28개관 선정)
- 선정관 중 대부분이 3년 연속 지원관으로 선정되었거나, 지난 3년간 2회 이상 지원기관으로 선정됨

연도	선정 지원관
2019	고은사진미술관, 국윤미술관, 국제현대미술관, 금호미술관, 남송미술관, 대담미술관, 총대산미술관, 도화현미술관, 리미술관, 모산호형미술관, 미누현대미술관, 밀알미술관, 35개관

연도	선정 지원관
	보름산미술관, 블 루메미술관, 사비나미술관, 서호미술관, 석봉도자기미술관, 쉐마미술관, 스페이스몸미술관, 시안미술관, 안젤리미술관, 영은미술관, 우민아트센터, 의재미술관, 이영미술관, 일민미술관, 장전미술관, 토탈미술관, 포토갤러리자연사랑, 하슬라미술관, 한국미술관, 한미사진미술관, 해든뮤지움, 행촌미술관, 헬로우뮤지움
2020	국윤미술관, 국제현대미술관, 남송미술관, 닻미술관, 대담미술관, 도화헌미술관, 디오티 미술관, 리미술관, 보름산미술관, 블루메미술관, 서호미술관, 석봉도자기미술관, 스페이 스몸미술관, 시안미술관, 안젤리미술관, 엄미술관, 영은미술관, 우민아트센터, 은암미술관, 이영미술관, 자하미술관, 장전미술관, 토탈미술관, 포토갤러리자연사랑, 하슬라미술관, 한미사진미술관, 행촌미술관, 헬로우뮤지움
2021	국제현대미술관, 다산미술관, 당림미술관, 닻미술관, 도화헌미술관, 디오티미술관, 리미 술관, 보름산 미술관, 블루메미술관, 서호미술관, 석봉도자기미술관, 스페이스몸미술관, 시안미술관, 안젤리미술관, 엄미술관, 영은미술관, 은암미술관, 임립미술관, 자하미술관, 토탈미술관, 하슬라미술관, 해움미술관, 행촌미술관, 헬로우뮤지움

※ 자료원: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19~2021,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재정리.

### ○ 지원인력 선정기준

- 개별 선정관이 신규인력 채용을 진행하되,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와 본 사업 심사위원회 보고 및 승인을 거쳐 최종합격자 선정
- 진행 과정: 공고→인력 신청접수→서류 심사+면접 심사(지원선정관)→인력모집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협회)→최종합격자 발표((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홈페이지)

(표 3-35)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학예인력 선정기준

구분	서류심사	면접심사
심사항목	1. 지원서 2. 필수 증빙자료 - 학예사자격증 사본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자기소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예사의 정의와 필요성</li> <li>• 희망업무와 이유</li> <li>• 희망업무 배치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3요소</li> <li>• 배치 희망관 성격 파악 여부</li> <li>• 지원 동기</li> <li>• 바람직한 근태</li> <li>• 장점과 특기</li> <li>• 단점</li> <li>• 상급자/동료와의 갈등 상황 대응 능력</li> <li>• 전공과 업무 일치도</li> <li>• 컴퓨터 활용능력</li> <li>• 보고서 및 기획서 작성능력</li> <li>• 어학능력</li> <li>• 업무수행능력</li> </ul>

[표 3-36]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에듀케이터 선정기준

구분	서류심사	면접심사
심사항목	1. 지원서 2. 자격 증빙 자료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사본1부 - 등록 미술관 교육/비영리 문화예술기관 교육 경력 2년 이상 증빙자료(교육 관련 결과물, 경력기간 증빙서류 필수 제출) 3. 경력증명서 각 1부씩(해당자에 한함) 4.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5.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 6. 자격증 사본 각 1부씩(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예사의 정의와 필요성</li> <li>• 희망업무와 이유</li> <li>• 희망업무 배치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3요소</li> <li>• 배치 희망관 성격 파악 여부</li> <li>• 지원 동기/바람직한 근태</li> <li>• 장점과 특기/단점</li> <li>• 상급자/동료와의 갈등 상황 대응 능력</li> <li>• 전공과 업무 일치도</li> <li>• 컴퓨터 활용능력</li> <li>• 보고서 및 기획서 작성능력</li> <li>• 어학능력/업무수행능력</li> </ul>

## □ 계약방식

계약 구분	계약 내용 등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와 지원 대상 선정관 사이의 사업약정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 인력에 대한 지원 기간 중 직무 교육 참여 동의</li> <li>• 사업관련 근무실적자료 및 평가, 통계자료 작성 등에 관한 정보 제공</li> <li>• 인건비 관의 자부담 매칭 지급 및 기타 협약 준수 의무</li> <li>• 지원 선정관은 원활한 지원금 관리를 위해 이체내역 증빙자료 제출 의무</li> </ul>
지원대상 사립미술관과 지원인력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사립미술관에 배치된 인력과 미술관은 근로계약 체결</li> <li>• 근로계약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지침에 따라 협회가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으로 체결: 관의 자체계약서 양식을 사용할 경우 표준근로계약서에 제공된 양식의 항목 모두 반영해야 하며, 협회와 사전 협의 필수</li> <li>• 단, &lt;지원약정서&gt;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각 관 내규에 맞게 근로계약서 세부사항 조정 가능</li> </ul>

### ○ 지원대상기관의 준수사항

- 인력 급여 지부담금
- 4대 보험 전체 가입과 보험료 및 세금 납부(필수)
-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준수(권고)
- 오리엔테이션 의무참석 및 e나라도움 의무 사용

### ○ 지원인력 업무범위

- 업무범위는 신청 단계에서부터 명시되어 있음
- 전문학예인력: 전시기획, 학예연구와 교육으로 구분

-에듀케이터: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획과 개발, 교육활동, 강사 섭외, 교육인력 교육은 물론 전시 및 제반 미술관 업무 협력 및 지원까지 포괄함

구분	업무	세부 업무
학예인력	전시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기획/전시진행, 작가섭외, 자료 제작, 홍보물 제작</li> <li>• [조사/연구] 소장품/자료 조사, 자료집/학술지 발간</li> <li>• [서류작성, 자료분석]</li> <li>• [도록/책자 제작] 관련자료 번역, 사진촬영, 원고작성/교정, 편집 등</li> </ul>
	학예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장품 전시]</li> <li>• [소장품 관리 및 보존수복]</li> <li>• [소장품 등록]</li> </ul>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연계 교육, 기타 미술관 성격과 임무에 따른 교육 업무</li> <li>• 제반 미술과 업무 협력 및 지원</li> </ul>
에듀케이터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및 작품의 교육적 주제 연구</li> <li>• 학교 교과과정과 교과서 연구</li> <li>• 통합교육을 위한 아이디어 개발</li> <li>• 대상별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매뉴얼 개발</li> <li>• 전시교육활동 지도 매뉴얼 개발</li> <li>• 교육활동 및 교재개발</li> <li>• 도슨트활동</li> <li>• 교육 프로그램 평가</li> <li>• 아카데미 강사진 섭외</li> <li>• 교육 프로그램 국내·외 사례 조사</li> <li>• 교육 프로그램 진행 및 보조강사 교육 등</li> <li>• 전시 및 제반 미술관 업무 협력 및 지원</li> </ul>

※ 자료원: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19~2021,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재정리.

## □ 직무교육

- 전문학예인력과 전문교육인력 모두 오리엔테이션과 직무교육 각 1회 실시(총 2회)
- 오리엔테이션: 지원약정 체결과 전문가 초청 특강
  - 관장과 학예인력, 교육인력이 함께 참석하여 지원약정 체결과 지원사업에 관한 모든 중요한 사항과 전문인력의 근무 및 운영 방법들을 공지 받게 됨
  - 매년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분야 내 전문가 초청 특강이 이루어지고 있음
  - 지원약정 체결이 이루어지고 지원기관과 인력, 협회가 모두 함께 모이는 자리로 불참 시 지원이 취소될 수도 있음
  - 2020년 이후로는 코로나 19 발발로 온라인 영상을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수강 후 수료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사업 등록이 가능함

## □ 사업관리 및 평가

(표 3-37)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평가항목과 배점

평가항목	평가(배점)		세부 평가 내용	
미술관 현황과 운영성과	1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현황과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및 교육체협사업, 지역연계사업, 사회적, 파급성과</li> <li>- 공공성, 문화예술, 학술적 가치와 평가</li> <li>- 소장품관리</li> </ul> </li> </ul>	
근무여건	2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예인력의 업무범위에 대한 적절한 업무분장</li> <li>- 제반 근무환경</li> <li>- 자부담 비중</li> </ul> </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인력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및 연구, 소장품 관리 및 자료 DB 구축 및 정보공개 등을 통해 학예연구, 전시기획의 규모와 필요성 평가</li> </ul> </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예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관 자체적인 사업수행 평가정도</li> <li>- 전문성 개발 위한 여건조성 및 질적 강화</li> </ul> </li> </ul>
학예인력 근무실적 및 기여도	50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 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적 포트폴리오 평가</li> <li>- 전시기획의 전문성, 파급효과, 전시연계 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성과, 소장품 관리</li> </ul> </li> </ul>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수행능력 및 연구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DB 구축을 위한 사업기획안 작성</li> <li>- 전시, 소장품 대상 연구자료</li> <li>- 온라인 통한 연구성과물 게시</li> <li>- 스터디, 세미나 등 자기개발</li> </ul> </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관 기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예업무, 미술관 전반에 대한 기여도</li> </ul> </li> </ul>
행정평가	1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수행 위한 관리 및 협조와 기타행정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사업 관련 제반 행정업무</li> <li>- 미술관내 행정서류 작성 및 교육 참석 등</li> </ul> </li> </ul>	
만족도 평가	1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의 학예인력 근무 만족도</li> </ul>	

※ 자료원: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19~2021,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재정리.

## ○ 평가대상 및 주체

- 대상: 당해 선정된 지원관과 지원인력
- 평가자: 협회와 협회가 구성한 1인의 단장과 2인의 외부전문가 위원으로 이루어진 평가위원회

## ○ 평가방법

- (1) 미술관 자체평가 보고서, (2) 평가위원회에 의해 개발·확정된 평가지표에 의거한 1회의 현장평가, (3) 사업을 주관한 한국사립미술관협회의 행정평가, (4) 지원 기관 대상 만족도평가를 종합함
- 현장방문 절차: 현장평가(평가위원회)→미술관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및 만족도 조사(지원대상)  
→평가단 평가보고서 완성본 제출→협회 평가보고서 최종본 제출

## ○ 평가환류

- 각 조사 결과는 차년도 지원사업 기획에 반영
- 우수인력 배출한 기관은 차년도 전문인력 지원사업 기관 선정 시 가산점 부여
- 총 5명의 우수 학예인력 선정, 상장 및 부상 수여

## □ 지원기간 및 중도퇴사자

### ○ 지원대상의 수혜기간: 지원관(연속지원 가능) vs 지원인력(연속지원 불가)

- 지원 선정관 상당수가 연속 지원을 받음
- 이는 처음부터 각 미술관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직접 지원 대상이 인력(학예사)이므로, 미술관은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음
- 대신에, 본 사업이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그 성격이 규정되면서, 지원인력에 대해서는 연속지원의 수혜를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

### ○ 지원기간 확보 노력: 연속지원을 통한 인력 급여 소급지원

- 지원사업의 전체 기간은 1년이나 신청 접수, 심사, 인력모집, 최종 합격자 발표 등을 제외해야 하므로 지원대상에 대한 실제 지원기간은 1년보다 짧음
- 다만, 이전 년도 지원을 받은 기관이 연속적으로 지원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통해 1~2월 근무를 증명할 수 있다면 1~2월 근무에 대한 급여를 소급 지원해주고 있음

### ○ 중도퇴사자 및 수시 재공모

- 중도 퇴사자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지원인력 재공모를 통해 지원인력을 추가 채용함
- 학예인력 지원인력 중도퇴사자 수: 2019년 5명, 2020년은 2명, 2021년은 3명
- 에듀케이터 지원인력 중도퇴사자 수: 2019년 6명, 2020년 4명, 2021년 1명

## □ 수혜자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 (1) 조사목적 및 방법

○ 조사목적

-지원대상관(관장) 및 지원대상 학예인력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사업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진행 사업의 문제점을 파악

○ 조사방법

-만족도 조사 설문지 양식을 이메일로 배포하고 수합한 뒤 평가위원회에서 통계 실시

(2) 지원관 만족도(2019~2021)

○ 전문인력의 급여와 지원기간을 제외하고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음  
(Ⅱ부록 3-4Ⅱ 전문인력 지원사업 지원관 만족도조사 결과 참조)

○ 주요 주관식 의견

-10개월 정도의 단기간 지원사업 문제가 가장 많이 지적됨: 학예인력 운영상의 어려운 점으로 ‘전문인력의 단기간의 근무기간’, ‘지속적인 인력 지원 필요’, ‘최소 12개월’, ‘재계약’ 등

-지원사업 예산 증액을 통한 인건비 상향: ‘인력 비용에 대한 협회 지원금 증액’, ‘인력 임금 향상’, ‘고학력자에 합당한 지원금액 증액’, ‘미술관 자부담금 감경하거나 전액 지원’ 등

-학예사의 전문성, 책임감과 같은 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거의 없었음

-그 외 ‘전문인력 교육’, ‘지방, 도서산간 지역 소재 미술관의 경우 지원인력 신청자격 완화’,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의 업무 요구 간소화’ 등의 요구가 주로 언급되었음

(3) 지원인력 만족도(2019~2021)

○ 지원인력 역시 급여와 지원기간을 제외하고 사업에 대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았음

○ 주요 주관식 의견

-근무상 어려운 점 중 근무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낮은 임금의 문제가 가장 많이 언급됨

“경력과 업무를 고려하여 급여 증액 필요성”, “전문인력 경력직 대우 필요”  
“최소 준학예사 시험 패스자와 석사 학위 이상 소지자의 인력 수준에 못 미치는 급여 수준”  
“근무경력에 따른 호봉제 도입”  
“경력기간에 따른 급여 차등지급 필요”  
“요구하는 자격과 일에 비해 비현실적 급여”  
“업무량 과중하나 지원금 적절하지 않음”  
“급여가 업무 난이도, 근무량, 주말 근무 등을 고려하지 못하는 수준”  
“미술관 규모에 따른 지원금 차등 지급”  
“물가상승률 고려하여 식대와 교통비 별도 지급”  
“미술관 근무 위해 이주한 경우 생활고 직면”

“급여조정”

“세후 200만원으로 인건비 조정 필요”

**- 근무기간의 연속성 보장에 대한 요구도 다수를 차지함**

“한 기관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기회 제공”

“지속적인 지원”

“10개월은 기간제 근로자가 개인별 업무분장표 받지 않고 미술관 운영방식 파악하고 업무 수행하기에 빠듯한 시기”

“12개월의 안정적인 채용 필요”

“근무 기간 최소 3년 보장”

“안정적인 고용구조”

“장기채용”

**- 사용자(관장)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업무 지시 및 불공정행위 시정 필요**

“미술관이 전문인력 근로자 인격존중에 책임 의식 가질 필요”

“학예업무 외 업무 지시, 전시, 새 프로젝트, 미술관 수익 확대 사업안 개발 및 관련 문서 작성 등 미술관 사업 기획 지시 등으로 인해 학예전문인력 역량 강화는 시간적·정신적으로 불가능”

“미술관 자체 채용 실무자의 업무 매뉴얼과 직무분장표 정리하여 공유할 필요”

“불합리한 업무(미술관장 개인친분모임 행사준비 및 응대/진행 등) 지시 문제 경험”

“전시실 지킴이, 인포데스크, 티켓발권 등 학예업무와 무관한 미술관 운영 실무에 투입”

“수행 업무 포트폴리오 작성 시 미술관 직인날인 과정을 거치면서 미술관 관장 개인 소장품 정보 업데이트 등 실제 수행한 업무 전체 삭제를 강요당한 경험”

“에듀케이터 지원인력이었으나 미술관 행정 실무 담당하는 학예사 부재로 교육사 업무 외 전시 및 행정업무는 물론 미술관이었던 기관이 박물관까지 운영 확장하는 바람에 박물관 업무까지 맡게 되어 힘들었던 경험”

“채용 후 급여 삭감 제안 받았던 경험”

**- 전문인력 네트워크 및 교육을 활성화하여 전문성 및 역량 강화 도모:** ‘타 미술관과의 네트워크’, ‘전국 단위의 체계화된 네트워크 형성 통한 상호정보 교류 필요’, ‘오프라인 교육(워크숍 등)을 통한 기관별 전문인력 간 교류 확대’, ‘워크숍 목적과 진행 방식’,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더 필요’, ‘교육 기회 증진’, ‘교육 및 세미나 등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개발’, ‘교육 기회 확대’ 등

**- 근무여건 개선 및 고용안정화를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현장평가 개선:** ‘전문인력의 통합적 고용 관계/근무여건/계약근로자의 고충 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표본조사 필요’, ‘근무시간, 출퇴근 시간에 대한 실태조사나 현장 실사로 점검하여 고용안정화 제고 필요’, ‘미술관 담당인력과 지원

인력 분리해 현장평가 진행 필요’, ‘단순 일자리 창출이나 성과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질적 부분 향상 평가에 주력’ 등

- **직원복지 및 4대보험 보장 필요성** 지적: ‘지원사업 통한 직원복지 증진(건강검진 등) 해결 요구’, ‘출산과 육아 등의 휴가에 대한 기준 마련 필요’, ‘육아휴직제 도입 필요’ 등
- **인력 증원 필요성**: ‘미술관 위치, 규모와 업무량 고려한 지원인력 증원이나 적절한 배치 필요’ 등
- **전문인력 행정서류 간소화 등 행정처리의 과도한 부담 경감**: ‘전문인력 지원사업 자체 업무 과중, 최소한의 증빙과 포트폴리오로 대체될 필요’, ‘포트폴리오 작성의 부담’, ‘타지원사업과 비교해 증빙서류가 많음’ 등

#### □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지원인력 통계

- **성별**: 관장,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모두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다수를 차지함
  - 관장의 경우, 평균 두 배 정도 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근무인력의 경우 이보다 더 큰 비중으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함
- **평균 연령**: 관장은 60세 이상이었고, 큐레이터와 에듀케이터는 40대 초반으로 나타남
  - 이는 관장 및 지원인력의 평균 연령대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으며, 2030세대의 비중이 낮다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전문인력 후속세대 양성 및 고용 활성화 차원에서의 대책 역시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표 3-38)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지원대상 성별과 연령 분포

년도	구분	관장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2019 (n: 64)	성별	남성 22인, 여성 42인	남성 6인, 여성 29인*	남성 5인, 여성 34인*
	평균연령	60.8세	41.7세*	37.7세*
2020 (n: 59)	성별	남성 21인, 여성 38인	남성 7인, 여성 20인*	남성 5인, 여성 21인
	평균연령	62.3세	46세	42세
2021 (n: 50)	성별	남성 18인, 여성 32인	남성 6인, 여성 24인	남성 4인, 여성 21인
	평균연령	63.2세	43세	40.8세

※ \*: 중도퇴사 및 지원종료로 전문인력 만족도 조사 불가 1인 제외

※ 자료원: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19~2021,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재정리.

## 다.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 □ 사업개요

#### (1) 추진경위 및 예산규모

- 2020년부터 미술관 전문인력(학예인력과 에듀케이터)의 업무를 지원하는 예비학예인력을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시행함

(표 3-39)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추진주체별 역할

주관	구분	역할	
(사)한국 사립미술관협회	기본계획수립 ↓	사업 운영 방안 수립	
	사업공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공고</li> <li>• 사업신청접수(전국 등록 사립미술관)</li> <li>• 신청서류 검토</li> </ul>	
	사업추진 ↓	심사위원회	지원관 확정
		지원인력 선정 결과 최종 확인 및 발표	
		교육실시	오리엔테이션/직무교육 실시
	사업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별 지원인력 활용 실적, 성과 관리</li> <li>• 월별/연간 자료 취합(각 미술관→협회), 분석, 계량화 및 활용</li> <li>• 예산 집행, 미술관별 급여지원금 지급</li> </ul>	
사업평가 ↓	현장모니터링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혜자 설문 취합, 통계</li> <li>• 종합결과보고서 작성</li> </ul>	
		결과보고(각 미술관→협회→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구분	역할
각 사립미술관, 사립대학미술관	지원인력 활용·관리· 프로그램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비학예인력별 업무부여 및 활용</li> <li>예비학예인력 급여 지급 등 고용주로서의 의무 수행 및 관리</li> <li>예비학예인력 교육 및 활용 실적 보고 등</li> </ul>

[표 3-40]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추진일정

주체	내용	기간(예정)
미술관→협회	기관신청서 접수	'00.2월
↓		
협회	기관심사 (신규 지원신청관 현장방문, 지원확정관·후보관 선정)	'00.2월
	선정관 발표	2월 이후
↓		
미술관	인력모집	'00.2월~3월
↓		
미술관	채용예정자 협회 통보	'00.3월
협회	최종 합격자 발표	'00.3월
↓		
협회	오리엔테이션 개최 계약 체결(협회-미술관/미술관-인력) 안내	'00.3월
미술관-인력	근무개시	
↓		
미술관, 인력	각 미술관 현장 근무	'00.3월~12월
협회	직무교육 실시, 평가 등	
↓		
협회	최종보고서 작성 및 사업종료	'00.12월~'00.1월

○ 사업예산: 약 965백만 원

- 처음 시작된 2020년에 비교해 2021년에는 6천여만 원이 증가하고, 대상기관 수 역시 15개관 증가함
- 그러나 2020년에 사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산규모와 집행에 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기 어려움

[표 3-41]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연도별 사업비 및 지원관 수

(최초 선정관 수 기준)

구분/년도	2020	2021
사업비	9억 원	9억 6천 5백만 원
예비학예인력 지원관 수	37개관	52개관

※ 자료원: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19~2021,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재정리.

## (2) 사업목적

- 사립미술관·사립대학미술관 잠재 근무인력 실무수련 기회 제공·일자리 창출
  -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사립대학미술관 중 경력인정대상기관에 학예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 연수가 필요한 예비학예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현장 실무수련 기회 제공,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 및 미술관 예비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 소정의 정규교육을 이수한 미술분야 전공자에게 체계적인 수련을 통하여 학예사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엄격한 관리와 검증을 통하여 자질 있는 학예사를 배출하는 데 목적을 둠
  - 미술관·박물관의 기능 확대로 핵심인력인 학예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립미술관 및 대학 미술관의 채용 규모는 학예직 근무자의 경우 1관당 평균 1.77명, 교육직은 0.67명으로 사립미술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과 역할에 비해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 예비학예인력을 사립미술관·사립대학미술관에 지원하여 전문인력의 업무를 보조하거나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미술관의 학예, 교육, 행정, 홍보, 방역 등 다양한 업무 진행에 도움이 되도록 함
- 사립미술관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
  - 예비학예인력의 실무수련을 통해 미술관 콘텐츠 생성과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여 미술관이 전시·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 코로나19에 대응
  - 코로나19의 지속적인 유행에 따라 비대면 사업 수요의 증대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하여 사립미술관 인지도 증대를 제고함

## (3) 추진방향

- 전국 등록 사립미술관·사립대학미술관 중 경력인정대상기관에 학예사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연수가 필요한 예비학예인력을 지원함으로써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현장 실무수련 기회 제공하여 미술관 전문인력 양성 및 미술관 예비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 체계적 수련을 통하여 학예사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하고, 엄격한 관리와 검증을 통하여 자질 있는 학예사 배출
- 미술관에 맞는 우수한 인력 육성하여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등 미술관의 여러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미술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

## □ 자격요건 및 선정기준

### (1) 지원대상의 범위 및 자격요건

- 양자로 구성된 지원대상: 이해상충의 관계에 있다고 간주할 수 있는 사립미술관(사용자)과 예비학예인력(근로인력)을 동시에 지원하는 양자지원 모델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사립미술관, (2) 준학예사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실무경력이 필요한 자 혹은 미술 관련 학과 전공자로, 학예사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실무수련을 필요로 하는 자</li> </ul>
지원기관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경력인정대상기관</li> <li>• 등록 미술관의 법적 요건 충족</li> </ul>
지원인력 선정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학예사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실무경력이 필요한 자</li> <li>• 미술 관련 학과 전공자로, 학예사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실무수련을 필요로 하는 자</li> </ul>

**제4조(준학예사 시험)** ① 법 제6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1.14., 2014.8.12.>

③ 제1항에 따른 준학예사 시험의 방법은 필기시험에 의하되, 공통과목은 객관식으로, 선택과목은 주관식으로 시행한다. <개정 2012.5.1.>

④ 준학예사 시험 과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5.1., 2016.11.29.>

1. 공통과목 : 박물관학 및 외국어(영어·불어·독어·일어·중국어·한문·스페인어·러시아어 및 이탈리아어 중 1과목 선택). 다만, 외국어 과목은 별표 1의2에 따른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다.
2. 선택과목 : 고고학·미술사학·예술학·민속학·서지학·한국사·인류학·자연사·과학사·문화사·보존과학·전시기획론 및 문학사 중 2과목 선택

⑤ 준학예사 시험은 매 과목(제4항제1호 단서에 따라 외국어 과목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목은 제외한다)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하여 매 과목 40점 이상과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2012.5.1., 2016.11.29.>

- 신청 제외 대상: 해당 기관에 4대보험 가입이 되어 근무 중인 인력, 재학생 및 휴학생(졸업예정자, 수료자, 야간대학원 재학생 제외), 타기관에 고용된 자, 대표와의 관계가 가족 및 친인척(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 자

## (2)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계약

### ○ 지원관 선정기준

- 지원년도 사업계획, 예비학예인력운영계획, 전년도 동 지원사업 평가 실적에 각각 30점, 50점, 20점을 배점해 심사하고 있음
- 사업 우수인력 배출관과 인력을 우수하게 관리한 기관은 차년도 사업 지원시 가산점 부여
- 심사 결과 평가 실적이 하위인 10여개 관은 협회로 인력모집결과 제출 후, 채용예정인력과 해당 관 관장(또는 부관장, 학예실장 등)의 심사위원회 최종면담을 거쳐 채용을 확정함

심사항목	배점
지원년도 미술관 사업계획 (목표의 구체성, 계획의 충실성, 적절성, 실현가능성, 기획의 참신성, 효과성 등)	30
지원년도 지원 예비학예인력 활용계획 (목표의 구체성, 계획의 충실성, 적절성, 실현가능성, 기획의 참신성, 효과성 등)	50
전년도 동 사업 평가실적 (평가실적 하위 10개관 이내 및 신규 지원 신청관은 심사 전, 심사위원회 사전 현장방문 진행)	20
<b>총점</b>	<b>100</b>

※ 자료원: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19~2021,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재정리.

### ○ 연도별 선정 지원기관

- 2020년 총 37개관, 2021년 총 52개관: 2년간 평균 44.5개관이 선정됨
- 선정된 지원관 중 대부분이 2년 연속 지원관으로 선정됨

연도	선정 지원관
2020	W미술관, 교동미술관, 국윤미술관, 남송미술관, 당림미술관, 대담미술관, 대산미술관, 리미술관, 모란미술관, 모산조형미술관, 무등현대미술관, 보름산미술관, 블루메미술관, 사비나미술관, 상원미술관, 설미재미술관, 쉼마미술관, 시안미술관, 신평미술관, 안상철미술관, 안젤리미술관, 영은미술관, 우민아트센터, 유리지공예관, 은암미술관, 의재미술관, 이영미술관, 임립미술관, 정문규미술관, 코리아나미술관, 김스아트필드, 토탈미술관, 하슬라미술관, 한국미술관, 한미사진미술관, 헬로우뮤지움, 환기미술관
2021	OCI미술관, W미술관, 교동미술관, 구하우스미술관, 국윤미술관, 금호미술관, 남송미술관, 다산미술관, 당림미술관, 대담미술관, 드영미술관, 디오티미술관, 리각미술관, 리미술관, 모란미술관, 모산조형미술관, 무등현대미술관, 미메시스아트뮤지엄, 보름산미술관, 사비나미술관, 상원미술관, 서호미술관, 설미재미술관, 성곡미술관, 소소미술관, 쉼마미술관, 스페이스몸미술관, 시안미술관, 신평미술관, 아트선재센터, 아트센터나비, 안상철미술관, 엄미술관, 영은미술관, 우민아트센터, 우제길미술관, 유리지공예관, 은암미술관, 의재미술관, 일민미술관, 임립미술관, 자하미술관, 정문규미술관, 주안미술관, 코리아나

연도	선정 지원관
	미술관, 김스아트필드미술관, 토탈미술관, 하슬라미술관, 한국미술관, 한미사진미술관, 해든뮤지움, 헬로우뮤지움

※ 자료원: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19~2021,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재정리.

## ○ 지원인력 선정기준

- 개별 선정관이 신규인력 채용을 진행하되, 협회와 본 사업 심사위원회 보고 및 승인을 거쳐 최종합격자 선정
- 진행 과정: 공고→인력 신청접수→서류심사+면접심사(지원선정관)→인력모집 결과보고서 및 증빙자료 검토(협회)→최종합격자 발표(한국사립미술관협회 홈페이지)

구분	서류심사	면접심사
심사항목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li> <li>2. 경력증명서 각 1부씩(해당자에 한함)</li> <li>3.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li> <li>4. 최종학교 성적증명서 1부</li> <li>5. 자격증 사본 각 1부씩(해당자에 한함)</li> </o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li> <li>• 학예사의 정의와 필요성</li> <li>• 희망업무와 이유</li> <li>• 희망업무 배치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3요소</li> <li>• 배치 희망관 성격 파악 여부</li> <li>• 지원 동기</li> <li>• 바람직한 근태</li> <li>• 장점과 특기</li> <li>• 단점</li> <li>• 상급자/동료와의 갈등 상황 대응 능력</li> <li>• 전공과 업무 일치도</li> <li>• 컴퓨터 활용능력</li> <li>• 보고서 및 기획서 작성능력</li> <li>• 어학능력</li> <li>• 업무수행능력</li> </ul>

※ 자료원: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19~2021,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재정리.

## □ 계약방식

계약 구분	계약 내용 등
(사)한국사립미술관 협회와 지원 대상 선정관 사이의 사업약정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배치 인력에 대한 지원기간 중 직무교육 참여 등의</li> <li>• 사업관련 근무실적자료 및 평가, 통계자료 작성 등에 관련 정보 제공</li> <li>• 인건비 지원 시 관의 자부담 매칭 지급 및 기타 협약 준수 의무</li> <li>• 지원 선정관은 원활한 지원금 관리를 위해 이체내역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제출의무</li> </ul>

계약 구분	계약 내용 등
지원대상 사립미술관과 지원인력 사이의 근로계약 체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대상 사립미술관과 지원인력은 근로계약 체결</li> <li>• 근로계약기간은 9개월 9일을 초과할 수 없음</li> <li>• 근로계약은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협회가 제공하는 &lt;예비학예인력 표준근로계약서&gt; 양식을 사용해야 함(자체양식 사용시 협회가 제공하는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의 항목이 모두 반영되어야 하며, 협회와 사전 협의하도록 함)</li> <li>• &lt;지원약정서&gt;에서 허용하는 범위 및 「근로기준법」에 준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서 세부사항을 각 관의 내규에 맞게 조정할 수 있음</li> <li>• 반드시 4대 사회보장보험 모두 가입해야 하며 취득신고일은 근무개시일과 동일해야 함</li> </ul>

○ 지원대상기관의 준수사항

- 인력 급여 자부담금
- 4대 보험 전체 가입과 보험료 및 세금 납부(필수)
- 「기간제근로자보호법」 준수(권고)
- 오리엔테이션 의무참석
- e나라도움 의무 사용

○ 지원인력 업무범위

- 예비학예인력의 업무는 전시기획·학예연구와 교육, 소장품 관리로 구분되어 있음
- 전문학예인력과 에듀케이터의 과업과 일치하나 전문학예인력과 에듀케이터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실무 지원이 업무 내용임
- 전문학예인력과 에듀케이터의 과업 지원이 예비학예인력의 업무 범위인 터라 예비학예인력 업무 범위가 매우 방대함

구분	세부 업무
학예· 전시기획	<p>조사업무</p> <p>작가연보/ 약력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전 출품 작가의 연보 혹은 약력을 조사하고, 작가의 수가 많은 경우 파일을 마련하여 전시담당 연구원이 시간을 절약할 수 있도록 도움</li> </ul> <p>관련 논문/도록/ 자료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관련 기초 자료를 조사하여 연구원이 업무 시간을 줄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도움</li> </ul> <p>소장처 조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의 도록 및 논문 등의 조사 통해 현재의 소장가, 기존 소장가들의 변천 및 수록자료의 출처, 출판사 등을 확인해 연구원의 업무 도움</li> </ul> <p>타 기관 전시일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타기관의 유사, 중복 전시를 선 확인해 중복에 따른</li> </ul>

구분		세부 업무
	조사	리스크를 줄일 수 있도록 도움
	전시제목 조사	• 개최하고자 하는 전시 주제와 부합하는 전시 제목을 조사하여 전시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
	작품가격 조사	• 출품작의 안전을 담보하고자 보험에 가입할 경우 작품 가격이 필요 미술시장 자료 검토하여 작품가격 조사하고 전시 진행에 도움
서류작성	출품작 목록 작성	• 전시품 관리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식인 출품작 목록 작성
	<역대 개최전시 요약표> 및 <관련인사 연락처> 작성	• 해외 소장처로 작품을 차용하고자 할 때 소장처가 전시 개최 능력을 확인할 경우가 있음. 이때 필요한 서류가 <역대 개최전시 요약표> 및 <관련인사 연락처>임
	해외 주요 미술관·박물관 전시계획표 작성	• 혹시 있을지 모를 관장과 학예실장 및 연구원의 해외 출장(해외 주요미술관 전시/출장계획)을 위해 사전에 해외 주요 기관의 전시계획표를 조사
	전시진행일지 작성	• 예비학예인력의 근무 성취도 향상을 위한 서류 작업
자료분석	출품작 현황 분석	• 전시 출품작 분석
	예상관람객 분석	• 과거 전시를 통해 예상되는 관람객 수 파악
도록제작	관련자료 번역	• 연구원 업무 효율성 향상 위해 관련 해외 자료 번역
	사진촬영	• 전시 출품작 촬영/재촬영이 필요한 경우 사진촬영 지원
	원고교정/도록 발송	• 연구원이 작성한 원고를 교정하고 인쇄과정을 점검하여 완성된 도록의 우편발송 작업까지 지원
작품 설치	디스플레이 작업 등	• 전시를 위해 반입된 출품작의 전시장 디스플레이 작업
	명패 및 설명판 부착	• 디스플레이가 끝난 작품에 명패와 설명판 부착
교육	교육 프로그램 작성 보조	• 국내외 주요 미술관 교육 프로그램을 조사하여 집중 분석
	교육 프로그램 개발 참여	• 교육 프로그램 개발회의 참여해 아이디어 제안
	교육 프로그램 홍보	•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을 위한 홍보 전과정
	교육 프로그램 진행 지원	• 참가신청 접수, 대기자 명단 확보 등 교육업무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원고취합·교정	• 교육 프로그램을 위해 작성된 원고의 취합과 교정
	교재 작성 보조 및 배포	• 교육관련 교재 제작시 초안 작성 등 기초 작업

구분	세부 업무
교육기자재 준비 및 관리	• 교육 프로그램 진행시 필요한 각종 시청각 기자재 준비와 작동, 관리
행사 소모품 준비	• 음료, 다과, 명패 등 행사소모품 구입하고 준비하는 등의 업무
행사진행 보조	•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업무 보조
사진촬영	• 행사기록
타기관 프로그램 조사	• 교육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행사정리	• 행사종료 후 인원체크, 출석부 등 관련 서류 정리
소장품 관리	운송 및 포장업무 지원
	• 소장처로부터 미술관까지 전시품 반입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작품 상태와 포장, 해포작업 지원
	상태검사 보조
	• 해포 완료 후 전시품 상태검사 보조
	전시비품
	• 전시품 설치 작업시 필요한 비품의 구입과 조달
	작품설치
	• 작품의 특성 및 취급방법에 대한 사전교육을 받은 뒤 전시품 설치나 보조를 지원할 수 있음
	라벨부착
	• 전시 종료 직후 작품 포장시 운송지시서와 주의사항을 표기한 라벨부착 작업
	소장품 카드 작성보조
	• 소장품 카드 작성보조

※ 자료원: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19~2021,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재정리.

## ○ 인건비 월 지급액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달리 인건비 차등지원은 없음

년도	자격요건 및 차등기준	정부지원 (원/월)	관 자부담	급여
2020	• 준학예사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경력인정대	1,600,000	200,000+∞	1,800,000+∞
2021	상기관에서 실무 경력이 필요한 자 • 미술관련 학과 전공자로, 학예사 실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실무 수련을 필요로 하는 자	1,630,000	200,000+∞	1,830,000+∞

※ 자료원: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20~2021,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재정리.

## □ 직무교육

○ 목적: 미술관 예비학예인력으로서 전문성 향상 및 실무 역량 강화와 예비학예인력

간 네트워크 형성 및 상호발전 도모

○ 직무교육은 오리엔테이션과 직무교육으로 구분하여 총 2회 진행하고 있음

-오리엔테이션: 지원약정 체결과 전문가 초청 특강

-직무교육: 실무 관련 강의와 성희롱·성폭력과 직장갑질 방지 관련 교육

년도	형태	대상	내용
2020	오리엔테이션	관장/전문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소개</li> <li>• 사립미술관 개요와 정의, 운영현황과 실태</li> <li>• 미술관 전문인력 지원 원칙과 근무자 운영 참고사항</li> <li>• 예비학예인력 주요 직무와 미술관학 기본 교육</li> <li>• 인력지원사업·사업운영지침, e나라도움 사업등록 및 교부신청 등 안내</li> </ul>
	직무교육	예비학예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0 헤럴드디자인 포럼으로 대체</li> </ul>
2021	오리엔테이션	관장/책임실무자/ 예비학예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사업 절차 안내</li> <li>• 강의 1(필수과정):</li> <li>• 미술관 운영 전략</li> <li>• 전시기획 일반: 전시기획 및 추진과정</li> <li>• 2021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사업 운영 지침, e나라도움 등록부터 정산까지</li> <li>• 예술인 권익보호의 이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포함)</li> <li>• 강의 2(선택과정)</li> <li>• 한국 사립미술관의 개요와 정의, 운영현황과 실태</li> <li>• 미술관 전문인력 지원 원칙과 근무자 운영 참고사항</li> <li>• 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주요 직무와 미술관학 기본 교육</li> </ul>
	직무교육	예비학예인력	<p>1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과적인 보도자료 작성을 위한 글쓰기 방법 제안</li> <li>• 미술관 인쇄물 기획 및 제작 A to Z</li> <li>• 존중하고 존중 받는 미술관 서비스 교육</li> <li>•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및 갑질 예방교육</li> <li>• 공문서 바로 쓰기</li> </ul> <p>2차</p>

※ 자료원: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20~2021,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재정리.

## □ 사업관리 및 평가

[표 3-42]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평가항목과 배점

평가항목	평가(배점)	세부 평가 내용
미술관 현황과 운영성과	1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현황과 실적</li> <li>• 미술관 설립역사 및 목적, 특성 대비 운영현황, 소장품 관리 등 고유업무 실적</li> <li>• 운영여건, 위치, 환경적 특성 고려</li> </ul>
근무여건 및 역량강화	2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및 근무환경</li> <li>• 예비학예인력에 대한 근무 매뉴얼, 교육</li> <li>• 학예실 및 사무실 환경, 기자재(사무실 집기 등), 근로시간</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인력의 적정성</li> <li>• 인력의 전문성-미술관의 규모, 전체 직원수, 양과 질 대비 예비학예인력의 적정성</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학예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li> <li>• 교육, 자기개발 지원, 업무소통 및 합리적 근무조건 등</li> <li>• 자체평가 정도</li> </ul>
예비학예인력 근무실적 및 기여도	50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무 실적</li> <li>• 실적 포트폴리오 평가</li> <li>• 전시, 소장품 관리, 교육성과</li> <li>•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한 업무 및 진행정도</li> </ul>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업무수행능력 및 연구 성과</li> <li>• 관련분야 전문성과 적정성, 연구성과 및 역량 강화</li> <li>• 업무 적응력 및 습득</li> <li>• 자기개발</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관 기여도</li> <li>• 미술관 운영전반, 지역협력, 프로그램 개발 등</li> </ul>
행정평가	1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사업 관련 제반 행정업무</li> <li>• 미술관내 행정서류 작성 및 교육 참석 등</li> </ul>
만족도 평가	10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학예인력의 미술관 및 사업만족도</li> <li>• 미술관의 예비학예인력 근무 만족도</li> </ul>

※ 자료원: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19~2021,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재정리.

### (1) 평가방법 및 절차

- 대상: 당해 선정된 지원관과 지원인력
- 평가자: 협회와 협회가 구성한 1인의 단장과 2인의 위원으로 외부전문가로 이루어진 평가위원회

평가방법	(1) 미술관 자체평가 보고서 (2) 평가위원회에 의해 개발·확정된 평가지표에 의거한 1회의 현장평가 (3) 사업을 주관한 한국사립미술관협회의 행정평가 (4) 지원기관 대상 만족도 평가
현장방문 절차	현장평가(평가위원회)→미술관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및 만족도 조사(지원대상)→평가단 평가보고서 완성본 제출→협회 평가보고서 최종본 제출

## (2) 평가환류

- 지원사업에 대한 현장 의견 모니터링과 컨설팅, 발전방안 제시
- 지원인력 만족도 조사를 통한 사업성과 측정
- 사업 실적의 양식화, 체계화, 계량화 및 우수사례 발굴 등

### □ 지원기간 및 중도퇴사자

- 지원대상의 수혜기간: 전문인력지원사업과 동일하게 설정
  - 지원 선정관을 살펴보면 전문인력 지원사업 때와 마찬가지로 상당수의 기관이 연속 지원을 받았음
  - 이는 처음부터 각 미술관별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고 있지 않은 결과로 볼 수 있는데, 직접 지원 대상이 인력(학예사)이므로, 미술관은 연속적으로 지원을 받더라도 그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음
  - 대신에, 본 사업이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그 성격이 규정되면서, 지원인력에 대해서는 연속지원의 수혜를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고 있음
- 중도 퇴사자 발생 및 사업 조기종료
  - 사업이 진행되는 총 2년간 2020년도에는 4명, 2021년도에는 7명의 중도 퇴사자가 발생했음
  - 후속 채용인력의 중도퇴사 또는 미술관 사정으로 사업을 조기 종료한 곳이 2020년도에는 2개관, 2021년도에는 6개관이었음

### □ 수혜자 만족도 조사결과 분석

#### (1) 조사목적 및 방법

조사목적	지원대상관(관장) 및 지원대상 학예인력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사업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진행사업의 문제점을 파악
------	---

## (2) 지원관 만족도

- 대체로 만족하고 있으나 급여와 근무기간에 대한 응답 점수가 확연하게 낮았음(Ⅱ 부록 6Ⅱ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지원관 만족도조사 결과 참조)
- 주요 주관식 의견
  - 급여 인상 요구가 가장 많음: ‘급여인상’, ‘급여 현실화’, ‘학력 및 경력 고려해 보수 수준 상향’
  - 채용기간의 연장(최소 1년, 최대 3년의 채용기간 보장): ‘장기채용지원’, ‘지원 기간 12개월로 연장 필요’, ‘연속지원’, ‘연속 채용 시 전문인력 지원처럼 1, 2월 지원금액 소급 적용 필요’, ‘3년 이상 장기근무 필수’, ‘10개월 지원은 미술관에 2개월 급여를 자부담시키는 것과 같으며, 1, 2월이 결산과 차년도 사업 구상을 위해 가장 분주한 달이라 12개월 채용 필요’ 등
  - 채용인력의 전문성 향상 및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신청자격 제한·인력 검증시스템 도입 등의 보완책 필요: ‘경력·학력 등의 차별 조건 두어 업무 전문성 향상 필요’, ‘협회가 1차로 인력을 먼저 검증하는 채용방식 제안’, ‘인성교육, 사립미술관 운영현황 등 이론 중심의 일반적 선행 교육 필요’, ‘협회나 다른 기관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 필요’, ‘실무 역량 강화 위한 실질적 프로그램 필요’, ‘미술관 업무에 대한 이해, 적극성, 능력 부족’ 등
  - 인력 처우개선: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관한 명확한 기준 제시’ 등
  - 그 외 ‘2~3인으로 지원인력 수 증원 필요’, ‘매월 해야 하는 정산보고에 대한 부담’, ‘미술관의 자부담 비용의 축소’ 등의 의견 제시됨

## (3) 지원인력 만족도

-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다고 나타났으나 지원관의 의견과 유사하게 급여와 근무기간에 있어 만족도 수준이 낮게 나타났음(Ⅱ 부록 7Ⅱ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지원인력 만족도조사 결과 참조)
- 주요 주관식 의견
  - 장기적·안정적인 연속 지원(2-3년) 및 인건비 향상 필요성이 가장 많이 제기됨: ‘장기적인 채용 지원’, ‘장기채용’, ‘연속지원’, ‘9개월의 지원 기간은 짧다’ 등
  - 사용자(관장 및 미술관) 측의 인력채용 여건 합리화에 기반한 인력지원 실시 및 부당한 업무지시 등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 ‘정확한 업무 분장과 매뉴얼을 갖추지 못한 미술관’, ‘기본적인 운영 인력이 갖추어진 미술관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소장품 관리, 교육 프로그램 수강, 전시 진행 보조역할, 대표업무, 미술관 내부 카페 업무, 소장품 세척, 미술관 수리 위한 물품 정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평가위원이 평가 시 전시, 교육, 기타 행사 등에 관련된 내용 위주로 언급하

며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음' 등

-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강화:** '실무교육',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등
- **지원사업 관련 행정업무의 간소화:** '포트폴리오에 작성해야 하는 업무 기여도', '포트폴리오에 기관의 전체 프로젝트를 기록하게 되어 있어 불필요한 정보 기입 많아 간소화할 필요' 등
- **현장평가의 내실화 및 인력 근무여건 관련 실태조사 실시 등 지원인력 입장에서의 정책적 접근 필요:** '근무 환경과 업무 내용 파악보다는 보고에 필요한 업무만을 확인하고 조사/평가하는 실태조사', '협회의 인력 근무 여건 모니터링 필요' 등

### □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의 지원인력 통계

- 관장의 성별은 매년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평균 두 배 정도 많았으나 근무인력의 경우 여성의 비율보다 압도적으로 많았음
- 평균 연령은 관장은 60세 이상이었고, 예비학예인력의 평균 연령은 30대 초중반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중위값이 30대일뿐 예비학예인력은 20대~50대에 걸쳐 분포되어 있었음
  - 예비학예인력의 연령은 30대, 20대, 40대, 50대 순으로 높았으며, 57세가 가장 높은 연령의 지원인력이었음

(표 3-43)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지원대상 성별과 연령 분포

년도	구분	관장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예비학예인력
2020 (n: 59)	성별	남성 21인, 여성 38인	남성 7인, 여성 20인	남성 5인, 여성 21인	남성 9인, 여성 38인
	평균연령	62.3세	46세	42세	34세
2021 (n: 50)	성별	남성 18인, 여성 32인	남성 6인, 여성 24인	남성 4인, 여성 21인	남성 12인, 여성 40인
	평균연령	63.2세	43세	40.8세	32.9세

※ 자료원: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20~2021,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재정리.

## 4절 사립박물관·미술관 인력지원사업의 쟁점과 과제

### 가. 인력정책의 취약성과 ‘인력지원’사업의 한계

#### □ 박물관·미술관 종사자의 고용/노동/복지정책의 부재와 인력지원사업의 모호한 위상

- 현재 제각각 다른 주관기관에 이루어지고 있는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을 총괄하여 정책 목표와 방향을 명확하게 규정해주는 정부의 종합적인 지침은 부재한 상황임
- 박물관·미술관 정책이 그 진흥의 당위성만 부각하고 있을 뿐 존재 이유와 역할, 방식은 물론, 그것을 위해 필요한 물리적인 조건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정책 목표와 방향이 구체화되어 있지 못함
  - 문체부의 <중장기 계획>에 따르면, 박물관·미술관은 “우리 사회 문화적 성과의 총체이자, 문화국가 창달의 핵심”, “과거로부터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우고, 새로운 문화 발전을 모색하는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공간”, “박물관 미술관 진흥과 효과적 관리는 문화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 국가 과제”, “삶의 질 향상, 지역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지역주민의 평생문화·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로 “지역 공동체에 기여”하는 곳으로 공간의 개념과 역할, 존재 이유가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최상위 목표, 방향, 의의 등은 문화예술 활동이나 문화시설 일반에 공히 적용 가능한 것으로, 박물관·미술관 분야의 학문적, 실천적 맥락에 기반해 ‘박물관·미술관 정책’으로서 지향해야 할 고유의 가치와 윤리, 목표와 방향이 제시되지 못함: 따라서 현재 박물관과 미술관에 요청되는 다양한 사회적 역할을 국내·외적 맥락에서 명확히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실행 과제 도출이 이루어져야 함
- 특히 박물관·미술관 정책과 관련해 최근 가장 중요한 쟁점인 ‘사회적 역할(책임)’에 관해 한국의 박물관·미술관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측면을 띠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세계적으로 더욱 중요하게 부각된 박물관·미술관 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정성과 실업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접근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움
-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박물관·미술관 정책에서 전문인력을 포함한 종사자들의 고용, 노동, 복지 등에 관한 인력정책이 부재했던 데에 기인하는 바가 크며, 박물관·미술관이 ‘좋은 일자리’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측면에 대한 정책적 인식이 충분히 구체화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음
- 국고보조사업으로 박물관·미술관 학예인력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인력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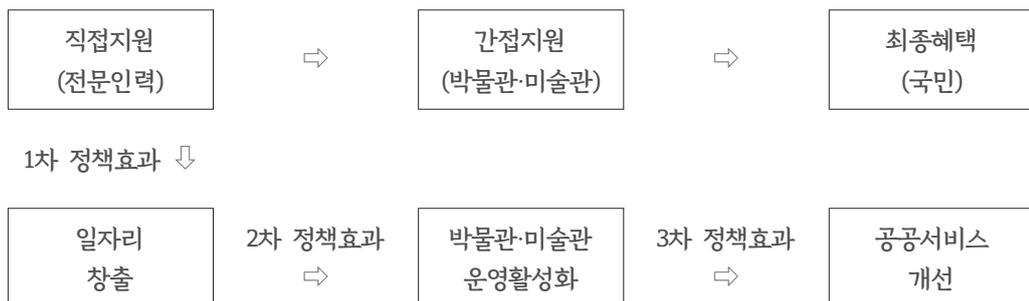
이 장기간 시행되어 왔으나, 이 사업은 직접적인 인건비를 지급하는 고용지원사업의 체제를 띠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세한 박물관·미술관의 운영지원(인건비 부담 경감)이라는 차원에서 시행되어 온 측면이 강함

- 그러다 보니 박물관·미술관 정책이 학예인력의 ‘전문성’을 핵심가치로 삼아 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인력지원사업은 박물관·미술관 종사자의 고용, 노동, 복지 등에 관한 인력정책 하에서의 정부지침이 없는 상태로 시행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음

□ **최우선의 정책목표가 무엇인가?: 사업목적의 연쇄적 정책효과를 기대하는 지원사업모델의 한계**

- 전문인력 지원사업 및 예비학예인력지원사업은 단일한 지원사업을 통해 3차의 연쇄적인 정책효과를 창출하는 모델로 설계되었다는 특수성을 지님
- 사립박물관·미술관 근무를 원하는 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원사업의 1차 수혜대상은 학예사와 에듀케이터이지만, 전문인력의 근무로 박물관·미술관은 인건비 부담을 상당 부분 절감하게 되므로 간접적 수혜대상이라 할 수 있음
- 나아가 지원사업은 인력과 기관에 대한 직간접 지원을 통해 국민은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공익기관으로서의 소명에 부합하도록 하는 정책적 기대효과를 피하고 있어, 최종적으로는 지역사회와 국민 일반이 정책적 수혜를 받는 대상으로 설정됨
- 이러한 지원사업모델은 지원사업의 가치사슬을 연쇄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지원사업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장점이 있으나, 다른 한편 이 지원사업이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정책목표 및 효과가 무엇인지 모호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음

(표 3-44)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정책효과 모델



※ 자료원: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19~2021,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재정리.

- 특히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인건비를 지급받는 전문인력을 우선하기보다는 박물관·미술관의 운영지원(인건비 부담 경감) 성격이 우선되는 측면이 지원사업 운영에서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음

- 가령, 전문인력의 일자리 창출을 우선으로 한다면, 좋은 일자리를 공급하는 것이 본 인력지원사업에서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하나, 지원관의 신청자격을 재정이나 규모 면에서 안정적인 박물관·미술관을 제외하는 쪽으로 설정하고 있어, 소규모 박물관·미술관의 인건비 경감 및 전문인력 공급의 성격이 보다 중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지원사업 평가에서도 이러한 성격은 그대로 나타나는데, 평가항목의 비중에서 지원인력에 대한 평가, 특히 근태관리, 근무실적 및 기여도에 대한 관리·감독 성격이 강하고, 이를 증빙하는 행정서류 작성 등의 업무가 실질적인 업무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인력에 대한 세부 평가 항목은 미술관 현황과 운영성과(10), 근무여건(20), 학예인력 근무실적 및 기여도(50), 행정평가(10), 만족도 평가(10) 등임
  - 반면 인력지원을 받은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평가의 경우, 평가 배점이나 항목은 상대적으로 적고,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에서는 기관평가를 자체평가 보고서로 대체하고 있기도 함
- 그러나 이 사업이 연쇄적인 정책효과를 기대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1차 정책효과인 전문인력 일자리 창출에서의 질적·양적 성과가 충분히 달성되지 않는다면, 2차, 3차의 연쇄적인 정책효과(가치사슬)를 기대할 수 없다고 봐야 함
- 하지만 이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주체(정부 및 사업위탁기관)가 이러한 측면들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 지원사업은 복수의 정책목표 내지 정책효과를 병렬적으로 다루게 되고, 그 과정에서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관계자 집단 간의 불균형한 영향력이 정책목표의 우선순위를 좌우하고 지원사업의 추진방식을 결정하는 왜곡효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

#### □ 학예인력의 정책적 과소대표성

- 인력지원사업의 운영방식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이, 박물관·미술관 정책은 전반적으로 학예사의 전문성을 중요한 운영요소로 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육성·개발하고 전문성이 고도로 발휘될 수 있는 일자리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는 취약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이러한 박물관·미술관 정책이 크게 변화하지 않고 유지되어 온 데에는 정책적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하는 이해관계자 집단의 불균형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해왔다고 할 수 있음
- 실제로 박물관·미술관 정책과 관련된 주요 의결, 심의, 자문 등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인력지원사업에 참여했거나 사립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입장이 반영될 수 있는 경우

- 가 거의 없으며, (사)한국박물관협회 등의 운영이나 활동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박물관·미술관 정책 전반에서 학예인력을 포함한 박물관·미술관 종사자의 정책적 과소대표성이 크다고 할 수 있으며, 사립관 정책에서도 이러한 점이 인력지원사업 운영을 통해서 확인됨
  - 단적으로 매년 인력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조사가 실시되고 있으나,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제기되는 인력지원사업의 장단점은 물론, 인력의 일자리 관련 고충과 문제제기, 개선요구 등은 실질적으로 박물관·미술관 정책 전반은 물론 개별 지원사업의 평가에서도 평가주체나 정책 담당자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인지되지 못해 왔음
  - 이러한 상황은 박물관·미술관 정책 및 그 추진체계와 같은 정책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나, 이러한 정책적 측면들과 긴밀한 관계를 갖는 중요한 이해관계자 집단인 학예 인력의 정책적 과소대표성에 기인하는 바가 큼

#### □ 지자체의 책임과 역할 부재한 인력지원사업

- 인력지원사업이 국고와 개별 사립관의 자부담 매칭 방식으로만 운영되는 것은 현행 박물관·미술관 정책이 지자체에 상당 부분 행정권한을 이양해 온 점, 지자체의 공립관 건립예산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온 점 등에 비추어 봤을 때, 지자체의 책임을 간과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사립관 인건비의 재원구성을 국고+지방비(지자체 매칭)+관부담(자부담 매칭)으로 편성함으로써, 사립관에 대한 지자체의 '진흥' 책임을 강화하고, 인건비 수준을 상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나. 전문인력을 취약하게 만드는 인력지원사업의 구조

#### □ 소규모 사립관 운영지원을 우선한 인력지원사업: '좋은 일자리'에 대한 요구의 과소화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쇄적 정책효과를 목표로 한 지원사업모델이 실제로 운영되는 방식은 소규모 사립관에 전문인력을 공급하고 인건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음
- 이러한 운영방식은 초기부터 인력지원사업이 소규모 사립관의 운영부담을 완화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시작되었고, 이러한 사업 성격은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주체인 관장들의 이해관계

를 대변하는 차원에서 인력지원사업이 만들어지고 고착화된 것과 연관이 큼

- 실제로 인력지원사업 만족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원관 입장의 의견은 지원인력의 요구와 공통되는 면도 있으나, 대부분은 인건비 부담의 경감(자부담의 완화나 폐지)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구체적으로는 ‘인력을 10개월만 지원해주는 것은 결국 미술관에게 2개월 급여는 자부담시키는 것과 같음’, ‘비영리기관으로서 운영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부담에 대한 비율을 없앴으면 함’, ‘자부담이 해소되어 어려운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램’, ‘시급상승과 물가상승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운영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에 인력 비용만이라도 협회의 지원금액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음’, ‘2명이 근무하면 인건비 부담을 제외하고 일의 능력에서 매우 좋으나 비영리 무수입으로 운영하는 사립기관은 자체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인건비가 부담’ 등의 의견이 확인됨
- 따라서 지원인력 입장에서는 일자리의 안정성 보장과 근무 환경의 질적 측면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립관 설립·운영주체(관장) 입장에서는 인력 채용에 따르는 비용 절감, 인력의 업무역량 및 근무태도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상충되는 입장을 보임
- 이러한 지원사업의 특수성에 기인하는 문제는 지원사업의 만족도 조사 설문을 통해서 고용 불안정성 및 열악한 처우(낮은 임금 및 복지 수준, 비전문적이고 부당한 업무지시, 지원인력의 사적 활용 등),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및 네트워킹 기회 부족 등을 중심으로 거듭 지적되어 왔음
-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현실적으로 낮은 급여 수준, 연속채용이 보장되지 않아 한시적이고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채용 기간, 채용 과정에서 최소한의 자격요건 증명을 위한 용도로만 활용될 뿐 채용 이후 승진이나 채용의 지속성을 보장해주지 않는 자격증 제도의 유명무실함, 낮은 복지 수준, 체계적인 업무 분장 없이 인력을 활용하거나 관장의 사적인 일 처리까지 지시하는 등의 기관의 임기응변적이고 비전문적인 조직 경영방식 등이 다수 지적되었음
- 동시에 지원인력들은 ‘타 미술관과의 네트워크’, ‘전국 단위의 체계화된 네트워크 형성 통한 상호정보 교류 필요’, ‘오프라인 교육(워크숍 등)을 통한 기관별 전문인력 간 교류 확대’, ‘워크숍 목적과 진행 방식’, ‘전문인력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더 필요’, ‘교육 기회 증진’, ‘교육 및 세미나 등 전문인력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개발’, ‘교육 기회 확대’ 등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할 대책을 마련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지원인력들의 목소리는 ‘인력지원사업이 ‘좋은 일자리’의 요건들을 토대로 추진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것으로,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으로서 공적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갖고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대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박물관·미술관이 복합적인 의미에서 ‘좋은 일자리’가 되어야 함을 지원인력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음을 잘 보여줌

## □ 지원인력의 고충 해결 창구 및 제도적 방법의 부재

- 현재의 인력지원사업은 박물관·미술관과 인력을 동시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양자가 대등한 지원대상이라 보기는 어려움: 고용계약을 통해서 사용자(지원관/관장)와 피용자(지원인력) 관계가 형성되고, 이를 기반으로 해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이러한 성격상 지원사업을 주관하는 협회는 실질적인 인력채용 업무를 대리하는 측면이 강하고, 최초 채용 및 이후 중도퇴사 등에 따른 10여 차례의 재모집 등 지원인력 선정 및 관리 업무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일 수밖에 없음
- 또한 지원인력은 지원관의 1차 채용과 협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채용이 확정되는 이중의 채용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일별, 월별 근무태도와 성과를 기록한 서류를 작성해 지원관의 승인·날인 후 협회에 제출해야 하는 등 사업 시작부터 종료 시점까지 촘촘한 관리를 받게 됨
- 이 과정에서 지원관은 지원대상으로서 책임이나 윤리가 엄격하게 관리되기보다는, 고용계약 상의 사용자 지위로 인해 지원인력의 근무태도 등에 대해 협회와 마찬가지로 관리감독자가 되며, 이러한 우월적 지위의 지원관에 대해 지원인력이 평가의 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는 지원사업 평가의 만족도 설문조사뿐임
- 지원관 중 전년도 평가 실적 하위 10개관에 대해서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는 절차를 두고 있으나, 지원사업 종료 후에 이에 대한 사후점검이나 평가가 평가보고서에 기록되지는 않으며, 선정된 지원관의 다수가 2년이나 3년 연속으로 지원관으로 선정되고 있어 지원관에 대한 평가의 실효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 또한 사립미술관 인력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한 성과평가 결과가 지원인력에게는 상장과 소정의 상품을, 기관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근거가 되므로, 지원인력의 높은 업무 성취도는 기관의 지원사업 선정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이나, 단년도로 운영되는 지원사업의 속성상 지원인력의 근속을 보장하는 요소가 되지 못함: 궁극적으로 지원인력의 업무성과는 기관의 혜택으로 귀결되는 방식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지원사업 운영방식이 지원인력에게 보다 높은 책임과 전문성을 요구하고 지원관의 책임과 역할(지원인력을 위한 좋은 근무여건의 조성 및 지원인력의 교육, 지원인력의 안전과 권리 보장 등)은 간과할 여지를 내포하고 있어, 지원인력이 기대하는 전문성과 그에 합당한 근무여건을 충족시키기 어려움

- 이와 관련해 만족도 설문조사에는 지원인력의 다양한 고충이 제시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이러한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창구와 고충처리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며, 설문조사 결과 역시 별도의 보고나 정책적 환류 과정을 갖고 있지 못하므로 보고서 발간을 위한 자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함
- 2020년 인력지원사업 만족도 조사 주관식 의견을 통해서 제시된 지원인력의 고충 사항들은 「예술인 복지법」의 ‘불공정행위’나 직장에서의 갑질, 국고보조사업의 부정수급 등에 해당할 불법적인 성격은 물론, 인력지원사업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의 직무를 벗어나는 업무지시에 이르기까지 다양함
  - 그러나 이러한 사항들이 사후적인 만족도 조사의 주관식 의견으로만 수합될 뿐, 개개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나 조치, 이를 토대로 한 인력지원사업의 개선이나 인력정책의 수립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 그러다 보니 아래와 같이 지원인력이 경험한 일들은 개별 지원관의 경영 전문성 부재, 관장의 개인적인 문제로만 취급되는 경향을 띠면서 개별 기관의 역량과 성찰에 좌우되는 문제로 인식되는 측면도 보임

“미술관이 전문인력 근로자 인격존중에 책임 의식 가질 필요”

“학예업무 외 업무 지시, 전시, 새 프로젝트, 미술관 수익 확대 사업안 개발 및 관련 문서 작성 등 미술관 사업 기획 지시 등으로 인해 학예전문인력 역량 강화는 시간적·정신적으로 불가능”

“미술관 자체 채용 실무자의 업무매뉴얼과 직무분장표 정리하여 공유할 필요”

“불합리한 업무(미술관장 개인친분모임 행사준비 및 응대/진행 등) 지시 문제 경험”

“전시실 지킴이, 인포데스크, 티켓발권 등 학예업무와 무관한 미술관 운영 실무에 투입되었던 경험”

“수행 업무 포트폴리오 작성 시 미술관 직인날인 과정을 거치면서 미술관 관장 개인 소장품 정보 업데이트 등 실제 수행한 업무 전체 삭제를 강요당한 경험”

(에듀케이터 지원인력이었으나) “미술관 행정 실무 담당하는 학예사 부재로 교육사 업무 외 전시 및 행정업무는 물론 미술관이었던 기관이 박물관까지 운영 확장하는 바람에 박물관 업무까지 맡게 되어 힘들었던 경험”

“채용 후 급여 삭감 제안받았던 경험”

####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의 이해대변을 위한 협회의 역할 및 제도적 장치 부재

- 그러나 인력지원사업의 목적과 취지를 훼손하는 다양한 형태의 ‘고충’들이 실질적으로 지원인력 입장에 서서 해결되지 못하는 상황은 좁게는 인력지원사업의 지원인력, 넓게는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전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는 노동조합이나 협회가 없는 상황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됨
- 실제로 인력지원사업을 주관하는 (사)한국박물관협회 및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는 박물관·미술관 회원이 지배적인 형태로 운영되며, 이러한 기관회원 가입 주체는 대부분 사립관의 관장으로

- 서 협회가 지원관 측의 이해대변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할 수 있음
- 반면 두 협회가 학예사나 종사자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운영하거나, 이들 개인을 회원으로 적극 유치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로 지원인력이나 학예사를 포함한 종사자들이 이러한 협회를 자신들의 이해대변 기구로 인식하지 않음
  - 또한 사립관의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장인 데다, 단기간 고용이 일상화된 속성을 갖고 있는 관계로, 사립관 학예사나 종사자의 이해관계를 대변할 노동조합이 별도로 조직되지 못함
- 이미 지원인력들은 이러한 문제를 여러모로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인력지원사업에서 지원관과 지원인력의 관계가 '고용계약'을 체결한 노사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인력의 '노동'을 '교육'의 의미로 희석되는 경향이 지적되기까지 함
- 즉 현행의 인력지원사업이 협회나 기관이 각각 지원사업의 집행주체와 지원대상이 아닌 후원자 내지는 교육자로 인식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력이 수행하는 '노동'이 교육이나 배움 등의 의미로 희석되고 있다는 비판임(김하진, 2021)
  - 이는 지원인력의 노동에 대한 '노동으로서의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잘 드러내는 비판이라 할 수 있음
- 인력지원사업을 주관하는 입장에서 협회는 지원관에 「근로기준법」에 준한다는 규정을 명시하고 있으나, 동시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준수를 '권고'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4인 이하 사업장인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법」의 일부 규정만을 적용할 수 있어, 지원인력이 지원관으로부터 불합리한 대우를 경험해도 법에 근거해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적음
- 한편, 인력지원사업에서 언급되지 않은 「예술인 복지법」 및 「예술인권리보장법」은 「근로기준법」 등의 사각지대인 문화예술분야에 특화된 법률로서, 특히 「예술인권리보장법」의 경우, 불공정행위의 금지, 예술인조합 활동방해의 금지, 예술인 권리보호를 위한 지원, 성평등한 예술환경 조성 및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불공정행위 피해나 고충과 관련해서는 '예술인 신문고'를 운영해 왔음. 그러나 기관과 불안정한 형태로라도 근로계약을 체결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나 종사자를 '예술인' 범주에 포괄하여 다루고 있지는 않음
- 이러한 법적 구제장치나 이해대변 기구가 취약한 현실에서, 협회는 인력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원관과 지원인력 사이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관해 조사 및 시정명령,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으나, 협회와 지원관 사이에 체결하는 <지원약정서> 제9조제2항은 '기관과 근로인력 간에 발생하는 제반 법적 권리와 의무는 양 당사자 간의 문제이다'라고, 협회의 역할과 책임을 면제하고 있음

## 제4장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현황: 국가 통계 데이터 분석

---

1절 통계 데이터의 특징

2절 사립박물관 현황 지표

3절 사립미술관 현황 지표



## 1절 통계 데이터의 특징

### 가. 법적 근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운영현황보고

- 사립박물관·미술관은 설립 계획 승인(변경 승인)→설립→등록신청→심의 후 등록 여부 결정→등록(등록 사항 변경 시 변경 등록)→운영현황보고의 절차로 운영되고 있음
-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은 「박미법」 제30조(보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등록박물관 및 등록미술관의 운영현황 보고서)에 의해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 매년 <등록박물관·등록미술관 운영현황보고>(「박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제출해야 하며, 관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관리·운영, 관람료와 이용료, 지도·감독 현황 등의 운영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은 「박미법」 제17조의 2(변경등록)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변경 등록)에 의해 등록 사항(1. 명칭, 설립자 또는 대표자, 2. 종류, 3. 소재지, 4. 삭제, 5. 시설명세서, 6. 박물관 자료 또는 미술관 자료의 목록, 7. 학예사 명단, 8. 관람료 및 자료의 이용료)의 변경 시에는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함
- 본 장의 통계 데이터는 2003년부터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하는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1)을 기본으로 작성함
  - 총람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에서 총람 작성을 위해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을 통해 수합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현황 정기보고 양식>의 일부 내용을 집계하여 구성됨
  -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현황 정기보고 양식>은 <등록박물관·등록미술관 운영현황보고>에 기반을 두고 일부 보완 및 변경하여 작성, 집계됨

(표 4-1)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현황 정기보고 양식 (칸 색 처리: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기재 데이터)

1. 기본 현황(박물관 미술관 공통)											
소재지		구분									
연번	시·도	시·군·구	국립/공립/사립/대학		관리기관 (설립자 또는 설립단체)		관리기관 전화번호		등록번호 바) 1종/2종/미등록 미) 등록/미등록		
					연락처 (대표 전화)	경도	위도	박물관/미술관 주소	준공연월일 가장 오래된 건물의 준공연월일	개관연월일	등록현황 (O/X)
2. 운영기관											
운영기관명					운영기관 전화번호						
3. 운영형태(해당사항 O)											
사단법인		재단법인		공익법인		개인		기타			
4. 온라인 서비스 현황											
온라인 주소		서비스 제공(전시설명)									
운영홈페이지(또는 블로그 등 웹주소)		오디오 가이드 제공 여부(O/X)		오디오가이드 이용료(원)		어플 등 모바일 서비스 제공 여부(O/X)					

5. 시설현황															
부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전시실			수장고		사회교육시설		자료·도서실 (단독설치된경우)		사무실 면적 (㎡)	문화상품점 면적 (㎡)	매점 면적 (㎡)	주차 대수 (대)	
		(A+B) 전시실 면적합계 (㎡)	(A) 상설 전시실 면적 (㎡)	상설 전시실 유물 교체횟수 (0회/0년)	(B) 기획 또는 특별전시실 면적 (㎡)	면적 (㎡)	향온향슬 (개별/ 중앙)	면적 (㎡)	소장자료 (권)	면적 (㎡)					소장자료 (권)
6. 재난안전관리															
소화 설비				방범/응급시설				내진설계		안전관리					
ABC분말 소화기	소화기 (개)			옥내 소화전 (대)	옥외 소화전 (대)	CCTV (대)	자동제세동기(AED) (대)	내진설계 (연도/규모)		안전관리 매뉴얼 구비여부 (유/무)		안전교육 실시회수 (연0회)			
	하론 소화기	CO2 소화기	청정소화약제 소화기					연도	규모	연도	규모				
7. 소장자료 현황															
소장자료				유물관리시스템 등록유물		상설전시 유물		지정문화재 등							
소장자료 종류	소장자료개수 (기준숫자)			전년대비 증감현황		명칭		개수(점)							
	건	점	개수(점)	개수(점)	개수(점)										
개수(점)	개수(점)	개수(점)	개수(점)	개수(점)	개수(점)										

8. 소장자로 관리 현황									
전산시스템 관리					유물대장 관리 (인클, 엑셀파일 등)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활용여부(O/X)		자체 유물관리시스템 구비여부(O/X)							
9. 전시 및 프로그램 현황 등									
기획/특별전 (연0회)	운영프로그램 (반드시 종류의 개수 작성)				조사/연구		해외교류		
	강좌 프로그램 (종)	정기프로그램 (종)	체험 프로그램 비정기프로그램 (종)	답사 프로그램 (종)	조사연구 보고서 발간횟수 (연0회)	외부발표횟수 (연0회)	해외 박물관 MOU 체결현황 (0개국 0개소)		
10. 개관									
연개관일수(일)		평일 개관시간(시작-종료)			공휴일 개관시간(시작-종료)			휴관정보	
11. 관람인원									
연 관람인원(명)					일평균 관람인원(명)				
12. 관람료(원)									
상설 전시					특별(기획)전시 * 특별(기획)전시가 없는 경우 작성하지 않습니다.				

일반	미취학 (유치원 포함)	초등학교	청소년 (중/고)	19~25세 (대학생 포함)	할인			무료 대상	일반	미취학 (유치원 포함)	유치원, 초등학교	청소년 (중/고)	19~25세 (대학생 포함)	할인			무 료 대 상
					단체 할인률 (%)	기타 할인률 (%)	기타 할인 정책							단체 할인률 (%)	기타 할인률 (%)	기타 할인 정책	

### 13. 인력현황

총계 (관장+c+d+e+f)	관장 현황 (해당란에 'O X')				학예 인력			기타 인력			자원 봉사 자
	겸직여부		관장 외 겸임직책	학예사자격증 소지 여부 (O, X)	소계 (c=a+b)	학예사자격증 소지자 (a)	학예사자격증 미소지자 (b)	학예직 외 전문직수 (교육, 전시등) (d)	일반 직원 (e)	인턴 (f)	
	전임	겸임									

### 14. 운영 재원

총 예산(총 수입)/단위: 백만 원											총 결산(총 지출)/단위: 백만원			
국비	지방비	대학본부	관람료 수입	자산운용 수입	외부기부/ 기증 등	출연금	기타	계	인건비	전시, 교육, 운영 등 사업비 (인건비 제외)	관리, 운영비 (인건비 제외)	기타	계	
														관람료 수입

### 15. 기타

작성자	연락처	데이터 기준일자	비고

## 나. 운영현황보고 데이터의 수집 및 정리 방식과 데이터의 한계

- 본 장의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기본 운영현황은 2003년부터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간하는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1)을 기본으로 작성함
- 총람에 수록된 문화기반시설별 운영현황은 문화기반시설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현황 정기보고 양식>을 기초로 작성되어 있음<sup>22)</sup>
-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현황 정기보고 양식>은 박물관미술관 현황 파악을 위한 세부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그러나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현황 정기보고 양식>의 일부 항목만 총람에 수록되어 있으며, 그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리 및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또한 기본적으로 모든 자료는 기관에서 작성한 자료로, 통계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의 지속적인 관리/점검이 요구됨

## 다. 최근 운영실태조사 보고서의 특징 및 한계

- 『2021 전국 사립박물관 운영실태조사』((사)한국박물관협회, (주)장애파트너스그룹, 2021)
- (사)한국박물관협회는 사립박물관의 운영 특성을 고려한 실태조사를 통해 사립박물관의 운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통합 관리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협회 가입 사립박물관 중 235개관을 대상으로 『2021 전국 사립박물관 운영실태조사』를 실시, 184개관이 조사에 참여함
  - 사립박물관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운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9개 영역, 21개 지표를 도출, 참여관이 자기기입식으로 온라인 데이터 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 과업종료 후 조사 데이터 확인 및 다운로드를 위해 1년간 시스템 서버가 유지 운영되지만 장기적으로 시스템을 통해 연간 데이터를 축적하여 사립박물관 운영 추이 변화를 확인 할 수 있는 지속 운영이 필요함

22) 본 장의 운영현황 자료는 국립중앙박물관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 자격증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국세청, 등기소 등의 자료와 2021년에 발간된 『2021 전국 사립박물관 운영실태조사』(사)한국박물관협회, (주)장애파트너스그룹, 2021), 『전국사립미술관 운영현황 분석연구』(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21) 등을 통해 보완함.

□ 『전국사립미술관 운영현황 분석연구』((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21)

-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는 전국적인 사립미술관 운영현황 조사·분석을 통한 고유 기능 수행 및 대국민서비스, 기여도를 파악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운영현황을 분석하여 다양한 현안에 대하여 미술관 자체적인 개선은 물론, 향후 박물관·미술관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등록 사립미술관 179개관을 대상으로 『전국 사립미술관 운영현황 분석연구』를 실시, 144개관이 조사에 참여함
  - 조사방법은 1) 보고형식에 따른 전수조사(등록 사립미술관의 설문조사/통계 및 기술형), 2) 운영사항에 대한 면접조사(설문조사를 근거로 한 현장실사/144개관), 3) 보완 요청 및 통계로 이루어졌음
  - 설문조사는 통계형 문항 외에도 1) 한국 사립미술관이 기여하고 있는 요소, 2) 현재 한국 사립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요소, 3) 한국 사립미술관의 가장 어려운 점, 4) 2020년 코로나19 사태를 직면하여 미술관의 대응전략과 미래지향적 보완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기술형 문항을 기입하도록 함
- 설문조사와 현장실사가 함께 이루어진 연구로 운영현황 조사·분석을 통한 기초적인 미술관진흥 정책개선안과 함께 미래지향적 미술관을 위한 자체적인 개선안을 도출함

□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과 최근 협회를 통해 발간된 운영실태조사 보고서의 차이와 한계

- 『2021 전국 사립박물관 운영실태조사』((사)한국박물관협회, (주)장앤파트너스그룹, 2021)와 『전국사립미술관 운영현황 분석연구』((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21)는 사립박물관과 사립미술관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운영 실태를 조사 분석하기 위한 세부 항목들을 담고 있음
- 그러나 아래 [표 4-2]와 같이, 사립박물관과 사립미술관의 운영현황 실태파악을 위한 항목들이 각각 상이한 부분이 많아 사립박물관·미술관의 통합적인 현황 파악이나 비교에 한계가 있으며,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과도 조사 항목에 차이가 있음
- 향후 사립박물관·미술관에 대한 통일되고 일관된 조사항목을 개발하고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조사내용과의 연계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자기보고식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데이터 집계방식의 보완이 요구됨
  - 현재 문체부지자체와 관련 협회가 각기 다른 항목으로 운영실태조사를 수행하면서 현장 기관의 피로도와 통계 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바, 정부가 박물관·미술관 정책과 연동된 박물관·미술관 통계를 재정비하여 데이터 기반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됨
  - 또한 통계 항목에 대한 해설집을 마련하고 지자체 담당 공무원 및 박물관·미술관 종사자 연수를 통해 데이터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

[표 4-2]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과 『2021 전국 사립박물관 운영실태조사』, 『전국사립미술관 운영현황 분석연구』 주요 조사 인덱스 비교

구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021 전국 사립박물관 운영실태조사』	『전국사립미술관 운영현황 분석연구』
일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 명</li> <li>• 소재지(시도, 시군구)</li> <li>• 주소</li> <li>• 연락처</li> <li>• 개관연월일</li> <li>• 등록연월일</li> <li>• 등록번호</li> <li>• 온라인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주소</li> <li>- 서비스 제공 (전시 설명)</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 명</li> <li>• 소재지(시도, 시군구)</li> <li>• 박물관 주소</li> <li>• 등록 유형(1종, 2종)</li> <li>• 개관연월일</li> <li>• 등록연월일</li> <li>• 등록번호</li> <li>• 설립 주체</li> <li>• 운영 형태(직접/위탁)</li> <li>• 운영 구분 (개인, 비영리법인, 재단, 주식회사, 기타)</li> <li>• 운영 주체</li> <li>• 부지(자체, 대관)</li> <li>• 연락처</li> <li>• 대표 이메일</li> <li>• 홈페이지 주소</li> <li>• 경력인정대상기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술관 명</li> <li>• 소재지(시도, 시군구)</li> <li>• 미술관 주소</li> <li>• 구분(사립/사립대학, 1종/2종)</li> <li>• 개관연월일</li> <li>• 등록연월일</li> <li>• 등록번호</li> <li>• 운영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 주체</li> <li>- 미술관 번호</li> <li>- 홈페이지</li> <li>- 이메일</li> </ul> </li> <li>• 설립 주체 및 운영 주체 (공익법인, 재단법인, 학교법인, 사단법인, 개인, 주식회사, 기타)</li> <li>• 위원회, 운영 및 자문</li> <li>• 후원회 기증 및 기부</li> </ul>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지면적</li> <li>• 건물 연면적</li> <li>• 전시실: 상설전시실 면적, 상설전시실 유물 교체 횟수, 기획 또는 특별 전시실 면적 등</li> <li>• 수장고 면적(향온항습), 사회교육시설 면적, 자료·도서실 면적(소장자료 수), 사무실 면적, 문화상품점 면적, 매점 면적, 주차 대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지면적, 건물면적</li> <li>- 상설전시실, 기획(특별)전시실, 수장고, 교육실(강당 및 세미나실), 자료실(도서실), 작업실(준비실)의 수/총 면적</li> <li>- 야외전시공간</li> <li>- 주차장</li> </ul> </li> <li>• 안전 설비 및 편의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현황</li> <li>- 대중교통 이용 가능 여부</li> <li>- 편의시설 현황</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지 연면적</li> <li>• 건물 연면적</li> <li>• 부지 및 건물 사용 형태(자체 재산, 정부/지방정부 재산 임대, 기업/대인 재산 임대)</li> <li>• 전시실</li> <li>• 수장고</li> <li>• 교육 시설</li> <li>• 자료실, 도서실</li> <li>• 학예실, 사무실</li> <li>• 준비실, 창고, 다용도실</li> <li>• 재난 안전 관리</li> </ul>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장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류</li> <li>- 수(건/점)</li> <li>- 유물관리시스템 등록유물</li> <li>- 상설전시 자료</li> <li>- 지정문화재 등</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장품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장품 종류 및 개수, 지정/등록 문화재, 문화재</li> </ul> </li> <li>• 소장품 확보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소장품 수집 여부</li> <li>- 소장품 수집 여부</li> </ul> </li> <li>• 소장품 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장자료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자료 총계 등</li> <li>- 소장자료 작품 분류별 수</li> <li>- 지정 문화재</li> </ul> </li> <li>• 관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장자료대장관리</li> <li>- 자체 자료 관시 시스템 구비</li> </ul> </li> </ul>

구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2021 전국 사립박물관 운영실태조사』	『전국사립미술관 운영현황 분석연구』	
	-유물 관리(전산시스템) • 유물 활용 -대국민 공개 여부, 유물 연구, 유물 대여	여부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및 프로그램 현황 등</li> <li>• 기획/특별전</li> <li>• 운영 프로그램: 강좌, 체험, 답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시 프로그램 -전시, 도록, 전시 안내 서비스(브로슈어), 서비스(오디오가이드, 모바일 전시 안내, 도슨트 운영, 오디오 가이드 이용료)</li> <li>• 교육 프로그램 -온라인, 오프라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 논문집 연구 성과 결과물 발간 건수 등</li> <li>• 전시: 상설전, 기획(특별)전 횟수 등</li> <li>• 교육 및 지역 연계: 상설/수시교육, 체험 프로그램 횟수 및 참여자 수/특별 교육, 체험 프로그램 등</li> <li>• 교류 협력 (MOU, 지역 연계 등)</li> <li>• 창작 공간</li> <li>• 뮤지엄숍 상품</li> <li>• 부대 행사</li> </ul>
관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관: 연 개관일수, 평일 개관시간 등</li> <li>• 관람인원 -연 관람인원, 일평균 관람인원</li> <li>• 관람료 -상설전시, 기획/특별전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람료 -상설전시, 기획/특별전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관: 연 개관일수, 평일 개관시간, 연 관람객 수 등</li> <li>-연령대별 관람객 수</li> <li>-관람료</li> <li>-전시 설명 서비스</li> </ul>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예인력</li> <li>• 기타인력 -학예직 외 전문직 수 -일반직원 -인턴</li> <li>• 자원봉사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 인력:관장, 학예인력, 교육인력, 행정인력, 보조인력(인턴, 도슨트, 자원봉사자)</li> <li>• 법정 의무교육 -법정의무교육 실시 여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장</li> <li>• 전문인력</li> <li>• 자격증 보유 현황</li> <li>• 지원 인력</li> <li>• 자체 채용 인턴</li> <li>• 자체 채용 도슨트</li> <li>• 자원봉사자</li> </ul>
홍보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홍보 현황: 홍보 방법</li> <li>• 교류 현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구성</li> <li>• 온라인 홍보</li> </ul>
재정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 재원</li> <li>• 소요 내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입</li> <li>• 지출</li> </ul>
기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 사업 -국고 지원 사업 -기타지원사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술가 창작 보수</li> <li>• 문화비 소득공제 여부</li> <li>• 근퇴 기록</li> <li>• 코로나19 관련 사항</li> <li>• 기술형 문항 등</li> </ul>

현장 실사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 운영현황에 대한 일치도,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 미술관의 의견 및 특기사항</li> <li>- 미술관: 특별한 건의사항 및 개선내용/향후 계획 및 제반 의견제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대응전략</li> </ul> </li> <li>• 실사자: 미술관 성격과 운영상의 특기사항/운영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개선요망 사항</li> </ul>
----------	---	---	---

## 2절 사립박물관 일반 현황 지표

### 가. 일반 현황

#### □ 경력인정대상기관 여부

- 「박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해 2000년부터 박물관·미술관학예사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경력인정기관으로 등록 국·공립박물관·미술관 외에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중에서 인력·시설·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실적에 대한 전문가의 실사를 거쳐 경력인정대상기관으로 인정하고 있음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심의 기준으로는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으로 인력(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직원(기관장 포함)이 2인 이상)·시설(등록 요건 적용)·자료의 관리실태 및 업무 실적이 향후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실습과 실무연수에 적합하다고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가 인정한 기관으로 소장품도록 또는 전년도록, 연구보고서 발간 여부 및 상설·특별전시 운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소장품 등록실적 등을 확인함

- 사립박물관 중 34.9%(125개관)이 경력인정대상기관(2021.12.31. 기준)<sup>23)</sup>이며 이 중 2000년 이후 경력인정대상기관으로 인정받은 사립박물관이 21개관(16.8%)임

- 행정구역 별로 서울(42개관, 33.6%), 경기도(29개관, 23.2%) 등의 순으로 많으며, 기초지방자치단체 별로 도 65개관(52.0%), 광역시 13개관(10.4%),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5개관(4.0%) 순으로 분포함

-행정구역 별 사립박물관 중 경력인정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가 60%, 대전광역시가 50%으로 과반수이상을 차지하며, 경기도(46%), 부산광역시(42.9%),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각 41.7%) 등도 경력인정대상 사립박물관 수가 많음. 반면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구역별 사립박물관 수가 4개관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이어 3순위로 많으나 경력인정대상 사립박물관은 4개관으로 사립박물관 중 경력인정대상기관 비율이 가장 낮음

####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현황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은 2000년 개정된 「문진법」에 따라 현재 본법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

23) 국립중앙박물관 경력인정 대상기관 안내 [www.museum.go.kr/site/main/content/career\\_accreditation](http://www.museum.go.kr/site/main/content/career_accreditation) 재정리.

여 전문성 있는 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고 육성하기 위한 간접지원 제도로 운영하고 있음

- 지정대상은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사립박물관·미술관은 '3)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함
  -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의 공개모집이 가능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외에도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사업지원, 각 시도별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범위 내 경비보조, 공공자금 지원우선, 공공시설의 대관, 시설 무상제공 등 개별적인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2022년 4월 기준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받은 등록 사립박물관은 5개관이며, 서울특별시와 강원도에 각 2개관, 대구광역시에 1개관으로 고유번호증 부여 단체(비영리)와 기업(인) 외 설립 비영리법인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음

행정구역	박물관 명	경력인정 대상기관	전문예술단체 최초 지정일	설립·운영 주체
서울	경기여자고등학교 경운박물관	0	2021.11.30.	기업(인) 설립 외 비영리법인 「민법」 외 법인 (학교법인)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	0	2021.11.30.	개인사업자: 고유번호 부여 단체
대구	박물관 수	0	2012.03.16.	기업(인) 설립 외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강원	영월미디어기자박물관	x	2017.12.22.	개인사업자: 고유번호 부여 단체
	한얼문예박물관	x	2013.12.23.	개인사업자: 고유번호 부여 단체

## 나. 시설 현황<sup>24)</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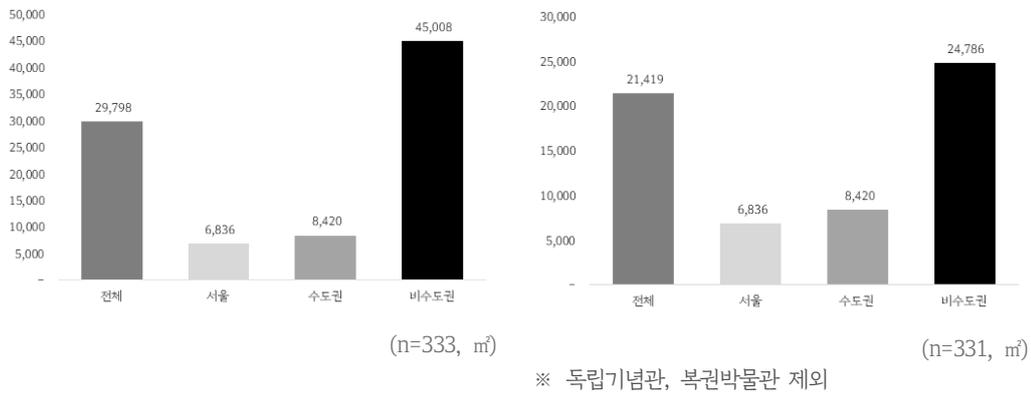
### □ 부지면적

-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0) 기준 부지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립박물관 333개관(92.0%)의 평균 부지면적은 29,798㎡으로 서울, 수도

24) 사립박물관 시설 현황의 기본 분석 자료는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0)임.

권, 비수도권으로 소재지 구분 시, 서울 소재 사립박물관의 평균 부지면적은 6,836㎡인 것에 비해, 비수도권 소재 사립박물관의 평균 부지면적은 45,008㎡로, 비수도권 소재 사립박물관이 서울 소재 박물관보다 약 6.5배 넓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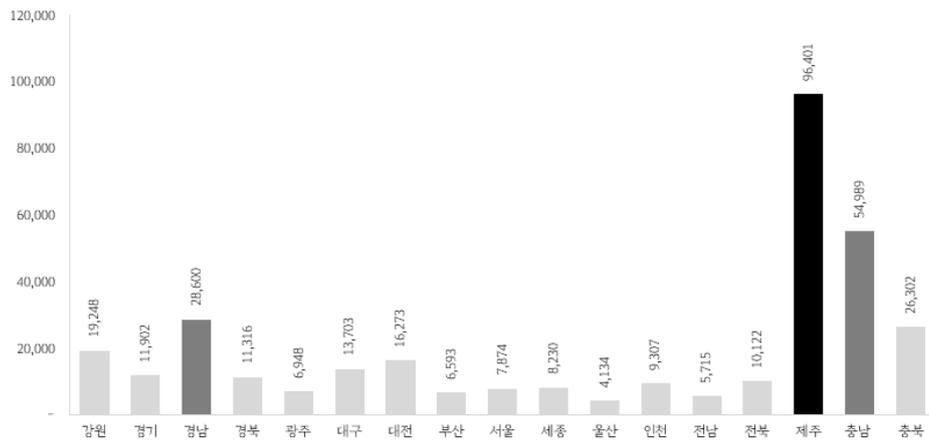
- 그러나 충남의 독립기념관(1종 등록박물관)과 복권박물관(2종 등록박물관)의 면적이 각각 3,966,998㎡, 130,845㎡으로 독립기념관의 부지면적이 제주 전체 박물관의 부지면적을 모두 합한 수치의 3배, 복권기념관은 제주도 소재 2종 박물관 중 가장 넓은 부지면적을 가진 박물관보다 부지면적이 넓음. 독립기념관과 복권기념관을 제외하고 소재지별 면적을 구하면 비수도권의 수치가 확연하게 낮아진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4-1〉 소재지별 사립박물관 면적 비교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등록유형별 평균 부지면적은 1종과 2종 모두 제주도가 가장 넓게 나타남. 행정구역 별로 1종 등록관은 제주도 96,401㎡, 충남 54,989㎡, 경남 28,600㎡ 등의 순으로 2종 등록관은 제주도 17,480㎡, 경남 7,536㎡, 전북 7,31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제주도와 충남, 경남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의 1종 박물관 평균 부지면적은 그리 높지 않음. 일부지역의 넓은 부지면적이 비수도권 지역 부지면적의 평균값을 끌어올린 것이라 해석할 수 있음. 1종 등록박물관과 마찬가지로 2종 등록박물관도 제주도와 충남, 충북, 경남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평균 부지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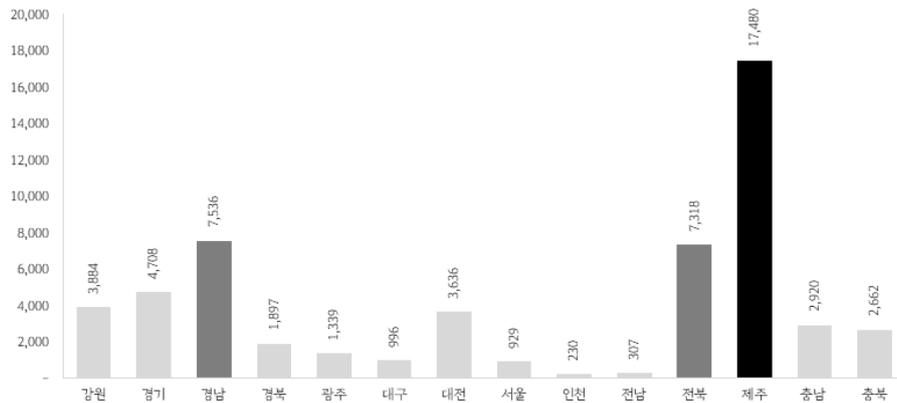


〈그림 4-2〉 행정구역 별 1종 등록 사립박물관 면적

(n=256, m<sup>2</sup>)

※ 충남 독립기념관 제외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그림 4-3〉 행정구역 별 2종 등록 사립박물관 면적

(n=75, m<sup>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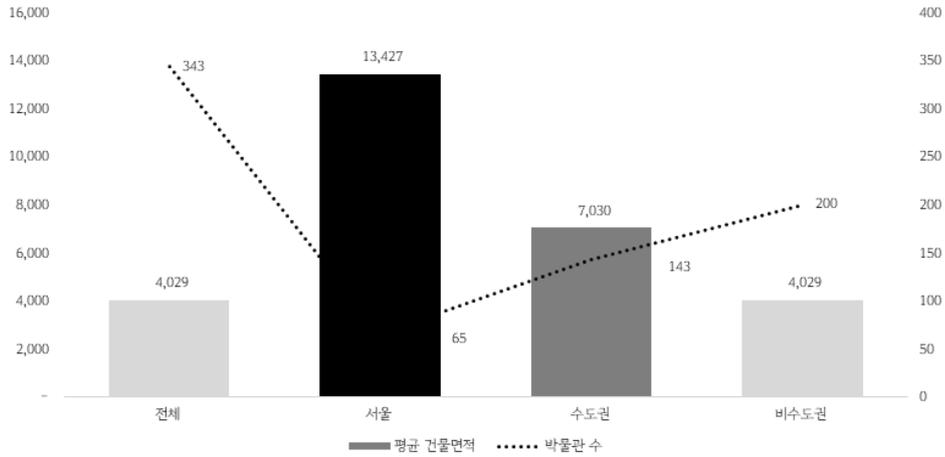
※ 충남 복권박물관 제외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 건물면적

-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0) 기준 건물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립박물관 343개관(94.8%)의 평균 건물면적은 4,029m<sup>2</sup>이며, 소재지별로 는 서울 소재 박물관의 평균 건물면적이 13,427m<sup>2</sup>로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남<sup>25)</sup>

25) 비수도권 소재 사립박물관은 건물면적과 비교하여 수도권보다 박물관의 수가 많았음. 비수도권 소재 박물관일수록 건물면적은 좁지만 공원 등 넓은 부지를 전시공간으로 운영하며 부동산 가격이 비수도권에 비해 높은 서울 소재 박물관은 층고를 높여 건물 내부의 전시공간을 넓게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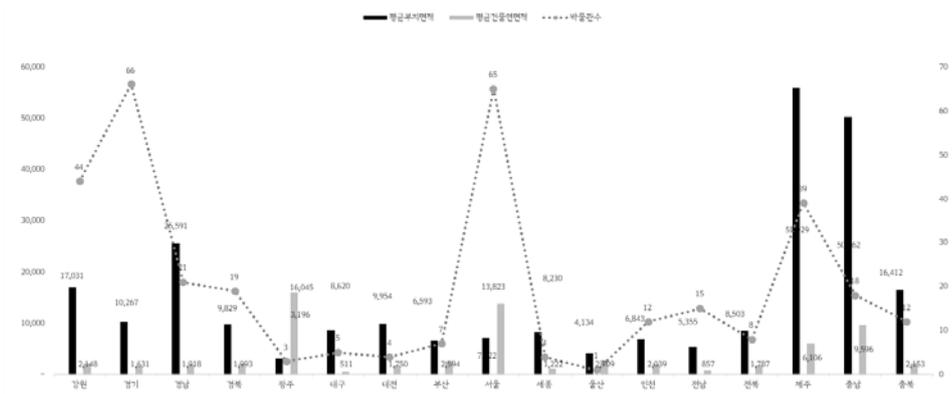


〈그림 4-4〉 건물면적 대비 사립박물관 수

(n=343, ㎡)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행정구역별로는 서울이 부지면적 대비 건물면적이 가장 넓게 나타남



〈그림 4-5〉 행정구역별 사립박물관 부지면적 대비 건물면적 비교

(n=34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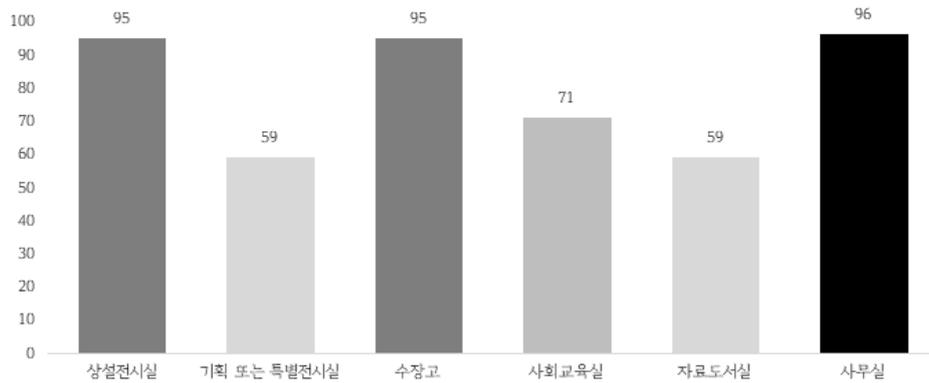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충남의 독립기념관과 복권기념관의 부지면적 제외

□ 주요시설 보유현황

-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0) 기준 사립박물관 362개관의 주요시설<sup>26)</sup>은 사무실(96%), 상설전시실과 수장고(각 95%), 사회교육시설(71%), 기획 또는 특별전시실과 자료·도서실(각 59%) 등의 순으로 많이 보유함

26) 「박미법」에 따른 미술관 등록요건은 전시장, 수장고, 사무실 또는 연구실, 자료·도서실·강당으로 이 중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은 상설전시실, 기획 또는 특별전시실, 수장고, 사회교육시설(세미나, 강당 등), 자료·도서실(단독 설치된 경우), 사무실, 문화상품점, 매점의 면적을 표기함.



〈그림 4-6〉 사립박물관 주요시설 보유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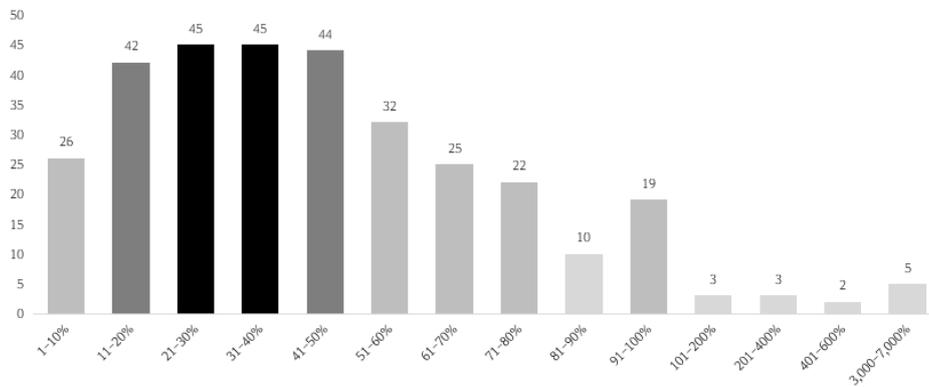
(n=362, %)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 주요시설 현황: 건물연면적과 주요시설 면적 비교

### (1) 건물연면적 대비 전시실(상설전시실+기획 또는 특별전시실) 면적 비교

-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0) 기준 전체 사립박물관 202개관(56%)의 전시실(상설전시실+기획 또는 특별전시실) 면적이 건물연면적의 50% 이하로 나타남<sup>27)</sup>



〈그림 4-7〉 사립박물관 전시실(상설전시실, 기획 또는 특별전시실) 운영현황

(n=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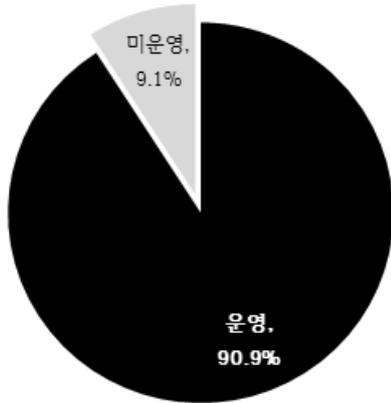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① 상설전시실 운영현황과 건물연면적 대비 상설전시실 면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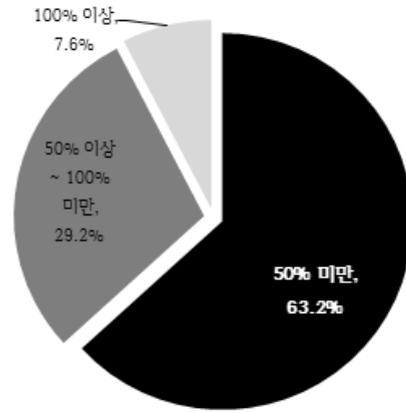
- 사립박물관의 329개관(90.9%)이 상설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음

27) 이 중 목인박물관, 원주허브팍식물박물관, 제주건강과성박물관, 일출랜드 식물원, 세계미니어처 전시관, 한림공원은 전시장의 면적이 건물연면적의 3,000%를 넘는 곳이었음. 주로 야외전시장을 운영하는 관으로 야외전시장을 전시실로 간주하여 표기한 이유로 건물연면적 대비 전시장 면적이 높게 나온 것이라 파악됨.

- 건물연면적 대비 상설전시실 면적 비교: 상설전시실을 운영하는 사립박물관 중 208개관(50%)가 상설전시실이 건물연면적의 50% 이하의 공간을 차지함<sup>28)</sup>



〈그림 4-8〉 사립박물관 상설전시실 운영현황



〈그림 4-9〉 건물연면적 대비 사립박물관 상설전시실 면적

(n=329)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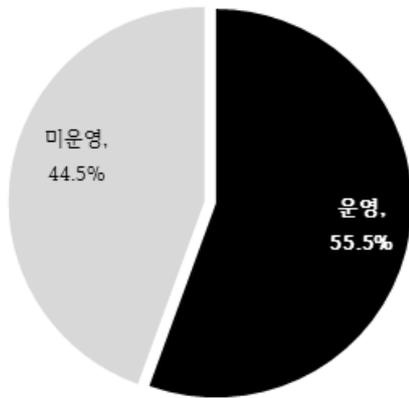
- 행정구역별 상설전시실 운영현황: 상설전시실을 운영하는 관수는 강원도가 전체 45개관 중 42개관(약 93%)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69개관 중 64개관(92%), 서울은 69개관 중 60개관(약 87%), 제주는 47개관 중 39개관(약 83%) 순이었음

## ② 기획 또는 특별전시실 운영현황과 건물연면적 대비 기획특별전시실 면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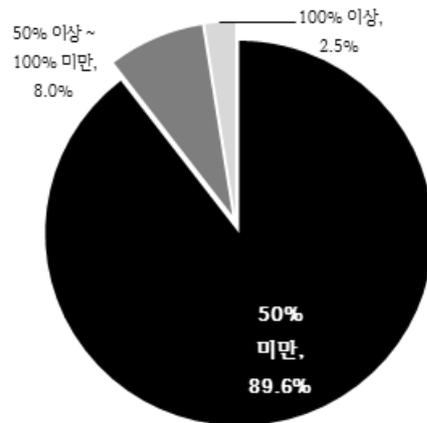
- 사립박물관의 201개관(55.5%)이 기획 또는 특별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음
- 건물연면적 대비 기획 또는 특별전시실 면적 비교: 기획 또는 특별전시실을 운영하는 사립박물관 중 180개관(89.6%)가 기획 또는 특별전시실이 건물연면적의 50% 미만의 공간을 차지함<sup>29)</sup>

28) 상설전시실의 경우 건물연면적에 비해 상설전시장의 규모가 너무 작거나 건물연면적이 미표기 되었거나 오프기된 사립박물관 외에도 상설전시실 면적이 건물의 연면적과 동일한 곳, 상설전시실 면적이 건물의 연면적의 100%를 넘거나 상설전시실의 면적이 건물연면적의 6,414%나 되는 곳도 있었음. 이는 상설전시실을 야외전시실과 동일하게 간주한 것으로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에는 전시장의 항목이 상설전시장과 기획 또는 특별전시실로만 구분되어 있고 야외전시실 항목은 파악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판단됨. 전시실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와 구분이 필요하며 전시장 항목 역시 그에 따라 세분화될 필요가 있음.

29) 기획 또는 특별전시실의 공간이 가장 넓은 곳은 제주의 한림공원으로 야외전시실을 상설전시실로 간주하여 상설전시실의 면적이 건물연면적의 4,816%가 나왔음. 기획 또는 특별전시실의 면적 비율이 200%로 높게 나온 것은 이와 같은 맥락으로 추정 가능하며, 전시실의 구분이 모호하여 야외전시실을 상설전시실과 기획 또는 특별전시실과 동일한 시설로 간주하는 몇 개관을 고려한다면 상설전시실과 기획 또는 특별전시실의 운영현황 수는 조정될 수 있을 것임.



〈그림 4-10〉 사립박물관 기획 또는 특별전시실 운영현황



〈그림 4-11〉 건물연면적 대비 사립박물관 기획 또는 특별전시실 면적

(n=201)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행정구역별 기획 또는 특별전시실 운영현황: 기획 또는 특별전시실을 운영하는 관수는 서울이 69개관 중 51개관(73.9%)으로 가장 많았고 충남이 18개관 중 13개관(72.2%) 등의 순으로 나타남. 제주는 47개관 중 14개관(29.8%)만이 기획 또는 특별전시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 사립박물관의 기획 또는 특별전시실은 상설전시실과 비교했을 때 운영 수가 상당히 낮게 나타남

## (2) 수장고 운영현황과 건물연면적 대비 수장고 면적 비교

-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0) 기준 사립박물관의 327개관(90.9%)이 수장고를 운영하고 있음
- 건물연면적 대비 수장고 면적 비교: 건물연면적 대비 수장고 면적이 10% 미만이 220개관(67.3%)으로 사립박물관의 경우 상설전시실에 거의 대부분의 소장품을 전시하고 있는 곳이 많아 수장고의 규모를 작게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됨
- 행정구역별 수장고 운영현황: 모든 행정구역 사립박물관 수의 90% 이상이 수장고를 운영하고 있음
- 반면 충북, 제주, 강원은 수장고 운영이 90%를 넘지 못함. 충북은 전체 12개관 중 9개관(75.0%), 제주는 47개관 중 35개관(74.5%), 강원은 45개관 중 38개관(84.4%)만이 수장고를 운영하고 있음

## (3) 사무실 운영현황과 건물연면적 대비 사무실 면적 비교

-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0) 기준 전체 사립박물관의 311개관(85.9%)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음
- 건물연면적 대비 사무실 면적 비교: 건물연면적 대비 사립박물관의 사무실 면적은 10%미만이 361개관(83.9%)로 이 중 2%이상~5%미만이 112개관(36.0%)으로 가장 많았고 2%미만인 곳도 94개관(30.2%)을 차지함
  - 소장품의 보존과 연구가 박물관의 주된 역할 중의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연구를 진행할 인력의 사무공간은 필수 공간이라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건물연면적 대비 10%미만의 구간에 사립박물관 사무실 면적이 분포한 것은 긍정적 신호는 아니라고 판단됨
- 행정구역별 사무실 운영현황: 경기도가 69개관 중 64개관(약 92.8%), 충남이 18개관 중 16개관(약 88.9%), 제주가 12개관 중 10개관(83.3%), 충북이 47개관 중 39개관(83.0%)으로 가장 많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전남은 17개관 중 13개관(76.5%)만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4) 사회교육시설(세미나, 강당 등) 운영현황과 건물연면적 대비 사회교육시설 면적 비교

-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0) 기준 전체 사립박물관의 251개관(69.3%)가 사회교육시설(세미나, 강당 등)을 운영하고 있음
- 건물연면적 대비 사무실 면적 비교: 건물연면적 대비 사립박물관의 사회교육시설 면적은 10% 미만이 124개관으로 49.4%를 차지함
- 행정구역별 사회교육실 운영현황: 대전과 울산의 사립박물관은 모두 사회교육실을 운영하며, 경남이 21개관 중 19개관(90.5%), 충남이 18개관 중 14개관(77.8%),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반면, 제주는 47개관 중 23개관(48.9%)만이 사회교육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5) 자료·도서실 운영현황과 건물연면적 대비 자료·도서실 면적 비교

-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0) 기준 전체 사립박물관의 186개관(51.4%)이 자료·도서실을 단독 설치·운영하고 있음
- 건물연면적 대비 자료·도서실 면적 비교: 자료·도서실의 면적은 건물연면적 대비 5%미만이 123개관(66.1%)을 차지함. 5%이상~10%미만도 32개관(17.2%)임
- 행정구역별 자료·도서실 운영현황: 세종과 울산의 사립박물관은 모두 자료·도서실을 운영함. 반면, 자료·도서실 운영이 가장 낮은 지역은 인천으로 12개관 중 2개관(16.7%)만이 자료·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전북 8개관 중 3개관(37.5%), 제주 39개관 중 21개관(약 53.8%)이 자료·도서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6) 문화상품점 운영현황과 건물연면적 대비 문화상품점 면적 비교

-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0) 기준 전체 사립박물관의 111개관(30.7%)이 문화상품점을 운영하고 있음
- 건물연면적 대비 문화상품점 면적 비교: 문화상품점의 면적은 건물연면적 대비 5%미만이 81개관(73.0%)이었으나 건물연면적 대비 문화상품점 면적이 20%이상~50% 미만을 차지하는 곳이 8개관(7.2%)<sup>30)</sup>로 주로 테마파크나 식물원이며, 이 중 5개관이 제주에 위치함
- 행정구역별 문화상품점 운영현황: 사립박물관이 단 한 개관인 울산 지역을 제외하고 문화상품점 운영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로 47개관 중 22개관(46.8%)이 문화상품점을 운영하고 있음. 그 다음으로 강원 45개관 중 20개관(44.4%), 인천 12개관 중 5개관(41.7%) 등의 순으로 문화상품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7) 매점 운영현황과 건물연면적 대비 매점 면적 비교

-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0) 기준 전체 사립박물관의 72개관(19.9%)이 매점을 운영하고 있음
- 건물연면적 대비 매점 면적 비교: 매점을 운영하는 72개관 중 81.9%(59개관)이 건물연면적 대비 10%미만의 공간 면적에 매점을 운영하고 있음
- 행정구역별 매점 운영현황: 주로 수도권과 제주에 분포되어 있어 테마박물관, 식물원 등 부지면적이 넓은 관과 서울 지역의 롯데월드 민속박물관, 전쟁기념관 등 규모가 크고 단체관람객이 많은 곳이 매점을 운영하고 있음

## 다. 소장자료 현황

### □ 소장자료 종류/성격

- 국립중앙박물관은 전국의 국·공·사립박물관·미술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소장품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해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음. 배포 요청 사립박물관·미술관에서 작성하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배포 사전조사>의 소장품의 성격에 따라 사립박물관의 소장자료 종류/성격은 아래와 같이 10개

30) 테마파크와 식물원이 유희를 목적으로 한 여가 활동에 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관련 문화상품의 판매로 관람료 외의 부가 수익을 창출하려는 목적으로 문화상품점을 넓은 공간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음.

의 분류체계로 구분할 수 있음

대분류	설명
고미술	발굴 유물, 도자기, 회화 등의 고미술품
근현대미술	근현대 회화, 조각, 설치미술 등의 근현대미술품
역사 문헌	금석문, 고문헌, 고문서 등의 문헌자료
근현대사	근현대 역사와 문화와 관련된 유물과 자료
민속생활사	근현대 민속, 생활 관련 유물
자연사	화석, 표본, 암석, 공룡 등 인간 이외의 자연계의 발전과 변화에 관한 자료
과학사	천문, 우주항공, 의학, 전통과학 등 과학사 관련 자료 수집 전시
학교사, 기업사	학교, 기업 등 해당 기관의 창립과 발전 등에 관한 역사 자료
문학	개인의 문학사적인 업적을 기리고 그 유품 등을 수집전시
기타	-

※ 분류 기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배포 사전조사>의 소장품의 성격

-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0) 기준 사립박물관 342개관을 위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아래와 같이 민속생활사(35개관) 부문이 가장 많으며, 세분류로는 민속/생활사(52개관), 종교유물/종교사(44개관), 산업/과학/기술/기업사테마박물관(테마파크형박물관)(34개관), 고미술(24개관) 등의 순임

[표 4-3] 사립박물관의 소장자료 종류/성격

(n=342)

분류	세분류	기관 수	기관 비율	
고미술		24	7.0%	
근현대미술(근현대 제작 전통미술 포함)		7	2.0%	
역사문헌(출판문화+문헌자료)		13	3.8%	
근현대사	인물 기념	10	21	6.1%
	사건 기념	11		
민속생활사	민화/민속공예	5	100	29.2%
	자수, 복식, 장신구, 화장/미용, 여성생활사, 섬유	15		
	민속/생활사	52		
	음식문화	13		
	해외 민속/생활사	15		

분류	세분류	기관 수	기관 비율
자연사	자연사	21	40 11.7%
	식물원/정원(테마공원)	19	
과학사	의약학	6	9 2.6%
	천문	1	
	에너지/자원	2	
학교/기업사	학교사	4	39 11.4%
	산업/과학/기술/기업사	35	
	금융/화폐	0	
문학	문학관	7	2.0%
기타	어린이박물관	4	82 24.0%
	종교유물/종교사	44	
	테마박물관(테마파크형 박물관)	34	
합계		342	100%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 소장자료 수(건/점)<sup>31)</sup>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소장자료 수 건 혹은 점 수로 기입한 기관은 347개관(97.2%)으로 소장자료 수를 기입하지 않은 10개관(2.8%) 중 8개관이 등록 사립박물관<sup>32)</sup>임

(n=357)

비고	건/점 모두 응답	건수만 응답	점수만 응답	미응답
박물관 수	266	12	69	10
기관 비율	74.5%	3.4%	19.3%	2.8%

※ 응답 관 중 호림박물관은 신림본관, 신사본관이 하나로 통합 응답.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31) 본 소장자료(점) 수는 등록소장자료는 아니지만 사립박물관의 등록 기준(소장자료)로 판단할 수 있음.

32) 소장자료 수를 기입하지 않은 등록 사립박물관은 서울 1개관(첫대박물관), 대구 1개관(농경생활사박물관), 충북 1개관(매곡박물관), 전남 1개관(히든트릭박물관), 경남 2개관(외도조경식물원, 장사도해상공원), 제주 3개관(SOS박물관, 제주평화박물관, 보선안화석박물관)으로 1종 등록관 6개관, 2종 등록관 1개관으로 소장품을 미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단순하게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인지, 파악이 불가능해 표기를 하지 못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함.

- 소장자료는 점 수 기준으로 335개관이 총 4,491,598점, 기관 당 평균 13,408점의 소장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소장자료 수는 최소 23점(휴애리, 제주)부터 최대 600,000점(일출랜드식물원, 제주건강과 性박물관, 제주)까지 소장하고 있으며 1,000점이상 소장자료(점)을 소장한 사립박물관이 69.7%를 차지함
- 1종 중 소장자료(점) 수가 100점 미만인 기관도 1개관(휴애리, 제주) 있었으며, 2종은 모두 60점 이상의 소장자료(점)를 가지고 있음

[표 4-4] 사립박물관의 소장자료 수(건/점)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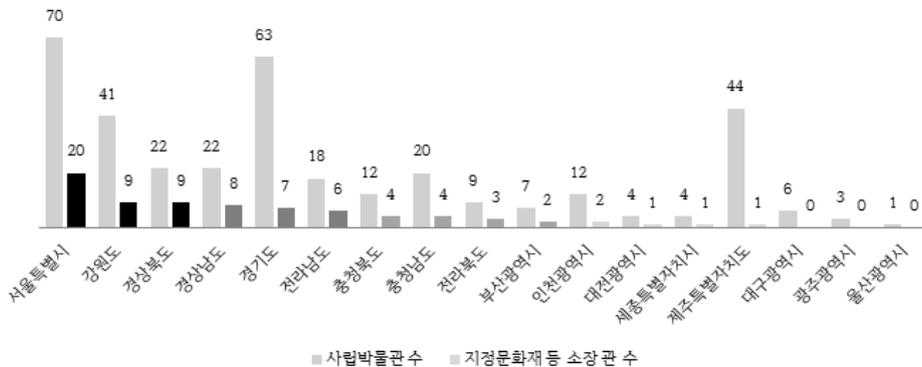
(n=357)

비고	60점 미만	60점 ~ 99점	100점 ~ 499점	500점 ~ 999점	1,000점 ~ 4,999점	5,000점 ~ 9,999점	10,000점 ~ 99,999점	100,000점 ~ 600,000점
박물관 수	1	3	64	40	121	32	85	11
기관 비율	0.3%	0.8%	17.9%	11.2%	33.9%	9.0%	23.8%	3.1%

※ 응답 관 중 호립박물관은 신립본관, 신사본관이 하나로 통합 응답.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 지정문화재 등 소장 현황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기준 사립박물관 중 21.5%(77개관)가 지정문화재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이 중 1종 등록관이 90.9%(70개관)이며, 주로 종교유물/종교사 박물관, 인물 기념 박물관 등임
- 행정구역별로 서울 20개관, 강원도와 경상북도 각 9개관, 경상남도 8개관, 경기도 7개관, 전라남도 6개관 등의 순으로 지정문화재 등 소장 사립박물관이 분포하며, 대구, 광주, 울산은 지정문화재 소장 사립박물관이 없음



<그림 4-12> 행정구역별 사립박물관 지정문화재 등 소장 현황

(n=358)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사립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지정문화재 등은 총 약 79,737점(또는 건)으로 이 중 보물이 7.4%(5,899점 또는 건), 국보 0.1%(44점 또는 건), 등록문화재/지정문화재/국가기록물 등이 92.5%(73,794점 또는 건)으로 나타남

□ 유물관리시스템 등록유물 수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사립박물관 중 191개관(53.4%)의 454,145점이 유물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음(전체 사립박물관 소장자료 중 10.1%)

- 1종 등록사립박물관의 56.3%(157개관)이 유물관리시스템에 등록

(표 4-5) 사립박물관 종별 유물관리시스템 등록관 비교

구분	1종		2종		미등록		합계	
전체	279	77.9%	72	20.1%	7	2.0%	358	100%
유물관리시스템 등록관	157	82.2%	34	17.8%	0	0.0%	191	100%
전체 수 대비	56.3%		47.2%		0.0%		53.4%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기관 당 최소 1점(영천역사박물관)에서 최대 104, 249점(독립기념관)이 등록. 10,000점 이상 등록관은 모두 1종 등록사립박물관이며, 사립박물관 33개관(9.2%)이 전체 소장자료를 모두 유물관리시스템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남

(표 4-6) 사립박물관 별 유물관리시스템 등록유물 수 비교

(n=189)

구분	1점~99점	100점~299점	300점~599점	600점~999점	1,000점~1,999점	2,000점~9,999점	10,000점~104,249점
박물관 수	13	55	21	20	35	35	10
기관 비율	6.8%	28.8%	11.0%	10.5%	18.3%	19.4%	5.2%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상설전 유물교체 횟수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사립박물관 중 276개관(77.1%)가 연간 상설전시실 유물 교체횟수를 응답함

- 연간 상설전 유물교체 횟수는 1회 ~ 5회 미만 기관이 193개관(84.4%)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 1회 미만 기관이 40개관(14.5%), 유물 교체가 없는 기관도 25개관(9.1%)을 차지함

[표 4-7] 사립박물관 연간 상설전 유물교체 횟수 비교

(n=276)

구분	교체 없음	1회 미만	1회 이상~5회 미만	5회 이상	기타 (상시, 수시교체 등)
박물관 수	25	40	193	9	9
기관 비율	9.1%	14.5%	69.9%	3.3%	3.3%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자료·도서실 소장자료 수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사립박물관 중 80.2%(207개관)가 자료·도서실을 단독 설치함. 이 중 185개관(89.4%)이 총 1,046,486권의 자료·도서실 소장자료를 보유, 기관 당 평균 5,656권의 자료·도서실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
  - 자료·도서실을 단독 설치한 사립박물관 중 1종관이 116개관(56.0%)을 차지함
  - 기관 당 최소 17권(원숭이학교 자연사박물관)에서 최대 154,616권(한국도량형박물관)을 소장. 10,000권 이상 소장관이 106개관(57.3%)를 차지함

[표 4-8] 사립박물관 자료·도서실 소장자료 수 비교

(n=185)

구분	1권 ~ 99권	100권 ~ 299권	300권 ~ 599권	600권 ~ 999권	1,000권 ~ 1,999권	2,000권 ~ 4,999권	5,000권 ~ 9,999권	10,000권 ~ 154,616권
박물관 수	8	26	30	15	33	39	9	25
기관 비율	4.3%	14.1%	16.2%	8.1%	17.8%	21.1%	4.9%	13.5%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라. 전시 및 프로그램 현황

□ 전시: 기획/특별전 운영현황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사립박물관 중 기획/특별전을 운영하는 기관은 235개관(65.6%)으로 전국 기획/특별전 개최 연평균 횟수는 2.1회로 나타남. 기획/특별전 운영 사립박물관 중 189개관(80.4%)가 연평균

2회 이하의 기획/특별전을 개최함<sup>3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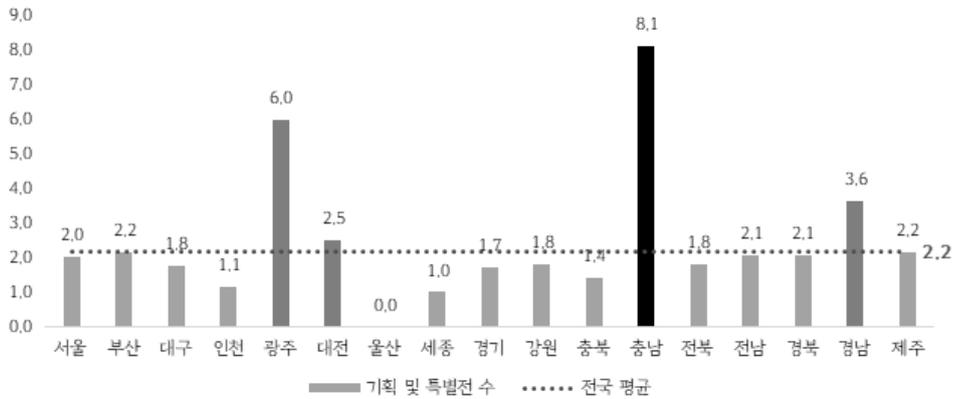
(표 4-9) 사립박물관 연간 기획/특별전 운영 횟수 비교

(n=235)

구분	1회 이하	2회	3회~5회	6회~9회	10회~16회
박물관 수	73	116	34	8	4
기관 비율	31.1%	49.4%	14.5%	3.4%	1.7%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행정구역별로 충남(8.1회), 광주(6회), 경남(3.6회), 대전(2.5회) 등의 순으로 기획/특별전 연간 운영 횟수가 많음



〈그림 4-13〉 전국 사립박물관 기획 및 특별전시 운영 횟수

(n=225)

※ 기획전 및 특별전 횟수는 연 평균 횟수를 기준으로 했으며, 격년 진행의 경우 평균값, 비정기(부산, 경기 소재 증권박물관)의 경우 제외함.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 교육 및 지역 연계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전체 사립박물관 중 275개관(76.8%)이 총 2,264종의 프로그램(강좌, 체험(정기, 비정기), 답사)을 진행하며, 유형별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하는 기관은 28개관(4.8%)으로 나타남 -유형별로 체험 프로그램(225개관, 92.7%), 강좌 프로그램(142개관, 51.6%), 답사 프로그램(55개관, 20.0%) 순으로 많이 운영

33) 독립기념관(충남)과 해금강테마박물관이 각 연 16회, 세계조가비박물관(제주) 12회, 진주어린이박물관 10회 등의 순으로 많이 운영함. 반면, 옛티민속박물관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질박물관(대전), 한국토종씨앗박물관(충남), 용문사성보유물관(경북)은 2년에 1회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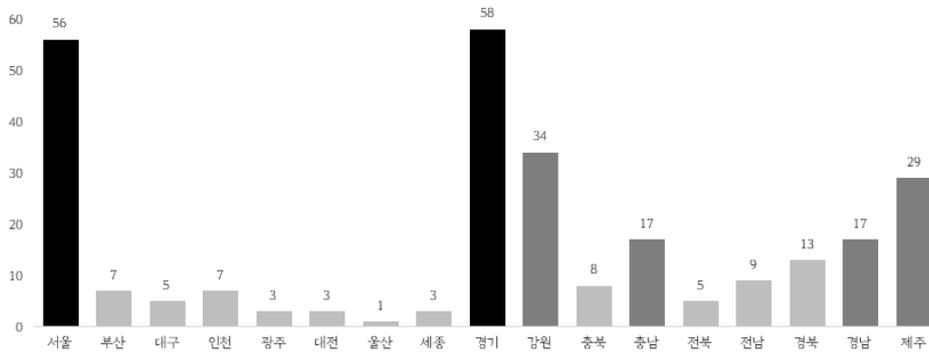
(표 4-10) 유형별 사립박물관 프로그램 운영현황 비교

(n=275)

구분	프로그램	강좌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답사 프로그램	모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기	비정기		
박물관 수	275	142	208	196	55	28
기관 비율	100%	51.6%	75.6%	71.3%	20.0%	10.2%
전체 종수	2264	357	846	953	108	-
기관 당 평균 종수	8.2	2.5	4.1	4.9	2.0	-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경기 8개관, 강원 6개관, 서울/충남 각 4개관, 전남 2개관, 부산/광주/경남/제주 각 1개관임
- 행정구역별로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지역은 서울(56개관), 경기(58개관), 강원(34개관), 제주(29개관)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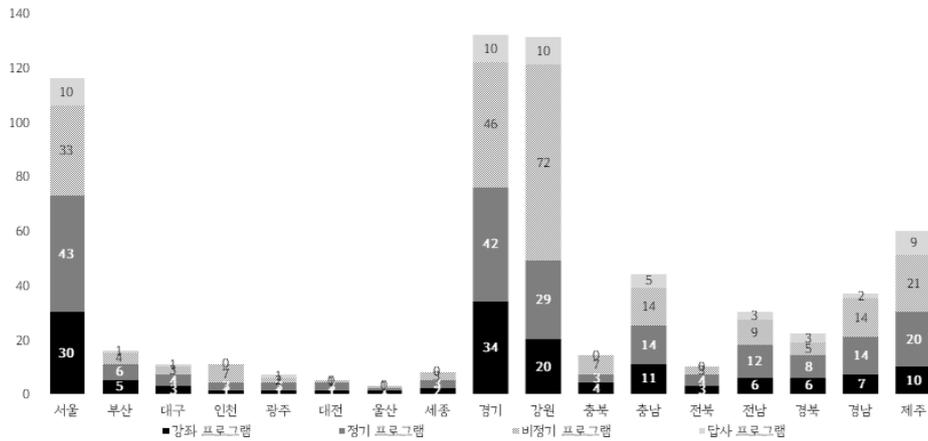


(그림 4-14) 행정구역별 사립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기관 수

(n=275)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광주와 울산에 위치한 사립박물관은 모두 1개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 충남, 부산, 대구, 서울, 강원 지역의 사립박물관 80% 이상은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체험 프로그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15〉 지역별 사립박물관 프로그램별 운영 기관 수

(n=275)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2021 전국 사립박물관 운영실태조사』((사)한국박물관협회, (주)장애파트너스그룹, 2021)는 대상별로 온/오프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유치/초등, 청소년, 성인, 가족, 취약계층으로 구분하여 집계함

-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는 2019년 평균 참여자가 6,036명, 2020년 평균 참여자는 1,025명으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아 전년도 대비 참여자가 약 5천명 감소(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52.3% 감소/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9.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19년 대비 2020년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가 감소한 사립박물관이 60.3%, 2019년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지만 2020년에 운영하지 않은 박물관이 7.1%로, 사립박물관의 67.4%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감소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67.9%의 사립박물관이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38.1%의 사립박물관이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2019년과 2020년 모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사립박물관은 7.1%

2020년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한 사립박물관이 31.0%(22.8%의 사립박물관은 방문이 어려운 유치원/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 신설)

## 마. 개관 현황

### □ 개관일수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사립박물관 329개관의 개관일수는 최소 2일~최대 365일로 평균 개관일수는 217일로 나타남. 2019년 기준 사립박물관 343개관의 평균 개관일수는 300일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평균 개관일수는 72.3% 수준으로 83일이 적게 나타남

- 365일 개관 사립박물관은 총 48개관으로 제주 34개관, 강원 5개관, 경남/전남 2개관, 경기/경북/대전/서울/세종 1개관으로 모두 등록 사립박물관임. 2019년 기준 265일 개관 사립박물관은 67개관이었음
- 등록 사립박물관은 「박미법」 제21조(개관)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개관 일수)에 의해 연간 90일 이상 개방(개관)해야 함. 그러나 2020년 기준 연간 개관 일수가 90일 미만인 등록 사립박물관은 38개관으로 나타남
- 사립박물관의 34.7%(114개관)가 일 년의 절반 미만으로 개관, 아라리인형의집 박물관(강원)을 제외하면 모두 등록 사립박물관이며, 사립미술관의 36.8%(121개관)가 300일 이상 개관, 이 중 강원랜드 뿌리관(강원), 매곡박물관(충북), 천호카톨릭성물박물관(전북)을 제외한 119개관이 등록 사립박물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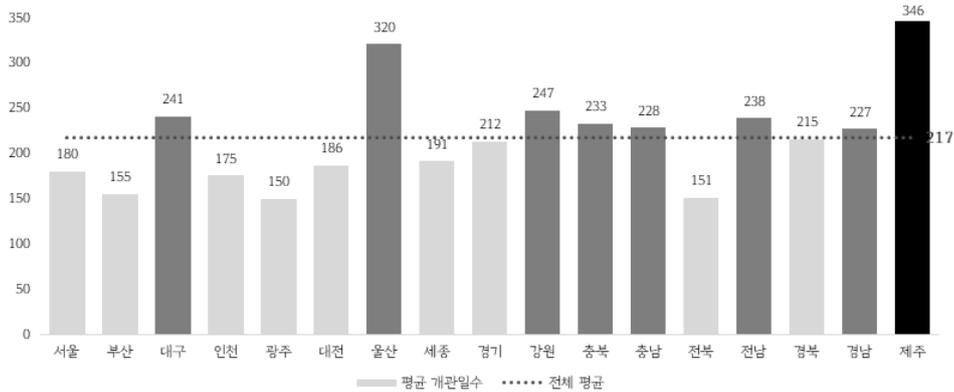
(표 4-11) 사립박물관 개관 일수 분포

(n=329)

개관 일수	90일 미만	90일~181일	183일~260일	265일~299일	300일~363일	365일
기관 수	38	76	74	20	73	48
비율	11.6%	23.1%	22.5%	6.1%	22.2%	14.6%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행정구역별로 제주(346일), 울산(320일), 강원(247일), 대구(341일), 전남(238일) 등은 평균 개관일수보다 개관일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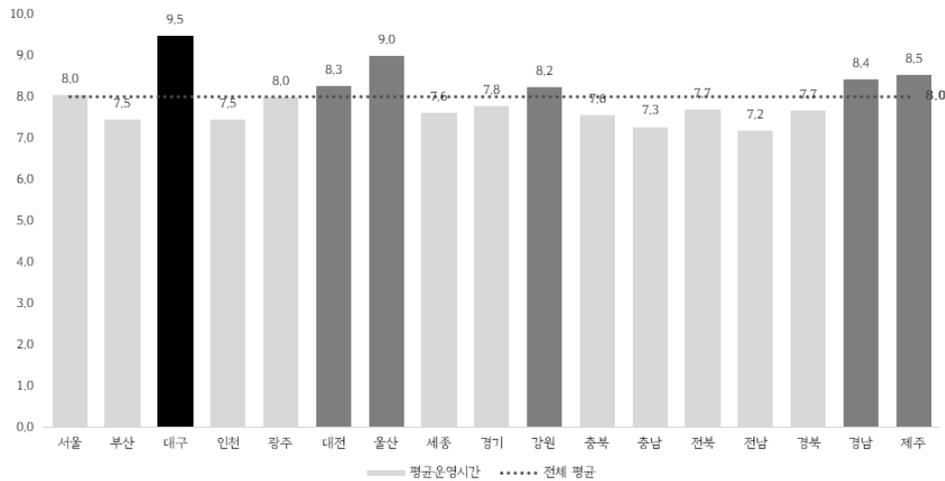
〈그림 4-16〉 행정구역별 사립박물관 평균 개관 일수

(n=329)

- ※ 휴관 기관, 개관일수 미기재 기관을 제외한 박물관 평균일수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 개관시간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358개관 중 휴관일을 제외한 평일 및 공휴일에 개관하는 사립박물관은 336개관(2019년 기준 344개관)이며, 이 중 309개관이 평일과 공휴일 모두 개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 사립박물관 평균 개관 시간은 309개관의 평균 운영시간은 8시간이며 대구(9.5시간), 울산(9.0시간), 제주(8.5시간), 경남(8.4시간), 대전(8.3시간), 강원(8.2시간)의 경우 전국 평균 운영시간보다 길게 운영함
- 「박미법」 제21조(개관)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개관 일수)에서 규정한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의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을 준수하고 있음



〈그림 4-17〉 행정구역별 사립박물관 평균 개관 시간

(n=336)

- ※ 평일, 공휴일 운영시간의 경우 하절기, 동절기 시간이 상이한 경우 두 기간의 평균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총 운영 시간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바. 관람 현황

### □ 관람인원

#### (1) 연 관람인원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사립박물관 327개관의 연 평균 관람인원은 28,212명임. 2019년 기준 사립박물관 339개관의 연 평균 관람인원은 85,777명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평균 관람인원이 32.9% 수준으

로 감소하였음

- 이 중 연 1천 명 이상~1만 명 미만 관람한 기관이 128개관(39.1%), 1만 명 이상~10만 명 미만 관람한 기관이 100개관(30.6%), 10만 명 이상 관람한 기관이 25개관(7.6%)등의 순으로 나타남. 2019년 기준 10만 명 이상 관람한 기관은 63개관(18.6%)을 차지함
- 또한 제주는 연 10만 명 이상 방문한 기관 중 14개관(56%), 반면 1천 명 미만 방문한 기관 중 25개관(33.8%)은 서울에 위치하는 것과 같이 제주지역 박물관에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12] 행정구역별 사립박물관 연 평균 관람인원 분포 현황

(n=327)

행정구역	1천 명 미만		1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		1만 명 이상~ 10만 명 미만		10만 명 이상	
01. 서울특별시	25	33.8%	28	21.9%	11	11.0%	1	4.0%
02. 부산광역시	1	1.4%	5	3.9%	1	1.0%	0	0.0%
03. 대구광역시	3	4.1%	2	1.6%	0	0.0%	0	0.0%
04. 인천광역시	8	10.8%	2	1.6%	2	2.0%	0	0.0%
05. 광주광역시	2	2.7%	1	0.8%	0	0.0%	0	0.0%
06. 대전광역시	0	0.0%	0	0.0%	4	4.0%	0	0.0%
07. 울산광역시	0	0.0%	1	0.8%	0	0.0%	0	0.0%
08. 세종특별자치시	0	0.0%	4	3.1%	0	0.0%	0	0.0%
09. 경기도	18	24.3%	27	21.1%	16	16.0%	1	4.0%
10. 강원도	8	10.8%	17	13.3%	12	12.0%	3	12.0%
11. 충청북도	3	4.1%	5	3.9%	3	3.0%	0	0.0%
12. 충청남도	3	4.1%	8	6.3%	3	3.0%	3	12.0%
13. 전라북도	7	9.5%	1	0.8%	1	1.0%	0	0.0%
14. 전라남도	3	4.1%	5	3.9%	8	8.0%	0	0.0%
15. 경상북도	5	6.8%	7	5.5%	9	9.0%	1	4.0%
16. 경상남도	1	1.4%	11	8.6%	8	8.0%	2	8.0%
17. 제주특별자치도	1	1.4%	4	3.1%	22	22.0%	14	56.0%
<b>합계</b>	<b>74</b>	<b>100%</b>	<b>128</b>	<b>100%</b>	<b>100</b>	<b>100%</b>	<b>25</b>	<b>100%</b>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2) 일 평균 관람인원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사립박물관 325개관의 일 평균 관람인원은 106명임. 2019년 기준 사립박물관 339개관의 일 평균 관람인원은 225명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평균 관람인원이 47.1% 수준으로 119명 적게 나타남
- 일 평균 관람인원은 50명 미만 관람한 기관이 207개관(64.0%), 100명~299명 관람한 기관이 47개관(14.5%), 50명~99명 관람한 기관이 42개관(12.9%)등의 순으로 나타남. 2020년 기준 일 평균 1,000명 이상 관람한 기관이 16개관(4.7%)으로 나타남

[표 4-13] 사립박물관 일 평균 관람객별 분포 현황

(n=325)

구분	50명 미만	50명~99명	100명~299명	300명~499명	500명~999명	1,000명 이상
박물관 수	207	42	47	14	10	4
기관 비율	64.0%	12.9%	14.5%	4.3%	3.1%	1.2%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 관람료

- 상설전시: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운영 사립박물관 346개관(휴관 12개관) 중 상설전시 유료 관람이 217개관(62.7%)을 차지함

[표 4-14] 사립박물관 상설전시 관람료 현황

(n=346)

구분	무료	유료
박물관 수	129	217
기관 비율	37.3%	62.7%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특별(기획) 전시: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운영 사립박물관 346개관(휴관 12개관) 중 특별(기획)전시 무료 관람이 271개관(78.3%)을 차지함

[표 4-17] 사립박물관 특별(기획) 전시 관람료 현황

(n=346)

구분	무료	유료
박물관 수	271	75
기관 비율	78.3%	21.7%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사. 인력 현황

### □ 학예인력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사립박물관 285개관(79.6%)이 학예인력 수를 응답, 미응답 73개관 중 94.4%(68개관)가 등록 사립박물관임
- 학예인력 수를 응답한 285개관의 전체 학예인력 수는 674명으로 1관당 평균 2.4명이며,<sup>34)</sup> 학예인력을 1인만 두고 있는 기관이 133개관(46.7%)을 차지함

[표 4-15] 사립박물관 학예인력 분포

(n=285)

구분	1인	2인	3~4인	5인~9인	10인~39인
박물관 수	133	77	50	21	4
기관 비율	46.7%	27.0%	17.5%	7.4%	1.4%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행정구역별로 서울(62개관), 경기(57개관), 제주(35개관), 강원(25개관), 경상남도(17개관) 등의 순으로 학예인력이 1인 이상 있는 사립박물관이 많이 분포하며, 행정구역별 평균 기관 당 학예인력 수는 충남(4.9명), 경남(3.4명), 서울(3.2명), 충북(2.8명), 세종(2.7명) 등의 순으로 많음

### □ 학예직 외 전문직(교육, 전시 등)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사립박물관 140개관(39.1%)이 학예직 외 전문직(교육, 전시 등) 수를 응답, 미응답 219개관 중 211개관(96.3%)이 등록 사립박물관임
- 학예직 외 전문직(교육, 전시 등) 수를 응답한 140개관의 전체 학예직 외 전문직(교육, 전시 등) 수는 674명으로 1관당 평균 2.6명이며, 학예직 외 전문직(교육, 전시 등)을 1인만 두고 있는 기관이 87개관(62.1%)을 차지함
  - 학예직 외 전문직(교육, 전시 등)이 많은 기관은 전쟁기념관(서울, 69인), 독립기념관(천안, 38인), 김해한림박물관(경남, 13인), 삼성화재교통박물관(경기, 12인)/여미지식물원(제주, 12인) 등의 순으로 학예직 외 전문직(교육, 전시 등) 5인 이상~69인 이하 기관 14개관 모두 1종 등록관임

34) 학예인력이 많은 기관은 독립기념관(천안, 39인), 전쟁기념관(서울, 31인), 불교중앙박물관(서울, 16인), 토지주택박물관(경남, 14인) 등의 순으로 학예인력 5인 이상~39인 이하 기관 25개관 중 김달진미술자료박물관(서울, 5인), 북촌박물관(서울, 6인)을 제외하면 모두 1종 등록관임.

[표 4-16] 사립박물관 학예직 외 전문직(교육, 전시 등) 분포

(n=140)

구분	1인	2인	3~4인	5인~9인	16인~69인
박물관 수	87	25	14	9	5
기관 비율	62.1%	17.9%	10.0%	6.4%	3.6%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행정구역별로 서울(28개관), 경기(26개관), 제주(19개관), 강원(17개관), 경남(12개관), 충남(11개관) 등의 순으로 학예직 외 전문직(교육, 전시 등) 1인 이상이 있는 사립박물관이 많이 분포하며, 행정구역별 평균 기관 당 학예직 외 전문직(교육, 전시 등) 수는 전북(5명), 서울(3.9명), 제주(3.1명), 충북(3명), 경남(2.8명), 충남(2.7명) 등의 순으로 많음

□ 일반직원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사립박물관 207개관(57.8%)이 일반직원 수를 응답, 미응답 151개관 중 147개관(97.4%)이 등록 사립박물관임
- 일반직원 수를 응답한 207개관의 전체 일반직원 수는 1,161명으로 1관당 평균 5.6명이며, 일반직원을 1인만 두고 있는 기관이 87개관(42.0%)을 차지함
  - 일반직원이 많은 기관은 전쟁기념관(서울, 69인), 독립기념관(천안, 110인), 에코랜드(제주, 50인), 외도조경식물원(경남, 35인) 등의 순으로 일반직원 5인 이상~110인 이하 기관 52개관은 강원랜드뿌리관을 제외하면 모두 등록관으로 1종 등록관 40개관, 2종 등록관 11개관임

[표 4-17] 사립박물관 일반직원 분포

(n=207)

구분	1인	2인	3~4인	5인~9인	10인~110인
박물관 수	87	44	23	25	28
기관 비율	42.0%	21.3%	11.1%	12.1%	13.5%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행정구역별로 서울(41개관), 제주(37개관), 경기(31개관) 등의 순으로 일반직원 1인 이상이 있는 사립박물관이 많이 분포하며, 행정구역별 평균 기관 당 일반직원 수는 충남(11.6명), 제주(11.1명), 경남(7.5명), 서울(6.2명) 등의 순으로 많음

□ 인턴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사립박물관 28개관 (7.8%)이 인턴 수를 응답. 모두 등록관이며, 28개관의 전체 인턴 수는 37명으로 1관당 평균 1.3명이며, 인턴을 1인만 두고 있는 기관이 21개관(75.0%)을 차지함  
-인턴은 기관 당 1인~3인으로 인턴 3인인 기관은 경남 2개관(미리벌민속박물관과 해금강테마박물관)으로 모두 1종 등록관임

(표 4-18) 사립박물관 인턴 분포

(n=28)

구분	1인	2인	3인
박물관 수	21	5	2
기관 비율	75.0%	17.9%	7.1%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행정구역별로 서울(10개관), 경남(4개관), 경기(3개관) 등의 순으로 인턴 1인 이상이 있는 사립박물관이 많이 분포하며, 행정구역별 평균 기관 당 인턴 수는 경남과 부산, 제주(각 2인) 등의 순으로 많음

□ 자원봉사자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사립박물관 81개관 (31.4%)이 자원봉사자 수를 응답, 미응답 277개관 중 272개관(98.2%)이 등록 사립박물관임
- 자원봉사자 수를 응답한 81개관의 전체 자원봉사자 수는 1,410명으로 1관당 평균 17.4명이며, 자원봉사자를 1인만 두고 있는 기관이 21개관(25.9%)을 차지함  
-자원봉사자가 많은 기관은 한국궁중꽃박물관(경남, 200인), 불교중앙박물관(서울, 160인), 통토사성보박물관(경남, 150인) 등의 순으로 자원봉사자 10인 이상~200인 이하 기관 중 28개관이 1종 등록관임

(표 4-19) 사립박물관 자원봉사자 분포

(n=81)

구분	1인	2인	3~4인	5인~9인	10인~200인
박물관 수	21	11	8	9	32
기관 비율	25.9%	13.6%	9.9%	11.1%	39.5%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행정구역별로 경기(26개관), 서울(14개관), 강원(7개관), 전북(6개관) 등의 순으로 자원봉사자 1인 이상이 있는 사립박물관이 많이 분포하며, 행정구역별 평균 기관당 자원봉사자 수는 경남(71.8인), 서울(35.6인), 부산(16인), 강원(13.7인), 세종(11.5인), 경기(9.8인) 등의 순으로 많음

## 아. 온라인 서비스 현황

### □ 홈페이지 운영현황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전체 사립박물관 중 홈페이지(또는 블로그 등 웹주소)를 갖추고 있는 곳은 338개관으로, 사립박물관 대부분(94.4%)은 기본적인 홈페이지(또는 블로그 등 웹주소)를 갖추고 있지만 이중 38개관이(2022.02.25. 기준) 현재 운영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 홈페이지를 기관 홈페이지와 기타 온라인 사이트(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으로 구분하면, 홈페이지와 기타 온라인 사이트를 모두 갖추고 있는 기관은 세계골프역사박물관, 옥토끼우주센터, 세계인형박물관 3개관이며, 홈페이지만 운영하는 기관은 305개관, 기타 온라인 사이트(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만 운영하는 기관은 30개관으로 나타남. 또한 홈페이지를 운영하더라도 독립된 사립박물관 홈페이지가 아닌 운영 주체 기관(지자체, 종교 시설 등) 홈페이지의 부속페이지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인 12개관으로 나타남

(표 4-20) 사립박물관 온라인 홈페이지(또는 블로그 등 웹주소) 운영 여부

(n=358)

구분	홈페이지(또는 블로그 등 웹주소) 운영			미운영
	홈페이지 만 운영	기타 온라인 사이트만 운영	홈페이지, 기타 온라인 사이트 모두 운영	
박물관 수	305	30	3	20
기관 비율	85.2%	8.4%	0.8%	5.6%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2021 전국 사립박물관 운영실태조사』((사)한국박물관협회·(주)장앤파트너스그룹, 2021) 기준 184개 사립박물관의 온라인 홍보<sup>35)</sup> 매체를 이메일, 인터넷 광고, 문자 메시지, 전화홍보, 자체 홈페이지, 소식지/뉴스/레터/공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구분하여 조사, 자체 홈페이지가 가장 높은 비중(84.8%)으로 나타났으며 SNS(75%), 이메일(51.1%), 소식지(46.2%), 문자 메시지

35) 본 실태조사에서는 온라인 서비스를 크게 1) 오디오가이드, 2) 모바일 전시안내, 3)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4) 홍보 매체로 나누어 조사함.

(42.9%), 전화홍보(22.3%), 인터넷 광고(18.5%) 순으로 나타남

[표 4-21] 사립박물관 온라인 홍보 매체 이용 기관 분포

(n=184)

구분	온라인 홍보 매체 이용 기관							
	이메일	인터넷 광고	문자 메시지	전화홍보	자체 홈페이지	소식지/ 뉴스/레터/ 공문	사회 관계망 서비스 (SNS)	해당 없음
기관 비율	51.1%	18.5%	42.9%	22.3%	84.8%	46.2%	75%	6.5%

※ 자료원: (사)한국박물관협회·(주)장애파트너스그룹, 2021, 『2021 전국 사립박물관 운영실태조사』 재정리.

## □ 서비스 제공(전시설명)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전체 사립박물관 중 오디오가이드(8.7%) 및 모바일 서비스(15.4%)를 제공하는 사립박물관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임
  - 사립박물관 중 31개관(8.7%)이 오디오가이드를 제공하고, 오디오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곳은 327개관(91.3%)임
    - 오디오가이드를 제공하는 기관 31개관 중 무료 서비스 제공관은 25개관, 유료 서비스 제공관은 5개관으로 나타남(1개관은 확인 불가)
  - 사립박물관 중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은 55개관(15.4%),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은 곳은 303개관(84.6%)임

[표 4-22] 사립박물관 서비스 제공(전시설명) 현황

(n=358)

구분	오디오가이드		모바일서비스	
	유	무	유	무
박물관 수	31	327	55	303
기관 비율	8.7%	91.3%	15.4%	84.6%

※ 자료원: (사)한국박물관협회·(주)장애파트너스그룹, 2021, 『2021 전국 사립박물관 운영실태조사』 재정리.

## 3절 사립미술관 현황 지표

### 가. 일반 현황

#### □ 경력인정대상기관 여부

- 사립미술관 중 45.2%(82개관)이 경력인정대상기관으로(2021.12.31. 기준)<sup>36)</sup>이며, 이 외에 12개관이 해체됨. 이 중 2000년부터 현재까지 경력인정대상기관으로 인정 받은 사립미술관은 11개관(13.4%)임
- 행정구역 별로 서울 27개관으로 가장 많으며, 수도권(경기, 인천)에 20개관, 비수도권에 35개관이 분포. 기초지방자치단체 별로 도 65개관(52.0%), 광역시 13개관(10.4%), 특별자치도 및 특별자치시에 5개관(4.0%) 순으로 분포함
- 행정구역별 사립미술관 중 경력인정대상기관은 부산광역시가 100%로 등록사립미술관 모두 경력인정대상이며, 광주광역시 87.5%, 서울특별시 77.1%, 충청북도와 충청남도 각 66.7%으로 높게 나타남. 반면, 대전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경력인정대상 사립미술관이 없으며, 전라남도와 강원도는 사립미술관 수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경력인정대상기관은 25% 이하로 나타남

#### □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현황

- 2022년 4월 기준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받은 등록 사립미술관은 10개관이며, 전라남도에 3개관, 서울특별시와 경상남도에 각 2개관 등이 위치해 있으며, 고유번호증 부여 단체(비영리)와 사업자등록으로 설립·운영되고 있음

행정구역	미술관 명	경력인정 대상기관	전문예술단체 최초 지정일	설립·운영 주체
서울	헬로우뮤지움	0	2020.01.01.	개인사업자: 고유번호 부여 단체
	사비나미술관	0	2021.11.30.	개인사업자: 고유번호 부여 단체
광주	은암미술관	0	2021.11.16.	개인사업자: 고유번호 부여 단체
충북	신미술관	0	2008.02.06.	개인사업자: 고유번호 부여 단체
충남	당림미술관	0	2020.02.25.	개인사업자: 고유번호 부여 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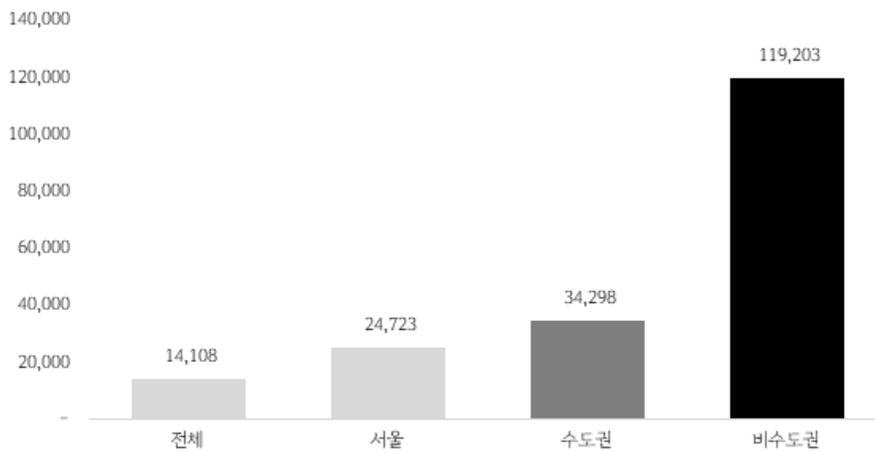
36) 국립중앙박물관 경력인정 대상기관 안내, [www.museum.go.kr/site/main/content/career\\_accreditation](http://www.museum.go.kr/site/main/content/career_accreditation) 재정리.

행정구역	미술관 명	경력인정 대상기관	전문예술단체 최초 지정일	설립·운영 주체
전남	남포미술관	x	2022.05.06.	개인사업자: 고유번호 부여 단체
	도화현미술관	x	2012.01.01.	개인사업자: 고유번호 부여 단체
	대담미술관	0	2015.01.0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경남	리 미술관	0	2018.10.25.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대산미술관	0	2005.02.28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 나. 시설 현황<sup>37)</sup>

### □ 부지면적

-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0) 기준 부지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립미술관 171개관(95.5%)<sup>38)</sup>의 평균 부지면적은 14,108㎡으로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소재지 구분 시, 비수도권 소재 사립박물관이 넓은 부지면적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행정구역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남



〈그림 4-18〉 소재지별 사립미술관 평균 부지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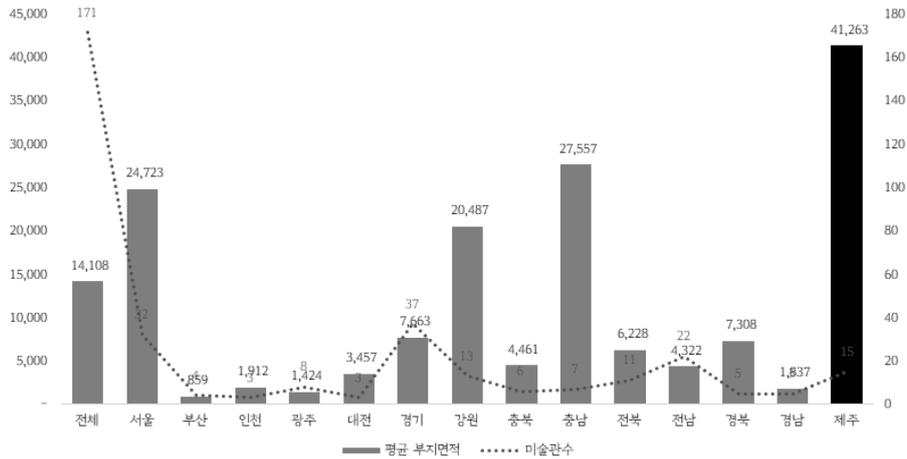
(n=171)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37) 사립미술관 시설 현황의 기본 분석 자료는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0)임.

38) 부지면적 미표기관은 서울 3개관(K현대미술관, 포스코미술관, 한미사진미술관), 경기 1개관(어우재미술관), 강원 2개관(권진규미술관, 정선507미술관), 전남 2개관(갯바위미술관, 경훈미술관)임.

- 행정구역별로 평균 부지면적은 충남(7개관/27,557㎡), 제주(15개관/41,263㎡) 등의 순으로 넓게 나타남. 충남의 당림미술관과 임립미술관의 부지면적이 각 89,400㎡, 59,400㎡로 충남 지역의 평균 부지면적을 높게 끌어올렸음
- 평균 부지면적이 가장 좁은 지역은 전남(32개관/4,322㎡), 경기(37개관/7,663㎡), 서울 (3개관 /24,72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4-19〉 행정구역별 사립미술관 평균 부지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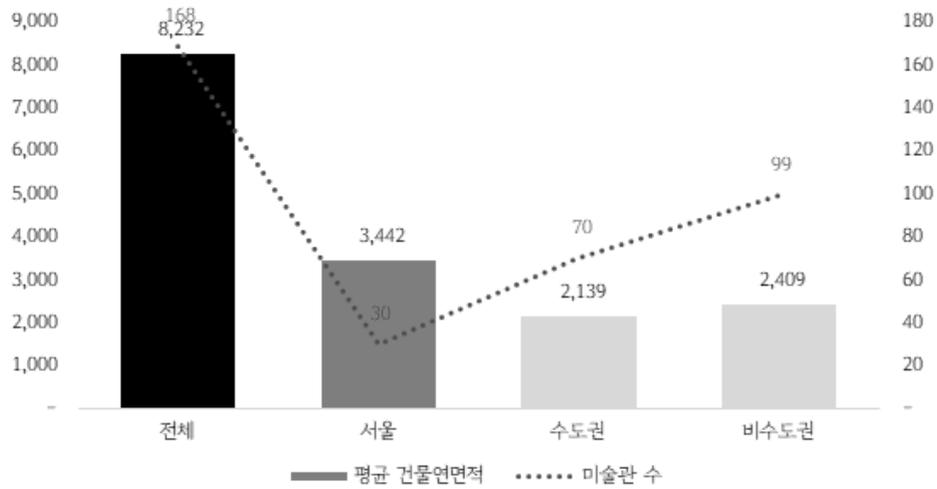
(n=171, ㎡)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 건물면적

-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0) 기준 건물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사립미술관 168개관(93.9%)의 소재지별 평균 건물연면적은 8,232㎡이며<sup>39)</sup>, 소재지 별로는 서울 소재 미술관의 평균 건물연면적이 평균 3,442㎡으로 가장 넓은 것으로 나타남

39) 소재지별 건물연면적 파악 중 서울 지역에서 아모레퍼시픽미술관과 롯데뮤지엄의 건물연면적은 제외하였음. 두 미술관의 건물연면적은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이 188,902㎡, 롯데뮤지엄이 805,872㎡로 전체 사립미술관 건물연면적과 비교했을 때도 수치가 압도적으로 높아 결과를 왜곡하기 때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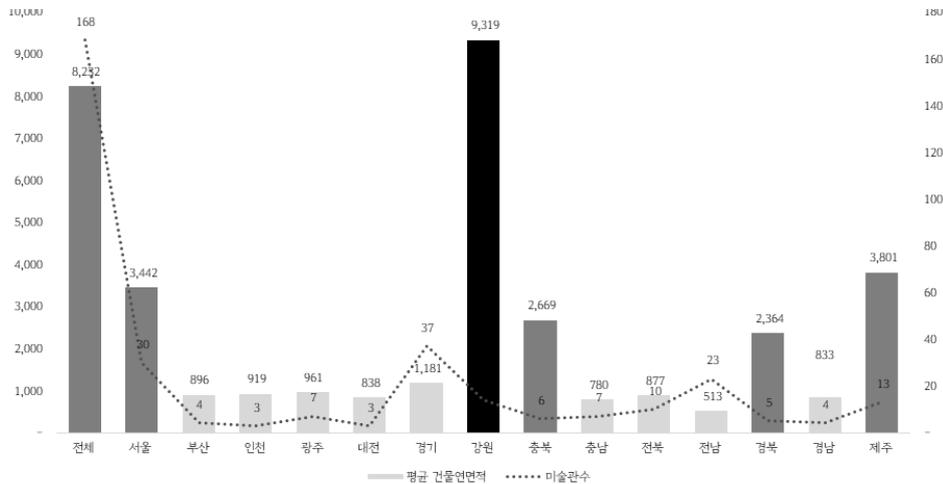
〈그림 4-20〉 소재지별 사립미술관 평균 건물연면적

(n=168)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행정구역별로는 평균 건물연면적이 가장 넓은 지역은 강원(38개관/9,319㎡), 경북(5개관/2,364㎡), 제주, 대전, 서울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평균 건물연면적이 가장 좁은 지역은 전남(23개관/513㎡), 경기(37개관/1,181㎡) 등의 순임



〈그림 4-21〉 행정구역별 사립미술관 평균 건물연면적 비교

(n=16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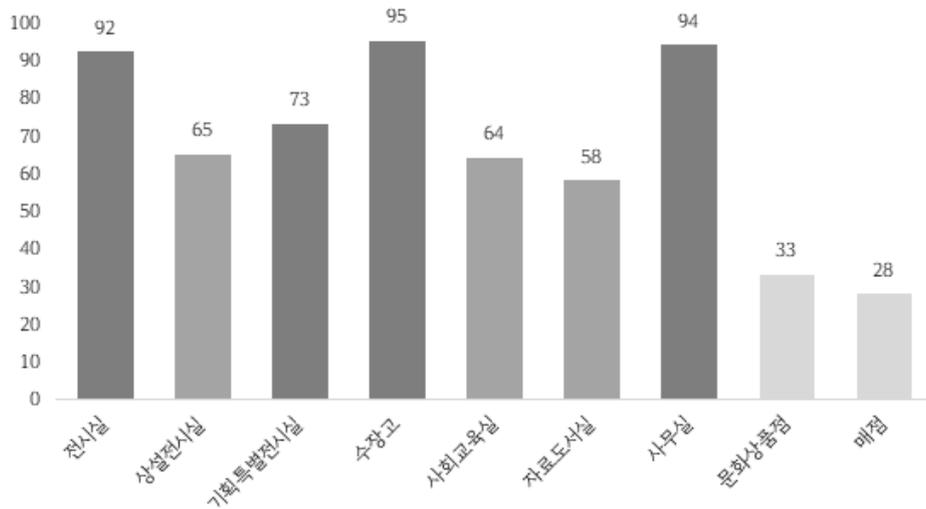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 주요시설 보유현황

○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0) 기준 사립미술관 165개관의 주요시설은 전시실(상설전시실+기획 또는 특별전시실), 수장고, 사무실의 보유현황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전시실은 기획 또는 특별전시실을 상설전시실보다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박미법」상 전체 사립미술관이 등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경기 2개관(백영수 미술관, 일지미술관)과 전북 1개관(장수미술관), 전남 1개관(소아트미술관)의 전시장 면적은 100㎡ 미만임



〈그림 4-22〉 사립미술관 주요시설 보유현황

(n=16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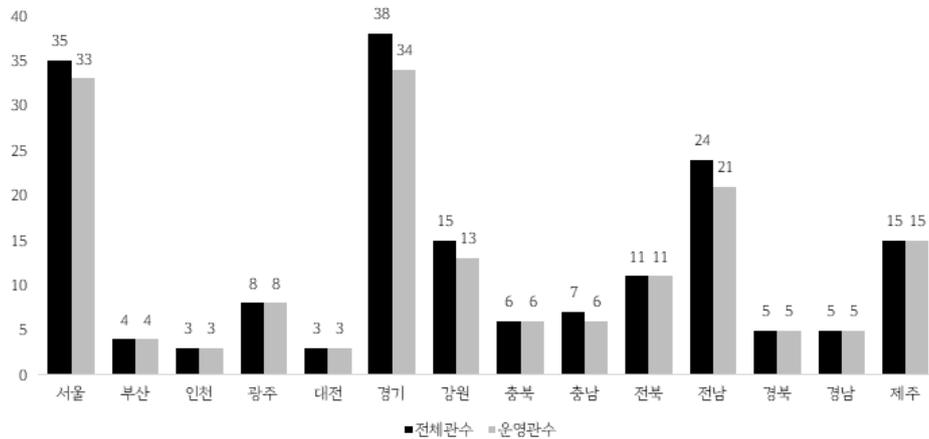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 주요시설 현황: 건물연면적과 주요시설 면적 비교

### (1) 건물연면적 대비 전시실(상설전시실+기획 또는 특별전시실) 면적 비교

-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2020) 기준 전체 사립미술관 중 83개관(52.2%)의 전시실(상설전시실+기획 또는 특별전시실) 면적이 건물연면적의 50% 이하로 나타남<sup>40)</sup>
- 행정구역 별로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는 사립미술관 모두 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전시실 운영이 낮은 곳은 경기(84%), 강원(87%), 전남(88%), 서울(94%) 순으로 나타남

40) 전시실면적 미표기(주안미술관, 정선 507미술관, 선화기독교미술관, 권진규미술관), 건물연면적 미표기(서울 세종문화회관 미술관, 포스코미술관, 전북 금구원야외조각미술관, 경남 우주미술관, 제주 제조옹기숨미술관, 김택화미술관, 경남 우주미술관), 결측/시실 면적이 건물연면적에 비해 너무 작음(서울 롯데월드미술관) 제외.



〈그림 4-23〉 행정구역별 사립미술관 전시실(상설전시실, 기획 또는 특별전시실) 운영현황 (n=179)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① 상설전시실 운영현황과 건물연면적 대비 상설전시실 면적 비교

- 사립미술관의 112개관(62.6%)이 상설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음
- 건물연면적 대비 상설전시실 면적 비교: 상설전시실을 운영하는 사립미술관 중 80개관(71.4%)의 상설전시실이 건물연면적의 50% 이하의 공간을 차지, 24개관(21.4%)이 상설전시실이 건물연면적의 100% 이하의 공간을 차지함<sup>41)</sup>
- 행정구역별 상설전시실 운영현황: 상설전시실을 운영하는 관이 가장 적은 지역은 서울로 35개관 중 15개관(42%)이 상설전시실 운영하고 있었음. 그 다음으로 광주(50%), 경기(63%), 전북(64%), 전남(67%), 충남(71%), 강원(73%) 순이었음

### ② 기획 또는 특별전시실 운영현황과 건물연면적 대비 기획특별전시실 면적 비교

- 사립미술관의 126개관(70.4%)이 기획 또는 특별전시실을 운영하고 있음
- 건물연면적 대비 기획 또는 특별전시실 면적 비교: 기획 또는 특별전시실을 운영하는 사립미술관 중 96개관(77%)이 기획 또는 특별전시실이 건물연면적의 50% 이하의 공간을 차지함<sup>42)</sup>
- 행정구역별 기획 또는 특별전시실 운영현황: 제주가 15개관 중 6개관(40%)만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획특별전시실을 운영하지 않는 관이 가장 많았음

41) 상설전시실의 면적이 100%를 넘는 곳은 10개관이었음. 서울의 삼성미술관 리움, 인천의 더리미미술관, 경기의 죽포미술관, 강원 의 일현미술관, 충남의 리각미술관, 전남의 진도현대미술관과 학명미술관, 제주의 돌하르방미술관과 제주유리의성미술관, 충북의 성마루미술관이었음.

42) 진도현대미술관은 100% 이상의 기획 또는 특별전시실을 운영 중으로 표기되었으나 홈페이지가 없어 확인 불가능.

그 다음이 강원(53%), 전남(67%), 경기(73%), 광주(75%), 서울(83%) 순이었음

## (2) 수장고 운영현황과 건물연면적 대비 수장고 면적 비교

-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0) 기준 사립미술관의 170개관(95.0%)이 수장고를 운영하고 있음
- 건물연면적 대비 수장고 면적 비교: 건물연면적 대비 수장고 면적이 10% 미만이 116개관(70%)으로 나타남<sup>43)</sup>
- 행정구역별 수장고 운영현황: 수장고를 운영하는 사립미술관이 가장 적은 지역은 강원과 제주로 강원은 15개관 중 13개관(87%), 제주는 15개관 중 13개관(87%)만이 수장고를 운영하고 있었음. 그 다음으로 전북(90%), 서울(94%), 전남(95%), 경기(97%) 순이었음

## (3) 사무실 운영현황과 건물연면적 대비 사무실 면적 비교

-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0) 기준 전체 사립미술관의 162개관(90.5%)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음
- 건물연면적 대비 사무실 면적 비교: 건물연면적 대비 사립미술관의 사무실 면적은 10% 미만이 141개관(약 87%)을 차지함
- 행정구역별 사무실 운영현황: 행정구역별로 사립미술관 사무실 운영현황은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충북, 충남, 전북, 경북, 경남 지역의 사립미술관은 모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는 사립미술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서울(35개관 중 31개관, 89%), 제주(15개관 중 14개관, 93%), 경기(38개관 중 36개관, 95%), 전남(24개관 중 23개관, 9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4) 사회교육시설(세미나, 강당 등) 운영현황과 건물연면적 대비 사회교육시설 면적 비교

-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0) 기준 전체 사립미술관의 116개관(64.8%)이 사회교육시설(세미나, 강당 등)을 운영하고 있음
- 건물연면적 대비 사회교육실 면적 비교: 사회교육실을 운영하는 사립미술관의 108개관(95%)의 사회교육실 면적은 건물연면적의 50% 이하의 규모로 65개관(58%)은 건물연면적의 10% 미만으로 나타남
- 행정구역별 사회교육실 운영현황: 부산, 인천, 경북의 사립미술관은 모두 사회교육

43) 수장고 면적이 200%를 넘는 곳은 경기의 맥아트미술관과 유리섬미술관, 제주의 돌하르방미술관이었음.

시설을 운영하지만 대전은 사회교육실을 운영하는 사립미술관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됨

-대전 다음으로 사회교육시설을 운영하는 사립미술관이 가장 적은 지역은 제주(15개관 중 7개관, 47%), 충북(6개관 중 3개관, 50%), 전남(24개관 중 13개관, 54%), 경남과 강원(5개관 중 3개관/15개관 중 9개관, 각 60%), 광주와 서울(8개관 중 5개관/35개관 중 22개관, 각 63%), 전북(11개관 중 7개관, 64%), 충남(7개관 중 5개관, 71%), 경기(38개관 중 29개관, 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5) 자료·도서실 운영현황과 건물연면적 대비 자료·도서실 면적 비교

-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0) 기준 전체 사립미술관의 107개관(59.8%)이 자료·도서실을 단독 설치·운영하고 있음
- 건물연면적 대비 자료·도서실 면적 비교: 자료·도서실의 면적은 99개관(83%)이 건물연면적 대비 10% 이하로 나타남<sup>44)</sup>
- 행정구역별 자료·도서실 운영현황: 대전의 사립미술관 중 자료·도서실을 운영하는 관은 없었음. 그 다음으로 자료·도서실 운영이 가장 낮은 지역은 경북(5개관 중 2개관, 40%), 전남(46%), 제주(47%), 부산과 광주(50%), 충남과 서울(57%), 경남과 강원(60%), 경기(65%), 충북(67%), 전북(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6) 문화상품점 운영현황과 건물연면적 대비 문화상품점 면적 비교

-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0) 기준 전체 사립미술관의 59개관(33.0%)이 문화상품점을 운영하고 있음
- 건물연면적 대비 문화상품점 면적 비교: 문화상품점의 면적은 건물연면적 대비 10% 미만이 53개관(89.8%)으로 나타남<sup>45)</sup>
- 행정구역별 문화상품점 운영현황: 제주와 경남 지역만이 전체 사립미술관 수 대비 문화상품점을 운영하는 곳이 60% 이상으로 나타남. 반면, 대전은 사립미술관 중 문화상품점을 운영하는 곳이 없었음. 경남과 제주를 제외하고 전체 관 수 대비 문화상품점 운영 비율이 50%를 넘지 않음

#### (7) 매점 운영현황과 건물연면적 대비 매점 면적 비교

-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0) 기준 전체 사립미술관의

44) 자료·도서실의 면적이 건물연면적의 20%를 넘는 관은 서울의 밀알미술관과 삼성미술관, 경기의 이영미술관, 전남의 학명미술관임.

45) 문화상품점 면적이 건물연면적의 10%를 넘는 6개관은 경기의 맥아트미술관, 미메시스아트뮤지엄, 유리섬미술관, 전북의 장수미술관, 경남의 전혁림미술관, 제주의 제주유리의성임.

52개관(29.1%)이 매점을 운영하고 있음

- 건물연면적 대비 매점 면적 비교: 매점을 운영하는 52개관 중 35개관(73%)이 건물 연면적 대비 10% 미만의 공간 면적에 매점을 운영하고 있음
- 행정구역별 매점 운영현황: 부산, 대전, 충북은 매점을 운영하는 사립미술관이 없었음. 충남은 지역 중 매점을 운영하는 사립미술관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7개관 중 5개관, 71%), 제주(15개관 중 9개관, 60%) 등의 순으로 서울은 17%(35개관 중 6개관)으로 나타남

## 다. 소장자료 현황

### □ 소장자료 종류/성격

- 국립중앙박물관은 전국의 국·공·사립 박물관·미술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소장품의 체계적인 관리지원을 위해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있음. 배포 요청 사립박물관·미술관에서 작성하는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배포 사전조사>의 소장품의 성격에 따라 사립박물관의 소장자료 종류/성격은 아래와 같이 4개의 분류체계로 구분할 수 있음

대분류	설명
고미술	발굴 유물, 도자기, 회화 등의 고미술품
근현대미술	근현대 회화, 조각, 설치미술 등의 근현대미술품
역사 문헌	금석문, 고문헌, 고문서 등의 문헌자료
기타	

※ 분류 기준: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배포 사전조사>의 소장품의 성격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사립미술관 179개관을 위의 기준에 따라 분류한 결과 아래와 같이 근현대미술(169개관) 부문이 가장 많으며, 세분류로는 근현대미술 일반(146개관), 작가미술관(17개관), 공예미술관(6개관) 등의 순임

[표 4-23] 사립미술관의 소장자료 종류/성격 분류

(n=179)

분류	세분류	기관 수	기관 비율
고미술*		1	0.6%
근현대미술 (근현대 제작 전통미술 포함)**	일반	146	169 94.4%
	작가미술관	17	
	공예	6	
역사문헌(출판문화+문헌자료)***		1	0.6%
기타	어린이미술관	3	8 4.5%
	종교유물/종교사	3	
	테마미술관(테마파크형 미술관)	2	
합계		179	100%

※ \*: 근현대미술소장품 함께 공유하는 미술관은 하단 근현대미술에 포함

※ \*\*: 1. 고미술 포함: 삼성미술관 Leeum, 아모레퍼시픽미술관, 한광미술관, 진도현대미술관/2. 휘목미술관: 교육, 문화공간, 장길한미술관-환희컵박물관을 겸함

※ \*\*\*: 고미술, 근현대미술포함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 소장자료 수(건/점)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소장자료 수 건 혹은 점 수로 기입한 기관은 164개관(91.6%)으로 소장자료 수를 기입하지 않은 15개관(8.4%) 중 12개관은 등록 사립미술관임<sup>46)</sup>

비고	건/점 모두 응답	건수만 응답	점수만 응답	미응답	합계
미술관 수	93	4	67	15	179
기관 비율	52.0%	2.2%	37.4%	8.4%	100%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소장자료는 점 수 기준으로 160개관이 총 84,818점, 기관 당 평균 530점의 소장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소장자료 수는 최소 11점(강원, 오랜미래신화미술관)부터 최대 18,000점(전남, 아천미술관)까지 소장하고 있으며 500점 미만 소장자료(점)을 소장

46) 소장자료 수를 기입하지 않은 등록 사립미술관은 서울 7개관(대림미술관과 디뮤지엄, 삼성미술관 Leeum, 성곡미술관, 자하미술관, 포스코미술관, 한미사진미술관), 인천 1개관(전원미술관), 대전 1개관(남철미술관), 전북 1개관(예깊미술관), 전남 1개관(장전미술관), 제주 1개관(성안미술관)으로 소장품을 미보유하고 있는 것인지 단순하게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인지 파악이 불가능해 표기를 하지 못한 것인지 조사가 필요함.

한 사립미술관이 77.5%를 차지함

- 소장품 점 수 기준으로 200점~499점을 보유하고 있는 사립미술관이 51개관, 100점~149점을 보유하고 있는 관이 47개관, 500점~999점을 보유하고 있는 관이 21개관 등의 순이며, 1,000점이 넘는 소장품을 보유하고 있는 관은 15개관으로 나타남

[표 4-24] 사립미술관의 소장자료 수(건/점) 분포

(n=160)

비고	60점 미만	60점 ~ 99점	100점 ~ 149점	150점 ~ 199점	200점 ~ 499점	500점 ~ 999점	1,000점 ~ 18,000점	합계
미술관 수	2	11	47	13	51	21	15	160
기관 비율	1.3%	6.9%	29.4%	8.1%	31.9%	13.1%	9.4%	100%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 지정문화재 등 소장 현황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사립미술관 중 8개관(4.5%)이 지정문화재 등을 소장하고 있으며, 모두 등록관임
- 행정구역별로 서울 5개관, 대전/강원/전남 각 1개관의 지정문화재 등 소장 사립미술관이 분포함
- 사립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지정문화재 등은 총 약 19점(또는 건)으로 이 중 보물 13점, 국보 1점, 서울시유형문화재 2점 등으로 나타남

[표 4-25] 사립미술관 지정문화재 등 소장 현황

소재지		미술관명	지정문화재 등	
시·도	시군구		명칭	개수(점)
서울	종로구	OCI미술관	백자청화운현명만자문병	서울시 유형문화재 1점
	용산구	김세종미술관	김 골롬바와 아녜스 자매	등록문화재 1점
	용산구	삼성미술관 Leeum	청자진사연화문표형주자 외	미기재
	용산구	아모레퍼시픽미술관	백자대호 등	보물 4점
	서초구	서울서예박물관	독립선언서	근대문화재1점
대전	유성구	여진불교미술관	미기재	문화재자료 1점
강원	원주시	뮤지엄 산(청조갤러리)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제36	국보1점, 보물8점, 서울시 유형문화재 1점
전남	보성군	우종미술관	보물 제875호 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보물 1점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상설전 유물교체 횟수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사립미술관 중 87개관(24.3%)이 연간 상설전시실 유물 교체횟수를 응답함
- 상설전시실 유물을 교체하는 사립미술관 중 연간 상설전 유물교체 횟수는 1회~5회 미만 기관이 60개관(69.0%)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 5회 이상 기관이 23.0%(20개관), 연 1회 미만 기관이 6개관(6.9%) 등을 차지함

[표 4-26] 사립미술관 연간 상설전 유물교체 횟수 비교

(n=87)

구분	1회 미만	1회 이상-5회 미만	5회 이상-9회 미만	기타(비정기)
미술관 수	6	60	20	1
기관 비율	6.9%	69.0%	23.0%	1.1%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자료·도서실 소장자료 수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사립미술관 중 106개관(59.2%)이 자료·도서실을 단독 설치함. 이 중 96개관(90.6%)이 370,551권의 자료·도서실 소장자료를 보유, 기관 당 평균 3,860권의 자료·도서실 자료를 소장하고 있음
- 기관 당 최소 10권(전남, 강진미술관)에서 최대 47,000권(충북, 쉼마미술관)을 소장. 10,000권 이상 소장관이 10개관(10.4%)를 차지함

[표 4-27] 사립미술관 자료·도서실 소장자료 수 비교

(n=96)

구분	1권 ~ 99권	100권 ~ 299권	300권 ~ 599권	600권 ~ 999권	1,000권 ~ 1,999권	2,000권 ~ 4,999권	5,000권 ~ 9,999권	10,000권 ~ 154,616권
미술관 수	6	10	17	7	17	17	12	10
기관 비율	6.3%	10.4%	17.7%	7.3%	17.7%	17.7%	12.5%	10.4%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라. 전시 및 프로그램 현황

### □ 전시: 기획/특별전 운영현황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사립미술관 중 기획/특별전을 운영하는 기관은 153개관(85.5%)으로 기획/특별전 개최 횟수의 전국 평균은 4.8회로 나타남. 기획/특별전 운영 사립미술관 중 55개관(35.9%)이 연평균 3회~5회의 기획/특별전을 운영, 14개관(9.2%)이 10회 이상의 기획/특별전을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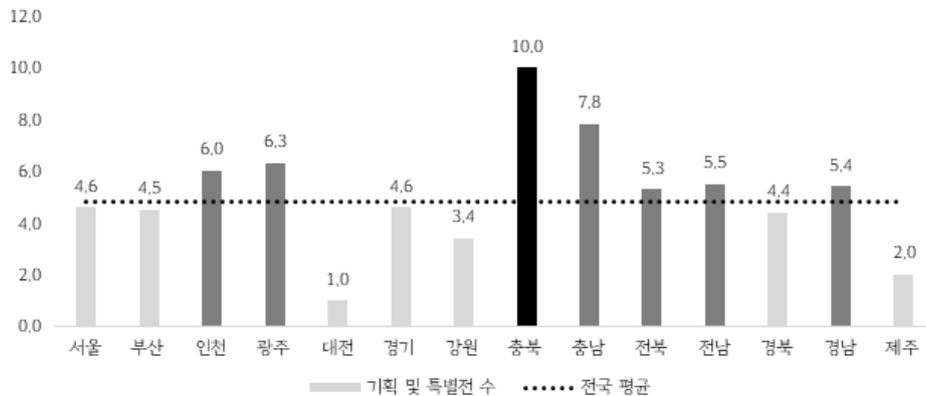
(표 4-28) 사립미술관 기획 및 특별전 운영현황

(n=153)

구분	1회 이하	2회	3회~5회	6회~9회	10회 이상
미술관 수	15	26	55	43	14
기관 비율	9.8%	17.0%	35.9%	28.1%	9.2%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행정구역 별로 충북(10회), 충남(7.8회), 광주(6.3회), 인천(6.0회) 등의 순으로 기획/특별전 운영 횟수가 많음



〈그림 4-24〉 행정구역별 사립미술관 기획전 및 특별전 개최 횟수 비교

(n=152/총 769회)

※ 기획전 및 특별전 횟수는 연 평균 횟수를 기준으로 했으며, 예약제로 운영되는 경우(강원도 오랜미래신화미술관)는 제외함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 교육 및 지역 연계

#### (1)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전체 사립미술관 중 137개관(76.5%)이 총 1,291종의 프로그램(강좌, 체험(정기, 비정기), 답사)을 진행하며, 유형별 프로그램을 모두 운영하는 기관은 11개관(8.0%)으로 나타남
  - 유형별로 체험 프로그램(119개관, 86.9%), 강좌 프로그램(87개관, 63.5%), 답사 프로그램(22개관, 16.1%)으로 많이 운영
  -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전남 4개관, 전북/제주 각 2개관, 경기/강원/경남 각 1개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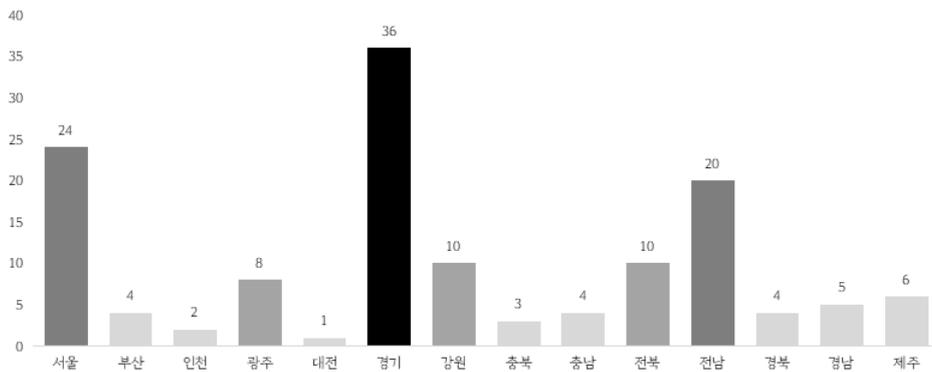
(표 4-29) 유형별 사립미술관 프로그램 운영현황 비교

(n=137)

구분	프로그램	강좌 프로그램	체험 프로그램		답사 프로그램	모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기	비정기		
미술관 수	137	87	85	101	22	11
기관 비율	100%	63.5%	62.0%	73.7%	16.1%	8.0%
전체 종수	1,291	333	683	507	49	-
기관 당 평균 종수	9	4	8	5	2	-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행정구역별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는 지역은 경기(36개관), 서울(24개관), 전남(20개관), 강원과 전북(각 10개관)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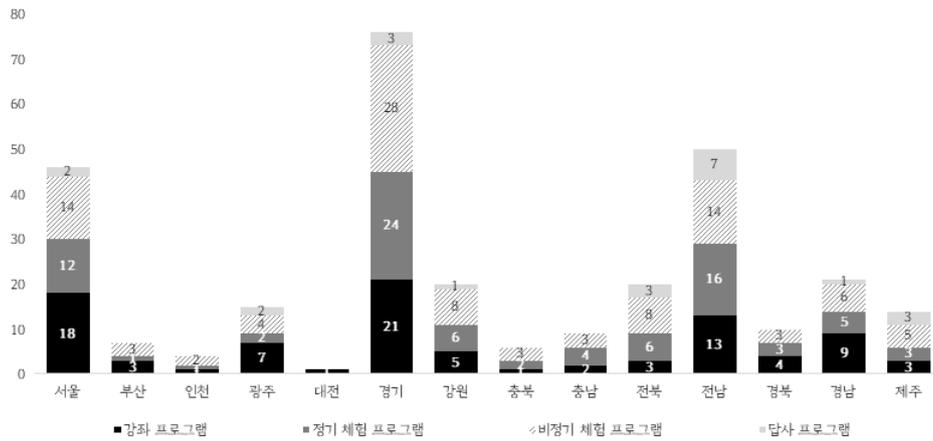


(그림 4-25) 행정구역별 사립미술관 프로그램 운영 기관 수

(n=137)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행정구역별로 경남, 부산, 위치한 사립미술관 모두 1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지역에서 체험 프로그램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4-26〉 행정구역별 사립미술관 프로그램 별 운영 기관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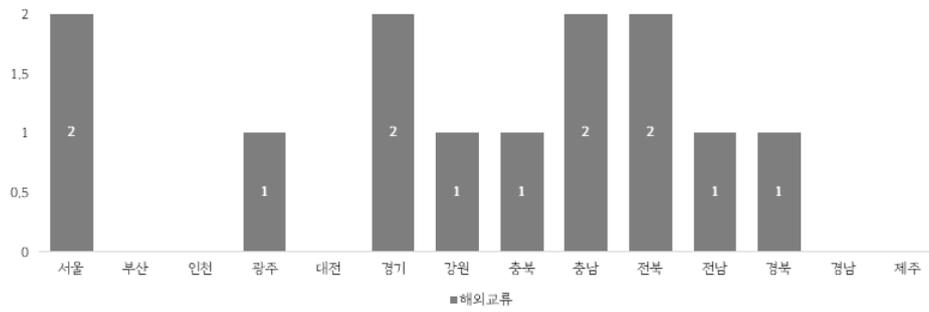
(n=137)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전국사립미술관 운영현황 분석연구』((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21)는 미술관 자체 상설 교육, 체험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과 수시 교육(전시연계교육, 체험프로그램 등/ 주민센터, 다문화 등 지역기관 연계 프로그램/ 학교연계(자유학기제, 진로탐색 등)/ 강연회(외부강사, 관장, 작가, 전문인력)/ 특별 교육(장애인/실버/다문화)으로 구분하여 집계함
  - 연간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횟수는 전체 평균 45회로 지역별로 평균 1회(대구)부터~106회(충남)까지 나타남(서울 지역은 평균 41.7회)
  - 관별 평균 참여자 수는 전체 평균 2,843명으로 100명(대구)부터~9,581(전남)까지 나타남(서울 지역은 평균 2,564명)

(2) 교류/협력: MOU, 지역연계 등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은 교류, 협력 부분의 자료를 조사하지 않아 『전국사립미술관 운영현황 분석연구』((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21)를 통해 살펴보면 국내와 외국으로 구분하여 통계, 130개관 응답 기준 총 407회의 교류, 협력이 있었으며, 국내 교류/협력은 총 330회(평균 2.6회). 외국 교류/협력은 총 77회(평균 0.6회)로 나타남
  - 이 중 사립미술관 13개관이 해외 기관과 교류, MOU 협력하고 있으며, 행정구역별로 서울, 경기, 충남, 전북에 각 2개관/광주, 강원, 충북, 전남, 경북에 각 1개관의 사립미술관이 분포함



〈그림 4-27〉 행정구별 사립미술관 해외 교류 MOU 현황

(n=13)

※ 자료원:(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21, 『전국사립미술관 운영현황 분석연구』 재정리.

## 마. 개관 현황

### □ 개관 일수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사립미술관 169개관의 개관 일수는 최소 43일~최대 365일로 평균 개관일수는 263일로 나타남. 2019년 기준 사립미술관 167개관의 평균 개관일수는 224일로 코로나19 이전과 유사함
  - 365일 개관 사립미술관은 총 14개관으로 제주 6개관, 전남 2개관, 서울/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 각 1개관으로 이 중 12개관이 등록 사립미술관임. 2020년 기준 365일 개관 사립박물관은 18개관이었음
  - 등록 사립미술관은 「박미법」 제21조(개관)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개관 일수)에 의해 연간 90일 이상 개방(개관)해야 함. 그러나 2021년 기준 연간 개관 일수가 90일 미만인 등록 사립미술관은 5개관<sup>47)</sup>으로 나타남
  - 사립미술관의 26개관(15.4%)이 일 년의 절반 미만으로 개관, 모두 등록 사립미술관으로 서울 13개관, 경기 4개관, 강원/경남/대전/전남 각 2개관, 충남 1개관임
  - 사립미술관의 79개관(43.8%)이 300일 이상 개관, 이 중 76개관이 등록 사립미술관임

47) 삼성미술관Leeum(서울, 43일), 현대어린이책미술관 MOKA GARDEN(경기, 58일), 대림미술관(서울, 77일), 아모레퍼시픽미술관(서울, 84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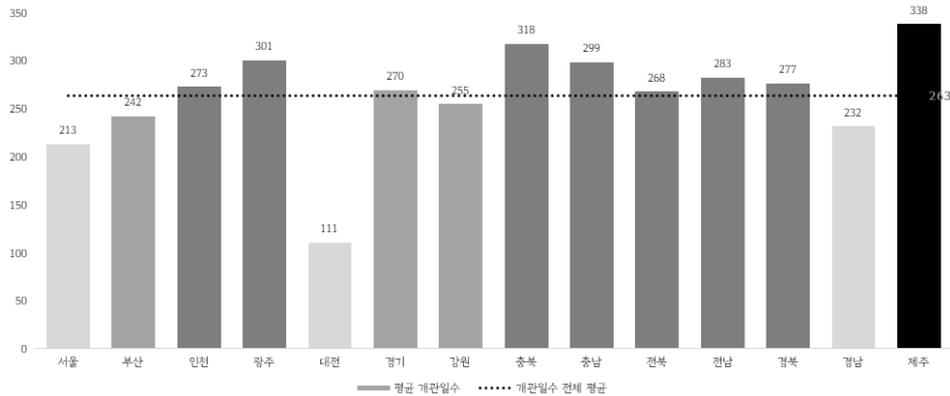
[표 4-30] 사립미술관 개관 일수 분포

(n=169)

개관 일수	90일 미만	90일~181일	183일~261일	265일~298일	300일~363일	365일
미술관 수	4	22	46	18	65	14
비율	2.4%	13.0%	27.2%	10.7%	38.5%	8.3%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행정구역별로 제주(338일), 충북(318일), 광주(301일), 충남(299일), 전남(276일), 경북(277일), 전북(268일), 인천(273일), 경기(270일), 전북(268일) 순으로 평균 개관일수보다 개관일이 많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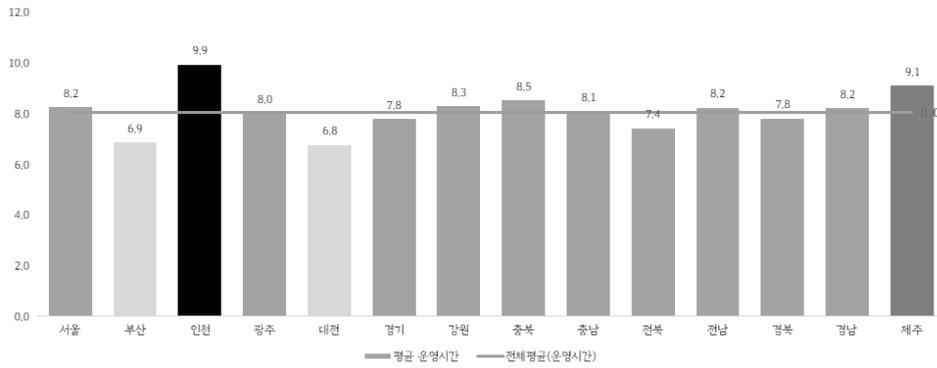
〈그림 4-28〉 행정구역별 사립미술관 평균 개관 일수 비교

(n=169)

- ※ 개관 일수는 휴관 기관, 개관 일수 미기재 기관을 제외한 박물관 평균 개관 일수이며,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 세종문화회관(서울) 1관과 2관은 개관 일수가 상이해 평균값을 기준으로 함.
-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 개관 시간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179개관 중 휴관일을 제외한 평일 및 공휴일에 개관하는 사립미술관은 171개관이며, 이 중 163개관이 평일과 공휴일 모두 개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전국 사립미술관 평균 개관 시간은 8시간이며 인천(9.9시간), 제주(9.1시간), 충북(8.5시간), 강원(8.3시간), 전남/경남/서울(각 8.2시간)은 전국 평균 시간보다 길게 운영함
  - 「박미법」 제21조(개관)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개관 일수)에서 규정한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의 1일 개방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을 준수하고 있음



〈그림 4-29〉 행정구역별 사립미술관 평균 개관 시간

(n=171)

- ※ 평일, 공휴일 운영시간의 경우 하절기, 동절기 시간이 상이한 경우 두 기간의 평균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총 운영 시간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 ※ OCI 미술관의 경우 수요일 9시까지 연장 운영하나 운영시간에는 수요일 제외 평균 운영 시간(10:00~18:00)을 기준으로 함.
- ※ 강원도 소재 기관인 오랜미래신화미술관의 경우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개관시간이 명시되어 있으나 제외함.
-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바. 관람 현황

### □ 관람인원

#### (1) 연 관람인원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사립미술관 173개관의 연 평균 관람인원은 25,978명임. 2019년 기준 사립미술관 172개관의 연 평균 관람인원은 53,529명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48.5% 수준으로 평균 관람인원이 27,551명이 적게 나타남
- 이 중 연 1천 명 이상~1만 명 미만 관람한 기관이 87개관(50.3%), 1만 명 이상~10만 명 미만 관람한 기관 45개관(26.0%), 1천 명 미만 28개관(16.2%), 10만 명 이상 관람한 기관 13개관(7.5%) 순으로 나타남. 2019년 기준 10만 명 이상 관람한 기관은 20개관(11.6%)을 차지함
- 1만 명 이상 관람객이 방문한 기관이 18개관(31.0%)으로 사립박물관에 비해 서울 지역 미술관의 관람객 집중도가 높음

[표 4-31] 행정구역별 사립미술관 연 평균 관람인원 분포 현황

(n=173)

행정구역	1천 명 미만		1천 명 이상~ 1만 명 미만		1만 명 이상~ 10만 명 미만		10만 명 이상	
01. 서울특별시	0	0.0%	17	19.5%	13	28.9%	5	38.5%
02. 부산광역시	1	3.6%	3	3.4%	0	0.0%	0	0.0%
03. 대구광역시	0	0.0%	0	0.0%	0	0.0%	0	0.0%
04. 인천광역시	1	3.6%	1	1.1%	1	2.2%	0	0.0%
05. 광주광역시	2	7.1%	5	5.7%	0	0.0%	0	0.0%
06. 대전광역시	2	7.1%	0	0.0%	0	0.0%	0	0.0%
07. 울산광역시	0	0.0%	0	0.0%	0	0.0%	0	0.0%
08. 세종특별자치시	0	0.0%	0	0.0%	0	0.0%	0	0.0%
09. 경기도	9	32.1%	22	25.3%	8	17.8%	0	0.0%
10. 강원도	4	14.3%	5	5.7%	3	6.7%	2	15.4%
11. 충청북도	2	7.1%	3	3.4%	1	2.2%	0	0.0%
12. 충청남도	0	0.0%	3	3.4%	2	4.4%	1	7.7%
13. 전라북도	0	0.0%	9	10.3%	1	2.2%	1	7.7%
14. 전라남도	6	21.4%	10	11.5%	6	13.3%	1	7.7%
15. 경상북도	0	0.0%	2	2.3%	3	6.7%	0	0.0%
16. 경상남도	1	3.6%	3	3.4%	1	2.2%	0	0.0%
17. 제주특별자치도	0	0.0%	4	4.6%	6	13.3%	3	23.1%
<b>합계</b>	<b>28</b>	<b>100.0%</b>	<b>87</b>	<b>100.0%</b>	<b>45</b>	<b>100.0%</b>	<b>13</b>	<b>100.0%</b>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2) 일 평균 관람인원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사립미술관 167개관의 일 평균 관람인원은 91명임. 2019년 기준 사립미술관 171개관의 일 평균 관람인원은 175명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53.2% 수준으로 평균 관람인원이 85명 적게 나타남
- 일 평균 관람인원은 500명 미만 관람한 기관 113개관(67.7%), 100명~299명 관람한 기관이 26개관(15.6%)으로 응답기관의 97%가 일평균 500명 미만 관람객으로 나타남

[표 4-32] 사립미술관 일 평균 관람객별 분포 현황

(n=166)

구분	50명 미만	50명 ~ 99명	100명~ 299명	300명 ~ 499명	500명 ~ 999명	1,000명 이상	합계
미술관 수	113	13	26	10	2	3	166
기관 비율	67.7%	7.8%	15.6%	6.0%	1.2%	1.8%	100%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 관람료

- 상설전시: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운영 사립미술관 174개관(휴관 5개관) 중 상설전시 무료 관람이 100개관(57.5%)을 차지함

[표 4-33] 사립미술관 상설전시 관람료 현황

(n=174)

구분	무료	유료	합계
미술관 수	100	74	174
기관 비율	57.5%	42.5%	100%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특별(기획) 전시: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운영 사립박물관 174개관(휴관 12개관) 중 특별(기획)전시 무료 관람이 106개관(60.9%)을 차지함

[표 4-34] 사립미술관 특별(기획) 전시 관람료 현황

(n=174)

구분	무료	유료	전시별료 상이	합계
미술관 수	106	61	7	174
기관 비율	60.9%	35.1%	4.0%	100%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사. 인력 현황

### □ 학예인력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사립미술관 155개

관(86.6%)이 학예인력 수를 응답, 미응답 24개관 중 18개관(75%)이 등록관임

- 학예인력 수를 응답한 155개관의 전체 학예인력 수는 386명으로 1관당 평균 2.5명이며,<sup>48)</sup> 학예인력을 1인만 두고 있는 기관이 58개관(37.4%)을 차지함

[표 4-35] 사립미술관 학예인력 분포

(n=155)

구분	1인	2인	3인~4인	5인~9인	10인~15인	합계
미술관 수	58	49	28	16	4	155
기관 비율	37.4%	31.6%	18.1%	10.3%	2.6%	100.0%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행정구역별로 경기(37개관), 서울(35개관), 전남(20개관), 제주(11개관), 강원과 전북(각 10개관) 등의 순으로 학예인력 1인 이상이 있는 사립박물관이 많이 분포하며, 행정구역별 평균 기관 당 학예인력 수는 서울(3.9인), 부산(2.8인), 광주(2.6인) 등의 순으로 많음

#### □ 학예직 외 전문직(교육, 전시 등)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사립박물관 72개관(40.2%)이 학예직 외 전문직(교육, 전시 등) 수를 응답, 미응답 107개관 중 101개관(94.4%)이 등록 사립박물관임
- 학예직 외 전문직(교육, 전시 등) 수를 응답한 72개관의 전체 학예직 외 전문직(교육, 전시 등) 수는 175명으로 1관당 평균 2.4명이며, 학예직 외 전문직(교육, 전시 등)을 1인만 두고 있는 기관이 41개관(56.9%)을 차지함
  - 학예직 외 전문직(교육, 전시 등)이 많은 기관은 삼성미술관 Leeum(서울, 26인), 뮤지엄 산(강원, 14인), 현대어린이책미술관 MOKA(경기, 7인) 등의 순으로 5인 이상~26인 이하 기관 7개관 모두 등록관임

[표 5-36] 사립미술관 학예직 외 전문직(교육, 전시 등) 분포

(n=72)

구분	1인	2인	3~4인	5인~9인	10인~26인	합계
미술관 수	41	14	10	5	2	72
기관 비율	56.9%	19.4%	13.9%	6.9%	2.8%	100.0%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48) 학예인력이 많은 기관은 디뮤지엄(서울, 15인), 대림미술관(서울, 13인), 아모레퍼시픽미술관(서울, 11인), 삼성미술관 Leeum(서울, 10인) 등으로 학예인력 10인 이상 응답관은 모두 등록관임.

- 행정구역별로 서울(17개관), 경기(11개관), 강원(7개관) 등의 순으로 일반직원 1인 이상이 있는 사립박물관이 많이 분포하며, 행정구역별 평균 기관 당 일반직원 수는 서울(3.9인), 경기(3.5인), 강원(3.4인) 등의 순으로 많음

#### □ 일반직원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사립박물관 98개관(54.7%)이 일반직원 수를 응답, 미응답 83개관 중 76개관(91.6%)이 등록 사립박물관임
- 일반직원 수를 응답한 98개관의 전체 일반직원 수는 341명으로 1관당 평균 3.5명이며, 일반직원을 1인만 두고 있는 기관이 48개관(48.0%)을 차지함
  - 일반직원이 많은 기관은 디뮤지엄(서울, 33인), 63아트(서울, 30인), 이상원미술관(강원, 23인), 박물관은 살아있다(제주, 20인), 아르코미술관(서울, 16인), 대림미술관(서울, 12인), 제주유리의성(제주, 12인) 등의 순으로 이상원미술관을 제외하면 모두 등록관임

[표 4-37] 사립미술관 일반직원 분포

(n=98)

구분	1인	2인	3~4인	5인~9인	10인~33인	합계
미술관 수	47	21	14	8	8	98
기관 비율	48.0%	21.4%	14.3%	8.2%	8.2%	100.0%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행정구역별로 서울(28개관), 경기(22개관), 제주(11개관), 전북(8개관), 강원과 전남(각 7개관) 등의 순으로 일반직원 1인 이상이 있는 사립박물관이 많이 분포하며, 행정구역별 평균 기관 당 일반직원 수는 서울(5.9인), 제주(4.9인), 강원(4.4인) 등의 순으로 많음

#### □ 인턴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사립박물관 42개관(23.5%)이 인턴 수를 응답. 롯데뮤지엄(송파)를 제외하면 모두 등록관이며, 28개관의 전체 인턴 수는 63명으로 1관당 평균 1.5명이며, 인턴을 1인만 두고 있는 기관이 61.9%(26개관)을 차지함
  - 인턴은 기관 당 1인~3인으로 인턴 3인인 기관은 서울 4개관(K현대미술관, 사비나미술관, 아트센터나비미술관, 한미사진미술관), 전남 1개관(소소미술관)으로 모두 등록관임

[표 4-38] 사립미술관 인턴 분포

(n=42)

구분	1인	2인	3인	합계
미술관 수	26	11	5	42
기관 비율	61.9%	26.2%	11.9%	100.0%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행정구역별로 서울(10개관), 경기(8개관), 전남(6개관), 광주(5개관) 등의 순으로 인턴 1인 이상이 있는 사립박물관이 많이 분포하며, 행정구역별 평균 기관 당 인턴 수는 서울(2.1인), 전남(1.5인), 경기와 광주(각 1.4인) 등의 순으로 많음

□ 자원봉사자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사립박물관 33개관(18.4%)이 자원봉사자를 운영하며, 30개관(16.8%)이 자원봉사자 수를 응답, 미응답 277개관 중 272개관(98.2%)이 등록 사립박물관임
- 자원봉사자 수를 응답한 30개관의 전체 자원봉사자 수는 1,878명으로 1관당 평균 62.6명이며, 자원봉사자를 1인만 두고 있는 기관이 10개관(31.3%)을 차지함  
- 자원봉사자가 이 많은 기관은 근현대사미술관담다(경기, 15,00명), 환기미술관(서울, 250명), 무등현대미술관(광주, 40인), 뮤지엄 산(강원, 25인), 사비나미술관(서울, 12인) 등의 순으로 자원봉사자 10인 이상~1,500인 이하 기관 모두 등록관임

[표 4-39] 사립미술관 자원봉사자 분포

(n=32)

구분	1인	2인	3~4인	5인	10인~1,500인	수시변화	합계
미술관 수	10	6	7	1	5	3	32
기관 비율	31.3%	18.8%	21.9%	3.1%	15.6%	9.4%	100%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행정구역별로 경기(10개관), 강원(4개관) 등의 순으로 자원봉사자 1인 이상이 있는 사립박물관이 많이 분포하며, 행정구역별 평균 기관 당 자원봉사자 수는 경기(152명), 광주(40명) 등의 순으로 많음

## 아. 온라인 서비스 현황

### □ 홈페이지 운영현황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전체 사립미술관 중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는 곳은 163개관,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지 않은 곳은 16개관으로, 사립미술관 대부분(91.1%)은 기본적인 홈페이지를 갖추고 있으나 사립박물관에 비해 3% 정도 낮은 수치를 보여줌

- 홈페이지를 기관 홈페이지와 기타 온라인 사이트(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로 구분하면, 홈페이지와 기타 온라인 사이트를 모두 갖추고 있는 기관은 3개관이며, 홈페이지만 운영하는 기관은 148개관, 기타 온라인 사이트(블로그, 카페, 유튜브 등)만 운영하는 기관은 12개관으로 나타남

(표 4-40) 사립미술관 온라인 홈페이지(또는 블로그 등 웹주소) 운영 여부

(n=179)

구분	홈페이지(또는 블로그 등 웹주소) 운영			미운영	합계
	홈페이지 만 운영	기타 온라인 사이트만 운영	홈페이지, 기타 온라인 사이트 모두 운영		
미술관 수	148	12	3	16	179
기관 비율	82.7%	6.7%	1.7%	8.9%	100%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전국사립미술관 운영현황 분석연구』((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21)는 홈페이지와 SNS를 구분하여 조사하고 홈페이지의 구성을 전시 일정 안내, 소장품 검색, 소장품 설명,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게시, AR/VR 적용, 뷰잉룸 운영으로 세부화하고 SNS 활용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밴드, 트위터로 구분하여 조사함

- 홈페이지 구성은 전시일정안내(114개관), 뷰잉룸 운영(37개관), AR, VR 적용(13개관) 순으로 많으며,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의 순으로 팔로워가 많음

(표 4-41) 사립미술관 홈페이지 운영 및 SNS 활용 현황

(n=136)

구분	홈페이지	홈페이지 구성					
		전시 일정 안내	소장품 검색	소장품 설명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게시	AR, VR 적용	뷰잉룸 운영

미술관 수	131	114	27	5	2	13	37
기관 비율	96.3%	87.0%	20.6%	3.8%	1.5%	9.9%	28.2%

구분	SNS 활용현황							
	유튜브 (팔로워)	유튜브 (동영상 게시물)	인스타 그램 (팔로워)	인스타 그램 (게시물)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또는 팔로워 수)	카카오 스토리 (팔로워)	밴드 (멤버)	트위터 (팔로워)
수: 평균	16,935	396	25,229	9,245	16,520	968	295	36,966

※ 자료원: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21, 『전국사립미술관 운영현황 분석연구』 재정리.

## □ 서비스 제공(전시설명)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문화체육관광부, 2021) 기준 전체 사립미술관 중 오디오가이드(11.9%) 및 모바일서비스(16.4%)를 제공하는 사립미술관의 비중은 낮은 편이며, 오디오가이드에 비해 모바일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중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남

[표 4-42] 사립미술관 서비스 제공(전시설명) 현황

(n: 179)

구분	오디오가이드		모바일서비스	
	유	무	유	무
기관 수	21	156	29	148
기관 비율	11.9%	88.1%	16.4%	83.6%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전국사립미술관 운영현황 분석연구』((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21)는 온라인 서비스를 오디오가이드 외에도 어플 등 모바일 서비스, AR, VR 및 가상현실 적용으로 구분하여 조사, 각종 온라인 서비스 제공 관이 전체의 10% 내외로 나타남

[표 4-43] 사립미술관 온라인 서비스 현황

(n=136)

구분	오디오가이드	어플 등 모바일서비스	AR, VR 및 가상현실 적용	
			○	△
기관 수	14	13	15	5
기관 비율	10.3%	9.6%	11.0%	3.7%

※ 자료원: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21, 『전국사립미술관 운영현황 분석연구』 재정리.

- 이 외에도 『전국사립미술관 운영현황 분석연구』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21)는 온라인 홍보 매체로 네이버 TV 캐스트, 구글 아트 앤 컬처, 네오룩(Neolook), 아트넷(artnet)으로 구분하여 조사, 사립미술관의 73개관(53.7%)은 온라인 홍보 매체로 네오룩(Neolook)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4-44] 사립미술관 온라인 홍보 현황

(n=136)

구분	네이버 TV 캐스트	구글 아트 앤 컬처	네오룩 (Neolook)	아트넷 (artnet)
기관 수	8	1	73	24
기관 비율	5.9%	0.7%	53.7%	17.6%

※ 자료원: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21, 『전국사립미술관 운영현황 분석연구』 재정리.



# 국내 평가인증제 및 해외 박물관·미술관 정책 사례 분석

---

제5장 평가·인증제도 국내 현황

제6장 해외 박물관·미술관 정책 및 평가·인증제 사례 분석



## 제5장 평가·인증제도 국내 현황

---

1절 지역문화정책 관련 주요 평가제도: 도시재생사업, 문화도시사업, 문화영향평가

2절 문화·체육·관광 우수 기관 인증: 여가친화, 문화예술후원 우수, 스포츠친화, 관광품질 인증

3절 국·공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

4절 문화 분야 평가·인증제도의 특성과 시사점



# 1절 지역문화정책 관련 주요 평가제도

## : 도시재생사업, 문화도시사업, 문화영향평가

### 가. 도시재생사업

#### □ 도시재생사업의 배경(이왕건 외, 2017)

-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국토의 개발과 관련한 여러 부작용을 겪게 되었는데, 인구증가로 인한 주택문제, 집중화로 인한 교통 혼잡, 환경오염, 양극화, 구도심 쇠퇴 등의 문제가 연쇄적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남
  - 2000년대 이전에는 도시 내의 혼잡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난을 개선하기 위해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대규모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였지만, 참여정부에 들어서며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국정과제로 혁신도시 및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이 전개되고 보다 계획적인 도시개발 사업의 프레임이 제시됨. 2005년 참여정부에서 추진한 균형발전정책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사업”에 이어서 2009년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중의 일부인 “도시활력증진 사업”이 전국에서 활발하게 펼쳐짐
  - 2013년 6월 제정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법」)에 근거하여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전략계획 활성화계획의 수립, 전담조직 설치, 주택도시기금 조성, 공공을 통한 대규모 재정지원이 이루어지는 등 도시재생사업이 국토부의 핵심 사업으로 등장하고 지역별로 도시재생 사업이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게 되었음
  - 한편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하면서 도시재생 사업은 굵직한 전환기를 맞이함. 국비 등 공적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이라는 전담 조직이 설치되어 운영되는 등 추진체계 상의 변화도 이루어짐

#### □ 도시재생사업 현황

-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역의 현황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황정보’에서 세부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이에 따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세부 사업 유형은 2022년 5월 기준, 6가지(우리동네살리기·주거지원형·일반근린형·중심시가지형·경제기반형·특별재생지역)이며 총 사업 수는 534곳으로 파악됨
- 2022년 기준 일반근린형이 168곳, 주거지원형이 76곳, 중심시가지형이 72곳, 우리동네살리기가 69곳, 경제기반형이 14곳, 특별재생지역이 1곳임

- 도시재생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며 지자체와 정부부처가 단계적으로 평가를 진행해오고 있음. 중앙정부 주도 사업이며 국비의 사업비 집행률이 높지만 지방비 집행 실적이 낮은 것으로 보아 운영비, 유지관리비가 지자체에 부담이 되는 것 외에 추진 시기가 지연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이삼수 외, 2018)

#### □ 도시재생사업 성과지표 개요

-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의 평가·관리 체계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됨
  - 1) 사업지역 선정에 위한 선정 평가
  - 2) 계획의 적정성과 사업 효과 등을 검증하는 실현 가능성 평가
  - 3) 연차별 모니터링을 위한 연차별 추진실적 평가
  - 4) 사업지원종료 시점의 효과 측정을 위한 종합 성과평가
- 도시재생 선도사업의 평가체계는 크게 계획수립, 사업추진과 사업 완료의 3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평가 가중치가 다르게 주어짐
  - 도시재생 선도지역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함
- 「도시재생법」 제24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함
- 성과지표는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는 “종합성과지표”와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지자체 성과지표”로 구분하여 관리 및 활용함. 지자체가 성과관리 추진실적을 광역지자체에 보고하면 광역지자체가 국토교통부에 추진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 국토교통부가 종합 평가를 시행하는 구조임
  - 종합성과지표는 도시재생사업의 수행으로 기대되는 일반적인 성과 및 변화를 포함하여, 이를 통해 활성화 지역 간 변화를 상대적으로 측정 할 수 있음. 중앙정부(국토교통부, 도시 재생지원기금)에서 종합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전국도시재생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시행함
  - 지자체 성과지표는 각 지자체에서 활성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활성화 계획수립 시 자체적으로 설정한 성과지표로, 지역별 사업 목표 달성 여부를 진단하고 지역 고유의 자체 성과 파악이 가능함. 지자체 성과지표는 지자체에서 직접 자가 진단 시트 등을 통하여 정기 모니터링 실시함

#### □ 2020년 도시재생 종합성과지표 산정 방법

- 종합성과지표는 도시재생 뉴딜 목표인 1) 주거복지 및 삶의 질 향상, 2) 도시 활력 회복, 3) 일자리 창출, 4) 공동체 회복 및 사회통합 등 4대 정책목표에 부합한 지표로

구성되었음

- 사업선정연도와 당해연도 지표 값의 “변화율” 비교 방식을 적용하고 지자체는 사업 유형과 관계없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상 단위 사업과 관련된 성과지표 값을 모두 작성하되, 경제 기반형은 예외 적용
- 12개 지표 모두 지자체가 직접조사(설문조사 포함)로 작성하되, “유동 인구·매출액”은 소상공인진흥공단 상권분석보고서 DB, “민간창업·일자리(민간부문)”은 지방행정 인허가데이터 등을 활용함

[표 5-1] 도시재생 선도지역 종합평가 항목 및 내용

구분	평가항목	평가 주요 내용	계획 수립	사업 추진	사업 완료
기획	주민 참여도	• 계획수립 및 사업기획과정에서 주민 및 지역사회 참여 정도	60점	-	-
	거버넌스	• 주민협의체, 사업 추진협의회 등 구성·운영의 충실성 • 전담조직, 지원센터 등 운영체계의 효율성 • 지자체 내 부서간 협력 정도 • 사업 참여 주체 및 이해관계자간 협력 정도			
	계획의 적절성	• 지역자원, 지역역량 등 지역특성 반영 및 활용 정도 • 도시재생사업 내용의 구체성과 타당성 • 국비·지방비·민간투자 등 자원조달의 적절성 • 성과관리방안의 적절성			
	사업간 장소적 연계	• 중앙부처사업, 지자체사업 등 다양한 사업간 연계 및 적절성 • 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부문별 사업계획의 종합적 추진			
집행	주민 참여도	• 사업 집행과정에서 주민 및 지역사회 참여 정도	40점	80점	40점
	거버넌스	• 주민협의체, 사업 추진협의회 등 구성·운영의 충실성 • 전담조직, 지원센터 등 운영체계의 효율성 • 사업집행 과정에서 지자체 내 부서간 협력 정도 • 사업 참여 주체 및 이해관계자간 협력 정도			
	추진 진행 실적	• 계획대비 사업의 진척 정도 • 계획대비 예산의 집행실적			
	모니터링 결과 반영	• 도시재생지원기구의 모니터링에 대한 협조 및 수용 노력 •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피드백의 충실성 등			
성과	목표 달성도	• 성과관리방안에 제시된 목표 달성 여부	-	20점	60점
	기타 파급효과	• 성과관리방안에 제시되지 않았으나, 기타 경제·사회·물리적 지표 개선 등			

※ 자료원: 국토교통부, 2014,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모니터링·평가 계획(안)> 재정리.

## □ 도시재생사업 성과평가의 한계

-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성과평가체계의 문제점(김주영, 2020)으로는 현재까지 제시된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성과 평가지표가 도시재생사업의 목표와 도시의 미래지향 등 상위계획과 체계적으로 연계되어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특히 주목함
  - ‘도시혁신사업’으로서의 도시재생 뉴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4대 목표는 주거복지 실현, 도시경쟁력강화, 사회통합, 일자리 창출임. 지자체와 커뮤니티 주도의 지속가능한 ‘도시혁신’을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데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계획을 수립하고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했는지 정도의 좁은 범위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음
  - 지자체 성과지표를 통해 지역 고유의 자체 성과 파악이 가능하고 지자체에서 직접 자기진단시트 등을 통하여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지만, 종합평가를 위한 절차로써 여겨질 가능성이 높고 ‘지역 주도’라고 여겨지기엔 평가 과정 중 일부로 인식되고 있음
- 또한 도시재생사업 진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김륜희 외, 2015)도 존재하는바, 기초 개별사업(주택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등)의 경우 기초조사 및 사업 완료에 따른 성과평가를 수행하는 경우가 대다수라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음
  - 도시의 노후 환경 개선을 위해 주민을 강제 퇴거시키고 전면 철거 한 뒤 다시 짓는 과거의 불도저식 재개발이 아닌 기존의 지역 형태를 유지하되 지역 활성화를 위한 보수, 리모델링을 하는 방법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은 평가할만한 부분임
  - 하지만 실질적으로 도시재생 지역 주민들은 변화가 미비하다고 느끼고 있는바, 가구당 평균 1,000만 원에서 최대 2,000만 원 안팎으로 보조금이 한정되어있어서 대문이나 배관 개선 정도에 치중 될 수밖에 없기 때문임(김나운 기자, 중앙선데이, 2021.6.12.)
- 탑다운(Top-down) 방식의 기존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를 계속 추진한다면 각 지자체의 지역 여건, 상황, 추진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지 않고 평가체계가 획일화된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나. 문화도시사업

### □ 문화도시사업의 개요

- 국토교통부의 대표사업인 도시재생 사업에 비견할 만한 문체부의 (지역 관련) 대표 사업은 문화도시 지정 사업을 꼽을 수 있음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등에 근거를 두고 추진된 ‘문화도시 지정 사업’은 도시의 문화계획을 통해 사회성장 및 발전을 이끌어가는 문화자치형 정책사업으로 ‘도시의 문화계획(City's Culture Plan)을 통한 사회발전 프로젝트’임
- 법정문화도시는 문화도시조성계획에 근거하여 도시문화 활성화 및 사회효과 창출 중심의 도시문화사업을 추진하는 정책이며, 시민의 문화적 삶을 실현하는 사회적 장소로서 문화도시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문화체육관광부, 2018)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추진 방향이 문화도시 사업을 기존의 사업들과 차별화하는 핵심적인 포인트가 됨
  - (대규모 시설 조성계획이 아닌 지역문화발전 종합계획을 지원) 지역 스스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하고 단계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지역문화발전 종합계획을 지원함. 대규모 시설 조성 및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문화적 소프트파워(인력, 콘텐츠)가 사회발전과 연결되는 도시 문화생태계 조성 지원→문화도시 조성 및 실현에 요구되는 장소/콘텐츠/인력 분야 통합 지원
  - (중앙·관 주도에서 지역중심·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로 변화) 중앙 주도, 관 주도의 상의하달식 지원이 아닌, 지역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출발하는 문화정책을 지원함. 지역사회 각 분야 리더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협치, 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를 통한 문화도시 조성 (일부의 제한적 참여 지양, 다양한 주체와 계층, 시민참여 유도)→전문가/지역주민/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문화 거버넌스
  -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선 효과적 추진체계 구축과 컨설팅 지원) 「지역문화진흥법」 상 문화도시 지정 심의 및 평가를 위한 「문화도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전문 컨설팅을 위한 컨설팅단 운영, 문화도시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해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민관협력에 의한 환경진단, 평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추진, 문화도시 조성과정 자체가 새로운 문화가 될 수 있도록 전문적 지원」문화도시 공정한 지정과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 □ 문화도시 지정 분야 및 연계 사업

- 문화도시 지정분야(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문화도시 지정분야는 「지역문화진흥법」 및 문화관계법 구분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도시지정 기본분야를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음: 역사전통/문화예술/문화산업/사회문화 분야

기본 분야	내용	근거 법
역사전통분야	도시가 사회 장소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성한 정체성으로 서 문화의 원형적 가치를 지향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육성특별법」
문화예술분야	도시의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사회를 이끌어나가는 원천동력 으로서의 문화의 창조적 가치를 지향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분야	도시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쓰임과 활용을 만드는 문화의 지속가능가치를 지향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사회문화분야	도시에서 삶의 가치를 풍부하게 하고 도시 발전의 근본비탕이 되는 문화의 가치다양성을 지향	「문화다양성 보호증진법」 등

- (타부처사업과 연계) 2021년 기준 <도시재생뉴딜사업>(국토부), <주민참여예산제도>(행안부)와 연계 시 조성계획 승인 과정에서 연계계획의 수준에 따라 점수 부여. 사업 추진 시 연계현황 점검 및 성과평가 반영을 추진하고 있음
- (필수연계사업) 「문화기본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문화영향평가(문체부) 의무화-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이후로 최종심의 전까지 문체부가 수행하는 문화영향평가(진단평가 제외)를 완료한 경우 인정

#### □ 문화도시 지정 및 심의 절차

- 문화도시 지정 절차는 지자체의 지정 신청을 통해 시작되는데, 크게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예비도시 선정), 예비도시로서 1년간의 예비사업 추진, 문화도시 지정심의(본도시 선정)이라는 세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지정으로 완결되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
- 구체적인 지정 절차 및 각 단계별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조성계획 심의와 지정 심의를 위한 절차 역시 세분화되어 있음

(표 5-2) 문화도시 지정 절차

단계구분	주요내용
① 문화도시 지정신청	지자체에서 문화도시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자체에서 문화도시 추진협의체 중심으로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지자체가 문화체육관광부에 문화도시 지정신청
② 문화도시조성계획 검토·승인	지자체에서 문화도시조성계획 작성(안) 및 제출
	문화도시조성계획 작성(안) 검토/컨설팅/보완

단계구분	주요내용
	문화도시조성계획 승인여부 결정
③ 예비사업 실행·관리	조성계획 승인 이후 문화도시 지정 시까지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 예비사업은 도시에서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직접구성 및 시행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컨설팅 및 모니터링
④ 문화도시 지정심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1년 이후 문화도시 심의위원회에서 문화도시 지정심의 진행 문화도시 예비사업 실행결과, 발전 가능성 확인 중심의 심의 진행
⑤ 문화도시지정	문화도시 지정 및 공표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1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재정리.

[표 5-3] 문화도시 지정 '심의' 절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검토	구분	문화도시 지정 심의
문화도시 지정신청 후 조성계획 제출 시점	시기	조성계획 승이 1년 이후 예비사업 시행과정 시점
계획 검토 및 승인	행정절차	지정 심의 및 지정
문화체육관광부/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실무검토단 운영)	시행주체	문화체육관광부/문화도시심의위원회
조성계획 검토·승인 기준	기준	문화도시 지정 심의 기준
① 문화도시조성계획 검토 요청 추진절차 ② 조성계획 실무검토단 구성 및 운영 ③ 1차 서면검토(계획내용 검토) * 서면검토를 통해 현장평가 대상선정 ④ 2차 현장검토(현장실사 확인) ⑤ 3차 발표검토(최종 검토/확인) ⑥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심의위원회)	추진절차	① 문화도시 지정심의 요청 ② 심의위원회 소집 및 운영 ③ 1차 서면심사(예비사업현황 확인) ④ 2차 현장실사(현장실사 확인) ⑤ 3차 발표심사(최종 심의/의결)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1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재정리.

#### □ 단계별 심의(평가) 지표

- (예비도시 선정을 위한 조성계획 심의 지표)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의 적정성(20점),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50점), 문화도시 실현 가능성(30점)이라는 세 영역을 중심으로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10), 추진 방향의 적정성(10), 특성화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15), 지역활성화 기대효과(15), 사회참여 및 소통방안(15),

정책 및 사업 연계협력가능성(5), 추진체계구축(10), 정책지원 및 자원계획의 합리성(10), 문화도시지속가능성 확보 방안(10)으로 구성됨

-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견인 가능성 지표를 통해 취약지역에 대한 가점(2)을 제공하고 있어서, 총점은 100+2점으로 확인됨

(표 5-4) 문화도시 조성계획 심의 지표(예비도시 선정)

제4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심의 기준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의 적정성 (20점)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 일반현황 조사·분석</li> <li>• 도시 문화자원 및 유·무형자산 조사·분석 (역사·문화자원, 인적자원, 문화인프라, 문화행사 등)</li> <li>• 도시 환경 및 현황의 분석 및 진단결과 제시</li> </ul>	10
	문화도시 추진 방향의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전 및 목표설정의 적절성</li> <li>• 지역의 고유·핵심가치 제시 및 반영</li> <li>• 문화도시정책 가치 부합 여부</li> </ul>	10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50점)	특성화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li> <li>• 지정분야별 특성화 계획의 적절성</li> <li>• 지역의 정체성 및 고유성 확보 여부</li> <li>• 지역특성에 적합한 추진과정 및 방법론 제시 여부</li> </ul>	15
	지역 활성화 기대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 기반의 지역 문화·사회·경제 활성화 및 효과</li> <li>• 도시의 브랜드 및 지역의 문화경쟁력 확보</li> <li>• 기타 공동체 활성화 방안</li> </ul>	15
	사회참여 및 소통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도시민의 문화 참여 및 접근성 보장여부</li> <li>• 다양한 주체의 참여기회 보장 및 활동지원</li> <li>• 문화소외지역 및 취약계층의 문화접근성 확보</li> </ul>	15
	정책 및 사업 연계·협력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 간, 광역-기초 간 협력방안 제시 여부</li> <li>• 관련 타 사업 및 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방안 (도시재생뉴딜(국토부), 관광거점도시(문체부) 등)</li> <li>• 예산, 조직(인력), 정책적 협력방안 구축 여부 (예산 지원, 협의체 구성, MOU 체결 계획 등)</li> <li>• 협업·연계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li> </ul>	5
문화도시 실현가능성 (30점)	추진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진체계의 규모, 조직, 역할의 적절성</li> <li>• 추진조직의 독립성, 인력의 전문성, 운영의 안정성</li> <li>• 시민·공공전문가 등의 거버넌스 구축계획 및 적절성</li> </ul>	10
	정책지원 및 자원계획의 합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자체의 정책 및 사업계획에의 반영 여부</li> <li>• 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확보계획</li> <li>• 예산확보 및 재정투입계획의 적절성, 합리성</li> </ul>	10
	문화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모니터링·환류시스템 구축여부 및 적절성</li> </ul>	10

제4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심의 기준			
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여부 및 합리성</li> <li>• 국비지원 이후, 기타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제시 (재원확보 및 투입계획, 인력·조직 등)</li> </ul>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견인가능성 (+2점)	국토균형발전을 위하여 문화취약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장촉진지역(70개소) 등에 해당할 경우 가점 부여</li> </ul>	2
합계			100+2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1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재정리.

- (본도시 선정을 위한 지정 심의 지표) 조성계획이 승인된 기초자치단체는 1년간의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도시 지정 심의를 받게 되는데, 이를 위한 심의(평가) 지표는 예비사업 추진과정 및 결과(20점), 문화도시 추진기반 확보(30점), 문화도시 추진효과 및 가능성(50점)으로 구성됨

(표 5-5) 문화도시 지정 심의 지표(본도시 선정)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배점
예비사업 추진과정 및 결과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도시 비전에 따른 예비사업 설계 및 실행</li> <li>-예비사업 추진계획에 제시된 사업을 계획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실행함</li> <li>-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과정이 가치와 목적에 맞게 체계적으로 구성됨</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사업계획에서 제시된 성과목표 실현 및 달성 정도</li> <li>-예비사업 추진결과는 추진계획에 제시된 각각의 성과목표를 달성함</li> <li>-예비사업 추진결과는 지역에서 효과를 생성 및 나타내고 있음</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예비사업 실행결과에서 도시의 문화기획·추진 역량의 확인</li> <li>-예비사업 결과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도시의 추진역량이 충분한 것으로 확인됨</li> <li>-예비사업 결과 향후 문화도시 사업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추진이 예상됨</li> </ul>	5
문화도시 추진기반 확보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행정적 기반의 확보</li> <li>-도시 내에서 문화도시 추진·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또는 공표 예정임)</li> <li>-문화도시 추진·지원에 대해 기초-광역 간 업무협약 등을 체결 또는 준비함</li> </ul>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의 확보</li> <li>-지자체가 문화도시 사업예산을 의결함(또는 예산 수립 후 의결예정임)</li> <li>-광역지자체가 해당 도시의 문화도시 지원예산을 수립함(또는 수립 후 확정예정임)</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문화도시의 체계적 추진조직 구성 및 운용</li> <li>-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정식의 문화도시지원센터 및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함</li> <li>-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과 인적자원(기획자/실행인력 등)을 확보함</li> </ul>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련 타 사업 및 기관과의 협업·연계 추진</li> </ul>	5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배점
	- 도시재생뉴딜(국토부)사업 및 관광거점도시(문체부)사업과의 연계추진가능성 - 예산, 조직(인력), 정책적 협력방안 구축 여부 (예산 지원, 협의체 구성, MOU 체결 계획 등) - 관련 타 사업 및 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연계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문화도시 추진효과 및 가능성 (50)	• 지역주민의 문화활동 참여 확대 및 촉진 가능성 - 문화도시를 위한 주민참여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음 - 문화도시사업으로 주민의 문화향유 및 기회가 보다 많이 보장될 수 있음	15
	• 문화인들이 활동 또는 정주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문화기획자, 예술인, 청년 등) - 문화도시를 통해 문화인들의 문화일거리 생성 및 활동기회 부여가 가능함 - 도시에서 활동·정주하는 문화인재 양성 및 육성으로 사회자본 구축이 가능함	15
	• 문화도시의 가치를 통한 도시브랜드 생성 및 경영관리 능력 - 도시의 대표가치이자 사회가 공유 및 인정하는 문화브랜드 생성이 가능함 - 문화에 기반하는 지역경영력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10
	• 문화를 통한 도시의 성장동력 생성 및 사회·경제적 효과 파급 - 도시발전을 위한 미래의제와 새로운 성장동력 원천의 발굴가능성을 가짐 - 문화가치 기반의 사회생태계 구축 및 연결로 사회효과 창출의 가능성을 가짐	10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견인 가능성 (+2점)	•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하여 문화취약지역에 대한 정책적 고려 - 성장촉진지역(70개) 등에 해당할 경우 가점 2점 부여(정량)	2
합계	100+2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1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재정리.

## □ 문화도시 조성 사업 지정·심의 현황 및 한계

- 제1차, 2차 문화도시(12곳)에 대한 국비 184억 원 예산 지원(지자체당 15억 원), 제3차 문화도시 지정(6곳) 및 제4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11곳)
- 2021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는 제4차 문화도시 지정 신청 접수를 완료하였고 총 49개 지방자치단체가 접수함. 차수별로 지원한 지자체 수는 1차 19개, 2차 25개, 3차 41개였던 것을 고려하면 문화도시로 지정받고자 한 지자체가 최소 134개로 볼 수 있음.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총합이 226개이므로 약 50%의 도시가 문화도시 사업에 관심을 보였다는 것을 뜻함(노수경, 2021)

[표 5-6] 법정문화도시 지정 현황

구분	법정문화도시
제1차 문화도시(2019.12. 지정)	부천시, 서귀포시, 영도구(부산), 원주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제2차 문화도시(2021.01. 지정)	강릉시, 김해시, 부평구(인천), 완주군, 춘천시

구분	법정문화도시
제3차 문화도시(2021.12. 지정)	공주시, 목포시, 밀양시, 수원시, 영등포구(서울), 익산시
제4차 (예비)문화도시	고창군, 군산시, 군포시, 달성군(대구), 담양군, 도봉구(서울), 북구(부산), 서구(인천), 성북구(서울), 안동시, 연수구(인천), 영월군, 울산광역시, 의정부시, 창원시, 칠곡군

- 문화도시는 예비 문화도시의 예비사업 추진 과정·결과, 행정·재정적 추진기반 확보, 추진 효과 및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지정되며 1년간의 예비사업을 통해 문화도시 추진 효과와 발전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는지, 지역·시민주도형 협력체계를 통한 문화적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할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함
  - 예시로 제4차 (예비) 문화도시에서 탈락한 경주는 조성계획에서 ‘천년 유산을 깨우는 문화도시 경주’라는 주제로 유·무형 문화유산 원형의 체계적 정리 및 재해석, 문화·생산·소비 참여 기회 확대, 지속가능한 문화생태계 조성, 시민의 요구와 참여에 의한 문화자치기반 조성에 관한 내용을 담았지만 “관광을 키워드로 해서 문화로 치환된 수준에 국한돼 보인다”라는 실무 검토 위원 및 심의위원들의 지적이 있었음(오선아 기자, 경주신문, 2021.12.9.)
  - 제4차 (예비) 문화도시에 지정된 창원시는 마산, 창원, 진해 등 3개 권역 행정통합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동 단위가 아닌 ‘55개 마을’ 단위로 ‘썰방’이라는 주민자체협의체를 통해 문화 의제를 발굴하고, ‘마을 교과서 개발’, ‘마을 발견 여행’, ‘동네문제 살롱’ 등의 실천 사업을 제시함
- 많은 기초자치단체의 관심과 열정 속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 관련 사업의 대표사업으로 자리 잡은 문화도시 지정 사업은 각각의 도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스토리를 스스로 발굴하여 자율적인 조성 계획을 제시하고, 문화도시 지정·심의 단계에서 지자체 내에서 시민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결과만이 아니라 과정의 문화적 성격을 강조하면서, 도시 생태계 전반의 문화적 변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음
  - 각 지자체들이 여러 단위에서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문화도시에 대한 가치와 비전을 공유하고 시민 의견 수렴 과정 및 의사결정에의 영향력 발휘를 제도화하는 노력을 꾀하는 것은 평가 인증 제도가 발휘하는 선한 영향력의 증거로 파악할 수 있음
- 하지만 몇몇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계획서 작성에 초점을 맞추어 일부 용역사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여 유사한 계획을 양산하고 있다는 비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평가위원들의 전문성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고, 문화도시 지정 이후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들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하여 혼란이 초래되는 등의 사례도 일부 확인되고 있음

## 다. 문화영향평가

### □ 문화영향평가 개요(김면 외, 2020)

#### ○ 문화영향 평가의 법적 개념과 근거

- 「문화기본법」에서는 문화영향평가를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법 제5조제4항)하는 것으로 정의함
- 문화영향평가(Cultural Impact Assessment)는 「문화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하여 국가 정책의 문화적 영향력을 보증 및 확산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임

#### ○ 문화영향 평가의 목적

- 문화영향평가는 정부정책을 문화적 관점에서 진단하고 부정적 영향을 방지 및 완화를 위한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 그 외에 “지속가능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과 “정책의 사회적 수용가능성과 효용성 제고”의 목적을 가지고 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고자 함

### □ 문화영향평가 대상 및 지표

- 2020년 문화영향평가 종합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화영향평가 대상은 정부의 정책 사업이나 계획 중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함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평가의 대상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 2항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자체적으로 평가하라고 한 정책사업이나 계획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시행하는 평가의 대상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 3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한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협력체계를 통한 협의를 거쳐 문화영향평가를 하기로 한 경우

- (법안에 대한 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와 같이 법 제정 및 개정 시에도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바, 현재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사업이나 계획을 넘어서 법안에 대한 문화영향평가가 실시될 경우 상당한 영향력 확대가 예측되는 상황임
- (문화영향평가지표) ‘문화기본권’, ‘문화정체성’, ‘문화발전’이라는 세 영역을 중심으로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문화 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여섯 개 세부 지표로 구성됨

- 세 개의 대 범주 아래 여섯 개의 중범주, 열 네 개의 소범주를 통해서 문화적 영향을 평가하려는 것으로 해당 지표는 시범 사업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개선 및 보완되고 있으며, 평가의 구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범주 차원의 측정 문항이 다양하게 개발 및 검증되어 적용되고 있음

[표 5-7] 2020년 문화영향평가지표

평가지표 체계			
구분	평가영역	평가지표	고려사항
공동지표	문화 기본권	문화향유에 미치는 영향	문화향유권, 문화환경권
		표현 및 참여에 미치는 영향	문화참여권, 정보문화 향유권
	문화 정체성	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	문화유산 보호, 문화유산 향유권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	지역 공동체, 갈등발생 가능성, 사회적 합의
	문화 발전	문화다양성에 미치는 영향	문화 다양성 권리, 문화평등권, 문화격차
		창의성에 미치는 영향	창의성 발전, 미래지향성
특성화지표	※ 평가대상의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수행기관이 자율적으로 개발하여 적용		

※ 자료원: 김면 외, 2020, 『2020년 문화영향평가 종합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p. 6.

### ○ 문화영향평가의 네 가지 유형

- 한편 문화영향평가는 평가의 수준 및 필요성 등에 따라 진단 평가, 약식 평가, 기본평가, 심층평가로 구분하여 실행되고 있음
- **진단평가와 약식평가**는 자체평가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이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검토 의견 및 평가보고서를 제공하고, 반영계획을 제출하는 단기 평가임. **기본평가와 심층평가**는 전문평가로서, 공모에 따른 평가기관 선정을 통해 보다 철저한 지표별 연구와 평가를 진행하는 방식임

[표 5-8] 문화영향평가 유형

종류	내용		평가방법	비고 (소요기간)
자체 평가	진단 평가	관련 사업(정책)의 자체 수준 진단 및 인식제고	정책담당자가 진단평가서 작성·제출 →외부전문가 의견송부 →반영계획제출	1개월 이내
	약식 평가	관련 사업(정책)에 대해 자체 평가 및 외부전문가 검토·평가	정책담당자가 약식평가서 작성·제출 →외부전문가 평가결과보고서 통보 →반영계획제출	1~2개월
전문 평가	기본 평가	일반·단일 사업(정책)에 대한 외부전문기관평가	외부 전문기관을 평가기관으로 공모·선정하여 평가(결과보고서통보)	4~6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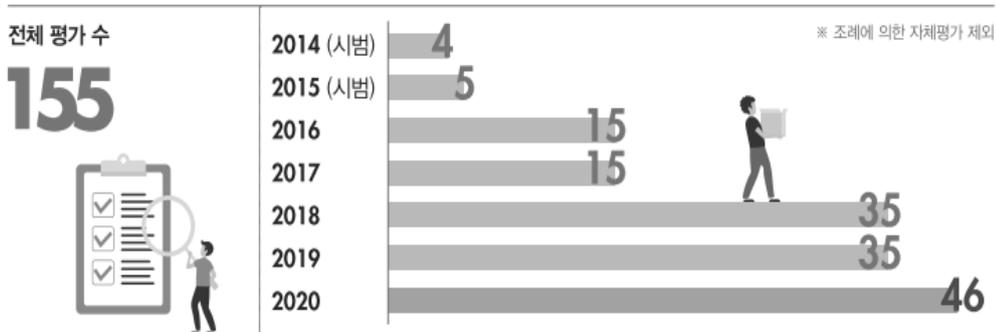
종류	내용	평가방법	비고 (소요기간)
			→반영계획제출
심층 평가	다년도 종합사업(정책)에 대 한 외부전문기관평가	외부 평가기관을 공모·선정하여 평가 (결과보고서통보) 및 주민설문조사 →반영계획제출	6~7개월

※ 자료원: 김면 외, 2020, 『2020년 문화영향평가 종합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재정리.

## □ 문화영향평가 현황

- 문화영향평가는 2013년 「문화기본법」 제정에 따라 2014년과 2015년 시범평가 기간을 거쳐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조례에 의한 문화영향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2021년 기준 7개 광역지방단체에서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단독 조례를 제정하거나, 문화영향평가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음(서울특별시, 경기도, 전라남도, 부산광역시,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 2020년 기준 문화영향평가 참여 정부부처 수는 6개로 대표적으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국토부, ‘문화도시조성사업’의 문체부, ‘문화재돌봄사업’의 문화재청 등이 있음
- 문화영향평가 평가대상 유형은 ‘도시재생사업’, ‘문화도시/특화사업’, ‘문화재복원활용사업’, ‘기타사업’(댐 건설, 환경조성사업, 마을 공동체 조성 사업 등)으로 도시재생사업과 문화도시/특화사업이 절반 이상을 차지함

### 문화영향평가 연도별 평가 현황



### 문화영향평가 연도별 평가 현황

※ 자료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문화영향평가 이렇게 한다』, p.7.

- 문체부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문화도시 조성 사업 등 국가 및 지자체의 주요 계획·정책 대상 문화영향평가 실시를 통해 문화영향평가의 브랜드를 정립해왔으며, 추후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온라인 지원 시스템을 도입하여 대상 선정절차를 간소화 및 효율화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 문화영향평가 한계

- 탑다운(Top-down) 방식의 평가체계
  - 평가 주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명시되어있지만 평가를 주관하고 관리하는 주체인 문화체육관광부의 역할만 강조되어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침을 받아 평가를 수행하는 소극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
  - 평가지침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자체평가를 수행함에 있어 자체적으로 개발한 평가지표 및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음. 즉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제시하는 평가보고서(체크리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평가방법과 지표를 활용하여 평가를 수행할 수 있음(경기문화재단, 2017)
  -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문화영향평가 관련 조례 제정을 한 광역지방단체는 총 7곳이지만 독자적인 평가지표와 운영체계를 가진 곳은 서울시와 경기도 두 곳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은 이러한 흐름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평가대상이 불명확하고 사업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동기부여가 부족함
  - 앞서 현황에서 밝혔듯이 문화영향평가 건수는 해가 지날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2018년 이후 지방자치단체보단 정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도시재생 뉴딜사업 위주로 평가가 시행되고 있음
  - 법적으로는 모든 행정주체, 즉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이 되었지만, 현실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부분 평가를 시행하거나 관련된 특정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지자체와 부서가 관심을 두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임(백선훈 외, 2020)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기엔 독자적인 평가 방법과 지표를 개발할 연구 인력이 부족하고 실행할 여건도 되지 않아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문화영향평가’에 참여하여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평가받기 때문에 지자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활성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법적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사업을 받기 위한 수단화’와 ‘평가반영의 미비함’이 문제가 되고 있음
  - 이상과 같은 이유로 문화영향평가는 애초의 계획처럼 정부의 다양한 분야의 사업 추진 이전에 문화적 영향을 그려보고 긍정적 효과를 확대하고 부정적 효과를 저감하기 위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로는 나아가지 못했음

- 법적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지원 사업의 가점 획득을 추구하는 지자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전문평가'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를 사업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평가의 권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2절 문화·체육·관광 우수 기관 인증

: 여가친화, 문화예술후원 우수, 스포츠친화, 관광품질 인증

### 가. 여가친화기업 인증제도

#### □ 여가친화기업 인증사업 개요

- 문체부에서 실시하는 여가친화기업 인증사업은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으로 지원·운영하는 기업·기관을 선정하여 인증하고 지원하는 제도임

-서면평가와 설문조사, 현장조사를 통해 기업·기관실태와 조직문화를 평가함

#### □ 여가친화기업 인증 평가지표

- 평가지표는 기업실태(60점)와 기업문화(40점)를 범주로 100점 만점으로 구성됨

[표 5-9] 여가친화기업 인증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I. 기업실태 (60점)	여가시간 확보(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당 평균 근로시간</li> <li>• 평균 연차휴가 소진율</li> </ul>	
	여가요건 제도화(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로계약 체결 시 명문화</li> <li>• 여가 담당자 여부</li> <li>• 반반차 휴가제 운영 규정</li> <li>• 연차휴가사용 촉진제도</li> <li>• 보상휴가제 운영, 특별휴가 운영</li> <li>• 휴가사용방식 규정</li> </ul>	
	여가활동 지원(20점)	공간·시설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휴게(휴식)공간·시설</li> </ul>
		비용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선택적복지후생제도</li> <li>• 자율적여가활동비용</li> </ul>
II. 기업문화 (40점)	조직문화(2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가친화적 조직문화(설문조사)</li> </ul>	
	최고경영층 리더십(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경영층의 관심과 의지</li> </ul>	
	직원만족도(10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경영층의 리더십과 여가제도에 대한 만족도</li> </ul>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여가친화인증사업 신청 공고> 재정리.

□ 여가친화기업 인증 평가 방법

- 기업실태(60점)에 대한 평가는 평가지표에 따라서 기업 현황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기업문화(40점)는 아래와 같이 설문조사와 현장조사를 통하여 또 다른 관점과 방법을 통해 평가함
- 조직 구성원 설문조사(조직문화 지표/20점)

문항구성	• 조직문화에 대한 총 10개 문항										
조사대상	• 신청기업·기관 임직원 대상(성별, 연령, 부서 등 안배)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기업·기관이 직접 근로자에게 이메일을 보내 설문조사 실시)										
	• 기관, 기업의 규모에 따라 설문조사의 제출 인원 비율의 차등을 두고 있음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width: 50%;">직원 인원수</th> <th style="width: 50%;">제출인원</th> </tr> </thead> <tbody> <tr> <td>1,000명 이상</td> <td>: 직원의 10% 이상</td> </tr> <tr> <td>200명 이상~1,000명 미만</td> <td>: 100명 이상</td> </tr> <tr> <td>10명 이상~200명 미만</td> <td>: 직원의 50% 이상</td> </tr> <tr> <td>10명 미만</td> <td>: 전수</td> </tr> </tbody> </table>	직원 인원수	제출인원	1,000명 이상	: 직원의 10% 이상	200명 이상~1,000명 미만	: 100명 이상	10명 이상~200명 미만	: 직원의 50% 이상	10명 미만	: 전수
	직원 인원수	제출인원									
	1,000명 이상	: 직원의 10% 이상									
200명 이상~1,000명 미만	: 100명 이상										
10명 이상~200명 미만	: 직원의 50% 이상										
10명 미만	: 전수										

- 현장조사 정성평가(최고경영층의 리더십 10점/직원만족도 10점)

조사방법	• 2021년 현장조사는 비대면 인터뷰(최고경영층, 담당자, 직원) 로 진행하고, 특이점이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선별적인 현장조사를 진행함, 또한 기업실태(자체평가)를 바탕으로 증빙서류를 심의위원들이 확인하는 절차 실시
조사내용	• 신청서·증빙서류 확인 및 대표, 직원 심층 인터뷰 등

□ 규모와 성격에 따라 세부 항목에 대한 차등적 적용

- 여가친화인증제도의 경우 여가친화경영 자체평가 총괄 채점표가 중견·대기업, 공공기관, 중소기업으로 구분되어 약간 다른 방식으로 적용됨
- 중견·대기업, 공공기관에서의 필수 평가지표가 중소기업에서는 가점 요소로 적용되어 충족시 가점, 비충족시에도 감점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표 5-10) 중견·대기업, 공공기관 여가활동 지원 지표

여가활동 지원 (20점)	공간·시설 제공	• 휴게(휴식)공간·시설	• 여가공간·시설*
	비용지원	• 선택적복지후생제도	• 자율적여가활동
	프로그램 제공	• 여가프로그램	• 사회공헌활동*

※ \*: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각각 3점과 2점의 가점 항목으로 적용됨.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여가친화인증사업 신청 공고> 재정리.

## □ 적용 시사점

- 기존의 국·공립박물관·미술관의 평가인증제도 현장 조사는 현장 평가위원이 직접 기관을 방문하여 서면평가 결과확인 및 관련자료 확보를 진행하고 있음
- 여가친화기업 인증사업은 최고경영층 및 현장 직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체) 평가 접수 및 근거자료를 확인하고 수정 및 컨펌 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지만, 현장 실사를 통해 관련 시설을 점검하고 다양한 직급과 연령, 성별의 직원 목소리를 실제로 확인하고 있음
- 현장 평가위원이 직접 방문하여 현장을 조사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 확립된 직원들의 의식을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직접 제출한 평가표에 대한 더블 체크를 도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평가지표 역시 계량적인 평가가 가능한 ‘기업실태’ 범주와 설문조사 및 현장조사를 통해 평가하는 ‘기업문화’ 범주를 나누는 접근도 설득력이 있음
-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평가지표를 구축하고 있고, 직원 설문조사 등을 반영하고 있어서 평가방법 차원에서 새로운 관점 도입이 가능하지만, 인증을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대상 사업으로서 최소조건 인증이 아니라 최대조건 인증이기 때문에 대상이 적을 수 있음

## 나.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

### □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제도 개요

- 2014년 제정 및 시행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약칭 「문화예술후원법」)에 의거하여, 문화예술분야 후원활동을 촉진하거나 모범적으로 수행하는 단체 및 기업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
- 문체부는 매년 문화예술후원 분야에 탁월한 전문성을 갖추고 후원 성과를 일구어 낸 단체 및 기업 등을 인증신청 접수, 서류심사 및 현장평가, 심의평가 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인증함

### □ 평가지표 및 절차

-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생태계에 기여하는 단체 및 기업 등의 전문성과 후원성과를

심사하기 위해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와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진행함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4조 근거)</li> </ul>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9조 근거)</li> </ul>

- 신규인증, 유효기간 연장 평가지표

구분	2021년 시행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개 평가항목: 계량 5개 40점, 비계량 5개 60점</li> </ul>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0개 평가항목: 계량 4개 40점, 비계량 5개 60점</li> </ul>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 공고> 재정리.

- 서류 심사를 통해 필수요구사항 적합·부적합을 확인하여 현장평가 대상을 선정하여 단체와 기관별 부분적으로 상이한 평가지표로 점수를 매겨 최종적으로 검토, 심의를 거쳐 최종 인증을 결정함

(표 5-11)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 절차

구분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비고
인증 절차	서류 심사→현장 평가→최종 심의		
서류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출서류 검토 및 미비서류 확인</li> <li>필수요구사항 적합·부적합 확인</li> </ul>		서류 심사 후 현장 평가 대상 선정
현장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역량(30)</li> <li>조직운영체계(30)</li> <li>문화예술후원매개 사업추진 현황(4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역량(25)</li> <li>문화예술후원 운영체계(25)</li> <li>문화예술후원 성과(50)</li> <li>대외수상실적(가점 3)</li> </ul>	평가지표에 의한 계량/비계량 평가
최종 심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위원단 현장 평가 결과 검토·심의</li> <li>후원매개단체·후원우수기관에 대한 최종 인증 결정</li> </ul>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 공고> 재정리.

## □ 제출서류 세부 사항

- 매개단체와 기관이 제출하는 공적서 항목은 비슷한 영역의 자료를 요구하지만 그 안의 소주제와 내용에 일부 차이점이 존재함

- 매개단체(비영리 법인, 단체)는 인력 구성 및 전문성에 있어서 계약형태, 경력, 근속 연수 등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기관(기업)은 전담 조직 및 전담인력을 운영하는지에 대한 여부와 전담인지, 겸직인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요구함. 비영리 법인과 영리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의 특징에 따른 구분이라 할 수 있음
- 공적서의 항목을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 매개단체는 운영체계, 기관은 후원성과를 세부적으로 분류하고 있는바, 매개단체는 체계와 프로세스, 기관은 지원 성과와 지속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판단됨

(표 5-12)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 평가 제출서류 세부 사항

문화예술후원 매개 단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b>1. 조직역량</b>	
1.1 경영층의 관심 및 중장기 계획 - 문화예술후원매개 사업의 의지나 활동 등에 대한 미션/계획/방침	1.1 경영층의 관심 및 실행 계획 - 기관의 문화예술에 대한 경영층의 관심과 목표 및 실행계획(경영층의 관심, 중장기목표, 실행계획에 대한 내용)
1.2 인력 구성 및 전문성 - 전담인력 구성(문화예술후원매개사업 담당자 인력: 계약직/전문직/총 전담 인원수) - 전담인력 전문성(계약형태, 경력, 근속연수)	1.2 운영 조직 - 전담조직 또는 전담인력 운영 (*있다, 없다와 전담인지 겸직인지)
<b>2. 운영체계</b>	
2.1. 후원 매개프로그램 개발 및 후원 유치 전략 - 예술인(단체) 후원 프로그램 (최근 3년간 내역/장르 별, 지원형태) - 후원 유치 전략 (후원법인(개인) 유치목표, 계획, 홍보 물 배포, 행사초대, 기존기업 추천, 기타 전략 등)	2.1 후원프로그램 기획 및 선정 *문화예술 및 문화재와 관련한 후원프로그램 (예시: 공연, 어린이 교육캠프, 전시, 축제 등) - 후원프로그램 기획 및 선정절차 체계
2.2 후원 매개대상 발굴 체계 - 후원 예술인(단체) 발굴 프로세스(예술인(단체) 발굴 기본원칙 또는 방침, 발굴 목표, 정보 수집, 커뮤니케이션 채널, 행사 개최 등)	2.2 후원프로그램 모니터링 - 모니터링 방법 및 성과평가(후원 프로그램 진행대상 에 대한 모니터링 방법 및 성과평가 방법)
2.3 사업관리체계 - 사업 모니터링(사업비 포함) 및 성과평가 시스템	
<b>3. 문화예술후원매개 사업추진현황</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3년간 총 민간 매개금액 (민간법인(개인)에서 후원받은 매개금액)</li> <li>• 최근 3년간 민간 후원법인(개인) 수</li> <li>• 최근 3년간 후원 관련 사업비</li> <li>• 최근 3년간 총 후원 예술단체(인) 수</li> <li>• 문화예술후원매개 사업추진실적(※예시) 공간 대여, 인력 교육 및 양성, 컨설팅, 홍보, 캠페인, 학술 활동, 정보제공 등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한</li> </ul>	<b>3. 후원 성과</b> 3.1~3.3 문화예술 지원 성과 - 최근 3년간 총 후원금액 3.4 후원 프로그램의 지속성 - 최근 3년 이상 지속 프로그램 수 *비재무적 문화예술 프로그램 후원실적(※예시) 공간 대여(공연, 작업실), 교육제공, 예술창작활동 지원, 기타 비재무적 후원활동) 3.4 후원 프로그램의 지속성(계속)

문화예술후원 매개 단체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활동)	- 기관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후원프로그램의 운영성과(후원지속기간, 후원대상, 후원내용, 수혜인원, 사회적 파급력, 언론보도 등) *문화예술후원관련 대외수상실적(있는 경우)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 공고> 재정리.

## □ 적용 시사점

- 현행법에 따른 사립박물관의 구성항목에는 영리 법인(회사)으로서의 박물관이 포함 되어있음. 선행연구에서는 사립관 평가인증제도를 실시할 경우 이러한 영리성을 띤 박물관·미술관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지만 이후 평가적용대상에 포함될 경우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및 후원 우수기관 인증사업과 같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와 기업을 구분하여 평가지표를 구분할 필요가 있음
- 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의 사업추진현황과 비슷하게 국·공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의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 평가지표는 지속해서 프로그램과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평가지표에 필수적으로 교육 프로그램 및 전시의 ‘지속성’에 대한 세부지표가 필요하지만 재정적·인력 문제로 인해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사립박물관·미술관이 직·간접적으로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운영계획 공유 공동연수(워크숍), 협의체, TF 등 적극 추진과 같은 업무적 성과 외에도 공간대여, 예술창작활동 지원 등 소규모성과에 대한 가점을 고려해야 함(\*문화예술후원 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의 경우 비재무적 문화예술 프로그램 후원실적에 대한 자료도 요구함)
-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6년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5곳,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50 곳 인증을 한 것으로 보아 매개단체(비영리 단체, 법인)가 인증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인증 받은 재단의 경우 서울문화재단, 부산문화재단에 그쳐서 인증요건 충족을 위한 조건의 현실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한 생태계와 질적성장 유도를 위한 우수기관, 단체 인증사업이라는 목적과 평가지표에 의한 비계량·계량평가를 병행하여 사립관 평가인증제도에 직접 적용이 가능한 사례지만 문화예술후원 영역에서의 평가지표와 우수 사립박물관·미술관을 판단하는 영역에서의 평가영역은 상이할 수밖에 없음

## 다. 스포츠 친화기업 인증제도

### □ 스포츠 친화기업 인증제도 개요

-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스포츠친화 기업문화 실태측정 및 조사, 우수기업 선정(포상)을 통해 건강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직장인 대상 스포츠친화기업 문화 조성 및 확산 도모를 목적으로 추진
- 지표에 따른 심사를 통하여 스포츠 친화기업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서류심사, 현장심사, 종합평가를 거쳐서 인증하고 있음

### □ 스포츠 친화기업 인증제도 지표

- 평가영역은 크게 스포츠친화 경영, 스포츠친화제도 실행, 만족도, 가점으로 나뉘며
  - 세부지표에 따른 측정내용을 얼마나 충족하고 있는가에 따라 배점이 주어짐
  - 평가영역 중 만족도는 임직원 대상 스포츠친화제도 이해도, 만족도 조사 결과를 첨부해야하며 전반적인 만족도가 70%이상일 때 가장 높은 배점(20점)을 받음

[표 5-13] 스포츠 친화기업 인증제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세부지표	배점
I. 스포츠친화 경영 (34)	리더십 (15)	경영방침	5
		계획수립	6
		법령준수	4
	지원제도 (19)	직원참여	6
		예산 및 인력 모니터링	10 3
II. 스포츠친화 제도 실행 (46)	프로그램 서비스 (27)	건강교육	3
		1인 1스포츠	8
		스포츠동호회	7
		활동비 지원	9
	인프라 구축 (19)	환경조성 문화조성 안전관리	8 8 3
III. 만족도 (20)	만족도 (20)	스포츠친화제도인지도, 만족도	20
IV. 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민체력100 참여</li> <li>• 종목단체 및 대회 등 지원 실적</li> </ul>		해당가점부여

평가영역	평가지표	세부지표	배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포츠친화 전담 인력 채용</li> <li>• 체육의 날 체육주간 운영 등</li> </ul>	
합계			100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스포츠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공고> 재정리.

- 여가친화기업 인증과 마찬가지로 스포츠친화기업 인증 역시 측정 지표별로 세부 측정내용을 규정하여, 정량적인 측정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표 5-14] 스포츠 친화기업 인증제 평가지표 세부(예시)

평가영역	평가지표	측정지표	측정내용
I. 스포츠친화 경영	리더십 (15)	경영방침 (5) 최고경영자의 지원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 내규, 표준근로계약서 상에 명시된 스포츠친화 제도 관련 제도가 규정화 되어 운영되고 있다.</li> <li>• 경영공시, 신년사 등에서 스포츠친화 제도에 관한 목표를 설정하고 공표하고 있다.</li> <li>• 스포츠친화 제도 추진 노력이 연간 보고서, 언론홍보 등을 통하여 대내외적으로 전파하고 있다.</li> </ul>
[평가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5점: 측정내용 중 3개 충족</li> <li>• 3점: 측정내용 중 2개 충족</li> <li>• 2점: 측정내용 중 1개 충족</li> <li>• 0점: 측정내용 모두 미충족</li> </ul>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사 내규(기업목표, 핵심가치, 조직 미션 등), 표준근로계약서</li> <li>• 홈페이지, 인트라넷, 사내게시판 등 스포츠친화제도 내규, 규정 등 게시</li> <li>• 경영공시, 신년사, 연간보고서, 언론보도 등 발표 자료</li> </ul>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스포츠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공고> 재정리.

## □ 스포츠 친화기업 인증제도 절차

- 앞서 살펴본 인증제도와 마찬가지로, 사업 홍보 이후 신청/접수 단계를 거쳐 서류와 현장 심사와 인증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여 단계로 절차가 진행됨

- 
- ① 홍보단계: 사업계획 공고→사업홍보→설명회 개최→상담
  - ② 신청/접수 단계: 신청/접수→ 예비심사
  - ③ 심사 단계: 서류 심사→보완사항 피드백→ 현장심사→인증위원회 상정
  - ④ 심의/인증 단계: 인증심의→심사결과 피드백→인증기업 통보→인증 수여식(인증 유효기간 3년)
-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스포츠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공고> 재정리.

## □ 적용 시사점

- 국·공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의 평가지표도 세부지표마다 측정 기준을 정해 얼마나 충족하는가에 따라 A, B, C 등급으로 나뉘고 있고, 스포츠친화인증제도와 여가친화기업인증제도 역시 측정 내용의 충족 개수에 따라 배점을 매기고 있는바, 사립관 평가인증제도 역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수의 박물관·미술관을 심사해야 하는 만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가를 위해 정량적 평가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삼아야 함
- 하지만 여가친화기업과 마찬가지로 스포츠친화기업 인증 역시 경영자 마인드, 직원들의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업문화’ 또는 ‘만족도’ 등의 지표를 도입하여 정량적 평가결과를 보완하는 장치가 운용되고 있음에 주목해야 함.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어온 박물관·미술관 운영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한 내실강화에 활용될 수 있는 양적+질적 구조의 설계가 정치하게 이루어져야 함
- 세부지표의 측정내용 충족에 따라 배점이 되는 방식으로 자체적으로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고 현장 평가를 통해 확인 작업을 거치며 인증절차와 평가지표가 유사한 지점이 많아서 참고하기에 용이함. 하지만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제출한 자료로 계량평가가 대부분 가능한 스포츠 친화기업인증제와 다르게 다양한 층위에서 종합적인 평가가 필요한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는 비계량 평가가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어서 평가지표에 있어서 직접 적용이 어려움

## 라. 한국관광품질 인증제도

### □ 한국관광품질 인증제도 개요

- 한국관광품질 인증제도는 서비스품질기준에 의거한 엄격한 평가와 인증을 통해 관광객에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업소의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인증제도로 서류평

가, 현장평가, 심의 및 인증 결정으로 우수업체를 선정함

-인증 분야는 숙박(숙박업,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쇼핑(외국인관광객면세판매장)이며 관광숙박업은 제외됨

#### □ 한국관광품질 인증제도 절차

○ 한국관광품질 인증을 위한 심사절차는 신청접수, 서류평가, 1차 및 2차 현장평가, 심의 및 인증 결정, 인증유지라는 여섯단계로 구분됨

---

① 인증신청접수(온라인)

---

② 서류평가(4주 이내): 보완필요시 업소로 요청

---

③ 1차 현장평가(4주 이내)

---

④ 2차 현장평가(4주이내)

- 숙박: 불시평가/쇼핑: 암행·불시평가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H형은 2차평가미 실시

---

⑤ 결과 심의 및 인증 결정

---

⑥ 인증 유지: 인증업소 서비스 수준 유지/인증 유효기간 3년

---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2021,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 가이드> 재정리.

○ 서류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인증신청서, 업소현황표, 자율점검표, 구비서류(소방시설 등 작동기능점검 실시결과 보고서 사본, 주민등록본, 건축물 대장 사본, 사업장등록증 등으로 기초적인 현황 파악에 활용됨

-선택서류 중 하나인 서비스교육 이수증 사본은 한국관광품질인증사이트에서 KQ 아카데미 홈페이지로 연결하여 온라인교육은 3강 75분 당 교육이수 1개로 인정함. 필수교육은 서비스교육 1강+양성평등 교육 1강으로 이들은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서류통과 및 현장평가 안내 후 4주 이내 1차 현장평가가 진행되며 1차 현장평가 통과 이후 4주 이내 불시로 2차 현장평가가 진행됨. 기존의 다른 평가인증제도 사례의 현장평가와 다르게 암행·불시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특징적임

#### □ 한국관광품질 인증제도 현장평가지표

○ 한국관광품질 인증을 위한 현장 평가 기준은 아래와 같이 시설 및 서비스, 위생관리, 소방안전, 인적서비스라는 네 가지 지표로 구성됨

(표 5-15) 한국관광품질인증 현장평가기준

현장평가기준			
시설 및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숙박 요금표 및 숙박업 신고증</li> <li>• 시간에 따른 요금제 운영 금지</li> <li>• 주차장 폐쇄형 구조물</li> <li>• 프론트 개방 형태</li> <li>• 성인방송 제어기능장치</li> <li>• 한옥의 전통적인 외관구조</li> <li>• 조식서비스 제공</li> <li>• 내국인 상대 숙식 미제공 확인</li> </ul>	위생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객실 침구류 욕실 청결상태</li> <li>• 취사시설 제공 및 청결상태</li> <li>• 먹는 물의 수질기준 준수</li> </ul>
소방안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화기</li> <li>• 화재경보기</li> <li>• 일산화탄소 경보기</li> <li>• 완강기(복도/객실)</li> <li>• 휴대용 비상조명</li> <li>• 응급상황 비상연락망</li> <li>• 비상대피도</li> <li>• 비상계단(통로)</li> <li>• 방화로</li> </ul>	인적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어 안내서비스</li> <li>• 실제 집주인의거주</li> </ul>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2021,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 가이드> 재정리.

## □ 적용 시사점

- 한국관광품질 인증제도는 제출하는 자율점검표에 인증 불가 항목이 있더라도 서류 평가에서 떨어지지 않음. 자율점검표에 인증 불가 항목이 있을 시 해당 내용을 참고해 현장 평가 전까지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는 단기간 안에 보완하기 어려운 평가지표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 직접 적용이 어렵지만, 서면평가 이후 현장평가에서 보완된 형태일 경우 일부 충족했다고 판단하거나, 가점을 주는 방법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서면평가의 목적은 평가인증 기준 충족에 대한 예비적 판단)
- 한국관광품질 인증제도의 인증적용대상 중 하나인 한옥체험업은 평가 기준에 '전통적인 외관'이 포함됨.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제도의 평가지표 중 하나인 '시설관리'에는 '박물관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운영공간 확보', '전시품의 특성을 고려한 온도, 습도, 조도 등 공간관리'와 같은 세부지표가 있는데 사립평가인증제도에 국립평가인증제도와 같은 세부지표도 포함하되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개성을 고려하여 시설 외관에 대한 세부 지표 설정 추진을 고려해야 함(안진근, 2021)<sup>49)</sup>

- 한국관광품질 인증제도는 인증업소 중 우수사례를 신청 가이드에 첨부하여 예비인증업소를 위한 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선택서류에 교육이수증을 포함하여 사전교육에 대한 동기부여를 함
  - 가령 양성평등교육을 필수로 시청해야 교육이수증이 나오는 것을 참고하여 학예인력의 성별이 압도적으로 여성이 많은 박물관·미술관의 올바른 조직문화를 위해 사전교육을 진행하는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평가인증제도 사례 중 가장 체계적인 사전신청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다양한 사후관리를 통해 예비신청업소들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사전·사후 관리 측면에서 참고할 내용이 많음. 하지만 업소의 편의성, 위생, 안전, 법 준수 등에 초점을 맞춘 평가인증제도이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에 대한 충족여부와 계량지표만으로도 인증요건 확인이 가능하지만 박물관·미술관과 같은 문화예술·학술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평가인증제도에 직접적용이 어려움

---

49) '전시 환경 및 구성' 평가지표와는 다른 영역으로 박물관, 미술관의 외관디자인은 전시 주제의 인지도 확립이나 수익창출에 의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도 직결된다는 선행 연구가 있음.

## 3절 국·공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

### 가. 국·공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 개요

#### □ 국·공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 도입 배경

- 2012년 5월 문체부는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을 발표하며 양적확대에서 질적성장을 꾀하기 위해 박물관 발전 정책의 방향을 제시함. 4대 추진방향인 ‘박물관 인력의 전문화’, ‘박물관 제도의 체계화’, ‘박물관 경영의 효율화’, ‘전시와 프로그램의 대중화’를 설정하고 ‘박물관 제도의 체계화’를 위해 평가인증제 도입을 추진함
  - 박물관 운영부실 방지 및 공공서비스 강화, 국내·외 박물관 환경 변화에 부응한 미래가치 증대, 박물관의 건전한 발전 방향 제시 등을 목적으로 박물관 운영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평가인증제도가 필요하다고 판단
  - 국·공립박물관·미술관 정책이 인프라 지원과 함께 운영 내실화를 통한 질적 성장유도로 다변화됨에 따라 공립미술관 운영에 대한 평가인증이 필요하다고 판단
- 2012년 『박물관 설립 등록기준 및 평가인증제도 연구』를 시작으로 2014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 시범운영, 2017년 공립미술관 평가인증제 시범운영을 거쳐 2019년까지 평가인증 체계 개발 연구와 평가인증제 시범 운영을 진행함
- 「박미법」개정에 따라(2016.5.29. 개정, 11.30. 시행) ‘등록 국립박물관 대상 평가인증제도 시행’이 법적의무화가 됨
  - (등록의무제) 「박미법」 제16조, 국·공립박물관·미술관 등록 의무제로 전환
  -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 「박미법」 제12조의 2, 공립박물관·공립미술관에 대한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제 법제화
  - (평가인증제) 「박미법」 제26조, 국·공립박물관·미술관 등록 후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인증제 실시

#### □ 국·공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 주기 및 대상

- 국·공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는 2년 주기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한편 국·공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 대상은 다음과 같음

(표 5-16) 국·공립박물관·미술관평가인증 적용대상 및 평가인증 적용 시점

국·공립박물관	국·공립미술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 시점에서 박물관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립박물관을 대상으로 평가인증 적용</li> <li>-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박미법」 제26조제1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 시점에서 미술관 등록 후 3년이 지난 공립미술관을 대상으로 평가인증 적용</li> <li>-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등록 후 3년이 지난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박미법」 제26조제1항)</li> </ul>

## 나. 국·공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 체계 및 운영 절차

### □ 국·공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 평가 체계

- 국·공립박물관·미술관 평가지표는 총 5개 범주이며 각 범주별로 2~4개의 평가지표로 구성
  - 1) 설립 목적의 달성도(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 전개), 2)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관리의 적정성, 3)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체계적인 자료수집 및 관리), 4) 전시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효과적인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5) 공적책임(공공 문화기관으로서의 소통과 사회적 기여)
- 각 평가인증 범주는 복수의 세부평가지표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세부평가지표는 계량지표와 비계량지표로 구분되며, 지표별 추진 노력이나 효율성, 계량적 목표 달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비계량지표는 3등급(A-C)으로 구분하여 평가함.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착안사항을 고려하여 각 항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절대평가의 방법을 적용하여 득점을 구한 후, 항목별 득점을 합산하여 평가지표의 총득점을 계산함  
A등급(100.00점), B등급(75.00점), C등급(50.00점)

(표 5-17) 국립박물관 평가지표

범주/배점	지표	세부지표	소계	계량	비계량
설립 목적의 달성도 (15)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노력	운영계획의 적정성	9	1	4
		운영관리 적정성		2	2
	기관장 리더십	관장 리더십	6	1	2
		관장 전문성		1	1
		내부구성원의 기관 이해도 강화노력		0	1
조직, 인력, 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25)	조직 및 인력 관리	조직구성 적정성	8	2	2
		조직구성원 역량강화		2	2
	시설 관리	시설구성 적정성	9	1	2
		관리 전문성		2	2
		이용자 편리성		0	2
	재정 관리	예산규모 및 배정의 적정성	8	5	3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20)	자료 수집	소장품 확보 노력	5	2	3
	자료 관리	소장품 관리 적정성	7	1	2
		소장품 보존		2	2
	자료 활용	연구 및 성과 공유(연구자, 학계)	8	2	1
		접근성 확장(일반인)		3	2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 (30)	전시	상설전시 운영	12	4	2
		특별전시 운영		4	2
	교육	교육 기획	12	2	2
		교육 운영 전문성		3	2
		문화향유 기회 확대(취약계층)		2	1
	관람객 정책	홍보마케팅	6	2	1
		관람객 관리		2	1
공적책임 (10)	법적, 정책적 책임 준수	법적 책임 준수	3	1	1
		정책 이행 노력		0	1
	상생협력	네트워크 활성화(국내·외 유관기관)	7	1	2
		지역사회 협력		1	1
		자원봉사 운영		1	1
합 계			100	50	50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제도 운영지침> 재정리.

(표 5-18) 공립미술관 평가지표

범주	지표	세부지표	소계	계량	비계량
설립 목적의 달성도 (15)	미션에 부합하는 운영 노력도	운영계획의 적정성	8	-	3
		운영관리 적정성		3	2
	리더십	관장 리더십 확보	5	-	2.5
		관장 전문성		2	0.5
	운영계획 이해도	지자체, 유관기관의 이해도 강화노력	2	-	1
내부구성원의 기관 이해도 강화노력	-	-	-	1	
조직, 인력, 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25)	조직 및 인력 관리	조직구성 적정성	5	-	2
		전문인력 고용 및 인적 자원 역량강화 노력		-	3
	시설 관리	수장고 시설관리 적정성	6	3	1
		전시공간 관리 적정성		-	1
		이용자 시설관리 적정성		-	1
	재정 관리	재원분배 적정성	14	7	1
재원 지속성 및 조성 노력		6		-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20)	소장품 수집	소장품 수집 전문성 및 적극도	6	4	2
	소장품 관리	소장품 보존 적정성	11	3.5	2
		소장품 정보관리 적정성		5	0.5
	연구 및 아카이빙	연구 및 아카이빙의 적극성 및 전문성	3	2	1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 (30)	전시	전시기획의 전문성	12	-	2
		전시구현의 전문성		6	2
		전시이해 증진 노력		-	2
	교육	교육기획의 전문성	12	-	2
		교육운영의 전문성		7	1
		교육대상 다양화 노력		-	2
	관람객 개발	홍보마케팅	6	2.5	0.5
관람객 관리		2		1	
공적책임 (10)	법적, 정책적 책임 준수	「박미법」 준수여부	4.5	-	1
		관련 법령 준수 정도		1.5	1
		주요정책 이행실적		-	1
	상생협력	유관기관 네트워크 활성화	5.5	2	-
		지역사회 활동 적극도		2	-
		자원봉사 진흥		1.5	-
합계			100	60	40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공립미술관 평가인증제도 운영지침> 재정리.

## □ 국·공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 운영 절차

[표 5-19]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 평가인증제도 운영 절차

추진단계	주요 실행과제	기본 운영방안
사업준비	① 평가인증 운영계획 수립 ② 평가인증 대상 고시 ③ 위탁운영기관 선정 ④ 평가인증심사위원회 및 평가조사팀 구성	위탁운영기관 추천, 문화체육관광부 승인으로 인증심사위원회 및 평가조사팀 구성
사업착수	⑤ 평가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⑥ 평가인증제도 실행(평가인증심사위원회 계획 확정, 평가지표 확정, 평가시스템 구축 완료) ⑦ 실행계획 공고 (박물관, 미술관 및 소관부처·지자체 공문 발송)	평가인증제도 설명회 개최 및 세부 실행계획 확정 후 문서 시행
평가실시	⑧ 1차 서면평가(평가시스템 자료등록/분석) ⑨ 2차 현장조사(공립미술관 평가위원 3명) ⑩ 종합검토(서면+현장) 및 인증심사 ⑪ 인증 결과 공표	평가조사팀의 서면평가와 현장조사에 근거한 결과를 인증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인증 결과 공표
사후관리	⑫ 이의신청 수렴 ⑬ 후속조치(평가인증 결과 보도/인증서 배포) ⑭ 워크숍 실시(우수사례 공유) ⑮ 교육·컨설팅 등 실행	인증 및 보류/보완 미술관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수렴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포상 및 후속조치 시행
성과관리	⑯ 사업 추진실적 분석 ⑰ 평가인증 개선방안 검토 ⑱ 차기년도 사업계획 수립	사업성과 평가 및 개선방안에 기초한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효과적인 사업 추진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공립미술관 평가인증제도 운영지침> 재정리.

## 다. 국·공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 현황 및 한계

### □ 국·공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 현황

- 2017년 8월~2018년 2월까지 공립박물관 평가를 처음으로 시행. 총 190개관 평가, 123개관을 인증함
- 2020년, 공립박물관 227개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그 중 우수한 157개관을 인증함(문화체육관광부, 2020, <문체부 보도자료, 전국·공립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 심사위원회에서는 인증 기준을 총점 상위 70%로 정하고, 2개 이상 범주에서 하위 10%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해 최종 157개관을 인증기관으로 선정(인증률 69.2%)
- 정량평가 73점, 정성평가 27점으로 구성해 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함
- ‘설립목적의 달성도’ 및 ‘공적책임’ 범주에서는 전반적으로 개선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
- 2021년, 공립미술관 55개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고, 그 중 우수한 41개관을 인증함(문화체육관광부, 2020, <문체부 보도자료, 전국·공립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 심사위원회에서는 평가 결과(총점평균 77.76) 및 2019년 공립박물관 인증률(70%)과 형평성을 고려해 인증기준을 100점 만점에 70점으로 정하고 최종 41개관을 인증기관으로 선정(인증률 74.5%)함
- 정량평가 58점, 정성평가 42점으로 구성해 총점은 100점 만점으로 함
- 5개 범주 중 ‘공적책임’ 달성도가 69.5%로 가장 낮았고, 14개 지표별 달성도는 상생협력(58.5%)과 자료수집(61.8%), 관람객개발(61.8%), 재정관리(68.5%) 순으로 낮음
- 국·공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에서 공통적으로 ‘공적책임’의 달성도가 낮음
- ‘공적책임’ 평가 내용은 법적책임 준수와 정책이행 노력,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지역사회 협력강화, 자원봉사 운영활성화이며 국·공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에서 해당 사항들이 미흡하다는 것은 국립문화기관으로서 의식이 약하며 ‘공적책임’을 협소한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음

#### □ 국·공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 한계

- 박물관 평가인증제도 확대 방안을 연구한 선행 연구(박소현 외, 2017)에 의하면 자율적으로 간단한 방식에 의해 이루어지는 등록제와 달리, 인증제는 인증의 평가 기준은 물론 인증의 절차, 방식, 인센티브, 인증기관 등의 제도적으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하다고 한계점을 제시하고 있음
- 중앙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는 박물관·미술관 정책(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은 평가 인증제도와 연계될 수밖에 없는데 기존제도의 정비 없이는 상호보완 되지 않고 고립되어서 결과적으로 실효성이 사라질 수 있음
- 앞서 서술한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도시활성화 계획에 문화영향평가가 포함되면 가점을 부여한다고 가이드라인이 지정되어있는데 문화영향평가가 추구하는 목표와 다르게 단순히 도시재생사업의 선정되기 위한 ‘수단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온 바 있음. 국·공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가 지원사업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음
- 평가지표의 결과가 현장에서 종사하는 전문 인력의 생각과 차이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 이상으로 다수의 현장종사자가 의문을 품는다면 평가지표

혹은 평가과정에서 어떤 변수가 있는지 고려하고 개선점을 찾아야 함

- '공적책임', '문화다양성', '윤리' 등 각 연구자나 종사자에 따라 의미와 범주를 다르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다수 있음.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적정 범주를 정해 평가지표의 의미를 평가인증제도의 의의와 다르게 오독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함

- 국·공립박물관·미술관의 공적책임이 현장에 있는 전문인력, 종사자들과 합의가 되어있고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인지 고민이 필요함. 평가인증제를 통해 공적책임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함이라면 사후관리를 통해 개선되었는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4절 문화 분야 평가·인증제도의 특성과 시사점

### 가. 문화 분야 평가·인증제도의 특성

#### □ 문화 분야 평가·인증제도의 특성

- 앞서 다른 문화정책, 산업 관련 평가들은 평가배경, 운영주체, 평가지표, 평가절차 등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관련법을 근거에 두고 국가주도(정부부처)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음
  - 문화영향평가는 「문화기본법」, 도시재생은 「도시재생법」, 문화도시조성사업은 「지역문화진흥법」, 국·공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는 「박미법」을 근거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법이 규정한 평가대상이 불명확하고 평가인증제도에 강제성이 없는 경우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의견이 지속해서 제기됨. 강제성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인증을 받았을 경우 정부부처가 진행하는 정책·사업에 참여할 때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함
- 신뢰성 있는 평가를 위해 내·외부의 의견을 비교하고 종합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경향이 있으며 자체평가와 외부전문가에게 자문 받는 평가를 병행함. 보통 심의를 위해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승인을 진행함
- 현 실태와 평가결과의 괴리를 좁히기 위해 현장평가에 있어서 객관성을 잃지 않기 위해 각 평가사업마다 다양한 방법을 시도 하고 있음. 선정·인증된 이후에도 연차별 모니터링을 시행하거나 예비사업을 먼저 시작하여 성과에 따라 최종선정을 결정하기도 함
  - 가령 ‘여가친화기업 인증사업’은 최고경영층 및 현장직원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체)평가점수 및 근거자료를 확인하고 관련시설 점검 및 다양한 직급과 연령·성별의 직원목소리를 실제로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함. 온라인설문조사를 통해 직원들이 직접 제출한 평가표를 점수에 반영하기도 함
  - 국·공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 현장평가 역시 평가위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사전에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제출한 서면평가 자료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관련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함
- 정부부처에서 주도하는 평가인증사업인 만큼 문화 분야 평가인증 사업 간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부처 간의 협력을 쉽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파악됨. 하지만 탐다운 방식의 한계도 자주 지적되고 있음

- 평가주체가 정부부처, 지자체로 지정되어있어도 지자체가 하는 역할은 매우 약소한 편임. 연구를 통해 확립한 평가체계와 절차에 따라 자료를 제공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는 것에 그침. 지역문화정책에서는 지방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기대하지만 각 지역의 여건 상 자체적인 평가 체계를 확립하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며 연구인력이 적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평가사업에 기댈 수밖에 없음
- 법에서 지정한 평가인증제의 목적은 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위해 기존의 열악한 실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 하지만 일각에선 평가인증제도가 지원사업 혹은 국가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수단으로써 이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문화 분야 평가·인증제도의 사전 및 사후 관리제도

- 아래는 앞서 살펴본 주요 평가 인증제도의 사전관리방안과 사후관리방안을 요약한 내용임

[표 5-20] 문화 분야 평가·인증제도 사전 및 사후 관리제도 요약

사전 관리	① 자료 제공 -인증제도 가이드라인 제공 -우수 인증 사례 제공 ② 맞춤형 컨설팅(상담) -평가지표 안내 ③ 설명회
사후 관리 (인센티브 포함)	① 간담회, 공동연수(워크숍) ② 맞춤형 컨설팅(상담) -운영·관리 컨설팅 -무료 법률 상담 ③ 인증 마크, 동판 제공 ④ 문화향유 지원(공연, 관람, 도서비 제공)
	<인센티브(우수기관 중심)> ① 상장, 포상 수여 ② 지원사업 대상 선정 시 혜택 ③ 선진시설 견학 기회 제공 -벤치마킹 기회 제공 ④ 홍보, 마케팅

- 평가인증제도 사전관리의 경우 인증을 준비하는 기관, 기업을 위한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사후관리만 있고 사전관리가 따로 없는 평가인증제도 일부 존재(일방적인 사업설명회는 공통으로 진행함)
- 평가인증제도 사후관리의 경우 인증을 받은 기관, 기업의 유효기관 연장과 재점검의 일환으로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음. 상담 외에 제공되는 사후관리로는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선진시설 견학 기회제공과 인증기관 간의 유대강화와 경험공유를 위한 워크숍, 간담회 자리를 마련함. 이외에도 홍보지원과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각 평가인증제도에 맞는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음

- 국립박물관, 공립미술관의 경우 사후관리인 상담(컨설팅), 다양한 형태의 공동연수(워크숍)를 제공하고 있으나 규모, 주제, 설립·운영주체, 인력운용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사립박물관·미술관은 사전에 평가지표 안내와 맞춤형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우수 박물관·미술관’으로 선정된 시설을 벤치마킹할 기회제공 필요. 앞서 사례로 나온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선진시설 견학기회를 제공하는 것 이상으로 정보공유의 장을 만들어 벤치마킹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 사후관리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음(벤치마킹 할 경우 유사한 특성을 가진 박물관·미술관으로 배정 필요)

- 국립박물관, 공립미술관에 비해 더 열악한 인프라를 가진 사립박물관·미술관이 많기 때문에 지원사업 관련 혜택에 중점을 두는 인센티브를 고려해야 함. 우수시설로 인증받은 박물관·미술관을 위한 인센티브는 물론, 인증 받았지만 재정적·인력·환경 문제로 인해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한 박물관·미술관을 위한 독자적인 지원사업 트랙을 준비할 필요가 있음

## 나. 종합 및 시사점

-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는 국·공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라는 앞선 사례가 있지만 사립과 국·공립의 구조, 배경, 운영 주체 등에 차이가 있어서 평가체계를 똑같이 적용하기엔 어려움이 있음. 앞에서 서술한 문화 분야 평가 인증 사업의 사례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함

- 평가인증제도의 복잡한 절차와 중앙주도의 평가는 강제성 없이는 평가대상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한계점을 개선할 방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함

-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방식처럼 예비평가(인증)와 본평가(수상)로 이원화함으로써, 기본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달성하도록 독려하는 동시에 ‘우수 박물관·미술관’에 대해서는 수상목적의 평가·인증을 추가로 설계하여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자체평가와 전문평가를 구분하여 평가인증의 층위를 나누는 접근도 고려할 수 있음. 가령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경우 ‘자체평가’ 방식을 준용하여 컨설팅 및 인증을 진행하고,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문평가를 진행하여 수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한다면 ‘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함. 평가인증이 단순히 지원사업을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데 이에 대한 역할을 지자체가 수행해야 함

-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의 경우 지자체가 성과관리 추진실적을 광역지자체에 보고하면 광역지자체가 국토부에 추진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여 국토부가 종합 평가를 시행하는 구조임
  -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의 사후관리로 지자체가 평가인증제도를 수립해서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춘 평가체계를 갖추고 미흡할 경우 미술관·박물관과 직접적으로 연락하여 사유를 알아내고 사유에 맞는 지원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
  - 당장은 각 지자체별로 평가체계를 위한 연구인력도 부족하여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중앙부처 주도로 시행하는 ‘평가인증제도’를 후일 종합평가의 영역으로 여기고 각 지자체 별로 평가인증을 시행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함.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지자체 진흥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모든 지역의 여건을 고려할 수 없는 중앙부처 중심의 평가인증 제도는 평가의 실효성이 없을 수 있음
  - 지자체에서 제정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에 관련 조항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존제도와 지원사업의 재정비가 필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연결고리가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중요성 인식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 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등록제와 다르게 인증제는 사전에 몇 단계를 거친 연구를 통해 평가체계와 절차, 방식, 인증기관을 정하고 복잡한 절차를 통해 인증하게 되는데 한번 굳어진 체계를 쉽게 개선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음
-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 이상으로 「박미법」, 현 박물관·미술관 정책과 지원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해야 함
  - 하지만 지속해서 법 개정과 지원사업 개선에 대해 목소리가 나오고 있을 때 기존에 있는 법과 체계, 사업을 개선하지 않고 새로운 평가인증제도를 만든다면 후일 정책과 지원사업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어긋날 수 있음
  - 평가인증제도를 새롭게 수립하는 방향보다 등록제를 개선·강화 하는 방법으로 사립박물관·미술관이 질적성장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음



## 제6장 해외 박물관·미술관 정책 및 평가·인증제 사례 분석

---

1절 미국 사례

2절 프랑스 사례

3절 영국 사례

4절 일본 사례



## 1절 미국 사례

### 가. 박물관·미술관 운영의 기본 조건 및 운영 형태

□ 기본 조건: 비영리/자선조직의 면세를 위한 세제 코드인 501(c)(3) 지위 획득 필수

○ 미국 박물관·미술관의 대다수는 501(c)(3)에 속하는 민간 비영리조직(private non-profit organization)에 속함

- 501(c)는 '교육·과학의 증진과 공적 건물 건립'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가 대상이 됨

- 정부나 대학 소속 박물관·미술관은 모기관이 501(c)와 유사한 170(c)(1)으로 501(c) 박물관·미술관과 세제 상 유사한 지위와 혜택을 받음

- 501(c)(3) 비영리조직은 해산 시 자산을 면제 목적이나 연방, 주, 지역 정부에 공적 목적을 위해 배분해야 하며, 수입을 사적, 개인의 이익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정치활동이나 법제정을 위한 로비 활동 역시 금지됨

- 박물관·미술관과 기부자에게 세금 혜택을 주는 지위를 획득하나, 박물관·미술관의 미션 및 비영리적 목적과 관계없는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는 세금을 부과함

○ 자원 및 운영주체

- 많은 수의 박물관·미술관이 지역유지, 기업인, 컬렉터, 예술가의 기증과 기부금으로 설립됨

- 이사회가 운영주체가 되는 법인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지역 정부의 지원과 협조, 유치 노력으로 설립, 운영되는 경우도 있음

- 설립주체별로 세분해 보면, 비영리조직이 75%, 연방정부가 2%, 주정부가 10%, 시·군 단위의 지자체가 8%, 민관공동인 경우가 6% 등을 차지함: 프랑스와 달리 국가와 지자체가 설립한 경우가 20% 수준에 불과함(프랑스는 80% 이상)

□ 자원 형태

○ 정부 박물관·미술관을 제외한 대다수 미국 박물관·미술관의 예산은 자체 수입과 자체 기금이 과반수를 차지함

○ 나머지 외부 지원은 민간 지원(특히 개인)이 정부 지원보다 훨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또한 연방정부보다 지자체의 지원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특징을 지님

□ 박물관도서관진흥원(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이하 IMLS)의 박물관·미술관 통계상 분류체계

-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박물관·미술관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인 IMLS은 ICOM의 박물관·미술관 정의에 기반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통계의 대상을 제한함
  - 비영리(또는 정부)
  - 교육적 또는 미적 목적을 위해 항구적으로 설립
  - 생물, 무생물의 유형, 무형의 자료(object)를 소장 또는 활용
  - 이러한 자료를 보존하고
  -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에서 대중을 위해 전시
- 분류 기준: (1) 박물관·미술관의 주제 분야(discipline), (2) 지역(권역별/도시, 근교, 마을, 농촌), (3) 연간수입 규모(연수입 0달러(0)에서 5천 만 달러 이상(9)을 구간화 하여 10등급으로 분류)
- 박물관·미술관의 주제 분야별(discipline) 현황
  - 2018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주제 분야별 박물관·미술관 수는 7,429개관이며, 이 외에 분야를 특정하기 어려운 박물관·미술관과 종합박물관은 7,959개, 역사협회/역사보존회 14,783개가 있는 것으로 집계됨
  - 주제 분야별로는 미술관(2,620) > 역사박물관(1,776) > 식물원/생태원(1,029) > 과학기술박물관/천체관(834), 동물원/수족관/야생생물보호지(465), 어린이박물관(437), 자연사 및 자연과학박물관(268)의 순으로 분포하고 있음

[표 6-1] 미국 박물관·미술관 주제 분야별 분류와 주제 분야별 박물관·미술관 수

Discipline Code	Discipline	Museum Data File	# Entries in File
ART	Art Museums	File1	2,620
BOT	Arboretums, Botanical Gardens, & Nature Centers	(7,429 entries)	1,029
CMU	Children's Museums		437
HST	History Museums		1,776
NAT	Natural History & Natural Science Museums		268
SCI	Science & Technology Museums & Planetariums		834
ZAW	Zoos, Aquariums, & Wildlife Conservation		465
GMU	Uncategorized or General Museums	File2	7,959
HSC	Historical Societies, Historic Preservation	File3	14,783

※ 자료원: [https://www.imls.gov/sites/default/files/museum\\_data\\_file\\_documentation\\_and\\_users\\_guide.pdf](https://www.imls.gov/sites/default/files/museum_data_file_documentation_and_users_guide.pdf).

## 나. 「박물관 및 도서관 지원법(Museum and Library Services Act)」

### □ 「박물관 및 도서관 지원법」의 성격

- 연방정부에 문화부가 없고, 박물관 전체를 규율하는 법령이 부재한 미국에서 박물관 관련 법령은 「박물관 및 도서관 지원법」이 대표적임
- 국립예술인문재단(National Foundation on the Arts and Humanities) 산하에 설립된 IMLS의 설치와 운영의 근거가 되는 법령임
  - 1996년, 1976년에 설립된 박물관진흥원(Institute of Museum Service)과 1956년부터 설치된 교육부의 도서관프로그램국(Library Programs Office)을 통합하여 IMLS 설립

### □ 「박물관 및 도서관 지원법」의 개정(2010~2018)

- IMLS의 기존 프로그램과 기능을 재승인하면서 몇 가지 주요 사항 개정(2010)
  - IMLS에 조사연구와 데이터 수집 기능을 강화
  - 대통령과 의회에 자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촉구함
  - 박물관·미술관이 경쟁력 있는 노동력과 참여적 시민의식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함
- IMLS의 기존 프로그램과 기능을 재승인하면서 21세기 필수 역량 개발에 초점(2018)
  - 신입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지원하는 권한을 새로 부여하는 등 박물관·미술관 인력의 중요성과 경쟁력을 강조하고 지원책을 강화하는 방향성을 표방하고 있음

### □ 「박물관 및 도서관 지원법」의 주요 내용

- 법의 구성: ‘일반조항’, ‘도서관 지원 및 기술’, ‘박물관·미술관 지원’
- ‘박물관·미술관 지원’의 구성: 목적, 정의, 박물관·미술관 지원 활동, 21세기 박물관·미술관전문인력 프로그램, 예산 배정의 허가 등 5개 부문으로 조항 구성
- 법의 목적: 아래 사항들을 견인하고 장려, 지원하는 것

- ① 박물관·미술관이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핵심적 학습 제공자로서의 교육적 역할을 수행
- ② 박물관·미술관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유산을 이루는 문화·예술·역사·자연·과학에 대한 이해와 사회 전반을 연결하는 공적 서비스 역할을 수행
- ③ 지역/전국/국제적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통해 박물관·미술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리더십과 혁신,

최신 기술의 적용

- ④ 박물관·미술관이 미래 세대를 위해 미국의 다양한 유산을 보존 관리하는데 있어 최고의 기준을 달성하기 위한 책임있는 신탁자로서의 노력을 경주
- ⑤ 대중 서비스와 박물관·미술관 경영의 최고 수준 달성을 장려 및 지원하고 박물관·미술관이 커뮤니티를 새로운 방식으로 서비스함으로써 재정 부담을 완화
- ⑥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학교, 기타 지역사회 단체 간의 자원 공유와 파트너십 개발
- ⑦ 지역사회의 경제적 발전과 재생의 일부로서 박물관·미술관의 역할
- ⑧ 미국 내 다양한 지역에 있는 다양한 유형과 규모의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관심과 지원
- ⑨ 박물관·미술관의 자원과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주/지역 단위의 노력을 견인
- ⑩ 모든 미국인들이 양질의 박물관·미술관 서비스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 참여의 노력

○ 박물관·미술관(museum)의 법적 정의

- 근본적으로 교육적·문화유산·미적 목적을 위해 항구적으로 조직된 공공, 민간, 부족의 비영리 에이전시 또는 기관으로
- 전문 직원을 활용하고, 유형의 사물을 소유 또는 활용하며, 보호하고, 대중에게 정기적으로 전시 하며
- 이 용어는 유형과 디지털 컬렉션을 갖는 박물관·미술관을 포함하며, 수족관, 수목원, 식물원, 미술관, 어린이박물관, 종합박물관, 역사가옥/유적지, 역사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인류박물관, 천체투영관, 과학기술관, 전문박물관, 동물원을 포함함

○ 등록제도 및 학예사자격제도의 부재

- 미국에는 법에 의한 등록제도가 부재한데, 이를 대신하여 미국박물관협회(American Alliance of Museums, 이하 AAM)의 인증제도, 동물원수족관협회(Association of Zoo & Aquarium, AZA)의 인증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법에 의한 학예사자격제도 역시 없음

○ IMLS의 박물관 지원 가능 영역: 지원금, 계약, 협력 등의 방식

- ① 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과 정보, 교육자원에 대한 모든 연령의 사람들에게 학습과 접근성을 제공
- ② 박물관·미술관이 학교와의 파트너십을 수립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균형 잡힌 교육적 경험을 제공
- ③ 박물관·미술관 소장품의 보존을 지원 (최적의 보관·전시·활용을 위한 조건 제공/위기 대비나 대응 준비/보존 기금 확보/소장품 정보 관리/직원의 소장품 관리 보존 분야 훈련)
- ④ 주(State) 전역의 박물관·미술관 서비스 및 요구의 평가와 박물관·미술관 서비스를 극대화하기 위한 주의 계획을 포함한 주 정부 단위의 노력을 지원
- ⑤ 박물관·미술관 협회, 전문인력 네트워크, 지역기반 단체, 재단, 기타 협업적 메커니즘을 통해 기술적 도구와 데이터 자원의 공유, 전문인력 훈련 계획 개발을 지원
- ⑥ 박물관·미술관이 도서관, 학교, 대학 및 연구소, 정부, 비정부 조직, 지역사회 기관, 정책 기관 등과

- 자원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박물관·미술관을 공고히 하기 위해 보다 강력한 협업을 촉진
- ⑦ 정보를 확산하고, 다양한 관객층을 체험 학습에 참여시키며 교사와 학생의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프로그램, 서비스에 접근성과 참여도를 높이는 새로운 방식을 포함한 신기술 활용을 장려
  - ⑧ 다양한 지역·문화·사회경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하는 지역사회의 니즈에 부합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 수행
  - ⑨ 박물관·미술관 운영 전반에서 높은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 운영 개선과 모든 직급 직원의 능력을 향상하고 다음 세대 박물관·미술관 리더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전문성 개발과 기술적 지원 프로그램
  - ⑩ 박물관·미술관의 연구, 프로그램 평가, 소장품, 박물관 전문인력과 대중을 위한 정보 확산
  - ⑪ 박물관·미술관과 도서관의 협업 모델 프로그램을 발굴, 지원, 확산
  - ⑫ 박물관·미술관이 지역 재생과 지역 개발을 위한 핵심 기관으로 역할 하는 것을 지원
  - ⑬ 박물관·미술관 서비스를 확대하고 증진하기 위해 다른 공공기관 및 지역사회 단체들과 관련 파트너십을 개발

- IMLS의 책무: (1) 지원금 사용에 대한 적절한 평가 절차 마련, (2) 다양한 지역·유형·규모의 박물관·미술관에게 지원금 배분의 공정한 기회 보장
- IMLS의 ‘21세기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프로그램’
  - 지역사회와 대중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다양한 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이 박물관·미술관에서의 커리어와 필요한 기술을 갖추 수 있도록 장려하여 다양하고 소외된 계층의 미래 전문인력을 모집하고 교육하며,
  - 신입과 중견 직원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여 다양한 배경을 가진 박물관·미술관 리더를 양성하고,
  - 지역사회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현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의 전문성 개발을 지원하며, 박물관·미술관과 대학 등 적절한 기관에 대해 지원금, 계약, 협력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수행함
- IMLS에 대한 예산 배정 허가
  - 위와 같은 사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20~2025년(5년간)에 매년 지원금(grants)으로 38,600,000달러를 배정함

## 다. 박물관 관련 중앙정부 지원사업

### □ 박물관·도서관진흥원(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IMLS)

- IMLS의 박물관 지원은 ‘미국을 위한 박물관’(Museums for America), ‘미국원주민 박물관 지원’ ‘아프리카계미국인 박물관 지원’ ‘전국 박물관 리더십’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며 2021년 기준, 총 4천 5백 불의 예산이 배정됨

-이중 과반수의 예산이 배정되는 '미국을 위한 박물관' 사업은 각종 뮤지엄 지원 사업을 총칭하는 사업임. 그 일환으로 아래와 같은 소규모 박물관·미술관을 위한 특별 지원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 소규모 뮤지엄 지원사업 'Inspire! Grants for Small Museums'

-소규모 박물관·미술관을 위한 특별 지원 사업으로, 최대 2년까지 지원함

-모든 주제 분야의 소규모 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평생 학습', '조직 역량', '소장품 관리와 접근성'의 세 유형의 프로젝트 영역에서 지원

-전시, 교육/프로그램, 디지털 학습자료, 전문인력양성, 커뮤니티 토론 및 대화, 관람객 연구, 소장품 관리, 큐레이션, 보존 등을 통해 대중에게 봉사하고자 하는 프로젝트 기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각 박물관·미술관의 전략계획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프로젝트의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지원 규모는 5천 달러~5만 달러이며, 기관 매칭 의무 없음

○ 박물관·미술관 평가 프로그램 'Museum Assessment Program'

-IMLS는 AAM과 협약하여 박물관·미술관 평가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음

-IMLS의 지원으로 각 박물관·미술관이 적은 비용으로 근 1년간 자기 평가와 동료 전문가의 진단 및 컨설팅을 거쳐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하는 프로그램임

□ 국립예술기금(National Endowment for the Arts, 이하 NEA)

○ NEA의 예술 프로젝트 기금 지원 영역은 박물관·미술관을 포함하며, 우수한 예술적 탐구와 의미있는 커뮤니티 참여를 지원하고자, 예술적 수월성과 가치에 초점을 둠

○ 전시/소장품관리/보존/커미션/공공미술/지역사회 참여/교육활동 분야 프로젝트를 지원

○ 지원규모는 1만 달러~10만 달러이며 매칭 지원임

## 라.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

□ 미국박물관협회(American Alliance of Museums, AAM)의 평가 및 인증제도

○ 미국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는 1906년에 설립된 AAM<sup>50)</sup>가 1971년에 도입한

50) AAM은 협회의 회원이 3만 5천에 이를 정도로 미국의 모든 규모와 지역, 주제, 설립주체의 박물관과 전 분야의 전문 인력을 포괄하는 대표성을 지닌 협회임.

인증제도와 198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평가프로그램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음

○ AAM은 박물관·미술관의 수월성을 증진하고 입증하기 위한 스탠다드 기반 인증을 시행하며 그 목적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하고 있음

- 지역사회에 더욱 중요한 자산이 되기
- 외부 지원과 공적 신뢰의 가치 입증
- 소장품의 온전한 보존관리 보장
- 펀딩 기회 증진
-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
- 변화 유도
- 직원과 이사진의 역량 개발
- 박물관 업계에서의 경쟁력 확보

○ 박물관·미술관 평가 및 인증 단계

- ‘미국박물관협회 회원가입’, ‘수월성 선언’, ‘핵심문서 검증’, ‘인증’의 순으로 진행됨<sup>51)</sup>
- 각종 평가(MAP 등)는 핵심문서 검증과 인증의 전 단계에서 이루어 질 수 있으나, 인증과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으며, 평가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고 인증 신청도 가능함



〈그림 6-1〉 미국박물관협회(AAM)의 뮤지엄 우수성 인증 단계

※ 자료원: <https://www.aam-us.org/programs/accreditation-excellence-programs/> 재정리.

○ 박물관 평가 프로그램(Museum Assessment Programs: MAP)

- 희망하는 박물관·미술관이 협회에 평가를 신청하고 선정된 박물관·미술관은 근 1년여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재까지 약 5천 여 기관이 평가에 참여하였음

51) Accreditation & Excellence Programs. AAM.

<https://www.aam-us.org/programs/accreditation-excellence-programs/>.

- 평가는 ‘조직’, ‘소장품 관리’, ‘교육과 해석’, ‘커뮤니티와 관람객 참여’, ‘이사회 리더십’으로 유형화되어 있으며, 박물관·미술관은 이 중 하나를 선택해 평가를 신청할 수 있음
- 평가는 핵심문서 검증 신청 또는 인증 및 재인증 신청 전에 박물관·미술관 점검 및 개선을 위한 과정으로도 활용되므로 중소기업 박물관·미술관을 위한 일종의 경영 진단 및 컨설팅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평가 과정은 온라인 지원서 제출, 1년간 MAP 워크북과 활동 완수, 서술형 제시와 자료와 함께 온라인 포털 활용, 평가위원회의 현장 방문(약 2일), 연간 변화를 수행하기 위한 행동 수형, 최종 보고서 검토와 현재 및 미래 액션 플랜 문서화 업무로 이루어짐.
- 또 해당 박물관·미술관이 평가팀을 조직하여 MAP/IMLS 실무자 및 평가위원회와 소통하도록 하며, 평가팀 외에 박물관·미술관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평가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도록 요구함
- AAM는 IMLS와의 협약으로 평가 예산 지원을 받으며, 박물관은 연간 운영 지출 규모에 따라 협회에 300달러~1,500달러를 지불

#### 박물관·미술관 평가프로그램 지원 자격

- ① 교육적 또는 미적 목적을 위해 영구적으로 조직될 것
- ② 생물·무생물의 유형의 사물(tangible objects)을 보존하고 소유 또는 활용하며, 이를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에서 정기적으로 전시, 연구하여 일반 대중에게 제공할 것
- ③ 주, 지역 정부의 소속이거나 IRS의 코드상 면세 자격을 지닌 민간 비영리 조직
- ④ 박물관·미술관 운영을 전담하는 1인 이상의 전문 직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유급 또는 무급의 상근 인력을 보유
- ⑤ 일반 대중에게 정기적으로 개방되고 박물관·미술관 서비스를 제공  
(최소한 연간 90일 이상을 일반대중에게 전시)  
박물관·미술관이 연간 90일 이상 개방 예정하지 않는 경우, 전년도에 개방일과 예약제 운영일을 포함해 90일 이상 개관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신청가능하며 순회전시, 디지털전시, 온라인 컬렉션 공개 역시 고려 가능  
(코로나19로 인한 폐관이나 개관 제한의 경우 2020년과 2021년 데이터도 90일 요건을 심의하는데 고려됨. 코로나19 전과 이후의 개관 일정을 모두 제시)
- ⑥ 미국 내 50개 주,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괌, 사모아, 버진 제도, 북마리아나 제도, 마셜 제도, 마이크로네시아, 팔라우에 위치
- ⑦ 미국 연방 정부가 운영하는 곳은 제외  
(연방 기관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유료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MAP 실무자와 협의)

#### ○ 핵심 문서 검증(Core Documents Verification)

- 박물관·미술관의 전문적 운영을 증빙하는 자료로 ‘미션’, ‘윤리규정’, ‘전략계획’, ‘위기대응정책’, ‘소장품 관리 정책’의 5개 문서를 적절히 구비하고 있는가를 검증하며, 이 과정을 통과해야 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과정은 인증 신청의 선행 요건임

○ 인증(Accreditation)

- 인증은 1971년부터 미국 박물관·미술관의 우수성의 증표로 작용해 왔음. 인증 신청 전에 박물관·미술관의 핵심 문서를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 받아야 하며, ‘박물관·미술관의 핵심 기준’(Core Standards for Museums)을 기반으로 종합적인 영역에서 8~16개월 기간 동안 자기 평가(self study), 동료 평가(peer review)를 통한 사정을 통해 인증이 이루어 짐.
- 인증 박물관·미술관은 협회 사이트에 공개됨(전국의 1,095개 인증 뮤지엄)
- 인증 박물관·미술관과 인증 유예(대기) 뮤지엄(probation)으로 구분하며, 10년마다 재인증을 받아야 함
-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박물관·미술관의 조건은 평가프로그램 참여 조건보다 더 엄격하게 제시됨

박물관·미술관 인증 신청 조건
------------------

- ① 법적으로 조직된 비영리 기관 또는 비영리 기관이나 정부에 소속된 기관
- ② 근본적으로 교육적 성격의 기관
- ③ 공식적으로 명문화되고 승인된 미션 보유
- ④ 일반 대중에게 정기적으로 프로그램과 전시를 제시하기 위해 사물과 장소를 해석하고 활용
- ⑤ 소장품 또는 사물(object)을 공식적이고 적절하게 기록, 관리,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보유
- ⑥ 상기한 기능을 우선적으로 물리적 시설 및 장소에서 수행
- ⑦ 2년 이상 일반 대중에게 공개 운영해 온 기관
- ⑧ 연간 최소 1천 시간 일반 대중에게 개방
- ⑨ 영구 소장품의 80%를 취득 완료
- ⑩ 박물관·미술관 지식과 경험을 갖춘 1인 이상의 유급 전문 직원 보유
- ⑪ 박물관·미술관의 실질적 운영을 총괄할 상근 관장 보유
- ⑫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정 자원 보유
- ⑬ ‘박물관·미술관 핵심 기준’에 부합됨을 증명
- ⑭ ‘핵심 문서 검증’을 성공적으로 완료

-인증의 모든 과정에서 “박물관·미술관은 명시된 미션과 목적을 잘 달성하고 있는가?”, “박물관·미술관의 성과는 박물관·미술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이해되고 박물관·미술관 고유의 여건에 부합되는 방식으로 박물관·미술관의 기준 및 우수 실천을 충족하고 있는가?”라는 두 가지의 핵심 질문이 고려됨을 강조함

-이는 핵심 기준의 준수를 기본으로 하되 다양한 박물관·미술관들이 각자의 미션과 고유의 여건에서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를 고려하여 유연하게 심의하고자 하려는 의도임

○ 평가프로그램(MAP)과 인증은 동료 평가(peer review)를 기반으로 하며 동료 평가자는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기관을 평가하게 됨

-동료 평가자는 박물관·미술관 전문 종사자로서 자원봉사로 활동하며 신청 박물관·미술관의 자기

평가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 방문을 수행하여 평가 리포트를 작성하고 기관의 계획 수립을 촉진하는 역할을 함

- 동료평가에 참여하는 경험은 평가자 자신에게 전문성 향상과 네트워킹,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동료 평가자는 박물관·미술관 분야 전문가로서 박물관·미술관의 주제 분야와 규모를 고려하여 배정되며 박물관·미술관의 운영주체 및 도전 영역 등 특수 사안에 대한 전문성을 감안하여 배정하기도 함
- 동료 평가자는 높은 윤리적, 전문적 기준을 준수하며 우수한 의사소통 및 글쓰기 능력, 비평적 사고력을 지니고 배정된 사안에 40~80시간의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함
- 동료 평가자는 현장 방문과 리포트 작성에 있어 객관성과 전문성, 성실성을 갖고 임해야 하며 검토 결과에 대해 신중한 태도로 비밀을 준수해야 함
- ‘박물관·미술관 핵심 기준’을 바탕으로 ‘미션과 계획수립’ ‘해석’(관람객/ 커뮤니티/ 공공 프로그램 / 전시/ 연구/ 출판/ 홍보마케팅), ‘소장품관리’ ‘행정/멤버십/재정/시설/보안’ ‘거버넌스’의 영역에서 동료 평가의 세부 체크리스트를 제시하고 있음
- 평가프로그램 동료평가자와 인증 동료평가자는 위와 같은 공통적인 사안을 바탕으로, 각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구분되는 역할을 부여받음. 평가프로그램의 경우 보통 1인의 동료평가자가 배정되며 해당 박물관·미술관을 도와 박물관이 우수 기준에 올라설 수 있도록 진단 및 지원하고 제안하는 컨설팅 역할이 강함
- 인증을 위한 동료평가는 보통 2인이 팀으로 이루어지며, 현장방문위원회(Visiting Committee)로서 인증 과정 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추고 해당 박물관의 자기평가 자료를 검토하며, 2일의 집중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박물관이 핵심 기준에 얼마나 잘 부합하는가를 평가하고 현장방문 리포트(Site Visit Report)를 작성하여 인증위원회(Accreditation Committee)가 인증 여부를 결정하는 근거자료를 제시함

#### □ ‘박물관·미술관 핵심 기준’(Core Standards for Museums) 기반 우수성 평가 및 인증

- AAM은 ‘박물관·미술관 핵심 기준’(Core Standards for Museums)을 박물관·미술관 관계의 논의와 합의에 의해 도출하고 우수성 지향과 평가 인증의 기준으로 삼고 있음
  - 이는 협회가 2006년에 승인하고 2008년에 발간한 <미국 박물관·미술관의 국가적 기준과 최우수 실천 *National Standards & Best Practices for U.S. Museums*>의 내용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
  - 1996년부터 2007년 사이에 승인된 분야별 가이드라인 및 기준들을 통합하여 2008년 국가 수준의 ‘박물관·미술관 핵심 기준’으로 제시한 것임
- ‘박물관·미술관 핵심 기준’은 아래 [표 6-2]와 같이 7개 영역으로 도출되며, 각

영역에 있어 우수함의 기준을 세부적으로 제시함

- 미국의 모든 규모와 유형의 박물관·미술관들이 각자의 여건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고 지침으로 삼을 수 있도록 산출(output)이 아닌 결과(outcome) 지향의 내용으로 구성하고자 하였음

[표 6-2] 미국 박물관·미술관 핵심 기준

<p>1. 공적 신뢰와 책무성 Public trust and Accountabil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은 공적으로 신탁된 자원을 잘 관리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봉사대상이 되는 커뮤니티를 규명하고 어떻게 봉사할지 적절한 결정을 내린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스스로 규정한 커뮤니티와 관계없이 위치한 지역의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노력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포용적이고 다양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공공 서비스 역할을 분명히 하고, 교육을 그러한 공공 서비스 역할의 중심에 놓는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대중에게 박물관과 그 자원에 대한 물리적·지적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헌신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공적 책무성에 헌신하며, 그 미션과 운영에 있어 투명하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시설, 운영, 행정에 적용되는 지역 및 중앙의 법규, 규정, 규칙을 준수한다.</li> </ul>
<p>2. 미션과 계획수립 Mission and Plann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은 미션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으며 그 존재 이유와 노력의 결과 누구에게 혜택을 주는지를 소통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 운영의 모든 측면은 그 미션을 달성하는데 통합되고 집중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주체와 직원은 미션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을 획득하고 개발하고 배정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지속적이고 성찰적으로 기관의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관람객과 커뮤니티의 참여를 포함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성공의 지표를 수립하고 이를 박물관·미술관 활동의 평가 및 조정에 활용한다.</li> </ul>
<p>3. 리더십과 조직 구조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Structur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거버넌스, 직원과 자원봉사자 구조와 과정이 효과적으로 박물관·미술관의 미션을 달성한다.</li> <li>• 거버넌스, 직원과 자원봉사자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공유한다.</li> <li>• 거버넌스, 직원, 자원봉사자는 합법적, 윤리적, 효율적으로 각자의 책임을 이행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의 리더십, 직원, 자원봉사자의 구성과 자질, 다양성이 박물관·미술관의 미션과 목적의 실행을 가능하게 한다.</li> <li>• 운영주체와 박물관·미술관 후원 그룹(들)이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건 모 기관 또는 박물관·미술관내에서 운영되건 간에 명확하고 공식적인 책임이 구분되어 있다.</li> </ul>
<p>4. 소장품 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은 그 미션에 적절한 소장품을 소유하거나 전시하거나 활용한다.</li> </ul>

<p>Collections Stewardship</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은 합법적, 윤리적, 효과적으로 소장품을 관리, 문서화, 보존, 활용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 관련 연구는 학술적 기준에 적합하게 수행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소장품의 활용과 확보를 위해 전략적으로 계획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그 미션에 따라 소장품에 대한 보존에 유연하면서 대중의 접근성을 제공한다.</li> </ul>
<p>5. 교육과 해석 Education and Interpretation</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은 전반적인 교육적 목적, 철학, 메시지를 명확히 기술하고 그와 일치하는 활동을 보여준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기존 관람객과 잠재 관람객의 특성과 니즈를 이해하고 해석에 활용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의 해석적 내용은 적절한 연구에 기반을 둔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기초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학술적 기준에 따른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그 교육적 목적과 콘텐츠, 관람객, 자원에 적절한 기법과 기술, 방법을 활용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모든 관람객에게 정확하고 적절한 콘텐츠를 제시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해석적 활동에 있어 일관되게 높은 품질을 보여준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해석적 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활동의 계획과 개선에 활용한다.</li> </ul>
<p>6. 시설과 위기관리 Facilities and Risk Managemen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은 소장품과 관람객, 직원의 니즈에 부합하도록 공간을 할당하고 시설을 활용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사람과 소장품/전시물, 보유 또는 이용 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보증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시설의 장기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청결하고 잘 유지되며, 관람객의 니즈에 부합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잠재적 위험과 손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갖추고 있다.</li> </ul>
<p>7. 재정 안정성 Financial Stabil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은 그 미션을 증진하기 위해 법적, 윤리적으로, 그리고 책임감 있게 재정 자원을 획득, 관리, 할당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장기적 지속성을 증진하는 책임 있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한다.</li> </ul>

※ 출처: <https://www.aam-us.org/programs/ethics-standards-and-professional-practices/core-standards-for-museums/> 재정리.

## 마. 평가인증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

○ 자기평가와 동료평가를 통한 과정 중심의 장기간·단계적·자율적 평가와 인증으로 박물관·미술관의 우수성 견인

-미국 전역의 모든 유형의 박물관·미술관들이 참여하는 대표적 박물관·미술관협회 중심으로 유연

하고 자발적, 단계적인 평가와 인증 제도 운영

- 장기간의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평가 및 인증 프로그램은 박물관·미술관계의 자정적·자구적 노력을 보여주며, 박물관·미술관은 평가 및 인증 준비와 진행 과정을 거쳐 변화와 혁신, 개선의 계기 마련
  - 자구적 개선 노력과 기준 도달 여부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한 인증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의 대외적 공신력과 지역사회 영향력, 외부 후원의 근거를 강화하고자 하는 목표 설정
  - 박물관·미술관의 우수성 기준을 마련하고, 사립박물관·미술관이 그 기준에 도달하기 위한 개선 노력을 견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평가와 인증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함을 시사함
- 우수한 박물관·미술관의 보편적 규범을 제시하는 국가 수준의 ‘박물관·미술관 핵심 기준’을 기반으로 한 평가 및 인증
- 박물관·미술관의 수월성을 제시하는 ‘핵심 기준’(Core Standards)을 기반으로 평가와 인증이 이루어짐
  - ‘박물관·미술관 핵심 기준’은 박물관계의 폭넓은 논의와 합의를 거쳐 상향식으로 도출하였음
  - 평가와 인증은 모든 박물관들이 이러한 우수한 박물관·미술관의 기준을 준수하고 역량을 향상하도록 견인하며 대외적 신뢰도를 확보하는 역할
  - 인증은 이러한 연속적 과정의 최종 단계이며, 인증 박물관·미술관도 10년마다 재인증 과정을 거쳐 시대변화에 부합한 질적 우수성을 지속하도록 함
- 박물관·미술관 협회가 평가 및 인증 수행, 정부의 평가프로그램 지원
- 평가 및 인증은 미국박물관협회가 수행하고 연방 정부의 독립 행정 기구인 IMLS에서 AAM과 협력 관계를 맺고 협회의 평가프로그램(MAP)을 지원, 민관의 상호협력에 의한 평가 인증제 운영
  - 평가프로그램은 주로 중소규모 박물관·미술관이 참여하여 분야별 평가를 통해 핵심 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하고 계획 수립을 위한 진단 및 컨설팅의 기능을 수행
  - 인증은 핵심 기준을 적용하여 운영 주체, 박물관·미술관 주제 분야 등 유형의 구분 없이 진행하나 각 박물관·미술관의 미션, 규모,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적용하여 시행함
  - ‘인증’은 박물관·미술관의 종합적 영역에서 높은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대외적인 보증이 됨
- 평가인증 혜택의 선순환 구조 마련
- 평가와 인증이 박물관의 내부적·외부적 혜택으로 선순환 될 수 있도록 평가인증의 목표 혹은 효과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함
  - 일례로 미국 박물관·미술관 인증 프로그램에 참여한 박물관·미술관의 인증 혜택에 대한 실증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증의 기대 혜택과 실제 혜택을 파악하였음(Wendt, S., 2003)
    - 참여 박물관·미술관들은 인증의 혜택을 전반적으로 높게 인식
    - 중소규모 박물관·미술관일수록, 인증에 참여한 후 오랜 기간이 지난 기관일수록 인증의 혜택

크게 인식

- 인증의 기대 혜택과 경험 혜택이 모두 높게 인식된 영역

기관 경영 측면	• ‘기관의 강점과 우선순위 명확화’, ‘정책과 절차 마련 유도’, ‘이사회(경영진)의 이해도 증진’, ‘직원의 역량 강화’
대외 신뢰도 측면	• ‘유물/작품 또는 전시 대여 용이성’, ‘기부/기증 유치’

-또한 AAM은 자체 발간 저널 등을 통해 인증기관의 인증 참여 경험과 변화의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고 있음

## 2절 프랑스 사례

### 가. 「프랑스 박물관법」의 제정

#### □ 프랑스 박물관 제도와 지방분권

- 1982년 지방분권법(Defferre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박물관은 국가가 중앙에서 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 프랑스 공립박물관의 구분

등록(classé) 박물관	국가에 소속된 학예 인력이 관리하는 박물관(예술, 역사 및 고고학 박물관의 경우에는 문화부 소속, 자연사박물관의 경우 연구부 소속)
지정(contrôlé) 박물관	지방 당국 소속 인력이 박물관을 관리하지만 국가에 소속된 학예 인력이 감독하는 박물관

- 지방분권의 결과로, 수백 개의 박물관이 생겨났으나 공공당국은 이 박물관들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음
- 입법부는 문화협력을 위한 공공기관의 설립을 통해 박물관의 ‘문화사업’ 운영 방식을 확대하자고 제안했고, 이는 이후 대형 박물관 등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게 되었음

#### □ 「프랑스 박물관법」의 제정(2002)

- 박물관 평가는 무엇보다도 문화 민주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러한 목표는 2002년 ‘박물관법’에 명시된 프랑스 박물관의 정의를 재확인한 바와 같이 그들의 임무의 핵심임
- 2002년 제정된 「박물관법」 제2조에 따른 프랑스 박물관의 사명은 다음과 같음
  - 소장품을 보존, 복원, 연구하고 수집품 확대에 힘씀
  - 더 많은 사람들이 소장품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
  - 모든 사람들이 문화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보급 활동을 설계·운영함
  - 지식과 연구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함

- 「박물관법」은 박물관의 다양한 임무들 간의 균형을 재조정하여 관람객의 소장품에 대한 접근과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함<sup>52)</sup>

[표 6-3] 프랑스 박물관법

제1조	<p>“프랑스 박물관(Musée de France)”이라는 명칭은 <u>국가에 속한 박물관, 공법에 따른 법인 또는 사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에 부여될 수 있다.</u></p> <p>이 법의 의미 상 <u>박물관이라고 간주되는 것은 공익을 위하여 보존 및 전시되는 물품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중의 지식과 교육, 그리고 즐거움을 위하여 조직된 영구적인 컬렉션이다.</u></p>
제2조	<p>“프랑스 박물관”의 영구적인 사명은 다음과 같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컬렉션의 보존, 복원, 연구 및 확충하는 것</li> <li>b. 컬렉션이 대중에게 최대한 접근 가능하도록 할 것</li> <li>c. 문화에 대한 모두의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 및 확산 활동을 기획 및 시행할 것</li> <li>d. 지식과 연구의 발전 및 확산에 기여할 것</li> </ul>
제3조	<p>이 법에 따라 문화 담당 장관 하에 “프랑스 박물관” 고등평의회를 설치하며, 그 위원은 의장을 제외하고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한다.</p> <p>하원과 상원이 각 한명씩 지명한 2인의 의원들 정부를 대표하여 5인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여 5인 제6조와 제15조에 언급된 사람을 대표하여 5인 ‘프랑스 박물관’을 소유하는 사법인을 대표하여 2인과 대중을 대표하는 단체를 대표하여 1인을 포함하여 자격 있는 5인</p> <p>고등평의회는 ‘프랑스 박물관’과 관련된 모든 문제에 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권고를 발표할 수 있다.</p> <p>고등평의회는 동법 제4조, 제11조, 제13조, 제16조, 제18조에 예정된 경우에 의견을 제시한다.</p> <p>고등평의회 구성, 지정 및 운영 방식, 의견 공표의 조건에 관한 사항은 국사원의 칙령을 통해 결정한다.</p>
제4조	<p>“프랑스 박물관”이라는 명칭은 컬렉션을 소유한 법인의 요청을 받으면 고등평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문화 담당 장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유관 부서 장관이 결정을 통하여 부여한다.</p> <p>비영리 사법인이 요청하는 경우, 해당 명칭의 부여는 컬렉션을 구성하는 물품 목록의 제시, 해당 자산 상에 설정된 물적 담보가 없다는 증명, 신청하는 법인의 정관에 동법 제11조에 따라 기부 및 유증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해 취득된 재산이 공공전시를 위하여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공용 지정되는 경우를 예비한 조항의 유무에 따라야 한다. 명칭부여 결정과 그 신청에 첨부된 목록은 모두 국사원 칙령에 의한 공표의 대상이 된다.</p> <p>소장품의 보존과 공공전시가 공공의 이익에 더 이상 부합하지 않는 경우 고등평의회 동의를 거쳐 문화 담당 장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유관 부서 장관의 결정에 의해 “프랑스 박물관” 명칭은 철회될 수 있다.</p>

52) 제2002-5호 법률(loi)은 '프랑스 박물관' 아펠라시옹(인증) 제도를 규정하면서 그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데크레를 통해 정할 것으로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같은 해 「프랑스 박물관」에 관한 2002년 1월 4일자 제2002-5호 법률의 시행을 위한 2002년 4월 25일자 제2002-628호 데크레가 제정되어 그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음.

	<p>지정의 철회는 법인이 소유한 자산이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라 소유권 이전의 대상이 되었거나 공공지원에 의해 취득되었을 때, 1922 회계연도의 일반예산을 확정된 1921년 12월 31일자 법률의 제37조<sup>53)</sup>에 규정된 우선 매수권 행사의 대상이 되었거나 공공이 인수했을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p>
제5조	<p>“프랑스 박물관”은 그 활동 수행에 있어 국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업무와 관련된 조인과 전문지식을 얻는다.</p> <p>박물관들은 이 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국가의 과학적이고 기술적인 통제를 받는다.</p> <p>국가는 박물관들이 이 법에 의해 위임된 임무를 수행하는 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 및 조사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p> <p>국가나 공공시설 중 하나에 속하지 않는 컬렉션을 보유한 “프랑스 박물관”과 국가는 협정을 체결하여 제2조에 명시된 임무를 수행하고 이 법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조건을 명시할 수 있다.</p> <p>“프랑스 박물관” 지정 이후 4년 내에 동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제4조의 세 번째 단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지정이 철회될 수 있다.</p>
제6조	<p>“프랑스 박물관”의 과학적 활동은 국사원이 칙령으로 정한 자격을 제시하는 전문가의 책임 하에 수행된다.</p>
제7조	<p>“프랑스 박물관”의 입장료는 가능한 많은 대중이 박물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책정된다. 국가에 소속된 박물관에서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영구 컬렉션이 전시되는 공간에 입장할 때 요금이 면제된다.</p> <p>개별 박물관은 대중의 응대, 전파, 문화행사 진행 및 중개를 업무로 한다. 이러한 행위는 자격을 갖춘 직원에 의해 수행된다. 필요한 경우 이러한 업무는 여러 박물관에서 공통으로 수행될 수 있다.</p>
제8조	<p>위임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이들 박물관은 “프랑스 박물관”을 지원하고 전파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법인과 협정의 형태로 파트너십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p>
제9조	<p>국가는 공공 연구 및 고등 교육 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프랑스 박물관” 간의 지리적, 과학적 또는 문화적 네트워크의 구축을 장려하고 촉진한다.</p>
제10조	<p>컬렉션을 확장하기 위한 소장품 취득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칙령에 의해 구성과 운영방법이 규정된 과학기관의 의견에 따른다.</p>
제11조	<p>I. “프랑스 박물관”의 컬렉션은 항구적인 것이다.</p> <p>II. “프랑스 박물관” 컬렉션을 구성하는 공공 소유의 자산은 공공영역의 일부로 양도할 수 없다.</p> <p>이러한 자산으로부터 해제하는 결정은 칙령에 의해 구성된 운영방법이 규정된 학술위원회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내릴 수 있다.</p> <p>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속하지 아니한 “프랑스 박물관” 컬렉션은 그 소유자가 해제된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요구가격을 표시하여 판매 의사를 행정당국에 알려야 한다.</p> <p>행정 당국은 결정까지 2개월의 기한을 갖는다.</p> <p>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가격은 수용 문제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결정된다.</p> <p>취득의 경우에는 청구된 가액으로 취득하기로 결정한 통지 후 또는 법원의 최종결정이 있는 후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정산한다.</p> <p>동조 네 번째 단락에 명시된 2개월 이내에 응답이 거부되거나 응답이 없는 경우, 소유자는</p>

	<p>해당 자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p> <p>기부 및 유증에 의해 공공 컬렉션에 포함된 자산, 또는 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한 컬렉션의 경우 국가의 지원으로 취득한 자산은 지정이 취소되지 아니한다.</p> <p>또한 공법인은 “프랑스 박물관”에 대한 귀속을 유지하기로 약속하는 경우 다른 공법인에게 자신의 컬렉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할 수 있다. 이러한 소유권 이전은 문화 담당 장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유관 부서 장관이 고등평의회와 협의를 거쳐 승인한다. 이 단락의 규정은 조세일반법 제1131조 및 제1716조 2항에 따라 국가로 이전된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p> <p>III. 비영리 사법인에게 속하는, 기부 및 유산 또는 국가 또는 지방 당국의 지원으로 취득한 “프랑스 박물관” 소장품의 재산은 유상으로든 무상으로든 사전에 “프랑스 박물관”에 자산의 귀속을 유지하기로 약속한 공법인 또는 비영리 사법인에게만 이전될 수 있다. 이러한 이전은 문화 담당 장관, 그리고 필요한 경우 유관 부서 장관이 고등평의회와 협의를 거쳐 승인한 뒤에만 가능하다.</p> <p>전 단락에서 언급된 컬렉션은 제4조에 언급된 공표조치를 마친 뒤부터는 압류할 수 없다.</p> <p>IV. 이 조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프랑스 박물관” 컬렉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양도하면 무효이다. 무효의 주장이나 또는 반환청구는 국가와 컬렉션을 소유한 법인이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다.</p>
제12조	“프랑스 박물관”의 컬렉션은 목록에 기재하고 이를 십년마다 검토해야 한다.
제13조	1910년 10월 7일 이전에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였고, 이 법이 공포된 날짜에 미술관의 임시조직에 관한 1945년 7월 13일의 제45-1346호 명령에 의하여 등록 또는 지정된 박물관이 보존하고 있으면서 해당 자치체와 관련 있는 자산은 확인을 거쳐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거나 이 박물관이 “프랑스 박물관” 명칭을 부여받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14조	<p>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속하는 “프랑스 박물관” 컬렉션을 구성하는 자산의 대출 및 예치의 조건은 국사원의 칙령로 정한다.</p> <p>고등평의회는 “프랑스 박물관”으로 지정된 박물관 간의 컬렉션을 구성하는 자산의 유통, 교환 및 대출에 대한 권고를 공표한다.</p>
제15조	<p>“프랑스 박물관” 컬렉션에 포함되는 유산을 복원할 때는 제10조에 규정된 과학기관과의 협이가 선행되어야 한다.</p> <p>복원작업은 제6조에서 정하는 전문가의 지휘 하에 칙령으로 정하는 자격 또는 전문경력을 가진 전문가가 시령 한다.</p>
제16조	<p>“프랑스 박물관” 소장품의 일부를 구성하는 자산의 보전 또는 보안이 위태로워지고 이 소장품의 소유자가 국가가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즉시 취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취할 수 없는 경우, 고등평의회와 협의를 거쳐 정당한 결정으로 그 상황을 시정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소유자에게 공식적으로 통지한다. 소유자가 이러한 통지에 대하여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국가는 동일한 조건에서 필요한 보호 조치, 특히 필요한 보장이 제공하는 장소로 자산의 임시 이전을 명령할 수 있다.</p> <p>긴급한 경우, 고등평의회와의 협의 없이 공식 통지 및 보존 조치가 결정될 수 있으며, 취해진 결정은 지체 없이 통지되어야 한다.</p> <p>필요한 보장을 제공하는 장소로의 일시적 이전이 결정되었을 때, 해당 물품의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언제든지 해당 물품이 원래 위치하였던 “프랑스 박물관”으로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고등평의회가 부과된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한다.</p>

	해당 물품의 소유자와 국가는 이조에 규정된 보존조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분담하되, 국가의 분담액은 해당 금액의 50%를 넘지 아니한다.
제17조	“프랑스 박물관”으로 지정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관의 설립자 내지 관리자가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 기관의 이익을 위해 해당 명칭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15,000유로의 벌금을 받는다. 법인은 형법 제121-2조 및 제131-38조에 규정된 조건에 해당할 때 전항의 범죄에 대해 형사 책임이 있다고 선언할 수 있다.
제18조	I. 이 법의 공포일 현재 “프랑스 박물관”이라는 명칭은 국립박물관, 이 법 이전에 시행된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칙령으로 그 지위가 결정된 프랑스의 박물관에 부여된다. II. 이 법 이전에 시행 중인 법률 및 규정에 따라 지정된 박물관은 이 법이 공포된 후 13개월째 되는 달의 초일부터 “프랑스 박물관”으로 지정되나, 다음 단락에 규정된 제한에 따른다. 동항 첫 번째 단락에 제공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컬렉션을 소유한 법인은 국가기관에 즉시 명칭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명칭은 문화 담당 장관이 합리적인 결정으로 요청한 상대방 기관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한 요청을 접수한 뒤 1개월 내에 해당 박물관에 수여된다. 동항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컬렉션을 소유한 법인은 지정에 대한 반대를 국가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동항 첫 번째 단락에 제공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문화 담당 장관은 고등평의회와의 협의를 거쳐 “프랑스 박물관”으로의 지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프랑스 박물관”으로 지정된 박물관은 동항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또한 두 번째, 세 번째 및 네 번째 단락에 규정된 경우 “프랑스 박물관”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이를 거부하는 국가기관의 공지가 있기 전까지는, 이 법의 이전에 효력을 가지고 있던 법률 및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부서, 지역 및 국가 간의 권한 분배에 관한 1983년 1월 7일자 법률 제83-8호를 보완하는 1983년 7월 22일자 법률 제83-663호의 제62조에 따라 제공되는 학예 인력을, 이 법의 공포일로부터 최대 3년 동안 지방 당국이 관리하는 “프랑스 박물관”의 처분에 맡길 수 있다. 전 단락에 규정된 기간이 끝나면 앞서 언급된 1983년 7월 22일자 법률 제83-663호의 제62조는 폐지된다.
제20조	정부는 2002년 말 이전에 초상권에 대한 보고서와 공공 기관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예술 작품에 대해 초상권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의회에 제출한다.
제21조	조세일반법 제200조 1항 b단락에서 “예술적 유산”이라는 단어 뒤에 다음의 문구를 삽입한다. “특히 대중에게 개방된 “프랑스 미술관”의 컬렉션에 포함시키기 위한 물품이나 예술작품을 구매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기부”
제22조	I. 조세일반법 제238조의2의 AB의 첫 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2년 1월 1일부터, 생존한 예술가의 작품 원본을 구매하여 고정자산 계정에 등록하는 회사는 취득연도 및 다음 4년의 영업수지에서 구매가격과 동일한 금액을 균등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다.” II. 전항으로 인한 세수의 손실은 조세일반법 제575조 및 제575조의 A에 규정된 권리에 세금을 추가적으로 부과함으로써 비례하여 보상된다.
제23조	I. 조세일반법 제238조의2 0A는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p>실제 이익에 대하여 과세를 받는 기업은, 특정한 유통의 제한 및 경찰, 헌병 및 세관 간의 공조의 대상이 되는 제품과 관련되어 있는 1992년 12월 31일자 법 92-1477의 7조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행정당국이 수출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대상이 된 국가적 보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문화상품으로 국가가 동법 제9-1조에 따라서 구매제안을 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하여 2006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지급한 액수에 관하여 90%까지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지급액은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는 공제되지 아니한다.</p> <p>지급은 문화 담당 장관과 예산 담당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세금감면은 자불이 승인된 연도의 법인세에 적용된다. 그러나 세금 감면 액수는 제219조 제1항에 따라 이 회계연도에 대해 회사가 납부해야 할 세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제223조 A 상의 그룹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이러한 50%의 한도는 그룹의 모회사가 납부해야 하는 세액에 따라 그룹 전체에 적용된다.</p> <p>II. 조세일반법 제238조의2 AA에서 “법 제238조의2의 0A”라는 문구는 삭제한다.</p> <p>III. 국사원의 칙령으로 동 조항의 적용 조건을 결정한다.</p>
제24조	<p>조세일반법 제238조의2의 첫 번째 단락에서 ‘공익에 기여한 기관’ 뒤에 다음의 문구를 삽입한다. “또는 프랑스 박물관”</p>
제25조	<p>조세일반법 제238조의2 0A 뒤에 0AB를 다음과 같이 삽입한다.</p> <p>“제238조의2 0AB-“프랑스 박물관”과 관련된 2002년 1월 4일자 제2002-5호 법률의 공표일부터, 1992년 12월 31일자 제92-1477호 법률의 7조를 적용하여 행정당국이 수출증명서 발급을 거부한 대상이 된 문화적 자산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40%까지 감면할 수 있으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p> <p>이 자산은 전술한 1992년 12월 31일자 제92-1477호 법률의 제9-1조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국가로부터의 구매 제안의 대상이 아니어야 한다.</p> <p>회사는 이 자산이 역사적 기념물에 관한 1913년 12월 31일자 법률 제16조에 따라 역사적 기념물로 분류하는 데 동의하여야 한다.</p> <p>자산은 취득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양도될 수 없다.</p> <p>앞의 단락에서 예정된 기간 동안에 자산은 “프랑스 박물관”에 전속된 창고에 보관되어야 한다.</p> <p>세액 감면은 전술한 1992년 12월 31일자 제92-1477호 법률 제7조에 규정된 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재정 및 경제 담당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국사원의 칙령으로 동 조항의 적용 조건을 결정한다.</p>
제26조	<p>조세일반법 제150조 V bis II의 첫 번째 단락의 시작은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프랑스 박물관”, 지방 당국, 프랑스 국립 도서관, 다른 주립 도서관 등의 이익을 위해 판매되는 경우 세금은 면제된다(나머지는 변경되지 않음)”.</p>
제27조	<p>1. 예술 후원의 진흥에 관한 1987년 7월 23일자 제87-571호 법률의 제11조 첫 번째 단락에서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의 임시조직에 관한 1945년 7월 13일자 제45-1546호 명령의 적용에 의해 지정된 박물관”은 “프랑스 박물관”으로 변경한다.</p> <p>2. 지방자치일반법 L. 1423-1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p> <p>“지방자치단체 내지 이들 집단의 박물관은 그들이 속한 당국에 의해 조직되고 재정 지원을 받는다.</p> <p>“프랑스 박물관”으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 내지 이들 집단의 박물관은 “프랑스 박물관”에 관한 2002년 1월 4일자 법률 제2002-5호의 적용을 받고 이 법이 규정하는 조건 하에서 국가의 과학 및 기술적 통제를 받는다.”</p>

	<p>3. 지방자치일반법 L. 1423-3조와 L. 1423-4조는 폐지한다.</p> <p>4. 지방자치일반법 L. 2541-1조 첫 번째 단락에서 동법 L. 1423-3조와 L. 1423-4조를 언급하는 부분은 폐지한다.</p> <p>5. 1945년 7월 13일자 제45-1546호 명령은 제3조를 제외하고는 폐지한다.</p> <p>6. 특정 유통 제한의 대상이 되는 제품과 경찰, 헌병 및 관세 서비스 관련 1992년 12월 31일자 법률 제92-1477호의 제4조에서 “공공 컬렉션”이라는 단어 뒤에 다음을 삽입한다. “그리고 프랑스 박물관 소장품”</p> <p>7. (1) 회원국 영역을 불법적으로 이탈한 문화재 반환에 관한 1993년 3월 15일자 EU이사회 지침 93/7을 변경하는 1995년 8월 3일자 제95-877호 법률 제11조 두 번째 단락의 제2항에서 “박물관 소장품 목록에 대해”라는 문구를 “프랑스 박물관 및 기타 박물관 소장품 목록에 대해”로 대체한다.</p> <p>(2) 제11조에 다음을 4항으로 삽입한다. “4항. 비영리 사법인에 속한 “프랑스 박물관” 컬렉션 목록에 포함된 문화재.”</p> <p>8. 형법 제322-2조의 네 번째 단락에서 “또는 박물관에 보관된 물건”이라는 문구는 “또는 프랑스의 박물관에 보관 또는 기탁된 물건”으로 대체한다.</p> <p>9. 1922 회계연도에 대한 일반 예산을 설정하는 1921년 12월 31일자 법률 제37조의 마지막 단락 뒤에 다음의 문구를 추가한다. “또는 “프랑스 박물관”에 할당된 컬렉션을 소유한 비영리 사법인”</p> <p>10. 전술한 1992년 12월 31일자 제92-1477호 법률 제9-1조의 끝에서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제9조의 두 번째 단락에 언급된 물건의 취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문구는 다음으로 대체한다.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구매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p>
제28조	동법은 마요뜨에서 적용된다.
제29조	<p>예술 후원의 진흥에 관한 1987년 7월 23일자 제87-571호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1. 다음은 폐지한다. (가) 제19조에서 “제19-6조에 언급된 초기교부금을 제공한다” (나) 제19-9조에서 두 번째 단락 (다) 제20-1조</p> <p>2. 제19-1조의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 문장은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다년간의 행동계획의 연장은 명령에 대한 개정의 형태로 한다.”</p> <p>3. 제19-2조의 3번째 문장에서 “5년간”은 “3년간”으로 수정한다.</p> <p>4. 제19-6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9-6조. “프랑스 박물관”에 관한 2002년 1월 4일자 제2002-5호 법률이 공포된 날로부터, 그 이전에 그 설립자가 연장을 결정한 법인은 초기교부금에서 새로운 다년간 행동계획에 예정된 지출을 충당할 권리가 있다.”</p> <p>5. (가) 제19-8조의 제1항과 제4항에서 “초기교부금”이라는 문구 뒤에 다음의 문구를 삽입한다. “지정된 뒤 제19-6조에 규정된 할당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 (나) 같은 문구를 제19-12조의 “또한 초기교부금”이라는 문구 뒤에 삽입한다.</p>
제30조	국립 대중음악 및 재즈 센터는 문화 담당 장관이 감독하는 산업 및 상업 공공기관이다. 그

임무는 바리에테 쇼 공연의 제작, 홍보 및 보급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기관은 샹송, 바리에테 쇼 및 재즈 유산의 보존 및 향상에 기여한다.

이 기관은 운영이사회에 의해 운영되고 1인의 센터장을 둔다.

운영이사회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는 자, 공연예술전문가를 대표하는 자, 문화 담당 장관이 지명한 자 중 자격 있는 자로 선정된 자로 이루어진다.

운영이사회 의장과 센터장은 칙령을 통해 임명된다.

공공기관은 바리에테 쇼 공연을 위해 징수된 준정부세 수익으로부터 혜택을 받는다. 기관의 재원에는 상업적 활동의 산물과 시행 중인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승인된 기타 수입 외에 공적 또는 사적 개인으로부터의 보조금 및 재정 지원이 포함될 수 있다.

국사원 칙령을 통해 이 조항의 적용 조건을 결정한다. 이러한 칙령을 통해 대중음악 및 재즈 지원 협회라고 명명된 협회의 재산, 권리 및 의무가 공공기관에 귀속되는 조건을 정의한다. 동 법률은 국가의 법률과 같이 집행된다.

## 나. “프랑스 박물관(musée de France)” 인증제<sup>54)</sup>

### □ “프랑스 박물관” 인증제의 법적 위상

○ “프랑스 박물관”은 2002년 1월 4일에 제정된 2002년 1월 4일 법(LOI n° 2002-5 du 4 janvier 2002)에 따라 국가가 승인한 박물관이라는 의미의 인증임

- “프랑스 박물관”이라는 명칭은 국가에 소속된 박물관, 공법의 지배를 받는 다른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관한 민법의 지배를 받는 주체에게 부여될 수 있음

- 현재(2020/09/11 기준)까지 등록 박물관 1315개 관 중 1,219개의 박물관이 “프랑스 박물관” 인증을 받았고, 이 중 82%는 지방자치단체, 13%는 공익 법인(협회 또는 재단), 5%는 국가가 운영함

- 이 법의 의미 내에서 박물관은 “공공의 지식, 교육 및 즐거움을 위해 수집된 영구 소장품을 갖추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소장품 보존과 전시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간주함

○ “프랑스 박물관”이라는 명칭은 박물관 내에 공공 서비스가 존재해야 하는 것을 암묵적으로 지시하고 있음

- 도슨트 투어 및 학생 단체 관람을 기획하고 연계 문화 활동 제공하며, 요금 체계를 설계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바탕으로 관람객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등 다양한 박물관 서비스의 방향 설정에

53) 국가는 모든 예술작품의 경매에 있어서 선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낙찰인을 대위함. 예술부 장관이 우선매수권을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선언하면 이는 경매가 끝날 때 경매를 지휘하는 관리에 의해 공식화된다. 장관은 15일 내에 개입하여야 함.

54) 편의상 ‘인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는 하나, “뤼제 드 프랑스”는 특정한 요건을 갖춘 박물관이 신청 등의 절차를 거쳐 특정한 명칭을 부여받고 공법적 의미를 가지는 장부에 등재되고 공시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이는 지정(classement)이자 명명(appellation)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음.

영향을 끼치고 있음

- “프랑스 박물관” 인증은 박물관의 모든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 전시 정책, 소장품 보존 대책, 소장품 품질 관리, 인사 관리와 운영 위원회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함

“프랑스 박물관” 인증 조건

- ① 임무에 대한 헌신: 수집품을 보존, 복원연구, 확충하고,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며, 교육 및 보급 활동을 통해 학예 연구의 발전에 기여해야 함
- ② 지역 또는 국가 차원의 문화 분야 학예 인력(학예사 또는 학예담당관)이 박물관을 관리해야 함
- ③ 자체 기획 또는 다른 박물관과의 협력을 통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④ 소장품 목록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함
- ⑤ 기관의 비전을 반영한 학술 문화 프로젝트를 기획해야 함

□ “프랑스 박물관” 인증 신청 과정

- 인증 관련 행정권한의 지방분권

- 기존의 “프랑스 박물관” 인증은 프랑스 고등 박물관 협의회가 자문을 거쳐 문화 담당 장관의 결정에 의해 부여되도록 했음
- 그러나 2020년 11월 10일 '중앙정부의 전환 및 행정과 시민의 관계 개선의 일환으로' 제정된 2020년 11월 10일법(Décret n° 2020-1371 )에 따라 도지사에게 ‘프랑스 박물관’ 명칭 부여와 관리, 취하 권한이 위임됨<sup>55)</sup>
- 실질적 서류심사는 지역문화행정사무국(DRAC)이 담당함

- “프랑스 박물관” 인증 심사 절차

- ① 신청 박물관(소장품 소유 법인)은 도지사에게 서류를 제출
- ② 서류가 완벽하게 구비되었을 경우 도지사는 수령 사실을 확인하여 누락된 서류를 보완할 수 있는 1개월의 기간 제공
- ③ 2개월 이내에, 도지사는 정당한 의견서와 함께 후보 박물관의 신청서를 프랑스 박물관 고등 심의회에 전달
- ④ 심의회는 6개월 이내에 의견을 전달
- ⑤ 심의회가 공시 발표 한 달 후, 도지사가 “프랑스 박물관” 명칭을 부여하는 행정 명령

- 국가 소유의 소장품 또는 국가의 관리를 받는 법인의 경우, 인증 요청은 문화 담당 장관 혹은 해당 박물관을 관할하는 부처의 장관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절차를 거침

55) Décret n° 2020-1371 du 10 novembre 2020 relatif à la déconcentration de l'appellation «musée de France» <https://www.legifrance.gouv.fr/jorf/id/JORFTEXT000042515729>.

## ○ 인증 심사 시 제출 서류

- 
- ① 출처와 속성이 명시된 소장품 목록(2004년 5월 25일 법령의 소장품 목록 대조확인에 관한 조항에 의해 표제어 수가 제한됨)
  - ② 박물관의 학술·문화 비전과 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수단을 명시한 지침문서
  - ③ 연간 예산
  - ④ 가격 정책(입장료 및 프로그램 참가비)과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재무 및 인력 자원 개발 차트
  - ⑤ 예상 인력 조직도를 담은 서류
- 

## ○ 인증 심사 시 제출 서류: 민간 법인에 의한 인증 요청 시 추가 제출 서류

- ① 상법 제6권 제2호에 따른 구제 또는 사법적 청산절차의 대상이 아니며, 수집품을 구성하는 자산 중 어느 것도 채무보증을 위해 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한 법률대리인의 진술을 담은 서류
- ②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 담보의 기재 부재를 명시한 관할기관(사례, 상업법원, 도청 또는 관세청) 발급 증명서
- ③ 기부, 유증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원조를 통해 취득한 자산을 대중에게 공개하기 위한 전용 권한을 부여하는 법령의 사본 등을 추가로 제출

## □ “프랑스 박물관” 인증 혜택<sup>56)</sup>

- 문화부가 배포하는 모든 자료에 “프랑스 박물관” 명시 가능
  - 해당 로고가 표시된 특정 도로 표지판을 사용할 수 있으며, 박물관의 모든 커뮤니케이션 문서에 인증 라벨과 로고를 사용할 수 있음
- 소장품양도 불가능성, 시효소멸 불가성, 차압 불가능성의 보장
- 정부 지원 대상 자격 획득
  - 투자, 보존, 복원, 전시, 문화교육 행사, 출판 등에 관한 정부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음
  - 몇몇 지방의 경우 학예인력 지원 역시 받을 수 있음
  - 지역 문화국 및 박물관 관계 부처의 전문가(건축가, 컨설턴트, 복원가, 큐레이터, 엔지니어)의 자문을 받을 수 있음
  - ‘유럽 박물관의 밤’과 같은 국가적 차원의 문화 행사에 참여할 수 있음
- 박물관·미술관자료 취득 관련 혜택
  - 수집품 취득의 경우, 지역 박물관의 취득 기금 및 문화유산 기금 신청 자격이 부여되고, 이

---

56) Ministère de la Culture, Appellation «Musée de France»  
<https://www.culture.gouv.fr/Aides-demarches/Protections-labels-et-appellations/Appellation-Musee-de-France>.

- 자격에 부합하면 지역 문화재복원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국가 선매권을 통해 수집품을 취득할 수 있음
- 소장품 취득에 대한 후원을 위한 세금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프랑스 내의 다른 인증 박물관으로 소장품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프랑스 내의 다른 인증 박물관에서 소장품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음
- 국립 박물관의 수장고를 사용할 수 있음

## 다. “프랑스 박물관” 평가제도

### □ 기본 성격 및 지표

- 기본 성격: 공공 문화 민주화를 위한 행위에 대한 평가
- 박물관 및 문화유산 시설의 민주화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 공공문화기관이 '우선순위 관람객'으로 지정한 청년층(18~25세 이하) 및 무·유료입장 비중을 구분해 취합한 방문률 변화 추이
  - "청소년" 또는 "취약계층"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자 수
  - 연간 설문 조사에서 측정한 방문 후 실시된 관람객 정량 및 정성 만족도

### □ 관람객 평가의 담당 부서 및 평가도구

- 문화부 공공정책부: 관람객 평가 담당 부서
  - 2010년 일반 공공정책 검토(GPR)의 일환으로 문화부에 신설된 ‘공공정책부’에서 관람객 평가 관련 정보를 수집함
  - 문화부의 공공정책부는 사무국, 예술창작국, 미디어 및 문화산업국, 문화유산국 등으로 구성
  - 박물관, 기념물, 기록보관소, 문화도시 등은 문화유산국 소관임
- 박물관 및 문화유산 시설 관련 관람객 평가 도구
  - 연간 방문 기록(Patrimostat): 국가 기록 보관소, 기념물, 국립 박물관, 프랑스 박물관, 문화도시의 연간 방문 기록으로, 무료 및 유료 관람객 데이터를 별도로 구분함
  - 관람객 만족도(À l’écoute des visiteurs, AEV): 관람객 만족도는 문화유산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문화유산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방문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을 지님
  - 문화부 산하 국립박물관의 경우 AEV 조사에서 추출한 두 가지 지표가 연간 평가에 통합됨

## 라. “프랑스 사립박물관” 평가인증제 (Appellation “Musée privée de France”)

### □ “프랑스 사립박물관” 평가인증제 관련 논의의 배경

- 프랑스 사립박물관의 최근 20년간 동향: 설립·운영주체의 다변화 및 시장화
  - 2000년대 초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프랑스에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다양한 규모와 성격의 사립박물관이 등장하였으며, 운영 주체 또한 법인, 재단, 협회, 주식회사 등 다양화된 모습을 보임
  - 2010년대 중반 이후 대기업 및 대형 컬렉터들을 중심으로 대규모 사립미술관이 등장하였으며, 이들은 스타 건축가의 설계를 바탕으로 한 랜드마크 성격의 미술관 건축물과 더불어 고가의 뮤지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략을 구사함
  - 대중적인 어휘를 사용하는 사립박물관의 전시들은 성공적인 시장의 반응을 이끌어냈으며, 고용 효과를 비롯한 뮤지엄 산업의 확산에 기여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 2011년 3월 프랑스 감사원은 37개 국립박물관에 대한 공공지출이 10년 만에 최소 70%(세제혜택 포함) 증가한 반면 사립박물관의 경영 성과는 성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
- 사립박물관에 대한 공적 관리의 필요성 대두
  - 비전문적인 운영, 부적절한 자산 투자, 열악한 경영 구조 등은 2010년대 중후반 이후 많은 사립박물관의 쇠락을 불러옴
  - 이후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 한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개관이 이어지며 문화 사업을 통한 자산 증식의 문제와 연결되면서 사립박물관에 대한 공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사립박물관은 국립박물관과 근본적으로 다른 예산 모델을 지니고 있으며, 예상 관람객 수를 추정하여 전시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드는 작품의 전시나 10년 이상 경력을 지닌 학예사 고용을 기피하는 등 시장 중심의 박물관 경영을 시행하고 있음
  - 일부 사립박물관의 성공은 예술과 돈을 근본적으로 분리하려는 프랑스 박물관의 전통을 깨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국가적인 차원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국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 간의 생산적인 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역시 제시됨

### □ “프랑스 사립박물관” 인증제 관련 법안 발의 및 검토 진행

- 프랑스 사립박물관의 운영난
  - 프랑스 내 사립박물관의 관람객 비중은 박물관 전체의 15%를 차지하는 데 비해 국립박물관은 35%, 기타 국립박물관은 50%를 차지하고 있음

- 극히 일부 사립박물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사립박물관은 연평균 19,000명 미만의 관람객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대부분의 사립박물관은 규모가 작기 때문에 보조금이나 상당한 수준의 후원이 없는 경우, 입장권 매출에 독점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열악한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대두됨
- 최근 몇 년 동안 일부 사립박물관의 공공연한 성공에도 불구하고 몇몇 사립박물관이 폐관 절차를 밟아야 했으며, 법안 발의자에 따르면 "최근의 재정법들 이후, 사립박물관에 대한 세금이 크게 증가하고 공립박물관에 대한 처우에 비해 불평등해짐에 따라, 프랑스 사립박물관의 미래가 위태로워지고 있음"

#### ○ “프랑스 사립박물관” 인증제 법안 발의 취지

- 2018년, 맨에루아르(Maine-et-Loire) 하원의원 장-샤를 투구르도(Jean-Charles Taugourdeau)와 공화당 소속 30여명의 동료들은 사립박물관의 운영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프랑스 박물관”이라는 명칭에 속하는 공공박물관과 동일한 “경제적, 법적, 사회적, 재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프랑스 사립박물관” 인증제 수립에 관한 법안을 발의함<sup>57)</sup>
- 이 법안은 사립박물관의 “미래를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공공문화시설에 귀속되는 “프랑스 박물관”을 모델로 한 “프랑스 사립박물관” 인증제 수립을 제안함
- “사립박물관의 행동은 만장일치로 사회 전체에 유익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본 법안은 “사립 박물관에 우리의 유산의 효과적인 보존과 발전을 보장하는 법적, 재정적 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 “프랑스 사립박물관” 인증제 주요 내용

- “프랑스 사립박물관” 인증은 ‘상당한 양의 예술 작품이나 수집품을 영구적으로 소장하는 민간 법인 운영 박물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해당 박물관은 연간 개방일수가 최소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2년 이상 정해진 공공 공간에서 일반에게 공개되어야 함
- 문화부 장관의 결정에 따라 부여되는 “프랑스 사립박물관” 인증은 사립박물관에게 “프랑스 박물관” 인증이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경제적, 법적, 사회적, 재정적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
- 해당 인증을 통해 사립박물관은 다양한 분야(투자, 보존, 복원, 출판 등)에 걸친 기업 후원과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으며, 국립박물관 예치금 수혜, 국가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나 소장품의 분리 및 양도 불가능 원칙의 규제 역시 받아야 함
- “프랑스 사립박물관” 인증을 받은 박물관은 어떤 프로젝트에도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소장품을 처분할 수 없음

#### ○ 2022년 현재 해당 법안의 입안 여부는 불투명하나 사립박물관 운영에 대한 합의된 판단과 문화 관광 정책에 관한 관심을 고려할 때, 사립박물관 인증제도에 관한

57) Jean-Noël Escudié, “Culture - Une proposition de loi pour aider et labelliser les musées privés,” *banquedesterritoires*, July 9th, 2018 <https://www.banquedesterritoires.fr/une-proposition-de-loi-pour-aider-et-labelliser-les-musees-privés>.

검토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마. 프랑스 평가인증제도의 시사점

- 전문 관장을 비롯하여 전문 학예 인력의 안정적인 고용 및 장기 고용 보장 여부를 평가 기준에 포함시킴으로써 전문 인력의 양성과 육성에 기여하는 박물관 평가 제도라고 할 수 있음
- 소장품 규모나 전시 횟수 못지않게 다양한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매개 프로그램에 관한 평가 비중이 높다는 점을 통해 공공재로서의 박물관의 성격을 강화하고 문화민주화에 기여할 수 있는 틀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음
- 2000년대 이후 매우 압축적인 방식으로 흥망을 거듭하고 있는 프랑스 사립박물관의 현황과 더불어 거대 자본의 박물관·미술관 업계 진출 현상을 고려했을 때, 전반적인 우리 사립박물관·미술관의 현황과 맞물려 살펴볼 지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됨
- 사립박물관·미술관이라고 하여도 기본적으로 비영리 공공재의 성격을 띠는 만큼, 이러한 성격을 강조하는 프랑스 박물관 평가 인증 제도의 전체적인 방향과 함께 공공박물관과의 적극적인 연계협력을 추구하는 부분 역시 우리 사립박물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여겨짐

## 3절 영국 사례

### 가.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개관

#### □ 박물관·미술관 정책 및 지원사업 관련 주요 조직

- 문화미디어스포츠부(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이하 DCMS)
  - 국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재정지원
  - 국립 박물관·미술관 소장품에 대한 오픈 액세스 및 소장품 불법거래 방지 정책
  - 울프슨 기금: 소장품의 가치를 증대하기 위한 지원(소장품 보존, 전시의 질적 향상, 전시에 대한 이용자 접근성 제고), 2022~24년 동안 약 63억 예산 책정
  - 정부보증제도: 전시 대여품에 대한 보험 및 압류 관련 지원
  - 국립 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정책
  - 국가 컬렉션 중 나치 압류품의 반환 조치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Arts Council England, 이하 ACE)
  - 국립 외 박물관·미술관 지원
  - 박물관·미술관 인증제도
  - 컬렉션 지정제도
  - 물납제 및 문화기부제도: 공공 컬렉션 확장 방안
- 복권기금: 박물관·미술관 프로그램 지원
- 박물관협회(Museum Association, 이하 MA)
  - 윤리강령 제정 및 지침 마련: 법령 준수 및 박물관 활동을 위한 공통 규범으로 운영 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박물관협회의 회원이 되기 위한 자격으로서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함
  - 평등·다양성·포용성 정책: 박물관협회 회원 모두에게 준수 및 이행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음: 나아가 박물관·미술관의 평등 수준을 분석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정책 자료 발간, 모니터링 등을 지속하고 있음
  - 박물관·미술관의 공적 신뢰 및 평판 유지를 위해 자체 징계 규정 운영: 위와 같이 윤리강령 및 평등·다양성·포용성 정책의 수립이 선언적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협회 회원들에게 준수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협회 차원의 징계를 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

여 시행함

## 나. 박물관·미술관 인증제도(Accreditation Scheme for Museums and Galleries in the United Kingdom)

### □ 등록제도에서 인증제도로

- 등록제도: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위원회에서 잉글랜드 예술위원회로 이관
  - 박물관의 질을 보증하기 위한 제도로서, 1988년부터 DCMS가 전액 예산을 보조하는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위원회(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가 박물관등록제도(Museum Registration Scheme)를 운영함
  - 정부조직 통폐합 과정에서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위원회가 ACE에 통폐합되면서 등록제도가 예술위원회 소관으로 이관되었음
  - 예술진흥을 위한 비정부 공공기구로 설립된 대영예술위원회(Arts Council of Great Britain, 1946)가 1994년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예술위원회로 분할되었고, 2002년에 ACE가 이 기구들을 총괄하게 됨
  - 이러한 상황에서 2011년에 박물관 및 도서관 업무는 ACE로, 아카이브 업무는 국립공문서관에 이관되면서, 2012년에 박물관·도서관·아카이브위원회가 폐지됨
- 등록제도에서 인증제도로의 변경(2004)
  - 영국 정부는 2004년에 등록제도를 현재의 박물관·미술관 인증제도로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와 같은 소관 기구의 통폐합을 거치면서 현재는 잉글랜드 예술위원회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 박물관·미술관 인증제도의 성격 및 위상

- 유럽표준기구의 박물관·미술관 표준 적용
  - 2010년부터 이 표준을 적용해 영국표준기관(BSI)이 개발을 주도하였고, 기존의 아카이브 및 도서관 표준을 폐지하고, 이를 새로운 뮤지엄 표준으로 사용하고 있음
  - 지속가능성, 위기관리, 친환경 전략, 건물 사양, 위험요소 확인, 공기질/환기, 해충/곰팡이 침해, 화재 방지 및 예방, 침수로부터의 보호, 조명 등의 항목을 포함함
- 인증제도의 위상: 박물관·미술관 대상 영국 산업표준
  - 모범적 사례를 정의하고 합의된 표준을 정하여, 뮤지엄이 현재와 미래의 이용자를 위해 발전하도록 장려하는 질적 표준임

-국립부터 소규모 뮤지엄에까지 모두 적용하며, 다양한 유형과 규모 등의 특색에 따라 적용함(평가지침을 통해 상세 규정)

○ 인증 표준의 변경

-시간의 흐름이나 환경 변화, 뮤지엄 분야의 발전 등에 따라 표준을 최신 상태로 갱신함  
 -인증 표준이 변경될 경우, 인증 뮤지엄들은 변경 관련 사전 공지를 받아, 변경된 인증 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하고, 충족 여부를 입증하게 됨

□ 박물관·미술관 인증제도의 목적 및 이점

○ 인증제도의 목적

-모든 박물관·미술관이 (1) 기관 운영 방법, (2) 소장품 관리 방법, (3) 이용자 경험에 관한 합의된 표준을 달성하도록 장려함  
 -박물관·미술관이 사회의 이익을 위해 소장품 및 공적 자금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조직이라는 신뢰를 갖도록 함  
 -모든 박물관·미술관을 위한 윤리적/전문적인 공유 기반을 강화함

○ 인증제도의 이점

성과 차원	성과 평가, 성취에 대한 보상 및 개선을 위한 권위 있는 기준 역할(질적 표준)
공적 인지도 획득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여 정부 기관 및 대중들에게 신뢰와 신용을 구축
인력 차원	이용자 요구 및 관심 충족 + 인력개발에 도움. 직원 사기 향상
파트너십	박물관·미술관 서비스를 검토해 기관 내·외부의 협력 장려
계획 차원	박물관·미술관의 절차 및 정책을 공식화하고, 향후 계획 수립에 도움
후원 차원	박물관·미술관이 국가표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하여, 공공 및 민간 지원을 위한 신뢰 구축

□ 박물관·미술관 인증제도의 참여자격 및 인증지위의 유지·변경

○ 인증제도 참여자격

-MA의 뮤지엄 정의 충족: “사람들이 영감을 얻고, 학습하며, 즐거움을 얻기 위해 소장품을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 뮤지엄은 사물과 표본을 수집, 보존하고 대중들이 접근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회의 신뢰를 획득해야 하는 기관이다.”  
 -장기적인 컬렉션을 보유해야 한다: 상설 컬렉션이 없는 고고학 유적, 역사적 건조물, 생물을 전시하는 동물원·수족관·식물원, 단기 전시장, 도서관, 공문서관, 인터넷으로만 컬렉션에 접근가

능한 시설, 수익을 배당하는 단체 등은 참여자격을 갖지 못함

- 공식적인 규정 문서에 의한 조직이 있어야 한다.
- 2년간의 회계장부를 제출해야 한다.
- 모든 법령, 윤리, 안전, 평등, 친환경 요건, 계획상의 요구 등을 얼마나 어떻게 충족하고 있는지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 이용자 서비스 개선을 위한 향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약정해야 한다.

○ 소규모 박물관·미술관의 참여자격 인정: '최저기준(baseline quality standard)' 적용

- 경영 규모가 작거나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규모 박물관·미술관에 대해서도 (1) 운영, (2) 컬렉션, (3) 이용자 등과 관련해 '최저기준(baseline quality standards)'를 적용하여 인증함: 이 '최저기준'에 의한 평가인증을 통해서 하위 25% 정도의 박물관·미술관의 질적 향상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됨

운영	목적, 경영주체, 운영방법, 장래계획, 컬렉션과 건물 등의 장기점유 여부, 재정기반, 충분한 경력을 가진 구성원 수, 운영 방침 수립 및 의사결정과정에 전문가 의견 반영, 방재체제, 환경에 대한 배려 등의 항목을 심사함
컬렉션	컬렉션에 대한 책임체제, 수집방법, 기록방침·계획·절차, 보존관리방침 및 계획,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 평가 등의 항목을 심사함
이용자	이용자 대응 방침, 이용자의 경험, 학습체험 등에서의 적절성을 기준으로 심사함

○ 인증심사 결과 및 조치

- 잉글랜드 예술위원회가 임명한 15명 내외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심사함
- 심사결과는 (1) 완전인증, (2) 잠정인증, (3) 인증연기, (4) 폐관, 자격상실, 다른 박물관과의 통합, 기준 미충족 등에 의한 인증취소, (5) 고의적인 비준수에 의한 배제 중에서 결정됨
- 2016년 11월 기준, 완전인증 1561관(90.7%), 잠정인증 160관(9.3%)으로, 전년도 대비 완전인증의 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인증상태 유지

- 인증 지위 획득 이후, 필요에 따라 2~3년마다 평가기관에 인증보고서를 제출하여, 인증요건 유지 여부를 입증해야 함

○ 인증 지위의 변화

-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시(인증)' 지위로 하락시키거나 인증 지위 자체를 박탈할 수 있음
- 이에 관해서는 인증위원회 및 인증 패널이 결정하고, 박물관·미술관이 자발적으로 인증 철회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함

□ 인증 기준 및 세부 인증 항목

○ 인증 기준의 범주 설정: (1) 조직 건전성, (2) 컬렉션, (3) 이용자와 그 경험

[표 6-4] 영국 박물관·미술관 인증 기준 및 세부 항목

인증 범주 및 기준	인증 항목 및 증빙 자료
<p><b>조직 건전성</b></p> <p>인증 유지범은 책임감 있고, 반응적이고, 탄력적이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확한 설립 목적을 제시한 공식 문서 유무</li> <hr/> <li>• 이사회/운영조직 관련 규범(규정)유무</li> <hr/> <li>• 운영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사회에서 이용자에 이르는 운영체계의 구비</li> <li>-이사회/운영조직이 소위원회, 직원, 자원봉사 위임 권한/책임 공식 승인 여부</li> <li>-의사결정과 정책개발에 적합한 전문인력 투입 여부</li> <li>-업무연속성과 책임을 보장할 절차 마련 여부</li> <li>-소장품 관리, 향후 계획 및 정책을 공식적으로 승인할 권한을 가진 사람/조직 유무</li> <li>-독립된 조직이 합법적으로 승인을 얻어 유지업을 운영하는지 여부</li> </ul> </li> <hr/> <li>• 효과적인 향후 계획: 장기적인 성공을 위해 효과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생존을 위해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설립목적 명시한 공식 문서</li> <li>-이전 계획의 검토</li> <li>-유지업 환경 분석</li> <li>-(전문가) 견해 분석 및 컨설팅 결과</li> <li>-유지업의 주요 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 방법</li> <li>-목표 달성을 위한 인력 및 재정 계획</li> </ul> </li> <hr/> <li>• 소장품 보유 건물 및 부지의 안전성: 12개월 이상 장기적인 건물 및 토지 점유 필수</li> <hr/> <li>• 재정 기반 입증: 재정 안정성 입증 필요. 재정 관련 합법성 충족. 가용 자금의 충분성 입증. 소장품 담보 대출 불가</li> <hr/> <li>• 유지업의 책임과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인력과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적절한 인력 규모</li> <li>-인력 활용에 관한 명확하고 공식적인 합의 입증. 역할과 책임 설정 내용 포함.</li> <li>-신입 직원 대상 공식 교육 절차: 유지업의 모든 인력이 유지업 기본 정보를 숙지하고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는 전제 조건</li> <li>-인력의 경력 개발 및 발전 기회 제공</li> </ul> </li> <hr/> <li>• 정책 개발 및 의사결정에 대한 전문적 의견 수렴: 전문가 직접 채용 또는 서면계약에 의한 멘토링</li> <hr/> <li>•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비상계획: 긴급상황이나 재난상황에 대한 효과적 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직원, 이용자, 소장품 관련 규정 유무</li> <li>-위협 요인에 대한 평가</li> <li>-비상계획의 승인, 유지, 전달, 시행 등과 관련된 정보 제공</li> </ul> </li> </ul>

인증 범주 및 기준	인증 항목 및 증빙 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상계획 실행 관련 업무의 입증 자료</li> <li>-비상계획 검토 절차 유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기관 규정 및 대책</li> <li>-친환경적이기 위한 폐기물 저감 등 자체 정책 수립 및 실행 여부</li> <li>-설립 목적을 명시한 공식 문서에 친환경적 접근 관련 규정 명시 여부</li> </ul>
<p><b>컬렉션</b></p> <p>인증 뮤지엄은 컬렉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그 정보를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컬렉션 소유권에 관한 규정 및 협정: 뮤지엄이 모든 컬렉션에 대해 책임 필수. 컬렉션의 규모, 대여 소장품 비율 등에 관한 정보 제공.</li> <li>• 컬렉션 개발 정책: 소장품 획득 및 폐기 정책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컬렉션 개발 목적을 명시한 공식 문서</li> <li>-현재 컬렉션 개요</li> <li>-향후 수집 주제 및 우선순위</li> <li>-폐기 우선순위</li> <li>-수집 및 폐기 관련 법적/윤리적 대응체제에 관한 정보 제공</li> </ul> </li> </ul>
<p>컬렉션은 뮤지엄의 설립목적, 정책, 전략적 비전에 명시된 바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컬렉션 기록화 정책: 컬렉션 정보 정책의 일부로서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록 관련 절차를 담은 매뉴얼 마련 여부</li> </ul> </li> <li>• 컬렉션 관리 및 보존 정책: 이에 해당하는 공식 정책 문서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컬렉션 보안 관련 최소 5년마다 전문적인 자문, 실행계획 수립, 이행 여부 확인</li> </ul> </li> </ul>
<p><b>이용자와 그 경험</b></p> <p>인증 뮤지엄은 이용자를 환영하는 접근가능한 장소여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질의 서비스 개발: 이용자 및 잠재적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용자와 비이용자의 파악 및 이해</li> <li>-이용자 요구를 평가하기 위한 정보 수집 및 분석</li> <li>-이용자 범위 확대를 위한 계획 수립</li> <li>-모든 이용자가 존중받을 수 있는 고객관리 문화 정착</li> <li>-모든 사람이 소장품 및 관련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명시한 정책 수립. 이용자 요구사항 고려 필수.</li> <li>-지역 관광 및 기타 우선 해결 과제에 대해 응답하는 태도</li> </ul> </li> </ul>
<p>뮤지엄은 소장품을 전시하고, 광범위한 이용자를 위해 양질의 서비스를 개발,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용자 중심 경험: 이용자를 환영하고, 그들이 접근가능한 환경, 적절한 서비스와 시설 제공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예상 이용자 수를 충족시키고,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 구비</li> <li>-건물 내외부에 적절한 표지판과 방향 표시</li> <li>-다양한 마케팅을 통해 이용자 및 잠재적 이용자와 효과적으로 소통</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효과적인 학습 경험: 뮤지엄의 핵심 목적으로서의 학습. 전시 및 학습 기회 제공을 위한 기본 정보 제공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해석 방법을 통한 컬렉션 전시</li> <li>-연구 및 그 외 참여 방법을 통한 컬렉션 관련 정보 접근성 제고</li> <li>-컬렉션에 초점을 맞춘 효과적인 학습 및 발견 경험 제공</li> </ul> </li> </ul>

## 다. 특징 및 시사점

- 국제적인 박물관·미술관 정책 동향 및 표준/규범의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 조직(합법성 및 건전성), 인력(전문성 함양 및 경력 개발, 채용, 계약 등), 재정 등의 법적 규정 구체화
- 질적 수준 향상, 사회적/공적 신뢰 구축, 사회적 역할 확대 도모
  - 재정여건의 악화 또는 재원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 지원/후원 확보로 운영난 타개를 위한 전략임
  - 질적 수준 향상 및 사회적/공적 신뢰 구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등록제도를 인증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학습/교육 기능 강화 기초: 이를 위한 소장품 수집, 보존, 연구, 전시 등 기본기능 강화 추진
- 지속가능성(친환경), 평등, 다양성, 포용성, 언론/표현의 자유 등 시의성 높은 사회적 가치 규범화
  - 박물관·미술관의 윤리규정, 사회적 책임, 공적 가치 등을 전면화(박물관·미술관의 존재이유 개발)
- 정부 정책 및 지원과의 적극적인 연계: 박물관·미술관 정책 범위를 넘어선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연계 및 개발 적극 추진
- 정부 차원의 질적 향상 및 공적 신뢰도 제고를 위한 인증제도와 별도로, 박물관협회 차원의 정책 추진
  - 책임 있는 박물관·미술관 정책 개발 및 실행 기구로서 박물관협회의 존재감 및 활동 비중 높음
  - 정부 차원의 정책과 독립적으로 박물관·미술관 윤리규정, 평등·다양성·포용성 정책 개발 및 시행, 자체 징계 규정 등 운영
  - 정부 차원의 인증요건을 준수하면서 다양한 유형과 규모에 부합하는 기준과 요건을 개발하여 정부 정책 보완, 실행력 제고 역할
- 인증 결과에 따른 지원 증감이 아니라, 인증제도와 별도로 질적 향상을 위한 여러 제도 및 지원 마련
  - 일본의 평가제도와 유사하게, 인증제도는 질적 향상을 위한 박물관·미술관의 기준 준수 및 향상 노력을 중요 요건으로 간주
  - 컬렉션 지정제도-물납제-문화기부제도, 소장품 가치 증대를 위한 전시/해석 활동 지원 등이 함께 이루어짐으로써 질적 향상이라는 정책 기초를 종합적으로 달성해가는 정책 구조 형성

## 4절 일본 사례

### 가. 박물관정책의 개관

#### □ 문화청의 박물관정책과 「박물관법」의 위상

##### ○ 박물관 주무부처로서의 문화청(문부과학성 외청)

- 문화청은 문부과학성의 외청으로서 문화예술 및 문화유산 관련 정책에 특화된 업무를 수행
- 예술문화, 문화재, 저작권, 국제문화교류 및 국제공헌, 국어정책 및 일본어교육, 종교법인 및 종무행정, 박물관 등을 담당하고 있음
- 박물관과 관련해서는 (1) 박물관 지원, (2) 박물관 관련 연수, (3) 미술품보상제도, (4) 해외미술품 등 공개촉진법 등, (5) 전시회 개최에 따른 출품 작품에 대한 민사재판권 면제, (6) 등록미술품제도, (7) 공개승인시설, (8) 박물관 진흥, (9) 국립박물관·미술관의 재발전 등을 주요 정책으로서 공표하고 있음

##### ○ 박물관 관련 법률의 위상: 「교육기본법」, 「사회교육법」, 「문화예술진흥기본법」, 「박물관법」 그 외 관련 법률과의 관계

- 「박물관법」은 「사회교육법」의 정신에 기초해 박물관을 설립·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교육법」은 「교육기본법」의 정신에 입각해 “사회교육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기본적으로 일본은 박물관을 교육정책의 틀 내에서 위치시키고 ‘사회교육기관’으로 규정하는 특징을 보임
- ‘사회교육’이란 학교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 아닌, 주로 청소년 및 성인에 대한 조직적인 교육활동(체육 및 레크리에이션 활동 포함)을 의미함
- 또한 박물관의 설립·운영과 관련해 중요한 규정력을 갖는 법률들은 비단 「박물관법」에 그치지 않는데, 문화정책과 박물관정책의 관계를 규정하는 「문화예술진흥기본법」 및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국립박물관에 관한 「독립행정법인국립과학박물관법」, 「독립행정법인국립미술관법」, 「독립행정법인국립문화재기구법」, 그 외에 「문화재보호법」, 「미술관에서의 미술품 공개 촉진에 관한 법률」, 「동물 애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이러한 법률들과의 관계 속에서 「박물관법」은 주로 박물관 관련 일반 사항과 더불어 공립·사립박물관 및 유사시설에 관한 설립, 운영,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음
- 2022년 2월, 「박물관법」의 개정으로 「사회교육법」뿐 아니라 「문화예술진흥기본법」의 정신을 토대로 한다는 점을 추가적으로 규정함

□ 박물관정책의 변화: 규제완화(1988~2007)에서 질적 향상을 위한 강화(2008~ )로

- 1951, 「박물관법」 제정
  - 제8조에서 '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상 바람직한 기준'을 별도로 제정할 것을 규정함
- 1973, <공립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상의 기준> 제정
- 1988, '지방분권추진계획'에 근거해, 학예사 수적 기준 삭제하는 「박물관법」 일부 개정
- 2003, 정량적 규정 철폐 등의 「박물관법」 전부 개정(지방분권개혁추진회 제언)
- 2008, 「박물관법」 개정
  - 사회교육 차원에서 교육활동 등의 기회 제공 및 장려
  - 박물관 운영 상황에 관한 평가 및 개선 의무화
  - 지역주민 등에 대한 박물관 운영 정보 등의 제공 의무화
  - 학예원 및 학예원 보조의 자격 향상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연수 시행
- 2011, <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상의 바람직한 기준> 신설
- 2017~2021, 「박물관법」 개정 논의(일본학술회의 제언)
  - 박물관 수준 향상을 위한 제도 설계 및 연구기능 충실화: 학예원에게 학술연구지원 신청 자격 부여
  - 등록제도를 인증제도로 전환: 인증박물관제도의 인증기준 책정, 평가 등을 담당할 제3의 기관 설치
  - 문화성(문화부) 창설로 박물관 운영 개선과 기능 강화 실현: 문화청을 문화성으로 승격할 것(박물관 업무는 2018년에 문부과학성에서 문화청으로 이관된 것)
- 2022, 「박물관법」 일부 개정(2023년 4월 1일 시행)
  - 법의 목적 조항에서 <사회교육법>뿐 아니라 <문화예술진흥기본법>의 정신에 기초를 둔다는 점을 명시함
  - 박물관 사업에 박물관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브화를 추가하고, (1)다른 박물관과의 연계협력, (2)지역의 다양한 주체와의 연계협력, (3)문화관광 등의 활동을 통한 지역의 활력 향상에 기여 등을 의무화함
  - 박물관 설립주체를 일반사단법인 및 일반재단법인으로 한정했던 것을 법인 종류에 상관없이 등록 가능하도록 하고, 설립주체가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 및 사회적 신망을 가지고 있어야 함을 등록요건으로 규정함
  - 등록심사 시,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의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등록

박물관의 설립주체가 박물관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이 보고와 관련해 교육위원회는 적절한 운영상황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권고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 현재 「박물관법」의 주요 내용

### ○ 법의 구성체계

- 「박물관법」은 총칙, 등록, 공립박물관, 사립박물관, 잡칙, 부칙 등 총 29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 초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음

### ○ 설립목적 및 설립주체 정의: ‘설립목적’의 명확화 및 ‘설립주체’를 법인으로 제한

- 「박물관법」은 사회교육 성격에 충실하도록 박물관의 설립목적을 (1)역사, 예술, 민속, 산업, 자연과학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관, 전시해 교육적 배려 하에 일반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2)박물관자료 관련 일반공중의 교양, 조사연구, 레크리에이션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며, (3)박물관자료에 관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것 모두를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함

-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박물관·미술관의 ‘설립목적’에 관해 자의적 해석과 인식상의 혼동이 확인 되는데, 「박미법」의 모델인 일본 「박물관법」의 경우 법률 및 박물관정책 일반에서 지칭하는 ‘설립목적’이란 위와 같이 「박물관법」에서의 정의 조항에 의해 규정된 사항을 말함: 한국에서도 「박물관법」 및 「박미법」 제정 당시에는 이와 같은 의미로 ‘설립목적’이 사용되었으나, 이후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의미에 혼동이 종종 확인됨

- 또한 설립주체는 지방자치단체(공립),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 종교법인 등의 법인(사립)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지정관리자제도’ 등으로 인해 설립주체와 운영주체가 구별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설립·운영주체’와 같이 설립주체와 운영주체를 동일시하는 정의 방식을 취하지 않음

### ○ 박물관과 ‘박물관 상당 시설’의 법적 구분

- 한국에서는 박물관·미술관과 그 유사시설을 ‘제1종 박물관·미술관’과 ‘제2종 박물관·미술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구분함으로써 일괄 박물관·미술관으로 통칭하고 있으나, 일본 「박물관법」의 경우 박물관과 ‘박물관상당시설’을 법적으로 구별하고 있음

### ○ 공립 및 사립박물관의 등록 의무화

- 일본의 박물관정책은 기본적으로 교육정책과의 연계성이 높아 박물관 등록 업무를 지자체뿐 아니라 주로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한국의 교육감에 해당) 소관으로 정함

- 또한 박물관에 대한 법적 정의가 ‘등록’을 포함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모든 공립 및 사립박물관의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음

### ○ 설립·운영 기준, 운영평가, 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화

- 박물관·미술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법과 별도로 설립·운영기준을 제정함

- 이 기준에 따라 각 박물관이 운영평가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의 공표 및 개선조치, 개선조치에 관한 공표를 모두 의무화하고 있음
- 인력 관련 규정: 관장, 학예원, 학예원 보조, 그 외 직원
  - 「박미법」과 달리 관장, 학예원, 학예원 보조, 그 외 직원까지를 포괄하는 규정을 담고 있음
  - 학예원 및 학예원 보조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학예원 및 학예원 보조의 연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들의 연수에 대한 책임은 국가와 지자체 교육위원회에 있음
- 공립박물관과 사립박물관의 차별화: 공적 책임 및 지원의 차별화
  - 실제로 「박물관법」의 공립박물관 장과 사립박물관 장은 조항 수에서도 현격히 차이가 나는데, 이러한 차이는 이 법이 공립박물관에 대한 공적 책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공립박물관에 대해 이 법은 지자체 조례로 설립 규정을 둘 것, 광역자치단체 교육위원회 소관으로 할 것,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그 중지와 반환에 관한 규정, 그 외 관람료 등의 징수 금지, 박물관협의회 등에 관한 규정을 담고 있음
  - 이 중에서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박물관에 대한 국고보조금 교부 및 그 교부중지·반환에 관한 조항은 일반적인 국고보조금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담기 어려운 박물관 법제에 특화된 사항들을 규정해 주고, 국고보조금을 매개로 발생하는 국가와 지자체 사이의 공적 책무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중요한 조항이라 할 수 있음
  - 반면 사립박물관에 대해서는 단 2개의 조항만이 있는데, 하나는 교육위원회에 대한 사립박물관의 보고 및 조언 관련 조항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 및 지자체가 사립관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임

[표 6-5] 일본 「박물관법」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법률의 목적)** 이 법률은 <사회교육법>의 정신에 기초해 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해 그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교육, 학술 및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률에서 ‘**박물관**’이란 역사, 예술, 민속, 산업, 자연과학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 보관, 전시해 교육적 배려 하에 일반공중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자료 관련 교양, 조사연구, 레크리에이션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실시하며, 이 자료들에 관한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도서관 제외) 중에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 종교법인 또는 시행령에 따른 다른 법인(독립행정법인 제외)**이 설립한 것으로 다음 장에 의한 등록을 마친 것을 말한다.

② 이 법률에서 ‘**공립박물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박물관을 말하고, ‘**사립박물관**’이란 일반사단법인 또는 일반재단법인, 종교법인 또는 시행령에 따른 법인이 설립한 박물관을 말한다.

③ 이 법률에서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 보관, 또는 전시하는 자료(전자적 방식, 정기적 방식, 그 외 인간의 지각에 의해 인식할 수 없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전자적 기록’을 포함)를 말한다.

**제3조(박물관 사업)** ① 박물관은 제2조제1항이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실시한다.

1. 실물, 표본, 모사, 모형, 문헌, 도표, 사진, 필름, 레코드 등의 박물관자료를 풍부하게 수집, 보관, 또는 전시할 것
  2. 분관을 설치하거나, 박물관자료를 해당 박물관 외에서 전시할 것
  3. 일반공중에 대해서 박물관자료의 이용에 필요한 설명, 조언, 지도 등을 행하거나, 또는 연구실, 실험실, 공작실, 도서실 등을 설치해서 이용하게 할 것
  4. 박물관자료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인 조사연구를 행할 것
  5. 박물관자료의 보관 및 전시 등에 관한 기술적 연구를 행할 것
  6. 박물관자료에 관한 안내서, 해설서, 목록, 도록, 연보, 조사연구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배포할 것
  7. 박물관자료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영사회, 연구회 등을 주최하고 그 개최를 원조할 것
  8. 해당 박물관 소재지 또는 그 주변에 있는 <문화재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재에 대해 해설서 또는 목록을 작성하는 등 일반공중에 의한 해당 문화재 이용의 편의를 도모할 것
  9. 사회교육에서의 학습기회를 이용해 얻은 학습성과를 활용한 교육활동이나 그 외 활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그러한 기회 제공을 장려할 것
  10. 다른 박물관, 박물관과 동일한 목적을 가진 국가 시설 등과 긴밀하게 연락, 협력하고, 간행물 및 정보 교환, 박물관자료의 상호대여 등을 행할 것
  11. 학교, 도서관, 연구소, 공민관 등의 교육, 학술 및 문화 관련 모든 시설과 협력하고 그 활동을 원조할 것
- ② 박물관은 그 사업을 행할 때 토지의 사정을 고려하고 국민의 실생활 향상에 노력하며, 학교교육을 원조할 수 있도록 유의해야만 한다.

**제4조(관장, 학예원, 그 외 직원)** ① 박물관에 관장을 둔다.

- ② 관장은 박물관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며 박물관의 임무 달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 ③ 박물관에 전문적 직원으로서 학예원을 둔다.
- ④ 학예원은 박물관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및 조사연구, 그 외 이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전문적 사항을 담당한다.
- ⑤ 박물관에 관장 및 학예원 외에 학예원 보조 및 그 외 직원을 둘 수 있다.
- ⑥ 학예원 보조는 학예원의 직무를 돕는다.

**제5조(학예원의 자격)** ① 다음 각호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는 학예원이 될 자격을 갖는다.

1. 학사 학위를 갖고 대학에서 문부과학성령이 정한 박물관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
  2. 대학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1호의 과목을 포함해 6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로서, 3년 이상 학예원 보조의 직에 있었던 자
  3. 문부과학대신이 문부과학성령에 의해 2호와 동등 이상의 학력 및 경험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자
- ② 제1항제2호의 학예원 보조의 직에는 관공서, 학교, 또는 사회교육시설(박물관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실시하는 시설 포함)의 직으로, 사회교육주사, 사서, 그 외 학예원 보조의 직과 동등 이상의 직으로 문부과학대신이 지정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제6조(학예원 보조의 자격)** <학교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학예원 보조가 될 자격을 갖는다.

**제7조(학예원 및 학예원 보조의 연수)** 문부과학대신 및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는 학예원 및 학예원 보조에 대해 그 자질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연수를 행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설립 및 운영상의 바람직한 기준)** 문부과학대신은 박물관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상 바람직한 기준을 정해, 이것을 공표해야 한다.

**제9조(운영 상황에 관한 평가 등)** 박물관은 해당 박물관의 운영 상황에 대해 평가를 행하고, 그 결과에 근거해 박물관 운영 개선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

**제9조의2(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제공)** 박물관은 해당 박물관의 사업에 관한 지역주민, 그 외 관계자의 이해를 심화시키고, 이들과의 연락 및 협력에 기여하기 위해, 해당 박물관의 운영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만 한다.

## 제2장 등록

**제10조(등록)** 박물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해당 박물관에 대해, 해당 박물관이 소재한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해당 박물관(도도부현이 설립한 것은 제외)이 지정도시(<지방자치법> 제252조의19제1항의 지정도시를 말함)의 구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도시의 교육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제11조(등록의 신청)** 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을 받으려는 자는 설립하려는 박물관에 대해 아래 사항을 기록한 등록신청서를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설립자의 명칭 및 사립박물관은 경우는 설립자의 주소
2. 명칭
3. 소재지

② 제①항의 등록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만 한다.

1. 공립박물관은 설립 조례 사본, 관칙 사본, 직접 박물관용으로 제공하는 건물 및 토지 면적을 기재한 서면 및 도면,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 세출 견적에 관한 서류, 박물관자료 목록, 관장 및 학예원 성명을 기재한 서면
2. 사립박물관은 해당 법인의 정관 사본 또는 해당 종교법인 규칙 사본, 관칙 사본, 직접 박물관용으로 제공하는 건물 및 토지 면적을 기재한 서면 및 도면, 해당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 견적에 관한 서류, 박물관자료 목록, 관장 및 학예원 성명을 기재한 서면

**제12조(등록요건의 심사)**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 해당 신청에 관한 박물관이 아래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 심사하여 구비하고 있음이 인정될 때에는 아래 각호의 사항 및 등록 연월일을 박물관등록원부에 등록하고, 등록 여부를 해당 등록신청자에게 통지한다. 등록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 때에는 등록하지 않음을 그 이유를 첨부한 서면으로 해당 등록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박물관자료가 있을 것
2.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학예원과 그 외 직원이 있을 것
3.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건물 및 토지가 있을 것
4. 1년 중 150일 이상을 개관할 것

**제13조(등록사항 등의 변경)** ① 박물관 설립자는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제1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첨부서류의 기재사항에서 중요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야만 한다.

②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제11조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음을 알았을 때, 해당 박물관에 관한 등록사항의 변경등록을 해야만 한다.

**제14조(등록취소)** ①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박물관이 제12조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알았을 때, 또는 허위로 신청해 등록한 사실을 발견했을 때, 해당 박물관에 관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단, 박물관이 천재나 그 외 어쩔 수 없는 사유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날부터 2년간은 취소하지 않는다.

②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제①항에 의해 등록을 취소할 때 해당 박물관 설립자에게 신속히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5조(박물관의 폐지)** ① 박물관 설립자는 박물관을 폐지했을 때 신속히 그 사실을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②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박물관 설립자가 해당 박물관을 폐지했을 때 해당 박물관에 관한 등록을

---

---

말소해야 한다.

**제16조(규칙에의 위임)** 이 장에서 정한 것 외에 박물관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도도부현 교육위원회의 규칙에서 정한다.

**제17조 삭제**

**제3장 공립박물관**

**제18조(설립)** 공립박물관의 설립에 관한 사항은 해당 박물관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

**제19조(소관)** 공립박물관은 해당 박물관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설립, 관리, 폐지에 관한 사무를 관리, 집행하는 박물관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소관에 속한다.

**제20조(박물관협의회)** ① 공립박물관에 박물관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박물관협의회는 박물관의 운영에 관해 관장의 자문에 응하고, 관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으로 한다.

**제21조** 박물관협의회회의의 위원은 해당 박물관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 교육위원회가 임명한다.

**제22조** 박물관협의회회의의 설치, 그 위원의 임명 기준, 정족수 및 임기, 그 외 박물관협의회회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해당 박물관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임명 기준에 대해서는 문부과학성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참작해야 한다.

**제23조(관람료 등)** 공립박물관은 관람료, 그 외 박물관자료의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징수해서는 안 된다. 단, 박물관의 유지운영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는 필요한 대가를 징수할 수 있다.

**제24조(박물관의 보조)** ① 국가는 박물관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예산 범위 내에서 박물관의 시설, 설비에 필요한 경비, 그 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교부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삭제**

**제26조(보조금 교부중지 및 보조금 반환)** 국가는 박물관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 아래 각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연도 이후 보조금 교부를 중지하고, 제1호의 취소가 허위 신청에 의해 등록한 사실의 발견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미 교부한 해당 연도의 보조금을 반환하게 해야 한다.

1. 해당 박물관에 대해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취소가 있었을 때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박물관을 폐지했을 때
3.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반되었을 때
4. 지방자치단체가 허위의 방법으로 보조금 교부를 받았을 때

**제4장 사립박물관**

**제27조(도도부현 교육위원회와의 관계)** ①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박물관에 관한 지도자료의 작성 및 조사연구를 위해 사립박물관에 대해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도도부현 교육위원회는 사립박물관에 대해 그 요구에 응해서 사립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해 전문적, 기술적 지도 또는 조언을 해줄 수 있다.

**제28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박물관에 대해 그 요구에 응해서 필요한 물자의 확보에 한해 원조를 할 수 있다.

**제5장 잡칙**

**제29조(박물관에 상당하는 시설)** 박물관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을 하는 시설로서 국가 또는 독립행정법인이

---

---

설립한 시설은 문부과학대신이, 그 외 시설은 해당 시설이 소재한 도도부현 교육위원회(해당 시설이 지정도시 구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는 해당 지정도시 교육위원회)가 문부과학성령의 규정에 따라 박물관에 상당하는 시설로서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제27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 나. 「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상의 바람직한 기준」의 신설(2011)

### □ 배경: 「박물관법」 개정(2008)과 「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상의 바람직한 기준」

- 지방분권과 「박물관법」의 수량적 기준 전부 철폐
  - 「박물관법」(1951) 제8조에서 ‘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상 바람직한 기준’을 정하도록 했으나, 이 기준이 장기간 제정되지 않고 있다가 1973년에 「공립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상의 기준」이 제정, 고시됨
  - 2003년, 지방분권개혁추진회의의 제언 등에 의해, 정량적 규정을 철폐하는 등의 전부개정이 이루어지고, 「공립박물관 설립 및 운영상의 바람직한 기준」이 고시됨
- 「박물관법」 개정(2008)과 함께 「공립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기준」(1973)을 폐지하고 「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상의 바람직한 기준」을 신설
  - 「박물관법」 주요 개정 내용: 박물관 평가의 신규 도입, 평가 결과에 따른 운영 개선 의무화
  - 공립박물관에만 적용했던 ‘설립 및 운영 기준’을 모든 박물관으로 확대 적용
- 「박물관법」 개정(2008) 당시 일본 박물관 현황 및 문제점
  - 박물관 수(2008): 총 5,775관으로 3년 전 대비 161관(2.9%) 증가. 등록박물관은 907관, 박물관 상당 시설로 지정된 것은 341관, 합계 1,248관(총 4.3% 증가). 등록박물관 및 박물관 상당 시설 합계가 박물관 전체에서 점하는 비율은 약 21.6%로 낮아, 등록제도가 박물관 활동에 관한 국가적 기준을 형성하는 데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못한다는 문제의식 심화
  - 직원 수(사무직원 포함): 2008년에 약 4만6천명. 1관당 평균 약 8명. 전문직원인 학예원(학예원 보조 포함)은 1관당 평균 1.2명임. 연간 1만 명 정도가 새로 학예사 자격을 취득하나 상근 학예사로 채용되는 사람은 연간 400명 정도로, 1관 당 평균 신규 채용자 수 0.2명임. 연간 신규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박물관이 전체의 70%를 차지. 이에 학예사 자격의 고도화, 학예사 배치(채용) 등의 과제가 심각하게 대두함
  - 관람자 수: 2007년에 약 2억8천만명. 국민 1인당 연간 평균 2회 이상 방문. 박물관 수 증가로 1관당 관람자 수는 감소 경향. 관 종별로 보면, 역사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동물원, 수족관, 종합박물관, 식물원 순으로 많음
  - 자료구입비: 2007년에 조사에 응한 박물관의 56.6%가 예산이 없고, 20.6%가 100만엔 미만

-자기평가 실시 상황: 2008년에 조사에 응한 박물관 중 25.1%가 자기평가를 실시. 박물관의 15.2%가 외부평가를 실시.

○ 「박물관법」 개정(2008) 당시 박물관의 질적 향상 및 교육·연구 기능 고도화 논의

-「대화와 연대의 박물관」(일본박물관협회): 영미 사례를 모델로, 평생학습사회의 교육시스템 구축을 위한 박물관의 교육 기능을 강조하고, '수집하고 전달하는' 박물관의 기본활동에 더해, 시민과 함께 자료를 '탐구'하고 앎의 즐거움을 '나누는' 박물관 문화 창조를 제안함

-이러한 방향 하에서 자료의 수집/보관, 조사연구, 전시 등의 기반을 강화하고, 교류, 시민참여, 연대를 통해 학습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 강화는 물론, 다양화, 고도화하는 학습자의 지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학습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함: 박물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정보공개 요구 및 박물관 운영 개선 필요성이 함께 제기됨

-한편 「박물관법」의 박물관 정의를 재검토할 필요성도 대두: 법상 박물관은 자료의 수집/보관, 자료의 전시/교육, 자료의 조사연구 등의 기능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 세 기능이 불가분한 일체로서 작동해야 함. 따라서 박물관의 사명이나 계획에 기초한 일관된 조사연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등록박물관의 기준을 충족한다고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임(박물관에서의 '즐거움'은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 교육과 학습을 촉진시키는 데 필요한 요소여야 함)

○ 「박물관법」 개정(2008) 당시 등록제도 강화 및 인증제도 도입 관련 논의

-박물관 등록제도(등록기준의 심사)의 이상적 방향 모색: 바람직한 박물관상을 사회가 공유하고, 이를 위해 박물관이 지속적인 개선, 향상을 목표로 노력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제도여야 하고, 박물관 등록제도가 훌륭한 제도로 인식되어 등록박물관을 목표로 했을 때의 이득과 장점이 증가하도록 해야 함

-즉 "박물관 설립주체, 박물관, 박물관 이용자 등 박물관에 관계되는 사회적 주체들이 박물관의 공익성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박물관상을 공유하여, 박물관의 개선 및 향상을 지속해 나가는 데 기여함으로써, 각각의 박물관이 이용자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을 지향함

-영국의 인증제도를 모델로 한 등록제도 개선 방안 모색: "사회를 위해 위탁받은 컬렉션을 가지고,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책임을 갖고 공공의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박물관에 대한 신뢰를 키우는 것"을 지향함

-박물관 운영방식, 이용자 서비스, 이용자용 시설, 수장품 관리 등의 활동을 심사: (1)학예사 배치, 설립주체의 차이, 시설 규모 등에 따라, 등록박물관으로 당연히 충족시켜야 할 요건 및 기능을 갖추도록 확인할 것, (2)박물관이 공공에 기여하는 사명과 계획을 설정하고 박물관 활동을 통해 이를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가를 심사할 수 있을 것, (3)일본 박물관의 다수를 차지하는 중소 박물관 및 사립박물관을 비롯해, 가능한 한 많은 박물관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할 것, (4)사립 등록박물관에 대한 세제상 혜택이 등록제도의 의의를 보다 높이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함께 고려함

-이러한 관점에서 '박물관상당시설 지정제도'를 등록제도로 일원화하는 것은 물론, 국립박물관,

독립행정법인 박물관, 대학박물관, 지자체 설립 박물관, 기업박물관, 개인박물관 등을 모두 등록 제도로 포괄하는 방안을 검토함: 단, 영리법인이나 개인 설립 박물관의 경우, ICOM에서 정하는 박물관의 '비영리성'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등록박물관에 포함시키지 않는 쪽으로 논의가 전개됨

- 박물관의 다양화를 존중하고, 자주적인 운영개선을 촉진하는 등록제도의 설계방안 모색: 모든 박물관에 적용되는 '공통기준'과 다양성을 고려한 '특정기준'을 함께 운용하고, 심사기준의 중심 축은 경영(매니지먼트), 자료(컬렉션), 교류(커뮤니케이션)로 설정함
- '등록' 사실의 적극적인 공개 및 '등록박물관' 명칭 사용 제한: 등록여부는 물론, 등록기준의 충족 수준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등록박물관에 대해서는 '등록박물관'이라는 명칭의 독점적 사용 권한을 부여하며, 통일된 표시판을 통해 인지 효과를 높이도록 함
- 등록제도를 인증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이나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됨

## □ 새로운 '바람직한 기준' 수립 시의 관점 및 고려사항

### ○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과 향후 방향

- 1990년대 전반에 버블경제가 붕괴하고 일본 경제가 악화되면서, 문화예술 관계 예산 및 인원이 축소, 삭감되는 경향이 확산되어 현재까지 지속되는 와중에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을 새롭게 검토하고, 박물관이 해야 할 역할을 명확하게 할 것이 요구되어, 전시나 교육보급 등의 사업을 통해 사회에서 박물관의 역할을 널리 확장하고 알리는 정책 마련이 필요해짐
- 또한 박물관 운영재원 대부분은 그전까지 설립자의 부담이었으나, 앞으로는 자료 기증 등도 포함해 폭넓은 재원 확보 노력이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됨. 이를 위해서도 직접적인 박물관 이용자뿐 아니라, 널리 지역주민에게 현재 박물관의 존재를 알림으로써 박물관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이해를 얻는 것이 중요해짐
- 앞으로 박물관에는 경영 및 사업 평가, 학교나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 이용자에게 맞는 서비스와 같은 관점에서 활동을 더욱 충실히 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음

### ○ 박물관 등록제도와와의 관계

- 박물관 등록요건(「박물관법」 제12조)은 등록박물관 심사를 할 때의 최소한의 기준임
- 이에 대해 '바람직한 기준'은 박물관이 지향해야 할, 보다 높은 수준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으로, 더욱 충실한 내용으로 보강해 나아갈 필요가 있음

### ○ 박물관 윤리규정과와의 관계

- 공립박물관에서는 지정관리자제도의 도입, 행정개혁의 진전과 함께 비상근직원의 증가, 자원봉사자의 도입 등이 두드러지고, 사립박물관에서도 신공익법인제도가 도입되어 학예사를 비롯한 박물관 직원의 공공성을 담보할 근거 확립이 시급해짐
- 유럽과 미국에서는, 박물관 윤리강령이 정해져, 박물관 활동의 공공성을 보충하기 위한 지침

및 박물관 전문직원의 행동규범이 명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일본에서는 이러한 지침이 없고, 국제박물관협회 윤리규정을 활용한 박물관도 소수임

- 향후 일본 박물관이 국제교류나 국제적 연계를 추진하고 해외로부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ICOM 윤리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일본 독자적인 윤리규정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강함

#### ○ 박물관 종별, 규모별 고려사항

- 박물관의 종다양성(미술관, 역사박물관, 과학박물관, 동물원, 수족관, 식물원 등)과 규모/형태의 다양성(대규모 종합박물관부터 소규모 특정 테마를 다루는 박물관까지 다양)
- 모든 박물관에 새로운 바람직한 기준의 모든 항목을 적용하는 것이 반드시 현실적이지 않고, 관의 종별, 규모별 차이를 고려해, 필요한 부분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함

#### ○ 기존의 '바람직한 기준'이 대상으로 하지 않는 시설에 대한 고려사항

- 기존 바람직한 기준은 공립의 등록박물관만을 대상으로 함. 이는 2008년도 사회교육조사에 의하면, 등록박물관 및 박물관 상당 시설, 박물관 유사 시설 전체의 9.6%에 불과함
- 이미 2007년에 제안한 등록제도 개선 방향과 동일한 방향을 지향해야 함: 설립주체에 상관 없이 등록제도를 일괄 적용할 것 제안함. "박물관 설립주체, 박물관, 박물관 이용자 등 사회에서 박물관에 관여하는 사람 모두가 박물관의 공익성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박물관상을 공유하며, 계속적으로 박물관의 개선, 향상을 지향해 가는 데 기여하게 함으로써, 해당 박물관이 이용자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 그 의이라 지적함. 또한 "박물관법의 목적인, 국민교육, 학술 및 문화 발전에의 기여는 설립주체에 관계없이 모든 박물관에 요구되는 역할"이므로 등록대상을 한정하지 말 것을 제안함
- 설립주체의 구별에 관계없이, 박물관을 충실히 하는 것이 국민 이익에 이어진다는 생각으로 접근. 따라서 새로운 바람직한 기준의 대상에는 박물관법에 의한 사립박물관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함
- 사립박물관에 대해서는 그 성격을 고려해 설립주체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충분히 살린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
- 박물관 상당 시설, 박물관 유사 시설의 경우, 박물관과 동등한 기능을 가진 경우가 많아, 새로운 바람직한 기준을 참고해 운영하는 것이 적절함

#### ○ 새로운 '바람직한 기준'의 활용

- 국가가 지자체에게 이 기준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보급하는 동시에, 각 박물관에서 새로운 바람직한 기준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 '바람직한 기준'을 박물관의 평가기준(자기평가, 외부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하고, 지정관리자의 선정기준이나 업무기준에 반영하도록 함

#### ○ 국가, 설립주체의 역할

- 이 기준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국가로서 박물관이 지향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나, 설립주체 및 박물관이 일체가 되어 새로운 기준 외에, 박물관법 등의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고,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노력을 해야 함
- 박물관을 새로 설립할 경우에는 설립 초기부터 등록요건을 충족시키고, 그 위에서 새로운 '바람직한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함
- 국가는 기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우수사례를 소개하는 등, 이 기준의 보급 및 박물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함

□ <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상의 바람직한 기준>의 특징 및 내용

- 총 16조의 설립·운영기준 제시: 「박물관법」 및 등록요건을 보완하는 노력·의무규정
- 박물관 운영(museum management) 건전성 확보 및 운영평가의 기준 역할
- 연구·교육기능의 중심성 강조 및 사회적 책무의 강화

[표 6-6] 일본 <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상의 바람직한 기준>(문부과학성 고시 제165호) 전문

제1조 (취지)	1. 이 기준은 박물관법 제8조의 규정에 기초해 박물관의 설치 및 운영상의 바람직한 기준으로, 박물관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박물관은 이 기준에 근거해 박물관 수준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고, 이로써 교육, 학술, 문화의 발전, 지역 활성화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조 (박물관의 설치 등)	1.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은 박물관을 설치하고 역사, 예술, 민속, 산업,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자료(전자적 기록을 포함)를 취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시정촌(기초자치단체)은 그 규모 및 능력에 맞게 단독으로 또는 다른 시정촌과 공동으로 박물관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박물관의 설치자가 지방자치법 제24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동항에서 규정하는 지정관리자에게 해당 박물관의 관리를 다른 이에게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 설치자 및 관리자는 상호 긴밀한 연계 하에 해당 박물관 사업의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실시의 확보, 사업 수준의 유지 및 향상을 도모하면서 이 기준에 정한 사항의 실시 노력해야 한다.
제3조 (기본적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	1. 박물관은 그 설치 목적을 바탕으로, 자료의 수집·보관·전시, 조사연구, 교육보급활동 등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운영 방침을 책정하고 공표하도록 해야 한다. 2. 박물관은 기본적 운영방침을 바탕으로 사업연도마다 그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을 책정하고 공표하도록 해야 한다. 3. 박물관은 기본적 운영 방침 및 전항의 사업계획을 책정할 때에, 이용자 및 지역주민의 요망과 사회의 요청에 충분히 유의해야 한다.
제4조 (운영 상황에 관한 점검 및)	1. 박물관은 기본적 운영 방침에 기초한 운영과 사업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각 연도의 사업계획의 달성 상황과 그 외 운영 상황에 대해 스스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평가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 박물관은 전항의 점검 및 평가 외에, 해당 박물관의 운영체제의 정비 상황에 따라 박물관협의회 활용 및 그 외 방법에 의해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 관계자, 가정교육 향상에 기여하는 활동을 하는 자, 해당 박물관 사업에 관해 학식경험이 있는 자, 해당 박물관 이용자, 지역주민과 그 외 사람들에 의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li> <li>3. 박물관은 앞 2항의 점검 및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박물관의 운영 개선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li> <li>4. 박물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점검 및 평가 결과와, 제3항의 조치 내용에 대해, 인터넷과 그 외 고도정보통신 네트워크(이하, 인터넷 등)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li> </ol>
제5조 (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박물관은 실물, 표본, 문헌, 도표, 필름, 리코드 등의 자료(이하, 실물 등 자료)에 대해, 그 소재 등의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해당 실물 등 자료에 관한 학술연구 상황, 지역에서의 해당 자료의 소재 상황, 해당 자료의 전시상의 효과 등을 고려하고, 기본적 운영방침에 근거하여 필요한 수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관(육성 및 현지보존을 포함), 전시하여야 한다.</li> <li>2. 박물관은 실물 등 자료에 대해, 그 수집 또는 보관이 곤란한 경우, 그 전시를 위해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또는 그 관외 대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실물 등 자료를 복제, 모조, 모사한 자료 또는 실물 등 자료에 관한 모형(이하, 복제 등 자료)을 수집, 제작하여, 해당 박물관의 내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때 저작권법과 그 외 법령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li> <li>3. 박물관은 실물 등 자료 및 복제 등 자료(이하, 박물관자료)에 관한 도서, 문헌, 조사자료, 그 외 필요한 자료(이하, 도서 등)의 수집, 보관, 활용에 노력해야 한다.</li> <li>4. 박물관은 소장하는 박물관자료의 보수 및 갱신 등에 노력해야 한다.</li> <li>5. 박물관은 해당 박물관의 적절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 자료 및 도서 등에 관한 정보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li> <li>6. 박물관은 해당 박물관이 휴지 또는 폐지될 경우, 그 소장 박물관자료 및 도서 등을 다른 박물관에 양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해, 해당 박물관자료 및 도서 등이 적절하게 보관,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li> </ol>
제6조 (전시방법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박물관은 기본적인 운영방침에 기초하여, 그 소장 박물관 자료에 의한 상설전시를 실시하거나, 특정 주제에 기초해서 소장 박물관자료 또는 임시로 다른 박물관 등으로부터 빌려온 박물관자료에 의한 특별전시를 행한다.</li> <li>2. 박물관은 박물관자료를 전시할 때 해당 박물관이 실시하는 사업 및 관련 학술연구 등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을 심화시키고, 해당 박물관자료에 관한 지식의 계발에 기여하기 위해, 다음 사항에 유의해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확실한 정보 및 연구에 기초한 정확한 자료를 사용할 것.</li> <li>(2)전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박물관자료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시방법을 연구개발하고, 도서 등 또는 음성, 영상 등을 활용할 것.</li> <li>(3)전항의 상설전시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계획적인 전시 갱신을 실시할 것.</li> </ol> </li> </ol>
제7조 (조사연구)	<p>박물관은 박물관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등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단독으로 또는 다른 박물관,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기본적 운영방침에 기초하여 박물관자료에 관한 전문적, 기술적인 조사연구, 박물관자료의 보관 및 전시 등의 방법에 관한 기술적 연구, 그 외 조사연구를 실시해야 한다.</p>
제8조	<p>박물관은 이용자의 학습활동 또는 조사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실시해야</p>

(학습기회의 제공 등)	<p>한다.</p> <p>(1)박물관자료에 관한 각종 강연회, 연구회, 설명회 등(아동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그 외 학습활동을 하는 경우 포함)의 개최, 관외 순회전시 등의 방법에 의한 학습기회를 제공할 것.</p> <p>(2)학교교육 및 사회교육에 박물관자료의 이용, 그 외 박물관의 이용에 관해서는, 학교의 교직원 및 사회교육 지도자에게 적절한 이용방법에 관한 조언, 그 외 협력을 제공할 것.</p> <p>(3)이용자로부터의 요구에 응하여, 박물관자료에 관한 설명 또는 조언을 제공할 것.</p>
제9조 (정보 제공 등)	<p>박물관은 해당 박물관의 이용 편의 또는 이용기회의 확대, 또는 제7조의 조사연구의 성과 보급을 위해, 다음 업무를 실시해야 한다.</p> <p>(1)실시하는 사업의 내용 또는 박물관자료에 관한 안내서, 팸플릿, 목록, 도록 등을 작성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배포할 것.</p> <p>(2)박물관자료에 관한 해설서, 연보, 조사연구 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배포할 것.</p> <p>(3)전항의 업무를 실시할 때에는, 인터넷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p>
제10조 (이용자에 맞는 서비스 제공)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박물관은 사업을 실시할 때, 고령자, 장애인, 유소아의 보호자, 외국인, 그 외 특히 배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배치에 의한 지원, 관내 유모차 대여, 외국어 해설자료 등의 작성 및 배포, 그 외 서비스 제공에 노력해야 한다.</li> <li>2. 박물관은 해당 박물관의 특성을 바탕으로 하되, 해당 박물관이 실시하는 사업 및 관련 학술연구 등에 대한 청소년의 관심과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청소년 대상 해설자료 등의 작성 및 배포, 그 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li> </ol>
제11조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박물관은 사업을 실시할 때, 학교, 해당 박물관과 다른 종류의 박물관자료를 소장한 박물관 등의 다른 박물관, 공민관, 도서관 등 사회교육시설, 그 외 유사 시설, 사회교육관계단체, 관계행정기관, 사회교육에 관한 사업을 실시하는 법인, 민간사업자 등과의 긴밀한 연계, 협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li> <li>2. 박물관은 실시하는 사업에서 이용자, 지역주민 등의 학습성취에 기초한 지식 및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시자료 해설, 강연회 등의 기획, 업무 보조, 박물관자료 조사나 정리, 그 외 활동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li> </ol>
제12조 (개관일 등)	<p>박물관은 개관일 및 개관시간을 설정할 때, 이용자의 요망, 지역 실정, 박물관자료의 특성, 전시 갱신에 소요되는 일수 등을 감안하고, 일요일과 그 외 일반 휴일 개관, 야간 개관, 그 외 방법에 의해, 이용자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p>
제13조 (직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박물관에 관장을 두는 동시에 기본적 운영방침에 기초하여 적절하게 사업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의 학예원을 두어야 한다.</li> <li>2. 박물관에 전항에 규정한 직원 외에, 사무 및 기능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li> <li>3. 박물관은 기본적 운영방침에 근거하여 그 사업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박물관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관련 업무, 조사연구 업무, 학습기회 제공 업무, 그 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전문적인 능력이 적절하게 육성되고,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직원이 적절하게 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배치하기 위해, 각 업무 분담의 방법, 전담 직원 배치 방법, 효과적인 복수의 업무 겸무 방법 등을 적절히 개선하고,</li> </ol>

	그 운영체제의 정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4조 (직원의 연수)	1. 도도부현의 교육위원회는 해당 도도부현 내 박물관의 관장, 학예사, 그 외 직원의 능력 및 자질 향상을 위해 연수 기회를 충실히 하여야 한다. 2. 박물관은 그 직원을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도도부현 교육위원회가 주최하는 연구, 그 외 필요한 연수에 참여시키도록 해야 한다.
제15조 (시설 및 설비)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 그 외 해당 박물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구비하도록 해야 한다. (1)내화, 내진, 방충해, 방수, 방진, 방음, 온습도 조절, 일광 차단 또는 조절, 통풍 조절, 오염/파괴/도난 방지, 그 외 박물관자료를 적절하게 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설비. (2)청소년 대상 음성해설 기기, 경사로, 점자 및 외국어 표기, 수유시설, 그 외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유소아 보호자, 외국인 등의 원활한 이용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3)휴게시설, 그 외 이용자가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이용환경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제16조 (위기관리 등)	1. 박물관은 사고, 재해, 그 외 비상사태(동물의 전염성 질병 발생 포함)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박물관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사태에 관한 위기관리 대응안내서를 작성, 관계기관과 연계한 위기관리 훈련의 정기적 실시, 그 외 충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2. 박물관은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방재상, 위생상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사고나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입장제한,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다. 박물관 평가

### □ 박물관 평가의 필요성, 목적, 정의, 종류<sup>58)</sup>

#### ○ 박물관 평가의 필요성

- 박물관 존재의 의의를 재확인: 사회경제적 변화에 발맞춰, 박물관 운영방식 및 존재의 의의를 재점검하게 됨. 행정평가 등 설립자에 의한 박물관 평가와 박물관 자체에 의한 자기점검 평가 등이 이루어지게 된 것도 이러한 배경에 따름.
- 법률에 의한 규정: 사회변화에 부응해서 박물관 법률을 개정해 박물관 평가를 반영

#### ○ 박물관 평가의 목적

- 조직적/계속적인 개선체제 구축: 목표의 설정, 실시, 평가라는 일련의 개선 흐름을 만들어, 박물관이 조직적으로 계속해서 개선을 도모하는 체제 형성
- 과제 및 성과의 공유: 평가활동이 박물관 내부 또는 외부와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되도록

58) 平成20年度 博物館評価制度等の構築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文部科学省.

함. 관계자와 박물관의 과제 및 성과를 공유함으로써 개선을 촉진함.

-관계자에 대한 설명책임: 각 박물관의 성과와 과제를 명확히 함으로써, 설립자, 지역 등의 관계자에 대해 설명책임을 다함.

-기대효과: (1) 각 박물관의 설립자 등이 평가결과에 부응하여 박물관에 대한 개선조치를 강구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박물관 활동이 보장되도록 하고, (2) 관계자 및 지역과의 연계협력에 의한 박물관 활동 촉진을 도모함

### ○ 박물관 평가의 정의

-박물관 평가활동이 (1) 공식적인 박물관 업무로서 위치지워져 조직적/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2) 박물관 활동 목표를 명확히 밝히고, 그 목표에 따라 평가항목을 정해, 평가지표를 설정하고 있을 것, (3) 평가항목과 평가지표의 달성 상황을 명시해 평가결과를 문서화할 것, (4) 달성 상황의 타당성과 앞으로의 대응(개선 대책 등)을 검토할 것

-박물관 평가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 (1) 관람객 설문결과를 이용자에 의한 평가로 제시하는 경우(목표 달성 상황을 측정할 자료는 되지만 평가 자체는 아님), (2) 연보 등에 의한 실적보고를 자기평가로 삼는 경우(목표에 대한 달성 상황을 제시하고 분석, 개선대책을 검토하지 않으면 자기평가의 조건을 충족한 것이 아님), (3) 박물관협의회 등 자문기관에서 실시한 단순한 실적보고, 그에 대한 의견교환, 질의응답을 외부평가로 삼는 경우(목표, 평가항목, 지표를 명확히 하고, 그 달성 상황에 대해 의견교환, 질의응답을 하지 않으면 외부평가로 간주하지 않음)

### ○ 박물관 평가의 종류

구분	상세구분	내용
박물관에 의한 평가	자기평가 (내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장(또는 실질적인 경영책임자)의 리더십 하에 해당 박물관 직원이 주가 되어 평가를 실시</li> <li>내부평가위원회나 간부회 등이 실시주체</li> <li>관장이나 설립자에게 보고.</li> </ul>
	외부평가	<p>관계자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각 박물관의 발의에 의해, 직원 외 관계자, 외부 전문가에 의한 평가</li> <li>외부평가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박물관협의회가 외부평가 역할을 담당</li> <li>관장이나 설립자에게 보고.</li> </ul>
	제3자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부평가 중에서도 평가내용의 결정 등도 외부인의 관여 정도가 높은 경우</li> </ul>
설립자 평가	<p>국립: 독립행정법인평가, 정책평가</p> <p>공립: 박물관평가, 행정평가, 지정관리자평가</p> <p>사립: 공익법인, 영리법인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박물관을 설립 또는 소관하는 부서가 실시하는 평가. 설립자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외부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를 두어 실시</li> <li>독립행정법인 운영 박물관은 주무부처가 설치한 평가위원회, 공립박물관이라면 소관부서 또는</li> </ul>

구분	상세구분	내용
	자체평가	평가담당부서, 공익법인이 설립한 사립박물관이라면 이사회나 평의원회, 기업박물관은 회사 담당 부서나 기획부문에 의한 평가

## □ 박물관 평가의 단계: 자기점검, 평가, 개선

- 자기점검: 평가란 목표 달성 상황을 검증하고 평정하는 작업. 적절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대전제는 타당한 목표설정임. 이를 위해 박물관 현황을 파악하고, 박물관의 사명 및 중점과제를 명확히 해야 함(이 자기점검 단계가 가장 시간과 노력을 요함)
  - 현황 파악: (1) 박물관의 자기진단(‘자기점검시스템 웹버전’ 사용), (2) 사실의 수집(자기 박물관 뿐 아니라 다른 박물관 자료 수집 포함)
  - 현황 분석: SWOT분석 등을 활용
  - 사명 및 중점과제의 명확화

### 1. 사명(Mission)이란

어떤 박물관이든 설립목적이 있음. 설립목적은 설립 근거 법령, 정관 등에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임. 또한 그러한 근거규정이나 문서 외에 기본이념이나 활동방침을 정한 문서를 지칭함.

기존 문서의 경우, 박물관의 수집, 보관, 전시, 공개 등의 주요 기능을 나열한 것이 다수. 무엇을 위해, 어떻게, 무엇에 역점을 두고, 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러한 형태로 박물관의 독자성을 명시한 경우를 찾기 어려움.

그러다 보면 중점과제의 설정, 목표 설정이 곤란하고, 박물관 운영을 왜,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불명확해짐. 따라서 설립목적을 재확인하고, 사회와의 연관성을 보다 강조하는 언명으로서 ‘사명’ 필요.

### 2. 사명의 명확화 시 유의점

사명의 명확화는 쉽지 않음. 박물관 직원은 물론 설립자 및 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는 말로, 독자성이 있어야 하며, 박물관의 활동 전반을 규정하고 견인하는 것이 필요.

따라서 우선은 당면의 전망, 관장 방침 등과 같이 잠정적으로 사명을 정해 두고, 활동이나 평가를 통해서 사명을 정식으로 만들어 가는 방법이 바람직할 수도 있음.

(박물관협의회가 발간한 사명 및 계획작성 안내서도 있음)

### 3. 중점과제의 명확화

중장기적 관점에서 중점과제를 명확히 할 것. SWOT 분석 활용.

제한된 자원을 유효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중점과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고, 실현가능하면서 효과적인 과제 설정이 요구됨.

○ 목표설정 및 계획책정

- 목표설정: 사명에 입각해 중점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기 목표를 설정. 박물관은 긴 시간에 걸쳐 성과를 내는 곳이므로, 연도별 목표설정만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중기적인 과제 설정이 필요.
- 계획책정: 중기목표 설정 후 목표달성을 위한 ‘공정표’가 되는 중기계획을 책정함

○ 평가지표의 설정

- 각 박물관의 독자성과 타당성: 자기점검을 토대로 다른 박물관 현황을 참조하면서 타당한 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평가지표를 모든 업무에 대해 망라적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으나, 각 박물관의 중점과제를 도출해 설정하는 방법도 있음. 선택은 박물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평가지표를 줄이는 것이 보다 유효한 검증과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음.
- 지표설정 시 유의점: 각 박물관의 중기목표 달성 상황을 측정하기 위해, 평가항목을 정하고, 평가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함. 지표설정에는 원래 무엇을 지향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해 무엇에 관해, 무엇을 가지고 측정할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함. 또한 무엇을 어느 만큼, 어떻게, 언제까지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목표를 설정해야 함. 목표에 따라 정량 지표와 정성 지표를 함께 사용. 추상적 표현(활성화, 명확화, 효율화, 정비 등) 및 태도 표현(적극적으로, 도모한다, 노력한다, 신속하게 등)은 사용하지 않음.
- ‘아웃컴’ 지표의 설정: 성과지표에는 ‘아웃풋(output)’과 ‘아웃컴(outcome)’이 있음. 아웃풋은 예산, 인원 등의 자원투입에 대해 산출된 서비스 양을 말함. 아웃컴은 사업 수행의 성과, 즉 이용자나 사회에 미친 영향을 말함. 전시 입장객 수는 아웃풋이고, 전시를 보고 전시주체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의 비율은 아웃컴 지표임. ‘박물관 성과가 단순한 수치로 측정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자주 들리는 것은 아웃풋 지표의 편중에 기인함. 아무리 입장객이 많아도 만족도가 낮고 박물관 사명에 공헌하지 않으면 문제가 됨. 따라서 박물관이 지향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아웃컴 지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 검증, 평가

구분	내용
자기 평가	1. 역할 -박물관이 스스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 상황을 분석하고, 성과와 과제를 명확히 하여 개선대책을 검토함  2. 조직 및 체제 -직원이 평가 의의와 방법을 이해하게 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함. -직원에는 정직원뿐 아니라, 뮤지엄숍, 카페, 청소 등의 위탁업무 스태프도 포함.  3. 평가방법 -사전평가: 담당부서나 직원이 설정한 목표, 계획의 타당성을 평가자가 검증하고 수정 등의 지시 -사후평가: 목표의 달성 상황, 실적에 대해 담당부서나 담당자가 검증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구분	내용
	검토해 평가자에게 보고. 평가자는 담당자 보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정 실시. 조직 전반의 소통과 협력 필수.
외부 평가	<p>1. 역할</p> <p>- 자기평가의 타당성 검증, 향후 종재방식, 개선방책의 제안 및 조언, 평가방식에 관한 조언, 평가제도의 구축 지원</p> <p>2. 외부평가 방법</p> <p>- 검토사항: (1)박물관 평가의 목적, 실시방법의 설명, 그 타당성의 확인, (2)박물관의 사명 및 중점과제, 목표 등의 설명과 그 타당성 평가(사전평가), (3)목표 달성 상황과 실적 설명, 그 타당성 평가(사후평가)</p> <p>- 유의점: 박물관 실태에 대해 평가위원이 잘 인식해야 함. 외부평가위원회에는 일부 간부직원뿐 아니라, 관계 직원이 동석하고 위원에게 설명하며, 직접 질의응답, 의견교환을 하는 것이 효과적.</p>
설립자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의점: 국가나 지자체가 박물관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박물관의 사명 및 활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평가항목 및 지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박물관도 적극적으로 관의 지향점, 적절한 평가항목과 지표를 제안해야 함. 그러지 않으면, 박물관 실태에서 동떨어진 형식적인 평가가 될 가능성 큼.</li> <li>자기평가, 외부평가, 설립자평가의 병용 대책</li> </ul>

## ○ 보고, 공표

- 자문기관 및 설립주체에게 보고: 자기평가, 외부평가의 결과를 자문기관 및 설립주체에게 공유하여 개선의 자료로 활용
- 공표: 자기평가 및 외부평가 결과는 연보 및 홈페이지에 공표. 이를 통해 박물관 활동에 대한 이해를 확산함. 법으로 의무화함

## ○ 개선

- 평가가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평가를 할 이유가 없음. 평가결과를 차년도, 차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거나, 예산편성과 연동시켜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함
- 평가결과에 따라, 바로 개선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여 정리. 현장에서의 운영책임 범위 내에서 개선해야 할 것과, 설립주체의 책임범위 내에서 개선할 과제를 구분해서 과제 도출
- 평가제도 도입 시 유의점: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평가제도는 유효하게 기능하지 않음. 평가업무가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도 안 됨. 설문조사 형식이나 일률적인 행정평가는 박물관의 예산이나 인원 삭감에 사용될 우려도 있음. 그 외에도 박물관 관련 다수의 평가제도들이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해당 평가의 목표를 명확히 해야 함. **“평가를 평가할 시점이다. 평가제도가 유효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항상 주시할 필요가 있다.”**

## 라. 특징 및 시사점

- 지방분권에 따른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박물관정책 완화 기조를 2000년대 중반 이후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전환함
- 박물관 등록제도, 학예사제도 등 종합적인 제도 강화 기조 채택
  - 박물관 및 그 정책환경 변화로 인한 기존 법제의 실효성 저하가 원인임
- ‘설립·운영기준’ 수립과 그에 기반한 평가제도 의무화
  - 「박물관법」 개정으로 각 박물관이 법에 의한 ‘설립목적’을 준수하고, 그에 기반한 자체 ‘사명(mission)’을 수립하여, 중장기 운영계획을 정기적으로 세워, 이를 실행-평가-개선하는 환류구조를 실효적으로 정착시키는 방향 지향함
  - 자체평가와 외부평가 선택적 시행 가능: 자체평가의 우선성과 외부 전문가 평가의 병행으로 ‘개선’을 위한 자체구조 조성이 우선임
  - 평가의 강제성: 법정 의무로 규정. 평가 관련 정보 공개(설명책임)도 의무화. 평가를 위한 <바람직한 기준>(국가표준) 수립 및 적용
  - 이러한 기조 하에서 지속적인 제도 개선 검토 및 논의, 정책연구 등 활발하게 추진 중임
- 국제적인 박물관·미술관 정책 동향 및 표준/규범의 제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
- 질적 수준 향상, 사회적/공적 신뢰 구축, 사회적 역할 확대 도모
  - 재정여건의 악화 또는 재원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 지원/후원 확보로 운영난 타개를 위한 전략임
  - 질적 수준 향상 및 사회적/공적 신뢰 구축을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 등록제도를 인증제도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학습/교육 기능 강화 기조: 이를 위한 소장품 수집, 보존, 연구, 전시 등 기본기능 강화 추진
- 조직(합법성 및 건전성), 인력(전문성 함양 및 경력 개발, 채용, 계약 등), 재정 등의 법적 규정 구체화



## 평가인증 시범운영 결과분석 및 제언

---

제7장 사립박물관·미술관 자기진단 및 현장사례연구

제8장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제9장 제언: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재정립 및 평가인증제 시행 방안



## 제7장 사립박물관·미술관 자기진단 및 현장사례연구

---

1절 사립박물관·미술관 자기진단 및 현장사례연구 개요

2절 실태 분석 결과: 체크리스트 기반 현황 진단

3절 의견 분석: 문제점 및 개선 사항

4절 '우수 박물관·미술관'을 위한 제언



## 1절 사립박물관·미술관 자기진단 및 현장사례연구 개요

### 가. 현장사례연구의 목적

#### □ 현장사례연구 배경

- 현장사례연구는 사립박물관·미술관의 현황을 심층 현장연구를 통해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현장연구진은 현장사례연구를 통해 변화하는 시대에 바람직한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기준(목표)을 현황을 토대로 하여 도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지원 방안, 그리고 평가인증제도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고자 진행됨
- 현장사례연구에서 연구자와 참여기관이 ‘평가자-피평가자’의 관계를 탈피, 각각 외부 연구자의 시선과 내부 종사자의 시선에서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운영 방향을 설정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를 도출하면서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방안을 만들어 가는 공동의 연구협력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현장사례연구 절차를 설계함
- 따라서 현장사례연구에 참여하는 사립박물관·미술관은 ‘피평가기관’ 또는 ‘피평가자’라는 수동적 입장이 아니라, 연구를 통해서 현재 관의 상황을 보다 객관화하여 진단하고, 참여 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일정 기간 소정의 연구주제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사례연구방법론(직접관찰, 면접 등)을 통해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운영의 목표와 방향을 모색하며, 정부의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 지원 및 평가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는 핵심 주체로 연구에 참여함

#### □ 현장사례연구 목적

- 이에 본 현장연구는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할 경우 ‘우수한 박물관’의 기준과 평가지표를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1)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 발전을 위한 현황 분석 및 제안, 2) 사립박물관·미술관 관련 정책의 재정립 및 평가인증제도 활용방안 도출을 위해 ‘현장평가’가 아닌 ‘현장 사례연구’ 방식으로 본 연구를 진행함

## 나. 현장사례연구 방법 및 분석틀

### □ 현장사례연구 설계

#### ○ 연구 대상 및 방법

- 본 연구는 국내 사립박물관·미술관 관장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아래 그림과 같이 기관 담당자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 연구자 박물관·미술관 종사자 사이의 협력적인 연구과정이 중요하게 작용함
- 또한 참여기관 관계자들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각각 사전 간담회를 진행하여 현장연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대비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방식으로 현장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함

[표 7-1] 현장사례연구 프로세스

주체	내용	기간
	↓	
(사)한국박물관협회 및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현장사례연구 대상 기관 신청서 접수	2021년 11월 신청 접수 완료
	↓	
연구진/문화체육관광부	현장사례연구 대상 기관 확정	2022년 3월 중
	↓	
평가인증제도 연구진	현장사례연구용 기초자료 및 체크리스트 작성	3월 2일~6일
	↓	
평가인증제도 연구진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 해외사례 공유 포럼	2022년 3월 16일
	↓	
평가인증제도 연구진	현장사례연구팀 섭외(섭외 분담) 및 확정 현장사례연구 대상 기관과 현장사례연구팀 매칭 현장사례연구 참여기관별 기초자료 제작	3월
	↓	
평가인증제도 연구진	현장사례연구 온라인 워크숍 개최(예정) (현장사례연구 포함한 전체 연구의 내용과 방향성에 대한 설명회)	4월 6일
	↓	

현장사례연구팀	현장사례연구 연구 진행(기관 방문 등) (기초자료 및 체크리스트 토대로 수장고, 전시장 등을 포함한 시설과 소장품 현황 확인하고 현장관찰 및 면접, 서술 근거용 사진 촬영) 현장사례연구 보고서 작성 및 제출	4월~5월 15일
↓		
현장사례연구팀	(현장사례연구 공유 및 자문회의)	5월 7일

- 연구 방법은 크게 1) 사립박물관·미술관이 작성한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2) 현장에 나간 연구자들의 직접관찰 기관담당자의 면접 등을 통해 수행한 결과를 기록하여, 3) 연구자용 체크리스트 양식에 맞추어 연구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으며, 총 50개관이 본 현장사례연구에 참여함
- 본 현장연구는 현장 평가가 아닌 만큼 평가를 위한 사전자료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으나, 현장 연구 시 참여기관의 특성과 충분히 파악하고 현황을 기능할 수 있도록, 참여기관 측이 동일한 문항에 대해 자체적으로 판단 후 기입한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취합하여 연구자에게 현장 연구 전에 회람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표 7-2] 현장사례연구 대상 및 방법

구분	내용
조사 대상	현장사례연구 참여 희망 및 관련 협회 추천 사립박물관·미술관
표본 규모	사립박물관·미술관 50개관
조사 방법	자기기입식 온라인조사 및 직접관찰, 현장인터뷰 등
조사 기간	2022년 3월 31일 ~ 5월 21일

- 현장사례연구 참여관과 연구자들의 연구 방법은 아래와 같이 사전에 제시됨

참여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여기관에서는 사전에 기초자료 및 체크리스트를 숙지하여야 함</li> <li>• 연구자는 본 연구 목적으로 면접 내용을 녹취할 수도 있음</li> </ul>
연구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구자는 2인 1조로 각 5개 기관 내외를 대상으로 직접관찰, 면접 등의 연구를 수행함</li> <li>• 연구자는 사전에 연구 대상기관에 관한 기초자료(사전 공유/배포 구글 드라이브 사용)를 숙지하고 방문함</li> <li>• 연구자는 사전에 약속을 정하여 관장 또는 직원이 있을 때에 방문함(연락처 개별 공지)</li> <li>• 연구자는 주요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 방문함</li> <li>• 연구자는 직원과 함께 수장고 등의 시설을 확인함</li> <li>• 연구자는 기초자료 및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하여 현장관찰 및 면접을 수행함</li> <li>• 연구자는 참여기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연구자로서의 윤리와 성실의 의무를 다해야 함</li> <li>• 연구자는 연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연구목적 외에 개인적으로 공개하지 않음</li> </ul>

○ 연구 내용

- 연구 항목은 총 5개의 파트 및 각 파트 별 ① 기본 항목(체크리스트)과 ② 부가 항목(참여관 및 연구자 기입)으로 구성됨
- 기본 항목은 기관의 응답을 예, 아니오/객관식으로 제시하여 선택 응답했으며, 참여관 기입 내용을 현장방문 면담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일부 항목의 경우 상세 조사 필요로 인해 참여관 및 연구자의 서술 항목 작성이 추가됨
- 연구 내용은 1) 공공성(공적 신뢰와 책임), 2) 조직건전성 A(거버넌스, 구조, 미션 등), 3) 조직건전성B(인력, 시설, 재정, 위기관리), 4) 소장품(컬렉션, 자료), 5)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전시, 교육, 지역, 관람객)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설계되어 연구자 2인이 1)-3), 4)-5)로 구분하여 연구 영역을 구분하였으며, 공통으로 ‘우수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참여기관과 연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우수 박물관·미술관의 상’, ‘우수 박물관·미술관 상을 구현하기 위한 지구적 노력’, ‘우수 박물관·미술관의 상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에 대한 문항을 응답/서술하도록 함
- 자세한 연구 내용은 아래의 표에 명시함

(표 7-3) 현장사례연구 내용

구분	내용
응답기관 일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명</li> <li>• 등록 종(1종, 2종)</li> <li>• 현장사례연구 참여자</li> <li>• 박물관·미술관 소속 참여자(직위 및 성명)</li> <li>• 설립주체</li> </ul>
Part I. 공공성 (공적 신뢰와 책임)	<p>[기본 항목] [참여관 기입→전문가 현장방문 면담조사/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Q1. 기관의 설립주체와 운영주체(조직)를 상시 공표하고 있는가?</li> <li>• Q2. 기관의 설립 및 운영 관련 자체 규정이 있는가?</li> <li>• Q3. ICOM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활용하고 있는가? 또는 기관의 윤리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li> <li>• Q4.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적 자원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가?</li> <li>• Q5.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li> </ul> <p>[부가 항목] [참여관 기입→전문가 현장방문 면담조사/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Q2. 기관의 설립 및 운영 관련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를 공표하고 있는가? (* 규정 문서 제시)</li> <li>• Q3. ICOM 윤리강령의 내용을 공유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예: 교육, 워크숍, 자체 윤리강령 제정 등) (* 자체 윤리강령 제시(있을 경우))</li> <li>• Q4.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적 자원의 범위와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이를 점검하고 관리/운영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가?</li> <li>• Q5. 어떤 지원 사업에 참여했는가? 그에 대한 의견(장점, 단점,</li> </ul>

구분	내용
과제 등)은 어떠한가?	
[연구자 Part I 종합의견]	
Part II. 조직 건전성A (거버넌스, 미션, 운영계획, 조직구조)	[기본 항목] [참여관 기입→전문가 현장방문 면담조사/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Q1. 기관의 설립목적, 미션, 비전 등을 명시한 공식적인 문서 또는 공개된 문서가 있는가?</li> <li>• Q2. 기관의 설립목적 및 미션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 공표하고 이를 실행, 평가, 개선하는 절차가 있는가?(* 증빙자료 확인)</li> <li>• Q3. 기관의 모든 직원 및 자원봉사자가 설립목적 및 미션을 공유하고 이에 관해 활발한 대화/소통이 이루어지는가?</li> <li>• Q4. '비영리의 항구적인 기관'이라는 뮤지엄 개념 정의에 부합하는가?(* 증빙자료 확인)</li> <li>• Q5. 운영조직 및 의사결정(거버넌스)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li> <li>• Q6. 기관 운영에 관해 외부 전문가(박물관 전문가 등)로 구성된 이사회 또는 위원회(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가 운영되고 있는가?</li> <li>• Q7. 기관 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정책개발은 누가 하는가?              ① 관장 ② 학예실장 또는 특정 학예사 ③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④ 기타 조직 (구체적 조직 : )</li> </ul>
[부가 항목] [연구자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Q1. 사립박물관·미술관은 다양한 설립 동기와 배경,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하신 박물관·미술관 관계자와의 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관의 설립 동기, 배경, 역사, 그로부터 파악되는 특징을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li> </ul>	
[연구자 Part II 종합의견]	
Part III. 조직 건전성B (인력, 시설, 재정, 위기관리)	[기본 항목] [참여관 기입→전문가 현장방문 면담조사/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Q1. 항상 등록요건에 따른 인력 수(학예사 1명 이상)를 충족하고 있는가?</li> <li>• Q1-1. 경력인정대상기관인 경우, 학예사 2명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li> <li>• Q2. '소장품의 보존·관리를 위한 적절한 전문인력'을 항상적으로 확보하고 있는가?</li> <li>• Q3. 인력(자원봉사자 포함)의 고용절차 및 요건, 직무/역할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li> <li>• Q4. 직원의 능력 향상과 학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연수에 참여하도록 하는가?</li> <li>• Q5. 기관에 적절한 인력 규모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는가? ( )명</li> <li>• Q5-1. 현재 업무분장 및 인원: 소장품 연구/등록( )명, 소장품 보존관리( )명, 전시기획( )명, 교육( )명, 행정/홍보( )명</li> </ul>

구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Q6.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적절한 재정 계획이 있는가?</li> <li>• Q7. 개관 연도는 언제인가? ( )년 현재 시설 노후화 등 개선 필요성이 있는가?</li> <li>• Q8. 등록요건 및 ‘소장품의 보존·관리를 위한 적절한 수장·전시환경 마련’에 따른 아래의 시설(종합박물관, 전문박물관, 미술관 별 요건)을 적절하게 구비하고 운영하고 있는가?</li> <li>• Q9. 잠재적인 사고 및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갖추고 있는가?</li> </ul>
[부가 항목]	<p>[참여관 기입 → 전문가 현장방문 면담조사/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Q1. 등록요건에 따른 인력 수(일반 학예사 1명/ 경력인정대상기관 학예사 2명 이상)가 충족되지 못하고 인력 수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li> <li>• Q3. 해당 규정의 내용은 어떤 것이며,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 증빙자료 확인)</li> <li>• Q5. 기관에 적절한 인력 규모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관의 방법 또는 노력은 무엇인가?</li> <li>• Q7. 현재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li> <li>• Q8.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구비해야 할 시설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구비 또는 개선 계획은 어떤 것인가?</li> </ul>
	[연구자 PartIII 종합의견]
Part IV. 소장품 (Collection, 자료)	<p>[기본 항목] [참여관 기입 → 전문가 현장방문 면담조사/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Q1. 등록요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가치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li> <li>• Q2. ‘소장품 목록 및 취득·변경·활용 사항 등의 성실한 기록과 지속 관리가 법정 관리대장을 사용하여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가?’</li> <li>• Q3. 소장품의 수집(취득) 및 폐기, 신규 소장품 개발, 소장품 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정책(규정)을 문서화하여 마련하고 있는가?</li> <li>• Q4-1. 소장품 DB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가?</li> <li>• Q4-2. 소장품 DB 구축을 전담하는 학예사가 있는가?</li> <li>• Q4-3. 소장품은 얼마나 공개되고 있는가?(2021년 기준) 총 소장품 수( )점, 온라인 공개( )점, 전시( )점, 대여( )점</li> <li>• Q5-1. 모든 학예인력이 예방적 보존 및 보안 원칙을 숙지하고 준수하고 있는가?</li> <li>• Q5-2. 소장품의 수복/복원이 필요할 경우, 이를 위한 방법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li> <li>• Q6. 소장품 관련 학문적, 기술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li> <li>• Q7-1. 모든 학예사(연구, 전시, 교육 등)가 소장품에 대해 항상적으로 접근 가능한가?</li> <li>• Q7-2. 소장품 관리를 전담하는 학예사를 지정하여 지속 관리하는</li> </ul>

구분	내용
	<p>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Q7-3. 모든 학예사가 소장품의 가치, 내용, 보존 상태 등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가?</li> <li>• Q8. 소장품의 보존 환경은 양호한가?</li> </ul>
[부가 항목]	<p>[연구자 작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Q1. 해당 관은 등록요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b>‘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가치 평가 기준’</b>을 충족하고 있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박물관·미술관의 특성상, 등록요건상의 ‘가치 평가 기준’이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li> <li>- 본 박물관·미술관이 ‘가치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나 제도개선, 지원이 필요한가?</li> </ul> </li> </ul> <p>[참여관 기입 → 전문가 현장방문 면담조사/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Q3~8.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소장품 정책(규정) 내용은 어떤 것인가? 소장품 획득, 변경, 처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li> <li>(2) 소장품의 획득, 변경, 처분 등이 발생할 경우에 이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가 있는가?</li> <li>(3) 소장품 DB에 목록화된 소장품들에 대해 후속 연구조사가 이루어지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li> <li>(4) 소장품의 연구조사, 보존수복 등을 위한 외부 협력 네트워크가 있는가? 소장품 연구조사, 보존관리 관련 문제점은 무엇인가?</li> <li>(5) 전시 및 교육 활동에 소장품은 얼마나 활용되는가? 소장품 외 자료(대여자료, 보조/복제자료 등)의 활용 비중이 높은가?</li> </ol> </li> </ul>
	[연구자 PartIV 종합의견]
Part V.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 (전시, 교육, 지역, 관람객)	<p>[기본 항목] [참여관 기입 → 전문가 현장방문 면담조사/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Q1-1. 기관이 자체적으로 만든 홈페이지가 있는가?</li> <li>• Q1-2. 기관의 자체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고 있는가?</li> <li>• Q2-1. 2021년의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은 어떠한가? 상설전시(O, X), 기획/특별전시( )회, 교육 프로그램 수( )개</li> <li>• Q2-2. 관련해 코로나19 등 제약이 되는 외부 요인이 있었는가?</li> <li>• Q3. 설립목적 및 미션에 부합하는 상설전시를 하고 있는가?</li> <li>• Q4. 최근 3년간 설립목적 및 미션에 부합하는 기획/특별전시가 이루어졌는가? (* 증빙자료 확인)</li> <li>• Q5. 전시, 교육 등을 위한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li> <li>• Q6. 기관의 이용자(관람객)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가?</li> <li>• Q7-1. 최근 3년간 기획/특별전시의 소장품 활용도는 얼마나 되는가?</li> <li>• Q7-2. 소장품에 대한 연구 및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가?</li> </ul>

구분	내용
	(* 증빙자료 확인) • Q8-1.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Q8-2. 국내·외의 다른 박물관·미술관, 그 외 기관 등과 연계협력 경험이 있는가? • Q8-3. 다른 기관과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부가 항목]	[참여관 기입 → 전문가 현장방문 면담조사/확인] • Q2.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제약이 되는 외부 요건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 영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 • Q4. 전시 및 교육 전문인력 확보에서 어려움은 무엇인가? • Q5. 이용자(관람객) 정책(규정)이 있다면 그 핵심내용은 무엇인가? (* 증빙자료 확인) 향후 수정보완 계획은 있는가? • Q8-3. 다른 기관과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 장단점, 이를 위해 필요한 과제 등은 무엇인가?
	[연구자 작성] • Q3-4. 해당 관은 <b>설립목적 및 미션에 부합하는 상설전시 및 기획/특별전시</b> 를 하고 있는가? (장단점, 이유, 과제 등 서술) • Q7-2. <b>소장품에 대한 연구 및 해석</b> 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자 PartV 종합의견]
PartVI.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의견 수렴	[참여기관 담당자 및 연구자 각각 작성] •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평가인증제도는 '우수 박물관·미술관'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를 사립박물관·미술관에 확대 적용하거나, 혹은 본 제도에 준하는 또 다른 제도를 신설한다고 할 때,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동으로 지향해야 할 '우수 박물관·미술관'은 어떠해야 하나 • '우수 박물관·미술관'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까요? 현재의 여건과 상황을 진단해 볼 때, 박물관·미술관이 개별적으로 또는 함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자체는 건전한 박물관·미술관을 육성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우수 박물관·미술관'을 육성하는 데 국가 및 지자체가 어떠한 정책적 노력(제도 개선,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한가

## 다. 현장사례연구 참여관 프로필

- 본 현장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의사를 밝히고 협조를 제공해준 참여관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참여기관의 익명을 보장하기 위해 기관명을 코드화 하였으며, 기관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자세하게 명시할 경우 해당 기관을 유추할 수 있음을 고려해 지역은 서울·경기권/충청권/호남권/영남권/강원권/제주로 구분하여 표기함(지역 단위에는 인접 광역시를 포함하고 있음)

[표 7-4] 현장사례연구 참여관 프로필

조	기관명	유형	지역	등록 종별	설립·운영주체	
					대분류	소분류
1	M01	박물관	충청권	1	기업(인) 설립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2	M02	미술관	서울·경기권	1	기업(인) 설립 비영리법인	재단법인
3	M03	미술관	영남권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M04	미술관	서울·경기권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4	M05	박물관	서울·경기권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5	M06	미술관	호남권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M07	미술관	호남권	1	공공부문	지자체/공익법인
	M08	미술관	호남권	1	기업(인) 외 설립 비영리법인	재단법인
6	M09	박물관	서울·경기권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M10	박물관	서울·경기권	2	개인사업자	고유번호
	M11	미술관	서울·경기권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7	M12	미술관	서울·경기권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M13	미술관	서울·경기권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M14	미술관	서울·경기권	1	개인사업자	고유번호
8	M15	박물관	영남권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M16	박물관	영남권	1	기업(인) 설립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M17	박물관	영남권	1	기업(인) 외 설립 비영리법인	종교관계 비영리법인
	M18	박물관	영남권	1	기업(인) 외 설립 비영리법인	종교관계 비영리법인
	M19	박물관	영남권	1	기업(인) 외 설립 비영리법인	공익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9	M20	박물관	강원권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10	M21	박물관	강원권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M22	박물관	강원권	1	개인사업자	고유번호
	M23	박물관	강원권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11	M24	미술관	충청권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M25	박물관	서울·경기권	1	기업(인) 설립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M26	미술관	충청권	1	기업(인) 외 설립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12	M27	박물관	호남권	1	개인사업자	고유번호

조	기관명	유형	지역	등록 종별	설립·운영주체	
					대분류	소분류
	M28	박물관	서울·경기권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M29	박물관	서울·경기권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M30	박물관	서울·경기권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M31	박물관	서울·경기권	1	기업(인) 설립	기업(인) 소속
13	M32	박물관	서울·경기권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M33	박물관	영남권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14	M34	박물관	영남권	1	기업(인) 설립	기업(인) 소속
15	M35	박물관	서울·경기권	1	기업(인) 설립	기업(인) 소속
	M36	박물관	서울·경기권	1	개인사업자	고유번호
	M37	박물관	서울·경기권	1	기업(인) 외 설립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16	M38	박물관	서울·경기권	1	기업(인) 외 설립 비영리법인	학교법인
	M39	박물관	서울·경기권	1	기업(인) 외 설립 비영리법인	종교관계 비영리법인
	M40	박물관	서울·경기권	1	개인사업자	고유번호
	M41	박물관	서울·경기권	1	개인사업자	고유번호
	M42	박물관	서울·경기권	1	개인사업자	고유번호
17	M43	박물관	서울·경기권	1	기업(인) 외 설립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M44	박물관	서울·경기권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18	M45	박물관	영남권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M46	박물관	영남권	1	개인사업자	고유번호
19	M47	박물관	호남권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M48	박물관	서울·경기권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20	M49	박물관	영남권	1	기업(인) 설립	기업(인) 소속
	M50	박물관	영남권	1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 총 50개 관 중 박물관은 38개관이 참여하였으며, 현장연구 참여 박물관의 등록유형은 1종 37개, 2종 1개관이었음. 미술관은 12개관이 참여하였으며, 등록유형은 전체 1종이었음

(표 7-5) 현장사례연구 참여관 등록 종별 비교

등록 종별	기관 수
1종	49
2종	1

- 현장연구에 참여한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지역분포는 서울특별시 10개관 (박물관 7개, 미술관 3개), 경기북부 9개관 (박물관 6개, 미술관 3개), 경상남도 5개관 (박물관 4개, 미술관 1개), 경상북도 5개관 (박물관 5개, 미술관 0개), 강원 4개관 (박물관 4개, 미술관 0개), 경기남부 4개관 (박물관 4개, 미술관 0개), 전라남도 4개관 (박물관 2개, 미술관 2개)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이 외에 인천광역시 2개관 (박물관 2개, 미술관 0개), 충청북도 2개관 (박물관 1개, 미술관 1개) 광주광역시 1개관 (박물관 0개, 미술관 1개), 부산광역시 1개관 (박물관 1개, 미술관 0개), 세종특별자치시 1개관 (박물관 1개, 미술관 0개), 울산광역시 1개관 (박물관 1개, 미술관 0개), 충청남도 1개관 (박물관 0개, 미술관 1개)이 참여함
- 설립·운영주체별로 현장연구 참여관 수를 살펴보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가 38개관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기업 외 비영리법인이 9개관, 기업 소속과 기업 설립 비영리법인이 각각 4개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기관이 1개관으로 나타남. 영리형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본 연구 대상에서 제외시켜 참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음

[표 7-6] 현장사례연구 참여관 설립·운영주체 구분

설립·운영주체 구분	기관 수
공공기관(국가/지자체 출연)	1
기업(인) 설립 비영리법인(공익법인, 재단법인)	4
기업(회사법인) 소속	4
기업(인) 외 설립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재단법인, 사단법인, 학교법인 등)	9
개인(고유번호 부여단체, 사업자등록)	32
영리형 뮤지엄기업(주식회사)	0

## 2절 실태 분석 결과

### : 체크리스트 기반 현황 진단<sup>59)</sup>

#### 가. 공공성: 설립/운영주체, 규정, 윤리강령

□ 현황 및 문제점: 사립관 종사자

(1) 기관 설립주체와 운영주체(조직)를 상시 공표하는 기관은 74%

-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공적 신뢰와 책임)에 대한 현장연구 분석 결과, 기관의 설립주체와 운영주체(조직)를 상시 공표하고 있는 기관은 참여 기관의 74%였음

(표 7-7) 현장연구 분석 결과: 공공성 ① 설립 및 운영주체 상시 공표  
(집단별 n=50, 긍정응답 빈도)

기본 확인 항목	기관	연구자
Q1. 기관의 설립주체와 운영주체(조직)를 상시 공표하고 있는가?	37	37

- 특히 기관의 설립 주체별로 확인해 보면, 개인이 설립한 기관의 경우 그 외 주체의 설립기관과 비교했을 때 기관의 설립 및 운영 관련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편으로, 규정이 없는 기관 13곳 중 12곳이 개인 설립 기관임

(표 7-8) 설립주체별 기관의 설립주체와 운영주체 상시 공표  
(집단별 n=50)

구분	기관		연구자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기업(인) 설립 공익법인	2	0	3	0
기업(인) 설립 비영리법인(재단법인)	1	0	1	0
기업 소속 박물관·미술관	2	1	3	1
기업(인) 외 설립 비영리법인(재단법인)	1	0	1	0
개인 설립 (고유번호 부여 단체)	8	0	8	1

59) 분석결과는 기관과 연구자의 응답을 비교하여 제시함. 이때 기관과 연구자의 응답 내용이 상이한 이유는 기관 종사자가 인지하고 있는 내용이 실제 상황과 다른 경우로 인한 오차, 또는 인터뷰 진행 시 응답하지 않았으나 연구자가 자료를 통해 분석 및 확인하여 보완된 경우가 있음.

구분	기관		연구자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설립주체				
개인 설립 (사업자 등록)	15	6	12	10
기타	8	0	9	0
합계	37	7	37	12

## (2) 기관 설립 및 운영 관련 규정 마련 및 이에 대한 인식 부족

- 기관의 설립 및 운영 관련 자체 규정이 있는 곳은 58%였음
- “예규편람을 만들어 직원들이 항시 볼 수 있도록 비치”<sup>60)</sup>하거나 “정관과 운영에 관한 관련규정 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이를 박물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음
- 모(母) 재단이나 기업이 있는 경우 그 사내 규정을 기관의 운영 규정으로 준용하는 경우도 있음

“모(母)기업의 사내 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1편 경영기본, 2편 조직, 3편 업무일반, 4편 재산관리, 5편 인사노관리, 6편 재무회계관리, 7편 윤리, 윤리경영, 준법경영, 산업안전/보건), 사내 전자결재망 게시판에 게시 중”

“박물관 홈페이지에 재단 정관 게시”

“재단법인의 정관”

- 심지어는 공모전의 운영 규정을 기관의 운영 규정으로 준용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례도 있음

“0000공모전 운영 규정”

- 한편 “시설 운영, 급여 및 근태 규정, 소장품 관리 규정 등이 있으나 이를 공표하지 않는다”거나, 관련 규정의 부재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홈페이지에 게시해둔 기관 설립 취지, 의지, 운영방향, 박물관 안내 문구 등을 설립 및 운영 관련 규정과 혼동하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으로 나타남

60) 이 장의 본문에서 큰따옴표(“”)로 표시된 내용은 현장연구에서 언급된 내용을 직접 인용한 것임 .

[표 7-9] 현장연구 분석 결과: 공공성 ② 설립 및 운영 관련 자체 규정

(집단별 n=50, 긍정응답 빈도)

기본 확인 항목	기관	연구자
Q2. 기관의 설립 및 운영 관련 자체 규정이 있는가?	32	29

- 대부분의 모재단이 박물관·미술관 운영을 포함한 광의의 문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재단 산하 박물관·미술관은 재단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며, 개별적 위상 설정에 어려움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표 7-10] 설립주체별 기관의 설립 및 운영 관련 자체 규정

(집단별 n=50)

구분 설립주체	기관		연구자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기업(인) 설립 공익법인	3	0	2	1
기업(인) 설립 비영리법인(재단법인)	1	0	1	0
기업 소속 박물관·미술관	1	2	2	2
기업(인) 외 설립 비영리법인(재단법인)	1	0	1	0
개인 설립 (고유번호 부여 단체)	7	1	7	2
개인 설립 (사업자 등록)	12	9	8	15
기타	7	0	8	1
합계	32	12	29	21

### (3) 자체 윤리강령 및 ICOM 윤리강령에 대한 인식 미비

- ICOM 윤리강령을 숙지하거나 별도의 윤리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는 38% 수준으로 확인됨

[표 7-11] 현장연구 분석 결과: 공공성 ③ 윤리규정

(전체 n=50, 긍정응답 빈도)

기본 확인 항목	기관	연구자
Q3. ICOM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활용하고 있는가? 또는 기관의 윤리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24	19

- 별도 윤리 규정이나 강령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ICOM 윤리강령

을 준용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7-12] 설립주체별 ICOM 및 기관 윤리규정

(집단별 n=50)

구분 설립주체	기관		연구자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기업(인) 설립 공익법인	2	1	2	1
기업(인) 설립 비영리법인(재단법인)	1	0	0	1
기업 소속 박물관·미술관	3	0	3	1
기업(인) 외 설립 비영리법인(재단법인)	0	1	0	1
개인 설립 (고유번호 부여 단체)	4	4	4	5
개인 설립 (사업자 등록)	10	8	7	15
기타	4	2	3	6
합계	24	16	19	30

- ICOM 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이를 공유하는 방법은 “인쇄 및 비치”, “PDF 파일 제공”, “서적” 등을 “사내 게시판”에 공지하는 등 서면으로 공유하거나, 관련 학회나 협회를 통해 “교육”이나 “워크숍”을 받아 공유받는 경우가 다수임

“사내 게시판”  
 “교육”  
 “관련 학회나 협회의 교육 및 학술대회 등을 통해 공유”  
 “워크숍”  
 “서적”  
 “자체 윤리강령 제정하고 워크숍으로 공유”  
 “정관, 홈페이지 게시”  
 “한국박물관협회에서 주최하는 워크숍”  
 “인쇄 및 비치”  
 “PDF 파일 제공”  
 “심포지움”

#### □ 현장사례연구자 의견

-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관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계약 내용 (시설 운영, 급여 및 근태 규정)을 담은 문서 혹은 일반적인 윤리강령을 기관 운영

규정으로 오인하고 있으며, 어떤 문서가 공식적인 정관의 성격을 지니는지에 대한 해석이 기관별로 상이한 것으로 드러남

“OO미술관은 기관설립 및 운영 관련 규정을 게시하고 있다고 작성하였으나, 홈페이지에는 미술관 설립취지, 관장 프로필, 조직도 등이 게시되어 있고, 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 관련 규정은 없음”

“공간을 3년간(최장 5년간) 무상 임대 받고 운영비 일부 지원을 받는 것과 관련하여 체결된 계약서임. 박물관 자체 정관이나 운영 규정이라 보기 어려움. 사립박물관과 공공기관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임. 제목이 없는 또 다른 문서(학예사가 정관이라고 문서를 제시함)를 확인했으나, 이 역시 정관의 성격을 갖는지가 모호함. (오히려 박물관회 정관의 성격으로 보임)”

“ICOM 윤리강령에 대한 세부적인 인식은 충분하지 않아 보임. 또 정관과 업무매뉴얼은 있으나 세부적으로 실천할 조직적 운영은 어려워 보임”

“미술관은 개인이 설립한 고유번호 부여단체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뿐이며, 미술관 규정으로 답을 만한 사항이 별로 없어 작성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있어 미술관 운영과 관련된 기본 자산 설정이나 관련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당초 체크리스트에 공식/공개 문서가 있다고 응답했음. 하지만 인터뷰 과정에서 홈페이지에서 설립 목적, 미션과 비전을 밝힌 점 정도로 이해함을 알 수 있었음”

“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주체를 홈페이지나 운영규정 등에서 명확히 표기하지는 않으나 ‘OOOOO박물관협회’ 소속 미술관, 서울시 등록미술관임을 밝혀 설립 및 운영의 공적 측면을 표방하고 있음”

- 기업 설립 비영리 법인에서 운영하는 기관의 경우 비영리 재단법인인 문화재단의 운영 관련 정관은 있으나 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있지는 않으며, 공표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부분 문화재단 운영에 관련된 정관이며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관한 별도의 운영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임

“기관으로서 박물관의 설립목적, 미션, 비전 등을 명시한 공식적인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재단법인 OOOOO 정관에 재단이 하고자 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박물관은 이를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했다.”

- 현재 별도의 설립 및 운영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공표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기본 운영 원칙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문서화하는 것은 어려운 과업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기관의 용이한 업무 진행을 위해 일원화된 보편적인 양식을 요청함

“보다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일종의 양식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함”

- 이러한 교육이 내부 구성원들의 실질적인 인식 제고에 기여하는 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자체 윤리 규정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도, 윤리강령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교육이나 문서화된 매뉴얼은 마련되지 않는 경

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남

- 이러한 상황에서 윤리강령을 “숙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도 나타남

□ 과제 및 대안

- 별도로 정리된 운영규정과 정관을 마련하여 총칙, 조직 및 기구, 자문위원회, 운영, 재정 등에 대한 내용을 전시실과 학예실에 게시하고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사업자 운영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 규정 문서화 양식을 구상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공공성: 공공적 자원 범위와 내용 규정

□ 현황 및 문제점: 사립관 종사자

(1)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적 자원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

-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적 자원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기관은 54%였음

[표 7-13] 현장연구 분석 결과: 공공성 ④ 공공적 자원의 범위와 내용 규정  
(전체 n=50, 긍정응답 빈도)

기본 확인 항목	기관	연구자
Q4.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적 자원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가?	30	27

- 기본 자산과 자원 관리 및 운용 현황은 기관 별로 편차가 크며 그 성격 역시 매우 상이한 것으로 파악됨

[표 7-14] 설립주체별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적 자원의 범위와 내용 규정  
(집단별 n=50)

구분 설립주체	기관		연구자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기업(인) 설립 공익법인	2	1	2	1
기업(인) 설립 비영리법인(재단법인)	1	0	1	0
기업 소속 박물관·미술관	0	3	0	4

구분	기관		연구자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설립주체				
기업(인) 외 설립 비영리법인(재단법인)	1	0	1	0
개인 설립 (고유번호 부여 단체)	6	2	6	3
개인 설립 (사업자 등록)	13	5	10	12
기타	7	1	7	2
합계	30	12	27	22

## (2)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적 자원 범위와 내용 규정 공개 여부와 공개 방식

- “규정 없는 곳이 대다수”이며 규정이 있더라도 이를 “미공개”하는 곳도 있음
- 관련 규정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로 공개하고 있음
  - 재단정관에 포함
  - 소장품 정보는 문화유산 DB공개
  - 표준유물관리시스템 통해 공개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일부 등록 및 공개
  - e나라도움 소장품 공개 및 홈페이지 전시 소개에 소장품 정보 공개
  - 홈페이지 통해 공개

“규정 없는 곳이 대다수”  
 “정관 별첨 기본재산 목록에 기록”  
 “점검 관리/운영 체제에 관한 명확한 규정 없음”  
 “국세청 홈택스에 정보공시”  
 “○박물관에 합당한 유물 선별 기준 받아 운용,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통한 소장품 관리 및 공개”  
 “미공개”  
 “소장품 정보는 문화유산 DB공개”  
 “표준유물관리시스템 통해 공개”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일부 등록 및 공개”  
 “e나라도움 소장품 공개 및 홈페이지 전시 소개에 소장품 정보 공개”  
 “재단정관에 포함되어 있고, 홈페이지 통해 공개”

### (3) 공공적 개념에 대한 인식

- 현장연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현재 사립박물관·미술관은 설립 및 운영의 주체에 대해 온라인 등을 통해 상시 공표하는 비율은 70% 이상이지만 설립 주체 및 운영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음
-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자체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 곳은 50% 수준이며, 윤리규정이 마련된 기관은 38%, 공공적 자원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기관은 54%로 확인되어 공공성에 대한 제도적 명시가 부족한 수준으로 확인됨
- 또한 기관 종사자들이 관련 규정의 부재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실제 적합한 강령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공공성에 부합하는 기준을 준용하고 있다고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표 7-15) 현장연구 분석 결과: 공공성(공적 신뢰와 책임)

(집단별 n=50, 긍정응답 빈도)

기본 확인 항목	기관	연구자
Q1. 기관의 설립주체와 운영주체(조직)를 상시 공표하고 있는가?	37	37
Q2. 기관의 설립 및 운영 관련 자체 규정이 있는가?	32	29
Q3. ICOM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활용하고 있는가? 또는 기관의 윤리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24	19
Q4.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적 자원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가?	30	27
Q5.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	44	50

### □ 현장사례연구자 의견

- 재단법인 소속 기관의 경우 공익법인 결산 서류 등의 경영공시 의무 이행의 차원에서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이사회(이사장)나 재단 자문위원회가 기본 자산과 자원 관리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문화예술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성이 반영되기 힘든 구조라는 한계를 지님
-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대부분의 기관의 경우, 기관 운영과 관련된 기본 자산 설정이나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관한 의사결정에는 “관장”의 결정이 큰 영향을 미침
  - “관장 개인”이 결정하거나
  - “학예사 선논의 후 관장에게 후보고” 하거나

- “관장 주체로” 하되 기관에 따라 “운영관리실장”, “이사회”, “부관장 이하 운영위원회”, “후원회 총회”, “박물관 구성원”, “학예사”와 논의를 통해 결정하고 있음
- 관장이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것을 문제적이라고 단정 지을 수 없으나, 관장 개인에 의해 소장품이 수집되며 이에 대한 학예직과의 정보 공유가 되지 않는 경우, 공공적 자원으로서는 소장품이 관리되고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함

“관장님 개인이 00년 간 수집하여 박물관을 개관하였고 현재도 많은 소장품들을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소장하고 있다. 개관이후로도 박물관 소장품의 구매권한은 오직 관장님만 가지고 있으며 소장품의 수가 워낙에 많아 개관 2년 후부터는 소장품 관리에 들어갔으나 관장님이 구매하는 소장품의 속도를 이겨내지 못하며 DB인력을 두 해 지원받아 문화유산시스템 및 E-뮤지엄에 등록 공개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는 있으나 플랫폼을 다룰 수 있는 인력의 부족과 관련학 전공이 아닌 학예직으로 소장품에 대한 인식과 정보를 공유하는데도 시간이 소요되며 잦은 이직으로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소장품 등록 인력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표준유물상으로 공개가 원칙인데 설립자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

- 공공성에 대한 사립 기관의 인식 차가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음. 공공적 자원의 운영에 대해 외부에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 기관별로 상이하게 나타남. 사립박물관·미술관이지만 국가의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운영 상황에 대한 공개 의무가 있고, 감사 대상이 되는 것 역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기관이 존재하는가 하면, 소장품을 개인 자산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기준 없는 소장품 매입과 매도, 미등록 소장품의 매도 역시 공공연히 행하는 기관도 있음
- 관련하여,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경우 규제는 공공기관 수준으로 받으나 공공기관만큼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현장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나, 국립 문화시설을 기준으로 전적인 지원을 호소하는 경우도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세심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다. 공공성: 지원사업

### □ 현황 및 문제점: 사립관 종사자

#### (1)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참여 현황과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 대부분의 사립박물관·미술관들이 다양한 지원 사업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7-16) 현장연구 분석 결과: 공공성 ⑤ 공공의 지원사업 참여 경험

(전체 n=50, 긍정응답 빈도)

기본 확인 항목	기관	연구자
Q5.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	44	50

○ 사립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답한 지원사업은 아래와 같음

(표 7-17) 사립박물관·미술관 대상 지원사업 종류

주관처	지원사업명
정부부처 문화재청	문화유산 산업 분야 청년인턴 지원사업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 지역문화재 활용사업(생생문화재)
공공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예술연수단 다원예술지원사업 전시지원사업 국제환경미술제 시각예술창작산실 공간지원 신나는 예술여행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	박물관 문화가 있는 날 길 위의 인문학 꿈다락토요문화학교 전문인력 지원사업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소장품 DB 지원사업 온라인콘텐츠 제작지원
	미술관 문화가 있는 날 길 위의 인문학 전문인력 지원사업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법정법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전시공간활성화사업
특수법인 한국문화원연합회	어르신문화프로그램
문화체육 관광부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생활사박물관협력망 교육 개발 및 운영 지원사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근현대사협력망사업
	국립박물관문화재단 2021 사립박물관·미술관 온라인 콘텐츠 제작지원사업 박물관의 힘 주제형 프로그램
지방 자치단체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페드림
	전라남도 문화재단 레지던시 지원사업

	주관처	지원사업명	
출자출연 기관		함께 만드는 미술관	
	경남문화예술진흥원	레지던시 지원사업	
	경북문화재단	문화예술교육사현장역량강화사업	
지방 자치단체	서울시	서울시전시지원사업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 문화사업비지원(전시 및 교육, 온라인콘텐츠 제작) 인력지원 찾아가는 역사박물관	
	광주시	광주시 등록미술관 운영지원 광주 도구천 전시지원사업	
	경기도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경상북도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민간인쇄조보 학술세미나 경상북도 정체성 선양사업 보문호반동요대회	
	경상남도	우리지역문화재 바로 알기 사업	
	서울시 종로구	아름다운 종로 박물관 나들이 365종로 창의버스	
	전라남도 해남군	미술관 운영지원	
	강원도 영월군	전국민화공모전	
	사기업	KB손해보험	KB박물관노닐기

- 인력지원사업의 경우 저임금의 단기적인 인력지원이라는 한계 때문에 업무연속성이 극심하게 떨어지는 사례가 많음

“보조사업이 매년 다시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다보니, 지자체의 상황들로 인해서 보조사업이 종료되거나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생겨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불편함이 있다”

- 또한 인력지원사업의 제한규정으로 인해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견을 확인함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반복참여자 지원제한 정책으로 인해 이제 업무에 대한 적응과 응용이 가능해질 때쯤, 숙련된 전문인력이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생겼다.”

“박물관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하는 인력 지원 사업에서 전문인력에 대한 신청 자격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 사립관은 기관이 부담해야 하는 자부담액과 4대 보험료가 사립관의 재정상 부담스러운 요건임을 피력하고 있음

“인건비 자부담 가중”

“과거에 비해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의한 인건비 중 자부담 비율이 높아졌으며,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는 지원액에 기초하므로 박물관 인력의 타분야 유출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된다”

- 교육 프로그램지원사업의 경우 ‘길 위의 인문학’, ‘문화가 있는 날’ 등의 사업을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와의 연계가 도모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육 프로그램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일회성 사업이 대부분인 점을 아쉬워하는 의견이 제시되었고, 기관의 입지 조건 등을 고려한 강사비와 재료비 현실화 등 향후 개선점을 지적하는 사례도 다수 집계됨
- 전시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사업의 규모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함

“현 상설전과 적절한 시기에 진행하는 기획전으로 인해 관람객들은 재방문이 늘며 박물관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활동적인 이미지를 지역민과 관람객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점은 장점이며 박물관에서도 기획전시를 통해 소장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아카이브 할 수 있는 점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박물관 운영비가 여유가 있어 매년 정기적인 기획전을 미리미리 계획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입장객수익으로 운영되는 사립관에서는 이런 지원비를 통해 기획전을 진행하는데 지원사업은 적고 혜택을 받으려는 관들은 많아 경쟁구도속에 전시를 못하게 되거나 축소되어 운영되는 부분들은 박물관 전체 운영 계획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 또한 지원사업의 지원 금액이 현실적이지 않아 양질의 전시를 꾸리거나 좋은 작가를 초대하기 힘든 상황으로, 작가 사례비(artist fee)나 평론 사례비 등이 현실적으로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 전시 프로그램지원사업이나 교육 프로그램지원사업 평가 기준이 참여자 수 혹은 프로그램 개수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보니 단순 체험 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 프로그램의 질이나 참가자 만족도는 중요하게 고려되지 않는 것 같다는 아쉬움을 토로함
- 지방정부의 문화예술 지원정책 부재로 인한 지원 프로그램 부족과 과도한 행정업무, 행정 주체의 일정에 맞춘 사업 시기 등에 대한 아쉬움과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현장 사례가 많았음

“△△시 지원사업의 단점은 △△시의 경우에 정산 시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자료 요청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향”

- 대부분 운영비 소액 지원에 그쳐 수용비 및 경상비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파악됨

□ 현장사례연구 연구자 의견

- 인력지원사업의 혜택의 주체가 기관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 인력이 혜택의 주체인 듯 운영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는 의견이 있었음

“작은 사립박물관에 인력의 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인력활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인력의 급여지원은 박물관 운영비용의 절감이라는 면에서 박물관의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 인력이 사업 혜택의 주체인 듯 운영되고 있는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

- 또한 지원사업에 확정되어도 인력이 서울 및 수도권에 몰리게 되는 현상으로 지역은 지원사업의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음

“지원인력이 서울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국고 지원 사업이 확정이 되어도 벽지라 인력이 구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은 지방 소도시이므로 공개 모집을 해도 지원자가 거의 없다.”  
“시찰에 있는 박물관이다보니 출퇴근시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데, 차량소지자를 찾다보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차량비 지원이 따로 없어 인력 확보가 어렵다.”

- 무엇보다 많은 사립박물관·미술관이 기관 운영을 위해 공적 지원사업이 시설 개선, 건물 외벽의 개보수는 물론이고 외관 미화, 소장품 보존수복, 전시시설 현대화, 전시지원, 소장품 연구, 수장시설 확충 지원, 문화재 복원, 공공수장고 건립 등 기관 운영의 전반을 아우를 수 있도록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사립박물관·미술관이 지원사업을 운영의 상수로 간주하여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경향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음

“개관 11년이 지나 노후화된 시설(조명, 전시 케이스, 벽, 유리창 등) 유지보수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전시콘텐츠 개선 사업이나 수장시설 확충 지원 사업, 문화재 복원 지원 사업 등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필요함”  
“노후화되어가고 있는 시설을 현대화하고 실감형 전시 등을 위한 열정 등도 있으니 예산 문제로 하고 싶은 것을 시도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박물관의 소장품에 대한 연구 및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관장 1인이며 이를 충분히 공공에 서비스하기 위해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판단됨. 이는 박물관의 기본적으로 조직과 운영이 열악한 환경 때문이기도 하고, 운영 인력은 지원제도에만 의존한다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라고 생각됨.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사립박물관의 소장품 연구를 공공의 과업으로 확산시켜 그 결과를 공공 서비스할 수 있는 정책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사립박물관들의 소장품에 대한 수장, 보존, DB 구축 등 기술적인 면에 대해서는 국·공립박물관이나 지역 기관이 지원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자체적으로 수장고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역 공공수장고 건립이

## □ 과제

- 사립박물관·미술관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지원사업들 중 인력지원사업은 가장 적극적으로 현장의 의견을 표명하는 분야로 판단됨
- 인력지원사업의 경우 학예인력지원사업, 문화예술교육사 지원사업, 아르코 연수단원 지원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에 직면한 사업이라 할 수 있음
- 대부분의 지원 사업이 단기 지원 사업인만큼, 기관이 지원사업을 통해 운영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거나 운영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정작 기관이 각 지원 사업의 취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함
- 국가나 지자체의 지원사업에는 모두 참여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인력 및 프로그램을 지속적이고 양질로 운용하기 어려운 규모로 지원이 된다는 의견이 많았음. 이는 현재의 지원 사업을 통해 사립박물관·미술관이 스스로의 공공성에 대해 고민하고, 이를 구축하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일정 규모 이상의 사립관의 경우 기관의 설립 주체와 운영주체에 대한 공표를 상시하고 있으며, 공공자산으로서 기관의 자산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공익법인 소속의 사립박물관·미술관은 재단 운영 규정에 준용하여 구체적으로 기관의 공적 책임을 천명하고 있으나, 기관 독자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함
- 많은 개인사업자 운영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경우 윤리 강령이나 운영 규정을 성문화하거나 공표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나, 그 필요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해서라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지 않았으며 체계적인 시스템을 정비할 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사료됨
- 개인사업자 운영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경우 대부분 관장이 의사결정 권한을 독점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존재 여부와는 상관없이 전문적이고 정례적으로 운영되는 이사회나 위원회 체계는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파악됨

- 재단 운영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경우에도 재단의 이사장의 개인 권한이 기관의 운영에 지나치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재단의 특수관계인(친족 등)이 이사장직을 수행하는 몇몇 경우에는 전문적인 기관 운영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함
- 대부분의 기관에서 인력, 공간, 프로그램 등 여러 방면의 다양한 지원 사업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으나, 단기 사업 중심의 소액 지원 사업이 대부분인데다가 과도한 행정 업무 부담이 있어 전문 역량 강화, 현실적인 전시 운영, 지속적인 프로그램 기획 등에 대한 어려움을 공통적으로 토로함
- 소장 자료 공개 및 지원 사업 수행 등에 대해 어려움 혹은 거부감을 표하지 않은 우수 기관의 경우, 공적 책임에 대한 인식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나 지역으로 갈수록 전문인력부족의 문제가 심각해지는 만큼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바, 전반적인 기관 운영을 힘들게 만드는 상황임

## 라. 박물관·미술관 조직건전성: 운영계획 수립, 실행, 평가, 개선 절차

### □ 현황 및 문제점: 사립관 종사자

#### (1) 기관의 설립목적 및 미션에 부합하는 정기적 운영계획 수립, 실행, 평가 및 개선의 절차 미비

- 기관의 설립목적, 미션, 비전 등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경우는 70%였으나, 그 목적 및 미션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공표, 실행하고 평가 및 개선하는 절차가 있는 곳은 36%로 낮은 비율을 보임

[표 7-18] 현장연구 분석 결과: 조직 건전성A ① 설립목적 및 미션

(집단별 n=50, 긍정응답 빈도)

기본 확인 항목	기관	연구자
Q1. 기관의 설립목적, 미션, 비전 등을 명시한 공식적인 문서 또는 공개된 문서가 있는가?	37	35
Q2. 기관의 설립목적 및 미션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 공표하고 이를 실행, 평가, 개선하는 절차가 있는가?(* 증빙자료 확인)	20	18

[표 7-19] 설립주체별 기관의 설립목적 및 미션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의 정기적 수립 및 실행, 평가와 개선하는 절차 보유

(집단별 n=50)

구분 설립주체	기관		연구자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기업(인) 설립 공익법인	2	1	2	1
기업(인) 설립 비영리법인(재단법인)	1	0	0	1
기업 소속 박물관·미술관	1	2	0	4
기업(인) 외 설립 비영리법인(재단법인)	0	1	0	1
개인 설립 (고유번호 부여 단체)	4	4	4	5
개인 설립 (사업자 등록)	7	13	7	16
기타	5	2	5	4
합계	20	23	18	32

## (2) 거버넌스의 구조화를 위한 노력과 인식 수준

- 기관의 모든 직원 및 자원봉사자가 조직의 설립목적 및 미션을 공유하고 이에 관해 활발한 대화/소통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전체의 78% 수준이며, 그 내용이 ‘비영리의 향구적인 기관’이라는 뮤지엄 개념 정의에 부합하는 경우는 64%임
- 기관의 운영조직 및 의사결정(거버넌스)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된 곳은 48%로 과반 이하임. 이는 설립 및 운영 관련 자체규정이 마련된 비율(58%) 보다는 낮지만 윤리 강령이 마련된 비율(38%) 보다는 높은 수준

[표 7-20] 현장연구 분석 결과: 조직 건전성A ② 거버넌스 및 뮤지엄 개념 정립

(집단별 n=50, 긍정응답 빈도)

기본 확인 항목	기관	연구자
Q3. 기관의 모든 직원 및 자원봉사자가 설립목적 및 미션을 공유하고 이에 관해 활발한 대화/소통이 이루어지는가?	37	39
Q4. ‘비영리의 향구적인 기관’이라는 뮤지엄 개념 정의에 부합하는가? (* 증빙자료 확인)	31	32
Q5. 운영조직 및 의사결정(거버넌스)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23	24

- 체크리스트 작성시 공식적으로 공개된 문서가 있다고 응답했으나 현장인터뷰 과정에서 미션과 비전을 운영 조직과 의사결정에 관한 규정으로 착각하고 대답한 것이었음이 밝혀진 경우도 있었음

“당초 체크리스트에 공식/공개 문서가 있다고 응답했음. 하지만 인터뷰 과정에서 홈페이지에서 설립 목적, 미션과 비전을 밝힌 점 정도로 이해함을 알 수 있었음. 따라서 공식적인 문서나 공개된 문서는 없음. 운영 관련 규정 없음. ICOM 윤리강령 알고 있으나 숙지, 활용하지 않고 있고, 자체 윤리 강령도 없음. 기본 자산 중 재정은 재무제표상 자본금 등에 대해 공표.(e나라 시스템에서도 공시하도록 요구). 하지만 소장품은 관장님 개인 소유로, 개별 유물 평가에 따른 금액 산정이 어려움.(예: 버려질 수 있는 농기구 등) 다만 소장품 설정은 표준유물시스템을 활용하여 등록하고, 이를 대국민 서비스 제공 중임. 수익금 사용 등에 대해 명문화하지 않음”

- 한 기관은 체크리스트 작성후 없었던 규정집을 만들어 현장사례 연구자들에게 보여 주기도 하였음. 이 사례는 규정집 등의 공식 문서 존재 여부가 기관의 의지에 크게 좌우됨을 보여주는 것임

“○○박물관은 체크리스트 작성후 인터뷰 전까지 필요한 규정들을 모으고, 보완하고, 신설하는 과정을 통해서 규정집을 문서화하여 보여주었음”

- 어떤 기관은 문서 작성을 위한 양식 제공을 요구하기도 했음

“그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보다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일종의 양식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함”

## □ 현장연구자 의견

- 운영을 위한 체계, 문서, 평가 절차 등 체계에 있어 전반적으로 부족한 곳이 많음

“처음부터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내법상의 공익성, 공공성을 충족하는 형태로 설립,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기관 운영의 기본이라 기관의 설립목적과 미션을 전략적으로 재점검하고, 그에 맞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 평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점은 큰 약점이라 할 수 있음. 내부적으로도 직원들이 루틴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박물관으로서의 조직 미션과 전략을 논의하고 소통하는 형태는 부재함. 의사결정은 거의 관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직원들은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수직적 시스템임. 외부 전문가에 의한 의사결정 구조 역시 없다보니, 이러한 운영방식에 대한 성찰이나 재점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기 어려움”

“○○미술관은 홈페이지 소개글(관장 인사말) 외에는 미술관의 설립목적, 미션, 비전 등을 명시한 공식 문서가 존재하지 않음. 미술관 운영과 관련된 정관을 마련하지 않음. 따라서 이에 기반한 운영계획의 수립, 공표, 시행, 평가 등의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규정이나 양식 등에서는 보완이 필요해 보임”

- 거버넌스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된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문서화·구조화를 통한 공인은 요원한 상태이며, F&B와 같은 영리 활동과 박물관·미술관의 비영리 활동 사이의 관계 정립 등은 모호하다고 할 수 있음

“○○미술관은 기관의 설립 목적, 운영조직 및 의사결정 등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명시되어 있고, 이 정관을 포함해 홈페이지에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단, 기본자산 관련 별지 정보는 미공개. 홈페이지에 2021년부터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메뉴는 마련되어 있으나, 내용은 아직까지 미공개상태임. 공익법인 법에 따라 재무제표, 후원금 내역 등을 공개하고 있다고 혹은 일부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으나, 기관 홈페이지에는 메뉴만 있을 뿐 실제 공개되고 있지는 않음”

## 마. 박물관·미술관 조직건전성: 거버넌스

### □ 현황 및 문제점: 사립관 종사자

#### (1) 전문적·안정적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취약

- 의사결정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는 56%임
- 기관의 중요한 의사 결정이나 정책개발은 주로 관장에 의해 결정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특히 연구자가 확인한 사실에 따르면 38%, 기관 종사자의 응답으로는 60%가 관장이 주 의사결정자로 나타남

[표 7-21] 현장연구 분석 결과: 조직 건전성A ③ 의사결정

(집단별 n=50, 긍정응답 빈도)

기본 확인 항목	기관	연구자
Q6. 기관 운영에 관해 외부 전문가(박물관 전문가 등)로 구성된 이사회 또는 위원회(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가 운영되고 있는가?	25	28
Q7. 기관 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정책개발은 누가 하는가? (복수응답)		
① 관장	36	27
② 학예실장 또는 특정 학예사	10	10
③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5	3
④ 기타 조직	4	5

“재단법인 이사회와 이사회 의결에 의해 결정”

“관장과 부관장 이하 박물관 운영위원회 각 부서별 관리와 운용”

“후원회 조직의 총회와 이사회 등을 통해 외부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 결정”

“박물관 운영위원회”

“재단이사회와 임직원 정례회의 통해 결정”  
 “박물관장과 운영관리실장에 의해 결정”  
 “관장 개인”  
 “박물관 구성원의 논의에 따름”  
 “학예실 및 대표의 협의”  
 “관장 주체로 학예사와 직원과 논의하여 결정”  
 “주1회 정기회의”  
 “학예사 선논의 후 관장에게 후보고”  
 “관장님 개인이 00년간 수집하여 박물관을 개관하였고 현재도 많은 소장품들을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소장하고 있다. 개관이후로도 박물관 소장품의 구매권한은 오직 관장님만 가지고 있으며 소장품의 수가 워낙에 많아 개관 2년 후부터는 소장품 관리에 들어갔으나 관장님이 구매하는 소장품의 속도를 이겨내지 못함”  
 “소장품 등록 인력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표준유물상으로 공개가 원칙인데 설립자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

○ 개인사업자 운영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경우 개인적인 관심과 투자에서 시작한 기관들이 대부분임

(표 7-22) 설립주체별 기관 운영에 관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이사회 또는 위원회 운영 (집단별 n=50)

구분 설립주체	기관		연구자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기업(인) 설립 공익법인	2	1	3	0
기업(인) 설립 비영리법인(재단법인)	0	1	0	1
기업 소속 박물관·미술관	1	2	0	4
기업(인) 외 설립 비영리법인(재단법인)	1	0	1	0
개인 설립 (고유번호 부여 단체)	3	3	5	4
개인 설립 (사업자 등록)	13	8	13	9
기타	5	1	6	3
<b>합계</b>	<b>25</b>	<b>16</b>	<b>28</b>	<b>21</b>

○ 기관의 실질적인 전문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학예 인력이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기관 운영과 관련된 의견을 표명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는 운영 주체를 막론하고 전반적으로 취약함

[표 7-23] 설립주체별 기관 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정책개발을 하는 사람  
(집단별 n=50)

구분 설립주체	기관			
	관장	학예실장/ 특정 학예사	이사회/ 운영위원회	기타 조직
기업(인) 설립 공익법인	2	0	0	0
기업(인) 설립 비영리법인(재단법인)	1	0	0	0
기업 소속 박물관·미술관	3	2	0	0
기업(인) 외 설립 비영리법인(재단법인)	1	0	0	0
개인 설립 (고유번호 부여 단체)	6	1	0	0
개인 설립 (사업자 등록)	17	6	2	2
기타	6	1	3	2
<b>합계</b>	<b>36</b>	<b>10</b>	<b>5</b>	<b>4</b>

구분 설립주체	연구자			
	관장	학예실장/ 특정 학예사	이사회/ 운영위원회	기타 조직
기업(인) 설립 공익법인	2	1	0	0
기업(인) 설립 비영리법인(재단법인)	1	0	0	0
기업 소속 박물관·미술관	2	0	0	0
기업(인) 외 설립 비영리법인(재단법인)	2	0	1	0
개인 설립 (고유번호 부여 단체)	4	2	1	0
개인 설립 (사업자 등록)	11	4	0	3
기타	5	3	1	2
<b>합계</b>	<b>27</b>	<b>10</b>	<b>3</b>	<b>5</b>

- 조직을 운영하는 주체가 설립 목적과 미션을 달성할 수 있는 전문성과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상황에 있는 기관도 다수이며, 특히 기관 운영의 주요한 의사결정이 관장에게 특정된 경우가 많음

[표 7-24] 현장연구 분석 결과: 조직 건전성A(거버넌스, 구조, 미션 등)  
(집단별 n=50, 긍정응답 빈도)

기본 확인 항목	기관	연구자
Q1. 기관의 설립목적, 미션, 비전 등을 명시한 공식적인 문서 또는 공개된	37	35

기본 확인 항목	기관	연구자
문서가 있는가?		
Q2. 기관의 설립목적 및 미션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 공표하고 이를 실행, 평가, 개선하는 절차가 있는가?(* 증빙자료 확인)	20	18
Q3. 기관의 모든 직원 및 자원봉사자가 설립목적 및 미션을 공유하고 이에 관해 활발한 대화/소통이 이루어지는가?	37	39
Q4. ‘비영리의 항구적인 기관’이라는 뮤지엄 개념 정의에 부합하는가? (* 증빙자료 확인)	31	32
Q5. 운영조직 및 의사결정(거버넌스)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23	24
Q6. 기관 운영에 관해 외부 전문가(박물관 전문가 등)로 구성된 이사회 또는 위원회(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가 운영되고 있는가?	25	28
Q7. 기관 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정책개발은 누가 하는가? (복수응답)		
① 관장	36	27
② 학예실장 또는 특정 학예사	10	10
③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5	3
④ 기타 조직	4	5

## □ 현장사례연구자 의견

### (1) 기관별 상이한 조직운영체계와 의사결정 구조

- 전반적인 기관이 운영조직, 규정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
- 운영조직, 규정을 문서화하고 있는 곳이 거의 없음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는 만큼, 국내법상의 공익성, 공공성을 충족하는 형태로 설립,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기관 운영의 기본이라 기관의 설립목적과 미션을 전략적으로 재점검하고 그에 맞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 평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조직도, 업무 분장에 대한 구체적인 문서(Q2와 Q3관련 자료)가 부재”

- 사립관은 설립형태, 종다양성, 설립 목적 등에 의해 조직의 운영체계가 상이하며 의사결정 구조는 운영체계에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
  - 이사회
  - 운영위원회
  - 자원봉사운영위원

- 자문위원회
- 후원회

- 상위 기관이나 이사회 등 관장실과 학예실을 관장하는 상위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립관이 있으나 명목상인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곳은 많지 않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교회 소속 박물관. 교회에서 운영전반을 책임지지 않고 있음, 이사회는 있으나 적극적으로거나 긍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음”

“교회의 장로들로 이루어진 운영위원회가 존재하며 분기별 1회 회의를 열고 있지만, 외부 전문위원이 부재하여 박물관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받기 힘들 것으로 사료됨”

“이사회나 운영위원회는 형식적으로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박물관은 문중 땅에 개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으로 이사회나 운영위원회는 의미가 없어 보임”

“○○박물관은 이사회와 운영위원회가 있으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음”

“전반적으로 박물관 고유의 기관으로서의 전문적 조직 및 운영기반 확립에 대한 인식이 없어보였다. 관장과 이사회의 친분으로 개관부터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큰 어려움을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 혹은 재단법인 소속 사립관 중에는 모(母) 기업과 운영이 분리되지 않아 이사회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거나, 재원 마련을 이사장에게 크게 의존하는 등으로 이사장의 권한이 큰 경우도 있었음

“기업 소속으로 법인화된 문화재단을 통해서 운영되고 있음. 모 기업과 운영이 분리되어있지만, 기업대표가 문화재단 이사장으로서 활동하고 아트센터장이 기업대표의 친족(부인)으로 실질적 분리 운영이라고 보기 어려움. 모 기업과 운영적으로 완전하게 분리되어있다고 보기 어려운 요소들이 보임(개인 소유물과 미술관 전시물을 분리 운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즉, 공적으로 작동하는 시스템 등은 발견되지 못함)”

“이러한 활동이 전문화된 박물관 운영체계 하에 이뤄진다고 보기 어려움. 관장 및 재단이사장(기업주)의 의지에 따라 박물관 운영이 손쉽게 변화할 수 있는 구조이며, 거버넌스 및 운영 이사회 등이 명목상으로 존재하나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기본적인 운영 재원 마련에 있어 이사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사장의 실질적 권한이 큰 구조”

- 대부분은 사립관의 관장이 운영의 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의사결정 역시 관장에게 집중되어 있었음

“의사결정은 거의 관장에 의해서 이루어짐”

“관장의 의지대로 모든 박물관 운영(특히 전시 부분)이 진행”

“대부분의 사립박물관과 대동소이하게 관장의 업무 관여가 상당히 업무 분장이라기보다는 지시와 이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을 볼 수 있음”

“재단의 운영위원회가 존재하며 박물관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박물관 조직 운영과 유사하게 관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사료”

“관장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하며, 동시에 관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보여짐”

“실질적으로 설립자는 관장에게 거의 모든 의사결정을 위임하고 있음”

“작품 구입이 필요할 경우에도 관장의 주도 하에 이사장과 의논하여 구입이 이루어짐”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관장 직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 운영기관이니만큼 관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

- 운영위원회가 존재하더라도 기관 종사자들이 체감할 때 관장의 의사결정 및 정책개발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 높은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도 있었음

“대부분의 의사결정이 관장 직속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개인 운영기관이니만큼 관장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

“모든 결정은 관장과 대표가 맡아서 하고 있음. 자문단이 있다고 관장에게 들었으나, 운영위원회가 개최된 적은 없음”

“관장의 개인 사재라는 개념이 조직 내에 만연해있어, 관장 개인의 열정과 의지에 따라 기관의 운영이 달려있다는 인상을 받았음”

“○○문화재단 및 미술관 설립부터 현재의 관장이 주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관장이 관둘 경우에는 미술관 문을 닫겠다고 이야기한다고 함”

- 그 외 관장이나 관장의 배우자가 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자녀와 함께 기관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었음

“○○박물관은 관장님 내외와 아드님이 운영하는 박물관으로 관장님이 운영하는 사찰과 같이 존립 중인 가족운영의 사립박물관”

“의사결정은 가족들이 깊이 참여하면서 가족회의 같은 유형의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으로 파악”

“공공적 마인드는 공유하고 있으나, 아버지와 딸, 아들이 핵심 직원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황”

“사립미술관의 경우, 관장-실무자 형식의 조직구조와 내부 구조에서도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음”

- 어떤 경우에도 실질적인 전문 인력이라고 할 수 있는 학예 인력은 운영과 의사결정 과정에 깊게 참여하고 있지 못함

“직원들이 루틴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박물관으로서의 조직 미션과 전략을 논의하고 소통하는 형태는 부재”

“직원들은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수직적 시스템”

“학예사의 전문성이 발현되기 어려운 면이 있음”

“사립박물관이 재정면에서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사업을 찾아 신청하라고 하는 경향이 강함. 그러면서도 관장은 비슷한 내용으로 같은 지원사업에 다시 신청하라는 지시를 함. 이미 신청했다가 탈락한 서류를 가지고 지원사업에 재차 신청하라고 지시를 하기 때문에, 가령 온라인 콘텐츠 지원사업에 작년엔 떨어진 서류로 올해도 다시 신청하라고 지시하기 때문에, 많은 지원사업에 채택되기도 어려움. 이에 대해서 신청서 작성을 학예사들이 수정 보완할 것을 건의해도 관장이 받아들이지 않음. 지원사업 신청서 작성도 ‘하루면 쓰지’와 같이 쉽게 인식하는 측면이 있어 이 또한 어려운 점이라고 응답함”

○ 조직운영의 체계화와 한정된 소수에게 집중된 의사결정권한은 조직을 부실하게 만드는 요인

- 원활하지 못한 의사소통
- 기관이 자신의 사유재산이라는 생각이 강해 관장이 조직 구성원들이 기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음
- 학예인력은 사립관의 핵심 자원에 접근 자체가 가로막혀 운영, 보존, 연구 등을 시도하지도 못함
- 의사결정권을 가진 핵심인물이 부재할 시 조직운영이 마비되는 상황에 처함

“이사장이 없으면 미술관 운영이 불가능함”  
 “설립 및 관리 주체(주로 관장)의 고령화와 재정 악화 등으로 인해 생산적으로 미래를 도모하기 어려운 상황임”  
 “운영계획과 의사결정에 대한 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한 내부 직원간의 활발한 의견교환 역시 확인이 어려움”  
 “미술관 설립부터 현재의 관장이 주도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관장이 그만둘 경우에는 미술관 문을 닫겠다고 이야기한다고 함”  
 “관장의 개인적인 결정과 행위가 기관 전체의 운영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지역 내에서 바람직한 교육 및 전시 기관으로 보다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임”

○ 사립관의 이와 같은 조직운영 방식은 기관 운영의 전문성 전반에 대한 의구심으로 이어짐

“○○박물관의 설립 주체, 운영 주체를 상시 공표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기관의 담당자는 ‘예’라고 답을 하였으나, 홈페이지 상에서는 이를 공개하는 항목을 찾을 수 없다. 다만 인터뷰에서 질문에 대해서는 재단의 정관에 규정하고 있고 이것이 행정적으로 공공의 문서이니 ‘상시 공표하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 부분의 모든 질문에 대해 ‘예’라는 기관으로부터의 답은 이 분야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나 공론화된 지침이 전달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박물관 고유의 기관으로서의 전문적 조직 및 운영기반 확립에 대한 인식이 없어보였다. 관장과 이사회는 친분으로 개관부터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으며, 이에 대해 큰 어려움을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  
 “다만 20년 가까운 운영 기간을 통해 사회에서 박물관의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 사립박물관으로서의

사명이나 개선 방식에 대해 고찰을 하거나, 이에 따른 박물관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의 변화를 감지할 수 없었다. 사립박물관의 역할이나 전문성에 대한 기본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파악된다”

“재단법인으로서 법인의 정관에 따른 운영체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정관에 명기되어 있는 운영체제에 관해 관장 및 직원의 인지도/이해도는 불충분한 것으로 보임”

“재단 산하 박물관인 만큼 결재 라인 등을 비롯하여 사업 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박물관의 독자성이 얼마나 담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인터뷰에 따르면, 관의 운영과 관련한 의사결정이 이사회에서 이루어지되, 이사장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사장이 △△의 손자라는 특수관계인이라는 점에서 더 그러하다고 하겠음”

“운영상에 필요한 자원 마련이 재단법인의 수입금 등의 투명한 출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공개되지 않고, 관장의 언급에 따르면 이사장의 사재 출연이 빈번한 것으로 보임. 공식적인 후원금이나 수익금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이러한 사재 출연의 여부나 규모를 확인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재단법인의 운영 자체가 사유화될 수 있는 여지도 적지 않다고 판단됨. 이는 애초에 설립 당시에 투입된 국고,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위해 투입된 공적 자금의 규모를 감안할 때, 특히 더 문제적인 측면이라고 하겠음”

“○○박물관은 수입, 지출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계획과 예결산은 이루어지지 않음. 다만 지원사업 총금액 등 수입 규모를 대략적으로 세워놓고, 창의적인 체험용 문화상품 제작 계획도 구상하고 있음. 박물관은 면세사업자로, 별도 법인을 통해 면세사업자인 박물관 영역에서 판매 등 불가능한 문화상품 판매를 하고 있음”

“외부 전문가에 의한 의사결정 구조 역시 없다보니, 이러한 운영방식에 대한 성찰이나 재점검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 마련되기 어려움”

“관장의 전시자료에 대한 열정은 넘쳐나는데, 전시 연출이 보여주고자 하는 내용을 소화하지 못하여 자칫 혼란스럽게 보일 수도 있을 정도임. 박물관 운영 측면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서, 이에 대한 박물관측의 정리가 필요함(영리법인으로 등록되어 운영. 운영 예산의 일부가 관장 소유 기업의 사업비로 충당 되는 등) 보다 전문적인 박물관 운영계획과 방식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관장 중심의 박물관 운영이 향후 어떻게 지속될 수 있을지 우려됨”

“운영위원회의 구성원들 역시 고령자가 대부분이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것으로 봄”

“관장 개인의 열정과 의지에 따라 기관의 운영이 달려있다는 인상을 받았음. 사업 계획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한 운영 구조가 확실하게 자리잡을 필요가 있다고 사료됨”

“애초에 미술관을 재단법인으로서 설립하자고 한 것도 관장의 제안에 의해서였음. 따라서 관장의 전문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운영방식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해 협의하고 다양한 의견과 운영방안을 검토할 수 있는 조직구조는 미비한 상태여서, 개인의 의사결정이 초래할 수 있는 한계나 위험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장치는 전무하다고 할 수 있음. 특히 관장 외 근무인력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님”

“개인이 설립자이자 관장인 미술관이 장점도 있으나, 그 운영면에서 관장의 전권에 의해서 모든 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처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관장 개인의 성격이나 미술관을 대하는 태도, 인품 등이 드러나지 않는 미술관의 운영을 좌우할 수밖에 없어짐”

## (2) 조직운영의 체계화와 공식적인 문서화, 규정화에 대한 인식 미비

### ○ 운영 전반의 체계화와 공식화, 규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미비

“‘공공성’ 담보를 위해 보다 공식적인 문서화, 규정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상황”

“공식적인 문서화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체계적인 접근은 아직 엄두를 내지 못했음”

“거버넌스에 대한 규정이나 이를 반영한 위원회 운영 등은 시도하지 못하였음”

“기관 운영의 기본이라 기관의 설립목적과 미션을 전략적으로 재점검하고, 그에 맞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행, 평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음”

“설립주체와 운영주체 조직을 상시 공표하고 있지 않으며, 특별히 자체 규정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으나 특정 의도를 가진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에 대한 뚜렷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사료”

“미술관 운영 규정이나 윤리 규정에 관해서는 이를 성문화하고 공개하며 운영 면에서 활용하는 것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인식을 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임. 그 필요성 등에 대해 부정적이라기 보다는 인지를 하지 못했던 점이 원인”

## ○ 양식 제공 요청

“거버넌스 규정에 대한 부분 역시, 그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보다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일종의 양식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함.”

## ○ 공공성을 위해서가 아닌 후원처 확보 등의 이유로 공식 문서 개발

“미술관의 중장기, 연간 운영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한다기 보다는 기능별 일정표 수준의 운영계획을 확인할 수 있었음. 그러나 미술관의 후원처 확보 등 대외적 설득을 위해 미술관의 비전이나 운영 방향, 전략 등에 대한 문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음”

## □ 과제 및 대안

### ○ 지속적인 교육 필요

“미술관 운영에 관한 설립/운영주체 또는 관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학예사 교육만큼이나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겠음”

### ○ 투명하고 전문성 있는 운영과 운영 체계화의 필요성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예방하는 조치로서 규정, 문서 등은 물론 투명한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새로운 관람객 개발, 특화 콘텐츠를 통한 차별화, 수익 모델 개발, 지역 및 국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에 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관이 있어 이를 우수관의 모델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임

“○○뮤지움의 미술관 연간 예산은 장기 후원사 연계가 종료 된 2020년 이후 6억 규모에서 3억 원 규모로 유지하고자 하며, 이 중 후원금 1억, 정부 지원 2억, 자체 수입 5천 정도로 구성됨. 사립미술관 최초로 전문예술단체로 지정받아 법정 지정기부금단체의 지위를 갖추고 적극적인 펀드레이징을 시도하고 후원 시스템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음(후원전시 개최, 홈페이지 상에서 소액 개인 후원도 가능한 시스템 구축 등). 현재 ○○재단, ○○○문화재단을 후원사로 확보했으며, 개인 후원자 20여 명을 보유함. 개인 사립미술관으로서 정부지원금과 후원, 자체수입 등 재원이 다변화되어 있음. 개인 사립미술관 중 비영리 기관으로서의 펀드레이징 기능에 대한 인식을 갖추고 있음. 특히 수입지출을 투명하게 홈페이지와 내부 직원에 공개하여 비영리 기관으로서의 투명성과 소통을 실천하고 있음”

- 소명의식, 책무감 등의 측면에서 설립자 가족이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볼 수는 없으나, 보다 전문적이고 건전한 기관 운영을 위해 운영 위원회 등과 같은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현장연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각 기관 별로 설립 취지와 목적, 운영 주체와 컬렉션의 성격 등이 매우 다양하나 전반적으로 기관의 설립 목적과 미션에 대한 문서화 거버넌스의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임
- 거버넌스 체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된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문서화·구조화를 통한 공인은 요원한 상태이며, F&B와 같은 영리 활동과 박물관·미술관의 비영리 활동 사이의 관계 정립 등은 모호하다고 할 수 있음

## 바. 박물관·미술관 조직건전성: 인력

### □ 현황 및 문제점: 사립관 종사자

#### (1) 학예 인력 충원에 대한 현실적 한계

- 현장연구 결과에 따르면 참여기관의 92%는 등록요건에 따른 인력 수(학예사 1명 이상)를 충족하고 있으나, 경력인정대상기관인 경우 학예사 2명 이상의 기준을 충족해야하지만 이는 72%로 확인됨. 또한 소장품의 보존·관리를 위한 적절한 전문인력을 항상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관은 전체의 48%에 그침

(표 7-25) 현장연구 분석 결과: 조직 건전성B ① 인력 현황

(집단별 n=50, 긍정응답 빈도)

기본 확인 항목	기관	연구자
Q1. 항상 등록요건에 따른 인력 수(학예사 1명 이상)를 충족하고 있는가?	43	46

기본 확인 항목	기관	연구자
Q1-1. 경력인정대상기관인 경우, 학예사 2명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35	36
Q2. ‘소장품의 보존·관리를 위한 적절한 전문인력’을 항상적으로 확보하고 있는가?	34	24

“경력인정대상기관의 경우, 인력지원사업에 의해 학예인력을 모두 충원하고 있는 상황”  
 “총 소장품수가 500여점 이상으로 예상되나 적절한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세부내용의 파악에 한계가 있음. 소장품의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정리할 수 있는 인력과 소장품관리 시스템의 보급이 필요함”  
 “소장품에 대한 후속 연구조사의 필요성을 자각하고는 있으나 예산과 인력의 문제로 인해 쉽게 시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장품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학예사를 상근인력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 많은 경우 인력 지원 사업 기간에 맞추어 채용을 하다 보니 “인력지원사업이 끝나는 1, 2월 공백”이 생겨 약 2개월 간의 공백이 발생한다고 응답하였음

“인력을 10개월만 지원해 주는 것은 결국 미술관에게 2개월 급여를 자부담시키는 것과 같다. 1,2월은 전년도 결산과 차년도 사업 구상을 위해 가장 분주한 달인 것은 주무관청에서 더 잘 아시리라 본다”  
 “연속성 있는 지원과 인력이 부족한 1, 2월에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3월중 시작되는 전문인력 지원이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램”

- 또한 “인력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해 공백이 생긴 경우가 있었”거나, 기관의 소재지에 따라 “출퇴근시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데, 차량소지자를 찾다보니 어려운 부분”이 발생하기도 함
- “저임금”, “단기근무”나 “업무에 적응하지 못해” 일찍 퇴사하는 경우가 생기고 “후임자를 구하지 못해 공백이 발생”하기도 함
- “학예사 자격증을 보유한 관장 외에 학예사 자격을 갖춘 학예사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도 확인됨
- 각 기관은 인력 규모 및 전문인력을 충족시키기 위해 자체적으로 “재정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운영 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거나 “자체적인 교육을 확대하려고 시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활용하고 있음. 아니면 전문인력은 아니지만 “인턴”이나 “일용근로로 충원”하는 경우도 있음
- 학예사 규정 변경 이후 예비학예인력은 많이 지원하고 있으나 학예사 자격증 소지 인력은 찾기가 힘든 실정이라는 답이 대부분임

- 사립박물관·미술관에서 경력을 쌓고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더 바람직한 근무 환경을 찾아 공립기관이나 수도권에 위치한 사립관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많아 인력의 연속성을 지니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음

“학예인력의 국·공립 및 공공기관 진출로 업무 연계성 애로”  
 “충분한 경력을 가진 인력이 사립미술관 근무를 선호하지 않는다.”  
 “학예사와 인턴을 구할 수 없으니, 지역 인력을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여건을 갖추면 곧 이직하거나 독립한다.”  
 “지역사립미술관에서 업무 교육을 시키면 공공기관에 흡수되어버린다. 사립미술관은 또 초보자를 교육시켜야 한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된다.”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적인 교육 지원 이후 스스로 독립하여 연계성이 떨어진다.”  
 “고정된 인력을 지원받는 일은 박물관 업무에 많은 도움이 있다. 하지만 사립박물관의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미 사립박물관의 부정적인 인식을 깔고 입사하여 일에 대한 선을 긋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으며 이런 선생님들로 인해 박물관에 기존의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사기가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다 보니 잦은 이직으로 인해 박물관인력의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전문화가 어려워지며 장기적으로 본다면 박물관에도 인력에게도 이게 어떤 도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곤 한다.”  
 “사립관의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입사하는 선생님들의 박물관 무시”  
 “입사이후 두달만에 타기관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면접 시 ○○○뮤지엄에서 맡은 일에 대해 언급했음에도 타기관에 공석이 생겨 바로 이직한 사례입니다”

- 지역에 위치한 사립관의 경우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현실을 복합적인 이유에서 찾고 있으며, 이것이 기관 운영과 연속성에 문제적 상황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음

“지역 내 문화인력 부족으로 전문인력 확보 어렵다”  
 “지원인력이 서울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산간벽지로 전문직 인력 고용에 어렵다. 전문인력 고용난으로 경력인정 비인정기관이 되고 전문 인력 고용난이 가중되는 악순환”  
 “지역의 인력부족과 작은 기관. △△이 강원도이지만 수도권에서 가깝고 산간지방이 아니기에 인력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이렇게 클줄은 몰랐는데, 수도권과 가까운 이유로 더 수도권으로의 취업을 선호하기도 하고 학예사, 교육 인력들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자격증, 학력, 전공)과 박물관 콘텐츠와의 연관성을 가진 조건을 가진 전문인력을 만나기란 어려운 현실입니다.”  
 “지방에 위치하다보니 미술관에서 필요한 수준을 갖춘 인력을 모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비영리법인이라 인건비 재원마련에도 한계가 있어 수도권 대비 경쟁력있는 선택지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생활하는 학예사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3급 이상의 학예사 채용이 힘들다.”  
 “인구 소멸 대상 지역으로 전문인력 부재”  
 “농어촌 전문 인력 부재”

“국고 지원 사업이 확정이 되어도 벽지라 인력이 구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벽지에 속해 인력공고를 내지만 구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도 예비학예인력지원사업을 지원받았으나 인력이 구해지지 않아 공석으로 있다.”

“... 또한 지역 특히나 도시가 아닌 시골의 지역에서는 전문화된 인력을 찾기 어렵고 그런 인력이 있다고 해도 조금 전문화를 갖추면 도시나 공립 시립등으로 이직을 원하니 일하는 동안에도 장기적인 인력의 계획에 어려움을 느낀다.”

“지역 소도시로 인한 전문인력 지원자부족”

“△△는 지방 소도시이므로 공개 모집을 해도 지원자가 거의 없다.”

“지역의 미술관 박물관에 대한 배려 필요. 존립 가능성이 없다.”

“반드시 학예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만 채용하라는 규정이 부적절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예인력 1명 이상 또는 2명 이상을 상시 충족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부분 관장이 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복수의 인력지원사업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임

“관장을 제외한 인력은 모두 인력지원사업에 의한 단기고용인력임. 관장은 지금까지 ○○미술관을 거쳐 국·공립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학예사가 20명 가까이에 이른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으나, 실질적으로 ○○미술관에서 직접 채용하고 장기근속하는 인력은 관장 외에는 부재”

“○○뮤지엄은 현재 관장이 학예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록요건은 충족하고 있음”

## (2) 전문인력 채용 규정 마련에 대한 소극성

- 기관에서 인력의 고용절차 및 요건, 직무/역할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 경우는 58% 수준임

[표 7-26] 현장연구 분석 결과: 조직 건전성B ② 인력 관리

(집단별 n=50, 긍정응답 빈도)

기본 확인 항목	기관	연구자
Q3. 인력(지원봉사자 포함)의 고용절차 및 요건, 직무/역할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33	29
Q4. 직원의 능력 향상과 학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연수에 참여하도록 하는가?	43	43

“○○박물관의 경우 체크리스트에 업무분장 및 배치 인력의 수를 기재하였으나 소장품 연구/등록(10)명, 소장품 보존관리(3)명, 전시기획(6)명, 교육(5)명, 행정/홍보(6)명이라고 위와 같이 기술하였으나 ○○박물관 담당자는 상근직, 학예사자격증 소지자, 한국박물관협회 인력지원 등이 역할을 겸하여 운영.

지원봉사자포함여부/ 자원봉사 담당 학예사 확인하여 현재는 소장품 1(부관장), 보존관리 1, 전시기획 2, 교육 1 로 파악함. (학예사자격 5명중 전체 상근(월급) 3명)이라고 파악하였음. 기관에 관여하는 전체인력은 20여명이며 직위와 직무를 교차하여 운영 중이며 앞으로 새로운 자원봉사자들 영입이 어려움이 있음”

“○○미술관은 소장품 보존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은 실제로 부재한다고 할 수 있음.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다 같이 한다고 응답함.) 현재 침수된 작품들에 대한 자체적인 보존수복이 불가능한 상황임. 고정적인 회계직을 충원하고 싶음. 재단의 운영 관리를 항상 새로운 직원이 하게 되는 일이 곤란함. 전문인력 지원을 받은 경우 대개 미술 등을 전공해서 회계업무를 보기는 쉽지 않음. 현재는 전문인력지원을 받은 인력이 회계업무까지 처리하고 있음”

“○○박물관은 직무/역할을 정한 업무분장표 있음”

“○○박물관은 조직도, 업무 분장에 대한 구체적인 문서(Q2와 Q3관련 자료)가 부재”

- 그렇지만 직원의 능력 향상과 학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연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경우는 86%로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남
- 인터뷰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문인력을 채용할 때 재단 산하 기관의 경우 “재단의 규정”을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박물관·미술관 자체의 고용 및 근로여건에 관한 별도의 규정은 따로 없고 “협회의 전문인력 지원사업 채용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경우 대부분 학예 인력 채용과 관련한 자체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도 낮은 것으로 보임
- 많은 사립박물관·미술관이 거의 대부분의 인력을 지원 사업을 통해 채용하고 있는 만큼,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인력 채용을 계획할 수 있는 현실적인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 마련에 있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됨

[표 7-27] 설립주체별 인력 관련 규정 마련 및 준수

(집단별 n=50)

구분	기관		연구자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기업(인) 설립 공익법인	2	1	2	1
기업(인) 설립 비영리법인(재단법인)	1	0	1	0
기업 소속 박물관·미술관	3	0	2	2
기업(인) 외 설립 비영리법인(재단법인)	0	1	0	1
개인 설립 (고유번호 부여 단체)	5	3	5	4

개인 설립 (사업자 등록)	16	5	12	11
기타	6	1	7	2
<b>합계</b>	<b>33</b>	<b>11</b>	<b>29</b>	<b>21</b>

“○○박물관은 소장품 확장, 연구, 전시 등을 결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이 관장이 학예사로 일하고 있는 딸과 함께 운영하고 있는 상황”

“○○미술관은 인력 채용과 관련한 기본적인 규정은 부재하며 향후 보완할 계획도 불투명함”

- 행정인력, 교육인력 등 학예인력을 제외한 기관 운영에 필요한 다른 분야의 인력을 안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운영 주체의 사비 투입을 제외하고는 인력 고용에 대한 뚜렷한 자원 마련 방안은 부재한 상황임
- 최소한의 인원은 직접 채용하여 상근 인력을 고용하려고 노력하는 기관들이 있으나 여전히 인력지원사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을 채용하거나 자원봉사인력을 공개적으로 모집하여 활용하고 있는 경우가 있으며, 상시 인력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부족한 인건비 지출을 관장의 사비로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고 응답함. 그러나 막상 일을 시작하면 시급으로 돌려버리거나 4대보험을 해지해버리는 관장도 있음

“○○박물관은 기관에 적절한 인력 규모 충족시키기 위해 관장이 사재로 인건비 부족분 충당하고 있음”

### (3) 희망하는 인력 규모 대비 부족한 실제 운영 인원

- 기관에서 생각하는 적절한 인력 규모는 약 4.5명이며,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적절한 인력 규모는 3.1명으로 확인됨<sup>61)</sup>
- 실제 기관에서 업무별로 고용하고 있는 평균 인원은 소장품 연구/등록이 0.7명, 소장품 보존관리 0.3명, 전시기획 0.8명, 교육 0.7명, 행정/홍보 0.4명으로 2.9명 수준임<sup>62)</sup>

61) 이는 기관의 성격 및 규모에 따라 편차가 커서 적게는 2명부터 최대는 11명까지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단순 평균값으로 적정 인원을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함.

62) 기관과 연구자가 파악한 숫자에 차이가 있지만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인력 규모보다 실제 운영 인원이 더 적다는 점에서는 동일하게 시사하는 바가 있음.

〔표 7-28〕 현장연구 분석 결과: 조직 건전성B ③ 인력 규모

(집단별 n=50, 긍정응답 빈도)

기본 확인 항목	기관	연구자
Q5. 기관에 적절한 인력 규모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는가? (평균/명)	4.5	3.1
Q5-1. 현재 업무분장 및 인원(평균/명)		
① 소장품 연구/등록	0.8	0.7
② 소장품 보존관리	0.5	0.3
③ 전시기획	1.2	0.8
④ 교육	1.0	0.7
⑤ 행정/홍보	0.7	0.4
합계	4.2	2.9

○ 업무별로 살펴보면 전시기획과 교육에 대해서는 평균적으로 1명의 담당자가 있지만, 그 외 소장품 연구/등록과 보존 관리, 행정/홍보에 대해서는 전담인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이러한 가운데 업무가 불분명하게 분장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됨

“○○박물관의 경우, 박물관 담당자는 상근직, 학예사자격증 소지자, 한국박물관협회 인력지원 등이 역할을 겸하여 운영하고 있다. ... 기관에 관여하는 전체인력은 20여 명이고 직위와 직무를 교차하여 운영 중이며 ... ”

“○○박물관은 학예 인력이 적지 않으나 업무 분장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 인력 배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한 인력은 지원사업 종료후 만족도설문조사에서 명확하지 않은 업무분장으로 학예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험을 했다고 토로하기도 했음

“10개월 기간제 근로자가 최소한의 (개인별) 업무분장표를 받지 아니하고 미술관의 기존 운영방식을 스스로 파악하고 근무 해당 해 업무를 수행하기에 빠듯한 계약기간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예업무 외 업무 지시, 추후 미술관 사업 기획 지시(전시, 새로운 프로젝트, 미술관 수익 확대 사업안 개발 및 관련 문서 작성 등) 등으로 인해 학예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에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전혀 없다. 이에 미술관 자체 채용 실무자가 최소한의 기존 업무 매뉴얼과 직무분장표를 제공해준다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며 동시에 사립미술관 및 전문인력 역량 강화 및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다. 더불어 불합리한 업무(학예업무 외적 업무) 지시 문제도 부분적으로나마 해결되지 않을까 함”

○ 설립주체별로 살펴보면 분야별로 최소의 전담인원(1명)이 있지 않고 1명이 여러 가지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남

[표 7-29] 설립주체별 현재 업무분장 및 인원 평균에 대한 기관 인식

(집단별 n=50, 평균(명))

구분 설립주체	기관				
	소장품 연구/등록	소장품 보존관리	전시기획	교육	행정/홍보
기업(인) 설립 공익법인	1	0.3	0.7	0.7	0.7
기업(인) 설립 비영리법인(재단법인)	1	0	1	0	1
기업 소속 박물관·미술관	0.3	0	0	0	0
기업(인) 외 설립 비영리법인(재단법인)	0	0	1	1	0
개인 설립 (고유번호 부여 단체)	0.4	0.7	0.4	0.7	0.1
개인 설립 (사업자 등록)	0.6	0.5	1.0	1.0	0.8
기타	2	0.9	0.8	0.4	0.4
<b>합계</b>	<b>0.7</b>	<b>0.3</b>	<b>0.7</b>	<b>0.5</b>	<b>0.4</b>

“○○박물관은 의지와 역량을 지닌 학예 인력이 근무하나 혼자서 박물관 전체 업무를 소화해야 하는 등 업무 과중이 심해보이며, 이에 대한 운영 주체의 심도있는 이해가 필요함. 기관 규모와 성격에 따른 인력 기준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

“○○미술관은 두 군데 전시장과 ○○○ 레지던시 등으로 분산된 사업처를 세 명의 종사자가 감당하기에 힘에 부칠 것이며, 2,000여점에 달하는 소장품의 연구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무엇보다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 □ 현장사례연구자 의견

- 기관이 인력을 직접 고용하기보다 지원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는 연구자들이 많았음. 특히 경력인정대상기관이면서 인력충원을 지원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사립관을 연구자들은 지적했음

“미술관의 경우에도, 관장을 제외한 인력은 모두 인력지원사업에 의한 단기고용인력임. 관장은 지금까지 대산미술관을 거쳐 국·공립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학예사가 20명 가까이에 이른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으나, 실질적으로 대산미술관에서 직접 채용하고 장기근속하는 인력은 관장 외에는 부재”

“정부의 인력지원사업을 통해서 모든 인력을 충원하고 있는 상태이며, 향후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는 없음”

“최장 2년을 근무하더라도 박물관이 직접 고용할 의사 없이, 계속 지원사업을 통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고 있음. 심지어 경력인정대상기관, 지원사업 우수관으로 선정되어 있음”

“○○○○년에 경력인정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2인 이상 요건의 충족 여부가 매년 확인되지 않음. 경력인정대상기관의 기본적인 인력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이 우선적으로 지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미술관 직원 전원이 지원인력으로 운용”

- 많은 기관들이 인력지원사업을 통해 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상 지원사업은 매년 1월과 2월을 제외한 10개월의 기간 동안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지원사업으로 인한 공백기” 발생으로 “인력 공백이 발생할 위험은 상존”하고 “항상 등록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현재 관장이 학예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등록요건은 충족하고 있음. 그러나 경력인정대상기관으로서 직접 채용 없이 인력지원사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9-10개월 정도로 채용되는 지원사업의 특성상 인력 공백이 발생할 위험은 상존함”

- 관장이 학예사자격증을 소지하고 인력지원사업으로 또 다른 인력을 충원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역시 지원사업의 취지를 따른다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음

“○○미술관은 등록요건에 따른 인력 수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없다고 답했는데, 학예인력 1명 이상 또는 2명 이상을 상시 충족하는 것은 관장이 학예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복수의 인력지원사업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임. 현행법상 ‘학예사 1명 이상’, 또는 경력인정대상기관 ‘2명 이상’이라는 요건이 기관의 직접 채용이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지원사업에 의한 인력으로 이를 충당하고 있음. 따라서 애초의 법적 규정의 취지를 따른다면 문제가 크다고 하겠음”

- 지원사업 종료 이후 지원인력 직접 고용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

“서울 내 위치하고 있어 지원 인력을 매년 지속적으로 받는 데 큰 문제가 없었다고 볼 수 있음. 지원사업 종료 이후에 직접고용이 이뤄진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

- 지원사업 외 자원봉사, 문화예술 분야 외 일자리지원사업으로 인력 충원하는 경우도 있음

“봄 가을 등 비뿔 때 성수기에 자원봉사를 운영”

“자원봉사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고 있음”

“노년층일자리지원사업 등에서 인력을 충원하여 자료 정리”

- 지원사업은 한시적인 운영일 수밖에 없어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기관 운영의 목표와 계획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인력을 활용할 수 없는 상황

“오래된 인력을 유지하기 힘들어서 실질적으로 인력간 박물관업무 인수인계는 불가능, 현재 박물관 전시 등에 대한 새로운 시도 등은 계획되어 있지 않아 보임”

“학예 인력의 잦은 교체, 박물관 유물 성격에 맞는 학예 인력 미충원의 문제가 있음”

“전문성을 지닌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실질적인 전시 및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음”

“자체적인 기획 및 운영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전문인력들이 2년을 주기로 교체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에 있어서 박물관 운영에 차질을 빚는 경우가 많다.”

“○○놀이 기구제작 및 운영에 필요한 소양을 갖추는 기간을 제외하면 실 활용기간이 극히 적음”

### ○ 전반적인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력조차 부재한 기관도 있었음

“○○미술관은 전반적인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필수 인력이 부재. 도슨트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담당자가 실무 인력으로 있으나 주요 미술관의 활동에 관여한다고 보기 어려움. 실제 상주 관리하는 인력은 1인(학예실장)이라고 보아하며, 해당 인력은 기획인력이라기보다 시설 및 행정관리 인력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임”

### ○ 인력의 부재로 소장품에 대한 연구와 해석 미진하다는 지적

“소장품에 대한 연구와 해석 역시 예산과 박물관 연구인력의 부재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단기 근무에 그쳐, 소장품의 파악과 연구, 그를 바탕으로 한 전시 기획과 운영에 역할을 다하지 못함”

“소장품 보존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경우, 보존 및 관리에 특화된 인력이 항상 근무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 인력 부재의 원인에 대한 관장과 학예사의 의견이 다른 경우도 있었음

“미술관의 경우 관장은 인력 확보가 주거, 출퇴근의 문제, 인력의 서울, 수도권 편중이라고 답하였으나, 근무하는 인력들은 지역 내 문화인력(군 내의 문화시설 종사자 등)과의 네트워크가 전무한 상태에서 서로 의지하면서 지낼 수밖에 없는 고립 상태에 대한 고민을 토로함. △△군 차원의 문화인력 교류 프로그램이 있어도 근무시간이라 참여가 어렵고, 군 차원의 청년 문화기획자 지원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거주지가 △△군인 사람으로 제한되어 근무지가 00군이 인력들은 참여 자격이 제한됨”

### ○ 학예인력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의 역량 부족에 대한 지적도 있었음

“학예인력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이 기본적인 박물관학, 미술관의 기본 기능에 관한 지식 등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취업하다 보니 미술관으로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관장 등의 지시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음”

“지원사업으로 유입되는 신규 학예사(준학예사)와 교육사(2급 자격증)들은 업무에 대한 책임감이 낮고, 공공기관으로 이직을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음. 입사자와 퇴사자의 인수인계가 잘 되지 않아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고 있음”

○ 소수의 인력에게 업무가 과중된 경우도 있었음

“의지와 역량을 지닌 학예 인력이 근무하나 혼자서 박물관 전체 업무를 소화해야 하는 등 업무 과중이 심해보임”  
“코로나로 인하여 전반적인 운영 여건이 어려워짐에 따라,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고 고용되는 인력 수가 줄어들어 1인 인력이 감당해야하는 업무의 양이 늘어나있는 상황”  
“의지와 역량을 지닌 학예 인력이 근무하나 혼자서 박물관 전체 업무를 소화해야 하는 등 업무 과중이 심해보임”  
“두 군데 전시장과 ○○○ 레지던시 등으로 분산된 사업처를 세 명의 종사자가 감당하기에 힘에 부칠 것”

○ 인력 부재의 원인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리적 문제를 가장 많이 지적했음

“접근성이 높지 않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원 인력이 많지 않음”  
“△△△ 중턱까지 사람을 모시거나 인력을 구하기가 어렵다”  
“박물관의 위치가 양평역에서 버스 2-3번의 환승 필요로 자차를 소유하지 않으면 교통이 불편한 기관 인력의 접근권이 쉽지 않은 위치”  
“△△군 내 전문인력 수급 불가능”

○ 인력 부재의 원인을 근로조건에서 찾는 의견도 있었음

“지역 특성상 학예사를 구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전문적인 학예사가 근무하는 조건이 안 되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 과제 및 대안

○ 인력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필요

“젊은이들을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미술관에서 운영된다면 미술관의 역할 수행은 물론 전시 및 교육 전문인력의 근무 동기가 확보될 것으로 본다.”

## 사. 박물관·미술관 조직건전성: 시설, 위기관리

□ 현황 및 문제점: 사립관 종사자

(1) 노후화된 시설 개선 및 디지털화 관련 시설에 대한 요구 시급

○ 기관에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적절한 재정 계획이 있는 경우는 36%

수준임

- 평균 운영년수는 기관의 응답에 따르면 13.8년이었으나 재개관 등을 고려해 연구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평균 6.6년간 운영되고 있고, 시설 노후화 등 개선 필요성이 있는 곳은 82%로 나타남
- 등록요건 및 ‘소장품의 보존·관리를 위한 적절한 수장·전시환경 마련’에 따른 시설을 적정하게 구비하고 운영하고 있는 곳은 68%였음

(표 7-30) 현장연구 분석 결과: 조직 건전성B ④ 재정 및 시설  
(집단별 n=50, 긍정응답 빈도)

기본 확인 항목	기관	연구자
Q6.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적절한 재정 계획이 있는가?	22	18
Q7. 개관 연도는 언제인가? (평균 운영년수)	13.8	6.6
현재 시설 노후화 등 개선 필요성이 있는가?	36	41
Q8. 등록요건 및 ‘소장품의 보존·관리를 위한 적절한 수장·전시환경 마련’에 따른 아래의 시설(종합박물관, 전문박물관, 미술관 별 요건)을 적정하게 구비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34	34

- 현장연구를 통한 인터뷰에서 개선이 필요한 시설로 가장 많이 언급된 시설은 수장고로서, 소장품 수가 늘어나면서 수장고의 규모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기관이 대부분에 달함

“수장고가 2층에 있고 면적이 작아 소장품 수가 증가하면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수장고 부족은 최근 조각 대신 평면작품을 집중 수집하는 등 수집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단순한 수장 시설 신설 혹은 증설 외에도, 항온항습 장치가 적절하게 갖추어진 수장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경우가 많았음

“수장고의 항온항습 시설이 필요하다고 학예사들이 응답했으나, 그 외에도 전시장 내 진열장 내부 항온항습 설비가 없음”  
 “박물관은 전시실 환경이 쾌적하고 시설도 잘 정비되었는데, 지류 소장품인 도서 전시장 내부에 항온항습시설을 보완해야할 것으로 보임”  
 “자료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수장고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며, 수장고 및 자료실 공간 증설 및 개선이 필요해 보임”  
 “종합박물관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으나 수장고의 별다른 시설이나 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음. 잠금 장치나 온습도 조절 장치 등이 취약한 상황. 박물관 주요 컬렉션이 민속 생활사와 관련되어 있으나 관련 시설에 대한 보완 필요”

- 전시 공간의 노후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도, 습도, 방재 등의 기본적인 사항 개선과 더불어 실감형 콘텐츠 등 최신 전시 디스플레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전반적인 리모델링에 대한 필요가 다수 제안되었음

“○○박물관은 e뮤지엄 등재를 위한 소장품 고화질 사진촬영 장비(조명)를 원하고 있음”

“○○박물관은 노후화되어가고 있는 시설을 현대화하고 실감형 전시 등을 위한 열정 등도 있으나 예산 문제로 하고 싶은 것을 시도하고 있지 못한 상황”

-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높은 수준으로 운영하기 위해 교육실, 강의실과 같은 교육 공간 개선에 대한 필요 역시 제안되었으며, 박물관·미술관이라는 문화시설의 특성을 살린 외부 조경 등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다고 답함
- 시설 자체의 확충 및 개선뿐만 아니라, 전기세, 시설 청소비용과 같은 기존 시설의 운영에 대한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토로하기도 하는 등, 시설과 관련된 실질적인 요구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됨

“개관 11년이 지나 노후화된 시설(조명, 전시 케이스, 벽, 유리창 등) 유지보수를 위한 지원이 필요”

- 필수 구비 시설로 가장 많이 언급된 시설은 수장고로서, 소장품 수가 늘어나면서 수장고의 규모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기관이 대부분에 달하였으나 각 개별관이 자체적으로 전문 수장시설을 구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역 공공수장고 건립이 절실한 것으로 파악됨

“○○미술관은 현실적으로 자체적으로 수장고를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지역 공공수장고 건립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수장고 시설 및 관련 설비는 운영을 위해 반드시 구비해야 할 시설임. 자체적으로 수장고를 정비하는 데에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어 도나 시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 전문적으로 특화된 소장품을 가지고 있는 기관의 경우, 관련 분야 연구자들을 위한 연구 공간 마련 및 디지털 아카이빙을 위한 설비 확보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도 하였고, 영상 매체에 대한 관심과 소비가 늘어난 만큼,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 장애인 관람객을 배려한 배리어프리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의견도 존재하였으며, 보다 나은 관람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휴게시설에 대한 필요도 제안되었음

“○○박물관은 장애인 접근성 시설은 물론, 기본적인 편의공간(화장실 등) 등에 대한 개보수도 필요한 상황임”

- 향후 보다 안정적인 박물관·미술관 운영을 위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고자 하는 계획을 지닌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됨

“○○박물관은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도 돌아올 수 있는 보상이 분명하지 않아서 함부로 하기 어려운 상황임. 다만 새로운 동을 만들어서 휴게시설이나 편의시설을 만들면 관람객 욕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숫자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2) 위기관리 대응 방안

(표 7-31) 현장연구 분석 결과: 조직 건전성B ⑤ 위기관리

(집단별 n=50, 긍정응답 빈도)

기본 확인 항목	기관	연구자
Q9. 잠재적인 사고 및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갖추고 있는가?	38	40

### ○ 잠재적인 사고 및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갖추고 있는 기관은 80%였음

“○○박물관은 비상시 119 통보, 관람객에게는 비상시 대피 안내, 소화기 위치 설명, 재난보험 가입 등을 하고 있음. 매뉴얼화 되지는 않음”

“무인경비 설치. 지자체(경기도)에서 주기적인 직원 비상 대응 교육을 요청함. 직원에게 평소에 비상시 대응 방법을 교육하고 있음. 학생 단체관람객은 방문 시 인솔자에게 보험가입증서, 배치도 등을 제시하고, 교육생은 교육 시작 전에 비상문 위치, 비상시 행동요령 등 안전교육을 실시함”

### ○ 반면 안전에 무감한 기관도 있었음

“화재, 재해 등에 대하여 기본적인 대응이 될 것이라고 박물관 측에서 주장하나 소방서, 경찰서와의 거리나 현재 설치된 각종 방재시설 등을 고려하면 안전 취약성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임”

## □ 현장사례연구자 의견

### ○ 기관의 정체성과 직결된 시설의 보존과 유지관리, 활용 미흡

“시설 관련해서는 미술관 용도 시설에 대한 개보수가 이루어졌으나, 실제로 ○○미술관을 △△산 내에 설치해야 했던 근거가 되는 시설들, 즉 00이 거주했던 시설 등의 유지관리 상태는 나쁘고, 방치된 것으로 보이며, 그 활용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수장고로 기능하지 못하는 수장고

“수장고로서의 항온항습 장치도 없고, 소장품 정보나 보존 관리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창고처럼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됨”

“수장고 내의 작품들이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현재 수장고 상태는 그러한 정리가 거의 불가능해 보임”  
“수장고의 항온항습 시설이 필요”

“수장고의 별다른 시설이나 설비를 가지고 있지 않음. 잠금 장치나 온습도 조절 장치 등이 취약한 상황. 박물관 주요 컬렉션이 민속생활사와 관련되어 있으나 관련 시설에 대한 보완 필요”

### ○ 수장 시설의 개선과 확충 필요

“자료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수장고 추가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며, 수장고 및 자료실 공간 증설 및 개선이 필요해 보임. 수장고 관리는 기본적인 항온항습 시설(제습기, 에어컨 등)을 갖추고 있으며 수장고 구획이 되어 있으나 정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 노후 시설의 개보수에 필요한 예산 부족으로 다수 사립관이 시설 방치하고 있는 상황

“노후화된 시설과 설비 개보수나 기본 공조시설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예산 확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다소 방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임”

“노후 시설의 경우에는 개보수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보임”

### ○ 각 시설의 정체성이 불분명한 곳도 있음

“○○미술관의 시설 운영에서 특이사항을 발견할 수 있었음. 비교적 넓은 부지에 여러 건물이 세워져 있으나, 카페가 주출입구이자 메인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실제로 이 시설의 정체성이 카페인지 미술관인지 명확하지 않으며, 방문객은 대부분 카페 이용자라 할 수 있음. 또 한 부지 내에 ‘나야 나, 교육박물관’이라는 간판이 걸린 또 다른 건물이 공존하고 있는데, 이 박물관 시설은 관장의 언니(○○미술관 대표)가 교직에서 은퇴하고 초중고 학생이나 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주로 사용되므로, 미술관 건물이 아니라고 소개함. 그러나 실제로 교육 프로그램은 경계 없이 부지 내 모든 시설을 활용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임”

“△△시 시장이 사택으로 쓰던 가정집을 개조해서 만든 박물관으로 사찰과 같이 운영하고 있으며 공간 구분이 애매모호함”

“확장과정에서 다양한 박물관 업무를 수용하느라 공간분류가 어려움”

“뮤지엄샵이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상설전시장과 기획전시실 사이에 오픈된 공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전시실과 경계가 불분명”

“1-2층의 공간은 상설전시실인지 수장공간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형태로 현대미술 작품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놓여 있었음”

“나머지 공간은 미술관의 발간물이 보관되고 있는 자료실의 성격이었음. 그런 점에서 ○○미술관의 경우, 상설전시실은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으며, 특별전시실은 ‘○○미술관’이라 명명되는 병원 내 특별전시 공간, 교육 프로그램은 ‘○○미술관’이라는 별도의 한 공간에서 이루어진다고 하겠음”

### ○ 전시장 내 필요시설 완비 미흡

“전시장 내 진열장 내부 항온항습 설비가 없음”

“지류 소장품인 도서 전시장 내부에 항온항습시설을 보완해야할 것으로 보임”

○ 필수시설(수장고, 사무실, 연구실) 개보수 필요

“○○박물관의 전시실을 제외한 수장고 및 학예실 등의 시설 보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박물관은 수장고 시설, 연구를 위한 사무 공간 확보 등 기본적인 활동을 위한 시설 개선 노력이 필요함”

○ 필수시설(수장고, 사무실, 연구실) 부재

“별도의 사무실 또는 연구실이 존재하지 않아, 한 명은 입구 리셉션 데스크에, 다른 한 명은 교육공간 한 켠에 책상을 놓고 사무공간으로 이용”  
“수장고 마련 또한 여러 차례 계획안 수립 끝에 미제로 남아 있다고 함”

○ 재원의 출처가 불분명한 예산으로 이루어진 시설 개보수

“2021년 3-8월에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하는 리모델링 공사가 이루어졌는데, 이 역시 00시를 통해서 국고 16억 원을 지원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진술함. 명확한 재원의 출처는 확인이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이는 통상적인 국고보조금 사업(지원사업) 외의 지원으로 보임”

○ 관람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열망

“관람객 욕구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새로운 동을 만들어서 휴게시설이나 편의시설을 만들면 관람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장애인 접근성 시설은 물론, 기본적인 편의공간(화장실 등) 등에 대한 개보수도 필요한 상황임”

○ 최신 설비 구축에 대한 열망

“e뮤지엄 등재를 위한 소장품 고화질 사진촬영 장비(조명)를 원하고 있음”

○ 예산 문제로 시설 개보수와 확충을 하지 못하고 있음

“시설 부분은 다 설치비와 운영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주 좋은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택 도입할 수 없음”

□ 과제 및 제안

(1) 전문인력 확보와 활용의 어려움, 수장고 및 디지털 시설 마련의 필요

- 현재 다수의 사립박물관·미술관에서 분야별 전문인력을 충분하게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예 인력 채용과 관련한 자체 규정을 갖추고 있지 않은 곳이 다수임
- 이는 많은 인력채용이 지원사업에 기대어 있어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관에서 인력지원사업 이외에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재원과 규정을 마련하거나 공공기관이나 더 큰 규모, 또는 수도권에 위치한 사립관로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근무환경이나 비전을 마련하는 자구책이 미비한 상황임

- 소장품을 보존 및 관리하며, 위기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곳이 드물고,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욕구를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임

[표 7-32] 현장연구 분석 결과: 조직 건전성B(인력, 시설, 재정, 위기관리)

(집단별 n=50, 긍정응답 빈도)

기본 확인 항목	기관	연구자
Q1. 항상 등록요건에 따른 인력 수(학예사 1명 이상)를 충족하고 있는가?	43	46
Q1-1. 경력인정대상기관인 경우, 학예사 2명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35	36
Q2. '소장품의 보존·관리를 위한 적절한 전문인력'을 항상적으로 확보하고 있는가?	34	24
Q3. 인력(자원봉사자 포함)의 고용절차 및 요건, 직무/역할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33	29
Q4. 직원의 능력 향상과 학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연수에 참여하도록 하는가?	43	43
Q5. 기관에 적절한 인력 규모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는가? (평균/명)	4.5	3.1
Q5-1. 현재 업무분장 및 인원(평균/명)		
① 소장품 연구/등록	0.8	0.7
② 소장품 보존관리	0.5	0.3
③ 전시기획	1.2	0.8
④ 교육	1.0	0.7
⑤ 행정/홍보	0.7	0.4
Q6.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적절한 재정 계획이 있는가?	22	18
Q7. 개관 연도는 언제인가? (평균 운영년수)	13.8	6.6
현재 시설 노후화 등 개선 필요성이 있는가?	36	41
Q8. 등록요건 및 '소장품의 보존·관리를 위한 적절한 수장·전시환경 마련'에 따른 아래의 시설(종합박물관, 전문박물관, 미술관 별 요건)을 적절하게 구비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34	34
Q9. 잠재적인 사고 및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갖추고 있는가?	38	40

- 이러한 환경은 조직 건전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함

○ 실질적인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업이 필요함

“개관 11년이 지나 노후화된 시설(조명, 전시 케이스, 벽, 유리창 등) 유지보수를 위한 지원이 필요함”  
 “수장시설 확충 지원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필요함”

## 아. 소장품: Collection, 자료, 연구, 활용

□ 현황 및 문제점: 사립관 종사자

(1) 소장품 가치평가 필요성에 대한 인식 미비

- 현장연구 결과에 따르면 92%가 등록요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가치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음
- 그러나 ‘소장품 목록 및 취득·변경·활용 사항 등의 성실한 기록과 지속 관리’가 법정 관리대장을 사용해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곳은 48%로 절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소장품의 수집 및 폐기, 신규 소장품 개발, 소장품 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정책(규정)을 마련하고 있는 곳은 28%로 더욱 적은 수준임

[표 7-33] 현장연구 분석 결과: 소장품 ① 자료의 가치 평가와 소장품 관리 규정  
 (집단별 n=50, 긍정응답 빈도)

기본 확인 항목	기관	연구자
Q1. 등록요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가치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1) 자료의 해당 분야에의 적합성 2) 자료 수집의 적정성 3) 자료의 학술적·예술적·교육적·역사적 가치 4) 자료의 희소성	42	46
Q2. ‘소장품 목록 및 취득·변경·활용 사항 등의 성실한 기록과 지속 관리’가 법정 관리대장을 사용하여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24	24
Q3. 소장품의 수집(취득) 및 폐기, 신규 소장품 개발, 소장품 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정책(규정)을 문서화하여 마련하고 있는가?	18	14

“대표 개인이 컬렉터로 해외아트페어, 옥션등을 통해 동시대 현대미술중심의 작품들을 컬렉션함. 총 소장품수가 500여점 이상으로 예상되나 적절한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세부내용의 파악에 한계가 있음”

“박물관 소장품은 현재 6,992점이고 그 중 2,646점이 온라인 공개 중이라고 하는데 온라인에 공개하는 e뮤지엄에서는 ○○○○○○박물관의 검색어에서는 현재 2,048건이 검색되었다.”

“○○박물관의 소장품은 희소성이 높으나 소장품에 대한 목록화 작업 및 온라인 공개가 소장 유물 30만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며 (2022.5.14.일 기준 e뮤지엄 공개 자료 수 22점) 소장품 관리만을 전담으로 하는 학예사는 부재하다. ○○박물관은 소장품 정책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며 소장품 목록화 작업도 시도하고 있지 못하다.”

“미술관의 소장품은 등록 당시의 소장품의 행방 전체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며, 소장품 목록을 현재 근무하는 인력들이 확인해도 그에 대한 의미나 맥락을 관장으로부터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음. 소장품 법정 관리대장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함”

“DB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한 바 있으며, 소장품 온라인 공개는 애초 박물관 측이 작성한 바로 700점이었으나 연구자가 살펴본 결과 e뮤지엄에 공개된 125점으로 파악되었다. 소장품의 수복과 복원이 필요한 경우 이를 위한 별도의 방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박물관의 기본 자산으로서 소장품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문건화하지 않았으며, 홈페이지에 간략한 사진을 제한적으로만 공개하고 있다.”

“소장품 213점의 목록이 작성되어 있고 그중 52점을 미술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 정관에 소장품 연구와 해석을 위한 연구소 규정이 있으나 실제로 연구소는 운영되고 있지 못함”

## (2) 소장품 관리 전문화 및 공개 관련 인식 미흡

- 소장품 DB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은 40%로, 전문인력지원사업 (100%)과 비교해 적었으며 소장품 DB 구축을 전담하는 학예사의 비율도 42%로 과반이 되지 못함
- 공개되고 있는 소장품의 수는 최소 100개부터 최대 300,000개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남. 소장품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대여를 하는 경우는 비교적 매우 적고 주로 전시를 통해 공개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음

(표 7-34) 현장연구 분석 결과: 소장품 ② 소장품 DB 구축 및 소장품 공개  
(집단별 n=50, 긍정응답 빈도)

기본 확인 항목	기관	연구자
Q4-1. 소장품 DB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가?	18	20
Q4-2. 소장품 DB 구축을 전담하는 학예사가 있는가?	22	21
Q4-3. 소장품은 얼마나 공개되고 있는가?(2021년 기준)		
① 총 소장품 수	6,176	9,760
② 온라인 공개	988	1523

기본 확인 항목	기관	연구자
③ 전시	284	235
④ 대여	1.5	20
Q5-1. 모든 학예인력이 예방적 보존 및 보안 원칙을 숙지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39	39
Q5-2. 소장품의 수복/복원이 필요할 경우, 이를 위한 방법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17	18

“생산국가, 주제, 형태에 따라 1년에 3회~5회의 전시를 통해 공개하고 있음. 대여, 보조, 복제자료는 거의 활용하지 않음”

“특별전 개최시 외부 유물 대여는 없고 박물관 유물로 전시가 이루어짐, 유물의 외부 대여 등은 허가하고 있음”

“전사와 교육활동에 소장품 활용도는 높은 편이다. 특히 교육활동지를 제작할 때 해당 박물관의 소장품을 활용한 콘텐츠를 포함시킨다”

- 개인 운영 기관의 경우, 유물의 진위나 상태에 대해 외부 전문 인력이 소장품을 검수 확인, 혹은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님. 소장품 구성 역시 매우 폭넓은 만큼 전문적인 연구 및 가치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사립박물관의 성격상 이러한 접근은 현재 여의치 않을 것으로 판단됨

“○박물관도 관장 1인이 소장품의 수집 및 관리에 대해 모든 결정을 하고, 직접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조사내용에서 질문한 사항에 ‘예’라고 답한 ‘모든 학예사’, ‘소장품 전담 학예사’ 등은 결국 관장, 또한 함께 운영하고 있는 부인임. 소장 유물의 진위나 상태에 대해 외부 전문 인력이 소장품을 검수 확인, 혹은 가치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님. 소장품이 신라시대 토기와 같이 오래전 과거의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유물에서부터 최근의 공산품까지 폭넓게 구성되어 있어 전문적인 연구 및 가치평가가 필요하다고 보이지만 사립박물관의 성격상 이러한 접근은 현재 여의치 않을 것으로 보임”

[표 7-35] 설립주체별 소장품 DB 구축 전담 학예사 유무

(집단별 n=50)

구분	기관		연구자	
	예	아니오	예	아니오
기업(인) 설립 공익법인	3	0	3	0
기업(인) 설립 비영리법인(재단법인)	0	1	0	0
기업 소속 박물관·미술관	2	1	1	3
기업(인) 외 설립 비영리법인(재단법인)	0	1	0	1
개인 설립 (고유번호 부여 단체)	1	6	3	6

개인 설립 (사업자 등록)	10	10	8	13
기타	6	1	6	3
합계	22	20	21	26

- 일반적인 수집이 아니라 박물관 시각에서의 수집을 통한 유물대장 기록과 분류 등이 요구되지만 DB 전문 인력은 없는 경우가 많아, 학예연구사가 개인적으로 표준 유물관리시스템은 사용 중이며 복잡한 시스템 등 어려움을 호소함
- 매년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학예사가 1~2명을 제외하면 변동이 생기기 때문에 전에 있었던 인력들이 어떤 소장품들에 대해서 DB화를 했는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는 현실임
- 소장품 등록 전담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소장품 등록 인력지원 신청을 위해서는 표준유물 상으로 공개가 원칙이지만 설립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남. 국가지원사업을 통해 DB화하더라도 이를 공적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을 피력한 기관의 경우, 개인의 소장품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이익을 침해받는다고 생각한다고 답함. 설립자들이 개인적으로 소장품을 수집하였으므로 이는 개인의 소유물이며 그 디지털 정보 또한 개인의 소유물이라고 여기는 상황은 공통으로 파악됨

“전체 소장품 중 2,679점이 e뮤지엄에 소개됨. 그러나 이 내용이 막상 박물관 자체 홈페이지에는 서비스되지 않음. 관장은 소장품의 95% 정도가 DB화 되었고 그 일부만 공개하고 있다고 대답함. 그러한 국가에서 지원사업으로 DB를 구축했다고 해서 무조건 국가포털에 공개하는 것은 불합리할 뿐 아니라 사립박물관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함”

- 대부분의 사립박물관·미술관이 설립자의 개인적인 수집 행위에서 시작한 경우가 많다보니 소장품에 대한 구입 당시 상황, 얽힌 이야기, 메타데이터 등의 많은 정보가 문서화되어 있지 않고 관장 개인의 기억과 경험 안에만 축적되어 있음. 이 경우 박물관 직원들은 관장과의 직접적인 면담 없이 소장품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기 어렵고, 여전히 ‘공공의 자산’이라는 인식보다는 ‘사유재산’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전체 소장품 중 상당한 비중의 소장품이 e뮤지엄에 소개된 기관의 경우에도 이 내용이 막상 박물관 자체 홈페이지에는 서비스되지 않음. 이는 국가지원사업으로 DB를 만들어 e뮤지엄에는 공개하고 있으나 박물관의 홈페이지에 탑재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생긴 모순으로 여겨짐

- 소장품 획득, 변경, 처분, 등에 관해서도 직원에게는 의사결정의 권한이 없고 별도의 의사결정 절차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음
- 법정 관리대장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소장품 DB 구축 사업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 예방적 보존 및 보안 원칙이나 보존 수복 절차에 대해서도 근무 인력들은 알지 못하고 있음
- 직원들이 소장품 DB화 작업을 시도하고 있으며 메타데이터 역시 기록하고자 하는 기관에서 조차, 고정아이피를 가지려면 상당한 비용이 들어 재정이 열악한 사립박물관들에게는 부담이 된다고 호소함

### (3) 바람직한 소장품 관리·연구 방법 미흡

- 학예인력이 소장품의 예방적 보존 및 보안 원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는 비율은 78% 수준이나, 소장품의 수복/복원이 필요한 경우에 대한 대처방법은 36%만 마련하고 있음
- 소장품 관련 학문적, 기술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기관은 54% 수준이며 학예사가 소장품에 대해 항상 접근은 가능한 편이지만(88%), 이를 전담하여 관리하는 경우는 66%, 소장품의 가치, 내용, 보존 상태 등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 경우는 70%임
- 소장품의 보존 환경이 양호한 기관은 70%에 이르렀으나 몇몇 기관의 소장품 보존 환경은 매우 열악했음

“유물의 보관 역시 열악한 상태인데 예를 들어 전문 수장시설이 없어 대부분의 유물은 수장고 안에서 신문지에 싸여있거나 소금을 옆에 두어 습도를 조절하는 등 방식으로 보관되어 있다. 이조차 모든 유물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유물은 별도의 조치 없이 빈 교실 하나를 차지한 채 보관되어 있다”

- 현장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장품 연구 및 해석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기관들이 많았음

“○○미술관의 소장품 연구 및 해석은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전문학예인력 부족과 대표자 개인의 소장품 수집 방향에 의존에 치중되고 또 미술관의 설립자이자 대표의 작품선정 방향에 의존하여 소장품이 형성된다. ... 적절한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세부내용의 파악에 한계가 있어 소장품의 학술적, 예술적 가치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정리할 수 있는 인력과 소장품관리 시스템의 보급이 필요하다”

- 기관 종사자들은 소장품을 잘 활용하여 전시하고 이에 대해 연구 및 해석이 충실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전문인력의 부족과 운영상황의 어려움으로 이것이 충분히 소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답함

“운영과정상 여유가 없어 소장품에 대한 연구가 어렵다.”

“소장품 수량이 많고 연구자가 부족해 소장품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물관의 다양한 교육과 기획전시에 대해 박물관의 소장품을 기준으로 기획하여 소장품의 활용도가 높으며 많은 기관, 언론 등에서 소장품에 대한 관심으로 업무 혹은 소장품 공유업무로 연락이 오고 있어 소장품 관리 연구 조사등의 아카이브에 필요성은 절실하나 여러 현실에서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 관장님의 전시 특성상 많은 소장품들의 상설전시에 전시되어 있어 소장품 관리에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 가치와 의미를 따져 부분적으로 복각소장품 교체계획은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립관의 운영상 전담 직원이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표 7-36] 현장연구 분석 결과: 소장품 ③ 소장품 관리·연구

(집단별 n=50, 긍정응답 빈도)

기본 확인 항목	기관	연구자
Q6. 소장품 관련 학문적, 기술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29	27
Q7-1. 모든 학예사(연구, 전시, 교육 등)가 소장품에 대해 항상적으로 접근 가능한가?	40	44
Q7-2. 소장품 관리를 전담하는 학예사를 지정하여 지속 관리하는가?	33	33
Q7-3. 모든 학예사가 소장품의 가치, 내용, 보존 상태 등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가?	34	35
Q8. 소장품의 보존 환경은 양호한가?	33	35

- 관장이 소장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경우, 관련 분야의 연구자들과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소장품을 비롯하여 관련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보존 처리 역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의뢰한다고 답함

“○○박물관은 관장이 학회를 2011년에 결성하여 회장을 역임하며 이 분야의 연구자들과 학술대회를 개최하는 등, 소장품을 비롯하여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여왔음. 불교미술이고 사찰을 함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생생문화재 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어 이를 연구 사업으로 활용한 사례임”

- 그러나 사업은 개인의 의지와 역량에 좌우되므로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기관의 수 역시 적음
- 소장품의 특성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질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소장품이 입수된 이후의 변경이나 활용에 대해서는 문서화되어 있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장품의 소재 파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 현장사례연구자 의견

### (1) 소장품 연구 역량과 인식 부족

○ 입수한 소장품의 수집과 폐기 확정에서부터 소장품 연구 목적, 연구 방법, 보존과 수복 방식, 연구 인력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사립관의 역량은 매우 부족함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예인력들에게 소장품 가치에 관해서 질문하였으나 응답하지 못함”

“기본적인 소장품 등록 이후 관련 연구에 대한 내용은 소장품에 대한 기본 정보정도이며 학술적인 접근을 할 여력이 없어 보임”

“소장자료 연구 목적 불분명”

“약품처리할 소장품이 빈번하지 않음에도 수장고에서 먼 처리실을 운영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생각해 보게 되었음”

“계속적으로 소장품이 증가할 것이며, 어디까지 소장할 것인가의 문제는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워낙 많은 도서가 들어오다 보니 그것을 일일이 전산화하여 기록하는 데 애로점이 있음을 말하였다. 복본이나 폐기처분할 수도 있는 자료들이 한꺼번에 수집되어 이를 분류하고 난 다음 전산화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집품의 기록, 정리 및 폐기에 대한 규정 등 실재적으로 실행하는 데 애로점이 많음”

“박물관 수집 유물이 지역을 대표하는 유물인지 명확하지 않음. 본 박물관 0000년 생활사 중심의 민속박물관으로 개관하였으나 2019년 현재 관장이 인수하여 새로운 형태의 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음. 기존 근현대 민속유물 중심에서 새롭게 다양한 유물을 종합적으로 전시하고 있어 박물관 건립 목적에 부합하는 전시물을 갖추고 있는지 의문임”

“수집품의 규모는 적지 않으나, 적절한 가치 평가 및 분류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 수집품에 대한 정리분석과 가치 평가에 따른 적절한 관리 조치 역시 시급한 것으로 사료”

“소장품에 대한 연구와 해석은 예산과 박물관 연구인력의 부재로 원활히 진행되고 있지 못하다.”

“학예인력과 연수단원 각 1명을 지원받고 있는데 이들 지원 인력은 단기 단순 근무에 그치고 있어 미술관의 소장품 파악과 전시 기획 및 운영에 전문적으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학예사는 소장품 목록을 보았으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에 소장품에 대한 연구 및 해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본다. 등록 미술관으로 당대 미술과 지역 주민을 수용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으나 소장품에 대한 연구와 해석은 충실하지 않다.”

“근무하는 인력 두 명이 소장품과 상관없는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관련 업무,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장품에 대한 연구 및 해석은 시도조차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없음”

“현재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위해서는 이를 위한 연구역량이 필요하나,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력들의 구성으로는 이러한 정리 및 연구 작업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미술관 종사 인력의 연구 및 해석 역량은 물론 이를 위한 시간 안배가 거의 불가능함”

“학예인력의 전공은 각각 문화예술경영 및 예술철학(박사수료), 문화인류학(고고미술학 석사 및 군 복무 시 유해발굴 업무 담당)임. 이 인력들이 현 박물관에 장기 근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없음. 원래 계약할 당시에는 오래 근무할 수 있기를 기대했고, 관장에게도 그런 의사를 표명함. 이에 관장이 원래 전문인력은 2년까지 가능하나 이후에 계약을 해서 오래 근무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고 함. 그러나 근무하는 동안에 2년 이후의 채용에 대해서 보장해 주지는 않음. 전임자들도 2년 정도까지 근무하고 모두 관둠. 현재 인력 중 한 명은 경력인정 기간을 채우고, 최종적으로는 00000박물관이 건립되면 거기에서 근무하기를 희망함. 또 다른 인력, 즉 올해 채용된 2급 학예사 자격증을 가진 인력은 70년대 생으로 나이가 많다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함. 취업 되던 좋은데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앞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 말함. 학예인력들이 희망하고 기대하는

일들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음”

“설립자와 딸, 아들이 직접 운영을 해야만 박물관의 일상적인 운영이 가능한 상황에서 소장품 관리나 연구를 위한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으로 보임”

## ○ 어떤 기관은 소장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음

“소장품이 어떤 것이며, 누구의 작품인지, 어떤 성격인지, 서면자료나 현장방문 면담시에 관계자들에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소장품의 성격과 특성 파악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0000년 개관 당시 지역 주민들을 커뮤니티 아티스트로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 현재는 그 프로그램을 이어가거나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 소장품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수장고에 보관한 작품은 여러 종류의 회화 및 공예작품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 주민들의 작품과 운영자 및 주변인들의 작품이 소장품으로 계속 편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50점 소장품의 목록이 작성되어 있다고 하나, 그것이 어떤 성격이며 누구의 작품인지 본격적인 기록과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관장 개인의 역량으로 전시와 소장품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장고에 소장품 일부가 보관되어 있으나, 유물에 대한 개별 정보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로 박스 안에 어지럽게 담겨 있거나, 빈 공간에 겹쳐져 세워져 있음”

“상설전시실에 전시되어 있는 소장품들의 경우에도, 각 전시품에 대한 정확하고 상세한 정보는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었음”

“유물 목록에 들어가야 할 기본적인 사항, 크기 등도 작성되어 있지 않음”

“소장품 관리는 분실관리 외에는 활동이 거의 없음”

## ○ 소장품 연구 인식의 필요성에 대해 절감하지 못하는 사립관에 대한 지적

“소장품 관련 연구에 대한 인식이 불충분한 것으로 보임. 소장품 목록 작성, 전시도록 제작 등이 성실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소장품에 관한 학문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음. 소장품 대부분이 생존 작가들이기 때문에 비평적 관점에서나 미술사적 관점에서 전문 연구자들과의 교류협력이 이루어져야 소장품 연구가 활성화될 수 있으나, 이 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이는 미술작품 연구에 대한 인식 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음. 관장 역시 연구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필요성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음. 따라서 관장을 중심으로 한 소장품 연구 교육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임”

“학예인력이 관장에게 소장품 전수조사 및 목록 정리를 건의했을 때, 관장은 오히려 원하지 않는 반응을 보였다고 함”

“관장이 이미 오래 전에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했음에도 불구하고, 박물관 운영에 기본이 되는 소장품 조사 및 목록화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으며, 이에 대한 실행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은 점은 문제적이라 할 수 있음”

## ○ 의도적인 소장품 목록 파악, 공개와 인력의 접근 거부

“소장품 등록 인력지원 신청(DB구축 사업)을 위해서는 표준유물상으로 공개가 원칙인데 설립자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음. 또한 관장이 소장품 이미지 대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공개된 소장품의 경우 이미지 대여를 유료로 하는 것이 곤란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임. 그런 점에 대한 관장의 거부감이 큼. 전체 소장품이 2만 점 정도 된다고 학예사들이 알고 있으나, 전체 소장품 유물 리스트를 본 적도 없음. 현재 상설전에 전시된 유물 리스트만 확인했다고 함”

## ○ 사유재산으로서의 소장품과 공적 자산으로서의 소장품의 불분명한 경계

“관장의 사유재산과 공적 자산의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운영이 되고 있는 점도 문제적이라 할 수 있음. 전체 소장품 수의 경우도 관장만이 알고 있음. 운영현황보고 자료, 이번 체크리스트, 학예사들이 관장에게 들은 소장품 수가 모두 다름”

“개인 차원에서 구매하는 작품, 부군(기업주)이 수집한 컬렉션이 아트센터 컬렉션의 일부로 활용되기도 한다고 밝힘”

“소장품 관리/운용은 관장이 직접 점검하나 사립박물관의 경우 개인과 공공 자산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명확하지 않아 자원의 관리 및 운영, 공개 등에서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음”

## ○ 관장과 한정된 인력에 국한된 소장품 접근 독점

“소장품에 대한 연구 및 해석은 관장이 하는 일로 되어 있다. 홈페이지에서 2008년 최초의 개관당시 관장이 진행한 디자인 관련 연구 목록을 밝히고 있다. 이는 관장의 전문성을 밝히는 것이기는 하나 박물관의 소장품에 대한 연구 및 해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전문인력지원사업에 의해 박물관에서 근무하는 학예사는 실제로 소장품에 대한 충실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소장품 접근은 관장과 학예실장만 가능함”

## (2) 소장품 관련 규정과 자체 정책 미비

### ○ 관련 규정과 자체 정책 미비

“소장품 관련 규정이나 박물관 자체 정책이 없는 것으로 보임”

“○○박물관은 일반적인 수집이 아니라 박물관 시각에서의 수집을 통한 유물대장 기록과 분류 등이 요구됨. 소장품 정책(규정) 없음”

“소장품 정책의 부재, 소장품의 획득, 변경, 처분 등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의 부재”

### ○ 관련 규정과 자체 정책 미비로 관장의 기호에 의존해 이루어지는 비체계적인 소장품 수집과 보존, 관리 과정

“관장이 모두 결정하고 관장이 구입해 박물관에 가져오는 상황”

“목록화가 이루어져 있지 않음”

“관련 소장품의 수집 방식이 컬렉터로서 관장 개인 취향에 따른 구매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소장 자료의 진위 여부, 관련 소장품 가치 등에 대한 논란 발생 소지가 있음”

“소장품에 대한 모든 사안은 관장의 의지와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

“○○선생 수집품을 기본으로 출발했으니, 미술관 설립 이후 당대 작가 중심으로 소장품 꾸준히 증가. 행촌 소장품 천 점 가까이 있고, 현 이사장도 ○○○, ○○○, ○○○ 등 작가들과 교류, 후원하면서 소장품 증가. 관장이 재직 동안 천 점 정도를 정리했으나, 모두가 미술관 재단 소장품은 아니고, 이사장 소장품 외에도 그 형님 소장품이 더 규모가 크지만 이는 재단 이관이나 공개에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뮤지엄의 미션과 목적에 부합하는 소장품에 대한 적절성 부분은 다소 설득이 어려움”

○ 회사의 자산으로 관리 운영되는 소장품

“모기업소속 박물관의 경우 소장품이라기 보다는 회사의 자산 (물품)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형편임”

(3) 소장품의 영리적 활용

○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유물 활용하고 있거나 활용하려는 사립관도 있음

“○○박물관의 관장은 개인 사업자이기도 해서 유물을 전체적으로 수익 창출 목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엇보임. 즉 수익 창출을 하더라도 ‘비영리’ 개념에 부합하도록 수익을 사용하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음”

“소장품을 문화적으로 사용하고 이미지 대여 또한 사업의 아이템으로 삼아 운영하되 학술과 상업적 용도에 따라 가격차를 두고 있음”

(4) 수장 시설 현황

○ 수장 여건 미비

“소장품 목록 정리 이후의 실물과의 대조 및 심층연구를 할 수 있는 수장여건의 미비”

“별도의 수장고를 마련하지 않고 수장고형으로 전시를 하여 소장품들을 활용하고 있음”

○ 소장품의 보관상태가 처참한 곳도 있었음

“박스 안에 어지럽게 담겨 있거나, 빈 공간에 겹쳐져 세워져 있음”

“소장품의 도난이나 분실, 파손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어떤 소장품이 얼마나 있는지도 파악되고 있지 못함”

“수장고 내 소장품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음”

(5) 정책의 사각지대

○ 기관의 지역 이전시 등록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전 등록 자료가 상이한 지자체에 분산 보관됨

“2007년에 개관했으나, 이전한 후에 2020년에 다시 등록함. 등록제도 관리를 광역단위 지자체가 담당함으로써 서울시 등록이었다가, 경기도 등록으로 변경. 이러한 경우, 각 박물관의 등록 관련 자료가 상이한 지자체에 분산 보관되고, 등록 변경 이전의 등록 자료들은 소실 또는 폐기될 우려도 있음. 이와 관련해 각 지자체의 등록자료 보관 및 지자체 간 등록자료 공유에 관한 정책적 장치가 시급한 것으로 보임”

○ 소장품 DB구축 지원사업 후 보완과 관리의 과정과 절차의 부재

“소장품의 법정 관리대장에 관해서는 아예 알고 있지 못한 상황임. 박협외의 DB 구축 사업에서도 관리대장에 대한 홍보는 없는 상황이며, 바로 엑셀 대장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정 관리대장과 엑셀 파일의 항목이 일치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박미법의 경우에도 제정 이후 세부 항목이나 양식이 개정되지 않은 채로, 각종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우선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음”

□ 과제 및 제안

○ 소장품 관리와 연구의 공적 가치 제고 필요

“소장품에 대한 아카이브는 충실하나 이와 관련된 규정, 절차, 활용등은 취약해 보임. ○○미술관은 소장품 부분에 집중하기 보다 전시 프로그램의 실행을 통해서 미술문화 향유의 확대에 보다 집중하는 경향이 있음”

“미술관 정책에서 소장품의 위상이 지배적임에도 불구하고, 미술관 운영에서는 전시, 교육이 중심을 이루고 있고, 전시의 경우에는 소장품 활용이 아닌 관장을 포함한 동시대 작가들 전시를 진행하는 방식임. 소장품은 이러한 전시 이력 속에서 기증이나 구입에 의해 확보된 경향이 강함. 따라서 소장품 수집의 일관된 계획이 있다기 보다는, 관장 작품들을 제외하면 대개 전시의 부산물로서 소장품이 확대되어 왔다고 하겠음”

○ 사립박물관·미술관 등록 시 소장품의 질적 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다양한 소장품의 관리를 위한 전문 레지스트라 인력 지원과 소장품데이터 베이스 구축이 마련되어야 함

○ 소장품에 대한 공공성이 보다 구체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음

○ 지자체, 외부 기관, 지역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외부 기관에 소장품을 대여하여 기획전을 조직함으로써 박물관 소장품을 연구, 소개하고 도록을 만드는 기회를 마련하거나, 유물의 보존수복 작업을 진행하기도 함.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연구나 도록 편찬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협력 기회를 통해 소장품 연구를 진행한 모범적인 사례라 할 수 있음

“전시 및 교육 활동에 모든 소장품을 활용하려고 하며, 도록이나 학술보고서, 도서 발간에도 활용함”  
 “소장품의 연구조사 및 획득에 관해서는 각국의 지역 전문가 및 박물관과의 교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학예사의 교육을 위해 해외 박물관 유물 조사 및 유적 탐방도 하고 있음”

- 끊임없이 입수되는 소장품을 기록, 정리 및 폐기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하며, 기존의 규정이 실질적으로 적용가능한가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한 것으로 파악됨. 대부분의 사립관이 지닌 한정된 전시 공간과 좁은 수장고 문제를 감안할 때, 전문 연구 인력을 통해 소장품의 체계를 수립하도록 해야 함
- 소장품의 가치를 구성하는 요건인 학술적, 교육적, 역사적, 예술적 가치는 소장작가들의 수상 이력이나 경력으로 당장은 가시화할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 학문적, 비평적, 역사적 연구를 토대로 해서 형성되는 것인 만큼 이러한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장품의 가치를 판단하기는 곤란함. 이러한 가치 창출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사립미술관들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미술작품의 보존수복을 해결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 이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자체 차원의 지원 기관이나 프로그램이 필요해 보임”

“전문가가 많지 않은 현실에서 소장품과 관련한 객관적인 수집을 검증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음”

“전문 학예인력의 확보, 학자들의 초청 및 전문적인 연구 결과의 발표 및 공유가 필요하다.”

“박물관의 소장품 자체가 일반 유물과는 다른 특수한 내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박물관의 내용을 다룰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사립박물관이 보유하고 있는 소장품 중에서 역사적, 학문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장품을 대상으로 연구용역을 통해 DB화, 심화연구, 스토리 개발 등을 발전시킨 후 대시민 서비스를 의무화 하는 심화지원사업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음”

“사립박물관의 소장품 연구를 공공의 과업으로 확산시켜 그 결과를 공공 서비스할 수 있는 정책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문화재 복원 지원 사업 등 보다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사업이 필요함”

“사립박물관의 소장품 연구를 공공의 과업으로 확산시켜 그 결과를 공공 서비스할 수 있는 정책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사립박물관·미술관에서 진행되는 전시기획이나 교육에 대한 부분과 비교해 소장품에 대한 관리와 보존 현황에 대한 파악 등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파악됨
- 먼저 소장품의 입수 및 변경, 활용에 관해 파악할 수 있는 소장품 목록이 문서화되지 않아 이를 향후 관리하고 연구 및 전시, 교육 등에 활용하기가 어려움
- 소장품을 담당하여 관리하는 전담인력이 없는 경우가 많아 국가의 지원사업을 통해 소장품을 DB화하더라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임
- 특히 개인설립 기관의 경우에 소장품을 개인의 소유물로 생각해 외부로 공개하거나 전문가를 통해 소장품을 검수 확인, 혹은 가치 판단을 하는 상황 전반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기도 함
- 따라서 소장품을 관리하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대부분의 사립관이 지닌 한정된 전시 공간과 좁은 수장고 문제를 감안할 때, 전문 연구 인력을 통해 소장품의 체계를 수립하도록 해야 함

(표 7-37) 현장연구 분석 결과: 소장품(Collection, 자료)

(집단별 n=50, 긍정응답 빈도)

기본 확인 항목	기관	연구자
Q1. 등록요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가치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1) 자료의 해당 분야에의 적합성 2) 자료 수집의 적정성 3) 자료의 학술적·예술적·교육적·역사적 가치 4) 자료의 희소성	42	46
Q2. '소장품 목록 및 취득·변경·활용 사항 등의 성실한 기록과 지속 관리'가 법정 관리대장을 사용하여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24	24
Q3. 소장품의 수집(취득) 및 폐기, 신규 소장품 개발, 소장품 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정책(규정)을 문서화하여 마련하고 있는가?	18	14
Q4-1. 소장품 DB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가?	18	20
Q4-2. 소장품 DB 구축을 전담하는 학예사가 있는가?	22	21
Q4-3. 소장품은 얼마나 공개되고 있는가?(2021년 기준)		
① 총 소장품 (평균/수)	6,176	9,760
② 온라인 공개 (평균/수)	988	1,523
③ 전시 (평균/수)	284	235
④ 대여 (평균/수)	1.5	20
Q5-1. 모든 학예인력이 예방적 보존 및 보안 원칙을 숙지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39	39
Q5-2. 소장품의 수복/복원이 필요할 경우, 이를 위한 방법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17	18
Q6. 소장품 관련 학문적, 기술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29	27
Q7-1. 모든 학예사(연구, 전시, 교육 등)가 소장품에 대해 항상적으로 접근 가능한가?	40	44
Q7-2. 소장품 관리를 전담하는 학예사를 지정하여 지속 관리하는가?	33	33
Q7-3. 모든 학예사가 소장품의 가치, 내용, 보존 상태 등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가?	34	35
Q8. 소장품의 보존 환경은 양호한가?	33	35

## 자.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 접근성과 전시·교육 프로그램, 지역 연계/협력

### □ 현황 및 문제점: 사립관 종사자

#### (1) 홈페이지를 통한 이용자 접근성

- 기관이 자체적으로 만든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는 86%이며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업데이트 하고 있는 곳도 90%로 이용자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은 편임
- 그러나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소장품이 DB화되고 공개되는 것에 있어 한정적이기 때문에 개설된 홈페이지의 활용도에 대해서 수치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표 7-38) 현장연구 분석 결과: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 ① 홈페이지  
(집단별 n=50, 긍정응답 빈도)

기본 확인 항목	기관	연구자
Q1-1. 기관이 자체적으로 만든 홈페이지가 있는가?	44	43
Q1-2. 기관의 자체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고 있는가?	43	45

#### (2) 공공성 구현 방식으로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 2021년을 기준으로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의 실시 실적은 92%가 코로나19의 제약을 받았고, 이로 인해 상설전시가 이루어진 기관이 50%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 들어서는 설립목적 및 미션에 부합하는 상설전시를 하는 곳은 80%이며, 최근 3년간을 기준으로 88%임
- 그러나 전시, 교육 등을 위한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곳은 66%로 나타남

(표 7-39) 현장연구 분석 결과: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 ② 전시 및 교육  
(집단별 n=50, 긍정응답 빈도)

기본 확인 항목	기관	연구자
Q2-1. 2021년의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은 어떠한가?		
① 상설전시 유무	29	17
② 기획/특별전시(평균/횟수)	0.9	0.5
③ 교육 프로그램 수(평균/횟수)	3.5	1.8
④ 대여	5.7	2.7

기본 확인 항목	기관	연구자
Q2-2. 관련해 코로나19 등 제약이 되는 외부 요인이 있었는가?	41	46
Q3. 설립목적 및 미션에 부합하는 상설전시를 하고 있는가?	36	40
Q4. 최근 3년간 설립목적 및 미션에 부합하는 기획/특별전시가 이루어졌는가? (* 증빙자료 확인)	41	44
Q5. 전시, 교육 등을 위한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33	33

- 설립목적 및 미션에 부합하는 상설전시를 개최하고 있는 곳이 80%라고 하였으나 이 수치가 상설전시의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것은 아님. 많은 경우 1년에 1~2차례 정도 유물을 교체하는 수준으로 전시에 있어 변화를 피하고 있고 어떤 기관은 유물 교체 없이 연간 전시를 지속하는 곳도 있음

“박물관 전시장은 단독건물에 1층과 2층 각각 상설전시를 진행하고 있으며, 1층 전시관은 1년에 1~2차례 교체 전시가 되고 있으며, 2층 대형 유물의 경우, 유물 교체 없이 연간 전시가 진행됨”

- 현장연구를 통해 살펴본 바에 따르면 지역 내 미비한 전시 인프라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켜주고자 지역 작가 초대전 류의 특별전시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기관이 상당수인 것으로 보이는 바, 전시 공간 대여가 목적인 갤러리와는 변별력을 지니는 정체성 확립이 힘든 것으로 파악됨. 소장품을 활용한 전문적인 기획전시가 더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미술관의 최근 전시들은 소장품과는 무관한 외부 작가 전시, 레지던시 작가 전시, △△리 아티스트의 전시로 확인됨. 이러한 점에서 미술관 소장품이 있다면, 소장품은 설립목적 및 미션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접점이 없는 것으로 추정됨”

“○○미술관의 경우 대체적으로 실 틈 없이 설립목적 및 미션에 부합하는 특별전시가 개최됨. 그러나 상설전시는 없음. 이 미술관에서는 연 1회 정도 소장품 전시를 개최하는데, 이를 상설전시로 간주하고 있다 하겠음. 또한 상설전시나 특별전시가 학문적, 비평적 연구 또는 이러한 활동을 수반하여 기획,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관장의 인적 네트워크와 경력을 토대로 한 단체전 형식으로 개최되다 보니, 전시된 작품들의 ‘가치’와 ‘의미’를 발굴, 생산하는 작업이 수반되지 않은 채 이루어져 옴”

- 현장 인력의 경우 기획전시 운영에 있어 소규모비영리기관으로서 홍보비지출의 한계를 느끼고 있으며, 낮은 인지도와 공간 부족으로 인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전시 관람객이나 교육 참여자를 확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함
- 특별전시가 기획되어 운영되는 경우에도, 전시 도록이 발간되거나 전시 내용이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사례는 많지 않아 전시 건 수만을 가지고 내실 있는 운영을 평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개관 당시 설계된 교육 프로그램의 가치가 여전히 유효한가에 대한 고민 없이 관습적으로 반복해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음. 기존의 프로그램이 신생 사립박물관·미술관이 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제 젊은 세대의 주민과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지역 내외의 작품을 충실하게 소개하고 작가들과 관객들의 교감이 이루어지는 전시와 부대 프로그램 운영이 있으면 동시대 미술에 대한 지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의 예술 향유에도 기여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할 경우, 이는 에듀케이터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미술관에서 ‘교육’ 기능을 어떻게 볼 것이며, 그에 요구되는 역량이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정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파악됨. 지금까지 현장에서의 에듀케이터 역할이 학예사의 역할에 대해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되고, 각 미술관의 특성과 무관하게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표준화되어 온 점 역시도 에듀케이터의 전문성이나 역량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들을 무력화시켜 온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길 위의 인문학과 같은 교육 지원사업을 운영할 경우 많은 관람객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지만 하나 입장료를 받는 사립박물관의 현황을 고려하면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람객을 무료로 받는 것이 오히려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됨.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유료로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함
- 대부분의 사립박물관미술관들은 박물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문화가 있는 날, 길 위의 인문학,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다양한 교육사업들을 전개하고 있음.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였으나, 내실 있고 지속가능한 온라인 콘텐츠를 운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 (3) 이용자 정책에 대한 이해 수준

- 이용자 정책이 마련된 기관은 36%로 확인되어, 윤리관련 규정보다도 더 낮은 비율을 보임

(표 7-40) 현장연구 분석 결과: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 ③ 이용자 정책

(집단별 n=50, 긍정응답 빈도)

기본 확인 항목	기관	연구자
Q6. 기관의 이용자(관람객)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19	18

- 이용자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 기관은 “정관”에 이를 명시하거나 “이용안내 규정”을 통해 공시하고 있다고 응답함

“박물관 정관에 관람객 규칙이 정해져 있다. 그 내용에는 제1조(목적)이 규칙은 본관의 전시유물을 일반에 공개하여 관람을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관람의 금지와 행위의 제한을 명시하여 관람객으로서 제한되는 행동과 지켜야할 사항을 명시해 두었다.”

- 일부 기관은 “국가 유관기관의 규정을 참고”해 이용자 정책을 만들었으나 다수의 기관은 “입장료 기준”이나 “관람수칙” 정도만을 안내하고 있음
- 이용자 정책에 대한 관심과 변화는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을 중심으로 최근 본격화되고 있으나, 이러한 흐름이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에까지는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지는 못함. 따라서 이용자 정책이 무엇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한 관장 및 종사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각 미술관 정체성에 부합하는 동시에 다양한 관람객을 환대할 수 있는 이용자 정책 수립을 독려하는 정책 방향 제시가 필요함
- 부대시설, 편의시설을 관람객 정책으로 꼽는 기관도 있고,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에 대한 배려를 관람객 정책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어떤 기관은 홈페이지나 SNS 활동을 통한 기관 관련 소식과 행사 내용 공유를, 도서산간에 설립된 기관은 접근성 해결의 문제를 관람객 정책 실현으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었음

“잘 조성된 정원을 중심으로 카페와 전시장, 부대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000 입구의 휴게공간을 겸한 전시장으로 훌륭하나 별도의 관람객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배려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전시 및 교육 소식들을 게시판에 홍보하고 있다. 홈페이지 외에도 다양한 세대와 계층을 타겟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와 카페, 유튜브 등에 박물관 관련 소식 및 행사 내용을 꾸준히 업로드 하고 있다. 이를 전담하는 학예인턴직원이 있다”

“미술관은 00산 입구에 위치하여 지역적 기반을 확보하고 있으나 도시의 일반 관객이 쉽게 접근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 많은 사립관들이 홍보 및 관람객 안내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으나, 그 내용이 소장품이나 전시를 충실하게 전하기에는 부족한 만큼, 사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구축하고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업로드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사립관의 경우 전통적인 방식의 매우 제한적인 관람규정만이 있으며, 최근 미술관들에 요청되는 이용자 정책이 마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음. 현장에서는 향후 수정 보완의 계획이 있는 만큼 관람객 규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포함하는 자료인지에 대한 교육에 대한 수요를 드러냄

#### (4) 기획/특별전시의 소장품 활용도

- 최근 3년간 기획/특별전시의 소장품 활용도는 68%이며, 소장품에 대한 연구 및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은 44%임
- 소장품의 관리부터 활용까지의 전반적 관리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표 7-41] 현장연구 분석 결과: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 ④ 소장품 활용 및 연구  
(집단별 n=50, 긍정응답 빈도)

기본 확인 항목	기관	연구자
Q7-1. 최근 3년간 기획/특별전시의 소장품 활용도는 얼마나 되는가?	35	34
Q7-2. 소장품에 대한 연구 및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증빙자료 확인)	28	22

#### (5) 실질적인 대외 협력에 대한 요구

- 기관은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90%) 다른 기관과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기관이 대다수임(92%). 그러나 실제 국내·외 다른 박물관·미술관, 그 외 기관 등의 연계협력 경험을 가진 기관은 78%로 노력 및 의향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준임

[표 7-42] 현장연구 분석 결과: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 ⑤ 대외 협력  
(집단별 n=50, 긍정응답 빈도)

기본 확인 항목	기관	연구자
Q8-1.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43	45
Q8-2. 국내·외의 다른 박물관·미술관, 그 외 기관 등과 연계협력 경험이 있는가?	27	39
Q8-3. 다른 기관과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41	46

- 대부분의 사립박물관·미술관에서 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협력에 대한 필요를 깊이 공감하고 있었음

“박물관은 저마다의 콘텐츠를 자산으로 하고 있다. 이 자산들이 서로 잘 어우러지면 박물관 한 곳에서 보다 융합적인 콘텐츠의 개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박물관, 그리고 학예사들의 교류가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다른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좀 더 나은 전시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전시를 위해 필요”

“문화다양성 확보”

- 이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 교환과 협력 전시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음을 드러냈으나 근무 인력의 이직률이 높아 협력이 길게 이어지지 않는 점을 아쉬운 점으로 꼽았으며,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대표 운영담당자(학예실장, 운영실장급으로 길게 일하는 인력)의 모임과 같은 소통의 장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제안함

“구심점이 있지 않으면 지속적이고 활발한 연계 협력망 구축 어려움, 예산 지원 필수적으로 필요”

“정보교환 등 다양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나 ○○도 박물관·미술관 협회가 2년째 모임이나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부터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 상호 협력을 통해 전시 부자재 등의 공유, 소장품 관리와 보존의 자문 및 교육정보 공유, 학예전문인력 간의 업무 공유를 통한 다양한 콘텐츠 활용과 유물 교차 전시 등 각 기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는 의견 역시 제시되었으나, 유물 이동 시 파손 위험, 유물 전시 시 파손 보험 가입 등 제도적인 부분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제안도 존재함

“○○미술관은 ○○미술관과 MOU를 맺고 △△와 ◇◇와 순회 작품전시 등을 통하여 지역민에 국내외 훌륭한 작가들의 작품을 더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타 지역의 기관과 연계협력은 매우 바람직하고 우리 미술관에서 할 수 없는 또 다른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제공에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기관과 연계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소장품 컬렉션이 상호보완 요소를 지니고 있다.”

“유물 교차 전시 등 각 박물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유물 이동 시 파손 위험, 유물 전시 시 파손 보험 가입 등 제도적인 부분이 뒷받침 되어야할 듯하다.”

- 지방 사립미술관은 지자체 및 지역 내 여러 문화·관광재단과 협력하며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제안됨.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관광 상품을 발굴, 개발, 홍보할 필요를 느끼고 이에 대한 재원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사립관은 전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으나 이를 적절히 수행할 재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 만큼 따라서 지역 내에서 다른 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됨

“지역 내 문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며, 공동의 목적성을 위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것”

“지역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문화콘텐츠 다양화를 시도할 수 있다.”

“지역 재단 및 문예회관 같이 전시공간은 있으나 전시와 교육 콘텐츠가 부족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미술관 전시 및 전시연계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를 제공해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미술관은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를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므로, 지자체와 지역 미술관, 박물관 그리고 지역 학교와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

“지방 사립미술관은 지자체 및 지역내 여러 문화, 관광재단과 협력하며 운영해야한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관광상품을 발굴, 개발, 홍보할 필요를 느끼고 이에 대한 재원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미술관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전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으나 이를 적절히 수행할 재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역의 다른 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가 지방 사립미술관의 운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

- 연계협력을 통해 외부 기관들에게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가의 관점과 더불어, 다른 한편으로 외부와의 연계협력을 통해 기관 자체의 한계를 보완하고 역량을 제고하면서 기관의 기본 기능과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고려가 우선시 되어야 함
- 대부분의 경우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협력이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우호적인 친목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어 본격적인 협력은 요원한 상태로 파악되는 바, 지방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근현대사협력망사업과 같은 전시 협력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소장품 대여나 자문 등의 협업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워크숍을 통해 협력망사업 참여 타 기관에 대한 정보나 연계 사업에 대한 정보들도 얻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공공기관과 협력 시 공공기관이 가진 공신력과 인프라를 공유하여 프로그램의 인지도 및 안정적인 진행이 가능한 만큼 공공기관과의 협력관계를 통해 사립관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드러남
- 문화콘텐츠진흥원을 비롯하여 사기업과도 적극적으로 협업하여 재정적인 자립도를 높이는 등 무조건적인 연계가 아닌 장기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는 곳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의견 역시 제안되었음
- 장애인 복지관, 초·중·고등학교와 같은 지역 내 다양한 시설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사회와 소통하며 상생하는 사립박물관·미술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대부분의 사립관들은 주로 교육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와 협력하고 있는 상황이며, 연구 및 전시에 집중하는 박물관에서 나아가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도모하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여기는 기관 역시 증가하는 추세로 보여짐

## □ 현장사례연구자 의견

### (1)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 ○ 소장품과 무관한 전시 개최

“미술관의 최근 전시들은 소장품과는 무관한 외부 작가 전시, 레지던시 작가 전시, ‘△△리 아티스트’의 전시로 확인됨”

“대체적으로 실 틈 없이 설립목적 및 미션에 부합하는 특별전시가 개최됨. 그러나 상설전시는 없음. 이 미술관에서는 연 1회 정도 소장품 전시를 개최하는데, 이를 상설전시로 간주하고 있다 하겠음. 또한 상설전시나 특별전시가 학문적, 비평적 연구 또는 이러한 활동을 수반하여 기획, 개최되는 것이 아니라, 관장의 인적 네트워크와 경력을 토대로 한 단체전 형식으로 개최되다 보니, 전시된 작품들의 ‘가치’와 ‘의미’를 발굴, 생산하는 작업이 수반되지 않은 채 이루어져 옴”

“박물관의 근간이 되는 전시 및 연구, 소장품의 지속적 확충은 현실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서울의 핵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활용해 공교육에서 담당하기 어려운 역사교육을 일종의 사교육 개념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음. 기획/특별전시 활동은 전무한 형편임. 다만 관람객확보가 유리한 위치 및 여건을 감안해 전시에서 파생되는 주제를 확대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유료)을 운영하고 있었음”

“소장품전을 정기적으로 계획하고 있음. 현 건물의 4층은 소장품전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하였으나, 기획전시 공간에 비해 현저히 협소함”

#### ○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없는 프로그램

“박물관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설립자(관장)의 노령화로 인해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임”

#### ○ 비용의 문제로 전시기획보다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체험 활동에 초점을 두는 경우도 있음

“인력과 예산의 부족으로 상설전시실의 관리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어서 전시교체나 디자인 등의 문제에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이유로 인해 전시보다는 교육, 체험활동에 더 초점을 두는 박물관 운영을 시도하고 있다.) 지난 3년 간 진행된 특별전시는 없으며 상설전시관만 운영하고 있다.”

“연간 2-3회의 특별전과 기획전을 진행. 현재 관장님 부부와 지원 인력을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 ○ 재정을 위해 관람객 중심의 프로그램과 콘텐츠 개발에 주력하는 경우도 있음

“관람객을 위한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눈에 띄었다. 민화를 소재로 한 다양한 키트를 준비하여 체험하게 하는 행사를 하기도 하고, 키트를 구입하여 그 자리에서 경험하게 하였다. 또한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여 뮤지엄샵을 통해 판매하였는데 이는 박물관 운영의 재정적 건전성을 가져오는 방법이었다.”

○ 관람객 중심의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

“전시 및 대회 등 여러 미술행사가 이익사업과 연계되어 있어 박물관 사업의 다양화로 보이지만 박물관 고유의 기능을 침해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운영의 대부분은 전시실과 연결된 교육체험실의 운영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님. 기타 외부 연계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음”

“전시, 교육으로 전환하는 체계적 접근을 제시 하지 않아 프로그램 기획, 운영과 평가의 상황 파악이 어려움”

○ “관람객 중심”에 있어 이율배반적인 사립관의 프로그램 기획 태도

“○○박물관은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시, 학교 단체를 일절 받고 있지 않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대부분 가족 단위의 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하는 형태로 관람객을 받고 있으며, 학교 단체를 수용할 의사가 없음. 이러한 점은 박물관이 평생학습은 물론 학교 교육과 연계한 교육 기능이 법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과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음”

(2) 이용객 서비스 현황

○ 향후 수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 기관도 있어 이용자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기관의 인식이 낮은 편임을 알 수 있음

“○○미술관은 잘 조성된 정원을 중심으로 카페와 전시장, 부대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죽녹원 입구의 휴게공간을 겸한 전시장으로 훌륭하나 별도의 관람객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에 대한 배려는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향후 수정보완 계획도 뚜렷하지 않다”  
“박물관 정관에 박물관 관람 규칙을 설명하고 있음. 향후 수정 계획은 없음”

□ 과제 및 대안

(1) 이용자 친화성 고취 및 지역·기관과의 연계 협력 방안 마련

- 사립박물관·미술관은 온라인을 통해 기관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인 홈페이지를 대부분 마련하고는 있으나 이용자 정책에 대한 관심과 변화는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지는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이용자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으며, 진행하는 전시와 교육이 공공성 구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고 소장품에 대한 충실한 연구·해석을 바탕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방안이 고안될 필요가 있음
- 또한 기관이 현장에서 느끼는 필요성에 따라 지역과 기관, 그 외 조직들과의 실질적인 연계협력을 통해 인프라를 공유하고 기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 마련될 필요가 보임

[표 7-43] 현장연구 분석 결과: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전시, 교육, 지역, 관람객)

(집단별 n=50, 긍정응답 빈도)

기본 확인 항목	기관	연구자
Q1-1. 기관이 자체적으로 만든 홈페이지가 있는가?	44	23
Q1-2. 기관의 자체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고 있는가?	43	45
Q2-1. 2021년의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은 어떠한가?		
① 상설전시 유무	29	17
② 기획/특별전시(평균/횟수)	0.9	0.5
③ 교육 프로그램 수(평균/횟수)	3.5	1.8
④ 대여	5.7	2.7
Q2-2. 관련해 코로나19 등 제약이 되는 외부 요건이 있었는가?	41	46
Q3. 설립목적 및 미션에 부합하는 상설전시를 하고 있는가?	36	40
Q4. 최근 3년간 설립목적 및 미션에 부합하는 기획/특별전시가 이루어졌는가? (* 증빙자료 확인)	41	44
Q5. 전시, 교육 등을 위한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33	33
Q6. 기관의 이용자(관람객)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19	18
Q7-1. 최근 3년간 기획/특별전시의 소장품 활용도는 얼마나 되는가? (활용도 유무)	35	34
Q7-2. 소장품에 대한 연구 및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 증빙자료 확인)	28	22
Q8-1.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43	45
Q8-2. 국내외의 다른 박물관미술관, 그 외 기관 등과 연계협력 경험이 있는가?	27	39
Q8-3. 다른 기관과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41	46

## 3절 의견 분석 : 문제점 및 개선 사항

### 가. 공공성(공적 신뢰와 책임)

#### □ 현황 및 문제점: 사립관 종사자

##### (1) 공공성/공익성에 대한 소극적 인식: 비영리성에 대한 오해와 수익/영리활동 전제

- ‘공익활동’이 곧 비영리 활동이며, 비영리 활동은 수익사업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함: 박물관·미술관의 ‘비영리성’을 사립관의 수익활동을 금지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드러남

“국내에서 사립미술관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부족하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공익을 위해서 한다면 사립미술관을 운영할 수 없다. 많은 국내의 사립미술관이 미술관 유지를 위해 영리를 추구하는 업무(카페, 숙박, 체험, 아트상품 판매 등)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다. 모든 업무를 공익을 위해서 하려면 사립미술관에도 국립미술관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 져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 위와 같은 인식은 소규모 사립관(주로 개인 설립·운영이거나 이를 법인화한 경우, 도시가 아닌 군 단위 소재 사립관)의 운영난과 결부해서 제기됨
  -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이나 공익성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을 소규모 사립관이 스스로 마련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함
  - 특히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여건이어서 공적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을 언급하고 있음
  - 한편으로는 공적 지원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 및 공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됨

“소규모 박물관의 경우 개인의 이익을 더 중시하는 사항은 이해 및 수용하여야 한다.”  
“대체적으로 사립관의 운영상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논의되어야 할 것임”  
“시설박물관의 경우 운영주체 기관에 대한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  
“선진국의 박물관·미술관 관련 공익적 목적 법률 제정에는 찬성하지만, 군 단위 지역의 박물관·미술관에 대하여 각별한 배려가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모든 질문이 이상적으로 옳고 희망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실현하기엔 무척 어렵습니다. 특히 비영리 재단에서 미술관을 유지하기에 역부족을 실감합니다. 필요한 직원들을 채용하기도 힘겹습니다.”

“설립주체가 사립재단개인 등일 경우 모든 업무가 공익을 위해 행해지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박물관이 자체적으로 재정자립을 할 수 없는 현 구조 속에서는 공공기금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과 공익성의 확보가 요청된다.”

## □ 과제 및 제안

### (1) 박물관·미술관 윤리 규정 마련 및 공익적 가치(사회적 역할) 교육

#### ○ 박물관·미술관의 청렴성과 윤리에 관한 구체적이고 강제성 있는 규정 필요

“청렴성과 윤리는 분명 요구되는 덕목이긴 하나, 이상으로만 주어지기보다 구체적인 규약과 강제성 있는 조항 등을 만들어 실질적으로 직업윤리들을 준수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 ○ 관장 및 직원 대상 교육을 통한 공익성 증대 필요

-관장 및 직원에게 필요한 ‘전문성’으로서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 및 현재 시대적으로 요구되는 박물관·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이해를 꾀고 있으며, 이러한 ‘전문성’을 함양할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함

“박물관·미술관 공익증대를 위해 결정권자인 관장 및 실무자인 학예연구사의 전문성 함양과 시대정신 공유를 위한 정기적인 의무이수 교육 필요성(이수자 국고지원사업 인센티브 적용)”

### (2) 지속가능성 및 포용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 마련

#### ○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안 마련 필요: 에너지 전환 및 폐기물 감축 등

“박물관·미술관에 친환경 재생에너지 설비지원을 통하여 환경문제를 문화 콘텐츠와 결합하여 시민들의 관심과 공감대 형성 증대 필요”

“환경에 대한 고려와 폐기물의 재활용 문제를 업계 종사자와 기관이 공동으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류세 시대에 폐기물 줄이는 일이 박물관에도 요청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박물관 성과 평가 지표에 이러한 항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결국 기금을 받기 위해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뭔가 있어 보이게, 기존의 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을 것도 같다.”

#### ○ 장애인, 외국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포용적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 외국인 접근성 등 높여야 한다. 당장 내가 근무하는 기관조차 휠체어로 접근이 어렵다.”

“박물관이 보다 포용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취약계층에게 일년에 고작 십여만원 쓸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발급으로 만족하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문화유산들을 접근 가능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유아, 청소년기 교육이 일종의 문화자본으로 기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체, 정신장애인 접근성도 물리적 환경개선부터 시행해서 제발 높였으면 좋겠다.”

## 나. 박물관·미술관 조직 건전성: 조직 및 재정

### □ 현황 및 문제점: 사립관 종사자

#### (1) 소규모 사립관의 특성: 조직 및 업무분장 체계화 곤란

- 소규모 사립관들이 안정적으로 조직을 형성하고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기 어려움

“국공립박물관과 달리 사립박물관은 소규모로 조직이 구성되어 권한을 갖는 조직과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분리되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사립박물관들은 정책적으로 기준점은 마련하되 예외의 조항들로 관리될 부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사립미술관은 국공립미술관과 달리 작은 규모의 미술관이 많다. 직원은 5인 이하이거나 시설도 열악한 경우가 많다. 파트별로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쾌적한 시설을 갖추는 것은 동의하나 개인의 경제력으로 이를 해결하기는 힘든 경우가 많아 국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박물관 규모별로 기준을 따로 마련해야 한다.”

- 소멸지역의 경우, 더 작은 ‘1인 운영체제’도 다수

“소멸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작은박물관이나 미술관은 1인 운영체제가 많아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요구됨”

- 학예인력 수의 부족으로 인해 ‘전문성’에 근거한 업무분장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학예업무 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학예사 수가 확보 되어야 전문성에 근거한 업무 분담이 가능할 텐데, 일단 부족한 인력들이 모든 업무를 감당하다보니 학예사 업무 외의 잡무들까지 도맡게 된다.”

#### (2) 설립목적(미션), 운영계획 등의 미비

- 설립목적의 모호함과 형식화

“박물관 미션 자체가 모호하거나 아예 제대로 작성이 안 된 경우, 오래 전 쓰고 업데이트 안 한 경우 등의 문제가 있다. 미션에의 부합 여부나 정도를 논의하기 전에 국내 박물관·미술관의 미션 정립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

- 연간 사업계획 또는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평가 곤란: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에도 소규모 사립관의 부족한 인력들에게 업무 부담이 증가하는 점 우려

“사업계획 수립은 기본적으로 사립박물관들이 갖고 있는 형태와 기업 소속 사립박물관의 운영 형태도 다르기 때문에 해당 체계를 분리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부자료에 대한 공표 가능 여부 포함)  
 “운영방침, 계획 등을 명확하게 설정, 공표하고 평가받는 일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그 일을 하기 위한 업무가 현재의 부족한 박물관 인력들이 감당해야 하는 업무가 될 가능성이 크므로 업무 과중이 염려된다. 명목상의 절차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실효성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 (3) 재정난

- 사립관의 모든 어려움은 재정난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음
  - 재원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인력 채용, 사업 수행이 어렵고, 정부 지원 없이 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상황이기도 함
  - 상당수의 사립관이 정부지원사업에 의존해 사립관들이 인력 확보 및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상황임

“재원 조달의 어려움”  
 “예산의 어려움이 가장 크다.”  
 “실질적으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재정적인 부분”  
 “저예산으로 좋은 작가 섭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소규모 비영리기관의 현실상 영리 목적의 사업체보다 홍보비 지출 등에 부족하므로 인지도를 높이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관람객이나 교육참여자를 대규모로 확보하기엔 어려움”  
 “재정의 어려움으로 시설 개선을 하지 못하고 있음”  
 “해외 운송료 포함 제반 비용 상승”  
 “재원으로 전시 및 교육 전문인력 확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원 여부에 따라 인력이 확보되며 연간 전액 자체 부담으로 인력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의 어려움으로 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보조사업을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다양한 문화재를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로 지속가능한 박물관으로 활성화되었음”

- 인력지원사업의 인건비 자부담 비용도 부담스러움

“사립박물관은 자부담 비용이 있다 보니 인건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건비 자부담 가중”  
 “과거에 비해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의한 인건비 중 자부담 비율이 높아졌으며”  
 “미술관 자부담이 해소되어 어려운 운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다. 박물관·미술관 조직 건전성: 인력

### □ 현황 및 문제점: 사립관 종사자

#### (1) 사립관의 전문인력 구인난 및 전문인력의 사립관 기피 현상

##### ○ 비수도권 소재 사립관은 전문인력을 구할 수 없는 현실이 심각한 수준임

- 비수도권의 소도시, 농어촌, 산간지역 등의 벽지, 인구소멸 지역 등에서 전문인력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며, 이는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채용이든 자체 채용이든 상관없이 벌어지는 현상임
- 한편으로는 비수도권 지역 내에 거주하는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이 부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전문인력이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근무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여 인력 쏠림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임
- 전문인력이 비수도권 지역 사립관 근무를 선호하지 않는 것은 물리적 거리, 낮은 인건비와 열악한 근무여건 등이 원인인 것으로 이해됨
- 또한 비수도권의 사립관에 채용이 된 경우에도, 필요한 경력을 채우면 시골이 아닌 도시 지역 소재의 보다 큰 규모의 공립관 등으로 이직이 빈번하여 안정적인 인력 수급이 어려움
- 이러한 현상은 전문인력 입장에서 비수도권 소재 사립관이 매력 있는 일자리가 아닌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인력의 서울, 수도권 편중”, “지원인력이 서울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지원에 관계없이 상주 직원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역 내 문화인력 부족으로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인력이 지원을 하지 않는다.”

“물리적 거리의 한계로 지원 희망자 적음”

“인건비가 평균적으로 낮아 지방에 와서 일하려고 하는 인력 부족”

“지방에 위치하다 보니 미술관에서 필요한 수준을 갖춘 인력을 모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비영리법인이라 인건비 재원 마련에도 한계가 있어 수도권 대비 경쟁력 있는 선택지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지자체에서 생활하는 학예사 부족 등으로 인하여 정3급 이상의 학예사 채용이 힘들”

“미술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적 인프라 등 채용이 다소 힘든 경향이 있다(선정조건 등). 2020년도 사업부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을 통하여 그 공백을 채울 수 있었다.”

“지역의 미술관 박물관에 대한 배려 필요. 존립 가능성 없음”

“인구소멸 대상 지역으로 전문인력 부재”

“농어촌 전문 인력 부재”

“지역 소도시로 인한 전문인력 지원자 부족”

“△△은 지방 소도시이므로 공개 모집을 해도 지원자가 거의 없다.”

“춘천이 강원도이지만 수도권에서 가깝고 산간지방이 아니기에 인력 부족에 대한 어려움이 이렇게 클 줄은 몰랐는데, 수도권과 가까운 이유로 더 수도권으로의 취업을 선호하기도 하고 학예사, 교육 인력 등에게 요구되는 전문성(자격증, 학력, 전공)과 박물관 콘텐츠와의 연관성을 가진 조건을 가진 전문인력을 만나기란 어려운 현실입니다.”

“산간벽지로 전문직 인력 고용에 어려움. 전문인력 고용난으로 경력인정 비인정기관-전문인력 고용난 가중 악순환”

“국고지원 사업이 확정되어도 벽지라 인력이 구해지지 않는 어려움이 있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벽지에 속해 인력공고를 내지만 구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도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을 지원받았으나 인력이 구해지지 않아 공석으로 있다. 또한 지역 특히나 도시가 아닌 시골의 지역에서는 전문화된 인력을 찾기 어렵고 그런 인력이 있다고 해도 조금 전문화를 갖추면 도시나 공립, 시립 등으로 이직을 원하니 일하는 동안에도 장기적인 인력의 계획에 어려움을 느낀다.”

### ○ 전문인력의 사립관 기피 및 사립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 경력개발 경로 문제 연관

- 다수의 사립관이 전문인력이 사립관에 지속적으로 근무하려 하지 않는다고 응답함
- 이는 전문인력의 경력개발 경로가 거의 고착화되었음을 시사하는데, 준학예사나 학예사 자격 취득을 위한 사립관 근무 후 공립관 또는 국립관으로의 이직하는 경향이 일반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즉 경력이나 학력이 상대적으로 짧은 인력들이 초기 진입하는 직장이 사립관인 경우가 많아, 사립관이 실질적으로 이들의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가장 크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다른 한편 국·공립관은 이러한 역할을 거의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사립관 경력자들이 더 나은 직장으로 이직하는 곳이 되어, 사립관의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
- 나아가 이러한 경향도 일조하여 사립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보임

“충분한 경력을 가진 인력이 사립미술관 근무를 선호하지 않음”

“학예인력의 국·공립 및 공공기관 진출로 업무 연계성 애로”

“학예사와 인턴을 구할 수 없으니, 지역 인력을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여건을 갖추면 곧 이직하거나 독립함”

“지역 사립 미술관에서 업무 교육을 시키면 공공기관에 흡수되어 버림. 사립미술관은 또 초보자를 교육시켜야 함.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됨”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적인 교육 지원 이후 스스로 독립하여 연계성이 떨어짐”

“고정된 인력을 지원받는 일은 박물관 업무에 많은 도움이 있다. 하지만 사립박물관의 이미지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미 사립박물관의 부정적인 인식을 깔고 입사하여 일에 대한 선을 굵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으며 이런 선생님들로 인해 박물관에 기존의 운영하고 있는 다른 직원들의 업무에 사기가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러다 보니 잦은 이직으로 인해 박물관 인력의 박물관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전문화가 어려우며 장기적으로 본다면 박물관에도 인력에게도 이게 어떤 도움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회의가 느껴지곤 한다.”  
 “사립관에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입사하는 선생님들의 박물관 무시”

○ ‘전문성’이 높은 인력일수록 구인난이 심각

-사립관이 경력을 충분히 갖춘 전문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이며, 여기에 인력의 처우 문제가 크게 작용함

“에듀케이터를 지망하는 분들은 많지만 경험이 풍부한 전문인력 확보하기 어려움”  
 “미술관의 운영까지 이해하는 경력 5년~10년 사이의 전문인력의 지원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개인 사립박물관에 일할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전문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자원봉사자 또한 구하기 힘들다. 그리고 대부분 무경력자들이 많아 박물관 업무 진행에 차질이 생긴다.”  
 “제대로 된 경력인증을 받지 않은 인력의 업무 퀄리티 부족”  
 “새로운 전문인력 재교육 부담”  
 “학예사 규정이 바뀌면서 예비학예인력은 많이 지원을 하지만, 학예사 자격증이 있는 지원자는 찾을 수 없음. 2년 근무하면 1년을 쉬어야 한다는 큰 리스크가 생김”

(2) 전문인력의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근무여건

○ 전문성(학력 및 경력) 대비 낮은 임금 및 처우

“학예인력은 고학력과 경력에 비해 턱없이 낮은 임금을 받고 있어 이직률이 높으나...”  
 “최저임금과 큰 차이가 없는 지원액에 기초하므로 박물관 인력의 타 분야 유출이 심각할 것으로 판단됨”  
 “사회 통념상 학예사의 교육수준에 비교하여 근무 처우 열악함”  
 “학예연구사에게 요구하는 전문성과 경력과 무관하게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운영 어려움과 경영자 의식부족으로 최저임금에 가까운 열악한 노동조건 속에 학예사의 전문성과 공익적인 책임감을 요구한 열정페이가 강요되고 있는 현실임.”

○ 임금 외 근무여건 또한 열악함: 이는 사립관의 전문인력 구인난과 직결됨

“열악한 근무환경과 지원의 부재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다.”  
 “급여, 교통 편의, 사업 예산, 전시 규모 등 근무 여건의 차이로 전문인력 확보 어려움”  
 “주거, 출퇴근 문제”

(3) 인력지원사업의 한계로 인한 불안정성 심화

○ 1년 미만의 계약직 채용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 등 보장 불가

“전문인력이 최대 11개월 계약직으로 되어있어 업무 연속성이 떨어진다.”  
“10개월에 그치는 인력지원사업 기간”, “지속적 계약직 채용의 관습이 어렵다.”

### ○ 지원사업 반복 참여 제한으로 인해 업무 연속성 확보 불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반복참여자 지원제한 정책으로 인해 이제 업무에 대한 적응과 응용이 가능해질 때쯤, 숙련된 전문인력이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생겼다.”

## □ 과제 및 제안

### ○ 인건비 상향 및 경력에 따른 차등 지급 필요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전문인력에 합당한 인건비 기준 적용 필요. 최저임금에 가까운 국고지원에서 학예사의 전문성과 책임감에 따른 상식적인 지원기준 마련 필요함”

“급여, 복지 등이 개선이 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은 다양한 업무능력이 요구되는 학예인력의 양성에도 도움이 되었을 뿐 아니라, 재정 형편상 학예인력을 충분히 두지 못하는 사립미술관의 업무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다만 예비학예사는 이미 어느 정도는 학예사가 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성인이므로 그 꿈을 키워 갈 수 있도록 급여가 현실화되었으면 합니다.”

“급여가 너무 적다.”

“전문인력의 기본 급여가 너무 적게 책정된 것이 아쉽다.”

“전문인력의 급여 인상을 요청합니다.”

“고학력자인 전문인력에 대한 급여를 조금 높여주었으면 합니다.”

“학예사는 미술관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우수한 인력이다. 한정된 예산으로 많은 학예사를 지원해야 하는 어려움은 있겠지만 능력에 걸맞는 급여의 현실화도 급선무라 생각된다.”

“전문인력 경력에 따라 급여 차등이 필요합니다.”

### ○ 학예인력에 대한 불법적 업무지시나 불공정행위에 따른 고충처리 및 규제방안 실질화

“특히 인력지원사업의 경우 박물관 내 불법적, 비효율적,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경우 이를 당사자 개인이 감당하게 하는 현 구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문체부, 박물관협회와 미술관협회 등의 적극적 중재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고 관계가 틀어져서 개인이 미움받으며 중도 퇴사하는 그런 방식보다 분명 더 나은 조정방식이 있을 것이다. 지원사업에 관여된 이해관계자들이 몸을 사리며 책임회피에 급급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 ○ 우수한 사립관에 ‘기본 학예사’ 지원

“정부에서 우수한 박물관에 기본 학예사를 배정해 주어야 한다. 단 퇴직금은 박물관 부담 조건”

○ 인력지원사업의 우선순위가 사립관 운영비 부담 경감이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작은 사립박물관에 인력의 급여 일부를 지원하여 인력 활용에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인력의 급여지원은 박물관 운영비용의 절감이라는 면에서 박물관의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 인력이 사업 혜택의 주체인 듯 운영되고 있는 점은 상식적이지 않다.”

○ 사립관의 구인난을 해결하기 위해 젊은 세대 직업관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됨

“정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젊은 세대들의 직업 관념에 대한 교육의 불비”

○ 인력지원사업의 자격요건 등 완화

“박물관에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원하는 인력지원사업에서 전문인력에 대한 신청 자격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어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가지원 인력의 취업 제한 규정”

“지방 사립 미술관의 여건상 전문인력의 조건을 현실적으로 범위가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군 단위에서 운영하는 사립미술관의 경우 한국사립미술관협회에서 전문 큐레이터를 지원을 받아 실제 학예사 모집을 공고하더라도 지역적 원거리라는 여건과 또 지역에서의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는 큐레이터가 전문한 상태에서 정확한 규정에 의해서 큐레이터를 모집하여 운영하라고 한다면 전문인력 지원사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따라서 시골에서 운영하는 군 단위 사립미술관의 경우 이에 맞는 규정을 만들어서라도 최소한 미술관에서 많은 경험을 갖고 일할 수 있는 경력 큐레이터라도 지속적으로 채용하여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 인력지원사업의 장기간 지속지원 또는 연속지원 필요

**[장기간 지속지원 또는 연속지원 필요]**

“지원사업의 근무기간이 적절하긴 하나 보다 전문적인 업무를 습득하기엔 근무기간이 짧다.”

“본 사업으로 채용된 인력이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지원환경이 제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속 근무의 유지 지원 등”

“장기적인 채용 지원”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단기간의 지원보다 연속지원을 하여 지원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무기간의 연장이 필요”

“근무기간을 늘려 보다 전문적인 인력을 양성하도록 지원체계를 변화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근무(경력)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미술관 운영의 안정성과 인력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하길 바랍니다.”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봄”

“지방 사립미술관의 경우 기관의 성격에 맞는 장기 근속자를 고용하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고용의 안정화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이 제시된다면 고용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문인력의 업무능력은 각자의 능력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각 미술관마다의 특성에 맞춰야 하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미술관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학예사가 필요함에도 단기간에 교체되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지속적인 지원이 방안이 모색되길 희망한다.”

“자부담 비율 조정과 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근무기간 연장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전문인력은 그야말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해서 일단 배치된 인력이 관과 인력 사이에 문제가 없고 호홉만 잘 맞으면 가능한 지속 근무하는 방식이 서로에게 발전적이라고 본다.”

“고용 안정을 위해 연속 채용 기회가 다양해졌으면 좋겠다.”

“지속적인 지원사업이 요구됩니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근무가 단기간이라서 채용기관과 직원 측 모두에게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장기근무가 보장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12개월 지원]

“근무기간을 12개월로 확대”, “급여 10개월은 이상한 논리이다.”

“지원사업의 기간이 연장되어 12개월로 이루어지면 관에 부담을 덜면서 인력의 활용에 더 유용할 것으로 사료됨”

“예비학예인력도 전문인력과 동일하게 1, 2월 소급이 적용된다면 인력의 역량 강화에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속성 있는 지원과 인력이 부족한 1, 2월에도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문화소외지역에 위치한 우수 기관에는 1-2월 지원제도가 있어야”

“예비학예인력이 자격증을 획득하려면 12개월 주기로 해야 좋을 것 같다.”

“예비학예인력의 학예사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문인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는 1월과 2월이다. 새해에 이루어져야 하는 많은 서류작성과 공모사업에 주력해야 함으로 3월 부터의 전문인력이 아닌 1월과 2월부터 이어지는 전문인력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업무에 대한 연결성이 없기 때문에 많은 고충을 겪게 된다.”

“3월 중 시작되는 전문인력 지원이 조금이라도 빨리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램”

“그리고 인력을 10개월만 지원해 주는 것은 결국 미술관에게 2개월 급여를 자부담시키는 것과 같다. 1, 2월은 전년도 결산과 차년도 사업 구상을 위해 가장 분주한 달인 것은 주무관청에서 더 잘 아시리라 본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아 내년 전시 기획업무를 진행, 기획 기약이 어렵다.”

“준학예사가 정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선 경력인증기관에서 최소 1년 이상을 근무해야 하는데,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기간이 10개월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비학예인력이 경력 개발을 하기엔 사업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1년 계약도 아니고 9개월 계약도 너무 애매합니다.”

“예비학예인력으로서 더 나아가 전문역량을 가진 인력으로 성장하는 과정으로 1년 남짓한 기간은 짧다고 생각된다. 지원 기간의 연장 또는 연속적인 채용 방안 마련이 필요”

“근무기간을 1년 단위로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3월부터 12월까지가 계약인데, 지원서, 계획서를 작성하는 연도(1, 2월)에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좋겠다.”

#### [1년 이상 2년 정도 지원]

“예비학예인력이 지원되는 근무기간 내 학예사 자격증을 미취득 시 차기년도 연장근무(예비학예인력 지원인력) 가능하기를 희망함”

“근무기간을 1-2년 단위로 하면 좋겠다.”

“2년 정도의 연속 지원이 필요하다.”

“근무기간이 최소 1년 또는 2년 정도 됐으면 한다.”

#### [3년 이상 장기 지원]

“역량 있는 인력 양성을 위해 최소 3년 이상 장기근무가 필수. 철새처럼 옮겨다니는 구조는 좋은 인력으로 키울 수 없고, 전국의 미술관이 다양성을 잃어가고 있음(계속 들고 도는 인력 시스템이 원인)”

“역량 있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최소 3-5년 장기근무 권장하고 싶다. 젊은이들이 철새처럼 옮겨 다니 좋은 인력으로 키우기 어렵고 모든 미술관들의 각각의 다양성을 잃어가고 있다.”

“예비학예인력 및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등 인력의 전문성을 더욱 키우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근무기간을 2년~3년으로 늘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 ○ 인력지원사업 시 사립관의 자부담 폐지 또는 완화

“사립미술관의 열악한 재정운영 상황을 고려할 때 자부담금의 축소 운영 요청”

“비영리기관으로서 운영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부담에 대한 비율을 없앴으면 합니다. 운영인력 유지가 가장 어렵습니다.”

“자부담 비용을 대폭 줄여야 한다.”

“전문인력 급여의 자부담을 감경하거나 자부담을 없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술관 자부담이 조금 부담스럽지만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저희 미술관에서 매우 귀한 지원사업입니다. 전문인력의 자부담을 경감해 주시면 미술관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이 많았는데 자부담 비율을 일시적으로나마 줄여 운영에 도움이 되었음”

“지원인력 1명을 제외한 다른 1명은 정말 자체적으로 감당하는 인건비가 매우 부담스럽습니다. 미술관 자체 비용으로 1명을 유지해야 하는 점도 버거운데 매년 정시 학예인력 1명조차도 지원을 못 받을까 매우 불안합니다. 물론, 1명보다 2명이 근무하면 인건비 부담 빠고 일의 능률에서 매우 좋은 점이 많습니다. 비영리 무수입으로 운영하는 사립미술관의 애로사항입니다. 발전을 위해서라면 좋은 제도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부담율이 고용노동부나 행안부 등 부서의 인력지원에 비해 문체부는 과도하게 높게 책정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의 성과에 해당된다는 말인가? 미술관은 돈이 많은 단체가 아니라 돈을 많이 써야 하는 국가의 문화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문화 기초단체임을 인식해야 한다. 문체부는 상업적인 회랑도 지원해주고 해외우수대안공간과 달리 비실험적인/일반적인 주제전시를 위주로 하는 대안공간에 대한 지원하는 것을 지양하고 미술관에 대한 지원액을 대폭 증대하고 부담을 덜어줘 진정한 미술문화 발전에 신바람을 불러일으켜 줘야 한다.”

○ 인력지원사업 예산 증액 및 관당 지원인력 채용 확대

“시급인상과 물가상승에 미술관 운영에 대한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원인력에 대한 지원금이라도 협회의 지원금액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지원 필요”

“시급인상과 물가상승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 미술관 운영에 대한 부담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에 인력 비용만이라도 협회의 지원금액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산 확대를 통한 보다 많은 인력의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산 지원 확보가 원활히 이루어져서 원하는 전문인력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산 증액을 통해서 인력의 채용이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서울이지만 소규모 미술관은 협회의 규정에 따른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인원을 채용하기가 무척 어렵다. 미술관에 필요한 최소 인원이 2명인데, 실질적으로 예비학예인력으로 모두 채용하는 게 적절하지만, 타 미술관의 형평성으로 어려울 것 같다. 실정을 잘 인지하고 있는 평가위원회에 일임하여 필요시 한 미술관에도 2명 정도로 증원시켜주면 좋겠다.”

“기관별 학예인력 배정을 규모와 활동성에 맞춰 최대 3인까지 늘려주시길 바랍니다.”

“지원사업 자부담 비율이 다소 부담스럽지만 좋은 지원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원 인원의 폭을 넓혔으면 합니다.”

○ 전문인력 교육 기회 확대 및 교육 내용의 내실화·다양화

“워크숍,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전문인력 교육기회를 더 많이 제공했으면 합니다. (특히 코로나 상황을 반영한 온라인 비대면교육의 활성화)”

“현장 교육 및 훈련 이외의 인성 교육, 사립미술관 운영현황 등 이론 중심의 일반적인 교육의 선행 요청”

“학예사 재교육을 명목상 온라인 이수로 요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업무가 과중되고 집중도 안 되고 실질적인 필요를 반영하는 교육인지도 의문이다.”

“예비학예인력의 전문성 신장을 위해 다양한 실무교육을 자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예비학예인력 대상 교육 프로그램이 개선이 되면 더욱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예비학예인력의 장기적인 교육이 절실합니다. 미술관 업무에 대한 이해, 적극성, 능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미술관 자체가 아닌 협회나 다른 기관과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면 좋겠다.”

“교육과정 지침도 강화되어 좋은 인력으로 양성되기를 바랍니다.”

○ 전문인력이 아닌 ‘보조인력’ 지원 필요

“국·공립 대학 박물관에는 보조인력이 많지만, 개인 사립박물관에는 없습니다. 개인 사립박물관에도 보조인력을 배치해 주었으면 합니다.”

○ 사립박물관·미술관 규모에 따른 인력운영기준 제정

“시설 박물관 규모에 따라 인력운영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국립, 시립 등의 인력 대비 20% 정도밖에 운영하지 않고 있다 사료됨)”

## 라. 박물관·미술관 조직건전성: 시설

### □ 현황 및 문제점: 사립관 종사자

#### (1) 시설 개선 필요성: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및 「박미법」의 요건에 미달하는 수장시설

##### ○ 시설 노후화에 따른 개보수 필요성 대두

“설립, 운영 23년 차로 모든 시설 노후화”  
“7년 차가 되니 노후시설이 생긴다”  
“25년 차가 되어 건물이 노후되었다”  
“개관 후 30년이 넘어 시설 노후화되어 있고, 실감 영상 등 트렌드에 맞는 전시 시설물 필요”  
“건물 노후와 변화하는 전시환경에 따른 장비 및 제반 시설 확보”  
“일부 시설 노후”  
“기존의 건물(웨딩홀-1999년 준공) 매입하여 박물관 성격에 맞춰 리모델링 공사하여 개관한 이후로 전체적인 건물의 노후화 발생”  
“현재 엘리베이터 교체 공사중(5,000만원) 외 개관 7년 지나 전시장 및 야외무대 등 부분적으로도 보수 및 공사 필요하다.”

##### ○ 등록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수장고의 개보수 시급

“항온항습 장치를 구비한 수장고”, “수장고, 소독실 부족”, “잠금장치 추가”  
“○○박물관의 경우 수장고가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물 열화현상 방지 불가능하고, 타 기관에서 유물 대여가 불가능. 설계 완료했으나 코로나로 인해 2년째 시공 지연되고 있고, 이후 시공 가능성 불투명”  
“현재 ○○박물관은 25년 전에 지어진 3층의 목조건물로서 낙후된 시설과 다량의 습기 노출, 화재의 취약성 등 전반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다량의 문화재를 보유하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건물에 대한 전문가들의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습기와 화재에 강하고 다량의 문화재를 소장할 수 있는 건물로 증개축을 하는 것이 옳바르다고 판단됩니다. 본 박물관은 처음 시공 시, 지하 1층의 건물은 수장시설로 지어졌으나, 다량의 습기를 잡지 못하여 지하 1층의 건물은 수장시설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상 1층의 건물로 수장고가 이동하여 임의로 칸을 나누어 좁은 공간에 수장고를 만들었고 그 안에 보물 11점과 유형문화재 103점을 포함한 약 1,500여점의 다수의 주요문화재를 소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물관은 턱없이 부족한 수장시설로 항온항습기가 작동하지

않는 곳에도 유물들이 소장되어있는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지금도 지하의 습기가 지상으로도 올라와서 특히 여름이 되면 다량의 습기가 유입되어 박물관의 문화재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년 전에 박물관 수장고의 천장이 내려앉은 일이 발생하여 현재 박물관 수장고 내부에 2개의 임시로 가설 지지대를 끼어 놓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지지대 주변으로 유형문화재 등 다수의 중요 문화재들이 자리 잡고 있어 매일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또한, 최근에 일어난 울진 산불을 보시다시피, 사찰은 화재에 매우 취약합니다. 보물을 포함하여 다량의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박물관은 목조건물로서 경내에 화재가 일어났을 시, 문화재가 전부 소실되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 (2) 박물관·미술관 운영을 위해 필요로 하거나 개선 계획이 있는 시설 및 설비

### ○ 소장품 증가 등으로 인한 수장고 확장 및 구비 필요

“소장품 수 증가에 따라 수장고 규모 확장 필요”, “소장품 증가로 수장고 공간 확충”  
 “소장품 관리 및 보존 시설 부족과 학예 공간 부족”, “수장고의 확장”  
 “수장고 시설 - 000 자료들이 워낙에 반대하며 자료들이 많이 흩어져있어 매년 소장품 구입비로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만큼 소장품들의 수도 늘고 있으며 구입한 소장품의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수장고와 휴게시설이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임”  
 “전시실 및 수장고, 박물관의 기본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

### ○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간의 확보

“교육실. 소규모 박물관은 전시수입보다 교육 제공에 따른 수입이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충당함. 현재 교육실을 보유 중이지만 향후 보다 전문화된 공간으로 개선 희망. 현재에도 사용 목적이 부합하므로 당장의 개선 계획은 없음”  
 “교육실, 추후 건물 일부를 전문 교육실로 사용 예정”

### ○ 전시실 확충 및 전시공간 설비 개선

“상설전시공간 부족”, “전시실 확충”  
 “전시공간 재정비”  
 “전시실 쇼케이스 유리 교체(안전을 위한 강화유리로 교체 -> 교체 예정임)”  
 “전시실 보수 공사(전시실 유물 교체에 따른 디오라마 확충 또는 전시 보조품 교체 필요)”  
 “전시공간의 조명 장비가 서화류 전시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저조도, 자외선차단 조명으로 변경하여 소장품에 맞는 조명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  
 “전시실 내 조명 보완 (밝기, 위치, 방향 등 세부조정이 가능하도록)”

○ 편의시설의 확충 및 개선: 휴게공간, 카페, 화장실,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데스크

“금후 점차적 예산을 확보하여 편의시설 마련 검토”  
“박물관 문화샵, 식음시설”, “커피숍 - 방문객의 요구”  
“문화 휴게공간 설치”, “휴게공간, 화장실, 교육체험실 등의 확장이 필요”  
“설문에서 제시한 시설 대부분을 갖추고 있다. 관람객 휴게시설이 미술관 로비에 갖추어져 있으나 그 규모나 시설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 현대의 미술관은 전시 관람공간을 넘어 문화를 향유하며 여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의 역할이 추가되고 있다. 그렇기에 휴게공간에서 전시도록을 읽고 상시 비치된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각자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면 현재보다 더 머물고 싶은 공간이 될 것이다.”  
“장애인 편의시설”  
“인포데스크의 추가, 입구가 2개인 공간의 특성상 관람객에게 편리한 동선 및 안내를 제공하고자 함.”  
“코로나19로 인한 동선 변경 및 인포 추가설치 필요.”

○ 자료실 및 사무실의 증설

“사무실(연구실) - 한국대중음악 자료들의 대여 및 연구자료, 보조자료들에 대한 요청들이 늘고 있는데 비해 대응해 줄 인력이 부족한 상황”  
“빠른 업무를 위한 연구서 작성 및 목록 자료 아카이빙 작업이 필요하나 사무실과 업무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미술관에는 전시실과 수장고 그리고 교육실과 자료실이 필수라고 본다.”

○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비 및 업무 전산화·효율화 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 DB사업화와, 유물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미술관 운영 및 경영을 위한 업무 자동화 시스템 등”  
“재원조성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대안 및 제안

○ 지역 공공수장고 건립

- 수장고의 안전성이나 규모 등이 충분히 구비되지 못하고 있으며, 소장품이 늘어나 수장고를 확장해야 하는 사립관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또한 개별적으로 수장고를 증축하려고 해도 여건상 불가능한 사례도 있음
- 이에 지역별로 수요를 파악해 공공수장고 건립 제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역 공공수장고 시설 필요”

“수장고 및 자료실 공간 증설 및 개선, 소장 자료의 증가로 인한 필요”

“수장고 노후로 개선 필요 해당 지역은 팔당댐 식수 보관지역으로 면적당 건축 제한이 있어 건축법상 증축이 어려운 상황임”

## 마. 소장품

### □ 현황 및 문제점: 사립관 종사자

#### (1) 운영비 부족으로 인한 소장품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한계

- 운영비 부족으로 소장품의 수집, 보존, 활용 어려움: 지원사업의 영향 고려 필요  
- 이와 관련해 구조적 요인의 파악과 개선을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 할 수 있음  
- 우선적으로는 사립관의 운영비, 즉 연간 인건비와 사업비의 구성이 일반적으로 국고보조사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점, 이 국고보조사업이 대부분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 행사 개최 등의 일회성 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이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박미법」에서의 모든 규정은 ‘소장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사립관의 운영이 실질적으로 국고보조사업에 인건비와 사업비를 대부분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박물관·미술관을 다른 문화시설과 구별해 주는 핵심 정체성인 소장품의 보존·관리, 해석, 활용 등의 기능이 후순위로 간주되거나 방치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소장품의 수집, 보존, 활용이 분명 필요한데, 운영자금의 부족으로 사립박물관의 경우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의무만 늘리기보다 이런 것들이 왜 잘 실행이 안 되는지 구조적인 요인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복제, 모조 등 자료 제작도 소장품 활용에 중요한 한데 그러한 열람용 사본 제작 자체에 드는 인력과 자금이 확보되기 어려운 환경이라 당장 실현이 어려울 것 같다.”

#### (2) 부족한 전문인력 및 시설(수장고)로 인해 소장품 관리 및 연구 저조

- 전문인력 부족으로 인한 소장품 관련 기능 수행 곤란

“사립에서는 감당할 인력이 부재함으로 깊은 논의와 설정이 필요하겠음”

“소멸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작은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1인 운영체계가 많아 이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요구됨”

“관장님의 전시 특성상 많은 소장품들이 상설전시에 전시되어 있어 소장품 관리에 부족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 가치와 의미를 따져 부분적으로 복각 소장품 교체계획은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립관의 운영상 전담 직원이 있지 않아 어려움이 있다.”

### ○ 소장품 관리를 위한 기본 여건인 수장고 취약

“소장품은 특히 사립박물관이자 전문박물관들의 구체적 카테고리에 따라 분류 및 자체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다만 내용에 대한 공감은 되는 부분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정보를 체계화해 관리하는 데는 제반 사항(수장고 등)이 마련되어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어야 하는데 여건이 되지 않는 기관들에 대한 별도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 ○ 소장품 연구의 필요성은 절감하나 실제 연구를 할 수 있는 여건 미비로 어려움

“개인 사립박물관에 소장품 연구하기 어려움이 많다.”  
“운영과정 상 여유가 없어 소장품에 대한 연구가 어렵다.”  
“소장품 수량이 많고 연구자가 부족해 소장품 연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물관의 다양한 교육과 기획전시에 대해 박물관의 소장품을 기준으로 기획하여 소장품의 활용도가 높으며, 많은 기관, 언론 등에서 소장품에 대한 관심으로 업무 혹은 소장품 공유업무로 연락이 오고 있어, 소장품 관리 연구 조사 등의 아카이브에 필요성은 절실하나 여러 현실에서 어려움에 부딪히고 있다.”

## (3) 소장품 정보 공개에 대한 입장

### ○ 소장품의 공개에 대한 소극적/부정적 입장과 공공적 차원에서 긍정적인 입장 공존

“소장품 관련 공개는 아직은 좀 꺼려지는 편이다.”  
“소장품 정보를 일반인, 연구자에게 공개하는 일은 학문적 발전, 소장품의 공공적 활용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 생각한다.”

## □ 과제 및 제안

### ○ 소장품 감정 및 복원 지원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 전문감정 지원과 자료복원 등 실질적인 지원을 해주었으면 한다.”

### ○ 소장품 전문인력 또는 전담인력 지원

“소장품 전문인력 지원이 필요합니다.”

- 지역 및 학교 연계 세미나로 소장품 연구를 포함한 연구기능 활성화

“다양한 연구활동과 조사연구의 확장을 위해 기관에서 주최하는 지역, 학교 연계 세미나로 함께 하는 박물관·미술관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소장품 조사연구 지원 필요

“유물의 전수조사 필요”, “유물의 정확한 목록작성이 선행되어야 전시와 교육의 계획 수립 가능”  
 “지역 고유 문화에 대한 연구와 활성화 방안 필요”

## 바.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

### 박물관·미술관 서비스, 해석·전시·교육·학습, 지역 연계·협력

- 현황 및 문제점: 사립관 종사자

#### (1) 박물관·미술관 서비스 측면에서의 어려움

- 코로나19로 인한 관람객 수 감소와 지원사업 운영 곤란

“사업들을 진행하려면 참가자를 모집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관람객의 수가 많이 줄어들었고 학교들은 거리두기 방안 때문에 참가하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 모집이 어려웠습니다.”

#### (2)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 의지 및 관심이 높음

- 타 기관과의 연계·협력 의지 및 관심이 높고, 경험적으로 그 효능감이 높음

“충분한 정보교환”

“지역 내 문화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으며, 공동의 목적성을 위해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음”

“다른 기관과의 연계·협력을 통해 좀 더 나은 전시 또는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기관과의 연계로 박물관끼리의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협력하는 관계가 좋다고 생각함”

“박물관은 저마다의 콘텐츠를 자산으로 하고 있다. 이 자산들이 서로 잘 어우러지면 박물관 한 곳에서보다 융합적인 콘텐츠의 개발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박물관, 그리고 학예사들의 교류가 활발해질 필요가 있다.”

“○○미술관은 타 지역의 공립관과 MOU를 맺고 순회전시 등을 통하여 지역민에게 국내·외 훌륭한

작가들의 작품을 더 많이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타 지역의 기관과 연계협력은 매우 바람직하고, 우리 미술관에서 할 수 없는 또 다른 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더 많은 기관과 연계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제한된 예산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예산 절감을 위해 타 박물관과 연계한 적이 있음. 다수 박물관이 연결되어 패키지화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여 좋은 실적은 얻은 경험 존재”

### ○ 박물관협력망사업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평가

“우리나라 대중음악 관련한 소장품은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와 길을 함께 하고 있다. 전시에 대한 기획 중 음악소재 외에도 보조자료들로 관련 소장품을 보유한 관들과의 협업 등은 기획전시의 퀄리티를 높게 하며 알찬 전시로 구성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근현대사협력망사업에 매년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우리관은 3년째 지원 선정 수혜) 전시에서의 대어나 자문 등의 협업 등이 이뤄지고 있으며 아니더라도 워크샵 등을 통해 협력망 박물관에 대한 정보나 타 사업에 대한 정보들도 얻을 수 있어 많은 도움이 된다.”

### (3) 현실에서의 연계·협력은 부진하다고 인식함

#### ○ 다른 박물관·미술관, 문화기관 등과의 연계·협력 미흡

“유관기관과 사립 미술관의 협업은 아직은 활발하지 않다.”

#### ○ 지자체의 협조 및 지원 저조: 지자체 등 공공기관의 직원윤리교육 필요도 제기됨

“지자체의 협조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지자체 등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자율성에 대한 간섭: 지자체 혹은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문화재단은 사립미술관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협업하기보다는 관리하고 단속하려 해서 불쾌감과 의욕 상실을 불러옴.

기획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본 미술관에서 운영 후 심지어 공공기관에서 협의 없이 제목과 컨셉을 모방하거나 유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당황스러움과 의욕 상실을 불러옴.

지역이다 보니 변변한 항의도 할 수 없어 특히 공공적 윤리적 교육이 필요함”

#### ○ 지역공동체 내 협력 네트워크 취약

“군-민-관 협력 부족”

“주민들의 적극적 협력 부족”

## □ 과제 및 제안

### ○ 해외 연구자 및 박물관·미술관과의 연구 목적 교류협력 활성화

“박물관 자료의 특성상 해외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방대한 지역의 언어적 차이로 인한 오류를 피하기 위해 현지 전문가와의 교류와 해외 타 박물관의 전시자료 및 자료 분석 연구가 필수적임”

### ○ 박물관·미술관 사이의 소장품 연계협력 활성화

“다른 기관에 소장품 대여를 통한 협업”

“충분한 자료 교환”

“소장품 컬렉션이 상호보완 요소를 지님”

“유물 교차 전시 등 각 박물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함”

### ○ 소장품 연계협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필요

“유물 이동 시 파손 위험, 유물 전시 시 파손 보험 가입 등 제도적인 부분이 뒷받침 되어야 할 듯함”

“소장품 활용 보존에 관한 공공의 투자가 필요함”

### ○ 지역 내 다른 박물관·미술관, 문화재단 등 유관 기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학교 및 대학, 지자체 등과의 연계협력 활성화로 문화 다양성 제고 및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관람객들의 전시 피로도 해소, 재방문 유도, 다양한 콘텐츠 제공의 측면에서 타 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콘텐츠 개발 필요”

“다양한 전시를 위해 필요”, “박물관의 전시의 다양성”, “문화다양성 확보”

“지역기관과 협력을 통해 지역의 문화콘텐츠 다양화를 시도할 수 있다.”

“하회탈을 비롯한 세계의 탈들이 전시되어있는 하회세계탈박물관과 축제단체가 협력한다면 세계 보편적인 문화인 탈을 널리 알리는 것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역 재단 및 문예회관 같이 전시공간은 있으나 전시와 교육 콘텐츠가 부족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미술관 전시 및 전시연계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를 제공해 지역민들의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

“○○미술관은 지역민들의 문화향유를 목적으로 설립하였으므로, 지자체와 지역 미술관, 박물관 그리고 지역 학교와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

“지방 사립 미술관은 지자체 및 지역 내 여러 문화, 관광재단과 협력하며 운영해야 한다.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관광상품을 발굴, 개발, 홍보할 필요를 느끼고 이에 대한 재원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미술관은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전시, 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홍보하고자 하는 수요가 있으나 이를 적절히 수행할 재원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역의 다른 기관과 연계, 협력하여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관계가 지방 사립미술관의 운영에서 큰 부분을 차지한다.”

“문화예술 향유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미술관 및 박물관, 도서관 등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한 목적을 가진 기관들의 전문성을 통해 수준 높은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할 수 있고 관람객을 확보하여 기관 운영이 원활히 지속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 국·공립 기관과의 적극적인 연계·협력 및 국가와 지자체의 관심 필요

“공공 미술관과의 연계가 필요”

“이유 및 장점: 호혜(국·공립의 전문성, 예산, 인력, 기술 + 사립의 풀뿌리 지역문화)”

“과제: 전시품 보안장치 마련, 소장품 연구 및 보존: 소장품 관련해서 사립기관들이 부족한 과학적 분석 및 보존에 필요한 부분 등에 연계협력이 필요”

“전시 협력이나 박물관 투어 같은 연계를 가지거나 공립과 사립의 자매결연을 통해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들고 전시도 연계하면 좋겠다.”

“공공기관과 협력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이 가진 공신력과 인프라를 공유하여 프로그램의 인지도 및 안정적인 진행이 가능함”

“교류 및 초청전시를 통하여 지속적인 소장품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사립의 경우 국·공립박물관 등에서 전시를 개최하면 홍보 효과, 도록 출간 등 장점이 있으나, 단점은 역시 전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지 못하면 힘들다는 것임. 이를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국립 박물관이나 공립 박물관이 지역의 사립박물관과 협연할 수 있는 박물관을 우선적으 선별하여 함께 협연하는 일이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수 박물관 시스템에 따라갈 수 있는 곳과 아닌 곳으로 구별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국립은 세 곳 정도, 공립은 한 곳 정도의 박물관과 협연을 한다면 인적 물적의 교류에 큰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국·공립박물관 특별전시의 순환전시”

## ○ 전문인력 네트워크 마련

“인력을 갖추지 못해 휴관하는 곳이 많으니 인력지원에 대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야 한다.”

“사립관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의 이직률이 높아 서로 담당했던 선생님들이 이직을 통해 협력이 길게 이어지지 않는 점은 아쉬운 점이며, 코로나19로 인해 2년 가까이 줌 등을 통한 최소화한 모임으로 협력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많은 선생님들이 코로나19 이후의 소통을 원하고 있어 점차 나아질 것으로 생각되며 이직률을 무시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관에 대표 운영담당자(학예실장, 운영실장 급으로 길게 일하는 인력)의 모임이라던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장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 협력 네트워크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구심점이 있지 않으면 지속적이고 활발한 연계 협력망 구축 어려움, 예산지원 필수적으로 필요”  
“정보교환 등 다양한 협력이 가능할 것이나 ○○박물관미술관협회가 2년째 모임이나 회의조차 개최하지 않고 있어 이 부분부터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행정기관과의 원활한 협력”, “지역 박물관 네트워크 및 상호간 원활한 협조가 필수적임”

○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관점의 사업 실시

“각 기관의 주요 업무 계획과 기간이 상이하여 단기간 내에 협력한 성과를 거두기 어렵고, 2~3년 장기 계획으로 ‘박물관미술관 주간’ 등을 운영하여 협력의 가치 및 목적을 이루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지원사업 규모의 확대 필요

“상설전과 적절한 시기에 진행하는 기획전으로 인해 관람객들은 재방문이 늘며 박물관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활동적인 이미지를 지역민과 관람객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점은 장점이며 박물관에서도 기획전시를 통해 소장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며 아카이브할 수 있는 점은 정말 감사한 일이다. 박물관 운영비가 여유가 있어 매년 정기적인 기획전을 미리미리 계획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입장객 수익으로 운영되는 사립관에서는 이런 지원비를 통해 기획전을 진행하는데 지원사업은 적고 혜택을 받으려는 관들은 많아 경쟁구도 속에 전시를 못하게 되거나 축소되어 운영되는 부분들은 박물관 전체 운영 계획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 지원사업의 지속성 확보 및 다각화 추구

“보조사업이 매년마다 다시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다 보니, 지자체의 상황들로 인해서 보조사업이 종료되거나 지원을 안 하는 경우가 생겨 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불편함이 있음”  
“사립박물관에 지원되는 학예인력 대부분은 잦은 이동으로 인해 박물관의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전시 운영 면에서도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역사회에 대한 박물관의 역할이 선명하게 부각되었으나, 박물관 본연의 일에 공백 초래되어 인력지원과 다양한 지원 필요”

## 4절 '우수 박물관·미술관'을 위한 제언

### 가. '우수 박물관·미술관'의 기준

#### □ 사립관 종사자 의견

##### (1) 공통의 기준으로 제시된 항목들

- 공공성이 높은 기관: 사회환원, 고유기능 수행, 지역발전 기여, 소외계층 혜택

“박물관의 지속적 유지와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 소장품을 포함한 개인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소장품을 포함한 개인 자산을 사회에 환원하여 운영하는 사립기관은 나라에서 공립 수준의 지원을 해주어야 하며, 기관 역시 그에 준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소장품 연구 및 전시 교육 개발,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공헌,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혜택”

“재원이나 소장품만 풍부한 기관이 아니라 자원의 활용과 공공성이 높은 기관이 우수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 박물관·미술관으로서의 기본 요건을 잘 갖추고, 고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여, 그 성과가 높은 기관

“우선 시설이 확보되고 학예사가 있고, 소장품을 잘 활용하고 재해석하여 해마다 발전하는 박물관”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지는 기관”

“기관의 테마에 맞는 기획전시 구성과, 기관의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 구성을 하는 것을 지향”

“훌륭한 프로그램의 기획과 진행이 두드러진 박물관”

“설립취지에 알맞게 활발한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기관”

“박물관의 설립목적에 맞는 전시와 교육이 운영되고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교육 프로그램이나 국제교류가 많은 박물관”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관람객들에게 제공하는 기관”

“이용자와의 교류가 활발한 박물관”

“연간 관람객 수가 많은 박물관”

“지역자원을 잘 활용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박물관”

○ 운영의 지속성 및 경영의 체계성을 갖춘 기관

“규정에 의한 시스템을 갖춘 뮤지엄으로서”  
“설립 이후 최소 10년간 유지 발전을 도모하고”  
“기타 ICOM 가입, ICOM대회 참가 등 내부 시스템 혁신 단결”  
“경영 안정화”  
“공립 미술관의 평가항목을 기준을 사립미술관에 적용한다고 가정 시, 평가항목 중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에 보다 높은 평가 비중”

○ 양질의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전문인력의 역량이 잘 발휘되는 기관: 연구, 전시, 교육

“학예사 2명 보유(경력인정대상기관)”  
“양질의 학예사를 양성하는 별도의 교육 시스템을 갖추되, 가능하다면 그 지역민을 우선 채용함으로써 자부심을 갖도록 한다.”  
“(학예사) 근무일지, 비상연락망, 출장복명서, 작품관리카드, 뉴스레터 발행, 연간 4회 이상 전시, 교육, 홈페이지 관리, 관람객 안내, 비대면 교육”  
“전시 기획 의도 및 내용, 지역사회 연계 사업 및 기여도, 관람객과의 소통 및 만족도 (지역적 특수성 고려)”  
“전문인력, 소장품 연구 및 전시”

○ 소장품, 전시, 교육의 질적 수준이 보장되는 기관: 전문인력과 불가분의 관계

“우수관의 요건은 소장품과 전시의 우수성, 그를 활용한 시민 대상 교육의 수준 등 콘텐츠의 우수성을 갖추는 것이어야 한다. 이 같은 문화적 핵심 가치를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요란한 행사나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판단된 우수성은 지속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시설이나 소장품 규모 등 양적 우수성도 물론 중요함. 그러나 박물관은 소장품 보관시설이 아닌 지역에 문화를 전하고 보편적인 인문학과 문화예술을 교육하는 기관이므로 연구개발역량과 자체 콘텐츠 활용도를 더 중요시하여 ‘행동하는 박물관’을 추구하기를 바람”  
“사립박물관의 우수함의 기준은 환경과 여건보다는 콘텐츠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기관: 질적 수준 우선

“우수 박물관·미술관의 기준은 국제적 기준에 맞추어, 어느 한 분야라도 월드클래스 수준에 들어갈 수 있는 박물관·미술관이 되어야 함”  
“인력의 질적 수준, 유물의 가치(역사적, 학술적, 희귀성, 미적 가치 등), 박물관의 연혁(역사)과 연구실적 등이 중요하나, 한국은 물질적 가치(거대한 건축물, 값비싼 유물)와 학예사 수(사립박물관 학예사들의 질적 수준은 천차만별임), 관람객 수에 치중함으로써 박물관의 개념에 대한 유아기적 발전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전시의 질적 탐구가 중요하며 전시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등의 질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많은 관람객, 많은 프로그램 수로 우수 기관과 아닌 기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어느 분야에서 우수성을 평가하는 데에는 다양한 방법이 있음. 건물이 크고 인력이 많으면 일반적으로 우수 박물관·미술관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많으며, 연구와 전시, 교육 등의 활동을 하지 않아도(활동을 하더라도 질적인 수준 향상은 무시) 자산 투입이 많으면 우수 박물관이 쉽게 되는 환경을 지양하여야 할 것임”

“‘인증기관’처럼 학예인력이나 단순 소장품 수, 등으로 운영에 관한 질적 고려를 경시할 우려가 더 크고 지원의 잣대로 작용할 우려”

## (2) 사립관들의 상이한 여건을 고려한 기준 설정 필요

### ○ 박물관·미술관의 기능(역할)에 따른 기준 항목 마련

“박물관·미술관 내에는 다양한 역할이 있으므로, 우수 부문을 분리하여 기준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박물관·미술관의 중요한 역할인 '전시'와 '교육' 두 가지 부문을 나눌 수 있으며, 입지와 이슈성, 입장객 수를 반영하는 '관광' 부문, 또는 시의성을 반영한 우수한 소장품을 소장한 관에게는 '소장품 부문' 등의 신설도 가능할 것 같다.”

### ○ 사립관의 상이한 여건들을 고려한 ‘신중한’ 기준 마련 필요성 및 국·공립관 ‘평가인증’ 기준 적용의 부적절함

“박물관의 크기, 재정, 여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 선정할 때 신중해야 한다.”

“박물관·미술관의 특성이 기관마다 다르므로 획일적인 교육 횟수, 전시, 시설 등의 계량적 분석이 아니라 해당 기관이 잘하는 분야를 질적 수준에서 파악하여야 할 것이며 선택적 지원이 필요함.”

“사립박물관도 안정적인 박물관 운영과 공공성의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각 관의 상황이 국·공립박물관 보다 혹은 사립박물관 내에서도 격차가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립박물관은 각 박물관 특성과 설립목적에 따라 동일한 잣대로 평가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각 박물관의 특성(설립 주체/전시/교육이념 등)을 고려하여 평가가 선행되어야 할 듯하며, 하나의 잣대로 평가되면 안 될 듯합니다.”

“본 박물관의 경우 소규모 박물관으로 전시 분야에서 경쟁력을 얻기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며 상설전시보다 외부 기획전시 등을 주로 진행하고, 박물관 교육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하여 지역 학교 등과 연계를 진행하고 있기도 함. 우수 박물관을 판단함에 있어 시설이나 실적에 대한 획일적인 판단보다는 특정 부분에서 집중 성장하는 박물관도 우수 박물관으로 판단해주면 어떨까 함”

“사립미술관·박물관에 대한 현실적 기준이 필요, ‘우수기관’과 ‘비 우수기관’의 기준이 모호하고 현재의 ‘인증’과 ‘비인증’처럼 차별의 기준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사립박물관 미술관의 전문성을 인정해야 하고 다양한 문화적 특성을 드러낼 수 있도록 현실적인 것이 고려되어야 하며 박물관 운영자의 성실도가 중요하다.”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지역여건, 소장품의 방향)을 반영하여 미술관운영 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규모나 종류, 내용 등에서 다양한 박물관이 활발한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1,000개의 사립박물관·미술관은 1000개 이상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각자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나 크게, 도시와 지역, 공립과 사립기관의 특성반영, 한정된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박물관미술관 종사자와 전문인력의 처우 개선, 그리고 소장품에 대한 정책적 방향이 필요.”

“사립미술관박물관은 각자의 여건과 특성을 기반으로 국·공립과는 다른 길을 모색해야 함”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평가인증제도는 ‘우수 박물관·미술관’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막대한 공적자금이 들어갔음에도 사립박물관들 보다 훨씬 부실한 공립박물관의 운영문제 때문에 만든 조항이며, 현재 사립박물관에 적용이 안됩니다. 공립박물관에 준해 사립박물관에도 확대 적용하려고 조사를 하는데, 운영 주체와 지원의 형태가 완전히 다른 사립박물관에 맞추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수 박물관의 기준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미 전시 교육 등 다양한 앞서 나가는 국립 박물관들의 예를 보면서 많이 따라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문제에 늘 부딪힌다. 이 문제는 기업 혹은 대학 등에서 운영하는 것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사립박물관에는 늘 존재한다고 본다.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박물관에 대한 머릿속의 그림은 늘 있으나 이 그림을 현실에 맞게 투영해서 실행하는 그 과정에서 지원의 폭에 따라 우수관의 인증기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된다.”

### (3) 사립관의 능동성, 전문성, 독자성이 중요: 국가 정책이나 지원에 대한 수동성 및 의존도 심화 경계

- 국가 주도의 평가 기준에 수동적으로 부응하다 보면 원래 취지와 달리 하향 평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

“국가기관의 문화지원정책 아래 과도하고 세세한 규제에 의해 그 요구하는 기준만 채우려 하는 수동적 성향의 박물관을 양산할 수 있음. 즉,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모든 분야의 평가 기준점만 채워 유지하려고 하는 소극적인 성향의 박물관들로 인해 질적으로 평균적 하향을 가져올 수도 있음”

- 보조금에 의존한 ‘지지부진한’ 운영방식을 벗어난 독자성 모색 필요

“보조금에 의존한 지지부진한 사립미술관이 아니라 독자성과 독립성을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 현장사례연구 연구자 의견

### (1) 공통의 기준으로 제시된 항목들

○ 공공성: 비영리성, 합법성, 공익성

**[비영리성: 소장품 또는 작품 거래(판매/중개) 금지, 미술관 소장품과 개인 소장품 철저히 구분 포함]**

“박물관·미술관의 비영리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관장의 개인 영리 사업과 미술관 사업의 법적 관계, 재무적 관계에 대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구조화가 필요함”

“미술품 거래를 하지 않아야 한다는 항목의 명시”

“관장이 미술관과 화랑(갤러리)의 기능이 혼동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강력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함. 최근 K현대미술관의 사례를 통해 불거진 미술관의 작품 중개 및 알선 행위가 끊이지 않고 대규모로 적발되기에 이른 사태에 대해서 제도적 결함이 있음을 지적함. 현행법에서는 「문진법」도, 「박미법」도 이에 관한 명확한 구별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다만 미술관 등록취소 사유로서 중개, 알선 행위가 적시되어 있으나, 등록취소라는 행정행위는 광역자치단체의 권한이자 책임임. 이에 관해서 책임 있는 조치가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미술관 운영의 건전성과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다고 주장한 점은 경청해야 할 지점임. 미술관 설립주체의 성격과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미술관의 ‘비영리성’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와 그에 따른 책무, 혜택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작가 미술관으로서 개인 소장품과 미술관 소장품의 분리 관리를 철저히 하여 투명성 확보”

“박물관·미술관(등록) 소장품과 개인 소장품의 구분 등, 공공적 자원으로서의 소장품에 대한 인식과 실천 의지를 갖추어야 함”

“공동지향의 우수 박물관, 미술관의 척도는 공공성일 것이다. 박물관에서 발생한 이익은 모두 박물관에 재투자되는 것과 같은 것도 고려되어야 한다.”

“개인의 열정으로 미술문화 작품과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대중 일반에게 공유하는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운영자는 이것이 개인의 범위를 넘어 사회 공익의 활동으로 확대되었음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첫째, 우수 사립박물관·미술관 인증기관은 일반 사립박물관·미술관보다 박물관의 기능(전시, 교육)과 공공성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일반 사립박물관의 문제 중 하나가 소유하는 유물의 가치를 공공재가 아닌 개인 소유물로 인식하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로 인하여 박물관 전시실을 개방하지 않거나, 유물을 방치하는 수준의 전시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우수 사립박물관·미술관 인증기관은 박물관 개방 날짜 및 교육 전시까지 일반인 누구나 쉽게 박물관을 찾고 즐길 수 있도록 꼼꼼한 규정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합법성]**

“등록 시점에 엄밀한 등록요건을 충족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미술관으로서의 기본적인 등록요건이나 법적 활동 등에 관해 충실히 이해하고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무엇보다도 미술관 소장품에 관한 수집, 관리, 보존, 연구 등의 활동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는 수장고 시설, 전시시설 등에 대한 이해 및 활용방식이 거의 형식화되어 있는 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남.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지원사업 및 사업비 지원을 다수 받고 있으며, 지원사업에 의존하여 지원받은 인력으로 지원받은 사업(길 위의 인문학, 문화가 있는 날 등)이 요구하는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 문화행사 등을 개최함. 직원의 제보에 따르면, 사업비 지원사업의 예산 일부를 미술관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탈법적으로 전용하고, 국고보조금사업 정산 시에는 이를 은폐하는 방식의 조작이 이루어진다고 함. 이에 관해서 현재 근무하는 직원 두 명이 모두 인지하고 어쩔 수 없이 이를 사주받아 시행하고 있어, 불법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부담감을 갖게 됨. 국고보조금 사업에 의해 지원받은 인력을 또 다른 국고보조금 사업의 부정수급에 공모하게 사주하는 행위를 하고, 이에 대해 직원들이 문제제기를 했으나 시정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전해짐. 따라서 ‘우수한 박물관·미술관’의 최소한의 요건이라 할 합법적인 운영이라는 차원에서 심각하게 결격사유가 있다고 하겠음. ICOM 윤리강령에서 밝히고

있는 합법적 운영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태가 발생하는 데에는 국가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책임도 있다고 하겠음”

“공공성 실현이다. 문화적인 가치가 있고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사립박물관과 미술관은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이제 공립의 수많은 관계 시설들이 생겨났고 그만큼 박물관과 미술관이 많아졌다. 양적 팽창에 따른 자정이 필요한 때이다. 사립 기관의 공공성을 재고하여 평가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세제혜택과 부동산 개발 관계 등이 얽혀 있는 사립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지표를 마련하여 적어도 등록 당시의 상황을 숙지하고 유지하는지 등록요건을 재평가하여야 한다.”

#### [공익활동/공익성]

“등록 및 개관 이후 사회 공익의 활동을 충실히 수행하는지 검증해야 한다. 사회 공익의 활동을 근거로 여러 지원이 이루어지고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이 뒤따르고 있을 때 더욱 그러한 검증이 필요하다.”

“사립박물관 미술관 설립자의 경영 이념이 공익성을 담보”

“사립박물관이 문화기관으로서 갖는 사회적 책무를 인식하고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개인이 열정을 갖고 열심히 수집해서 공공에 공개하는 박물관을 만들었고, 수익을 내지도 못하면서 개관을 하고 있고, 교육 프로그램(정부지원사업이건 자체 기획이건)을 운영하는 것이 사회에 헌신하고 공공성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사립박물관이 공유하고 있는 일반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진정한 박물관이란 어떤 사명을 갖고 사회에 왜 존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어떤 기본적인 사항들을 수행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목표를 설정한 박물관”

### ○ 소장품의 질적 가치 우선 및 소장품의 관리, 연구, 해석, 공개/활용에서의 전문성

“박물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소장품이 아닐까 한다. 전시든 연구이든 지역사회의 참여든 박물관의 소장품이 우선적으로 설립목적과 미션에 부합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소장품에 대한 정리가 우선시 되어야 전시, 연구, 교육, 참여 등 후속 활용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 점에도 우수박물관 인증 시 소장품에 대한 관리 상황을 가장 냉철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우수 박물관 인증에 대한 평가기준으로 해당 박물관의 유물관리 시스템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박물관의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은 바로 소장품인데 소장품에 대한 목록화와 메타데이터 등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있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피고 이에 대한 후속 연구와 유물에 대한 상세설명 등도 순차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연구자가 현장조사를 통해 판단해본 바로, 사립박물관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소장품 관리’에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소장품에 대한 목록화 작업조차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기관이 대부분이다. 정확한 수량도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소장품 목록집은 (일반 공개는 둘째치더라도) 반드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사립박물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소장품에 대한 정확한 목록화와 정보 구축이다. 박물관의 가장 기본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소장품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립박물관이 현실적으로 많은 편인데, 이에 대한 현장실사가 평가인증 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장유물에 대한 메타데이터가 충실히 기록되어야 하며, 양적 수집을 지양하고 소장품에 대한 충실한 연구와 해석이 뒷받침되어야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이다. 예를 들어 기증 자료의 경우 기증자 인터뷰를 반드시 실시하여 기증 자료에 대한 설명을 풍부하게 기록해 두어야 한다. 평가인증제도 실행 시 체크리스트에 위의 사항들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소장품에 대한 목록화와 데이터들이 우선적으로 정리되어야 전시활용, 교육활용, 콘텐츠화가 가능하다.”

“우수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 제도 내에 사립박물관·미술관을 포함할 때, 무엇보다 수집 보관하고 있는 소장품의 우수성과 그것의 사회 공익적 차원의 공개를 전제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소장품의 역사적, 학예적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소장품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박물관이라는 특이성을 감안하여 소장품의 평가를 전문적으로 해야 한다.”

“보유한 소장품의 가치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이에 대한 관리 및 연구, 해석, 공개/활용이 합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함”

“소장품의 특성을 감안한 전문성, 소장품의 질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하며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역할을 정확히 명시해야 한다.”

“전시를 넘어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추진되는 미술관”

“단순 전시를 넘어 사립미술관의 건립목적과 미션에 부합하는 연구와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추진되는 미술관”

“연구 방향 설정의 객관적 가치”

## ○ 기본 기능의 종합적인 질적 수준과 그 조건인 ‘시설, 소장품, 전문인력’의 충실한 구비

- 기본 기능의 충실한 수행을 통한 공익성의 달성 또는 공공재로서의 가치 인정이라는 측면을 중시
- 동시에 이러한 기본 기능 수행을 위해 「박미법」에서 등록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시설, 소장품, 전문인력(학예사)의 실질적인 구비 수준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함

“우수 박물관·미술관은 모든 항목이 일정 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조화시킬 필요가 있음. 일부 항목만 해당하는 박물관은 우수 박물관·미술관이라고 할 수 없음. 다만 평가인증제 추진 시 전체가 아닌, 항목별- 소장품, 전시, 교육 등 - 평가인증 추진도 가능”

“수집, 보존, 연구, 전시, 교육, 교류 등 박물관의 기본 기능에 얼마나 충실하며, 그 기능의 효과로 ‘공공의 이익’이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평가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우수 박물관을 선정해야 함. 체험교육에 집중하는 혹은 집중할 수 밖에 없는 박물관들의 평가 기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박물관의 역할 수행이 우선되어야 함. 적절한 연구, 수집, 전시, 교육이 이루어지며 이를 통한 ‘공공재’로서의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어야 함.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활성화 되어 있음.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해 볼 때 사립박물관이 공공재의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는 근거로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우수 박물관·미술관’ 관련 각종 법제나 규정에 대한 현장에서의 해석과 이해가 모호하고 자의적인 측면이 커서 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가 발생하는 측면을 지적할 수 있음. 또한 등록요건인 학예사 1명 이상, 경력인정대상기관 요건인 학예사 2명 이상이라는 규정이 제정 당시에는 미술관 자체 채용인력을 의미했으나, 현재는 이 요건들을 지원사업에 의존하여 해결하고 있는 관이 상당수라 하겠음. 이러한 제도와 현실의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시급함. 나아가 등록요건의 세 항목, 즉 인력, 소장품, 시설이라는 인프라에 해당하는 요소들이 현재 법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다수 확인되고 있는데, 이러한 인프라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전시나 교육과 같은 대국민 서비스 활동이 전개되는 측면에 대한 문제인식이 시급함”

○ 경영의 체계성 및 투명성: 공적 신뢰 구축 및 운영의 지속가능성 확보

“경영적인 측면에서, 중장기적 비전과 명확한 미션, 이에 따른 중장기 사업 계획과 장기적인 재정 자원 계획을 갖추고 있어야 함”

“중장기 전시계획과 지속적인 재정계획이 필요함”

“각종 지원사업 확보 및 운영에 함몰되기보다 미술관 자체 목적과 연구에 따른 사업 기획과 운영이 중심이 되어야 함”

“박물관의 역할이 정상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위한 인력과 재정 및 운영 전략은 명확하며 효과적인지 등을 판단해야 함”

“박물관의 운영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수준의 인력과 재정 확보 여부가 일차 과제일 것임”

“기관 운영의 건전성 확보가 중요함”

“설정한 비전과 미션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단계별 과정 설계와 이에 대한 연단위의 계획을 수립-진행-평가-환류에 대한 체계적 기록. (연간 영역별 활동에 대한 기록과 아카이빙의 체계 마련)”

“단계별 계획안과 연간 활동 기획-실행-평가 체계 마련 필요”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주체, 운영규정, 조직, 소장품 등에 대한 정보가 보다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소통되어야 함”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료를 공개하고 후원이나 기부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내용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할 것이다.”

“해마다 해야 하는 전시의 회수와 박물관 미술관의 개방 날짜 등의 명시와 이를 실질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규칙 등이 필요하다.”

“경영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며, 현 관장 이후의 기관의 미래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와 대비가 필요함”

○ 조직구성 및 운영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체고용 인력 필수

“전문인력의 채용, 유지, 업무 분장, 훈련을 위한 인사관리 체계를 갖추고, 관장의 전문성과 함께 실장급/실무자급 학예인력의 전문성과 자체 고용이 보장되어야 함. 학예기능 및 인력을 전적으로 정부 인력지원에 의존하는 상태는 박물관미술관의 지속가능성과 역할 수행에 구조적인 취약성을 야기하므로 지양해야 함”

“지속가능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외부인력과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

“인력 활용 구조를 재정비하여 현재 인력지원사업이 가진 한계를 수정해야 함”

“학예 인력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급여 조건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지역사회 연계 및 이용자 관점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활동: 공동체 내에서 성장  
도모

“박물관 미술관의 이용자 및 지역사회에 대해 파악하고 이들과의 접점을 늘리고 이들을 위해 서비스하는 마인드를 갖추어야 함”

“지역사회 범위 외에 동문과 동문의 가족 통한 사회회원기증이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 공동체 안에서의

박물관 성장적인 측면을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임”

“우수 박물관 미술관의 기준은 자체 보유-시설과 인력, 소장품-의 충실성이 아닌 이용자 관점의 박물관 활동이 되어야 함”

“박물관 운영에 따른 사회구성원들의 ‘만족도’에 대한 지속적이고 확실한 평가와 분석이 동시에 진행되어 ‘우수한 박물관’으로 인정 받은 근거가 제시되어야 함”

“이용자들의 현황파악과 요구 분석에 따른 박물관 현황 파악을 위한 노력”

“관람객 경험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의견수렴 구조가 필요함”

“협업과 네트워크 등 박물관의 외연을 확장할 수 있는 방향과 전략이 필요함”

“지역 내 위치한 사립박물관 운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사회와의 연계 경험, 특히 지역 내 위치한 국·공립박물관과의 업무협약이나 연계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박물관의 경우 ‘지역사’라는 테마를 내세운 박물관으로 지역 내 다양한 연구기관, 대학 나아가 이를 후원해주는 지자체와 의회 등 지역사회 전체가 공동의 협력을 기울이는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즉 해당 박물관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해야 한다.”

## (2) 질적 평가에 우위를 둔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 마련 필요

### ○ 정량적 평가보다 정성적 가치에 우위를 둔 인증 지향

“양적인 평가 외 질적인 평가가 우수 박물관 선정에 반영되기를 바람.”

“박물관이 위치한 지역, 여건 등의 환경을 반영하고 박물관의 소장품과 인력, 활동의 특수성을 고려해 정량적인 것보다는 정성적인 가치가 반영된 평가인증이 되어야 하며,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지표를 통해 인정받아야 함. 규모가 작고, 소장품 양이 적을 뿐만 아니라 덜 가치 있고, 인력과 예산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활동이 부진한 곳을 인증과 미인증의 상당한 기준으로 삼는다면 이는 평가인증제의 취지와도 맞지 않기 때문임. 본래적으로 박물관·미술관 진흥이 무엇인지 정책적으로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으로 생각됨. 기존의 진흥이 숫자를 늘리는 것이라면, 질적 진흥,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경제적 지원의 방향성을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 ○ 하드웨어보다 소프트웨어에 비중을 둔 접근

“우수 사립박물관·미술관의 평가 점수 비중은 하드웨어 박물관 시설 30%와 소프트웨어(학예인력의 인적 구성과 근속연수, 상설전시 특별전 횟수 및 규모) 70% 비율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대부분 지역 사립박물관의 경우 사회적, 경제적인 한계로 인하여 서울·경기도 지역의 사립박물관보다 우수한 시설을 갖추기 어렵다. 따라서 우수 사립박물관·미술관 선정 점수 기준에서 시설에 높은 점수를 배정한다면 지방 사립박물관의 점수는 수도권 사립박물관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질 것이 뻔하여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는 우수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 점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 ○ 박물관·미술관 ‘진흥’의 정책적 방향에 대한 근본적인 재고가 필요한 시점

“본래적으로 박물관·미술관 진흥이 무엇인지 정책적으로 고민해봐야 하는 시점으로 생각됨. 기존의 진흥이 숫자를 늘리는 것이라면, 질적 진흥,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적, 경제적 지원의 방향성을 고민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 (3) 사립관들의 상이한 여건을 고려한 기준 설정 필요

#### ○ 지역, 규모 등의 특성을 반영: 수도권/비수도권, 대기업/개인 등의 차이 고려

“우수 사립박물관·미술관 인증 쿼터제도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후원의 사립박물관과 일반 사립박물관을 직접 비교해서 인증제도를 실시한다면 상대적으로 시설 및 운영 환경이 열악한 일반 사립박물관의 평가 점수가 낮을 것이다.

또한 수도권과 지역 사립박물관 격차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동일한 서울·경기(서울, 경기, 인천), 강원권(강원도), 충청권(대전, 충남, 충북), 경남권(대구, 경북, 경남, 부산, 울산), 전라권(전북, 광주, 전남), 제주권(제주도)으로 나누든지 아니면 조금 더 현실적으로 1쿼터(2개 특별시, 5대 광역시 특별시), 2쿼터(인구 10만 이상의 시), 3쿼터(인구 10만 미만의 군 단위) 정도로 정확하게 나누어 쿼터 인증제를 실시하는 것이 전국 사립박물관 사정에 맞는 인증 평가제도로 생각된다.”

“서울과 비서울 지역의 미술관이 상이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인지한 위에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함. 서울 미술관들이 정통적인 미술관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 수행이 가능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방의 미술관들은 지역 커뮤니티 내 일원으로서 커뮤니티에 기여하는 점에 무게중심을 둔 커뮤니티 미술관의 특성에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임. 이를 구분하지 않으면 어느 쪽에도 미술관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어렵게 하고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은 일리가 있음”

“사립박물관·미술관을 ‘우수함’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마다의 그 기관만의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작은 마을의 박물관·미술관은 그 마을에서 작용하는 ‘우수함’이 있을 것이고, 대형 소장품이나 기업 소속의 박물관·미술관은 그 기관만의 ‘우수함’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작은 특수 커뮤니티에서 문화기관으로 구실을 이루며 활동하는 사립기관에게 ICOM 규정이나 장기비전 계획을 반드시 문건화하는 것을 ‘우수함’을 평가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 동일하게 적용하기에는 모순이 있을 것이다. 다만 각 기관이 관련된 커뮤니티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떻게 그 관계의 발전에 박물관이 기여하는가 하는 관점에서 ‘우수함’을 장려할 수 있는 제도로 정책을 삼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자와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박물관 관계자들은 ‘사립’박물관이 갖는 부정적 인식 때문에 근무 중 사기가 떨어진 적이 많다는 얘기를 강조했다. 사립박물관은 그 특징과 성격, 조직의 특수성 등이 천차만별인데 이를 하나의 이미지로 뭉뚱그려 판단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자 역시 여러 사립박물관 현장방문을 통해 국·공립기관보다 사립박물관들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점을 줄곧 인식해왔다. 따라서 사립박물관을 일정한 평가를 통해 구분해야 한다는 박물관 현장 관계자들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박물관의 우수성을 파악하는 체계를 마련 필요. 개별 박물관의 콘텐츠의 다양성 속에서 ‘우수성’, ‘전문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와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에 고안 필요”

○ 어린이박물관·미술관의 특수성 고려

“일반화된 기준이 아니라 미술관의 특수성에 부합하여 적절한 프로그램이 운영에 대한 평가. 어린이 미술관의 경우는 일반 미술관과 차별적인 기준이 특히 필요”

## 나. ‘우수 박물관·미술관’을 만들기 위한 사립관의 자체 노력

□ 사립관 종사자 의견

(1) 운영 시스템의 체계화 및 협력 네트워크 강화

○ 합법적 운영 및 운영 시스템의 체계화를 통한 운영 역량 강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반하는 행위를 절대 하지 않도록 한다.”  
“박물관 개별적으로는 관행적으로 해오던 시설과 프로그램의 운행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규정 등을 마련, 짜임새 있게 운영될 필요”  
“팀워크에 의한 업무 분장 및 관리, 공통 노력, 화합 단결”, “미술관 분위기 조성”  
“박물관이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운영해나갈지 계획을 세워야 하며,”  
“자체진단 평가, 세미나, 해외연수”  
“장기적인 운영 계획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미술관 개별 컨설팅”  
“현대적인 시설 확보”, “시설보수 및 방역관리”

○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강화

“상호 네트워킹을 통한 정보 교류”  
“정보의 교류 및 향상을 위한 조직과 단체를 구성”  
“박물관 학예사들끼리 활발한 교류로 인해서 정보를 공유하며 각 기관마다 소통이 잘 이루어져 유물의 대여가 잘 이루어져 다양한 전시를 진행하였으면 한다.”  
“박물관 함께 사회의 교육기관으로서 서로의 장단점을 터놓고 교류할 필요”  
“박물관 소재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하여 활발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교류 등”  
“지역사회 전시연계, 소통, 협력”  
“문화적 노력과 재정적 노력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적 노력은 한계가 크다. 전문인력 확보, 노후 시설의 정비와 디지털화 등은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재정적 자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결국 비재정적, 문화적 노력이 필요한데 개별적인 노력보다는 지역적, 동일 분야별, 공공시설과의 연대를 통한 노력이 효율적일 것이다.”

## (2) 소장품 가치 증대 및 공공문화시설로서의 역할 내실화

### ○ 소장품 가치의 증대: 소장품 연구 및 활용(전시, 교육 등)

“사립박물관 소장품이 지역에 끼치는 영향력을 우선 파악하면 실존 가능한 박물관인지 변화를 주어야 하는 박물관인지 판단할 수 있다.”

“사립박물관은 개별적으로 유물 자료에 대한 연구부터 시작해야 할 것임(계속된 연구로부터 수준 높은 전시와 교육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소장품을 활용하여 다양한 전시와 교육의 시도가 필요함”

### ○ 공공문화시설로서의 역할 내실화: 지역 내 양질의 문화향유 및 교육 기회 증진

“수도권에 몰려 있는 문화 혜택을 지방에 있는 시민들도 누릴 수 있는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나아가기 위해 지속적인 전시(상설전과 기획전)와 교육을 운영해야 된다.”

“다양한 사업에 적극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참가한다.”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자체 기획전시 확대와 문화교육사업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각 박물관의 특성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립박물관은 전시보다 각 박물관의 특성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으로 지역민을 만나는 것이 공공 문화시설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람객 수 확보”

## (3)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의 역량 강화 및 위상 제고

### ○ 학예인력 역량 강화: 학예인력 교육 내실화 및 연구, 전시, 교육 역량 강화

“빠른 사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박물관 인력에 대한 기술적·학문적 교육”

“학예사는 치열한 노력을 통하여 스스로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위상을 높여야 함. 이러한 학예사들이 많이 근무하는 박물관 생태계는 자연히 발전하고 그 위상이 높아 사회적 영향력도 발휘하여 선순환적인 발전을 가져오며, 그렇지 않은 박물관들은 자연적으로 도태할 것임.”

“소장품의 연구조사와 같은 학예연구와, 이를 흥미로운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으로 풀어내는 콘텐츠의 개발”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학예사들이 참신한 전시와 짜임새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 ○ 인력지원사업의 지속성 보장: 학예사 고용의 지속성 보장과 연계

“기본적으로 사립박물관이 원활한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인력의 지원이나 인력의 고용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인력의 지원이 지속되면 장기 국고 지원사업이나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박물관의 내실이 탄탄해지고 우수한 문화향유기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 현장사례연구 연구자 의견

### (1) 전문적 운영을 위한 운영 시스템의 체계화 및 연계·협력 강화

#### ○ 공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개인 사립미술관으로서의 한계는 있겠지만 좀 더 공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 반드시 법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고유번호 부여 단체, 전문예술단체 등의 지위를 획득하여 좀 더 공적인 법적 성격을 가질 필요가 있음. 관장에게 집중된 사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보완하여 공립 박물관미술관에 의무화된 운영위원회나 자문위원회 등을 두고 보다 더 공적이고 전문적인 거버넌스를 갖추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 ○ 설립목적(미션), 운영규정, 중장기계획, 조직체계 및 업무분장 등의 수립 및 공표

“미술관 미션, 운영규정, 조직도, 직무분장 등 기관의 목적과 체계 등을 수립하고 공표하여 미술관의 사회적 공공성, 운영 체계성을 입증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미술관의 중장기계획 수립과 콜렉션 수집의 방향과 정책 마련”

“이번 용역의 공공성을 비롯한 항목은 적절함. 다만 각 박물관은 공공성(공적 신뢰와 책임)과 조직 건전성(설립목적, 미션과 비전, 거버넌스, 조직 구조, 인력과 시설재정의 안정성과 위기 관리)의 각 항목의 의미와 필요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박물관 건립 및 운영 출발점과 지향점으로 삼아야 함”

“내부 워크숍을 통한 미술관의 중단기 계획수립과 고유의 차별성이 있는 사업 개발”

#### ○ 박물관·미술관 경영 역량 강화: 비영리기관 재원조성, 홍보마케팅 등 전문성 제고

“지금까지는 미술관의 전문인력을 학예사로 적시해 왔으나, 사립의 경우에는 미술관의 경영과 관련된 비영리기관 재원조성 및 홍보마케팅 부문의 역량을 제고하는 것 역시 중요하다고 하겠음”

“공공 지원사업만으로 장기적인 미술관 운영이 이루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확장된 재원조성 및 후원구조를 마련하고 수익사업 등을 설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음”

#### ○ 지자체 및 지역 내 여러 기관과 연계한 공동 사업 추진 및 교류협력 확대

“지역 사회의 요구에 발맞출 수 있는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들과 연계하여 공동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박물관 소재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향유 기회 제공을 위하여 활발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교류 등”

“유사목적과 미션이 있는 사립미술관(공립도 포함)과의 연대로 공동연구나 기획 추진 등”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고 활용하는 문화자산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박물관들에 대한 선별 및 지원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설립주체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해당 지자체와의 협력망 구축 등 다양한 방식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지역 내에서 박물관의 역할에 대한 단계별 진행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지역안의 네트워크와 지역안의

인지도 향상”

“동일 지역의 박물관 간 공동 전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우수한 박물관 콘텐츠와 서비스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 (2) 박물관·미술관 관장 및 학예사의 자기 인식과 역량 강화 노력 필요

### ○ 설립·운영주체/관장 및 학예사의 공공적 인식 제고

“박물관 스스로는 본인들의 활동과 기능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자존감을 높여야 하며, 사립이라고 하더라도 공적인 부분과 사적 부분을 구분하여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인식과 활동이 중요함”

“최소한의 요건만 규정하고 있는 박물관·미술관 등록의 요건으로는 ‘우수 박물관·미술관’의 변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립박물관·미술관이 운영자 개인의 열정과 헌신으로 가동되고 있으나, 그것이 개인 컬렉션이 아닌 박물관·미술관으로 전환된 의미를 박물관·미술관 운영자는 물론 관련 종사자들이 분명하게 인식하고 재정 집행이나 박물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박물관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주체가 박물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임. 기업박물관의 경우 공공성 강화를 통해 모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제고의 차원에서 평가 및 인증제도가 활용될 수 있을 수도 있을 것임”

### ○ 관장 및 학예사의 박물관·미술관 경영 및 박물관학 지식 강화

“무엇보다 관장과 학예인력 스스로 박물관·미술관 경영 및 박물관학에 대한 지식을 강화하고 학습, 수용하는 태도를 갖출 필요가 있음”

### ○ 전문인력 양성 및 고용의 개선 방안 마련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의 주요 업무를 실행할 수 있는 인력 양성이 중요하다. 수많은 인력양성 사업에 참여한 인재들이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에서 소장품을 통해 훈련받고 안목을 키워 전문인력이 되어야 한다. 국·공립박물관, 미술관의 한정적인 인력의 한계를 넘는 방안이며, 사립의 조직을 통해 전문가가 양성되어야 문화계 전반의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현재 인력을 소비하는 구조로 사립박물관, 미술관이 작동한 결과를 보인다. 전문인력의 양성과 고용에 대해 고민하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 복합적인 조사연구 활동 강화를 통해 소장품 가치 증대 및 활용 도모

“이용자 및 요구 분석”

“박물관의 발전을 위해 내부 및 외부 문제에 대해 대응하려고 하는 노력”

“특별한 수집을 하려는 노력과 수집 내용에 대한 연구, 보존 등 박물관자료로 가치를 부여하는 과정”

“운영의 질적 향상을 위해 연구에서 전시 교육까지 연결되어야 함”

“기관의 특성에 맞는 전시 방법의 연구가 필요함. 전시품 교체 및 안정과 보존을 위한 설치가 필요. 전시와 운영 등 노하우 공유하여 시너지 효과 필요”

“박물관은 무엇이며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깊은 고민과 연구가 필요함. 다양한 사례를 참고하고, 우수한 사례를 공유하며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상설전이 없는 박물관의 경우 기획전과 특별전을 위한 연구와 외부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 개발”

“‘문학’을 대중화하고 인식을 고조 할 수 있는 전시나 교육, 참여 등의 콘텐츠 개발과 이를 공유하고 유통하는 마케팅 전략 개발”

### (3) 소장품 가치 증대

#### ○ 소장품 목록 정리의 표준화 도모 및 박물관별 소장품 목록 정리 시급

“소장품의 통일된 양식의 정리가 필요하다. 어떤 유물이나 작품을 어떤 경위로 취득하였으며, 얼마만큼 활용되었는지 등을 파악할 수 있는 표준장부의 사용이 요구된다. 국가차원의 전산화로 모든 이들이 한 자리에서 여러 박물관과 미술관의 자료를 검색할 때 검색어를 향한 데이터 처리방식이 같아야만 효과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소장품 정리의 표준화라는 측면에서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에서도 통일된 소장품정리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박물관은 박물관의 정체성도 뚜렷하고 전시와 교육활동, 지역사회 협업 구조도 잘 갖추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많은 수량의 유물에 대한 목록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온라인에 공개된 수량도 매우 적은 편이다. 유물의 목록화 작업과 소장품 정보에 대한 정리가 시급해 보이며 이를 학술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면 좋을 듯하다.”

“소장품에 대한 제대로 된 파악과 (박물관 관장 외에도 전 직원이 이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정확한 위치 기록(수장고 및 전시실 내), 출납 명부 등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레지스타 업무도 사실 전문적이어야 하고 쉬이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운영조차 힘든 박물관들의 경우 전문 레지스타 업무를 기대하기도 힘든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한 국가, 지자체, 해당 박물관의 협력이 중요하다.”

#### ○ 소장품 연구 활성화

“작가 미술관의 경우 작가의 예술적 가치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작품의 가치를 향상시키고 이를 통해 미술관의 문화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중요함”

“소장품의 유지 혹은 확충이 지속되어야 한다. 또한 교육과 전시뿐만 아니라 연구가 되어야 한다. 현재 박물관 미술관의 업무 중 연구가 지속적으로 중요한 과업으로 인지되는 추세에서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의 연구에 대한 인지도나 역량은 현저히 낮은 편이다. 이에 따라 영세한 경우 주변의 소장품이 유사한 기관과 연속적인 전시를 기획하여 전시하거나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대학교와 MOU 등을 통해 연구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

“미술관의 소장품 조사연구, 보존관리, 소장품의 전시 및 활용, 프로그램 등과 같은 보다 기본적인 측면들에 대한 자체적인 관심과 노력 필요”

○ 이용자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문화소비 욕구가 증대하고 있어 문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나 동시에 다른 업종과의 무한 경쟁 시대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립박물관 미술관의 문화 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노력이 절실함”  
“보다 다양한 계층의 관람객이 일상적으로 찾는 박물관이 될 수 있도록 참신한 시도를 할 필요가 있음”

## 다. ‘우수 박물관·미술관’ 육성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노력

□ 사립관 종사자 의견

(1)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사회적 위상 강화 및 인식 개선

○ 박물관·미술관 명칭의 남용에 대한 제재 및 상업적 전시기관과의 변별성 제도화

“사회적 인식개선과 상업전시기관 (뮤지엄 명칭의 남용, 톱섬미술관, 성수미술관 등) 변별성”  
“국가나 지자체에서 사립 기관일지라도 공공성을 띄는 비영리기관의 역할을 하는 박물관에 운영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셨으면 한다.”  
“박물관 활동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박물관을 방문한(또는 관심이 있는) 시민의 의견을 취합하여 박물관에 전달”

○ 박물관·미술관의 공익성/비영리성 개념 정립: 목적사업과 수익사업 관련 인식 개선

- 대체적으로 국·공립관의 무료관람정책으로 인해 사립관의 이용료 일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으로 형성되었다고 체감하고, 무료관람정책을 지속할 경우 사립관에 대한 공격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었음: 단 지원은 ‘우수관’이어야 한다는 인식 역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
- 그러나 국내법상 비영리기관인 박물관·미술관은 목적사업과 수익사업이 양립 가능하며, 수익사업은 목적사업을 수행할 경비 마련을 위해 허용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 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안내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동시에 사립관의 이용료에 대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노력도 필요함
- 지자체가 지역경제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사립관을 유지했을 때에는 이에 합당한 행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기본적인 인식 개선 문제도 방치됨으로써 장기간 사립관의 고충이 된 경향이 있음
- 국가와 지자체, 국·공립관의 경우도 상설전에 한한 무료관람임을 명확히 하고, 이로 인한 사립관

의 고충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이는 무료관람정책의 지속 또는 폐지 사이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사립관의 이용에 관한 인식 개선을 함께 도모하는 노력을 요하는 접근이어야 할 것임

“박물관의 기능 중 박물관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 등도 하나의 기능이며 다른 나라에서 박물관의 수입으로 직업 및 경제의 활발한 사례들을 종종 본다. 박물관의 보존,보전과 상응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박물관에는 하나의 큰 기능으로 생각하고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국영 시립 공립 등의 박물관이 입장료 무료화, 혹은 최소한의 비용을 받고 운영하면서 인력 혹은 재원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사립박물관과의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을 느낀다. 우리 관 같은 경우에도 관광단지에 개관하면서 경제적 기능을 우선적으로 두었으며 상업적 기능에만 치우쳐지지 않게 교육, 전시 소장품 수집 등 다양한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박물관의 건물과 교육, 전시 내용을 보고 공립 혹은 시립으로 생각하여 박물관의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받고 싶어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우에 줄만한 여유 인력이 늘 부족한 현실이다. 국·공·시립의 박물관의 입장료를 다시 받지 않는다면(않겠지만), 사립관의 우수 인증관은 비슷한 수준의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주 작은 예로 박물관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자 시간을 인정해 준다던지 오픈 화장실의 혜택 등도 하나의 작은 예라 할 수 있겠다. 그만큼 사립박물관도 우수관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기준을 만들고 이에 따라야 하는 것은 필수라고 본다.”

## (2) 사립박물관·미술관 및 그 종사자의 정책적 위상 강화

### ○ 사립박물관·미술관 종사자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수립

“현장에서의 잦은 미팅과 목소리 경청이 필요하다.”  
 “박물관의 기능을 이해하고 관심을 가져주면 자연스럽게 정책이 수립되는데, 관심조차 주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정책연구 시 실무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함”

### ○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교육 기능에 대한 정책적 중요성 제고

“국가 및 지자체가 박물관을 교육의 동반자로 바라보고 학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는 소중한 교육들이 펼쳐질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 ○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및 공립관 건립 일변도의 정책 경향 개선: 사립관의 공공성과 전문성 존중·지원 및 지자체 내 정책자원과 사립관의 연계 활성화

“박물관의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지키기 위해 공공성과 더불어 사회성이나 상대성이 이해될 수 있는 박물관 정책이어야 한다. (예: 지자체의 준비되지 않은 박물관 설립과 운영은 실리를 따지지 않아도 공공성이 인정되지만, 사립박물관은 개인이 운영한다는 이유로 공공성을 넘어 입장료나 사회적 영향력을 정당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좀 더 관심 있게 살핀다면 사립관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공립이나 지자체의 자원과 연계될 수 있는 방법으로 더불어 발전해 갈 수 있어야 한다.”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어려움은 크게 전시공간의 문제, 소장품관리, 전문인력부재, 재원의 문제가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와의 협조 부재에 있으며 전시 교육의 문제는 선결과제의 해결 후에 가능함”

“각 기관의 특성과 사업방향에 대한 전문성을 담을 수 있도록(본 미술관은 동시대 예술가와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협회나 정부 지자체는 전통적인 미술관의 개념에서 머물러있는 데에서 오는 견해차이 등) 교육활동을 독자적으로 운영하려 할 때 학교와 지방문화재단의 행정적 간섭이 교육운영을 모호하게 만드는 역할을 함”

“지역민이 원할 때. 제공 가능한 콘텐츠로 가까운 곳에서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어졌으면 합니다.”

### ○ 지자체의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 조례 제정 확대

“각 시군의 사립박물관 미술관 지원 조례안 정도는 통과되어야 한다.”

“우수 박물관·미술관은 광역단체 및 기초단체장 조례 제정으로 등록 미술관, 박물관을 지원”

## (3) 인력지원사업의 개선을 통한 고용 안정성 도모 및 학예사의 사회적 지위 강화

### ○ 우수 인력 채용을 위한 교육 및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무엇보다도 각 기관에는 우수 인력 채용이 중요할 것이다. 우수 인력 채용을 위한 합당한 대우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국·공립관은 주로 국가 예산으로 운영되기에, 종사자들이 더 큰 자부심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것이다. 사립관들도 더 수준 높은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 진행과 더불어 능력에 합당한 처우 개선 대책이 마련된다면 더욱 좋은 인력이 길러질 수 있을 것이다.”

### ○ 전문인력지원사업의 규모 확대 및 지원기간의 확장으로 고용안정성 보장

“인력 지원금에 대한 비중이 확대되어야 한다.”

“박물관 미술관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인력지원을 늘리고, 지원사업을 통해 채용된 인력들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평가하는 절차”

“가장 먼저 되어야 할 사항이 인력부족이라고 생각함. 인력을 충원하여 연구 및 전시의 운영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함”

“전문인력(학예사)의 최소한 2년간 지속지원 필요”, “현실적인 국고지원사업 연속 지원”

“이미 사립박물관에 인력을 지원해 줌으로 인해 박물관에 많은 도움이 되나, 단기적인 지원이 아닌 장기적으로 박물관과 학예사 선생님들 모두 다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노력해봐야 할 것 같다.”

“현재의 지원사업 중 박물관 운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전문인력 지원사업인데, 현재의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3~12월까지만 지원되며, 1, 2월은 자부담으로 진행하거나 잠시 해당 직원이 퇴직했다 재입사하는 상황이 생김. 또 2년을 지원받으면 전국의 어느 박물관에서도 해당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신분이 되어버려 지원사업에 의지하는 박물관은 어느 곳에도 채용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므로 젊은 박물관 인력이 2년 근무한 뒤 진로를 다른 영역으로 바꾸는 상황이 꾸준히 발생함. 일자리 지원사업에서는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제한사항에 예외를 둔다고 되어 있으나 박물관은 해당 부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함

“제도개선을 통하여 참여 인력의 지속적인 근무를 가능하게 해 주고(현행 한국박물관협회 인력지원은 10~11개월씩 3년 이내 근무 지속 2년 초과 불가)”

“국가와 지자체의 사업은 크게 본다면 인력지원사업과 전시, 교육 사업으로 진행됩니다. 이 중 가장 크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 인력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 인력의 반복참여가 제한되기 때문에 관에서 좋은 인력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금년 인력지원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서울과 경기도는 미달인 곳이 많습니다.) 단기 일자리 사업이 전문인력이라는 명칭으로 불리거나 혹은 관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려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을 움직이고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사립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단기간 일자리 정책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각 박물관 특성을 이해하고, 함께 발전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인건비 정책의 설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위치한 기관들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추가적이고 지속적인 인력지원사업 정책 필요”

#### ○ 학예사의 사회적 지위 강화

“우수학예사 육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고급 인력으로서의 지위 부여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 (4) 소장품 연구 및 수장고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 소장품 연구를 비롯한 학예사 연구활동 지원

“사립박물관 학예사의 연구 분야의 지원 필요(현재의 비전문적인 비정규직 신분의 저급한 급여 체계와 비전의 부재 하에서는 유능한 인력이 유입되기 어렵고, 개별 박물관뿐 아니라 건강한 박물관 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게 될 것임)”

“소장품 연구지원: 전시 및 교육에 필요한 소장품 연구지원(예: 타 기관들과의 협업 등을 통한 소장 유물의 과학적 연구 등)”

“결과물이 아닌 연구 과정에 대한 투자”

#### ○ 소장품의 해석 및 소통을 위한 전시·교육 관련 연구활동 및 네트워킹 지원

“박물관 교육 프로그램 및 전시에 대한 국내·외적 동향에 대한 세미나(교육)와 재정적 지원”

“사립박물관들이 전시나 교육에서 질적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박물관협력망과 같은 지역별 연구모임이나 주제별 네트워킹의 기회 마련”

○ 공공수장고 설립 및 수장고 개보수 지원

“소장품관리를 위해 ‘공공수장고’를 마련하고, 공공의 영역에서 이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사립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은 정책적 육성으로 시작된 것이 아닌 누군가의 한 개인의 열정과 헌신으로 시작되고 운영이 됩니다. 그것을 공공에게 개방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 자체를 기쁘게 생각하기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각 박물관들이 전문박물관으로서 더 좋은 전시와 교육 등의 콘텐츠를 위해서는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물관의 이상향이 있고 이상적인 박물관, 우수한 박물관으로 평가받기 위한 요건과 기준이 필요하고 각 박물관들은 그것을 맞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박물관들에 비해 시설 면에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유물보존처리, 수장고 등 국립기관의 시설을 사립박물관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있다면 도움이 되고 사립박물관들의 열악한 환경개선, 그리고 우리나라 유물 보존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장고 신축을 위한 국가적 지원”

(5) ‘우수 박물관·미술관’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 등록제도의 강화: 허가제로의 전환

“등록제를 허가제로 개선하여 박물관을 신규 신청하는 인력을 점검하고, 소장 유물이 과연 박물관, 미술관을 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지 판단한 후에 민관합동 판정단을 구성하여 탈락 유무를 결정하고 허가해야 한다.”

○ 우수 박물관·미술관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사업의 확대 및 개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우수한 기관으로 육성하도록 돕는다.”  
“많은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  
“전시지원금 제도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노후 시설 및 재정 지원”  
“지속적 투자, 학예·교육인력지원, 기본 운영비(전기, 통신, 방역 등), 야외 환경조성 인력, 관광지와 연계”  
“문화교육사업 지원 확대, 기획전시 공모(개최비 지원), 국·공립박물관과 교류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술관의 학예인력 지원뿐만 아니라 시스템적(인터넷 시스템, 관객 DB 구축 시스템 등) 지원이 필요합니다.”

○ 우수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차등지원 방안 마련: 합리적 평가제도와 연계

“우수 박물관에 대한 차등 지원책 마련 등 제도 개선”  
“사립박물관은 개인이 운영한다는 이유 이외는 국·공립박물관이나 다름없이 공공적인 목적을 갖고 운영되고 있다. 사립박물관이 운영을 위한 개인적인 어려움은 우선 극복해가지만 특별한 대책이 없다는

현실에서 사립박물관의 미래가 예측되기 어렵다. 우수기관을 선별할 수 있는 공정한 제도가 마련되어 지원의 타당성을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

“합리적 평가제도 수립하여 그 결과에 따라 사립박물관에 전폭적 예산지원”

“박물관을 공정하게 평가 할 수 있는 합리적인 평가제도 마련하여 박물관을 평가한 후 우수 박물관을 차등 지원하는 제도 시행”

“현행 재정적, 비재정적 지원제도의 대부분은 우수 박물관·미술관 또는 우수 전시 및 프로그램을 선별하여 지원하기보다는 일정 수준만 충족하면 지원을 분배하는 시스템이다. 이런 정책하에서는 박물관·미술관의 평준화에는 기여할지언정, 우수관의 육성에는 한계가 있다. 한정된 정책자원을 효율적으로 투입하려면 선택·집중, 또는 최소한 현행 시스템과의 Two-Track 정책이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우수관에 대해서는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실질적이고 확고한 정책 의지가 필요하다.”

## □ 현장사례연구 연구자 의견

### (1)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사회적 위상 강화 및 인식 개선

#### ○ ‘박물관·미술관’ 명칭의 제한 및 ‘사립’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박물관 관계자와 면담을 진행하는 동안 줄곧 들었던 이야기가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아무나 쓰게 해서는 안 된다. 등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증 제도를 반드시 정착시켜서 경쟁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 “일반적으로 ‘사립’이라는 용어가 갖는 거부감이 있다. 개인소유물이라는 인식이 있어서 우리 같은 박물관들은 피해를 입는다.”며 사립박물관도 신뢰 있는 인증제도가 반드시 필요함을 피력했다.”

#### ○ 정책이나 제도 관련 관장 및 종사자, 담당 공무원 등의 교육/보수교육 의무화

“사립 미술관의 경우, 비영리기관의 수익사업이 영리활동과 합법적으로 구분됨을 보다 구체적으로 관장 및 종사자 대상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일부에서는 미술관의 비영리성이 수익사업이 불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임. 동시에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박물관 및 미술관으로서의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서이기도 함”

“관장이 학예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더라도 박물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이나 제도를 제대로 숙지하고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과 지속적인 보수교육, 관련된 제도적 강제가 필요함”

#### ○ 개인 설립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정책연구 실시

“관장이 수집가인 경우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개인적 취향을 어떻게 공공기관인 ‘박물관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박물관’ 과 ‘박물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연구가 필요함. 특히, 수집가로부터 출발한 박물관의 경우 상당수가 ‘개인 컬렉션의 진열’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박물관 운영에 대한 전문성이

다소 부족하여 ‘공공재’로서의 인정을 받기 어려운 형편인 경우도 있음”

## ○ 사립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평가제도 도입 및 그에 따른 육성 대상 선정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의 경우 공공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인 제도로써 후원과 여러 세제적인 특혜를 받은 부분이 있으므로 전시, 교육, 연구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소장품의 등록 작품의 수준에 대한 전문가의 평가 등이 따라야 한다. 이러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전문가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육성 대상을 선정해야 하며, 지속적인 평가를 통하여 경우에 따라 탈락도 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재정적 지원에 합당한 결과물을 도출한 박물관 평가”

## ○ 각종 행·재정적 지원에 합당한 공적 책임 강화 및 운영방식 정비,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

“운영이 어려운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경우 최소한의 등록 요건만 유지하며 가능한 방식으로 개관하거나, 국·공립과의 연계 및 공공재단으로의 전환 등을 상담해주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등록 이후 지원에 의지하여 한계에 도달한 대부분의 사립박물관·미술관이 일방적이고 전폭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적 자금의 집행과 인력 파견에서 이것은 가능하지 않은 방식이다.”

“무조건적인 지원과 투자가 아니라, 박물관·미술관으로서 합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지, 국고보조금 사업을 통해서 다양한 인력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인력들이 ‘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부합할만한 여건을 갖추고 있는 유의미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엄중하게 확인하고 관리해야 할 것임. 무엇보다도 다양한 고학력의 전문인력들이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발휘함으로써, 문화유산을 적절하고 유의미하게 보존, 관리,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서 국민 일반이 양질의 박물관·미술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제도 운영과 개선, 지원사업의 실효적인 설계와 엄격한 운영이 시급한 상황임. 현재와 같은 양적 확충과 기계적인 지역 균형, 단기적인 일자리 사업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애초에 박물관법이나 박미법의 법적 효력을 무화시키고, 박물관 및 미술관의 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운영을 방조하는 지원사업의 고착화가 확장되면서 법과 현실의 괴리를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현실을 인지하고 대응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사립박물관·미술관이 사회에 헌신을 하는 것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수립함과 동시에 국가·지자체는 이에 상응하는 협력 및 지원 정책을 치밀하게 수립함으로써 그 혜택이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운영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수혜자가 되는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 ○ 사립관의 법인화 추진

“박물관 운영주체의 법인화를 통한 박물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내지 건전화 노력은 제도 도입의 현실적 어려움을 인식하는 것과는 별개로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로 판단됨.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의 대부분은 각 사립관들 간의 이해충돌에서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설립자의 운영 참여방식에 대한 제도적 규정 마련을 통한 운영 전문성 강화

“사립박물관 설립자가 박물관 운영에 참여하는 것은 환영하나, 확실한 역할을 부여하고 전문적인 박물관 운영을 위한 제도와 장치 역시 제시되어야 함”

○ 사립관의 지역사회 공공자산화 방안 검토

“설립자들의 고령화로 인해 박물관 미술관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울 경우 사회의 문화적 자산으로 가치가 충분한 박물관이 지역사회의 공공자산화 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해야할 것임”

(2) 사립관의 운영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여건 마련이 시급

○ 사립박물관·미술관이 장기적인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조건 마련이 핵심 쟁점

“현재 미술관 운영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어려운 체질이 되었음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 인력지원사업 없이는 인력충원이 불가능한 상황,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매년 단기적인 지원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점, 시설의 대부분은 대국민 서비스용으로 활용되고 있어, 직접적인 서비스 공간이 아닌 수장, 연구, 행정 등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 등은 미술관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하게 하는 지점임. 대산미술관은 ‘팀웍에 의한 업무 분장 및 관리, 공통 노력, 회합 단결, 자체진단 평가, 세미나, 해외연수’를 준비와 노력으로 꼽았다. 이것 역시 중요한 요소라 하겠으나, 정책적 차원에서는 이러한 요소가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쟁점이라 하겠음”

○ 사립관의 장기적·안정적 자원 확보 계획 수립 필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박물관측 자원 확보 계획이 필요함”

○ 사립관의 장기적 운영계획 수립을 위한 인력의 고용 안정성 보장 및 인력지원사업의 종합적·근본적 개혁 필요

“○○뮤지엄은 우수박물관미술관 진흥에 장기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는데, ‘장기적인 기준’ 마련을 언급한 이유는 박물관에서 일하는 인력들이 전임자가 한 일들을 무엇을 얼마나 했는지 알기가 어렵고,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 컴퓨터에 저장된 내용들을 일일이 확인하는 수밖에 없는데, 어느 폴더에 무엇이 저장되어 있는지 찾는 것도 쉽지 않음. 그러다 보니 업무 연속성 없이 전임자가 한 일을 또 반복하는 경우도 발생함. 단기적으로 지원사업을 통해 인력이 채용되다 보니,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임. 관장은 아예 인력을 안정적으로 채용하려는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고, 학예사가 이런 고민을 하더라도 관장과 상의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기대하지도 못함. 관장이 지원사업 이후에도 계속 일하라는 언급을 간간히 하기는 하나, 구체적으로 직접 채용하겠다는 실질적인 액션은 없음. 인력지원사업이 보충적인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가 되다 보니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음. 박물관에 애정을 갖고 일하다가 학예사들이 소모품 취급을 받는다는 느낌을 받음. 그로 인해 업무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고 말함. 인력의

안정적인 채용이 보장되지 않으면서 박물관 운영의 질적 향상이나 공공 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음”

“경력인정대상기관이 되지 못한 박물관의 경우에는 인력 수급이 더 곤란해짐. 그나마 인력들이 경력인정도 받지 못하는 곳이라면 기피하는 경향을 보임. 이는 근본적으로 인력을 채용할 만한, 인력이 장기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는 취업 자리라는 인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요구되는 경력인정 기간을 채우기 위해 참고 견디는 상황들을 반복적으로 연출하게 됨. 현재와 같은 단기적인 채용 구조를 만연하게 하는 데에 지원사업이 기여한 바가 크다는 점, 그로 인해 박물관의 정규직 학예사 채용이 거의 사라진 점 등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이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하며, 인력지원사업이 단순히 박물관의 운영 지원 차원이 아니라, 학예 인력의 건전한 육성, 경력 개발 등을 위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선될 필요가 큼. 또한 현행 지원사업에서의 ‘우수관’ 인정, 경력인정대상기관 심의, 근본적으로는 등록제도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음. 기본적으로 법정 제도들이나 조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원사업이 관행적으로 돌아가다 보니 그 안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다수의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형태로 작동하고 있음을 인식해야만 함”

### ○ 전문적 역량을 갖춘 학예사 육성을 중시한 사립관 평가 실시

“전문학예사를 성장시켜야 한다.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에서 성장한 인력이 공공성을 지닌 인력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근로조건 등도 확인되어야 한다. 연수단원, 보조금을 통한 인력으로 단기적인 고용을 이용하여 전문적인 학예사가 없는 기관도 허다하다. 이에 따라 처음 등록 당시 상황 그대로 서류로 인정하는 데서 나아가 실지로 근무하는 학예사의 상황, 조건, 업적 등을 평가하여 학예업무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지원에 따른 확인과 평가가 있어야 한다.”

### ○ 지원사업의 혁신 및 다변화: 전문가 컨설팅, 대형의 장기사업 추진

현재의 1년 단위 소규모 채용 지급의 방식을 탈피하여 외부의 전문가 컨설팅을 제공하며, 근본적인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대형, 장기 사업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할 필요가 있음”

“2007년부터 유지돼온 현재와 같은 단기 인력지원사업, 단순 고용창출 차원의 인력지원에 대다수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고유 학예기능 수행과 학예인력 고용을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게 된 상황은 박물관미술관의 지속가능성과 질적 성장에 오히려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크며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으로 인식됨. 또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분배식 지원으로 사립기관들의 자생성과 선의의 경쟁, 발전의 동기를 약화하고 있는 역효과도 있음”

“상당수의 박물관 및 미술관이 중앙정부에 의한 다양한 국고지원사업에 의존해 운영되고 있음. 한편으로는 이 지원사업들이 단기적, 단편적인 관계로 지원사업들의 퍼즐을 통해 운영하는 것의 불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어떻게 안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재설계가 필요함”

## (3) ‘우수 박물관·미술관’의 기준 정립 및 실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재정비

### ○ 우수성에 관한 기준이나 논의 없는 일회적 지원정책 경계

“최근 코로나 사태 이후 중앙박물관에서부터 모든 박물관·미술관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진정한 내용이 담보되지 않은 일회적, 소모적인 디지털 콘텐츠를 박물관·미술관이 소비하도록 지원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박물관·미술관의 ‘우수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없는 성급한 정책의 사례라 할 것이다. 이러한 추이의 혜택을 받지 못한 소규모 사립박물관·미술관은 더욱 더 ‘우수성’에서 소외되는 현상을 낳게 될 것이다.”

○ 「박미법」, 등록제도, 경력인정대상기관 지정제도, 지원사업 등의 근본적 재검토

“근본적으로 박물관·미술관 등록제도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제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봄.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계획승인 과정, 등록 기준 및 심사 등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등록 과정에서부터 소장품의 질적 가치, 시설 기준, 박물관 사업/경영 계획 등 전반에 대해 전문적으로 판단하고 선별, 유도하는 기능이 매우 취약함.

이와 더불어 등록 기관과 경력인정대상 기관에 대한 관리 소홀의 문제는 현 등록제도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제도에 대한 제도적 신뢰성을 더욱 약화하고 있음.

박미법 상에서 사립박물관·미술관의 범위를 영리법인, 개인사업자 등 영리적·사적인 운영형태를 포괄하면서 박물관·미술관의 비영리성/공공성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나 기준이 없음.

이러한 상황에서 평가인증은 우수 박물관·미술관의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운영의 질적 성장을 유도/지원하며, 공적자원이 투입되는 근거로 작용해야 함.

사립박물관·미술관들이 자생성과 책무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의 재설계가 필요함.(예: 컨설팅 지원, 표준 DB 시스템 지원, 교육훈련 지원, 운영계획 및 사업제안 심사에 따른 지원, 지원에 따르는 성과 환류 강화 등)”

“현행법상의 기본적인 법적 요건들이 등록제도를 중심으로 해서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접근, 이를 위한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정기적인 중장기정책 수립, 법 개정을 통한 「박미법」 정비, 진흥원 신설

<박물관 정책 수립 및 진흥원 신설>

- 정책 수립 및 법령 정비
  - 중장기 박물관 정책 수립
  - 「박미법」 개정 및 정비: 사립박물관 관련 내용 정비, 필요시 평가인증제 항목 포함
  - 공공성을 비롯한 강령 제정, 매뉴얼 정비
- 박물관 주체 역할 정립
  - 국가(문화체육관광부)와 지자체, 국·공·사립박물관·미술관, 협회, 학회 역할 정립
  - 각종 논의, 심포지엄, 행사를 통해 인식 개선과 역할 정립 필요
- 진흥원 신설 및 박물관 정책 집행
  - 등록, 평가인증, 국·공립박물관 설립 사전평가
  -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 공공성 인식 교육
  - 각종 지원 정책 집행: 공동수장고 건립, 유물 자문(진위 및 명칭, 내용), 보존 처리 지원

<지속 가능한 박물관 조성>

- 전문인력 양성

- 기존 정책 점검(경력인정기관 재정비)
- 양성 방안 마련
- 사립박물관의 2세대 안착 방안 마련
-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마련: 박물관 주체 및 진흥원

○ 총괄적인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 수립 필요: 다양한 기관에 의한 지원사업의 파편화로 인한 정책 방향 실종 및 사립관 종사자의 정책적 위상 약화

“국가 및 지자체의 정책적 방향과 비전은 찾아 보기 어려우며, 박물관 미술관의 지원 요청을 단순한 민원의 대상으로 파악하거나, 민원 해결 방식으로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은 문제적인 상황으로 파악됨. 프로그램 지원의 경우, 문화재단 및 위원회의 개별 사업 지원사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러한 개별 지원 사업은 박물관 미술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개별 사업단위의 지원이기 때문에, 지역 미술관의 경우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총체적인 정부의 사립박물관 미술관 지원 정책의 수립이 요청됨”

(4) 소장품 정리 및 연구를 위한 지원 강화

○ 소장품 정리와 연구를 연계한 지원사업 실시: DB 구축 사업의 내실화 및 활용도 제고

“○○박물관은 소장품에 대한 정리와 해석이 시급하다. 하지만 이는 가장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기도 하다. 현재 ○○박물관의 여건상 전체 유물의 목록화 작업과 해석 연구는 요원한 일여서 이를 차근차근 시행해 나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예산 및 인력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많은 박물관들이 처해 있는 공통된 문제는 바로 소장품에 대한 정리와 해석이 시급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는 사실 가장 어렵고 오래 걸리는 일이다.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그러나 유물에 대한 메타데이터는 해당 박물관만이 알 수 있는 고유한 연구영역이기에 전문 학예사 채용을 통해 이를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박물관이 이를 잘 시행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의 예산 및 인력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eMuseum에 제공되는 DB의 경우 이 사업을 통해 DB를 구축한 사립박물관들 자체는 이 DB를 공개하거나 관람객을 위해 서비스하지 않는 모순에 처해 있음. 소장품 DB 자체도 사진 위주로 소장품을 소개하는데 그쳐 있어 실제로 디지털 정보로서 연구나 확산에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전시 및 교육에 필요한 소장품 연구 지원 및 소장품의 적절한 활용을 위한 시설 및 제도 지원 필요”

○ 학예사 연구실적 및 전시평가제 도입으로 학예사 연구지원 실시

“인력 지원이나 지원사업 등도 일률적인 지원정책을 탈피하고 학예사의 역량 및 연구 실적(논문, 전시 등), 전시평가제 등을 도입하여 공적 재원을 사립 조직에 지원하는 사안에 대해 객관적인 타당성을 부여해야 할 것임”

## (5) 협회의 책임 및 역할 실질화

### ○ 사립박물관·미술관 대상 설립·운영 컨설팅 사업 실시

“소규모 인력으로 전문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많은 대중을 상대로 사업을 운영하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관련 협회는 회계, 재정, 기부금 모집, 시설관리, 인력운영, 교육 및 대민사업 운영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립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노력과 지향점이 있을 때 그 근거를 확보한다고 본다.”

“박물관 설립 사전/준비 단계의 개별적 컨설팅 제공”

### ○ 박물관·미술관의 정책 이해 및 합법적 운영을 위한 관장, 직원, 공무원 등 대상 교육 활성화

“학예사 이전에 관장들, 박물관·미술관 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정책적 이해와 법적 준수를 위한 다양한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관장을 포함한 박물관 전문 인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변화하는 환경과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꾸준한 지원체계를 마련”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주체들의 인식변화와 우수 박물관미술관의 기준, 뮤지엄 관련 법령 및 윤리를 공유하고 학습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함.”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관장 및 운영자, 종사자들에게 ICOM 윤리강령을 비롯한 박물관·미술관의 기본 요건과 종사자들의 직업 윤리에 대해 의무교육을 시행하고 정기적으로 재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성평등 교육이나 장애인 차별에 대한 교육과 비슷한 방식의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등록과 인증, 인력 파견, 지원금 교부 시에 반드시 의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 코로나19 이후 더 취약해진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운영 방향에 관한 공론장 마련 및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사회적 가치와 역할 애드보커시(advocacy), 지원

“사립박물관은 코로나 시기 이후 매우 불안정하고 취약한 상황임. 일반 관람객이 많지 않아 대부분 체험 활동을 수익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고 있음. 이러한 체험은 곧 국·공립박물관에서 대규모로 실시될 예정이기 때문에 사립박물관 활동의 향후 방향성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필요.”

“개별적으로 사립박물관에서의 소장품 기반 새로운 가치와 활동 창조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한국박물관협회 등을 기반으로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가치를 국가적으로 홍보하고 개별 박물관의 구체적 프로그램 지원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 개별 사립관이 할 수 없는 ‘우수 박물관·미술관’을 만들어가는 활동 지원

“개별 사립박물관, 미술관에서는 할 수 없는 홍보, 전문역량 강화 등을 위해 한국박물관협회 등 박물관 유관 단체의 적극적 활동이 요구됨, 특히 지난 2년여간 코로나 시국에 중단된 교육, 학술대회 등 자연스러운 역량 강화 기회 마련 필요”

“현 단계에서 사립박물관 자체적 자생적 노력으로 우수 박물관 미술관을 만들어 가는 준비와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세밀하고 정교한 지원프로그램을 충분한 의사소통을 통해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임”

## (6) 지자체의 사립관 운영 지원에 대한 책임성 강화

-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 시, 설립·운영주체-지자체-국가 간 안정적인 재정·인력 확보 방안에 관한 협의 제도화

“사립박물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지자체와 국가가 함께 장기적인 재정 및 인력 지원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는 방식이 필요함. ‘간섭’이 아닌 ‘협력’을 위한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협의를 통해 박물관이 그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지자체의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에 대한 이해 및 책임성 강화

“지자체의 미술관 설립 및 운영에 대한 이해와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 현재 ○○군립미술관 건립계획이 있으나 군에서는 단순 사무소 형식으로 관리하는 수준으로만 인식. 사립인 ○○미술관 측은 미술관의 소장품이나 인프라, 노하우 등과 연계해 군립미술관 건립을 추진하길 희망함.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이러한 관장의 희망 이면에서는 관장 본인과 이사장이 고령화되고 있음에 대한 불안이 있음. 따라서 관장과 이사장이 물러난 이후에 ○○미술관이 지속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있음. 따라서 군립미술관이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하는 방식의 건립이 아니라 ○○미술관과의 연계를 통해서 설립이 이루어지기를 희망함. 또한 지자체에서 지역 작가 기반의 미술관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어긋나고 다룰 수 있는 예술가의 풀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점 또한 고려해, ○○미술관을 군립미술관에 통합해 건립하는 방식을 제안했으나 지자체는 소극적임”

“건전한 욕성에 앞서 지자체 담당자가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함.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한 정확한 욕성 정책과 방향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임. 또한, 지금의 지원책은 국고지원에 머물고 있으며 이 역시 박물관이라고 하는 문화 인프라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정부의 공약을 준수하는데 박물관을 유통의 도구로 여겨 박물관과 개별 박물관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지원은 장기적으로는 박물관 발전에 항구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없음. 따라서, 수장고와 전시환경, 도난/화재방지 등의 안전망 구축, 승강기 설치 등을 통한 장애인 접근성 제고 등 그것이 비록 사유 재산성 지원이라고 하더라도 이 분야에도 지원을 하여 공공의 자산인 소장품과 박물관을 이용하는 소외계층 등에게 기본적인 향유의 질 재고에 나서야 한다.”

“등록제도의 관리 및 운영이 지자체로 이관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서 이에 대한 행정적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지역 내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지자체 또는 지역문화재단, 공립 박물관·미술관 등 유관 기관 등에 의한 행재정적 지원이나 협력이 매우 취약하다는 점이 두드러짐. 최근 지역문화재단의 전국화, 문화도시 사업의 과열화 등을 고려하더라도, 지자체가 핵심적인 문화기반시설에 대한 정책과 제도를 충실하게 운영하고, 이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함에도 이에 소홀한 점은 문제적이라 하겠음. 정책적으로 지자체의 책무성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의 정립 시급”

○ 박물관·미술관협력망의 체계화 및 실질화: 공-사립 연계·협력을 통한 건전한 사립관 육성

“공립 미술관이나 지역문화재단 등에 지역 우수 사립미술관의 교류와 공동연구/공동 프로젝트 등을 위한 예산 책정과 의무를 부여하여 공-사립 협력을 통한 건전한 사립미술관 육성에 기여하게 함”

“○○미술관 관장 인터뷰에 따르면, 정부가 사립박물관·미술관을 어떻게 운영해 갈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 이대로 가면 모두 고사할 것. 전남만 해도 도립미술관이 설립되었는데, 협력망 사업을 적극 벌여서 지역 내 큰 언니 역할을 해주어야 하나 도립도 여건이 좋지 않음. 관장 임기도 제한되어 있고 학예사들은 일을 만들어 하고 싶어하지 않음. 국-공립에서 협력망 사업 담당자의 경우, 공무원이거나 계약직이 대부분이라, 미술관 업무에 대해 애정이나 권한을 가진 사람이라 보기 어려움. 그러다 보니 협력망 사업이 형식화되고 주변화되기 쉬움.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전남도립미술관이 협력망 사업을 할 경우, 이 사업이 지역 내 사립 관장들의 단순 민원창구가 되어버릴 가능성도 높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협력망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도 없음. 이러한 점을 고려해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이 협력망사업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 필요함”

“지자체 대표 공립미술관에 지역 우수사립미술관의 교류와 공동연구/공동 프로젝트 등을 위한 예산책정과 의무를 부여하여 공-사립 협력을 통한 건전한 사립미술관 육성에 기여하게 함”

“우수 박물관·미술관 인증과 지원을 결합시켜 박물관 자체노력과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이 잘 결합되도록 해야함. 이 결합을 위해서는 기존의 심사위원회 형식의 제도로는 건전한 육성에 한계가 있음 코로나 시기 이전부터 이미 위기에 봉착한 사립박물관·미술관의 활동을 소장품과 활동경험이 부족한 공립시설(이미 박물관·미술관으로 조성된 시설이든 아니면 향후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 할 계획이 있는 시설이든)과 연계하여 자연스럽게 한계에 봉착한 사립미술관과 박물관을 지역 커뮤니티에 새롭게 소속시킬 방안 필요”

○ 지자체 조례 제정

“지자체 조례 제정 등을 통한 경상비 지원과 같은 실질적인 지원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의 대규모 도시계획이나 정책사업 실시 시,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의견수렴 및 정책참여 보장으로 지자체에 의한 지속적인 지원 기반 마련

“안동 지역의 경우 세계문화유산, 유교를 기반으로 하는 관광도시로 육성하는 다양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에 지역기반 박물관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음. 향후 지방에 위치한 사립박물관의 유지,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결정적임. 따라서 지자체가 관할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장치 개발 필요”

○ 비수도권 또는 지방에서의 학예사 등 직원 채용 어려움 해소 방안 마련

“○○박물관의 애로사항 중 하나가 바로 직원 채용이다. 학예사 및 직원 채용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골에 위치해 있어서’ 지원자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녀들이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별도의 자격증을 취득하여 함께 꾸려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박물관 관계자들은 ‘가족이 박물관 운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외부 시선이 곱지 않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자녀들이라도 돕지 않으면 운영이 힘든 상황임’을 강조해 말했다. 현장 실사 확인 절차를 통해 이러한 특수상황을

선별하는 일이 필요해 보인다. 사립박물관들은 인력난에 시달려서 가족이 운영을 돕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아니면 인력지원을 현재보다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지방 소재 사립박물관, 미술관의 경우는 전문적인 인력 수급이 절실한 문제이다. 이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자체에서 인력의 고용을 위한 재정이 빈약하기도 하기 근무할 전문인력이 없는 경우 등이 흔해한다. 또한 인력을 고용하였더라도 전문성이 부족하여 업무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이에 학예인력을 1년 단위로 보조해주는 사업인 예비학예인력 사업을 전문 학예사 고용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 물론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험을 축적하는 사업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현장에서는 미숙련된 이들의 참여가 어려운 일들이 많고 그런 이유로 이들이 전문적인 정당한 노동의 위치에 처하게 되지 못하게 되기도 한다. 따라서 협회 혹은 문체부 차원에서 학예사를 일정 기간 동안 고용하여 이들을 파견하여 근무하는 즉 순환직으로서의 학예사를 일부 고용하여, 요청이 있고 박물관 미술관의 성장이 가능해보이는 곳에 인력을 배치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 라. 평가인증제도 도입에 관한 의견

### □ 사립관 종사자의 의견

#### ○ 「박미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협력망 제도를 통한 질적 수준 향상 도모

“평가인증제도가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박물관, 미술관협력망과 관련된 조항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이 서로 연계 및 협력하여 다양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면 질적으로 수준이 향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 다층적이고 객관적인 평가제도 마련 및 평가 소요비용 지원

“사립박물관 운영 주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다층적이고 객관적 평가 제도 마련. 이와 동시에 ‘박물관 평가’ 자체만을 위해 사립기관이 감당해야 하는 비용에 대한 보존. 이는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상쇄할 수 있으리라 생각”

#### ○ 인력의 고용불안정으로 인해 일률적·정량적 평가 불가능

“평가인증제도에 대하여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경우 일률적이고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현재 사립박물관미술관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지속적인 고용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집과 채용도 어렵고, 채용된 인력이라도 지속적으로 근무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장품 관리부터 학술연구, 자체 규정의 마련 등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 평가 대상의 자격요건: 인력 및 사업의 지속성에 중점을 두고 대상 제한

“만약 평가인증제도 및 신설 제도에서 평가 대상은 지속적인 종사 인력의 모집과 운영이 가능하고 전시, 교육사업 등의 박물관 사업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사립박물관·미술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종 규정이나 운영위원회의 경우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관장(대표자)이 결정 주체이기 때문에 필요하긴 하지만, 아주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 ‘우수 박물관·미술관 인증’은 ‘(우수) 학예사 인증’과 함께 시행되어야 함

“우리나라에도 사립박물관이 늘고 있으며 사립박물관이 다루고 있는 소장품의 성격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학위의 전문성이 고대박물관의 특성을 중요시하는 고고학, 선사학, 미술사 등으로만 좁혀 있던 종류들이 이런 전공에 상관없이 급수에 맞는 학위와 인증기관에서의 경력만 있다면 경력을 인정하게 된 것은 사립박물관의 발전을 저해했던 요인으로 이런 변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너무 오래된 박물관의 관습으로 인해 혹은 이런 변화가 얼마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박물관의 전문요소를 학위로 가진 학예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으며 몇 분의 선생님들은 경력인증을 위해 지나가는 박물관으로 생각하고 업무에 임하는 경우들이 있어 박물관의 장기적 발전에 긍정적 효과에는 물음표를 갖게 된다. 박물관 커뮤니티에서 박물관답지 않은 박물관에 대해 치를 떠는 선생님들의 글을 아주 종종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또한 박물관의 우수인증제도와 함께 경력인증기준과 학예사 선생님들의 수준이 함께 정해지고 발전되어야 된다고 본다.”

○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준 마련 차원에서 접근 필요

“어떤 조직이나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립박물관의 경우 인력과 예산을 모두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설립자가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나라에서 왜 지원을 안해주나? 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간극이 생긴다고 봅니다. 또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2년간의 경력을 필수사항으로 놓다 보니 2년 동안 채용하고 또 다른 사람을 채용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학예업무의 장기계획이나 안정적인 고용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력과 예산의 안정은 우수 박물관·미술관의 필수요소인데 이것은 마치 퇴비우스의 띠처럼 무엇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로 귀결되어 매우 결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번 평가인증제도는 우수 박물관·미술관의 평가기준을 넘어서 사립박물관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에 대한 장기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 현장사례연구 연구자 의견

○ 평가인증제도 도입 이전에 기본적인 법적 요건 및 지원사업 대상으로서의 적격 요건에 대한 정부의 책임의식 및 관리감독 강화 필요

“평가인증제도 운영 이전에 미술관으로서의 기본적인 법적 요건이나 지원사업 대상으로서의 적격 요건에 대한 정부의 엄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거듭 피력되었음. 미술관 자격이 있는 곳을 엄선하여 그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기대하는 입장이라 할 수 있음. 다만 인력지원사업을 위한 경력인정대상 기관으로서의 요건 유지, 소장품의 관리 수준의 경우에는 ○○미술관도 문제적이라 할 것임. 소장품을 포함해 충실한 조사연구, 이에 기반한 해석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제 시작해야 하는 수준이라는 언급을 생각할 때 지난 20년간의 미술관 활동과 역사가 충실하게 이루어져 온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질문해 보지 않을 수 없음”

“○○미술관의 경우, 박미법에 따른 기본 요건에 부합하는 합법적 운영이 우선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문제의 경우에는 개별 박물관 및 미술관의 책임을 넘어서 현행 법적 제도들의 충실한 이행과 실태 파악, 관리감독의 책임이 국가나 지자체에 의해서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함께 점검되고 관련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현행 지원사업의 경우, 지원사업 운영 관리를 정부에서 하는 방식이 대부분 각종 서류를 통한 증빙을 요구하고 있음. 그로 인해 행정 업무가 증가하고 사업의 취지상 주객전도가 일어나고 있다는 인상을 토로함. 오히려 지원사업의 자격 요건을 엄격하게 제시하여 위험관리를 하고, 지원받은 곳의 경우에는 목적사업에 보다 충실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제시함. 반복해서 제시된 의견은 미술관의 등록요건을 비롯해 미술관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허가를 내주는 정책 실행의 필요성임. 이는 지원사업의 자격요건과 긴밀하게 연동하는 것이므로 더욱 고려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음. 미술관으로 보기 어려운 기관들이 다수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우려와 그로 인한 지원사업 운영의 한계를 크게 인식하고 있음”

○ 평가인증제 시행 이전에 박물관·미술관 기본 기능 수행 못하는 기관에 대해 ‘박물관·미술관’ 명칭 사용 금지: ‘박물관·미술관’ 개념의 제도적 정립이 우선 과제

“사립박물관·미술관 인증평가 이전 사전 심사를 통해 박물관의 주요 기능 전시, 교육, 유물 보존 등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박물관 이름을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현재 사립박물관 상당수는 박물관의 기능 중 상설전시와 적당한 교육만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 유물 항구적 보존 조치, 유물 연구 등 또 다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기관에 대한 우수 사립박물관·미술관 선정에 앞서 박물관이 아닌 전시관, 수장고 등으로 명칭을 변경시켜 박물관에 대한 개념 정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사립박물관의 1차 선별을 통한 우수한 박물관끼리 건전하게 경쟁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 ‘우수 박물관·미술관’의 기준(공공성 등의 개념 정의 포함) 및 평가인증제에 대한 공론화와 교육 과정을 통해 광범위한 공감대 형성 중요

“우수 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박물관 발전을 위한 각종 정책은 사립박물관의 자발적인 참여와 국민의 수준 높은 문화 향유를 위한 박물관 발전에 동의해야 추진이 가능하며 사업 실효성이 있음. 각종 정책을 강제화하면 사립박물관의 반발이 따를 것임. 따라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사립박물관 관장과 학예사 참여가 매우 중요함”

“공공적 자원의 범위와 내용, ‘비영리’와 ‘항구적인 기관’ 개념,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정의 및 개념,

분류 체계를 해외 사례를 토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음. 특히 영리행위에 대한 허용/불허용 기준이 필요함. 이를 위해 박물관 관련 학회와 협회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국·공·사립박물관 관장 및 학예사 등 박물관 종사자, 박물관 미술관 연구자 및 타 분야 연구자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우리 실정에 맞는 ‘공공성’/비영리 개념을 확립하여야 함. 학술용역 결과를 토대로 문화체육관광부, 학회, 협회의 지속적인 교육, 박물관 자체 점검과 운영, 점검 및 평가를 진행할 필요가 있음”

“이용자의 입장이 중요하지만, 운영자의 관점에서 평가인증제가 정착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박물관이 갖고 있는 고유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하며 평가 인증은 박물관 발전을 위한 것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되도록 사전 노력이 요구됨”

## ○ 평가인증제 도입보다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 정립 및 컨설팅 등을 통한 역량 강화·질적 향상이 먼저 필요

“현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6조’에는 사립기관 평가에 대한 내용이 없으므로 법률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고, 우수한 박물관 인증에 대한 미션이 불분명함. 소장품과 규모 면에서 너무나 다양한 박물관이 존재하기 때문에 보편적 기준을 만드는 일이 쉽지 않고, 자칫 평가에 불합리로 비취질 수 있음. (\*국·공립박물관은 사립에 비해 기본적으로 운영 재원과 정년 보장된 인력이 지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개념임.) 오랜 기간(5년~10년) 단계적 평가인증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분야별(경영/인력/전시/소장품 등) 컨설팅이 우선 필요해 보임. 분야별 컨설팅 유무 혹은 일정 수준에 이르면 인증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역량을 체크하고, 전시나 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해 현장에서 평가인증이 실효성 있는 인증제도라는 인식이 필요함.”

“우수 박물관을 인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함량 부족, 미달의 박물관을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견인하는 것에 미션을 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일정한 수준을 유지할 때, 우수한 박물관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사립박물관의 발전을 위해 평가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어떤 점을 지향하고 어떤 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임. 국·공립박물관의 평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을 피력함. 사립박물관·미술관 들은 박물관 등록을 하는 것으로 공공의 문화시설로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음. 그러나 실제로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우수 기관으로 평가,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사립박물관·미술관이 가져가야 할 기본적인 기준 및 내용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현재 상황에서 모든 사립박물관·미술관은 “개선에 필요한 것은 예산과 인력이다”라는 주장할 것이다. 예산과 인력만 있으면 ‘우수 박물관·미술관’이 되는 데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고, 시설을 개선하고, 인력을 보충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여건을 논외로 하고,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우수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박물관·미술관 전체가 공감하고 공유하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사립박물관·미술관에 기본적으로 제정해야 하는 규정이나 비전, 만들어야 하는 문건, 수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업무 등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할 것이다.”

“‘우수 박물관·미술관’이라는 것이 사립박물관 미술관에서 어떤 의미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려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됨. 박물관·미술관의 고유기능에 충실하려는 박물관·미술관과 생존을 위해서 쇼룸 중심의 상업시설로 변화되고 있는 박물관·미술관 사이에서 질적 평가 방식을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그리고 공동체에서 어떤 사립박물관·미술관을 우수한 박물관·미술관으로 현재 인식하고 있으며 그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 것인지도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등록한 박물관을 보다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 국가(담당부처)의 책무이지, 잘하는 기관을 우수 등급을 매기고 인센티브 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인지 의문을 품게 됩니다. 국가에 등록과 미등록한 박물관이 명확한 것처럼, 등록 박물관의 지원에는 법적 보호와 명분이 있습니다. 다만, 박물관 등록 전에 지자체에서 좀 더 세밀하게 준비시켜 신규 관은 최소한 인증 절차를 통해 운영되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수 박물관의 발굴도 의미 있지만, 이번 평가인증 제도의 미션은 우수관 선정보다는 등록 박물관미술관을 일정 수준의 기관으로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 평가인증을 통과하는 경우에만 사립박물관으로 인정하도록 제도 변경

“사립박물관·미술관에게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제반 규정(본 사례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들과 같은)을 문건화하도록 지침을 만들고 이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해서 합의를 만들어야 함. 이를 시행하고 평가에 통과하는 곳만 사립박물관으로 인정하는 제도 변경이 필요할 것임”

### ○ 평가인증제도 시행 시 충분한 유예기간 설정

“충분한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가령 앞으로 3년간의 특별전 및 상설전시 행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실적을 합산하여 우수기관을 선정한다면 이 기간 동안 사립박물관의 자발적인 각종 행사가 진행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평가 인증을 유예기간까지 다양한 박물관의 행사가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 ○ 객관적이고 꼼꼼한 세부 평가기준 마련

“객관적이고 꼼꼼한 세부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사립박물관은 국·공립박물관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편차가 심한 편이다. 박물관 운영자금을 연간 수백억원 쓰는 박물관이 있는가 하면 1년 전기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열악한 수준의 박물관까지 다양한 형태의 박물관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역, 규모, 박물관의 운영 목적 등에 맞는 세부적인 평가 기준 마련을 통해 공정한 정량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 ○ 평가인증제도 시행 시 확실한 인센티브 필요

“확실한 인센티브가 요구된다. 현재 사립박물관의 가장 큰 문제는 박물관 운영자금이 넉넉하지 않은 점이다. 이는 대부분 사립박물관에서 공감하는 사실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수 사립박물관·미술관이 인증되는 경우 박물관을 운영할 수 있는 자금 및 시설 관리 비용까지 지원하는 확실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 인증제도의 실질적인 어드밴티지에 대한 궁금증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것이 기관의 발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내보임”  
“우수 기관에 대한 확실한 인센티브가 필요함”



## 제8장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

1절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개요

2절 설문조사 결과

3절 소결



## 1절

#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개요

## 가. 조사 목적

### □ 조사 배경

- 현재 「박미법」에 따라 국립 및 공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이 제도는 ‘우수 박물관·미술관’을 인증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질적 향상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임
- 현재 사립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제도를 확대 적용하고자 검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2021년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 시범운영: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재정립과 평가인증제도 활용방안 연구』가 착수되었음
- 연구의 목적은 현행의 국·공립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인증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립박물관·미술관의 다양한 여건과 상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운영에서 지향해야 할 공통의 기준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평가인증제도의 도입 여부 및 그 목적,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자 정책 전반의 개선을 위한 초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음

### □ 조사 목적

- 이에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공인되는 ‘우수 박물관·미술관’에 관한 공통의 기준을 발굴하는 과정으로서 해외 각국의 국가별 운영 기준 사례를 검토하였으며, 이에 관한 사립박물관·미술관 종사자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우수 박물관·미술관의 기준마련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 나. 조사 내용

### □ 조사설계

○ 조사대상 및 방법

- 이 조사는 국내 사립박물관·미술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짐. 응답자의 종사지위는 관장, 학예사, 기타 행정·교육·연구직으로 구분됨
- 조사방법은 온라인을 활용해 구조화된 질문지에 자기기입식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었으며, 총 113명의 유효응답이 조사되었음

[표 8-1]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대상 및 방법

구분	내용
조사대상	국내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종사자(관장, 학예사, 기타)
표본규모	유효응답 기준 총 113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에 기반을 둔 자기기입식 온라인조사
조사기간	2022.05.03.(화)~05.16.(월)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총 14일간 실시
조사기관	(주)티브릿지코퍼레이션

○ 조사 내용

- 조사내용은 해외 각국의 국가별 운영 기준 사례를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 <조직 건전성A>, <조직 건전성B>, <소장품>,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에 대한 기준 항목으로 구성됨
- 각 항목에 대해 응답자는 자신의 의견을 긍정(내용에 공감하며, 국내 반영 필요), 유보(내용에 공감하나, 국내 반영은 검토 필요), 부정(당장 공감하기 어려워, 논의 필요)의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응답하도록 구성됨. 자세한 조사 내용은 아래의 [표 8-2] 에 명시함

[표 8-2]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내용

구분	내용
응답자 일반 사항	1) 기관유형 2) 응답자 직위 3) 국가인력지원사업 참여여부 4) (학예사)근무기간/(관장 및 기타)운영 및 근무기관 5) 기관 소재지역 6) 성별 7) 학력 8) 연령대
Part I.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	1) 박물관·미술관은 공적 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합법적으로 잘 관리한다. 2) 박물관·미술관은 국제적인 박물관·미술관 규정 및 윤리, 국내 법규에서 정하는

구분	내용
(공적 신뢰와 책임)	<p>공적 책무를 위해 헌신하며, 박물관·미술관의 시설, 운영, 행정 등과 관련된 법규, 규정, 규칙을 준수한다.</p> <p>3) 박물관·미술관은 박물관·미술관 윤리 및 규정을 따르는 건전하고 합법적인 운영체제와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p> <p>4) 박물관·미술관은 대중에게 유익함을 주고, 컬렉션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존속하는 기관이다.</p> <p>5) 박물관·미술관의 모든 업무는 공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박물관·미술관 종사자들은 최고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를 유지한다.</p> <p>6) 박물관·미술관 활동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파트너 조직, 관리 기관, 직원 및 자원봉사자를 존중하고 이들과 투명한 관계를 구축한다.</p> <p>7) 박물관·미술관은 설립목적(미션)에 부합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공적 신뢰를 획득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p> <p>8) 박물관·미술관은 직원의 기술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박물관·미술관의 설립목적(미션)을 달성하도록 운영한다.</p> <p>9) 박물관·미술관은 긍정적인 공적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 전반을 안전하게 운영해야 한다.</p> <p>10) 박물관·미술관은 이용자의 학습, 영감, 즐거움을 위해 공익적으로 소장품을 이용/활용한다.</p> <p>11) 박물관·미술관은 대중에게 박물관·미술관과 그 자원에 대한 물리적·지적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헌신한다.</p> <p>12) 박물관·미술관이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분명히 제시해야 하며, 이 공공 서비스의 중심에 교육이 있어야 한다.</p> <p>13) 박물관·미술관은 적극적인 이용자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잠재적 이용자에게 포용적이고 다양한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p> <p>14) 박물관·미술관은 지역의 좋은 이웃이 되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다.</p> <p>15) 대중을 위해 그리고 대중과 함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성하며 언론과 토론의 자유를 지지한다.</p>
<p>Part II.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조직 건전성A (거버넌스/리더십·조직구조, 설립목적/미션, 계획, 평가)</p>	<p>1)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관한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주체(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재단법인, 개인 등)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된 공식적인 규정이 존재한다.</p> <p>2) 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독립된 조직이 규정에 의해 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임하고 있다.</p> <p>3) 박물관·미술관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조직 및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공식적인 운영조직 규정과 이를 집행할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사회, 운영위원회, 관장, 직원, 자원봉사자, 이용자 등 포함)</p> <p>4) 박물관·미술관의 모든 구성원 및 운영 관계자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 권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공유하며, 합법적, 윤리적, 효율적으로 각자의 책임을 이행한다.</p> <p>5) 소장품과 관련된 향후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승인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또는 조직이 있다.</p> <p>6) 업무 연속성과 책임을 보장하는 인수인계 절차가 있다.</p>

구분	내용
	<p>7)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 정책 개발 과정에 적절한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관장/직원으로 종사하거나, 자문위원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참여)</p> <p>8) 박물관·미술관의 설립목적(미션), 즉 박물관·미술관이 왜 존재하고 누구를 위한 박물관·미술관인지를 정의하는 공식 규정문서를 마련해야 한다.</p> <p>9)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 직원과 자원봉사자의 구성 및 업무 분담 방식, 구성원의 자질과 다양성 등을 포함한 박물관·미술관 운영과 활동의 모든 측면이 박물관·미술관의 설립목적(미션)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갖추어져 있다.</p> <p>10) 박물관·미술관은 그 설립 목적(미션)을 바탕으로, 자료의 수집·보관·전시, 조사연구, 교육 활동 등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운영방침을 책정하고 공표해야 한다.</p> <p>11) 박물관·미술관은 기본적 운영방침을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또는 사업 연도별로 운영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p> <p>12) 박물관·미술관의 운영방침 및 운영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용자 및 지역주민, 사회 전반의 요청에 충분히 유의해야 하고, 이용자와 지역 주민들이 운영 방침 및 전략/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p> <p>13) 박물관·미술관은 운영과 사업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각 연도의 사업계획의 달성 상황과 그 외 운영 상황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자체평가)</p> <p>14) 박물관·미술관은 운영과 사업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체평가 외에, 외부 전문가, 이용자, 지역주민 등에 의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외부평가)</p> <p>15) 박물관·미술관이 운영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박물관·미술관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p> <p>16) 박물관·미술관은 평가 결과 및 운영 개선 대책을 인터넷(홈페이지 등)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공표해야 한다.</p> <p>17) 박물관·미술관은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p> <p>18) 박물관·미술관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정책을 공표하고, 이 정책은 박물관·미술관의 설립목적(미션)에도 적합해야 한다.</p>
<p>Part III.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조직 건전성B (인력, 시설, 재정 등의 자원 안정성과 위기관리)</p>	<p>1) 박물관·미술관 운영을 총괄하여 전담하는 관장을 두어야 한다.</p> <p>2) 박물관·미술관의 설립목적(미션) 및 운영방침에 기초하여 박물관·미술관 사업(박물관·미술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의 학예사를 두어야 한다.</p> <p>3) 학예사 외에, 박물관·미술관의 행정, 홍보마케팅, 시설관리 등과 같은 사무 및 기능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p> <p>4) 박물관·미술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고용 관련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준수해야 한다. (모든 인력을 위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업무분장 및 협력 기준과 방법, 각 직무별 역할과 책임 설정 등)</p> <p>5) 박물관·미술관은 설립목적(미션) 및 운영방침에 따른 효과적인 박물관·미술관 활동을 위해,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전문적인 역량에 맞춰 능력을 발휘할</p>

구분	내용
	<p>수 있도록 업무를 분담하고 배치해야 한다.</p> <p>6) 박물관·미술관과 설립주체, 정부, 유관 협회나 단체 등은 박물관·미술관의 관장, 학예사, 그 외 직원의 능력 및 자질 향상, 경력 개발을 위한 연수(교육, 재교육, 보수교육 등) 기회를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p> <p>7) 박물관·미술관은 직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연수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p> <p>8) 박물관·미술관은 설립목적(미션) 수행을 위해 법적, 윤리적으로 합당하게 재정을 확보하고 책임감 있게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p> <p>9) 박물관·미술관은 박물관·미술관 운영과 관련된 재정이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p> <p>10) 박물관·미술관은 충분한 가용 자금을 보유해야 하며, 소장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된다.</p> <p>11) 박물관·미술관은 소장품, 직원, 이용자 등의 필요에 부합해 공간을 할당하고 시설을 활용한다.</p> <p>12) 박물관·미술관은 시설의 장기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과 절차를 갖추고 있다.</p> <p>13) 박물관·미술관은 소장품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효과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 실행할 수 있을 만큼, 부지와 건물의 장기적인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p> <p>14) 박물관·미술관은 내화, 내진, 방충해, 방수, 방진, 방음, 온습도 조절, 일광 차단 또는 조절, 통풍 조절, 오염/파괴/도난 방지, 그 외 박물관·미술관자료를 적절하게 보관하는 데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p>15) 박물관·미술관은 청소년 대상 음성해설 기기, 경사로, 점자 및 외국어 표기, 수유시설, 그 외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유소아 보호자, 외국인 등의 원활한 이용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p>16) 박물관·미술관은 휴게시설 및 이용자의 쾌적한 관람을 위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p> <p>17) 박물관·미술관은 사고, 재해, 그 외 비상사태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박물관·미술관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태에 관한 위기관리 대응안내서를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한 위기관리 훈련의 정기적 실시, 그 외 충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p> <p>18) 박물관·미술관은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방재상, 위생상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사고나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장제한,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Part IV.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 (Collection, 박물관·미술관 자료)</p>	<p>1) 박물관·미술관은 설립목적(미션), 규정 및 정책, 전략/계획에 명시된 바에 따라 소장품을 합법적, 윤리적, 효과적으로 획득, 관리, 보존, 활용해야 한다.</p> <p>2) 박물관·미술관은 소장품 및 그에 관한 정보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p> <p>3) 박물관·미술관은 소장품의 획득, 관리, 보존, 폐기, 이관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별도의 소장품 정책 공문서와 그에 관한 절차 규정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p> <p>4) 박물관·미술관은 미래 세대를 위해 중요한 컬렉션을 보존한다.</p> <p>5) 박물관·미술관은 실물, 표본, 문헌, 도표, 필름 등의 각종 자료의 출처, 조사결과,</p>

구분	내용
	<p>학술연구 상황, 지역 내 다른 소장처 존재 여부, 자료의 전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소장품의 필요 수량을 결정해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전시해야 한다.</p> <p>6) 박물관미술관은 박물관미술관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등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단독으로 또는 다른 박물관미술관,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소장품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조사연구, 자료의 보존 및 전시 방법에 관한 기술적 연구, 그 외 다양한 학술연구를 실시해야 한다.</p> <p>7) 소장품 관련 연구는 학술적 기준에 적합하게 수행한다.</p> <p>8) 박물관미술관은 소장자료의 보존·수복을 위한 원칙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p> <p>9) 박물관미술관은 소장품의 보존 및 안전 상태에 대해 최소 5년마다(필요한 경우 더 자주)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그 자문 내용에 따라 소장품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p> <p>10) 박물관미술관은 소장품의 수, 전체 소장품 중 대여 자료의 수 및 비중(%)을 공개해야 하고, 박물관미술관의 규정 및 계획에 따라 대여 자료를 보존, 관리한다.</p> <p>11) 박물관미술관은 소장 자료에 관한 도서, 문헌, 조사자료, 그 외 필요한 자료의 수집, 보관, 활용에도 노력해야 한다.</p> <p>12) 박물관미술관의 적절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소장 자료 및 도서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p> <p>13) 박물관미술관은 자료의 수집 또는 보관이 곤란한 경우, 전시를 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또는 관외 대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복제, 모조, 모사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작하여 박물관미술관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저작권법」과 그 외 법령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p> <p>14) 박물관미술관이 휴관 또는 폐관할 경우, 소장 자료 및 도서 등을 다른 박물관미술관에 양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적 자산인 소장품(및 아카이브 자료 등)이 소실 또는 산일되지 않고 적절하게 보존/활용되게 해야 한다.</p>
<p>Part V.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 (박물관·미술관 서비스, 해석·전시·교육·학습, 지역 연계협력 등)</p>	<p>1) 박물관·미술관은 다양한 공동체(커뮤니티)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 다양한 공동체를 지원하며, 다양한 공동체에 가치를 부여한다.</p> <p>2) 박물관·미술관은 현재 및 잠재적 이용자와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그들의 필요와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용자 서비스 정책 및 전략/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p> <p>3) 박물관미술관은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시설,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접근이 용이한 시설 확보, 인근 편의시설 정보 제공, 건물 내외부에 적절한 표지판 및 방향 표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및 소통 등)</p> <p>4) 박물관·미술관은 이용자와 지역 실정, 소장품의 특성, 전시 교체 일수 등을 감안해 개관일수 및 개관시간을 정하고, 휴일 및 야간 개관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다.</p> <p>5) 박물관·미술관은 고령자, 장애인, 유소아의 보호자, 외국인, 그 외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박물관·미술관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배치, 관내 유모차 대여, 외국어 해설자료 배포 등의 서비스를</p>

구분	내용
	<p>제공한다.</p> <p>6) 박물관·미술관은 청소년의 관심과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청소년용 해설자료 배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p> <p>7) 박물관·미술관은 소장품 및 그에 대한 다양한 학술적 해석과 지식을 토대로 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용자의 학습에 기여해야 한다. (다양한 관점의 해석에 의한 소장품 전시, 소장품 연구에 이용자 참여, 효과적인 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p> <p>8) 박물관·미술관의 해석 활동(연구, 전시, 교육)은 학술적, 전문적인 연구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박물관·미술관의 모든 연구 활동은 학술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p> <p>9) 박물관·미술관은 교육의 목적과 철학을 명확히 공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의 자원과 콘텐츠를 활용한다.</p> <p>10) 박물관·미술관은 모든 이용자들에게 확실한 정보와 연구에 기초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고, 일관되고 높은 품질의 해석 활동(연구, 전시, 교육)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p> <p>11) 박물관·미술관은 해석 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박물관·미술관 운영 계획의 수립·개선에 활용해야 한다.</p> <p>12) 박물관·미술관은 기본적인 운영방침에 기초해, 소장 자료의 상설전시(상설전시 갱신)를 하거나, 특정 주제를 정해 소장 자료 또는 임시로 빌려온 자료로 기획/특별전시를 행한다.</p> <p>13) 박물관·미술관은 전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장품 및 전시자료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시방법을 연구개발하고, 문헌자료, 음성, 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다.</p> <p>14) 박물관·미술관은 이용자의 학습활동 및 조사연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순회전,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을 개최한다.</p> <p>15) 박물관·미술관은 이용자의 학습활동 및 조사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장 자료에 관한 각종 강연회, 연구회, 아동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및 학습활동 행사 등을 개최하고, 학교나 교육단체에 박물관·미술관 활용에 필요한 안내나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p> <p>16) 박물관·미술관은 이용 편의 확대 및 조사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 박물관·미술관 안내서, 팸플릿, 도록, 연보, 연구보고서, 소장품 해설서 등을 제작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공개, 배포해야 한다.</p> <p>17) 박물관·미술관은 학교, 다른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그 외 문화기관, 학술기관, 교육단체, 행정기관, 민간기업이나 사업자 등과 긴밀히 연계, 협력하여 박물관·미술관 활동을 수행한다.</p> <p>18) 박물관·미술관은 이용자 및 지역주민이 학습을 통해 지식 및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시자료 해설, 행사 기획, 학예업무 보조, 자료조사 등의 활동기회를 제공한다.</p>

## □ 응답자 특성

### ○ 기관유형별 분포

-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소속 기관은 사립박물관이 56.6%, 미술관이 43.4%임
- 기관의 등록 유형은 1종이 81.4%, 2종이 18.6%로 대부분 1종이었음. 설립 주체는 개인 설립(고유번호 부여단체, 사업자등록)이 54.0%로 과반 이상이며, 그 다음으로는 기업(인) 외 설립 비영리 법인이 17.7%의 비율로 나타났음
- 지역으로는 서울이 22.1%, 인천/경기가 21.2%로 수도권 소재 기관에서의 응답이 43.3%로 높았으며, 그 외 호남권 15.9%, 영남권 14.2%, 충청권 13.3%, 강원권 8.0%, 제주 5.3%로 나타남

[표 8-3]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기관유형별 분포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113	100.0%
유형	사립박물관	64	56.6%
	사립미술관	49	43.4%
등록(종)	1종	92	81.4%
	2종	21	18.6%
설립주체	공공기관	12	10.6%
	기업(인) 설립 비영리법인	11	9.7%
	기업(회사법인) 소속 박물관·미술관	7	6.2%
	기업(인) 외 설립 비영리법인	20	17.7%
	개인(고유번호 부여단체, 사업자등록)	61	54.0%
	영리형 뮤지엄기업(주식회사)	2	1.8%
	지역	서울	25
인천/경기	24	21.2%	
충청권	15	13.3%	
호남권	18	15.9%	
영남권	16	14.2%	
강원권	9	8.0%	
제주	6	5.3%	

### ○ 응답자 근무특성별 분포

-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의 직위는 관장 40.7%, 학예사 47.8%, 기타 11.5%로 나타남.
  - 관장직의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근무 기간은 5년 미만이 34.5%, 5년 이상 10년 미만이

27.4%, 10년 이상-20년 미만은 28.3%, 20년 이상은 9.7%였음

- 학예사 중 국가인력지원사업(전문·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이 51.6%로 절반 가량이 지원사업 대상자였음. 근무기간은 현재 재직 중인 기관에서의 근무를 포함해 학예사로서의 경력을 의미하는데, 2년 미만이 21.2%, 2년 이상 5년 미만이 9.7%, 5년 이상 10년 미만은 10.6%이며 10년 이상 15년 미만과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각 2.7%, 20년 이상은 0.9%로, 2년 미만 경력자와 5년 이상~10년 미만 경력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기타 응답자는 관장과 학예사 외 사립박물관·미술관에 종사하는 운영관리직, 행정직, 교육직, 연구직 등에 해당함

[표 8-4]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근무특성별 분포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113	100.0%	
직위	관장	46	40.7%	
	학예사	54	47.8%	
	기타	13	11.5%	
관장	운영 /근무기간	2년 미만	14	12.4%
		2년 이상 5년 미만	25	22.1%
		5년 이상 10년 미만	31	27.4%
		10년 이상 15년 미만	21	18.6%
		15년 이상 20년 미만	11	9.7%
		20년 이상	11	9.7%
		학예사	국가인력지원사업	참여
비참여	26			48.4%
근무기간	2년 미만		24	21.2%
	2년 이상 5년 미만		11	9.7%
	5년 이상 10년 미만		12	10.6%
	10년 이상 15년 미만		3	2.7%
	15년 이상 20년 미만		3	2.7%
20년 이상	1	0.9%		

○ 응답자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

- 조사 응답자는 여성이 65.5%, 남성이 34.5%였음
- 연령은 20대 7.1%, 30대 17.6%, 40대 26.5%, 50대 14.2%, 60대 23.0%, 70대 이상이 11.5%였음.
- 관장직에서는 최소연령대가 40대였으며 60-70대가 76.1%로 대다수를 차지함. 70대 이상의 전체 응답은 관장직에 해당함

- 학예직에서는 30대(33.3%), 40대(44.4%)의 비율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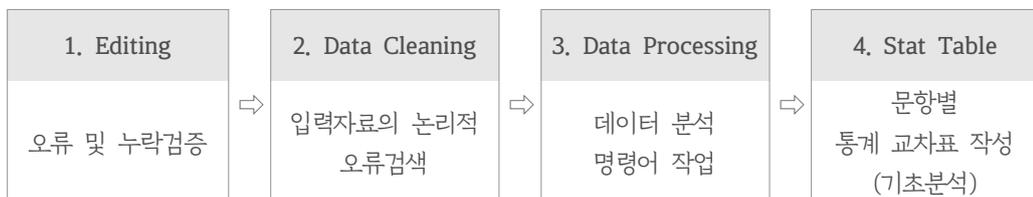
-학력은 대학 졸업 29.2%, 석사 졸업 57.5%, 박사 졸업 13.3%로 석사 졸업자의 비율이 과반으로 나타남

[표 8-5]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인구학적 특성별 분포

구분		관장		학예사	
		사례수	비율	사례수	비율
연령	20대	0	0.0%	3	5.6%
	30대	0	0.0%	18	33.3%
	40대	2	4.4%	24	44.4%
	50대	9	19.6%	7	13.0%
	60대	22	47.8%	2	3.7%
	70대 이상	13	28.3%	0	0.0%
학력	대학 졸업	14	30.4%	11	20.4%
	석사 졸업	19	41.3%	41	75.9%
	박사 졸업	13	28.3%	2	3.7%

#### □ 자료 처리 및 분석

- 최종 조사된 유효 표본을 대상으로 기록상의 오류 및 누락검증을 확인하는 에디팅(Editing) 과정을 진행함
- 이후 전체적인 데이터는 입력 자료의 오류를 검색하는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분석에 사용함



- 전체 문항에 대한 긍정, 유보, 부정 응답의 빈도분석과 유형(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설립주체, 지역, 응답자 직위 변인에 따른 교차분석을 실시함

## 2절 설문조사 결과

### 가. 전체응답 경향

#### □ 전체 응답에 대한 긍정응답의 비율<sup>63)</sup>

- 전체 83개의 문항에 대해 긍정 응답이 70% 이상인 문항이 총 53개(63.9%), 50~69%인 문항이 24개(28.9%), 50% 미만인 문항이 6개(7.2%)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해외기준에 동의하며 국내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높았음
- 긍정도의 분포를 세부적으로 보면, 긍정 응답이 90%대인 문항 1개, 80%대인 문항 16개, 70%대 36개, 60%대 문항 19개, 50%대 5개, 50% 미만 문항 6개로, 70%대의 긍정 응답이 전체의 43.4%를 차지함
- 응답자의 90% 이상이 공감하며 국내 반영 필요하다고 응답한 유일한 문항은 <조직 건전성B> “박물관미술관 운영을 총괄하여 전담하는 관장을 두어야 한다”였음

[표 8-6]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긍정응답 90%대 문항  
(n=113, 단위: %)

No	문항 (해외기준 세부 내용)	긍정응 답비율	구분
1	박물관·미술관 운영을 총괄하여 전담하는 관장을 두어야 한다	90.3	조직 건전성B

- 80%대로 긍정도가 높은 문항은 <공공성>(9)과 <조직 건전성B>(6)에 해당하는 문항이 다수이며,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에 해당하는 문항도 1개 포함됨

[표 8-7]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긍정응답 80%대 문항  
(n=113, 단위: %)

No	문항 (해외기준 세부 내용)	긍정응 답비율	구분
1	박물관·미술관은 지역의 좋은 이웃이 되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89.4	공공성
2	박물관·미술관은 대중에게 유익함을 주고, 컬렉션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존속하는 기관이다	87.6	공공성

63) 응답의 ‘긍정’은 내용에 공감하며 국내 반영 필요, ‘유보’는 내용에 공감하나 국내 반영은 검토 필요, ‘부정’은 당장 공감하기 어려워 논의 필요를 의미함.

No	문항 (해외기준 세부 내용)	긍정응 답비율	구분
3	박물관·미술관은 긍정적인 공적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 전반을 안전하게 운영해야 한다	87.6	공공성
4	대중을 위해 그리고 대중과 함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성하며 언론과 토론의 자유를 지지한다	87.6	공공성
5	박물관·미술관은 적극적인 이용자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잠재적 이용자 에게 포용적이고 다양한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85.8	공공성
6	박물관·미술관은 이용자의 학습, 영감, 즐거움을 위해 공익적으로 소장품을 이용/활용한다	85.0	공공성
7	박물관·미술관은 박물관·미술관 윤리 및 규정을 따르는 건전하고 합법적인 운영체제와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84.1	공공성
8	박물관·미술관 활동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파트너 조직, 관리 기관, 직원 및 자원봉사자를 존중하고 이들과 투명한 관계를 구축한다	84.1	공공성
9	박물관·미술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고용 관련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준수해야 한다. (모든 인력을 위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업무분장 및 협력 기준과 방법, 각 직무별 역할과 책임 설정 등)	84.1	조직 건전성B
10	박물관·미술관의 설립목적(미션) 및 운영방침에 기초하여 박물관·미술관 사업(박물관·미술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의 학예사를 두어야 한다	83.2	조직 건전성B
11	박물관·미술관과 설립주체, 정부, 유관 협회나 단체 등은 박물관·미술관의 관장, 학예사, 그 외 직원의 능력 및 지질 향상, 경력 개발을 위한 연수(교육, 재교육, 보수교육 등) 기회를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	83.2	조직 건전성B
12	박물관·미술관은 직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연수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83.2	조직 건전성B
13	박물관·미술관은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방재상, 위생상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사고나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장제한,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83.2	조직 건전성B
14	박물관·미술관은 직원의 기술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박물관·미술관의 설립목적(미션)을 달성하도록 운영한다	81.4	공공성
15	박물관·미술관은 설립목적(미션) 및 운영방침에 따른 효과적인 박물관·미술관 활동을 위해,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전문적인 역량에 맞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담하고 배치해야 한다	81.4	조직 건전성B
16	박물관·미술관은 모든 이용자들에게 확실한 정보와 연구에 기초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고, 일관되고 높은 품질의 해석 활동(연구, 전시, 교육)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80.5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

- 70%대로 긍정도가 높은 문항은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12), <조직 건전성B>(8)에 해당하는 문항이 다수 분포하며, <조직 건전성A>(5), <공공성>(5), <소장품>(5) 관련 항목이 일부 분포함

[표 8-8]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긍정응답 70%대 문항  
(전체 n=113, 단위: %)

No	문항 (해외기준 세부 내용)	긍정응답비율	구분
1	박물관·미술관은 설립목적(미션), 규정 및 정책, 전략계획에 명시된 바에 따라 소장품을 합법적, 윤리적, 효과적으로 획득, 관리, 보존, 활용해야 한다	79.6	소장품
2	박물관·미술관은 미래 세대를 위해 중요한 컬렉션을 보존한다	78.8	소장품
3	박물관·미술관은 교육의 목적과 철학을 명확히 공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의 자원과 콘텐츠를 활용한다	78.8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
4	박물관·미술관의 모든 업무는 공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박물관·미술관 종사자들은 최고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를 유지한다	77.9	공공성
5	박물관·미술관은 사고, 재해, 그 외 비상사태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박물관·미술관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태에 관한 위기관리 대응안내서를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한 위기관리 훈련의 정기적 실시, 그 외 충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77.0	조직 건전성B
6	박물관·미술관은 다양한 공동체(커뮤니티)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 다양한 공동체를 지원하며, 다양한 공동체에 가치를 부여한다	77.0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
7	박물관·미술관은 이용자의 학습활동 및 조사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장 자료에 관한 각종 강연회, 연구회, 아동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및 학습활동 행사 등을 개최하고, 학교나 교육단체에 박물관·미술관 활용에 필요한 안내나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77.0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
8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 정책 개발 과정에 적절한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관장직원으로 종사하거나, 자문위원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참여)	76.1	조직 건전성A
9	박물관·미술관은 소장품, 직원, 이용자 등의 필요에 부합해 공간을 할당하고 시설을 활용한다	76.1	조직 건전성B
10	박물관·미술관은 학교, 다른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그 외 문화기관, 학술기관, 교육단체, 행정기관, 민간기업이나 사업자 등과 긴밀히 연계, 협력하여 박물관·미술관 활동을 수행한다	76.1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
11	박물관·미술관이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분명히 제시해야 하며, 이 공공 서비스의 중심에 교육이 있어야 한다	75.2	공공성
12	박물관·미술관은 설립목적(미션) 수행을 위해 법적, 윤리적으로 합당하게 재정을 확보하고 책임감 있게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	75.2	조직 건전성B
13	박물관·미술관은 기본적인 운영방침에 기초해, 소장 자료의 상설전시(상설	75.2	이용자 및

No	문항 (해외기준 세부 내용)	긍정응 답비율	구분
	전시 갱신)를 하거나, 특정 주제를 정해 소장 자료 또는 임시로 빌려온 자료로 기획/특별전시를 행한다		이용자 경험
14	박물관·미술관은 국제적인 박물관·미술관 규정 및 윤리, 국내 법규에서 정하는 공적 책무를 위해 헌신하며, 박물관·미술관의 시설, 운영, 행정 등과 관련된 법규, 규정, 규칙을 준수한다	74.3	공공성
15	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독립된 조직이 규정에 의해 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임하고 있다	74.3	조직 건전성A
16	박물관·미술관은 소장품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효과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 실행할 수 있을 만큼, 부지와 건물의 장기적인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	74.3	조직 건전성B
17	박물관·미술관의 적절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소장 자료 및 도서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74.3	소장품
18	박물관·미술관은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시설,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접근이 용이한 시설 확보, 인근 편의시설 정보 제공, 건물 내외부에 적절한 표지판 및 방향 표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및 소통 등)	74.3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
19	박물관·미술관은 해석 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박물관·미술관 운영 계획의 수립·개선에 활용해야 한다	74.3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
20	박물관·미술관은 전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장품 및 전시자료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시방법을 연구·개발하고, 문헌자료, 음성, 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다	74.3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
21	학예사 외에, 박물관·미술관의 행정, 홍보마케팅, 시설관리 등과 같은 사무 및 기능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	73.5	조직 건전성B
22	박물관·미술관은 자료의 수집 또는 보관이 곤란한 경우, 전시를 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또는 관외 대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복제, 모조, 모사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작하여 박물관·미술관 내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73.5	소장품
23	박물관·미술관은 소장품 및 그에 대한 다양한 학술적 해석과 지식을 토대로 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용자의 학습에 기여해야 한다. (다양한 관점의 해석에 의한 소장품 전시, 소장품 연구에 이용자 참여, 효과적인 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	73.5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
24	박물관·미술관은 이용자 및 지역주민이 학습을 통해 지식 및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시자료 해설, 행사 기획, 학예업무 보조, 자료조사 등의 활동기회를 제공한다	73.5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
25	박물관·미술관의 모든 구성원 및 운영 관계자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 권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공유하며, 합법적, 윤리적, 효율적으로 각자의 책임을 이행한다	72.6	조직 건전성A

No	문항 (해외기준 세부 내용)	긍정응 답비율	구분
26	박물관·미술관은 내화, 내진, 방충해, 방수, 방진, 방음, 온습도 조절, 일광 차단 또는 조절, 통풍 조절, 오염/파괴/도난 방지, 그 외 박물관·미술관자료를 적절하게 보관하는 데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2.6	조직 건전성B
27	박물관·미술관은 이용자의 학습활동 및 조사연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순회전,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을 개최한다	72.6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
28	박물관·미술관은 설립목적(미션)에 부합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공적 신뢰를 획득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71.7	공공성
29	박물관·미술관은 대중에게 박물관·미술관과 그 자원에 대한 물리적·지적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헌신한다	71.7	공공성
30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관한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주체(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재단법인, 개인 등)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된 공식적인 규정이 존재한다	71.7	조직 건전성A
31	업무 연속성과 책임을 보장하는 인수인계 절차가 있다	71.7	조직 건전성A
32	박물관·미술관은 소장 자료에 관한 도서, 문헌, 조사자료, 그 외 필요한 자료의 수집, 보관, 활용에도 노력해야 한다	71.7	소장품
33	박물관·미술관은 시설의 장기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과 절차를 갖추고 있다	70.8	조직 건전성B
34	박물관·미술관은 휴게시설 및 이용자의 쾌적한 관람을 위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0.8	조직 건전성B
35	박물관·미술관이 휴관 또는 폐관할 경우, 소장 자료 및 도서 등을 다른 박물관·미술관에 양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적 자산인 소장품(및 아카이브 자료 등)이 소실 또는 산일되지 않고 적절하게 보존/활용되게 해야 한다	70.8	소장품
36	박물관·미술관은 현재 및 잠재적 이용자와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그들의 필요와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용자 서비스 정책 및 전략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70.8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

- 60%대의 긍정도를 보인 문항은 <조직 건전성A>(8)이 다수이며, <소장품>(5),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3)에 관한 문항이 고루 분포함

[표 8-9]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긍정응답 60%대 문항

(n=113, 단위: %)

No	문항 (해외기준 세부 내용)	긍정응 답비율	구분
1	박물관·미술관의 설립목적(미션), 즉 박물관·미술관이 왜 존재하고 누구를 위한 박물관·미술관인지를 정의하는 공식 규정문서를 마련해야 한다	69.9	조직 건전성A

No	문항 (해외기준 세부 내용)	긍정응 답비율	구분
2	소장품 관련 연구는 학술적 기준에 적합하게 수행한다	69.9	소장품
3	박물관·미술관은 이용자와 지역 실정, 소장품의 특성, 전시 교체 일수 등을 감안해 개관일수 및 개관시간을 정하고, 휴일 및 야간 개관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다	69.9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
4	박물관·미술관은 충분한 가용 자금을 보유해야 하며, 소장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된다	69.0	조직 건전성B
5	박물관·미술관은 공적 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합법적으로 잘 관리한다	68.1	공공성
6	박물관·미술관은 운영과 사업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각 연도의 사업계획의 달성 상황과 그 외 운영 상황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자체평가)	68.1	조직 건전성A
7	박물관·미술관은 박물관·미술관 운영과 관련된 재정이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68.1	조직 건전성B
8	박물관·미술관은 실물, 표본, 문헌, 도표, 필름 등의 각종 자료의 출처, 조사결과, 학술연구 상황, 지역 내 다른 소장처 존재 여부, 자료의 전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소장품의 필요 수량을 결정해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전시해야 한다	68.1	소장품
9	박물관·미술관의 해석 활동(연구, 전시, 교육)은 학술적, 전문적인 연구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박물관·미술관의 모든 연구 활동은 학술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68.1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
10	박물관·미술관은 이용 편의 확대 및 조사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 박물관·미술관 안내서, 팸플릿, 도록, 연보, 연구보고서, 소장품 해설서 등을 제작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공개, 배포해야 한다	68.1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
11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 직원과 자원봉사자의 구성 및 업무 분담 방식, 구성원의 자질과 다양성 등을 포함한 박물관·미술관 운영과 활동의 모든 측면이 박물관·미술관의 설립목적(미션)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갖추어져 있다	66.4	조직 건전성A
12	박물관·미술관은 소장품의 획득, 관리, 보존, 폐기, 이관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별도의 소장품 정책 공문서와 그에 관한 절차 규정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66.4	소장품
13	박물관·미술관은 소장자료의 보존·수복을 위한 원칙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64.6	소장품
14	박물관·미술관은 그 설립 목적(미션)을 바탕으로, 자료의 수집·보관·전시, 조사연구, 교육 활동 등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운영방침을 책정하고 공표해야 한다	63.7	조직 건전성A
15	박물관·미술관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조직 및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62.8	조직 건전성A

No	문항 (해외기준 세부 내용)	긍정응 답비율	구분
	규정한 공식적인 운영조직 규정과 이를 집행할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사회, 운영위원회, 관장, 직원, 자원봉사자, 이용자 등 포함)		
16	박물관·미술관은 박물관·미술관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등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단독으로 또는 다른 박물관·미술관,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소장품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조사연구, 자료의 보존 및 전시 방법에 관한 기술적 연구, 그 외 다양한 학술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62.8	소장품
17	박물관·미술관은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	61.9	조직 건전성A
18	소장품과 관련된 향후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승인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또는 조직이 있다	60.2	조직 건전성A
19	박물관·미술관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정책을 공표하고, 이 정책은 박물관·미술관의 설립목적(미션)에도 적합해야 한다	60.2	조직 건전성A

-50%대의 긍정도로 응답된 문항은 <조직 건전성A>(2), <이용자 및 이용자경험>(2), <조직 건전성B>(1)에 대한 항목으로, 운영 전략/계획 수립 및 공표,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 장애인/청소년/외국인/유소아/고령자 등 특수 관람객층에 대한 설비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사항임

[표 8-10]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긍정응답 50%대 문항  
(n=113, 단위: %)

No	문항 (해외기준 세부 내용)	긍정응 답비율	구분
1	박물관·미술관은 기본적 운영방침을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또는 사업 연도별로 운영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59.3	조직 건전성A
2	박물관·미술관이 운영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박물관·미술관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	59.3	조직 건전성A
3	박물관·미술관은 청소년 대상 음성해설 기기, 경사로, 접자 및 외국어 표기, 수유시설, 그 외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유소아 보호자, 외국인 등의 원활한 이용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8.4	조직 건전성B
4	박물관·미술관은 고령자, 장애인, 유소아의 보호자, 외국인, 그 외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박물관·미술관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배치, 안내 유모차 대여, 외국어 해설자료 배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57.5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
5	박물관·미술관은 청소년의 관심과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청소년용 해설자료 배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57.5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

-50% 미만의 긍정도를 보인 문항은 <소장품>(3), <조직 건전성A>(3)관련 항목으로, 소장품 수대여 자료 수의 공개, 소장품 관련 정보의 공개, 소장품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외부 지문 및 관리계

획 수립, 운영평가 결과의 공표, 전문가·이용자 등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운영 외부평가에 대한 내용임

(표 8-11)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마련을 위한 설문조사> 긍정응답 50% 미만 문항  
(n=113, 단위: %)

No	문항 (해외기준 세부 내용)	긍정응답 비율	구분
1	박물관·미술관은 소장품의 수, 전체 소장품 중 대여 자료의 수 및 비중(%)을 공개해야 하고, 박물관·미술관의 규정 및 계획에 따라 대여 자료를 보존, 관리한다	48.7	소장품
2	박물관·미술관은 소장품 및 그에 관한 정보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47.8	소장품
3	박물관·미술관은 소장품의 보존 및 안전 상태에 대해 최소 5년마다(필요한 경우 더 자주)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그 자문 내용에 따라 소장품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46.9	소장품
4	박물관·미술관의 운영방침 및 운영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용자 및 지역주민, 사회 전반의 요청에 충분히 유의해야 하고, 이용자와 지역 주민들이 운영 방침 및 전략/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3.4	조직 건전성A
5	박물관·미술관은 평가 결과 및 운영 개선 대책을 인터넷(홈페이지 등)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41.6	조직 건전성A
6	박물관·미술관은 운영과 사업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체평가 외에, 외부 전문가, 이용자, 지역주민 등에 의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외부평가)	34.5	조직 건전성A

## 나.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

### □ 긍정·유보·부정 응답분포

- <공공성>은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공적 신뢰와 책임에 대한 15개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긍정 응답 70% 이상의 비율이 93.3%로 가장 높게 나타난 영역임
- 14개 항목에서 긍정 응답이 70% 이상이었으며, ‘박물관·미술관은 공적 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합법적으로 잘 관리한다’는 항목에만 68.1%의 긍정 응답률을 보임

[표 8-12]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 전체 응답분포

(n=113, 단위: %)

주제 범주	해외기준 세부 내용	긍정	유보	부정
합법성 및 공적 책무 이행	1) 박물관·미술관은 공적 자산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합법적으로 잘 관리한다	68.1	28.3	3.5
	2) 박물관·미술관은 국제적인 박물관·미술관 규정 및 윤리, 국내 법규에서 정하는 공적 책무를 위해 헌신하며, 박물관·미술관의 시설, 운영, 행정 등과 관련된 법규, 규정, 규칙을 준수한다	74.3	23.9	1.8
	3) 박물관·미술관은 박물관·미술관 윤리 및 규정을 따르는 건전하고 합법적인 운영체제와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	84.1	15.0	0.9
	4) 박물관·미술관은 대중에게 유익함을 주고, 컬렉션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존속하는 기관이다	87.6	12.4	-
	5) 박물관·미술관의 모든 업무는 공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박물관·미술관 종사자들은 최고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를 유지한다	77.9	20.4	1.8
공적 신뢰를 위한 투명한 운영	6) 박물관·미술관 활동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파트너 조직, 관리 기관, 직원 및 자원봉사자를 존중하고 이들과 투명한 관계를 구축한다	84.1	15.0	0.9
	7) 박물관·미술관은 설립목적(미션)에 부합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공적 신뢰를 획득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71.7	27.4	0.9
공익을 위한 박물관·미술관 자원 활용 (직원, 시설, 소장품)	8) 박물관·미술관은 직원의 기술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박물관·미술관의 설립목적(미션)을 달성하도록 운영한다	81.4	17.7	0.9
	9) 박물관·미술관은 긍정적인 공적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 전반을 안전하게 운영해야 한다	87.6	12.4	-
	10) 박물관·미술관은 이용자의 학습, 영감, 즐거움을 위해 공적으로 소장품을 이용/활용한다	85.0	14.2	0.9
이용자의 물리적·지적 접근성의 제고 및 이를 위한 박물관·미술관 (종사자)의 윤리	11) 박물관·미술관은 대중에게 박물관·미술관과 그 자원에 대한 물리적·지적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헌신한다	71.7	25.7	2.7
	12) 박물관·미술관이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분명히 제시해야 하며, 이 공공 서비스의 중심에 교육이 있어야 한다	75.2	22.1	2.7
	13) 박물관·미술관은 적극적인 이용자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잠재적 이용자에게 포용적이고 다양한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85.8	13.3	0.9
	14) 박물관·미술관은 지역의 좋은 이웃이 되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89.4	8.8	1.8
	15) 대중을 위해 그리고 대중과 함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성하며 언론과 토론의 자유를 지지한다	87.6	9.7	2.7

□ 문항별 교차 분석(유의미한 결과)

- ‘박물관·미술관 활동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파트너 조직, 관리 기관, 직원 및 자원봉사자를 존중하고 이들과 투명한 관계를 구축한다’ 항목에 대한 응답은 유형별로 살펴볼 때 사립미술관의 긍정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음

구분	구분	긍정	유보	부정	χ <sup>2</sup>
유형	사립박물관	49 76.6%	14 21.9%	1 1.6%	6.333a** (0.042)
	사립미술관	46 93.9%	3 6.1%	- -	
합계		95 84.1%	17 15.0%	1 0.9%	

※ \* 기관유형별 카이제곱 검정결과 p<0.1, \*\* p<0.05, \*\*\* p<0.01

## 다.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조직 건전성A

□ 긍정·유보·부정 응답분포

- <조직 건전성A>는 거버넌스·리더십·조직구조, 설립목적·미션, 계획, 평가에 관한 18개 항목으로 구성됨. 긍정응답이 70% 이상인 응답은 전문인력 투입, 독립적인 조직을 통한 운영,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명확성, 설립주체의 책임과 역할의 명확한 구분 및 공식 규정, 인수인계 절차 존재 여부의 5개로, <공공성>과 비교할 때 긍정응답의 비율이 낮게 나타남

- 운영방침 및 계획 수립 시 이용자, 지역주민, 사회 전반의 요청에 유의하고 수립과정에 이들을 참여하도록 하는 것(43.4%), 평가 결과 및 운영 개선 대책을 인터넷 등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공표하는 것(41.6%), 자체평가 외에 외부평가의 필요(34.5%)에 해당하는 3개 항목이 긍정응답 비율 50% 미만에 해당했으며, 이는 전체 문항 중 가장 긍정 응답의 비율이 낮은 문항이기도 함

[표 8-13]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조직 건전성A 전체 응답분포

(n=113, 단위: %)

주제 범주	해외기준 세부 내용	긍정	유보	부정
설립주체의 책임과 박물관·미술관 운영조직의	1)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관한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주체(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재단법인, 개인 등)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된 공식적인 규정이 존재한다	71.7	23.9	4.4

주제 범주	해외기준 세부 내용	긍정	유보	부정
독립성	2) 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독립된 조직이 규정에 의해 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임하고 있다	74.3	22.1	3.5
운영의 조직 및 절차 규정	3) 박물관·미술관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조직 및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공식적인 운영조직 규정과 이를 집행할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사회, 운영위원회, 관장, 직원, 자원봉사자, 이용자 등 포함)	62.8	35.4	1.8
	4) 박물관·미술관의 모든 구성원 및 운영 관계자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 권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공유하며, 합법적, 윤리적, 효율적으로 각자의 책임을 이행한다	72.6	25.7	1.8
	5) 소장품과 관련된 향후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승인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또는 조직이 있다	60.2	31.0	8.8
	6) 업무 연속성과 책임을 보장하는 인수인계 절차가 있다	71.7	23.9	4.4
박물관·미술관 운영 관련 의사결정 및 정책수립에서의 전문가 참여	7)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 정책 개발 과정에 적절한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관장/직원으로 종사하거나, 자문위원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참여)	76.1	20.4	3.5
설립목적에 관한 공식 규정문서의 마련과 적용	8) 박물관·미술관의 설립목적(미션), 즉 박물관·미술관이 왜 존재하고 누구를 위한 박물관·미술관인지를 정의하는 공식 규정문서를 마련해야 한다	69.9	24.8	5.3
	9)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 직원과 자원봉사자의 구성 및 업무 분담 방식, 구성원의 자질과 다양성 등을 포함한 박물관·미술관 운영과 활동의 모든 측면이 박물관·미술관의 설립목적(미션)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갖추어져 있다	66.4	31.0	2.7
설립목적(미션)에 기반한 박물관·미술관의 운영방침 및 전략/계획의 수립, 실행, 평가	10) 박물관·미술관은 그 설립 목적(미션)을 바탕으로, 자료의 수집·보관·전시, 조사연구, 교육 활동 등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운영방침을 책정하고 공표해야 한다	63.7	30.1	6.2
	11) 박물관·미술관은 기본적 운영방침을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또는 사업 연도별로 운영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59.3	32.7	8.0
	12) 박물관·미술관의 운영방침 및 운영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용자 및 지역주민, 사회 전반의 요청에 충분히 유의해야 하고, 이용자와 지역 주민들이 운영 방침 및 전략/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43.4	42.5	14.2
	13) 박물관·미술관은 운영과 사업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각 연도의 사업계획의 달성 상황과 그 외 운영 상황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자체평가)	68.1	27.4	4.4

주제 범주	해외기준 세부 내용	긍정	유보	부정
	14) 박물관·미술관은 운영과 사업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체평가 외에, 외부 전문가, 이용자, 지역주민 등에 의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외부평가)	34.5	48.7	16.8
	15) 박물관·미술관이 운영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박물관·미술관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	59.3	33.6	7.1
	16) 박물관·미술관은 평가 결과 및 운영 개선 대책을 인터넷(홈페이지 등)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41.6	41.6	16.8
지속가능한 박물관·미술관 운영 정책	17) 박물관·미술관은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	61.9	34.5	3.5
	18) 박물관·미술관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정책을 공표하고, 이 정책은 박물관·미술관의 설립목적(미션)에도 적합해야 한다	60.2	32.7	7.1

#### □ 문항별 교차 분석(유의미한 결과)

- ‘박물관·미술관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조직 및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공식적인 운영조직 규정과 이를 집행할 절차를 가지고 있다(이사회, 운영위원회, 관장, 직원, 자원봉사자, 이용자 등 포함)’ 항목에 대한 응답은 설립주체별로 살펴볼 때 개인(고유번호 부여단체, 사업자등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음. 그러나 계층별 응답자 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구분	긍정	유보	부정	$\chi^2$
유 공공기관	10 83.3%	2 16.7%	-	26.342a *** (0.003)
기업(인) 설립 비영리법인	11 100.0%	-	-	
기업(회사법인) 소속 박물관·미술관	5 71.4%	2 28.6%	-	
기업(인) 외 설립 비영리법인	18 90.0%	2 10.0%	-	
개인(고유번호 부여단체, 사업자등록)	26 42.6%	33 54.1%	2 3.3%	
영리형 뮤지엄기업	1 50.0%	1 50.0%	-	
합계	71 62.8%	40 35.4%	2 1.8%	

※ 기관유형별 카이제곱 검정결과 \* P<0.1, \*\* p<0.05, \*\*\* p<0.01

- ‘박물관·미술관의 설립목적(미션), 즉 박물관·미술관이 왜 존재하고 누구를 위한 박물관·미술관인지를 정의하는 공식 규정문서를 마련해야 한다’ 항목에 대한 응답은 설립주체별로 개인(고유번호 부여단체, 사업자등록)에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만 계층별 응답자 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구분	긍정	유보	부정	$\chi^2$
공공기관	9 75.0%	2 16.7%	1 8.3%	17.388a *
기업(인) 설립 비영리법인	10 90.9%	- -	1 9.1%	
기업(회사법인) 소속 박물관·미술관	6 85.7%	1 14.3%	- -	
기업(인) 외 설립 비영리법인	18 90.0%	1 5.0%	1 5.0%	
개인(고유번호 부여단체, 사업자등록)	34 55.7%	24 39.3%	3 4.9%	
영리형 뮤지엄기업	2 100.0%	- -	- -	
합계	79 69.9%	28 24.8%	6 5.3%	(0.066)

※ 기관유형별 카이제곱 검정결과 \* p<0.1, \*\* p<0.05, \*\*\* p<0.01

-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 직원과 자원봉사자의 구성 및 업무 분담 방식, 구성원의 자질과 다양성 등을 포함한 박물관미술관 운영과 활동의 모든 측면이 박물관미술관의 설립목적(미션)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갖추어져 있다’ 항목에 대한 응답은 지역별로 살펴볼 때 서울과 인천/경기, 호남권의 유보응답이 전체 평균 대비 차이를 보였음. 단, 계층별 응답자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구분	긍정	유보	부정	$\chi^2$
서울	14 56.0%	10 40.0%	1 4.0%	24.420 a** (0.018)
인천/경기	14 58.3%	10 41.7%	- -	
충청권	14 93.3%	1 6.7%	- -	
호남권	12 66.7%	6 33.3%	- -	
영남권	12 75.0%	4 25.0%	- -	
강원권	6 66.7%	1 11.1%	2 22.2%	
제주	3 50.0%	3 50.0%	- -	
합계	75 66.4%	35 31.0%	3 2.7%	

※ 기관유형별 카이제곱 검정결과 \* p<0.1, \*\* p<0.05, \*\*\* p<0.01

- ‘박물관미술관은 운영과 사업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각 연도의 사업계획의 달성 상황과 그 외 운영 상황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자체평가)’ 항목에 대한 응답은 유형별로 사립박물관의 부정응답, 설립주체별로는 공공기관과 개인(고유번호 부여단체, 사업자등록)의 유보응답 등에서 전체 응답 대비 차이를 보였음

구분		긍정		유보		부정		χ <sup>2</sup>
유 형	사립박물관	40	62.5%	19	29.7%	5	7.8%	
	사립미술관	37	75.5%	12	24.5%	-	-	
	합계	77	68.1%	31	27.4%	5	4.4%	

※ 기관유형별 카이제곱 검정결과 \* p<0.1, \*\* p<0.05, \*\*\* p<0.01

## 라.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조직 건전성B

### □ 긍정·유보·부정 응답분포

- <조직 건전성B>는 인력, 시설, 재정 등의 지원 안정성과 위기관리에 관한 18개 항목으로 구성됨. 이 중 15개 항목이 긍정 응답 70% 이상이었음
- 충분한 가용 자금의 보유와 소장품 담보로 대출불가, 재정의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증명, 청소년·고령자·장애인·유소아 보호자·외국인 등의 원활한 이용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필요에 대해서는 50~60% 사이의 긍정 응답 비율을 보임

[표 8-14]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조직 건전성B 전체 응답분포

(n=113, 단위: %)

주제 범주	해외기준 세부 내용	긍정	유보	부정
인력	1) 박물관·미술관 운영을 총괄하여 전담하는 관장을 두어야 한다	90.3	8.0	1.8
	2) 박물관·미술관의 설립목적(미션) 및 운영방침에 기초하여 박물관·미술관 사업(박물관·미술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의 학예사를 두어야 한다	83.2	15.0	1.8
	3) 학예사 외에, 박물관·미술관의 행정, 홍보마케팅, 시설관리 등과 같은 사무 및 기능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	73.5	19.5	7.1
	4) 박물관·미술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고용 관련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준수해야 한다. (모든 인력을 위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업무분장 및 협력 기준과 방법, 각 직무별 역할과 책임 설정 등)	84.1	14.2	1.8
	5) 박물관·미술관은 설립목적(미션) 및 운영방침에 따른 효과적인 박물관·미술관 활동을 위해,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전문적인 역량에 맞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담하고 배치해야 한다	81.4	18.6	-
	6) 박물관·미술관과 설립주체, 정부, 유관 협회나 단체 등은 박물관·미술관의 관장, 학예사, 그 외 직원의 능력 및 자질 향상, 경력 개발을	83.2	15.9	0.9

주제 범주	해외기준 세부 내용	긍정	유보	부정
	위한 연수(교육, 재교육, 보수교육 등) 기회를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			
	7) 박물관·미술관은 직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연수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83.2	15.0	1.8
재정	8) 박물관·미술관은 설립목적(미션) 수행을 위해 법적, 윤리적으로 합당하게 재정을 확보하고 책임감 있게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	75.2	22.1	2.7
	9) 박물관·미술관은 박물관·미술관 운영과 관련된 재정이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68.1	24.8	7.1
	10) 박물관·미술관은 충분한 가용 자금을 보유해야 하며, 소장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된다	69.0	20.4	10.6
시설 및 설비, 위기관리 (비상계획)	11) 박물관·미술관은 소장품, 직원, 이용자 등의 필요에 부합해 공간을 할당하고 시설을 활용한다	76.1	23.0	0.9
	12) 박물관·미술관은 시설의 장기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과 절차를 갖추고 있다	70.8	26.5	2.7
	13) 박물관·미술관은 소장품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효과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 실행할 수 있을 만큼, 부지와 건물의 장기적인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	74.3	22.1	3.5
	14) 박물관·미술관은 내화, 내진, 방충해, 방수, 방진, 방음, 온도도 조절, 일광 차단 또는 조절, 통풍 조절, 오염/파괴/도난 방지, 그 외 박물관·미술관자료를 적절하게 보관하는 데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2.6	24.8	2.7
	15) 박물관·미술관은 청소년 대상 음성해설 기기, 경사로, 점자 및 외국어 표기, 수유시설, 그 외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유소아 보호자, 외국인 등의 원활한 이용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58.4	37.2	4.4
	16) 박물관·미술관은 휴게시설 및 이용자의 쾌적한 관람을 위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70.8	25.7	3.5
	17) 박물관·미술관은 사고, 재해, 그 외 비상사태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박물관·미술관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태에 관한 위기관리 대응안내서를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한 위기관리 훈련의 정기적 실시, 그 외 충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77.0	22.1	0.9
	18) 박물관·미술관은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방재상, 위생상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사고나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장제한,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83.2	15.9	0.9

#### □ 문항별 교차 분석(유의미한 결과)

- ‘박물관·미술관의 설립목적(미션) 및 운영방침에 기초하여 박물관·미술관 사업(박물관·미술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주의 학예사를 두어야

한다' 항목에 대한 응답은 유형별로 살펴볼 때 사립박물관의 긍정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음

구분		긍정		유보		부정		χ <sup>2</sup>
유 형	사립박물관	49	76.6%	13	20.3%	2	3.1%	5.032a * (0.081)
	사립미술관	45	91.8%	4	8.2%	-	-	
합계		94	83.2%	17	15.0%	2	1.8%	

※ 기관유형별 카이제곱 검정결과 \* p<0.1, \*\* p<0.05, \*\*\* p<0.01

- '박물관미술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고용 관련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준수해야 한다(모든 인력을 위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업무분장 및 협력 기준과 방법, 각 직무별 역할과 책임 설정 등)' 항목에 대한 응답은 지역별 차이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응답자 수가 적은 만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구분		긍정		유보		부정		χ <sup>2</sup>
지 역	서울	22	88.0%	3	12.0%	-	-	27.866a *** (0.006)
	인천/경기	18	75.0%	6	25.0%	-	-	
	충청권	13	86.7%	2	13.3%	-	-	
	호남권	15	83.3%	3	16.7%	-	-	
	영남권	15	93.8%	1	6.3%	-	-	
	강원권	6	66.7%	1	11.1%	2	22.2%	
	제주	6	100%	-	-	-	-	
합계		95	84.1%	16	14.2%	2	1.8%	

※ 기관유형별 카이제곱 검정결과 \* p<0.1, \*\* p<0.05, \*\*\* p<0.01

- '박물관미술관과 설립주체, 정부, 유관 협회나 단체 등은 박물관미술관의 관장, 학예사, 그 외 직원의 능력 및 자질 향상, 경력 개발을 위한 연수(교육, 재교육, 보수교육 등) 기회를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 항목에 대한 응답은 유형별로 살펴볼 때 사립박물관의 긍정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음

구분		긍정		유보		부정		χ <sup>2</sup>
유 형	사립박물관	49	76.6%	14	21.9%	1	1.6%	4.820a* (0.090)
	사립미술관	45	91.8%	4	8.2%	-	-	
합계		94	83.2%	18	15.9%	1	0.9%	

※ 기관유형별 카이제곱 검정결과 \* p<0.1, \*\* p<0.05, \*\*\* p<0.01

- ‘박물관미술관은 직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연수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항목에 대한 응답은 유형별로 살펴볼 때 사립미술관의 긍정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으며, 설립주체별로도 약간의 차이가 확인됨

구분		긍정		유보		부정		χ <sup>2</sup>
유 형	사립박물관	49	76.6%	13	20.3%	2	3.1%	5.032a* (0.081)
	사립미술관	45	91.8%	4	8.2%	-	-	
합계		94	83.2%	17	15.0%	2	1.8%	

※ 기관유형별 카이제곱 검정결과 \* p<0.1, \*\* p<0.05, \*\*\* p<0.01

구분		긍정		유보		부정		χ <sup>2</sup>
유 형	공공기관	11	91.7%	1	8.3%	-	-	17.066a* (0.073)
	기업(인) 설립 비영리법인	11	100.0%	-	-	-	-	
	기업(회사법인) 소속 박물관·미술관	4	57.1%	3	42.9%	-	-	
	기업(인) 외 설립 비영리법인	16	80.0%	2	10.0%	2	10.0%	
	개인(고유번호 부여단체, 사업자등록)	50	82.0%	11	18.0%	-	-	
	영리형 뮤지엄기업	2	100.0%	-	-	-	-	
합계		94	83.2%	17	15.0%	2	1.8%	

※ 기관유형별 카이제곱 검정결과 \* p<0.1, \*\* p<0.05, \*\*\* p<0.01

- ‘박물관미술관은 소장품, 직원, 이용자 등의 필요에 부합해 공간을 할당하고 시설을 활용한다’ 항목에 대한 응답은 설립주체별 차이가 나타나지만 계층별 응답자수가 적은 만큼 해석에 유의가 필요함

구분		긍정		유보		부정		χ <sup>2</sup>
유 형	공공기관	11	91.7%	1	8.3%	-	-	16.498a* (0.086)
	기업(인) 설립 비영리법인	11	100.0%	-	-	-	-	
	기업(회사법인) 소속 박물관·미술관	4	57.1%	3	42.9%	-	-	
	기업(인) 외 설립 비영리법인	17	85.0%	2	10.0%	1	5.0%	
	개인(고유번호 부여단체, 사업자등록)	41	67.2%	20	32.8%	-	-	
	영리형 뮤지엄기업	2	100.0%	-	-	-	-	
합계		86	76.1%	26	23.0%	1	00.9%	

※ 기관유형별 카이제곱 검정결과 \* p<0.1, \*\* p<0.05, \*\*\* p<0.01

- ‘박물관미술관은 청소년 대상 음성해설 기기, 경사로, 점자 및 외국어 표기, 수유시

설, 그 외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유소아 보호자, 외국인 등의 원활한 이용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항목에 대한 응답은 유형별로 살펴볼 때 사립박물관의 긍정응답, 사립미술관의 유보응답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음

구분		긍정		유보		부정		χ <sup>2</sup>
유 형	사립박물관	41	64.1%	18	28.1%	5	7.8%	7.884a** (0.019)
	사립미술관	25	51.0%	24	49.0%	-	-	
합계		66	58.4%	42	37.2%	5	4.4%	

※ 기관유형별 카이제곱 검정결과 \* p<0.1, \*\* p<0.05, \*\*\* p<0.01

-한편 지역별로도 응답차이가 확인되나 응답자 수가 적은 만큼 해석에 유의가 필요함

구분		긍정		유보		부정		χ <sup>2</sup>
지 역	서울	18	72.0%	6	24.0%	1	4.0%	19.066a* (0.087)
	인천/경기	9	37.5%	13	54.2%	2	8.3%	
	충청권	7	46.7%	8	53.3%	-	-	
	호남권	11	61.1%	7	38.9%	-	-	
	영남권	11	68.8%	5	31.3%	-	-	
	강원권	6	66.7%	1	11.1%	2	22.2%	
	제주	4	66.7%	2	33.3%	-	-	
합계		66	58.4%	42	37.2%	5	4.4%	

※ 기관유형별 카이제곱 검정결과 \* p<0.1, \*\* p<0.05, \*\*\* p<0.01

- '박물관미술관은 사고, 재해, 그 외 비상사태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박물관미술관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태에 관한 위기관리 대응안내서를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한 위기관리 훈련의 정기적 실시, 그 외 충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항목에 대한 응답은 유형별로 살펴볼 때 사립미술관의 긍정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음

구분		긍정		유보		부정		χ <sup>2</sup>
유 형	사립박물관	44	68.8%	19	29.7%	1	1.6%	5.884a* (0.053)
	사립미술관	43	87.8%	6	12.2%	-	-	
합계		87	77.0%	25	22.1%	1	0.9%	

※ 기관유형별 카이제곱 검정결과 \* p<0.1, \*\* p<0.05, \*\*\* p<0.01

## 마.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

### □ 긍정·유보·부정 응답분포

○ <소장품(Collection, 자료)>은 14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긍정 응답 비율은 6개 항목에서 70% 이상, 5개는 50~60%였으며, 3개는 50% 미만으로 나타남

- 소장품의 수, 전체 소장품 중 대여 자료의 수 및 비중(%) 공개와 규정 및 계획에 따른 대여 자료 보존관리(48.7%), 소장품 관련 정보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47.8%), 소장품의 보존 및 안전 상태에 대한 최소 5년마다의 전문가 자문과 그에 따른 관리 계획 수립(46.9%)에 대한 긍정응답 비율이 50% 미만이었음

[표 8-15]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 전체 응답분포

(n=113, 단위: %)

주제 범주	해외기준 세부 내용	긍정	유보	부정
소장품 정책의 수립과 실행	1) 박물관·미술관은 설립목적(미션), 규정 및 정책, 전략/계획에 명시된 바에 따라 소장품을 합법적, 윤리적, 효과적으로 획득, 관리, 보존, 활용해야 한다	79.6	18.6	1.8
	2) 박물관·미술관은 소장품 및 그에 관한 정보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47.8	40.7	11.5
	3) 박물관·미술관은 소장품의 획득, 관리, 보존, 폐기, 이관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별도의 소장품 정책 공문서와 그에 관한 절차 규정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66.4	29.2	4.4
	4) 박물관·미술관은 미래 세대를 위해 중요한 컬렉션을 보존한다	78.8	21.2	-
	5) 박물관·미술관은 실물, 표본, 문헌, 도표, 필름 등의 각종 자료의 출처, 조사결과, 학술연구 상황, 지역 내 다른 소장처 존재 여부, 자료의 전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소장품의 필요 수량을 결정해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전시해야 한다	68.1	30.1	1.8
소장품 관련 조사연구	6) 박물관·미술관은 박물관·미술관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등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단독으로 또는 다른 박물관·미술관,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소장품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조사연구, 자료의 보존 및 전시 방법에 관한 기술적 연구, 그 외 다양한 학술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62.8	32.7	4.4
	7) 소장품 관련 연구는 학술적 기준에 적합하게 수행한다	69.9	27.4	2.7
소장품의 보존, 관리, 수복	8) 박물관·미술관은 소장자료의 보존·수복을 위한 원칙과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64.6	32.7	2.7
	9) 박물관·미술관은 소장품의 보존 및 안전 상태에 대해 최소 5년마다(필요한 경우 더 자주)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그 자문	46.9	42.5	10.6

주제 범주	해외기준 세부 내용	긍정	유보	부정
	내용에 따라 소장품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0) 박물관·미술관은 소장품의 수, 전체 소장품 중 대여 자료의 수 및 비중(%)을 공개해야 하고, 박물관·미술관의 규정 및 계획에 따라 대여 자료를 보존, 관리한다	48.7	41.6	9.7
아카이브 및 소장품 DB 구축	11) 박물관·미술관은 소장 자료에 관한 도서, 문헌, 조사자료, 그 외 필요한 자료의 수집, 보관, 활용에도 노력해야 한다	71.7	26.5	1.8
	12) 박물관·미술관의 적절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소장 자료 및 도서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74.3	23.9	1.8
소장품의 복제	13) 박물관·미술관은 자료의 수집 또는 보관이 곤란한 경우, 전사를 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또는 관외 대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복제, 모조, 모사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작하여 박물관·미술관 내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73.5	23.9	2.7
휴관/폐관 시 소장품 양도 등	14) 박물관·미술관이 휴관 또는 폐관할 경우, 소장 자료 및 도서 등을 다른 박물관·미술관에 양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적 자산인 소장품(및 아카이브 자료 등)이 소실 또는 산일되지 않고 적절하게 보존/활용되게 해야 한다	70.8	24.8	4.4

□ 문항별 교차 분석(유의미한 결과)

- ‘박물관·미술관은 소장품 및 그에 관한 정보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항목에 대한 응답은 설립주체별 차이가 일부 확인되지만 응답자 수가 적은 만큼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구분	긍정	유보	부정	χ <sup>2</sup>
유 형				
공공기관	6 50.0%	4 33.3%	2 16.7%	16.539a* (0.085)
기업(인) 설립 비영리법인	7 63.6%	3 27.3%	1 9.1%	
기업(회사법인) 소속 박물관·미술관	2 28.6%	2 28.6%	3 42.9%	
기업(인) 외 설립 비영리법인	12 60.0%	5 25.0%	3 15.0%	
개인(고유번호 부여단체, 사업자등록)	25 41.0%	32 52.5%	4 6.6%	
영리형 뮤지엄기업	2 100.0%	- -	- -	
합계	54 47.8%	46 40.7%	13 11.5%	

※ 기관유형별 카이제곱 검정결과 \* p<0.1, \*\* p<0.05, \*\*\* p<0.01

- ‘박물관·미술관은 미래 세대를 위해 중요한 컬렉션을 보존한다’ 항목에 대한 응답은 유형별로 살펴볼 때 사립미술관의 긍정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

를 보였음

구분		긍정		유보		부정		χ <sup>2</sup>
유 형	사립박물관	45	70.3%	19	29.7%	-	-	
	사립미술관	44	89.8%	5	10.2%	-	-	
	합계	89	78.8%	24	21.2%	-	-	

※ 기관유형별 카이제곱 검정결과 \* p<0.1, \*\* p<0.05, \*\*\* p<0.01

- ‘박물관·미술관은 박물관·미술관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등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단독으로 또는 다른 박물관·미술관,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소장품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조사연구, 자료의 보존 및 전시 방법에 관한 기술적 연구, 그 외 다양한 학술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항목에 대한 응답은 설립주체별로 응답차이가 나타나지만 응답자 수가 적은 만큼 해석에 유의가 필요함

구분		긍정		유보		부정		χ <sup>2</sup>
유 형	공공기관	6	50.0%	6	50.0%	-	-	
	기업(인) 설립 비영리법인	11	100.0%	-	-	-	-	
	기업(회사법인) 소속 박물관·미술관	5	71.4%	2	28.6%	-	-	
	기업(인) 외 설립 비영리법인	12	60.0%	5	25.0%	3	15.0%	
	개인	35	57.4%	24	39.3%	2	3.3%	
	영리형 뮤지엄기업	2	100.0%	-	-	-	-	
합계		71	62.8%	37	32.7%	5	4.4%	

※ 기관유형별 카이제곱 검정결과 \* p<0.1, \*\* p<0.05, \*\*\* p<0.01

## 바.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

### □ 긍정·유보·부정 응답분포

-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은 박물관·미술관 서비스, 해석·전시·교육·학습, 지역 연계 협력 등에 관한 이용자 관련 18개 항목으로 구성됨. 이 중 13개 항목은 긍정 응답의 비율이 70% 이상이었으며, 5개는 50~60%였음

[표 8-16]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이용자(경험) 전체 응답분포

(n=113, 단위: %)

주제 범주	해외기준 세부 내용	긍정	유보	부정
이용자 중심의 박물관·미술관 경험과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정책 수립)	1) 박물관·미술관은 다양한 공동체(커뮤니티)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 다양한 공동체를 지원하며, 다양한 공동체에 가치를 부여한다	77.0	21.2	1.8
	2) 박물관·미술관은 현재 및 잠재적 이용자와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그들의 필요와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용자 서비스 정책 및 전략/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70.8	27.4	1.8
	3) 박물관·미술관은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시설,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접근이 용이한 시설 확보, 인근 편의시설 정보 제공, 건물 내외부에 적절한 표지판 및 방향 표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및 소통 등)	74.3	23.9	1.8
	4) 박물관·미술관은 이용자와 지역 실정, 소장품의 특성, 전시 교체 일수 등을 감안해 개관일수 및 개관시간을 정하고, 휴일 및 야간 개관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를 도모한다	69.9	28.3	1.8
	5) 박물관·미술관은 고령자, 장애인, 유소아의 보호자, 외국인, 그 외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박물관·미술관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배치, 안내 유도차 대여, 외국어 해설자료 배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57.5	37.2	5.3
	6) 박물관·미술관은 청소년의 관심과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해, 청소년용 해설자료 배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57.5	39.8	2.7
소장품 해석 활동 전반 (연구/전시/교육)	7) 박물관·미술관은 소장품 및 그에 대한 다양한 학술적 해석과 지식을 토대로 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용자의 학습에 기여해야 한다. (다양한 관점의 해석에 의한 소장품 전시, 소장품 연구에 이용자 참여, 효과적인 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	73.5	25.7	0.9
	8) 박물관·미술관의 해석 활동(연구, 전시, 교육)은 학술적, 전문적인 연구에 기반을 두어야 하며, 박물관·미술관의 모든 연구 활동은 학술적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68.1	30.1	1.8
	9) 박물관·미술관은 교육의 목적과 철학을 명확히 공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의 자원과 콘텐츠를 활용한다	78.8	21.2	-
	10) 박물관·미술관은 모든 이용자들에게 확실한 정보와 연구에 기초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고, 일관되고 높은 품질의 해석 활동(연구, 전시, 교육)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80.5	18.6	0.9
전시 활동	11) 박물관·미술관은 해석 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박물관·미술관 운영 계획의 수립·개선에 활용해야 한다	74.3	23.9	1.8
	12) 박물관·미술관은 기본적인 운영방침에 기초해, 소장 자료의	75.2	22.1	2.7

주제 범주	해외기준 세부 내용	긍정	유보	부정
	상설전시(상설전시 갱신)를 하거나, 특정 주제를 정해 소장 자료 또는 임시로 빌려온 자료로 기획/특별전시를 행한다			
	13) 박물관·미술관은 전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장품 및 전시자료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시방법을 연구·개발하고, 문헌자료, 음성, 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다	74.3	25.7	-
	14) 박물관·미술관은 이용자의 학습활동 및 조사연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순회전,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을 개최한다	72.6	24.8	2.7
이용자의 학습 및 조사연구 활동에 기여	15) 박물관·미술관은 이용자의 학습활동 및 조사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장 자료에 관한 각종 강연회, 연구회, 아동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및 학습활동 행사 등을 개최하고, 학교나 교육단체에 박물관·미술관 활용에 필요한 안내나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77.0	22.1	0.9
	16) 박물관·미술관은 이용 편의 확대 및 조사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 박물관·미술관 안내서, 팸플릿, 도록, 연보, 연구보고서, 소장품 해설서 등을 제작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공개, 배포해야 한다	68.1	30.1	1.8
유관기관/단체 및 이용자/지역 주민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이용자 경험 증대	17) 박물관·미술관은 학교, 다른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그 외 문화기관, 학술기관, 교육단체, 행정기관, 민간기업이나 사업자 등과 긴밀히 연계, 협력하여 박물관·미술관 활동을 수행한다	76.1	23.0	0.9
	18) 박물관·미술관은 이용자 및 지역주민이 학습을 통해 지식 및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시자료 해설, 행사 기획, 학예업무 보조, 자료조사 등의 활동기회를 제공한다	73.5	25.7	0.9

□ 문항별 교차 분석(유의미한 결과)

- ‘박물관·미술관은 교육의 목적과 철학을 명확히 공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의 자원과 콘텐츠를 활용한다’ 항목에 대한 응답은 유형별로 살펴볼 때 사립미술관의 긍정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음

구분	긍정	유보	부정	χ <sup>2</sup>
유형				
사립박물관	45 70.3%	19 29.7%	-	6.298a** (0.012)
사립미술관	44 89.8%	5 10.2%	-	
합계	89 78.8%	24 21.2%	-	

※ 기관유형별 카이제곱 검정결과 \* p<0.1, \*\* p<0.05, \*\*\* p<0.01

- ‘박물관미술관은 모든 이용자들에게 확실한 정보와 연구에 기초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고, 일관되고 높은 품질의 해석 활동(연구, 전시, 교육)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 항목에 대한 응답은 유형별로 살펴볼 때 사립미술관의 긍정응답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음

구분	긍정	유보	부정	$\chi^2$
유형				
사립박물관	47 73.4%	16 25.0%	1 1.6%	4.957a* (0.084)
사립미술관	44 89.8%	5 10.2%	- -	
합계	91 80.5%	21 18.6%	1 0.9%	

※ 기관유형별 카이제곱 검정결과 \*  $p<0.1$ , \*\*  $p<0.05$ , \*\*\*  $p<0.01$

### 3절 소결

- 해외 국가의 우수 박물관·미술관 운영 기준을 바탕으로 구성된 ‘우수 박물관·미술관’의 기준에 대한 전체 83개 문항 중 응답자의 70% 이상이 ‘내용에 공감하며, 국내 반영 필요’하다고 긍정 응답을 한 응답은 총 53개 문항(63.9%)으로, 대체적으로 해외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우수성 기준에 대해 국내에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 응답자의 70% 이상이 ‘내용에 공감하며, 국내 반영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항목은 일차적으로 국내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우수 기준으로 적용 검토 가능할 것으로 판단
- 한편 파트별로 긍정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긍정도가 낮은 파트 및 개별 항목의 경향성도 볼 수 있음
  - <공공성>, <조직 건전성A>, <조직 건전성B>, <소장품>,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의 5개 파트 중 <공공성>과 <조직 건전성B>에 관한 항목은 가장 공감대가 높고 국내 반영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0%이상인 긍정 답변의 대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에 관한 항목 역시 대다수의 항목에서 70%대로 긍정도가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조직 건전성A> 항목은 30%~70%대까지 긍정도가 고르게 분포하나 대체로 70% 미만의 상대적으로 낮은 긍정도로 나타남
    - 특히 <조직 건전성A>에 해당하는 항목 중 ‘박물관미술관은 운영과 사업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체평가 외에, 외부 전문가, 이용자, 지역주민 등에 의한 외부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34.5%로 전체 문항 중 가장 낮은 긍정도를 보인 항목임
  - <소장품> 관련 항목은 40%~70%대까지 긍정도가 분포했으며, 80% 이상이 긍정적인 항목은 없었음
- 50%대로 긍정도가 낮게 나타난 항목은 운영 전략/계획의 수립 및 공표, 평가지표에 의한 평가 및 평가결과 공표, 장애인·고령자·청소년·영유아·외국인 등 특수/취약계층에 대한 시설/설비/서비스 제공에 대한 것이었음
- 50% 미만으로 긍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게 응답된 항목은 전문가·이용자 등에 의한 외부평가, 운영평가 결과의 공표, 소장품 상태에 대한 정기적인 외부 자문 및 관리계획 수립, 소장품의 수 및 소장품 정보 공개 등에 대한 내용이었음
- 위와 같은 결과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유형(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설립주체, 지역, 응답자 직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아 대체로 다양한 사립관 구성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총 83개 항목 중 위 변인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17개임

- 일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항목은 주로 유형(사립박물관과 사립미술관)과 설립 주체에 따른 차이였음
  - <공공성> 중 ‘박물관·미술관 활동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파트너 조직, 관리 기관, 직원 및 자원봉사자를 존중하고 이들과 투명한 관계를 구축한다’, <조직 건전성B> 중 ‘박물관·미술관 사업(박물관·미술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의 학예사를 두어야 한다, <소장품> 중 ‘미래 세대를 위해 중요한 컬렉션 보존한다’, <조직 건전성B> 중 ‘박물관·미술관은 직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연수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항목에 대해서는 사립미술관의 긍정응답이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음
  - 반면 <조직 건전성A> 중 ‘박물관·미술관은 운영과 사업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각 연도의 사업계획의 달성 상황과 그 외 운영 상황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자체평가)’에 대해 사립박물관의 부정응답이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으며, <조직 건전성B> 중 ‘박물관·미술관과 설립주체, 정부, 유관 협회나 단체 등은 박물관·미술관의 관장, 학예사, 그 외 직원의 능력 및 자질 향상, 경력 개발을 위한 연수(교육, 재교육, 보수교육 등) 기회를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와 ‘박물관·미술관은 청소년 대상 음성해설 기기, 경사로, 점자 및 외국어 표기, 수유시설, 그 외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유소아 보호자, 외국인 등의 원활한 이용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에 대해서는 사립박물관의 긍정응답이 유의미한 수준의 차이를 보였음
  - 설립주체나 지역별 교차분석의 경우 계층별 응답자 수가 적어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나, 대표적으로 설립주체별로는 <조직 건전성A> 중 ‘박물관·미술관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조직 및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한 공식적인 운영조직 규정과 이를 집행할 절차를 가지고 있다(이사회, 운영위원회, 관장, 직원, 자원봉사자, 이용자 등 포함)’와 ‘박물관·미술관의 설립목적(미션), 즉 박물관·미술관이 왜 존재하고 누구를 위한 박물관·미술관인지를 정의하는 공식 규정문서를 마련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설립주체 중 개인(고유번호 부여단체, 사업자등록)에서 부정응답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음

## 제9장 제언: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재정립 및 평가인증제 시행

---

1절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 기초의 재정립 및 주류화

2절 박물관·미술관의 분류체계 정비 및 법적 정의 개정

3절 사립박물관·미술관 인력정책 정립 및 인력지원사업 개선

4절 사립박물관·미술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5절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의 도입 및 활용



## 1절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 기조의 재정립 및 주류화

### 가.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 기조의 재정립

- 사립관 의존적 양적 확충 기조의 전환 공식화 필요: 공적(사회적) 책임 및 윤리 강화를 통한 지원 정당성 확보로
  - 「박미법」 제정은 국가에 의한 박물관·미술관 정책이 ‘1,000관 설립’이라는 양적 확충의 목표와 정책 기조를 설정한 것과 긴밀하게 연동하고 있음
  - 따라서 ‘진흥법’의 체제를 갖게 된 것은 한편으로는 이전까지의 국가에 의한 문화통제나 검열의 철폐라는 차원의 의미도 있으나, 위와 같은 양적 확충 기조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도 컸다고 할 수 있음
  - 이후 양적 확충 기조는 인구 수당 목표 건립 수를 설정하는 방식을 축으로, 단순히 양적 증가뿐 아니라 균형발전을 위한 지자체 당 박물관·미술관 수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정교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음
  -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공적 자원으로서의 성격이 명확한 국가, 지자체, 비영리법인 등뿐 아니라 영리법인이나 개인의 설립·운영까지 허용함으로써, 양적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해 왔음: 즉 설립·운영주체의 범위를 무제한 확장함으로써, 그리하여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지속적인 증가를 토대로 하여 박물관·미술관 수를 늘리는 정책 기조가 유지되어 왔음
  -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는 특별회계를 통해 공립관 건립을 국비로 지원함으로써 지자체의 박물관·미술관 건립이 급증해 공립관 수가 사립관 수를 앞지르는 현상을 보여 왔으며, 향후에도 국·공립관 건립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이는 명시적인 확충 정책의 중심축이 사립관 의존에서 국·공립관, 특히 공립관 건립으로 이행해 왔음을 시사함
  -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박미법」 제정 당시 설정한 ‘1,000관 건립’ 목표의 달성이 이미 이루어진 현 시점에서, 또한 사립관 의존적인 양적 확충 기조에서 국·공립관 건립이 활성화된 흐름으로의 전환을 감안할 때, 이전과 같은 사립관 의존적 확충 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 및 정책적 판단이 필요함
  - 즉 이미 전반적인 정책 흐름 및 현황에서 확인되는 양적 확충 기조의 전환을 직시하

고, 이를 공식화함으로써 사립관에 대한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재정립할 시점에 와있다고 할 것임

- 양적 확충 기초의 주축이 공립관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사립관의 경우에는 그간의 양적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 이루어진 각종 행·재정적 지원의 정당성이 약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대안적인 정책 방향의 설정이 필요함
- 특히 사립관에 대해서 설립계획 승인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각종 인허가 혜택 및 세제혜택, 운영비(인건비, 전세 및 교육 사업비, 경비 등) 지원, 토지 및 건물의 유·무상 임대 등이 이루어진 점은 설립·운영주체가 국가·지자체 외 민간이라 하더라도, 광범위한 공적 자원이 직간접적으로 투입되어 유지·관리되어 온 점에서 일반적인 사유재산 개념과 구별된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최근 영리법인 및 개인 설립의 증가 추세와 같이 기존의 박물관·미술관 정책이 목표로 한 공공적 역할과 상이한 형태의 박물관·미술관이 늘어나는 동시에, 박물관·미술관의 규범적 속성상 불허되어온 상업적 활동, 특히 유물이나 미술작품의 매매 및 중개알선이 발생하는 현상은 사립관에 대한 지원 정당성을 위태롭게 하는 요인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음
  - 이와 함께 기존의 사립관 의존적인 확충 기초는 정책적으로 기증·기부를 활성화하는, 보다 적극적인 공적 자산화 방향과도 상충된다고 할 수 있음: 사립관의 건립이 기증·기부에 비해 기대되는 이익이 크다고 판단된다면, 기증·기부의 활성화는 실효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음
- 따라서 향후 사립관에 대한 공적 지원의 정당성은 국내외적인 박물관·미술관 정책 동향과 보조를 맞추어 그 공적(사회적) 역할과 책임, 윤리를 강화하고 질적 성장을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데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상응하는 운영체제를 갖출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지원이 필요함

□ 사립관 의존적 양적 확충 기초에 수반된 국고보조사업 기반 운영체제 유지 불가피: 운영 투명성 등 공적 재원에 대한 책임 및 윤리 강화(재정 보고 및 공개)

- 기존의 양적 확충 기초 하에서 사립관에 대한 설립 및 운영 경비 지원, 세제혜택 등 행·재정적 지원이 확대되어 왔으며, 다수의 사립관이 인건비, 사업비, 경비 등 전반적인 운영비를 국고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실질적으로 다양한 국고보조사업에 의존해 다수의 소규모 사립관이 존립, 운영되고 있으며, 그 결과 국고보조사업의 기준과 규모가 각 사립관의 운영 방식과 규모를 좌우하는 결정적 요인이 되어 있음
  - 특히나 연간 사업비나 인건비의 지원사업 의존도가 높은 사립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이는 실질적으로 지원사업이 없으면 운영은 물론 존립이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할 수

있음

- 이와 같은 국고보조사업 등에 기반한 운영체제가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관계로, 현실적으로 이를 유지하는 것이 다수의 사립관의 존립 및 운영에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러한 운영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설립·운영주체 또는 개별 사립관에 대해 운영 투명성 등 공적 재원에 대한 책임 및 윤리를 강화해 사립관의 사회적 신뢰도 및 인식을 개선하고 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 현장사례연구를 통해 파악된 지원사업의 종류와 범위는 매우 다양하고, 사업비와 인건비를 주로 지원하고 있는데, 각각의 사립관은 이러한 지원사업을 복수로 신청해 연간 사업비와 인건비의 상당 부분을 조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그러나 대부분 지원사업별 결과보고만 이루어지고 있어, 개별 사립관 단위로 재원조달 및 이와 관련된 공적 재원의 내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거나 이를 정산하여 보고하는 방식은 「박미법」의 운영현황 ‘보고’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의 지켜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 (1) 향후 지원의 확대나 신규 지원사업의 개발을 위해서, (2) 사립관의 재정 건전성이나 운영난을 파악할 수 있는 정책자료의 확보를 위해서, 또한 (3) 공적 재원을 운영의 상수로 삼고 있는 운영방식의 속상상 그에 대한 재정 투명성을 통해 공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체 세입세출 규모 및 공적 재원의 투입 금액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보고, 공개하는 시스템 구축 및 연차보고서 발간이 필요함
  - 이와 같이 「박미법」 ‘보고’ 조항에 근거하여 재정 상황에 관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표준화된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 및 컨설팅, 지침 및 매뉴얼 마련 등의 제도적 지원을 하고, 향후 지원사업의 신청자격과 연동시키는 등의 방안을 마련함

#### □ 지원사업(국고보조사업 등)과 등록제도의 연계: 공적 책임 및 윤리 강화 방안

- 국고보조 및 지방비보조의 경우, 보조사업자의 자격이나 위법적인 수급, 사용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에 위배되었을 경우 「박미법」에 의한 등록취소 조치와 연계함으로써 박물관·미술관으로서의 공적 책임 및 윤리를 강화하도록 함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에서도 보조사업자 선정기준(제7조)으로 보조사업자의 재무안정성, 자부담 능력, 사업능력,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등을 고려해야 하고, 보조금 교부조건(제10조)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음

**제10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보조금법」제18조에 따라 교부조건을 붙이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바.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인 경우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인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 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선고를 받은 자(「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 아. 바목부터 사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가 보조사업자이거나 또는 그 자가 포함된 단체가 보조사업자일 때(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 27조의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인정하는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3. 보조사업자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납부 및 피보험자격 신고 등과 관련하여 법령상 의무를 지는 경우, 해당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는 사실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자(프리랜서 등 포함)에 대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
  - 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제14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방지 의무 이행 및 관련 서약서 제출
  - 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3조의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이행 및 이수 확인서 제출. 다만 1인 보조사업자이거나, 일회성 단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특히 사립관의 경우, 운영의 특성상 공적 재원이 연간 운영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며, 복수의 지원사업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고 있어 부정수급 등의 위법적 사례가 단일한 보조사업에서만 발생하지 않고, 다른 보조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나, 이러한 영향을 현행 보조금 관련 규정만으로는 제재할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함

- 가령, 이번 현장사례연구 과정에서 제보된 사례 중에는 사업비 보조를 받았음에도 이를 해당 목적 사업이 아닌 다른 용도로 전용해 허위로 정산을 하고, 그 과정에서 또 다른 보조사업인 인력지원사업에 의해 채용된 지원인력에게 이 허위정산을 지시하였다고 함
- 그러나 이처럼 부정수급과 그 사실의 위조·은폐 상황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에 걸쳐서 부정적, 위법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현행 보조금 관련 규정으로 제재하기가 곤란하고, 인력지원사업에 의해 채용된 지원인력의 경우 부정수급을 인지하더라도 고용상 또는 경력상의 불이익을 우려해 이를 신고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다른 한편, 사립관 대상 각종 지원사업은 사립관의 운영난 해소라는 측면을 우선하는 경향도 강해, 「박미법」에 의한 법적 기준이나 요건을 엄정하게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지원사업을 통해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이기도 함
  - 이러한 상황은 특히 인력지원사업에서 두드러지며, 지원을 받는 사립관 중에는 등록요건인 소장품(박물관 또는 미술관자료)의 소장 여부, 가치, 관리상태 등을 엄격하게 입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가 적지 않음
  - 문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지원사업과 등록제도의 연계가 취약하여 시정명령이나 등록취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 따라서 이러한 사립관의 특성을 고려해 「박미법」의 등록취소 관련 조항을 강화함으로써 재정지원사업에서의 불법적 사례를 방지하고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박미법」의 경우 등록취소 사유에 위와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아래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는 물론,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를 인증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특히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경우,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를 인증 취소 사유로 규정할 뿐 아니라, 인증 요건을 법률 조항으로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박미법」의 경우도 ‘등록요건’ 조항을 별도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함

**제18조(인증의 취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8조의 인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4. 경영악화 등 사회적기업의 유지가 어렵다는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실질적 동일성의 기준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인증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 절차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전문개정 2010. 6. 8.]

**제8조(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및 인증 절차)** ①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1.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추는 것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3.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 경우 그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는 것
  5.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일 것
  6. 제9조에 따른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는 것
  7.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인 경우만 해당한다)
  8. 그 밖에 운영기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갖추는 것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을 인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③ 사회적기업 인증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고,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0. 6. 8.]

## 나.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체계화

□ 설립계획 승인과 등록제도의 연계 강화: ‘등록박물관’, ‘등록미술관’ 표시의 사회적 의미 강화 및 인식 제고

- 「박미법」 제정 이후 사립관의 설립계획 승인 이후 개관하더라도 반드시 등록해야 하는 의무규정은 사라져, 개관 이후 등록까지의 ‘등록지체’ 현상이 두드러짐
- 박물관 및 미술관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삭제된 이후, 이에 상응하는 제도적 장치가 ‘등록 박물관 또는 등록 미술관’임을 명시하도록 한 것인데, 실질적으로 이 표시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취약하고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부재하여 실효성이 약함
- 따라서 박물관·미술관 명칭 사용의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1) 사립관의 설립계획 승인 시 등록요건을 비롯한 법적 준수 사항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설립 즉시 등록을 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전환하며,

(2) 정부에서는 ‘등록 박물관 또는 등록 미술관’ 표시가 갖는 의미를 국민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 교육하고 개별 박물관·미술관의 등록 표시 방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등록 표시 마크 개발, 시설 및 홈페이지에 등록 표시 방법 표준화 방안 마련 등을 도모하도록 함

- 또한 설립계획 승인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참고, 준수해야 할 ‘설립·운영기준(국가표준)’을 제정하고, 이에 관한 구체적인 설립·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배포하도록 함
- 이때 (사)한국박물관협회에서 설립·운영 관련 컨설팅 및 교육을 실시하여, 설립·운영에 예상되는 어려움과 관련 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안내 등을 통해 설립에 대해 보다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함
- 설립 직후에는 바로 등록하도록 법 규정을 보강하고, 개관 직후에 기준 등 법적 요건에 미비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설립계획 승인 시, 인허가 의제처리 사항의 최소화 및 설립지역의 제한 강화: 접근성 및 환경적 지속가능성 원칙 강조 필요**

- 「박미법」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는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규정된 인허가 사항을 의제 처리하고 있음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립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허가인가지정을 받거나 신고나 협의(이하 이 조에서 “허가인가 등”이라 한다)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21., 2009. 6. 9., 2010. 5. 31., 2014. 1. 14., 2020. 2. 18.>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개발 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 계획 시설 사업 시행자의 지정,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 계획의 인가
2.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공사 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3.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인가
4.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및 협의
6.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②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그 승인 내용을 다른 목적으로 용도 변경한 때 또는 제22조에 따라 폐관 신고를 하거나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허가나 인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③ 제1항에 따라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에 응할 때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그 허가·인가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할 수 없다.

- 「박미법」 제정 당시부터 마련되어 있던 이 인허가 의제 처리 사항은 농지전용, 산지전용, 입목, 벌채 등의 허가,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산림보호구역 지정 해제 등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 박물관·미술관이 증가하도록 만든 요인이기도 함
- 그러나 보통 박물관·미술관 설립 관련 심의 등에서 중요하게 간주하는 접근성 관점에서 본다면, 이러한 인허가 의제처리는 박물관·미술관의 중요한 원칙이자 윤리와 상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각종 지원사업에서 국민의 접근성이 저조하여 이용자 확보가 어렵거나 인력지원을 받아도 인력이 채용을 기피하는 등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판단됨
- 다른 한편, 농지 및 산지 전용, 벌채 등의 허가,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나 지정 해제 등까지 허용하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강조되고 ICOM의 새로운 뮤지엄(museum)의 정의에 반영될 ‘환경적’ 지속가능성’ 차원에서도 부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박미법」에 의한 인허가 의제처리 사항을 접근성 및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설립과 관련된 최소한의 상하수도, 도로 공사 등으로 제한하고, 농지, 산지, 산림보호구역 등의 전용 및 개발에 관한 5호 및 6호는 인허가 의제처리 사항에서 삭제하도록 함

#### □ 「박미법」 적용대상의 제한 및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폐지 검토

- 「박미법」 제5조(적용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2조(문화시설의 인정)에 의해서 박물관·미술관 외의 유사시설을 매우 포괄적으로 법 적용대상으로 설정하고 있음

**제5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된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9.3.5.>

**제2조(문화시설의 인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5조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동물원이나 식물원 또는 수족관 중에서 인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6.4.>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문화시설을 인정하려면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8.2.29.>

- 그러나 「박미법」에서도 다른 법에 의해 등록된 시설을 대상에서 제외함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새롭게 제정된 법률을 고려하여 그 법에 의해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법의 소관인 경우에도 함께 제외할 필요가 있음
- 그 대표적인 경우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2016년 제정, 2017년 시행. 환경부·해양수산부 소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2001년 제정·시행. 산림청 소관)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법률들이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박미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그 외에도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관광농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객이용시설업’ 중 ‘전문휴양업’에 포함되는 민속촌, 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박물관, 미술관 등에 관해서도 적용범위에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민속촌의 경우, 「박미법」에서는 별도의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으나, 「관광진흥법」에서는 “한국 고유의 건축물(초가집 및 기와집)이 20동 이상으로서 각 건물에는 전래되어 온 생활도구가 갖추어져 있거나 한국 또는 외국의 고유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축소된 건축물 모형 50점 이상이 적정한 장소에 배치되어 있을 것”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음
  - 또한 「관광진흥법」에서는 기본적으로 「박미법」의 요건 중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만 기준을 제한하여 정하고 있어 「박미법」의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기준이라 보기 어려움
-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분류되어 있는 문화의 집 또한 박물관·미술관의 정의 및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문화시설이며, 「문진법 시행령」 별표1에 의해 ‘지역문화활동시설’로 분류되어 있고, 그 정의는 “지역주민이 생활권역에서 문화예술을 이해하고 체험하며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련 프로그램과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문화의 집은 「문진법」의 ‘문화시설’로서 문예회관과 마찬가지로 규정하거나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서 ‘생활문화시설’로 포함시키고, 「박미법」의 적용대상에서는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와 함께 ‘제2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이라는 범주를 별도로 설정하는 방식 또한 재검토하여 장기적으로 폐지할 필요가 있음
- 이미 박물관 및 미술관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폐지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명칭의 시설로 열거한 각종 시설들을 별도의 범주로 규정, 분류하여 차등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 기초와도 부합하지 않음

-실제로 현재 2종으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는 시설의 수는 1종으로 등록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소수에 한정됨

- 따라서 「박미법」에 의한 법적 기준이나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를 굳이 2종으로 범주화하지 않도록 하며, 1종과 2종을 구별하여 차등화하는 분류체계를 폐지하고, 일괄 1종에 해당하는 요건을 중심으로 재편할 수 있도록 함

#### □ 종합적인 제도개선을 통한 사립관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질적 성장'의 실효성 제고

- 기존의 정책 기조 하에서 사립관은 '설립은 쉽고, 운영은 어려운, 또는 운영의 질이 낮은' 박물관·미술관이라는 인식에서 자유롭기 어려우며, 이러한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이미 국·공립관 대상으로 시행 중인 평가인증제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기도 함

-이는 한편으로 현행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의식과 결부되는데, 다수의 소규모 사립관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자격에 미달하는 사례("박물관 같지 않은" 박물관)까지 지원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되거나, 지원사업 관련한 불법적 사건이 발생하는 등 사립관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초래하는 사태를 경험하면서, 지원대상의 선별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어 왔음

-다른 한편, 기존 지원사업의 기간이나 규모가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는데, 지원사업 자체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어렵다는 인식 하에, 현행 지원사업의 '선택과 집중' 즉 소수의 자격 있는 대상에 한해 집중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지원 기간 및 규모의 확대 효과를 기대하는 방안이 제기되어 왔음

-이 두 가지 욕구가 결합되어 사립관에 대한 평가인증제 도입이라는 목소리로 표출되어 왔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욕구는 정확히는 사립관의 법적 기준 및 질적 수준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 요구와 지원사업의 확대 및 강화라는 요구에 의한 것으로, 평가인증제가 이에 부응해 기존의 제도적 결함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정책수단이라 보기는 어려움

- 그러나 박물관·미술관 정책은 「박물관법」 제정, 「박미법」 제정 이후 양적 확충만을 기조로 한 것은 아니었으며, 질적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규범과 장치들을 제도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음

- 물론 양적 확충 기조 하에서 질적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들이 폐지되거나 완화됨으로써 그 정책적 실효성이 취약해져 왔는데, 이를 추동한 것은 '규제완화'와 지방분권 또는 균형발전에 따른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이었다고 할 수 있음

- 그로 인해 박물관·미술관의 운영부실 문제가 사회적으로 공론화되었으며, 특히나 행정권한의 지방이양과 특별회계에 따른 공립관 건립 지원 등의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질적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정비 방안이 지속적으로 보충되었음: 국·공립관의 등록 의무화, 평가인증제도 도입 등의 실현은 그 대표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2012)에서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023)>(2019)까지의 제도개선 및 정책 목표 달성도 저조
  - 2012년 5월, 문체부가 종합적인 박물관 발전계획으로 발표한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은 ‘양적 확충’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온 박물관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검토한 뒤, 중장기적인 박물관정책 기조로서 ‘질적 성장’을 강조한 박물관 발전정책의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한 것임
  - 4대 추진방향으로서 박물관 인력의 전문화, 박물관 제도의 체계화, 박물관 경영의 효율화, 전시와 프로그램의 대중화 등을 설정함

(표 9-1)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2012) 4대 추진방향

박물관 인력의 전문화	박물관 제도의 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예사 제도 개선</li> <li>• 박물관 업무영역의 세분화</li> <li>• 학술연구 및 국제교류 진흥</li> <li>• 박물관 정책 추진체계 개선</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립·운영 최소 기준 마련</li> <li>• 사전평가제·사후관리제 도입</li> <li>• 박물관 등록제도 개선</li> <li>• 사립의 비영리법인화 지원</li> <li>• 평가인증제 도입</li> </ul>
박물관 경영의 효율화	전시와 프로그램의 대중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 LED 조명 교체 지원</li> <li>• 소장품 DB 구축</li> <li>• 박물관 세제 개선 추진</li> <li>• 정부 지불보증제도 도입 검토</li> <li>• 지자체 연계 사립 운영활성화</li> <li>• 지자체·대학 평가에 반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관광의 거점으로 육성</li> <li>• 사회문화예술교육 거점으로 육성</li> <li>•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개선</li> <li>• 국립박물관 단지 조성</li> <li>• 자연사박물관 건립 추진</li> <li>• 해외박물관 한국실 지원 체계화</li> </ul>

- 이 중 ‘박물관 제도의 체계화’를 위해 **설립·운영 최소 기준 마련, 사전평가제 및 사후관리제 도입, 박물관 등록제도 개선, 사립박물관의 비영리법인화 지원, 평가인증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함
- 주목할 점은 **평가인증제도의 도입만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정비를 계획하고, 그 중 하나의 요소로서 평가인증제도를 새로 도입, 시행하는 것으로 설계된 지점임**
- 그러나 **설립·운영의 최소 기준 마련이나 사립관에 대한 비영리법인화 지원, 등록제도 개선은 시행되지 않았고, 평가인증제, 사후관리제 없는 사전평가제만 도입, 시행되고 있음**: 2016년 5월, 「박미법」 개정으로, 국·공립박물관·미술관의 사전평가제 의무화, 국·공립박물관·미술관의 등록 의무화, 평가인증제도 및 기증유물 감정평가제도의 도입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이후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을 발표했을 때에도, 첫 번째 정책과제로서 **‘공공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위상 강화’라는 전략목표 하에 박물관·미술관 정책기반 체계화, 운영 관리 내실화, 평가제도 정비** 등이 제시됨
- 이 중장기 계획 또한 이전의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을 계승, 보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정비를 정책과제로 설정하였으나, 2022년 현재 시점에서 등록유형 정비 및 등록요건 강화, 운영관리 실태조사 및 통계시스템 구축, 박물관·미술관 평가 관련 전담기관 지정, 평가인증제 내실화, 사립관 특성화 지원 확대(전시, 교육, 연구 등 맞춤형 지원, 국내외 교류협력 우선지원, 우수사업 연속지원, 전문인력 채용지원 등), 전문인력 확충 및 역량 제고(현황 기초조사를 통한 고용환경 개선, 예비학예인력 육성·지원정책 수립, 학예사 자격증 제도 개선,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 확대 등), 소장품 등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연구·출판·아카이브 기능 강화, 세계 개선 및 후원 활성화, 안전기능 강화(안전한 관람환경 조성, 광역 공동 수장고 건립 및 보존처리 서비스 지원), 국내 박물관·미술관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협력망 기본계획 수립 등) 등의 정책과제들이 거의 실행에 옮겨지지 않고 선언적인 상태로 남아 있음**
- 사립박물관·미술관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이러한 제도개선 사항 및 정책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현재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핵심 기조인 ‘질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실행 방안이라 할 것임
- 또한 **평가인증제는 어디까지나 위와 같은 종합적인 제도개선의 틀 내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설정되어 온 만큼,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평가인증제만을 시행하는 것은 평가인증제의 정책적 역할이나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에도 어려우므로, 평가인증제 도입의 선결조건으로서 위와 같은 전반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표 9-2]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2019)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문화로 삶을 풍요롭게 하는 박물관·미술관		
3대 목표	공공성 강화	전문성 심화	지속가능성 확보
	박물관·미술관 이용률: 2018년 16.5%→2023년 30% 1개관 인구수: 2019년 4.5만 명→2023년 3.9만 명		
전략 및 핵심 과제	1. 공공 문화기반시설로서의 위상 강화 ① 박물관·미술관 정책기반 체계화 ② 박물관·미술관 운영관리 내실화 ③ 박물관·미술관 평가제도 정비 2. 모두가 누리는 박물관·미술관 ① 전국적인 박물관·미술관 문화향유 기반 구축 ② 누구에게나 열린 박물관·미술관 조성 지원 ③ 박물관·미술관 고객관리 선진화 3. 전문적 기능 및 역량 강화		

- 
- ① 사립과 대학 박물관·미술관 특성화 지원
  - ②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확충 및 역량 제고
  - ③ 소장품 등록 및 관리시스템 구축 지원
  - ④ 연구·출판·아카이브 기능 강화
4. 지속가능한 운영기반 마련
- ① 첨단기술 기반 미래형 박물관·미술관 구축
  - ② 박물관·미술관 세제 개선 및 후원 활성화
  - ③ 박물관·미술관 안전기능 강화
5. 협력을 위한 시너지 제고
- ① 국내 박물관·미술관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② 박물관·미술관 국제협력 확대
  - ③ 박물관·미술관 남북교류 활성화
- 

## □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추진체계 정비 및 지자체의 책임성 강화

-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의사결정 및 집행구조를 보다 체계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함
  - 현재 「박미법」에서는 문체부장관이 박물관·미술관 진흥을 위한 기본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지자체 장은 소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제9조)
  - 그러나 이 규정은 법정 종합계획으로서의 주기(일반적으로 5년)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며, 이에 따른 하위 진흥계획 역시도 중장기 계획인지, 연도별 계획인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못함(규정의 실효성 취약)
  - 또한 법정 종합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 역시 구체적으로 명기되어 있지 못하며, 이 종합계획에 관한 검토 및 심의를 위한 정책 의사결정기구(위원회)도 부재함
  - 계획의 집행에 관해서도 전담 집행기구가 부재하고, 집행을 위한 전담기구의 지정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러한 집행과 관련된 지침 역시 마련되어 있지 못함
  -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보다 분명하게 하는 것이 시급하고, 이 위에서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종합적인 정책 의사결정 및 집행의 체계화가 우선적으로 마련되는 것이 필요한 상황임
- 이와 같이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종합적인 정책적 의사결정과 집행 체계가 정비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지원사업을 복수의 주관기관을 통해서 시행하는 구조는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목표 및 방향의 혼돈을 초래하고, 지원사업이 박물관·미술관 정책에서 갖는 의미와 기능을 모호하게 하며, 박물관·미술관 정책 전반의 정책 성과 관리 및 평가를 곤란하게 할 수밖에 없음

- 감사원 지적사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지원사업에서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은 단순히 지원사업 주관기관만의 책임이 아니라, 지원사업 주관기관에 대해서조차 문체부의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인하며, 이러한 상황은 위와 같은 종합적인 정책 의사결정 및 집행 체계의 미비에 의하는 바가 큼
-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주관부서가 문체부 내에 독립적으로 신설된 것도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나, 다시 조직개편 과정에서 다른 문화기반시설을 포괄하는 문화기반과로 재편된 현실은 이러한 체계적 정비를 고려할 때 긍정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음
-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진흥 조례' 제정 확산 및 협력망사업 추진 의무화
  - 현재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거의 대부분 진흥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여전히 제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 있어서, 사립관 정책을 위해서는 진흥 조례 제정을 필수화할 필요가 있음
  - 아울러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선택적으로 진흥 조례 또는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향후 사립관 관련 정책의 실효성 있는 수립과 시행을 위해서는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도 진흥 조례 제정을 확산할 필요가 있음
  - 특히 공립관 설립과 관련된 '설립 및 운영 조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것과 더불어, 공립관 설립 시에는 의무적으로 진흥 조례를 제정하고 협력망 사업 등의 시행을 의무화하도록 함
- 또한 지자체의 공립관 건립 관련 사전 건립타당성 평가 시, 지역 내 사립관 진흥계획을 첨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그 진흥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추후 공립관 운영 관련 지원이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
- 전체적으로 사립관에 대한 지원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지자체의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인력지원사업 관련한 지자체 부담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함
- 특히 국고보조사업에 의한 인력지원 시 '국고+사립관 자부담' 매칭으로 추진되는 방식을 '국고+지방비 매칭'의 형식으로 전환하여 지역문화인력으로서 학예인력 육성 및 고용 안정화에 지자체가 적극 참여하도록 함
  - 이를 위해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종합계획' 수립 및 이행 시 '지역문화전문인력'으로서 학예사의 육성 및 고용 계획을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함

#### □ 박물관·미술관 운영실태조사 내실화 및 통계시스템 구축

- 박물관·미술관의 운영실태조사와 관련해서는 「박미법」, 「문진법」, 「지역문화진흥법」 등 서로 다른 법률 및 정책 영역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박미법」에 의한 운영현황보고에 근간한 '문화기반시설총람'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음
  - 「문진법」과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실태조사는 3년 주기로 규정되어 있는데, 양자 모두 2018

년 이후에 신설된 것으로서 기존 조사로 같음하거나 활용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것 중 하나가 박물관·미술관 운영실태조사임

- 그러나 「박미법」에서는 ‘보고’를 매년 의무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운영 현황 보고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대통령령이 제정되지 않은 상태임
- 그 결과 운영현황의 상세 항목과 방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법에서 정한 ‘관리·감독 현황’은 현행의 항목에도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조사 항목을 작성하지 않은 공란이 특히 재정운영과 관련해 다수일 뿐 아니라,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러한 문제점은 등록 사립 및 대학 박물관·미술관의 경우에 보다 두드러짐
  - 데이터의 신뢰성과 관련해서는 오래 전부터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사립관과 관련해서는 형식적인 보고에 그치는 것으로 간주되어 연구자 이전에 현장에서의 신뢰성이 매우 낮은 실정임
  - 이처럼 신뢰성이 낮은 것으로 간주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책을 수립, 시행하게 되면,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나 지지도도 낮을 수밖에 없으며,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금까지 별도의 운영현황조사가 간헐적으로 진행되어 왔음
- 「지역문화진흥법」의 경우, 실태조사의 범주 내에 지역 내 문화시설 현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역시 「박미법」에 의한 보고 데이터를 인용하는 방식이며, 대신에 2021년에 “지역문화진흥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간 문화정보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을 새롭게 법제화하고 추진하고 있음: 이를 통해 실태조사 결과의 관리 및 활용을 시스템화하고자 하나 그 구축 및 운영이 현실화된 단계는 아님
- 반면 도서관의 경우, 국가승인통계로 전국도서관통계를 1년 단위로 작성하고 있는데,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을 활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음
  - 조사항목은 도서관 기본정보, 소장자료, 시설 및 설비, 인적자원, 예산현황, 이용 및 이용자, 장애인 및 어린이서비스, 전자서비스 등의 8개 영역으로 구성됨
  - 도서관 운영기관의 다원화, 관련 정책 미흡, 종합적 도서관 통계 필요, 통계 산출시 많은 시간 소요 등의 이유로 종합적인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1) 신뢰성 있는 기초데이터 제공으로 정책 및 연구지원, (2) 통계정보의 공유 강화를 통한 통계의 중복생산 방지 및 일관성 유지, (3)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통계조사를 통합 실시하여 공신력 있는 도서관 통계 제공 및 업무 효율성 제고 등을 도모하고자 함(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www.libsta.go.kr)
  - 이와 같은 시스템 구축 수요는 박물관·미술관 정책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은 통계조사뿐 아니라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에도 함께 활용되고 있어,

정책적 활용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도서관 수와 박물관·미술관 수가 모두 1,000관을 상회하는 규모의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비해 박물관·미술관 통계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큰 한계로서 시급하게 통계시스템 구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특히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진법」이나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실태조사가 자체 조사를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박물관·미술관 운영현황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인 점을 감안한다면 운영실태조사 및 통계시스템 구축의 내실화가 문화정책 전반에서 더 시급하다고 하겠음

[표 9-3] 박물관·미술관 운영실태조사 관련 법적 근거 비교

구분	내용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p><b>제4조의2(문화시설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b>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시설 설치·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의 운영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p> <p>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문화시설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고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p> <p>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주기,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본조신설 2018. 10. 16.]</p> <hr style="border-top: 1px dashed black;"/> <p><b>제2조의2(문화시설 실태조사)</b>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3년마다 실시한다.</p> <p>② 실태조사는 별표 1의 문화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연시설(영화상영관은 제외한다)</li> <li>2. 전시시설(화랑 및 조각공원은 제외한다)</li> <li>3. 도서관</li> <li>4. 지역문화활동시설(청소년활동시설은 제외한다)</li> <li>5. 문화 보급·전수시설(전수회관은 제외한다)</li> <li>6. 종합시설 중 문화예술회관</li> </ol> <p>③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문화시설의 종류별 개수</li> <li>2. 문화시설의 명칭 및 지역별 소재 현황</li> <li>3. 문화시설의 시설·인력·이용자 수 및 소장자료 등의 현황</li> <li>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li> </ol> <p>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기간, 조사목적,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계획을 작성하여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p> <p>⑤ 실태조사는 서면조사의 방법으로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p>

구분	내용
----	----

법령에 따라 문화시설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16.]

「지역문화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지역문화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수립과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3년마다 정기조사를 실시하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12. 22.>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2.>

**제13조의2(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진흥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 간 문화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련 업무에 필요한 범위에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정보를 제공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역문화에 관한 정보시스템과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을 전자적으로 연계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지역문화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문화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의 전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2.]

**제7조의2(실태조사의 내용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 관련 제도 및 예산 등 지역문화 정책 현황
2. 생활문화시설 등 지역의 문화시설 현황
3.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등 지역의 문화예술단체 및 지역문화전문인력 현황
4.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지역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구분	내용
	<p>위한 사업 현황</p> <p>5.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역문화진흥정책의 수립 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②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자료의 사용 목적, 범위 및 제출기한 등을 명시해야 한다.</p> <p>③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한다.</p> <p>[본조신설 2021. 6. 22.]</p> <p><b>제8조의2(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b> 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법 제13조의 2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이하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역문화 관련 정보의 수집과 전자적 연계</li> <li>2. 지역문화 관련 통계정보의 관리</li> <li>3. 지역문화 관련 정보의 표준화와 공동 활용</li> <li>4. 실태조사 결과의 관리 및 활용</li> <li>5. 그 밖에 지역문화 관련 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li> </ol> <p>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문화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p>[본조신설 2021. 6. 22.]</p>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p><b>제30조(보고)</b> ① 제16조에 따라 등록된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 또는 관할 등록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리·운영, 관료료와 이용료, 지도·감독 현황 등의 운영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09. 3. 5., 2020. 2. 18.&gt;</p> <p>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의 등록이나 제22조제 4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lt;개정 2008. 2. 29., 2016. 5. 29., 2018. 10. 16., 2020. 2. 18.&gt;</p>

- 특히 2020년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를 통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공공기관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이에 따른 국가 등의 책무(제3조)로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이 규정됨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개발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공기관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문의  
 전국도서관통계조사 070.4403.7016~7 / 전국도서관운영평가 070.8828.3073~5  
 시스템문의 070.4477.1793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 이처럼 데이터기반행정이 제도화된 환경을 계기로 박물관·미술관 정책과 관련된 데이터를 통합적, 체계적으로 생산, 관리, 활용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 통계시스템과 연계한 ‘통합적인 박물관·미술관 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박물관·미술관 정책 추진체계의 구축 기반 마련

○ 박물관·미술관 정책은 200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방분권이 추진되었으며, 설립계획 승인이나 등록 관련 업무와 같이 정책의 주요 행정권한이 상당 부분 ‘지방이양’되어 있는 상태임

○ 이러한 상황에서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유기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으며, 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기초적인 토대로서 통계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전국적인 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공유가 시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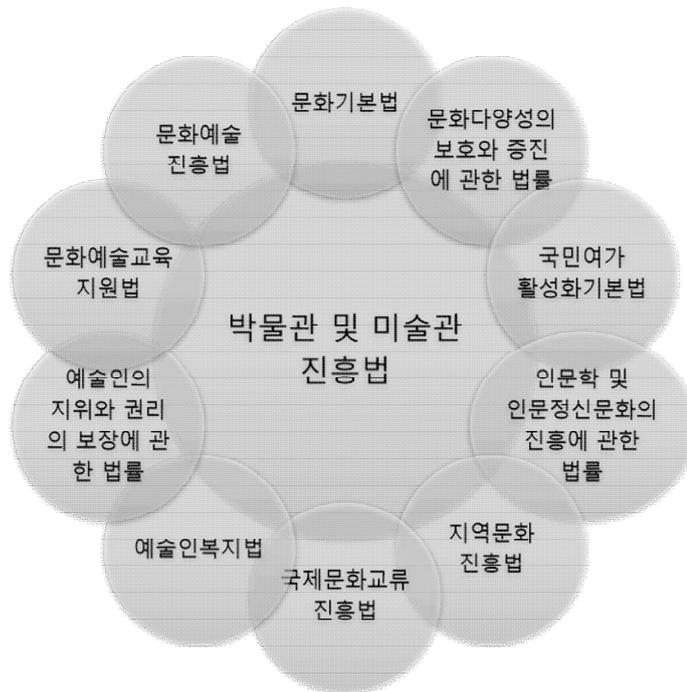
- 행정정보에는 법제정보(「박미법」을 비롯한 지자체 조례, 그 외 행정규칙 등)는 물론, 지방이양으로 인해 분산되어 있는 행정권한과 관련되는 개별 박물관·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과 등록 관련 업무, 이에 관한 각종 행정문서나 정보가 수집되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박물관·미술관 행정업무 담당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특히 설립계획 승인 당시의 자료와 등록 업무 관련 자료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등록, 변경등록, 등록취소, 폐관 등의 사항을 일관성 있게 파악하는 등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의 행정업무 이력을 공유함으로써 업무 효율성과 정책 추진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사립관의 경우, 최초의 설립계획 승인이나 등록한 지자체에 지속적으로 존립하지 않고 다른 지자체로의 이전 등을 비롯해 동일한 설립·운영주체에 의한 지자체 간 이동이나 변경 사항들이 발생하기도 하여, 국가와 지자체, 지자체와 지자체 사이의 업무확인이나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함
  - 현재 국립관을 제외하면 등록업무가 지자체 단위로 이루어지고 행해지고 있으므로, 이전할 경우에는 이전 등록 관련 정보와 단절된 새로운 등록번호와 등록정보가 생성되는 방식이어서 동일한 박물관·미술관에 관한 행정정보의 연속성이 확보되지 못함
  - 지자체에 따라서는 등록 관련 제출 서류의 보관이나 정보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서,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수반한 통합적인 행정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설립계획 승인-운영현황-등록 관련 정보-평가인증 등이 동일한 시스템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정보가 축적되고 활용되어야만 국가 차원의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효과성이 증대될 수 있다고 하겠음
- 향후 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따른 행정정보의 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수요가 보다 증대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에 대비하여 통합행정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

## 다.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주류화(mainstreaming)

-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위상 재정립: 타 법제 및 정책과의 관계 체계화 및 연계 강화
  - 본 연구에서 말하는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주류화’는 최근 박물관·미술관 정책이 문화정책 전반의 변화 속에서 과거에 비해 정책적 위상이 낮아지거나 주변화되고 소외되는 현상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sup>64)</sup>

64) 사전적 의미로 ‘주류화’는 사상이나 학술 따위의 주된 경향이나 갈래가 되는 것, 또는 조직이나 단체 따위

- 이러한 주류화는 한편으로는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시의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 박물관·미술관의 사회적 가치 및 역할을 확장하며, 그 종사자들과 관련된 각종 정책적 사안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으로 검토, 실행할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음  
- 특히 사립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사회적 인식이 부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아서, 이러한 인식 개선과 인식 개선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함
- 박물관·미술관 정책은 아래와 같이 문화분야의 다양한 정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확장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를 인식한 정책 수립, 시행이 필요함
- 현재는 이러한 연계성이 법제상으로는 개별 정책 수립에 있어서 거의 드러나지 않는데, 이러한 점은 현재 ICOM에서 개정을 추진 중인 새로운 뮤지엄(museum) 정의에도 부합하지 않음
- 「문진법」 다음으로 제정 역사가 오래된 「박미법」의 특성상, 이후에 새롭게 제정된 법률이나 새로 구체화된 정책 분야와의 연계성이 취약한 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문화분야를 넘어서 다른 정책 분야로까지 확장되는 문제임



〈그림 9-1〉 문화분야 다른 법률과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관계

의 내부에서 다수파가 되는 것을 의미함. 정책 차원에서는 ‘성 주류화’를 통해서 본격적으로 확산된 개념이라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의미를 담아 모든 정책에서, 최소한 문화정책이나 관광정책 분야에서 박물관·미술관에 고유한 가치와 관점, 윤리나 규범 등은 물론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핵심적인 정책 목표와 방향, 과제 등이 다른 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데에도 중요하게 인식되고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적극적으로 연계되도록 한다는 뜻으로 사용함.

- 뿐만 아니라 국·공립관이나 대학관은 물론, 사립관에 대해서는 특히 다른 법률에 의한 특례, 세제감면, 행정적 지원 등과 관련한 규정들이 이미 다수 존재하고 있으나 여러 방식으로 대상을 규정하고 있어 「박미법」에 의한 등록제도를 무력화하는 경향이 강해, 이러한 법률들의 대상을 일괄 ‘등록 박물관 또는 미술관’으로 개정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란이나 국민적 인식에의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 □ 문화예술진흥정책과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관계 재정립

##### (1) ‘문화시설’ 관련 법제 개선: ‘전시시설’과 독립된 범주로 취급 필요

- 문화정책 중 가장 오래된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문화예술정책은 문화시설에 관한 정책을 포괄하고 있으며, 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문진법>에 의해 규정함
- 「문진법」에서 ‘문화시설’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각종 시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법적 개념이며, 이를 다시 공연시설, 전시시설 등 기능별로 구분하고 있음
- 「박미법」에 의한 박물관·미술관을 ‘전시시설’로 구분하고 있는 점은 「박미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의 기능인 자료의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 중 하나인 전시 기능만으로 박물관·미술관을 규정함으로써,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국민적, 정책적 인식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문진법」에 의한 분류방식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비영리성을 기본 속성으로 하는 박물관·미술관과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시설인 회랑을 함께 ‘전시시설’로 포괄하는 것 역시 박물관·미술관은 물론 회랑의 속성과 기능을 왜곡하는 것이므로 함께 개정되어야 함
- 국제적으로 박물관·미술관의 사회적 역할을 더욱 적극적이고 확장적으로 규정하면서 이에 따른 기능 설정 논의 역시 지식생산과 공유, 그에 기반한 인문사회적 성찰 등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러한 분류방식을 유지하는 것은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음
- 우선적으로는 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박물관·미술관을 ‘전시시설’이 아닌 별도의 범주로 독립시키는 것이 필요함
- 또한 법적 근거 없이 추진되고 있는 ‘작은 미술관’ 사업의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하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함
- 이는 도서관정책에서의 ‘작은 도서관’ 진흥의 정책 추진 방식을 참고하여 법제화 여부를 검토하고, 박물관·미술관 정책으로서의 정식화하는 방안의 타당성 등을 진단해야 할 것임

##### (2)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관련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전문예술법인·단체

## 지정·육성제도의 실효화를 통해 비영리성 강화 및 경영 활성화 도모

- 「문진법」 및 동법 시행령은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에 관한 조항들을 별도의 장으로 편성하여 규정하고 있음: 이때 ‘문화예술 공간’은 ‘문화시설’ 개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

### 「문화예술진흥법」의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관련 조항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설립한 공연장 또는 예술단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2. 미술, 음악, 무용, 연극, 국악, 사진과 관련된 전시, 공연, 기획 및 작품 제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3. 공연 또는 전시시설의 운영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4. 문화예술 분야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③ 제1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1. 18.>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예술활동의 실적 저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3. 그 밖에 전시·공연 질서 문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8.>

⑥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8.>

⑦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예술법인·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전문예술법인·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 18.>

⑧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 18.>

[전문개정 2011. 5. 25.]

###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관련 조항

**제3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4조(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①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이하 “전문예술법인·단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1. 5.>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 1부
2. 고유번호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7조에 따른 박물관 등록증 또는 미술관 등록증이나 「공연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공연장등록증 사본 1부(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최근 2년간(설립된 지 2년이 되지 않은 법인·단체의 경우 설립된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의 조직·인력 운영현황 자료 1부
5. 사업계획서 1부
6. 삭제 <2021. 1. 5.>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한다. <개정 2021. 1. 5.>

1. 조직·인력 운영의 적정성
2. 재정 운영의 건전성
3. 공연·전시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수행 능력 또는 공연·전시시설의 운영 능력
4. 공연·전시된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도지사가 전문예술법인·단체를 지정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1. 25.]

**제4조의2(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① 법 제7조제3항 후단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가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변경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1. 25.]

**제4조의3(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 취소)** ① 법 제7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획 또는 제작한 공연·전시 실적이 연 1회 미만인 경우
2. 1년 이상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을 지원하지 않거나 공연·전시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② 법 제7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전시·공연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술활동 실적을 제출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행위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취소 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1. 25.]

- 문화시설 설치 및 이용에 관한 시책은 이 법에 근거해서 별도로 수립되지는 않으며,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이라는 점이 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나, 이 역시 관련 상세 규정은 부재함
- 박물관·미술관 정책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연관이 있는 조항은 전문예술법인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것으로,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주체가 소정의 서류를 준비해 지정 신청이 가능함: 정관 또는 그에 준하는 약정, 조직·인력 운영현황,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전시나 문화예술 사업 및 활동의 지원 실적 또는 전시시설 운영 실적, 박물관·미술관 등록증 등
  - 전문예술법인으로 지정된 박물관·미술관이 일부 존재하며, 지정된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기부금 공개모집이 가능하고,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상속세 및 증여세 면제, 그리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예산 범위 내 경비 보조, 공공자금 지원 우선 등의 혜택이 주어짐
  - 그러나 현재는 문체부 산하 (재)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전문예술법인·단체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법상으로는 박물관을 포함해 지정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주관 기관의 성격상 미술 분야로 특정되는 미술관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법의 규정대로 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기부금 공개모집 등의 혜택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박물관·미술관 정책에서도 적극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함: 이를 통해 박물관·미술관의 비영리성 강화 및 경영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내실화하도록 함

## □ 지역문화정책과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관계 재정립

### (1) '생활문화시설'로서의 박물관·미술관 규정에 대한 인식 제고 필요

- 2014년에 제정된 「지역문화진흥법」은 지역문화에 관한 사항이 단편적으로 여러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지역문화 진흥 정책의 체계적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종합적, 기본적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역간 문화격차 해소, 지역주민의 문화생활 향상,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경쟁력 제고 등을 목적으로 제정됨
- 이 법의 중심 개념은 '지역문화'와 '생활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박물관·미술관은 「문진법」에 의한 '문화시설'로서 이 법에 의해 '생활문화시설'로 다시 규정됨으로써 지역문화정책에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음
  -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함
  -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함
  -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함: 생활문화시설은 그 범위가 매우 확장적이며 「문진법」에 의한 '문화시설'을 모두 포괄하고 있음
  - 그러나 문체부가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지역문화실태조사'에서는 '문화기반시설'과 '생활문화시설'을 구별하여 지표화하고 있어, 정책 개념의 일관성과 그 적용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한데, 현장에서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는 법정 개념과 범위에 충실하게 통일될 필요가 있음 (장훈 외, 2022)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및 생활문화시설의 범위에 관한 고시

**제2조(생활문화시설의 범위)**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이루어지는 시설로 한다.<개정 2021. 6. 22.>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2.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에 따른 지역자치센터 및 마을회관
4.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
5.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문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지역주민의 지속적인 생활문화를 위하여 공동 이용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다음 시설을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2조 제4호 규정에 의하여 생활문화시설로 본다.

1. 생활문화센터: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는 문화시설
2.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지역주민의 영상문화 향유 및 미디어 체험 등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립되는 시설
3. 지역서점: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문화활동 공간(서점 전용면적의 1/10)과 설비를 갖추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매월 1회 이상의 독서동아리 운영, 저자초청 특강, 전시 및 공연 등 문화행사를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서점으로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한 서점

## (2) 지역문화정책의 세부과제 전반과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연계성 강화:

### 사립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적 고려 필요

- 이 법에 의한 5년 주기의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에는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필수로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과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별도의 조항을 마련하고 있음

#### 「지역문화진흥법」의 생활문화시설 및 지역문화전문인력 관련 조항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자는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건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사용할 것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9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산어촌 등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대하여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③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선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문화진흥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이 법은 「박미법」에 없는 ‘확충’을 위한 시책 마련을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건립, 운영, 사업시행에 대한 예산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 또한 이를 지자체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박미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휴공간 활용 관련 규정이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이라는 규정 하에 포함되어 있음
- 그 외에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목표로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지원과 시책 마련을 국가 및 지자체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우선 지원을 함께 제시하고 있음
  - 실제로 사립박물관·미술관 중에는 적지 않은 경우가 문화환경 취약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운영난을 겪어 왔으나, 지역문화정책에 따른 우선 지원의 사례를 찾기는 어려움
-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은 1차(2015), 2차(2020) 계획까지 수립되어 발표, 시행되고 있으나, 이 계획 내에서 ‘생활문화시설’로서 박물관·미술관을 확충, 지원하는 방안이 박물관·미술관 진흥계획과는 거의 연계되지 않은 채로 공표되어 있어, 정책의 정합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연계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실행이 필요함
  - 현재 문체부의 조직편제상으로도 지역문화정책관 산하에 박물관·미술관 정책 소관의 문화기반과가 배치되어 있으나, 실제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에서는 박물관·미술관에 관한 사항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수립, 시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1차 계획의 경우, 지속적인 문화시설 확충 정책으로 지역문화기반시설이 획기적으로 증가했으나(등록 박물관·미술관의 수는 이 시기에 이미 국·공립 도서관 수를 능가하는 수준), 예산부족으로 인한 운영난, 콘텐츠 부족, 인력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문화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활용 미비로 인한 리모델링 수요가 발생함을 지적함

- 이에 1차 계획에서는 지역문화 균형발전 토대 마련을 목표 중 하나로 설정했으며, 그 성과지표로 문화기반시설을 비약적으로 확충하는 것을 설정함: 2014년 2,515개소에서 2019년 3,375개소로 확충
- ‘생활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의 경우, 생활문화센터의 신규 조성을 중심으로 과제를 제안했으며, 지역문화기반시설의 균형적 확충을 위해 (1) 도시규모, 지역단체, 인구 등 기준으로 지역별 시설 수, 종류, 규모에 대한 정책 가이드라인 마련, (2)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등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문화기반시설 확충 지원, (3) 중소형 및 접근성 높은 복합문화공간 형태의 문화기반시설 확충, (4) 지역문화기반시설의 기능 중심 리모델링 지원(지역시설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전문가 중심 ‘문화시설재생위원회’ 운영, 유연하고 창조적 공간 활용 추진) 등을 과제로 설정함
- 그러나 아래와 같이 문화기반시설별 주요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법을 제시하는 지점에서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인식과 진단이 단편적임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개선방향 역시 박물관·미술관 정책을 참조하지 않고 제시되었다고 판단됨: 박물관·미술관의 경우에도, 인력 부족, 노후화, 활용 부진 등의 문제점이 함께 드러나고 있음에도 이에 관해서는 적시하고 있지 않아 개선방향도 ‘연계 협력형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로 설정됨

[표 9-4] 제1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에 따른 ‘문화기반시설 주요 문제점 및 개선방향’

구분	이용률(2014)	개소수	문제점	개선 방향
문예회관	6.6%	220	노후화, 활용 부진	지역 맞춤형 레노베이션 추진
등록박물관	16.6 <sup>^</sup>	754	난립, 콘텐츠 부족	연계 협력형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국·공립도서관	10.4%	886	인력 부족	인력 확충
작은도서관	-	4,686	인력·장서·프로그램 부족	인력 확충(책친구 등), 독서 연계 프로그램 개발
문화원·문화의 집	1% 내외	229·116	폐쇄성, 이용도 부진	생활문화센터 연계, 동호회 공간 등으로 재정비, 시설별 특성화 (문화원 →향토자료관 등)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15, <제1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p.24.

- 그 외에 ‘지역문화시설 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과제도 있으나, 그 세부과제에서는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에 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음
- 2차 기본계획에서는 1차 기본계획의 한계를 보강하면서 박물관·미술관과 관련된 문화기반시설 정책이 아래와 같이 반영됨: 전반적으로 다양한 정책과제가 설정되어 있으나,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선택적이라 할 수 있으며, 사립박물관·미술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 및 과제가 명시적으로 반영되어 있지 않음

(표 9-5)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2020)의 박물관·미술관 관련 과제

과제	세부 과제
지역문화 보조사업 전달체계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잡한 문화예술 분야 보조사업 전달체계의 일원화·체계화</li> <li>• 지역문화 기관별, 예산 성격별 분포 현황 등 실태파악 실시</li> <li>• 보조사업 기관간 연계협력, 광역-기초간 할당제</li> </ul>
지역문화 관련 기관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문화진흥원, 지역문화재단, 문화의 집, 지방문화원 등 대상</li> <li>• <b>박물관·미술관 미포함</b></li> </ul>
생활문화 기틀 재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문화 및 생활문화시설 개념, 영역, 범위의 명확화를 위한 정책연구, 법령 개정 등 추진, 현장의 혼동 요인 제거</li> <li>• 광역기능 강화: 시도 단위의 '생활문화지원기능' 강화, 생활문화시설 운영권 설정, 종사자 교육, 시설 간 네트워크 추진</li> </ul>
생활문화 동호회·공동체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관 1단: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 지역주민이 자발적으로 문화모임을 구성하여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운영</li> </ul>
'박물관·미술관 주간' 확대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 박물관의 날 계기, '다양성과 포용성을 위한 박물관·미술관 주제로 전국 박물관·미술관 주간 행사 개최</li> </ul>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문화예술(교육)가-문화(교육)시설 간 협력 거점 마련</li> <li>• 창의융합의 미래형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지원(학교교육 연계)</li> <li>• 지역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생활권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진흥 촉진</li> </ul>
문화기반시설의 전략적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존 노후화된 문화시설의 활용도 증진을 위한 컨설팅 및 재단장(리모델링) 추진, 생활SOC 복합화 유도</li> <li>•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지역별 현황, 지역사회의 문화적 특성 분석 활용, 지역별 문화시설의 배치기준 마련</li> </ul>
첨단기술 활용 전시·교육 콘텐츠 개발·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감콘텐츠 서비스 제공: 첨단기술 활용한 박물관·미술관의 창의적 전시·교육 서비스 개발 지원(2020년에 20개관 선정, 1관당 5억원 내외 국비 지원, 지방비 50% 매칭)</li> </ul>
사회적 약자를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접근성 취약지역 대상 찾아가는 박물관, 디지털 원격교육, 작은미술관 조성 지원 사업(소외지역 유희공간 활용) 등 지속 확대</li> </ul>
박물관·미술관 열린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침 수립: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박물관·미술관 접근성 강화를 위한 지침 수립(2020) 후 공사립·대학관에 배포(202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복지부)' 취득 촉진</li> <li>• 평가지표 개선: 국·공립관 평가인증지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여부 포함, 열린 환경 조성 촉진</li> </ul>
지역문화 고유성 발굴 및 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문화 콘텐츠의 보전 및 발굴, 지역콘텐츠 디지털화(통합자료관리시스템 구축) 등</li> <li>• <b>박물관·미술관 미포함</b></li> </ul>
특색 있는 지역문화의 미래 자산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성있는 지역 문화의 개발 및 활용 지원(마을 구술사 양성 및 마을기록관 조성 등), 지역 문화유산 활용 체험·교육 확대, 지역문화의 국제화 지원</li> <li>• <b>박물관·미술관 미포함</b></li> </ul>

과제	세부 과제
문화적 지역재생·활력 증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사회 문제해결형 사업 추진(문화예술형 일상실험실, 문화의 사회적 가치 연구, 생활체감형 공공디자인 추진 등), 유희공간 등 문화재생 추진</li> <li><b>박물관·미술관 미포함</b></li> </ul>
창조적 지역 콘텐츠·관광산업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 지원, 지역 문화자원 활용 관광 활성화</li> <li><b>박물관·미술관 미포함</b></li> </ul>
공간 기반 문화정책 체계적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문화도시 조성 본격화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공간기반 지역문화정책의 내실화·체계화(문화지구 내실화, 공간기반 통합정책)</li> <li><b>박물관·미술관 포함 여부 모호</b></li> </ul>
문화취약 지역 맞춤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취약지역 기준 수립, 할당제·가점 부여 등 우선 지원</li> <li>지역내 불균등 대응 및 미래선제적 정책(중장기 국토계획, 지역쇠퇴, 인구변동 대응)</li> <li><b>박물관·미술관 포함 여부 모호</b></li> </ul>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0, <제2차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재정리.

### (3) '지역문화전문인력'으로서 박물관·미술관 학예인력 육성 및 지원 정책 개발

-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의 경우,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 내 전문인력 수급 부족이라는 현실에 의해 정책적인 양성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그러나 지역문화전문인력의 구체적인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지역 내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이 이에 포함된다는 명시적인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두 차례에 걸친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에서도 박물관·미술관 학예인력을 고려한 과제가 부재함
- 2차 기본계획에서는 지역문화 생태계의 기초 요소인 인력·유관기관들의 역량과 기능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배치 및 취업지원을 추진방향으로 설정함
- 이를 위해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 및 '지역문화 관련 기관 역량 강화'를 세부과제로 추진하도록 설정함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지원의 경우, (1) 양성·배치 사업기관 일원화, (2) 지역문화전문인력 실태조사 실시, (3) 양성·배치 사업 개선(안) 마련, (4) 지역문화인력 재교육 신설, (5) 통합정보시스템 연계 문화활동가 등 경력 관리 및 취업 지원, (6) 지역문화전문인력의 개념/유형 정립 및 정식 직업군으로 인정(한국표준직업분류체계 반영 등), (7) (가칭)문화예술인재개발원 건립·운영 추진 등이 세부과제로 제시됨
  - 그러나 실제 지역문화전문인력의 개념이나 유형이 아직까지 명확하게 정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실태조사 결과 역시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 '지역문화전문인력'이라는 범주에 포함될 다양한

직업군에 적합한 양성 및 배치 기준이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그러나 위와 같은 방향으로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배치, 일자리 지원이 추진될 계획인 만큼, 기존의 사립박물관·미술관을 포함한 박물관·미술관 학예인력에 관한 구체적인 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박물관·미술관 정책 차원에서의 대응이 시급함
- 한편, 지역문화 관련기관 역량 강화의 경우, 지역문화진흥원, 지역문화재단, 문화의 집, 지방문화원만을 과제에 포함하고 있어,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정책 개발이 필요하고, 위 기관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추진할 사업들은 지역 내 박물관·미술관에서도 필요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2절 박물관·미술관의 분류체계 정비 및 법적 정의 개정

### 가. 사립박물관·미술관 분류체계의 정비

「박미법」의 박물관·미술관 정의 및 구분 관련 조항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
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 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국립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2. 공립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3. 사립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4. 대학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
- ② 미술관은 그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

제5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 □ ‘설립·운영주체’에 따른 구분을 ‘설립주체’를 중심으로 한 구분으로 변경

- 설립주체와 운영주체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음
- 국가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립하고 민간이 운영주체가 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함: 특히 보훈처 등은 이러한 방식을 기본적으로 채택해 오고 있음
- 보다 중요한 문제는 설립주체와 운영주체를 구분하지 않음으로써, 운영에서의 비영

리성이 보장되지 않는 형태가 증가하였으며, 노골적으로 박물관기업 또는 미술관기업을 지향하는 운영방식이 등장함

-그러다 보니 다른 법률에 의해서 경제적·상업적 목적을 우선하는 형태의 회사나 조합 등이 영리추구를 위해 설립한 박물관이나 미술관, 그 유사시설까지도 ‘등록’하여 지원을 받는 일이 증가함으로써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어 왔음

- 이를 분명히 함으로써 국립과 사립, 공립과 사립 사이의 경계 인식에 초래되는 혼란을 방지하도록 함

□ 설립 및 운영 주체와 ‘자원 출처’의 불일치 해소를 위해 ‘자원 출처’에 따른 구분 추가: 설립·운영 자원의 복합성에 따른 공공성 인식 제고

- ‘주체’와 ‘자원 출처’의 불일치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서 ‘주체’에 의한 구분 외에 소요 비용 등 ‘자원의 출처’에 따른 구분을 추가하는 것이 합리적임
- 설립주체에 따라서 설립 시 소요되는 경비 자체가 공적 재원과 민간 재원이 혼합된 형태도 종종 확인되고 있음
- 운영에 있어서는 사립관 중 다수의 ‘자원 출처’가 공적 재원에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관계로 이를 명확히 함으로써 공적 자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인식을 명확히 함

[표 9-6] 박물관·미술관의 유형 구분

기존 구분	설립주체 유형	설립 자원 출처 (1)토지/부동산+재정 (2)자료+인력	운영주체
[국립] 국가	국가	운영 자원 출처 (1)사업비 (2)인건비 (3)자료 구입비 (4)경비	국가
[공립] 지자체	지자체	국가+지자체	지자체
[사립] 특별법에 의한 법인 ↓ [비영리 사립] ①국가/지자체	<b>[국개] 공공기관 또는 특수법인</b>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타 공공기관 준시장형 공기업 시장형 공기업	국가+국민성금 국가 출연/출자	공공기관 또는 특수법인

기존 구분	설립주체 유형	설립 자원 출처	운영주체
		(1)토지/부동산+재정 (2)자료+인력	
		운영 자원 출처 (1)사업비 (2)인건비 (3)자료 구입비 (4)경비	
출연/출자기관, ②국가/지자체 출연+위탁운영	특수법인(공공기관 제외)		
	<b>국가 + 비영리법인·단체</b> 국가+공익법인(현충시설) 국가+사단법인/단체 (현충시설)	(1)국가+(2)법인/단체 국가+지자체	<b>민간위탁운영</b> 공익법인 사단법인
	<b>[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특수법인</b> 재단법인 지방공기업	국가+지자체 출연/출자 공공기관 또는 특수법인	공공기관 또는 특수법인
	<b>지자체 + 비영리법인·단체</b> 지자체+공익법인(현충시설)	국가+지자체 지자체	<b>민간위탁운영</b> 공익법인
[사립] (「민법」,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개인) ↓ [비영리 사립] ①기업(인) 설립 비영리법인 ②기업(인) 외 설립 비영리법인 ③비영리 개인/단체 [영리 사립] ①기업 소속 ②박물관·미술관 기업(주식회사, 조합 등) ③영리 개인/단체	<b>기업(인)</b> 「상법」에 의한 법인(회사) 회사 설립자 등(개인)	모법인(회사) 출연/출자 공익법인/비영리법인 +(1)(2)국가/지자체	공익법인 비영리법인(재단법인)
		기업	기업 소속(부서)
		기업	
		개인+(1)국가/지자체	개인사업자
		개인+(1)(2)국가/지자체	
		기업+(1)국가/지자체	회사(영리형 기업)
		기업+(1)(2)국가/지자체	
	<b>기업(인) 외 설립 비영리법인</b> 공익법인 「민법」에 의한 법인 「민법」 외 법인 종교계 비영리법인	법인+(1)국가/지자체 법인+(1)(2)국가/지자체	공익법인 「민법」에 의한 법인 「민법」 외 법인 종교계 비영리법인
<b>개인</b> 개인 임의단체	개인+(1)국가/지자체 개인+(1)(2)국가/지자체 개인+(1)국가/지자체 개인+(1)(2)국가/지자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고유번호 부여 임의단체	

- 이와 같은 구분을 적용하면 국가, 지자체, 민간 주체 등의 자원이 복합적으로 박물관·미술관의 설립 및 운영에 투입, 소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런 점에서 사립관이라 하더라도 순수한 사적 자산으로만 간주하기 어려움
-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에 의한 공적 자원의 투입에 대해 명확한 책임성을 갖는 것이 사립관의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는 데에도 필요함

□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의 설립, 운영방식이 복잡화되는 경향에 부응한 구분체계 필요: 사립관으로 분류된 국가 및 지자체 설립·출연기관 박물관·미술관의 재구분 추진

- 공공기관 또는 특수법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사립’이라 할 수 없음: 그런데 이러한 기관들이 모두 사립으로 분류되어 있는 관계로, 「박미법」에 의한 국·공립관 대상 규정이나 제도가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 오히려 국가나 지자체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들이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건립한 경우, 심지어는 보훈처와 같이 국가와 지자체가 정책적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면서도 ‘현충시설’의 특성 내지 관행상 민간위탁운영 방식이 지배적이 되어, 현행 「박미법」의 구분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도 존재함
- 특수법인이라 할 공공기관 중에는 공공기관 지정 해제나 대상기관 제외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으며, 이른바 민영화라 할 민간 매각이 이루어진 사례도 있음

[표 9-7] 박물관·미술관의 구분 및 운영형태 관련 「박미법」 개정(안)

<p><b>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b> ① 박물관은 그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립박물관 :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li> <li>2. 공립박물관 :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박물관</li> <li>3. 사립박물관 : 「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li> <li>4. 대학박물관 :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li> </ol> <p>② 미술관은 그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p>	<p><b>제3조(박물관·미술관의 구분)</b> ① 박물관은 그 <b>설립 주체에 따라</b>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립박물관: 국가 또는 국가가 출연·출자한 공공기관,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이 설립한 박물관</li> <li>2. 공립박물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출자한 공공기관, 조례에 의해 설립된 특수법인이 설립한 박물관</li> <li>3. 사립박물관: 「민법」, 「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한 박물관</li> <li>4. 대학박물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나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학 교육과정의 교육기관이 설립·운영하는 박물관</li> </ol> <p>② 미술관은 그 설립·운영주체에 따라 국립 미술관, 공립 미술관, 사립 미술관, 대학 미술관으로 구분하되, 그 설립·운영의 주체에 관하여는 제1항 각 호를 준용한다.</p>
<p>&lt;신설&gt;</p>	<p><b>제3의 2(박물관·미술관의 운영형태)</b> ① 박물관은 그 설립</p>

주체와 상관없이 비영리기관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립 또는 공립박물관의 경우 그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대통령령에 의한 위탁운영 자격 및 요건을 갖추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데 요구되는 동일한 절차와 방법,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한다.

③ 국립 또는 공립박물관 설립 주체의 법적 위상의 변경(공공기관 지정 해제 등)이 있을 경우, 해당 국립 또는 공립박물관의 법적 지위 및 운영형태는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칭)박물관·미술관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④ 미술관의 운영형태에 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 □ ‘비영리기관’으로서의 박물관·미술관 정체성 명확화를 위한 영리/비영리 구분

- 만국 공통의 박물관·미술관 정의라 할 ‘비영리성’이 「박미법」에는 명시되지 않음
- 비영리성은 설립 주체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형태의 문제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이 「박미법」에 명시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함
- 현재 비영리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박물관·미술관에 대해서는 국내 법률에 의거하거나 박물관·미술관의 고유한 운영 기준 등을 고려하여 ‘비영리 기관’의 조건에 관한 추가적인 정책연구 및 공론화 과정을 거쳐 법적 규정을 마련하고, 이 기준을 실행할 수 있는 경과조치 및 지원을 하도록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영리기관’으로 운영형태를 개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박미법」에 따른 등록취소는 물론, 각종 박물관·미술관의 고유목적과 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나. 박물관·미술관의 법적 정의 개정

#### □ 박물관·미술관 정책 환경의 시의성에 부합하는 개정 필요

- 현재 「박미법」의 박물관·미술관 정의는 법 제정 당시의 정의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

고 있어, 제정 이후 30년 이상 개정되지 않음

-제정 이후 「박미법」이 빈번하게 개정되어 왔고, 개정 과정에서 정책 기초의 수정이나 전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정 과정에서 기존의 정의 조항은 동일하게 유지됨

- 그러나 박물관·미술관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설립·운영주체의 다변화, 정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할 때, 법적 정의의 개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다다름

□ 국제적인 정의에 부합하는 개정 필요: 국제박물관협의회(ICOM)의 개정 동향 반영

- 「박미법」의 제6조(학예사) 조항에는 ICOM의 박물관 윤리강령 및 국제협약 준수가의 의무규정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ICOM의 뮤지엄 정의 및 운영 관련 지침, 윤리강령 등이 실제로 「박미법」에 조항으로 반영되어 있지 못함
- ICOM도 뮤지엄 정의를 몇 차례 개정해 왔으며, 최근에도 시대적 변화에 부응한 박물관·미술관의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그 기본기능과 존재방식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해 정의 개정이 중요하게 추진되어 왔음
- 박물관·미술관 정책과 관련된 핵심적인 국제기구인 ICOM의 뮤지엄 정의는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요하게 참고·채택하고 있는 박물관·미술관 정책과 실제 운영면에서의 중요한 규정이자 지침이라 할 수 있음
- 이에 「박미법」의 정의 조항을 국내의 박물관·미술관의 현황 및 국제적인 규정에 부합하는 형태로 재규정함으로써, 박물관·미술관 정책의 토대를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표 9-8] 박물관·미술관의 법적 정의 내용 비교

구분	정의 내용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li> <li>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li> <li>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li> <li>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li> </ol>

구분	정의 내용
ICOM (현재 정의)	A museum is a <u>non-profit, permanent institution in the service of society and its development</u> , open to the public, which acquires, conserves, researches, communicates and exhibits the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of humanity and its environment <u>for the purposes of education, study and enjoyment</u> .
ICOM (개정안)	A museum is a <u>not-for-profit, permanent institution in the service of society</u> that researches, collects, conserves, interprets and exhibits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u>Open to the public, accessible and inclusive, museums foster diversity and sustainability</u> . They operate and communicate <u>ethically, professionally and with the participation of communities, offering varied experiences for education, enjoyment, reflection and knowledge sharing</u> .

※ \*자료원: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ICOM 홈페이지  
<https://icom.museum/en/resources/standards-guidelines/museum-definition/>

#### □ 주요 쟁점 사항(1): ‘비영리성(non profit)’

- 박물관학에 근거한 ICOM의 뮤지엄 정의는 기본적으로 비영리성을 중요한 뮤지엄의 존재방식으로 규정해 왔으며, 이는 올해 개정 표결이 이루어질 두 개의 개정안에서도 표현을 달리 하여 반영됨
  - 기존 정의가 ‘non profit’이었다면 개정안에서는 ‘not for profit’으로 수정될 예정으로, ‘비영리성’의 형태를 보다 확장된 형태로 정의하고자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뮤지엄의 속성으로서 비영리성을 핵심적인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국의 경우, 「박물관법」에서 설립·운영주체를 「민법」 및 특별법에 의한 법인으로 규정했던 것이 「박미법」 제정 이후 「상법」에 의한 법인 및 개인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확장되어 누구나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그 결과 박물관·미술관의 비영리성이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하고, 현실에서는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주체 안에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법」상의 법인(회사)이나 개인을 모두 포괄하게 되었음
- 이와 함께 ‘사립박물관’의 설립·운영주체 구분 범주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다 보니 이러한 영리·비영리의 구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현재까지 지속됨
- 「박미법」 제정 초기에는 박물관·미술관 수도 극히 적었을 뿐 아니라, ‘비영리성’을 당연한 존재방식으로 간주하여 법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시간이 흐르면서 기업 부설의 경우에도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일개 부서와 같이 운영

하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영리를 추구하는 박물관·미술관 기업 형태가 꾸준히 증가해 왔음

- 이러한 상황은 국제적인 박물관·미술관 정의와 부합하지 않는 현실이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비영리성을 전제로 하여 공익적 가치가 규정되어 온 점과도 상충되는 지점인 관계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져 왔음
- 미술관의 경우에는 특히 미술작품을 영리 목적으로 매매·중개 알선하는 화랑과 명확하게 제도적 구별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술관 등록을 하고도 소장 작품을 매매하거나 중개 알선하는 사례가 공공연하게 사건화되어 사회적 이슈가 되어 왔음  
- 간송미술관의 소장품 판매 사례나 K현대미술관의 미술작품 중개 알선 사례 등이 그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박미법」의 박물관·미술관 정의를 국제적인 정의에 맞춰서 ‘비영리적’ 기관임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 주요 쟁점 사항(2): ‘사회에 봉사하는 항구적 기관(permanent institution)’

- ICOM의 뮤지엄 정의에서 기관(institution)은 “공법 또는 사법의 명확한 법적 시스템에 의해 관리되는” 것을 의미함
- “사회 및 사회발전에 봉사하는 항구적 기관”이라 함은 뮤지엄이 사회에 의해 만들어지고 유지·관리되며, 유산의 보존, 미술작품이나 고유한 유물의 전시, 학문적 지식의 전파 등과 같은 가치를 토대로 만들어진 기준들과 규칙들(예방적 보존, 원본 전시 등)에 따라 구성된 컬렉션에 기반함을 의미함  
- 한편으로는 museum과 museal institution을 구분하여, 후자에 뮤지엄 활동을 관리감독하는 국가 차원 또는 국제적 차원의 기구들(ICOM)을 포괄하여 지칭하기도 함
- 따라서 뮤지엄에 기관으로서의 속성을 강조하는 것은 그 규범적 역할은 물론, 뮤지엄이 학문 및 예술 분야에서 갖는 권위를 강화하기 위함임(André Desvallées and François Mairesse, Eds., 2010)
- 21세기 들어서 다양한 논의와 검토 속에서 뮤지엄 정의를 개정하는 과정에 있으나, 개정안에서도 “사회에 봉사하는 비영리의 항구적 기관”이라는 대목은 유지됨
- 이는 뮤지엄 정의의 규범적 속성을 유지하고, 다른 한편 21세기에 요청되는 추가적인 사회적 규범들을 보강하는 형태로 개정될 것임을 잘 보여줌
- 이러한 사회적 규범에 부응하는 「박미법」의 조항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이라 할 수 있는데, ICOM의 정의에 비해서 소장품과

관련된 기준 및 규칙, 사회에 봉사하는 기관으로서의 규범적 역할의 범위 등이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러한 규범적 측면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법적으로 부재하다고 할 수 있음

- 2022년 ICOM 총회에 상정될 개정안에는 지속가능성, 포용성, 전문성, 윤리성, 공동체 및 일반공중의 참여, 지식공유, 성찰 등과 같은 규범적 속성들이 보강되어 있음

□ 주요 쟁점 사항(3): 주요 법적 용어에 대한 정의 추가 및 보완

- 「박미법」의 용어 정의는 제2조(정의) 및 제3조(구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실제로 정책 현장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용어들의 정의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음
- 때로는 빈번한 법 개정 과정에서 정의하는 조항이 본문에서 함께 삭제되어 현재는 용어만 정의 없이 남아 사용되는 것도 있으며, 새로운 용어를 도입해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정의가 없는 경우도 있음
- 이러한 상황은 「박미법」에 근거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박물관·미술관 행정 행위 시, 법 해석의 모호함과 혼돈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므로 시급하게 보완하여 개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작은 미술관’ 사업과 같이 법적 정의 조항이나 근거가 없이 정책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도 존재하고 있어, 이 역시 법 개정 여부에 대한 검토 필요

[표 9-9] 박물관 및 미술관 정의 관련 「박미법」 개정(안)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박물관”이란 문화·예술 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역사·고고(考古)·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li> <li>2. “미술관”이란 문화·예술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박물관 중에서 특히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자료를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교육하는 시설을 말한다.</li> <li>3. “박물관자료”란 박물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인간과 환경의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li> </ol>	<p><b>제2조(정의)</b>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박물관”과 “미술관”은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환경에 관한 유형적·무형적 유산을 연구, 수집, 보존, 해석, 전시함으로써 사회에 봉사하는 항구적인 비영리기관이다.</li> <li>2.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목적”은 다음의 각 목의 사항들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문화·예술·학문의 발전 및 학술문화의 진흥</li> <li>나. &lt;문화기본법&gt;에 의한 ‘문화권’ 보장과, &lt;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법률&gt;에 의한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표현’의 증진</li> <li>다. &lt;교육기본법&gt;에 의한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 &lt;문화예술교육지원법&gt;에 의한 문화예술교육 기회 보장 및 확대</li> <li>라. 지식 공유 및 이를 토대로 한 성찰의 경험 제공</li> </ul> </li> </ol>
---	--

<p>적 가치가 있는 자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을 말한다.</p> <p>4. “미술관자료”란 미술관이 수집·관리·보존·조사·연구·전시하는 예술에 관한 자료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p>	<p>다. 그 외 개별 박물관미술관이 제1항 제1호에 부합하여 정한 설립목적으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 규정에 의한 것</p> <p>3. “박물관자료”란 제2호에 의한 설립 목적을 위하여 박물관이 연구, 수집, 보존, 해석, 전시하는 역사·고고·인류·민속·예술·동물·식물·광물·과학·기술·산업 등에 관한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p> <p>4. “미술관자료”란 제2호에 의한 설립 목적을 위하여 미술관이 연구, 수집, 보존, 해석, 전시하는 서화·조각·공예·건축·사진 등 미술에 관한 유형적·무형적 증거물로서 학문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자료를 말한다.</p> <p>5. “비영리기관”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박물관미술관의 존립과 이익을 위하여 재정적 수입을 목적으로 한 활동은 가능하나, 그 수입 또는 이익을 구성원 상호 간에 분배하지 않고 전적으로 기관과 기관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합법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비법인 기관을 말한다.</p> <p>6. “종합박물관”이란 제3호에 열거된 분야 중 서로 다른 2개 분야 이상의 박물관자료를 취급하는 박물관을 말한다.</p> <p>7. “전문박물관”이란 제3호에 열거된 분야 중 특정 분야 하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박물관을 말한다.</p>
<p>&lt;신설&gt;</p>	<p><b>제2조의 2(박물관미술관의 사회적 가치 증진)</b> ①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 봉사의 역할을 위해 제2조 제2호에 의한 “설립목적”을 준수하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박물관은 전문적이고 윤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박물관의 설립·운영주체, 관장, 학예사 및 그 외 직원 등은 국제박물관협회의 윤리강령 및 국제협약을 준수해야 한다.</li> <li>2. 박물관은 모든 사람이 차별이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박물관의 시설 및 설비, 그 활동의 과정 및 결과, 해석과 전시의 내용 등에서 접근성, 다양성, 포용성을 높이고, 이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li> <li>3. 박물관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대응 등에 관한 국내외 법률과 규범을 준수하고, 탄소배출 저감, 폐기물 감소, 생물다양성 및 문화다양성 보호 등을 박물관 운영의 원리이자 규범으로서 적극 실천해야 한다.</li> <li>4. 박물관의 설립·운영주체는 박물관의 공익적 가치를 확산하고 이를 위한 조직·인력 면에서의 지속가능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박물관 전문인력의 양성, 좋은 일자리</li> </ol>

	<p>로서의 고용노동 여건 및 복지, 그 외 각종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p> <p>②미술관은 제1항의 1~4호를 준용한다.</p>
<신설>	<p><b>제2조의 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b>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물관 및 미술관이 제2조의 정의 및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운영 여건을 갖추고, 제4조의 사업을 충실히 수행하며, 제2조의 2에 따른 사회적 가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정책 개발, 제도 개선, 행정·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p>

## 사립박물관미술관 인력정책 정립 및 인력지원사업 개선

### 가. 박물관·미술관 학예인력정책의 위상 강화 및 주류화

- 사각지대로서의 학예인력 지위·권리 보장 관련 정책 개발 추진: ‘예술인’ 범주 내 포괄 또는 학예인력의 지위·권리 보장 및 노동·복지 관련 정책의 개발
  - 「예술인 복지법」,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법률」 등이 제정되면서 예술인들을 위한 정책 개발 및 제도 정비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음
    - 특히 위의 두 법령은 예술인의 불안정성으로 인한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 문제해결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으며, 장기간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예술인정책 분야를 구축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음
  - 그러나 현행 법령에서 ‘예술인’ 범주는 「문진법」에 의한 ‘문화예술’ 범주 중 예술 장르를 기반으로 설정되어 있고, ‘기획’이나 ‘기술지원’ 인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 역시 예술 장르 기반의 활동이라 할 수 있음

#### 「예술인 복지법」의 ‘예술인’ 관련 주요 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예술인 복지 지원을 통하여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2. 3.>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예술인”이란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문화예술용역”이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을 말한다.

**제3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① 예술인은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중요한 공헌을 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

② 모든 예술인은 인간의 존엄성 및 신체적·정신적 안정이 보장된 환경에서 예술 활동을 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8. 10. 16.>

③ 모든 예술인은 자유롭게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예술 활동의 성과를 통하여 정당한 정신적, 물질적 혜택을 누릴 권리가 있다. <개정 2018. 10. 16.>

④ 모든 예술인은 유형·무형의 이익 제공이나 불이익의 위협을 통하여 불공정한 계약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신설 2013. 12. 30., 2018. 10. 16.>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0. 16.>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6.>

**제4조의2(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 복지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 및 권리 보호
3. 예술인의 복지 증진
4. 예술인의 예술 활동 여건 개선
5. 예술인 복지정책의 추진체계
6. 예술인 복지사업을 위한 자원규모 및 조달
7. 예술인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
8.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① 예술인의 업무상 재해 및 보상 등에 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12. 30.>

②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제1항에 따라 예술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예술인이 납부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제10조(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2018. 10. 16., 2022. 1. 18.>

1. 예술인의 사회보장 확대 지원
2. 예술인의 직업안정·고용창출 및 직업전환 지원
3. 원로 예술인의 생활안정 지원 등 취약예술계층의 복지 지원
- 3의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
4. 개인 창작예술인의 복지 증진 지원
5. 예술인의 복지실태 및 근로실태의 조사·연구
6. 예술인 복지금고의 관리·운영 및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7. 예술인 공제사업의 관리·운영
8.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
9.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10. 예술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
11.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2.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외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 그러나 현행 예술인복지정책 및 예술인권리보장 전반에 관한 정책 사항들은 문화예술분야 전문인력, 특히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및 종사자에 대해서도 적용이 필요한 것인 만큼, 「예술인 복지법」 및 「예술인권리보장법」을 개정하여 이들을 ‘예술인’ 범주에 포괄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별도의 법 제정 및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국립 및 등록 박물관·미술관 수가 1000관을 상회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예사나 종사자들에 대한 복지나 사회경제적 처우 전반에 관한 제도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은 본 보고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양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음
- 박물관·미술관 정책 범주를 넘어서 지역문화정책 등의 차원에서도 ‘확충’ 기초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이들의 실태조사는 물론 관련된 정책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향후 박물관·미술관의 질적 성장이나 지속가능한 운영에도 심각한 위협 요인이므로 시급한 정책 개발이 필요함

#### □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종사자에 관한 정기 실태조사 실시 및 관련 정책 개발

- 박물관·미술관 운영실태에 관한 조사에서는 인력 수만을 조사하는 것으로 간략화되어 있어 이들의 고용, 복지, 교육 및 경력개발, 경제적 상황, 고충 등에 관한 각종 현황을 파악할 수 없음
- 또한 정기적으로 문체부가 실시하는 ‘예술인실태조사’의 경우에는 상기한 바와 같이 예술인정책이 운영되고 있어, ‘기획인력’을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박물관·미술관 종사자와 일치하지 않으며, 박물관 학예사 및 종사자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음
- 그런 이유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실태조사에서도 사각지대에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및 종사자가 방치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에 대한 별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정책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 □ 학예사자격제도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운영실태조사를 통한 제도개선 시급

- 박물관·미술관 운영의 ‘전문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요소 중에서 핵심적인 기본 요건은 소장품과 학예인력임

- 이에 따라 학예사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학력 및 경력을 기반으로 해 자격을 등급화 하고 있으나, 위계적이고 엄격해 보이는 학예사 자격제도의 특성에 비해, 실제로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의 채용 현황이나 취업, 경력개발 등에 관해서는 전혀 파악이 되고 있지 못함
-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의 경력개발과 취업 현황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서 자격제도의 결함을 보완하는 경력개발 및 취업 등의 고용, 복지정책 마련이 이루어져야 함
  - 일본의 경우, 이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에 대한 박물관·미술관의 신규 채용률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점이 정책적 과제로 제기되어 왔음
  - 이러한 사례는 한국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며, 취업이 되더라도 다수가 국고보조 사업을 통한 한시적인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경력을 이어가야 하는 불안정한 상태라 할 수 있음
  - 특히 사립관의 자체 채용이 실질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등록요건의 학예사 1명 이상 기준을 국고보조사업에 의존해 유지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이라 국고보조사업이 부재한 경우에는 이들의 채용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처우 역시 국고보조사업의 등급별 보수 기준에 따라 표준화되고 있으며, 경력이나 능력에 따른 처우나 보수의 상향을 기대할 수 없는 실정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예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패널조사를 통해 학예사자격제도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고, 자격제도가 고용 및 복지정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특히 '전문성'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력 상의 전공 분야 제한 없이 누구나 학예사 자격시험을 통해서 진입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고, 실제로 이 시험에 합격해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다수가 박물관·미술관과 관련된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국고보조사업을 통해 취업을 하여 3급학예사가 되기 위한 경력을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충족시켜야 하는 상황임
  - 현재 이 시험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여 운영되고 있는데, 아래와 같이 학예사 자격에 대한 정보를 공지하고 있음: 이 내용은 「박미법」에 의한 법정 사항을 정확하게 공지하고 있지 않아,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제고와 관련해서도 정정될 필요가 있음
  - 또한 진로 및 전망에 관한 내용에서도 학예사 수요의 증가를 전망하면서도, 취업 여건에 관해서는 추상적으로 '취업 경쟁률'이 높을 것이라는 내용만이 제공되고 있음
  - 준학예사 시험과 관련한 통계로서는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의 특성상, 응시율과 합격률만을 집계하여 공개하고 있음

##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준학예사 자격 기본 정보

<b>개요</b>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에서 전시를 기획하고, 작품수집과 관리를 담당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학예사를 양성, 박물관·미술관의 실질적 진흥을 도모하고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개정, 박물관·미술관 학예사 자격제도를 마련						
<b>수행직무</b>						
<p>○ <b>박물관 학예사</b></p> <p>- 박물관에 보관중인 각종 실물, 표본, 사료(史料) 문헌들을 수집, 정리, 보존하고 전시회 개최 준비를 함</p> <p>○ <b>미술관 학예사</b></p> <p>- 미술관의 학예사는 예술작품의 전시를 기획하는 사람으로 전시회의 주제를 결정하고 작가와 작품에 대한 조사연구를 거쳐 작가 섭외 및 작품을 선정함. 전시회의 명칭을 결정하고, 미술관의 공간과 작품수량, 주제, 효과적인 관람을 고려하여 작품 진열을 함.</p>						
<b>진로 및 전망</b>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으며, 아울러 지방자치제의 활성화와 정부자원의 사립 박물관의 신설을 장려하고 있어 학예사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공립 박물관과 대학 박물관의 경우 학예사 수가 한정되어 있고 결원시마다 충원하는 방식으로 채용이 이뤄지고 있어 취업 경쟁률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b>소관부처명</b>						
문화체육관광부(국립중앙박물관)						
<b>통계자료</b>						
□ 통계자료(최근 5년)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b>1차</b>	대상(명)	1,394	1,769	2,049	1,672	1,257
	응시(명)	681	719	818	825	710
	응시율(%)	48.9	40.6	39.92	49.34	56.48
	합격(명)	226	247	306	214	166
	합격률(%)	33.2	34.3	37.41	25.94	23.38

- 그런 까닭에 ‘준학예사’ 시험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인력교육 및 경력개발 기능이 중요하게 전제되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법정 경력인정대상기관인 국·공립관은 ‘준학예사’ 자격을 취득한 이들을 채용하지 않고, 등록 사립관 또는 대학관에서 이들을 수용하고 있는 상황임
  - 2022년 현재, 등록 국·공립관(국·공립관의 경우 등록 의무화) 외에, 등록 사립관 207개관, 등록 대학관 78개관이 경력인정대상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폐관, 휴관, 포기, 취소 등의 이유로 지정 해제된 기관이 46개관임
-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의무적인 경력인정대상기관인 국·공립관의 책임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음: 우선적으로 문체부가 주체가 되어 경력인정대상기관에서 시행할 교육 및 실무 연수 프로그램을 1년 과정 또는 2년 과정으로 개발하여 학예인력이 필요에 따라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이 기간 동안에는 국·공립관이 인력을 자체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운영 방안 및 지침을 문체부 차원에서 마련하도록 함

- 또한 사립관 중에는 실무 교육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지원인력 양성에 힘을 쓰는 경우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학예인력의 업무역량에 관해 회의적인 경우도 적지 않음
- 이러한 문제는 소규모 사립관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으로서, 국·공립관에서 우선적으로 실무경력을 충족한 뒤, 사립관에서 본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방향으로 학예사자격제도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지정제도의 운영방안을 재검토하여, 학예인력의 경력개발 경로를 안정적으로 재설계하도록 함

#### □ 학예사운영위원회의 정책기능 실질화: 문체부로 행정권한 이관 및 학예사정책 추진체계 마련

- 현재 학예사운영위원회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소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학예사 자격제도 및 경력인정대상기관 지정 등에 관한 심의 기능을 갖고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운영 방식은 학예사정책 전반에서 제기되는 각종 현안이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정책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기능을 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님
- 따라서 사립관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학예인력 및 종사자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시행을 위해서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관련 업무의 형태로 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문체부로 그 행정권한과 업무를 이관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함

#### □ 학예인력 고충상담·신고센터의 운영 및 학예인력 네트워크/단체 활동 지원

- 박물관·미술관 정책 전반에서 학예인력을 비롯한 종사자의 정책의사결정 위상이나 권한은 매우 과소대표되어 왔던 점만큼이나, 학예인력이 업무 과정이나 지원사업에 참여했을 때 겪을 수 있는 각종 고충에 관해서도 이를 즉각적으로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창구나 절차 역시 갖추어져 있지 못함
- 인력지원사업을 주관하는 협회의 경우 학예인력보다는 사립관의 설립·운영주체인 관장을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성격이 강한 관계로, 학예인력의 입장이거나 고충,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역할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함
- 따라서 인력지원사업을 비롯해 각종 박물관·미술관에 종사하는 학예인력의 고충을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하고 안정적인 창구를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시급함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신문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별도의 창구 및 절차를 개설해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학예인력의 정책적 과소대표성을 해결해 나아가기 위해서는 학예인력 사이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지원, 단체 결성 및 권익보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설립·운영주체 및 정부와 협의 또는 협상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이러한 학예인력의 권익보호 관련 사항을 「박미법」 개정 등을 통해서 법제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할 것임

## 나. 설립·운영주체의 경영 전문성 및 윤리 강화

□ 사용자 측의 경영 전문성 강화 및 합법적·윤리적 인사정책 정착을 위한 제도개선 필요

- 지원대상의 상호관계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인력지원사업의 재구조화: 사용자 대 노동자(피용자)의 관계성 인식 필요
  - 지원대상의 한 측인 인력과 또 다른 측인 기관이 서로 다른 역할과 책임을 지고 있는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임을 먼저 명확히 인지할 필요가 있음
  - 그간 박물관·미술관 인력은 일반적인 직장의 사원처럼 인식되었다기보다는 문화자원을 생산하면서도 기관의 운영을 책임지는 독특한 포지션의 행정가에서 전시를 돕는 실무에 능한 보조자, 전시를 전달하는 도슨트 등 다양한 스펙트럼은 물론 능력까지 겸비한 인력을 갖추 것을 요구받음
  - 큐레이터이란 여러 정보를 수집, 선별하고 이에 새로운 가치를 부여한 후 전파하는 인력을 뜻하나, 큐레이터는 미술관의 여러 기능 가운데 핵심적인 분야를 관장하며 학문적 연구를 진행하는 전문가 역할은 물론 미술관 상품 보존 확인, 작품 명부 기록 등 행정적 업무를 병행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요구받기도 하고, 큐레이터, 갤러리스트, 아트 딜러 등 유관하나 엄연히 다른 직무들과 구분되지 않아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임(신영문, 2020)
- 사용자 측인 경영 주체의 전문성, 역할, 책임 등에 관한 정책적 관심과 개선 필요: 학예인력의 전문성과 역량개발과 직결된 박물관·미술관 운영의 의사결정 권한이 관장에게 집중되어 있으나, 경영 전문성, 책임과 윤리 등이 취약
  - 기관의 실질적인 운영 업무를 맡고 있는 학예인력이나 교육인력에 대한 그간의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으나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 기관의 경영 주체의 역할, 전문성, 책임 등에 관한 개념과 범주를 파악하는 연구는 부족하였는데, 이는 경영 주체가 부족한 경영 능력과

책임감을 방관하게 만들어 왔음

- 기관 종사인력에 의해 아래로부터 이루어진 연구는 당연하지만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인력을 포함하는 조직 경영 주체로서 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가시화함(박영미, 2016)
- 각 기관의 설립 주체와 정체성에 따라 인력의 직무 성격이 규정되기는 하지만 실제 업무가 이루어지는 영역에서는 기관의 조직 구조, 재정 규모, 인력구조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기관의 경영자나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주체의 기관 경영과 운영방식이 실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실질적인 직무 내용과 이를 토대로 한 전문성 구축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의미함(박영미, 2016)
-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인력의 전문성 증진에 관해 이루어진 연구에 비해 박물관·미술관 운영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관장의 경영 전문성과 역할, 책임에 관한 연구는 손에 꼽힘(연구석, 2020)
- 경영 주체의 부족한 전문성은 기관의 문제를 학예인력에게 떠넘기거나 하는 등 인력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결과로 드러나고 있음: 어떤 학예사의 경우 지원사업에서 제외되는 기간인 1월과 2월을 관장과 합의해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근무 시작 후 관장이 돌연 시급으로 일하라고 통보하고 4대 보험까지 해지한 경우도 있었고, 또 다른 학예사의 경우 박물관의 어려운 상황을 관장이 토로하여 1, 2월 두 달을 130만 원만 받고 일하기도 합의했고 이 경우 역시 4대 보험을 해지해버렸다고 함(김하진, 2021)
- 경영 주체로서의 인식 부족은 종사 인력이 근로자라는 인식 부재로 이어져 왔는데, 위의 사례처럼 기관이 처한 문제를 종사 인력에게 떠넘기기도 하는 등의 심각한 문제는 경영 전문성 부재의 결과임

#### □ 설립·운영주체 또는 관장에 대한 전문인력 직무 이해 및 인사·윤리 교육 실시와 국고보조사업에서의 경영 전문성 평가 항목 강화

- 인력지원사업은 인력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박물관·미술관 운영을 활성화 하여 공공 서비스를 개선한다는 총 3차의 정책 효과를 얻고자 하는 사업으로, 박물관·미술관의 재정난을 해결하는 것이 본 사업의 목적이나 정책 효과가 아님
- 본래 목적에 충실하게 지원사업을 운영하고자 한다면,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체(기관, 인력)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명시하고 각 주체의 전문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개선책이 필요함
- 특히나 학예인력지원사업이나 예비학예인력지원사업은 학예사의 경력을 단순히 일자리 문제로만 간주하지 않고, 일종의 교육/연수 과정으로 설정해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특성상 인력지원사업은 보다 높은 경영 전문성은 물론, 설립·운영주체의

전문인력 직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배려, 기관의 인사정책의 합리성,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요청되는 강도 높은 윤리, 직원 채용과 관련된 직장 내 윤리 등을 요함

- 즉 이러한 여건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거나, 인력지원사업의 자격 요건으로서 개선되어 갈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나, 현실적으로 기존의 인력지원 사업에서는 이러한 지점들이 취약해 각종 고용문제나 잦은 퇴사와 같은 현상들이 발생함
- 따라서 지원관은 인력지원사업의 목적이 “일자리 지원을 통한 기관 운영 활성화”라는 사업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적의 근로환경 마련,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명확하고 체계적인 업무지시 등을 종사 인력에게 제공함으로써 기관 운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경영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할 책임이 있음
  - ‘정확에서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경력인증기관 근무기간이 최소 1년이 되어야 하지만 지원사업은 10개월 이상 근무할 수 없어 지원사업이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이 지적은 지원사업과 정부정책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음
-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또는 협회가 주관하여 설립·운영주체 또는 관장에 대한 전문인력 직무 이해, 인사정책 및 직장 내 윤리 등에 관한 박물관·미술관의 경영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을 실시함
  - 박물관·미술관 관련 법제나 규범, 국내외 정책과 윤리강령, 국내 고용·노동 관련 법제, 박물관·미술관과 같은 비영리기관의 재원조성, 의사결정 관련 거버넌스 및 조직 문제, 문화분야 전문인력 관련 인사 및 노무, 복지 등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상시 교육 진행
- 다른 한편, 위의 교육 내용과 연계하여 인력지원사업을 비롯한 각종 국고보조사업에서 설립·운영주체 또는 관장의 경영 전문성을 평가하는 항목을 비중 있게 반영하도록 함

#### □ 인력지원사업 관련 불공정행위 또는 불법적 인력 활용 사례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

- 국고보조사업 관련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는 사업별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한 기관당 다양한 지원을 복합적으로 받고 있는 사립관의 현실에서 봤을 때, 실질적인 제재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함
-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인력지원사업에 의해 채용된 인력이 다른 국고보조사업의 부정수급 등의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는 후자의 사례에 한해서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뿐, 인력지원사업의 지원인력에 대한 부당한 업무 지시로서는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함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예술인권리보장법」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 등을 학예인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적용대상 범위를 박물관·미술관 학예사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도록 함

- 또한 「박미법」을 개정하여 직장 내 갑질이나 성희롱·성폭력 등에 대한 제재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고보조사업에서의 부정수급 등 불법적 행위, 인력지원사업에서 규정한 직무범위 외 사적인 인력 활용 등의 업무지시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그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마련함

-박물관·미술관의 등록취소, 지원사업 영구 배제 등의 강력한 조치를 강구하는 방안을 검토함

#### □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주체 및 종사자 윤리 규정(가칭) 제정 및 매뉴얼 제작

- 박물관·미술관의 특성상 운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간주되는 공공성 또는 공적 신뢰를 위해서는 합법적, 윤리적 경영이 가장 중요한 전략이 되어 있음
- 또한 ICOM에서도 이러한 사회적 역할과 책임, 윤리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의 개정을 추진해 왔는데, 이는 박물관·미술관의 운영난이 심화될수록 보다 강조되는 생존전략임
- 이러한 점을 고려해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주체 및 종사자 윤리 규정’을 별도로 제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하도록 함
- 이는 위에 서술한 경영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뿐 아니라 각종 인력지원사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협회를 중심으로 이에 관한 공론화, 윤리적 경영을 토대로 한 애드보커시(advocacy) 역량 증대 등을 함께 도모하도록 함

## 다. 학예인력의 경력·진로 개발 및 임파워먼트(empowerment)

#### □ 학예인력의 경력개발 방안 개선: 실무연수/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국·공립관-대학-사립관 연계를 통한 운영(국·공립관의 경력인정대상기관 역할 강화)

- 국·공립관이나 사립관에서 학예사 자격제도와 연계한 채용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국립관은 학예사 자격증이 우대 조건으로만 기능하고, 공립관은 자격증을 요구하나 채용 규모가 매우 작음
- 사립관의 경우, 국립관보다 자체 채용이 더 낮은 수준이므로, 학예사 자격제도가 실질적으로 유의미한 것은 인력지원사업과 연계해서라고 할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인력지원사업이 학예인력의 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수밖에 없으며, 1년 단위로 시행되는 사업의 특성상 학예인력의 불안정 고용이 만연할 수밖에 없음
- 게다가 등록요건이나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자격이 지원사업을 통해서 충원되는 인력으로 유지되는 경우도 파악됨
- 따라서 학예인력에 대한 실무연수나 교육 과정으로서 인력지원사업의 역할이 있으나, 극소규모의 사립관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려운 여건이라 할 수 있음
- 특히나 전공 분야의 정규 교과과정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만으로 전문성을 측정하는 방식은 사립관에 실무연수 또는 교육의 부담을 가중할 수밖에 없으며, 무엇을 어떻게 교육, 연수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최소한의 합의와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실무연수나 교육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는 더 어려움
- 따라서 학예인력 전문교육 또는 실무연수를 위한 교육내용 및 표준화된 실무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현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급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이러한 교육내용이나 프로그램을 개별 사립관에서 전부 실행하기 어려운 조건일 수도 있으므로, 각 지역별 국·공립관 및 대학이 연계하여 실무연수 또는 전문교육을 위한 교육내용 및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지원사업을 설계함
  - 즉 인력지원사업의 실무연수 및 이론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내 대학 교과과정 및 국·공립관, 사립관이 분담하여 수행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여 진행하고,
  - 학예인력에 따라서 1년 과정 또는 2년 과정으로 이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진행하되, 프로그램 참여기간 동안에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에 따른 인건비를 지급함
- 이러한 측면에서 법정 경력인정대상기관인 국·공립관이 역할을 전혀 하고 있지 않은 점이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고, 위에서 서술한 실무연수 또는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국·공립관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즉 인력지원사업과 별도로 국·공립관에서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역할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 실무연수 과정에 대한 인건비는 인력지원사업과 별도로 국·공립관에서 책정하여 시행하게 함
- 국·공립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학예인력의 실무연수 및 전문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내 사립관과 국·공립관, 대학이 실질적으로 연계·협력하는 계기를 창출하는 데에 기여할 뿐 아니라, 이 실무연수를 이수한 인력들이 사립관에서 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립관의 운영 지원 효과도 증대시킬 수 있음

□ 전문인력 간 네트워크·교류 및 다양한 교육의 활성화·체계화를 위한 지원

- 학예인력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려는 욕구가 높은 것을 기존의 조사 및 이번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못할 뿐 아니라, 사립관에 평균 2명 내외의 학예인력이 근무하는 상황은 이들의 고립감이나 정체감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고 하겠음
- 따라서 사립관이 대거 학예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상황을 감안할 때, 각 사립관에 근무하는 학예인력들이 상호 교류하고 정보를 교환하며 업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네트워킹 지원이 시급함
- 국·공립관을 포함한 다른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인력 네트워킹 지원을 통해서 상호 정보교류뿐 아니라, 네트워크 기반의 워크숍, 강좌 등의 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이 가능하도록 함
- 최근 청년문화인력 양성이나 지역문화인력 지원 등을 통해서도 이러한 네트워킹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지원사업과의 연계는 물론, 박물관·미술관 학예인력에 특화된 전문적인 네트워킹 및 학습 지원 사업을 별도로 추진함
- 또한 학예인력의 전문교육 수요를 파악하여 이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일종의 보수교육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주체가 이러한 교육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학예인력 실명제’(가칭)를 통한 인력지원사업의 연구, 전시, 교육 등 성과 공표 의무화

- 인력지원사업에 의해서 채용된 학예인력은 박물관·미술관의 주요 사업, 특히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 이러한 업무상 성과와 각 개인의 경력으로서 공인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예인력의 경력 및 진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일반적으로 예술가나 연구자의 경우, 또한 독립 큐레이터의 경우, 사업장이나 기관의 소속 여부와 관계없이 자신의 작업 또는 업무 성과를 개인의 경력으로서 관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사립박물관·미술관 학예인력의 경우 이러한 전문적인 경력 관리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인력지원사업에 의해 채용된 학예인력의 경력 관리 차원에서 지원인력이

전시나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이나 진행에 기여한 성과를 자신의 이름으로 명확하게 공표할 수 있도록 제도화함

- 이를 통해서 소규모 사립관에서 학예인력이 관장=학예사의 전시 기획이나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보조적 역할에만 머무는 경향을 개선하고, 업무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함

#### □ 매년 개최되는 박물관주간 등의 전국적 행사에서 학예인력 세션 의무 배정

- 박물관주간 행사의 경우, 국제적, 전국적 단위로 개최되고 있으며, 주로 학회를 중심으로 각종 학술행사 등이 운영되고 있음
- 그러나 박물관·미술관의 핵심 인력인 학예인력의 연구, 전시, 교육 등의 활동을 공론화하고 그 성과나 한계를 논의할 수 있는 세션은 거의 마련되어 있지 못함
- 따라서 학예인력이 중심이 되어 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 수집, 연구, 전시, 교육 등의 활동이나 그에 관한 과제 등을 학술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세션과, 학예인력과 관련된 고용, 노동, 복지 등의 정책적 이슈를 공론화하는 세션을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이를 통해서 박물관·미술관의 운영과 활동에서 학예인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전문적 위상을 제고하고, 정책적 이해관계자로서의 학예인력의 네트워킹과 공론장 형성에 기여하도록 함

#### □ 한국박물관협회 홈페이지 내에 학예인력 등에 관한 메뉴 신설·운영: 디지털 아카이브로 상설화

- 박물관·미술관에 종사하거나 관계된 다양한 인력들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학예인력은 경력이나 직급에 관계 없이 박물관·미술관의 존립과 발전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임
- 그러나 한국박물관협회에서 학예인력의 존재감이나 목소리는 미약하고, 학예인력을 비롯한 박물관·미술관 종사자나 관계자에 관한 정보, 연구 등의 공유도 취약하다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학예인력의 임파워먼트(empowerment) 및 정보 공유, 박물관·미술관 활동의 발전을 위해서 과거와 현재의 큐레이터, 에듀케이터, 레지스트라, 복원·수복 전문가, 연구자 등을 소개하고 그 업적을 공유하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별도로 운영

□ 박물관·미술관 정책 및 지원사업 등의 주요 의사결정, 심의, 자문 등에 사립관  
학예인력 또는 인력지원사업 경험자의 참여 의무화

-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박물관·미술관 정책에서의 학예인력의 정책적 과소대표성은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박물관·미술관 정책에서의 학예인력 임파워먼트, 즉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구체적으로는 박물관·미술관 정책 전반, 인력지원사업을 비롯한 각종 지원사업의 운영 관련 의사결정, 심의, 자문 등의 위원회나 협의회를 구성할 때, 학예인력 특히 사립관의 학예인력 또는 인력지원사업 유경험자인 학예인력의 참여를 의무화하여, 학예인력 관점에서의 이해대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라. 인력지원사업의 개선 및 신규 지원사업의 개발

□ 인력지원사업 개선 및 신규 지원사업 개발의 기본 관점: ‘좋은 일자리’ 만들기

- 현재 인력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드러나는 각종 문제점과 과제들은 근본적으로 박물관·미술관 학예인력이라는 직업이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지향해야 함
- 인력지원사업에서의 잦은 퇴사와 인력 재모집의 반복, 낮은 급여와 열악한 처우에 대한 문제제기의 계속, 최소 1년의 지원기간을 보장해 달라는 요청, 근무여건의 개선, 노동·복지제도의 보완이나 학습/성장 기회의 보장을 기대하는 목소리들을 귀담아 들어야 함
- 특히나 이러한 측면들은 사립관에 대한 학예인력들의 부정적 인식과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사립관에서의 장기 근속을 희망하지 않고, 필요한 경력을 채우고 나면 국·공립관으로 이직하는 경향을 만들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사립관에서 근속하는 학예인력을 찾기 어려워지고, 역량이 뛰어난 학예인력이 사립관에서 자부심을 갖고 일하기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도 있음
- 따라서 사립관이 단순히 국·공립관이나 더 나은 일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단순한 사다리로 인식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
- 그런 의미에서 기본적으로 인력지원사업의 개선 및 신규 지원사업의 개발은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 □ 단년도 인력지원사업의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다년도 사업지원 모델로

-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교육 및 실무연수의 성격 강화
  -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은 그 속성상 단순 일자리 지원사업을 넘어서 교육 및 실무연수 성격이 더욱 명확해져야 함
  - 따라서 경력인정대상기관의 지정 시 이러한 실무연수 및 교육 역량의 여부를 엄격히 심의하여 지정하도록 함
  - 또한 위에 언급한 교육 및 실무연수 프로그램 개발, 국·공립관의 역할 강화, 지역 내 대학 연계 등의 방법을 통해 시행하는 방안을 구체화하도록 함
- 현행 인력지원사업의 안정화를 위하여 점진적으로 사업지원 형식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한 사업 모델의 개발을 위해 시범사업을 실시함
  - 기본적으로 사업지원 기간을 최소 2년 이상 최장 3년으로 하여 설계하고, 사업비 내에 지원기간 동안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진행하도록 함
  - 현재의 단년도 방식의 사업지원 모델을 넘어서 다년도 지원으로 사업지원 방식을 다각화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의 다년도 지원사업 사례 등을 검토하여 박물관·미술관에 부합하는 형식으로 개발해 나아가도록 함
  - 다년도의 사업지원 모델을 개발, 시행하는 것은 현재의 사립관 운영 체질을 개선하는 데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인력지원사업을 비롯해 각종 지원사업이 1년 단위의 단년도 사업이다 보니 지원사업 의존도가 높은 사립관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행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운영 모델을 실험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 경험을 갖기 어렵기 때문임
  - 따라서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이 중장기적인 계획과 실행에 의한 기관의 지속가능성을 토대로 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단년도의 인력지원사업을 다년도의 사업지원 모델로 전환해 가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한편 당장의 단년도 학예인력 지원사업이 실질적으로 1년 미만의 지원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여 고용 안정성을 제고하고 박물관·미술관의 업무 연속성 및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도 필요함: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 강화**
  - 인력지원 사업의 기간 조정 등에 대한 요구에 대한 해소 방안 모색 필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인력 지원사업에 대한 사립관 고용주와 고용되는 인력들 모두 인력지원 사업이 채 1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진행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함
  - 매년 교부되는 보조금 사업의 특성상 연초에 예산을 배분받은 협회에서 인원을 선발하고 배치하는데 드는 기간까지 포함한 1년이라고 했을 때, 실질적으로 근무 가능한 기간은 8~9개월 내외이며, 그로 인하여 업무의 장기적인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큼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고보조사업과 사립관 사이의 관계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지방분권의 취지에 맞는 방식으로 인력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 기존 인력지원사업이 국고와 사립관의 자부담 매칭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여기에 지자체의 지방비 매칭을 추가하여 학예인력의 급여 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1~2월의 공백 기간 급여 지원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부담하게 함으로써 최소 1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또한 지역문화정책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각 지자체 소관 사립관의 학예인력 복지 및 경력/진로 개발에 대한 지자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이에 관한 조례 제정, 지원계획 및 실행 성과 등을 각 지자체별 지역문화정책 평가, 공립관 건립 사전 타당성 평가 등에 반영하도록 함

□ **박물관·미술관 학예인력의 연구자 정체성 강화: 문화분야 R&D, 학술연구지원사업, 협력망에 의한 연구지원사업 등을 통해 ‘다년도 연구지원’ 사업의 개발, 추진**

○ **학예사의 연구자 정체성에 대한 제도적 인식 강화 필요**

- 학예인력의 특성상 석사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가 다수를 차지하는 점, 또한 학예인력의 전문성이 연구자 정체성과 불가분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학예인력에 관한 각종 정책이나 지원사업을 설계하는 데에 이를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최근 일각에서는 학예인력을 일종의 ‘기획’ 인력이나 프로그램 운영 실무자 정도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어, 실제로 소장품을 기반으로 하는 박물관·미술관에서도 학예인력의 연구 역량에 대한 제도적 인식이 취약해지고 있는 측면이 두드러짐
- 이는 특히 각종 지원사업이 연구가 아닌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설계 및 운영되다 보니 지원사업 의존도가 높은 사립관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고, 그 결과로 소장품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지 못함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예인력의 연구자 정체성, 즉 ‘학예연구사’로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함

○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연구지원사업에 ‘박물관·미술관 거점 학술연구지원사업’ 신설**

- 학술연구지원사업은 대학 및 연구소를 기반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박물관·미술관의 조사·연구 기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에 대한 별도의 지원사업을 신설하도록 검토함
- 현재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 중에는 ‘거점 연구소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박물관·미술관을 이러한 주요 거점 연구소의 일종으로 간주하여 접근하거나, 별도로 독립된 박물관·미술관 거점 학술연구지원사업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하도록 함
- 연구 성과로는 학술논문뿐 아니라, 박물관·미술관 전시 및 학술서의 성격을 띠는 전시도록을 발간하도록 함
-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기반 또는 활용을 중심으로 한 연구주제를 설정한 공모사업으로 진행함

○ 문화기술(Cultural Technology, CT) 관점에서 다년간의 ‘박물관·미술관 R&D 사업’ 개발·추진

- 현재의 제도 하에서 전문인력이 박물관 경영 및 운영에 대한 기초적인 실무 업무를 경험해보는 것은 가능하나, 컬렉션 관리 및 연구 등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프로젝트 참여를 통하여 연구 전문성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 현황 및 현장조사결과에 따르면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경우 컬렉션 관리와 연구에 대한 투자가 어려운 상황이며, 관련한 인력을 장기적으로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음
- 다만, 현재의 지원 제도가 장기적인 차원의 인력지원사업이 아닌 실습을 통한 자격 취득과정이라는 차원에서 장기적인 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는 정책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이에 장기적인 인력이 투입되고, 해당 인력의 전문성이 요하는 영역의 경우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R&D 사업과의 연계를 고려해볼 수 있음
- 특히 CT와 관련된 R&D 사업으로 접근할 수 있는데, 이는 한편으로 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에 관한 각종 조사연구, 보존 및 수복 관련 기술연구, 전시 및 교육 관련 연구, 아울러 박물관·미술관의 디지털 접근성 제고 및 디지털 콘텐츠 제작·보급, 각종 보안 및 위기관리 시스템 구축 관련 기술연구 등 그 범위는 다양함



〈그림 9-2〉 박물관 및 미술관 문화기술 R&D의 기대효과

※ 자료원: 남현우, 2014, 박물관·미술관 문화기술 R&D 전략 및 연구과제 발굴에 대한 연구, p. 219.

-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라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의 장소로서 전시, 교육, 수집, 연구,

콘텐츠 등의 기능적 확대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구현하고 시도해 보는 실험장으로  
로서 박물관 및 미술관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스마트 박물관 및 미술관 지원’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 역시 단기간에 디지털 콘텐츠를 제작하는 수준을 넘어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신기술 도입이 박물관·미술관 분야 외부의 기술전문인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이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컬렉션 관리 등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신기술에만 치중하지 않은 보다 실질적인 차원에서 기존의 고유한 박물관·미술관의 다양한 기술 및 연구 역량들을 포괄하면서, 신기술 적용까지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박물관·미술관 CT’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박물관·미술관 분야의 연구자 및 전문인력들이 사립관을 거점으로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통해 역량 강화 및 운영의 질적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박물관·미술관 R&D 사업을 개발, 추진하도록 함
- 현재 R&D 사업은 과학기술연구 중심으로 이뤄지는 상황이고, 인문·사회계열의 R&D 예산(주로 학술연구지원사업)은 전체의 5% 미만이나, 문화예술 분야 산업과 각종 응용 학문들의 실질적인 융복합 발전을 위해서 박물관·미술관 R&D 사업을 정책적으로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문체부가 사업의 당위성 수립 및 예산 확보 노력을, 현장에서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을 뒷받침할 운영 여건의 개선, 학예인력의 R&D 역량 강화, 박물관·미술관의 연구지원체계 향상 등 박물관·미술관의 R&D 인프라 구축 노력이 필요함

#### ○ 박물관·미술관협력망을 통한 다년도 연구지원사업의 추진

- 사립관의 경우, 관장 및 학예인력 모두 다른 박물관·미술관과의 교류협력, 특히 국·공립관과의 연계를 통한 운영 개선에 대한 욕구가 큼
- 반면 국·공립관의 협력망 체제나 사업이 오히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또한 사립관의 경우 연구의 여건이나 역량이 갖추어지지 않아 자체적으로 소장품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행하는 데에 여러 한계를 체감하고 있음
- 따라서 국립·공립·사립박물관·미술관을 각 1관씩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연구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함: 연구주제나 범위는 출처 조사연구, 재료 및 보존처리 연구, 역사·미술사·과학·자연사·문화·사회사 등의 주제연구 등으로 다양하게 기획하여 소장품의 가치 및 활용도를 높이는 쪽으로 추진함
- 연구성과는 참여한 국립, 공립, 사립이 공동으로 발표하고 신청을 통해서 전국 각지의 순회전이나 공동 학술행사 방식, 공동 출판 및 온라인 콘텐츠 제작 등으로 공유하도록 함

#### □ 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 중심성 강화를 위한 소장품 기반 연구지원: 기존 DB 구축 사업을 다년도의 종합적인 소장품 연구지원사업으로 추진

#### ○ 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 중심성과 이에 기반한 학예인력의 전문성 강화 필요

- 문화정책 내에서의 문화분야 전문인력에 대한 법적 규정은 「문진법」에서부터 등장했는데, 제6조(전문인력)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시설의 전문적 운영에 필요한 기획·관리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 이는 당초 전국의 문화기반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할 인력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었으나, 최근으로 올수록 문화분야 각종 법률에서 전문인력의 법적 정의는 문화기반시설 종사자의 의미를 벗어나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이러한 추세 속에서 박물관·미술관에 고유한 전문성은 「박미법」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소장품에 의해 차별화되는 것임
  - 따라서 문화분야 전문인력 중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의 고유 영역인 소장품 중심의 조사연구 활동을 중심에 두고 지원사업이 체계화될 필요가 있음
-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토대가 되는 소장품 연구지원사업의 체계적 운영 시급
- 현재 학예인력 지원사업은 일반 문화분야 전문인력 지원사업과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이는 학예인력의 고유한 전문성에 대한 인식이 취약해지고,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원사업이 설계,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경향은 박물관·미술관에 특화된 지원사업 외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 다른 기관에 의한 지원사업과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다양한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확장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하지만 프로그램 중심의 인력 운영은 박물관·미술관의 전문성을 규정하는 소장품 중심의 조사연구 기능을 취약하게 할 가능성이 높아, 다른 정부지원사업과는 구별되는 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으로서 소장품 연구지원사업의 체계화가 박물관·미술관 정책에서 중요해질 수밖에 없음
- 기존 DB 구축 사업을 종합적인 소장품 연구지원사업으로 확장 개편
- 따라서 기존의 DB 구축사업이 학예인력지원사업보다 더 불안정하고 덜 전문적인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대거 개선하여, 소장품 조사연구(출처 등의 기본사항) 및 목록화, 소장품의 학문적 연구를 통한 소장품의 해석과 가치 발굴(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등에 관한 학문적 연구, 연구방법 개발, 연구 네트워크 및 협력 등), 연구 성과의 복합적이고 적극적인 공유와 토론 활성화(전시, 논문 발간, 학술행사 개최, 도록 출판,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공유, 강의 등의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까지를 아우르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함
  - 이 경우에도 다년도의 종합적인 소장품 연구지원사업으로서, 연구인력인 학예사의 인건비를 포함하여 진행하도록 함

## 4절 사립박물관·미술관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가. 협력망을 통한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

#### □ 국·공·사립박물관·미술관의 상호협력 도모를 위한 협력망 구성

-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의 구성은 「박미법」 제정(1992년)부터 법상에서 규정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기능과 의무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표 9-10)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에 대한 「박미법」 상 주요 규정

구분	내용
목적	•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유통·관리 및 이용 등의 효율화와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조체제
기능	• 1.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 • 2. 박물관·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 3. 종합목록·상호대차 등 박물관·미술관 운영의 효율화 • 4. 기타 박물관·미술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사항
협력 의무	• 박물관·미술관은 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도서관법」 및 「문화예술포럼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도서관·문화예술회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 의무화 • 다른 박물관·미술관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은 박물관·미술관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함
구성	• 박물관협력망과 미술관협력망으로 구분: 중앙관(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민속박물관)과 지역대표관(시도지사가 지정해 중앙관에 통보)

※ 자료원 : 「박미법」 및 「박미법 시행령」 제정 당시부터 2022년 일부 개정까지 본조 내용 재구성.

- 본 법에 의한 대표적인 협력망은 1) 중앙관+지역대표관으로 구성된 박물관협력망(중앙관: 국립중앙박물관), 미술관협력망(중앙관: 국립현대미술관), 2) 중앙관+가입관(사립·대학 기능)으로 구성된 민속생활사박물관협력망(중앙관: 국립민속박물관) 3) 중앙관+회원관으로 구성된 근현대사박물관협력망(중앙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임
- 이와 같이 현재 「박미법」 상의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제도는 국·공·사립·대학 박물관·미술관을 포괄하기보다 박물관과 미술관을 구분하여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인 국·공립관에 집중되어 있으며, 민속계열과 근현대사 계열을 제외한 사립박물관·미술관은 「박미법」 상의 협력망에 포함되지 않음

-현행 협력망 역시 운영 조직 및 예산 제약, 기관장의 관심 부족, 운영방향 부재 등으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음(문화체육관광부, 2019; 김면 외, 2021)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구축의 선결요건>

- ‘협력을 위한 조직, 인력의 확보’(29.6%), ‘내부구성원들의 필요성 인식’(20.6%), ‘협력망 가입을 위한 홍보활성화’(16.7%), ‘법률, 제도 기반 마련’(16.7%) 등의 순으로 나타남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의 역할 수행을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

- ‘관련 예산 및 인력의 부족’(42.8%), ‘네트워크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 관심 부족’(20.6%), ‘상호협력 체계의 운영 미흡’(14.1%),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조정 및 절충 어려움’(1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사립관의 경우 (사)한국박물관협회, (사)한국사립박물관협회,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와 같은 관련 협회 가입을 통해 협력사업,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사단법인 형태의 지역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한국박물관협회의 지원으로 구성이 시작된 만큼 한국박물관협회의 산하 조직으로 인식되기도 하며 서로간의 역할이 중복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음

- 국·공·사립·대학박물관·미술관을 포괄하여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운영 활성화 및 협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망 구조의 검토와 추진 방안이 필요함

-최근에 수행된 박물관·미술관 설문조사 결과, 협력망 운영성격의 주안점으로 ‘국·공·사립·대학 관종별 단위기관들의 협력 강화’(14.6%)보다 ‘국·공립기관 중심의 협력체제 유지 및 사립 지원 강화’(31.4%)나 ‘권역별 지역 대표관 중심으로 지역단위 협력 구축과 운영’(29.1%)에 대한 요구가 높아, 현행 설립·운영주체별 협력망의 효과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김면 외, 2021)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 운영성격에서 주목해야 할 점>

- ‘국·공립기관 중심의 협력체제 유지 및 사립 지원 강화’(31.4%), ‘권역별 지역 대표관 중심으로 지역단위 협력체제 구축과 운영’(29.1%), ‘국·공·사립·대학 관종별 단위기관들의 협력강화’(14.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 협력망의 실효성 확보와 사립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협력 전략 마련

-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운영 활성화 방향연구』(김면 외, 2021)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박물관·미술관 협력망에 대한 인지도”와 “기관들 간 협력 참여도” 그리고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필요도”에 대해 국·공립관에 비해 사립관이 낮게 나타나, 사립관의 협력망에 대한 인식과 경험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보임
- 그러나 본 연구의 현장사례연구에서 파악한바, 국내·외 다른 박물관·미술관, 그 외 기관 등의 연계협력 경험을 가진 사립관은 78%로 나타났으며, 아래와 같이 대부분의 사립박물관·미술관에서 타 기관과의 연계 협력에 대한 필요를 깊이 공감하고 있음

- (현장사례연구) 사립관의 90%는 실질적인 대외 협력에 대한 요구로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92%가 다른 기관과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응답

- 협력망 운영은 사립관의 제한된 자원의 한계를 넘어 기관 역량을 강화하고, 사립관이 보유한 소장품의 활용, 공동 사업 기획과 홍보를 통해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며, 지역단위 협력체제 구축으로 지역문화 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하고 지속가능한 방안이 될 수 있음
- 협력망을 통해 광역단위 국·공립관과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전시, 교육, 소장품 연계 협력, 인력양성 및 전문인력 네트워크, 공동 홍보를 활성화할 경우 인적·재정적 자원이 제한적인 사립관의 역량 향상과 운영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함

<박물관 및 미술관 협력망이 수행해야 할 중요한 역할>

- ‘전시, 교육, 문화행사 관련 공동기획, 지원, 홍보가 병행되는 역할수행’(47.1%), ‘지역에서의 문화교류 사업에 대한 지역협력형 허브역할 수행’(17.5%), ‘학술조사 및 연구 분야의 싱크탱크 기능’(15.9%) 등의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사립관이 박물관·미술관 간의 협력망 외에, 문화재단 등 유관 기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학교 및 대학, 지자체 등과의 연계협력 활성화로 문화 다양성 제고 및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도록 촉진 및 지원할 필요가 있음

#### □ 지자체의 협력망 운영 지원에 대한 책임성 강화

- 협력망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감안할 때 지역 단위 협력 체계 구축의 타당성이 높은 만큼, 협력망 구축 및 운영에 있어 지자체의 역할과 지원 책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실효성이 높은 협력망의 형태에 대해 현재 박물관·미술관은 협력망의 협력 대상 및 범위로 “광역단위 지역 중심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선호가 국·공립관이나 협회 중심 운영 형태보다 높은 것으로 파악됨(김면 외, 2021)
  - 또한 협력망 운영성격에 있어서는 “국·공립기관 중심의 협력체제 유지 및 사립 지원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 광역단위로 지역 중심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운영하되 국·공립기관이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 사립관에 대한 지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협력망의 성격과 형태에 대한 요구를 파악할 수 있음
  - 따라서 현행 「박미법」에 의한 국·공립관 간 협력망 외에 지역 기반 협력망을 구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지자체의 역할이 요구됨

-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문화체육관광부,2019)은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운영 활성화와 박물관·미술관 지역사회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박물관·미술관이 지역공동체에 사회·문화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모색과 함께 ‘지역 문화거점’으로서의 박물관·미술관을 위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 협력망에 관한 정책연구로 2021년에 『박물관·미술관 협력망 운영 활성화 방향연구』(김면 외, 2021)가 수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정책 추진의 지속성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이 정책연구에서는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광역 단위의 지역대표관과 등록 박물관·미술관(회원관)의 협력망 구성을 가장 적합한 형태로 제안한 바 있음
- 일차적으로 시·도 광역단위의 국·공·사립·대학박물관·미술관 협력망을 구성하고 실질적인 사업을 통해 사립관의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함
-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역량과 의지에 따라 기초단위 협력망을 활성화 나갈 수 있음
  - 현재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총 33개가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를 두고 있으며, 이 중 26개 기초자치단체가 진흥 조례를 사립관에 특정하여 제정하고 제주시와 같은 기초자치단체는 박물관·미술관의 상호교류 및 협력망 구축을 위한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
- 이러한 지자체의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및 진흥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협력망의 구축과 각 지자체별 협력망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협력망 전담조직(센터) 확보가 필요함
  - 협력망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협력망 운영 전담 조직과 인력, 재정 확보 등 시스템 구축이 필수 요건이라 할 것임

## 나.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노후시설 개선 지원

### □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시설 노후화

- 사립박물관·미술관 중 2000년 이전 건립 사립박물관·미술관이 약 32.2%(『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기준)으로 2018년의 약 26%와 비교해 건립 후 20년이 경과된 박물관·미술관이 점차 늘어나고 있음
  -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문화체육관광부, 2019)에서도 재정적 한계, 기관장의 관심 부족 등으로 시설 노후화, 수장고 부족, 편의시설 미비 등 시설관리운영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신규건립에 비해 노후화 개선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하며, 상당수 노후화 시설의 수장고 포화, 소장품 보존처리 기능 저하 문제로 사립관이 소장한 중요 국가적 자산에 대한 훼손/소실 우려로 사립박물관·미술관별 규모, 소장품 종류, 지역 환경 등을

고려한 맞춤형 안전관리 컨설팅 제공이 발표됨

- 현장사례연구 결과 사립관의 평균 운영 연수는 13.8년이었으나 재개관 등을 고려해 연구진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평균 6.6년간 운영되고 있고, 시설 노후화 등 개선 필요성이 있는 곳은 82%로 나타남
- 지자체 단위에서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는 전시실 LED 조명 교체, 건축물 보수(노후시설, 시민편의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수장고 항온습습 시설 보수 등 노후화된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시설환경 개선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인천광역시 '2022년 등록사립박물관 활성화 지원 사업'>

-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사립박물관 대상 시설지원 사업
- 지원내용: 전시실 LED 조명 교체, 수장고 항온·항습시설 보수, 건축물 보수 등 시설환경 개선 사업 등 진행 / 사업별 최고 지원 한도액 20백만 원, 최저 지원 한도액 10백만 원으로 제한
- 지원 제외 기관: 기업이 운영하거나 출연한 기관, 사립대학박물관·미술관

<서울특별시 '2020년 사립박물관·미술관 시설개선 사업'>

- 서울특별시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대상으로 시설개선 사업
- 지원내용 : 기관당 5천만 원 이하 시설개선(노후시설, 시민편의시설, 장애인편의시설) 공사비 지원 (보조금 지원금액의 10~20% 자부담)
- 지원 제외 기관: 기업 운영 및 출연 기관

#### □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지속가능성과 다양성, 포용성 제고를 위한 시설 개선

- 정부의 사립박물관·미술관 시설 개선 지원은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는 박물관·미술관 운영을 견인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2022년 8월 개정을 앞둔 ICOM의 새 뮤지엄 정의안과 관련한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앞으로의 박물관·미술관이 지속가능성과 다양성, 포용성을 그 사회적 역할로 인식하고 강화해야 하는 시대적 책무성을 인식해야 할 것임
-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해 박물관·미술관의 에너지 전환 및 폐기물 감축 등을 위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사립관의 설립 및 기 운영시설에 있어서도 친환경적 건축 및 시설 개선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정책 및 지원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볼 때 사립박물관·미술관 구성원의 다수가 박물관·미술관의 환경적 책무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박물관·미술관은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긍정응답 61.9%), “박물관·미술관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정책을 공표하고, 이 정책은 박물관·미술관의 설립목적(미션)에도 적합해야 한다”(긍정응답 60.2%)

- 또한 이용자 정책과 연계하여 장애인, 외국인, 취약계층 등에 대한 포용적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설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함. 최근 박물관·미술관은 장애인과 노약자가 편히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 시설’이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편의 제공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정책 과제가 요구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상 전시장(박물관·미술관 등)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기관으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리모델링이 필요
  - 또한 「박미법」에 2022년 1월 개정을 통해 박물관·미술관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 편의 제공,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에 관한 근거 조항 신설(2022년 7월 19일 시행)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22년 7월 19일 시행)

제9조의3(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 ①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 및 정도,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적절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장애인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인력을 둘 수 있다.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을 설립·운영하는 자는 장애인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프로그램을 운영·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사립관들은 박물관·미술관이 다양한 이용자를 포용해야 한다는 당위에 대한 인식은 매우 높으나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시설 및 서비스 마련 책무에 대해서는 수용도가 낮은 다소 모순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음
  - 현장사례연구에서 장애인 관람객을 고려한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의견이 제안되었으나,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장애인 등 취약/특수 계층에 대한 시설 및 설비 제공 책무에 대한 긍정도는 높지 않음

- (현장사례연구) “○○박물관은 장애인 접근성 시설은 물론, 기본적인 편의공간(화장실) 등에 대한 개보수도 필요한 상황임”
- (설문조사) “박물관·미술관은 청소년 대상 음성해설 기기, 경사로, 점자 및 외국어 표기, 수유시설, 그 외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유소아 보호자, 외국인 등이 원활한 이용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긍정응답 58.4%), “박물관·미술관은 고령자, 장애인, 유소아의 보호자, 외국인, 그 외 특별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박물관·미술관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조인력 배치, 안내 유모차 대여, 외국어 해설자료 배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긍정응답 57.5%)

- 이는 박물관·미술관의 포용성·다양성에 대한 당위적 지향은 공감하나 사립관의 여건상 현실적으로 장애인 시설 구비 및 개선 등을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음

- 사립관의 시설 개선이 단순히 노후시설의 현대화가 아닌, 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외국인 등 취약/특수 계층을 포용하고 접근성을 높이는 이용자 정책과 연계되고, 박물관·미술관의 공적 책임으로 지향해야 할 다양성과 포용성을 구현하는 실질적

요소라는 관점에서 공적 지원 방향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아래의 해외 박물관·미술관의 기준과 같이 시설 및 설비 구축은 박물관·미술관의 기능 및 이용자 정책, 지속가능한 공공성 확보를 위한 요건으로 접근할 필요

<미국 '박물관 핵심 기준'>

• 시설과 위기관리 Facilities and Risk Management

- 박물관은 소장품과 관람객, 직원의 니즈에 부합하도록 공간을 할당하고 시설을 활용한다.
- 박물관은 사람과 소장품/전시물, 보유 또는 이용 시설의 안전과 보안을 보증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한다.
- 박물관은 시설의 장기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다.
- 박물관은 청결하고 잘 유지되며, 관람객의 니즈에 부합한다.
- 박물관은 잠재적 위험과 손실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갖추고 있다.

<일본 '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상의 바람직한 기준'>

• 시설 및 설비

-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설비, 그 외 해당 박물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구비하도록 해야 한다.
  - (1) 내화, 내진, 방충해, 방수, 방진, 방음, 온습도 조절, 일광 차단 또는 조절, 통풍 조절, 오염/파괴/도난 방지, 그 외 박물관자료를 적절하게 보관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설비
  - (2) 청소년 대상 음성해설 기기, 경사로, 점자 및 외국어 표기, 수유시설, 그 외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유소아 보호자, 외국인 등의 원활한 이용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 (3) 휴게시설, 그 외 이용자가 쾌적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이용환경을 정비하는 데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영국 '박물관 인증 기준'>

- 인증 박물관은 이용자를 환영하는 접근가능한 장소여야 한다.
- 이용자 중심 경험: 이용자를 환영하고, 그들이 접근가능한 환경, 적절한 서비스와 시설 제공 필수
  - 예상 이용자 수를 충족시키고, 편의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 구비
  - 건물 내외부에 적절한 표지판과 방향 표시

○ 이에 따라, 현 등록 요건으로는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한 박물관·미술관의 국가 단위의 설립·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사립박물관·미술관 시설의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지자체와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현재 광역자치단체 중 전라남도, 경상남도, 제주도 등에서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공공 문화시설 접근성 강화를 위해 박물관·미술관의 열린 환경, 무장애 환경 조성으로 시설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전라남도 '제2차 전라남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2020~2040년)>

• 박물관·미술관 열린 환경 조성

- (박물관·미술관 실태조사)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의 공공 문화시설 접근성 강화를 위해 도내 박물관·미술관 실태 파악
- (박물관·미술관 인증 지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인증 신청시설 인증비 및 각종 편의시설 지원방안 마련

<경상남도 '제2차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2020~2024년)>

- 문화기반시설 무장애 환경 조성
    - 문화기반시설 무장애 환경 및 이용자 실태조사
    -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등에 무장애 시설개선 조성지원
- <제주도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진흥 시행계획'(2020-2024년)>
- 박물관·미술관 열린 환경 조성(무장애시설 구축)
    - 장애인, 노약자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내 공립 박물관·미술관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인증) 추진(공립 먼저)

## 다. 사립박물관·미술관의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비재정 지원

### □ 코칭형 컨설팅 지원

- 컨설팅 지원은 그간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 정책에 있어 수차례 필요성이 제시되어 왔으며, 이번 현장연구에서도 그에 대한 요구가 다수 피력되었음
  - 컨설팅은 운영 단계뿐 아니라 설립 준비 단계에서 그 수요가 높으며, 설립 계획, 개관준비 및 등록 단계에서도 필요

양지연 외, 2013,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 매뉴얼 연구』

- 박물관·미술관 전문인력 및 담당 행정공무원의 컨설팅 수요 조사
  - 전문인력과 담당 공무원 모두 컨설팅의 필요성을 매우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설립 준비 단계에서 전문 컨설팅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았음'
  - 설립 계획 단계에서는 '부지 선정 및 주변 환경 분석', '설계 및 건축 분야'에 대한 컨설팅 요구가 높았고, 개관 준비 및 등록 단계에서는 '개관전 준비 실무', '관련 법률 및 제규정 검토', 운영 단계에서는 '박물관·미술관 고유 업무', '경영·행정 업무'에 대한 컨설팅 요구가 높았음
  - 기존에 전문 컨설팅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컨설팅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는 컨설팅 시스템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 및 절차, 기대할 수 있는 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적절하게 홍보하고 소통하는 것이 컨설팅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함
  - 컨설팅의 효과적인 방법으로는 '전문 컨설턴트를 연결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았고 '지역·공립박물관·미술관을 거점으로 컨설팅 서비스 제공'도 효과적일 것으로 인식함

- 컨설팅은 대다수가 관장에 집중된 사적이고 내부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취하고 있는 사립박물관·미술관들에게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객관적인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고, 박물관·미술관 내부 구성원들이 박물관 현황을 점검 및 공유하고 개선을 위한 변화를 추동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음
- 그러나 외부 전문가에 의해 일방적이고 단편적으로 이루어지는 컨설팅은 효과가 제한적이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박물관·미술관 스스로 자발성을 갖고 자체적인 점검과 평가 과정을 거쳐 전략과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코칭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운영 전략·계획 수립, 자원 조성, 홍보마케팅, 재무 회계, 조직 및 인력관리, 소장품 관리 등 분야별로 유형화하여 집중적인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도 유용할 것임

<미국박물관협회(AAM)가 수행하고 있는 박물관평가프로그램(MAP)>

- ‘조직’, ‘소장품 관리’, ‘교육과 해석’, ‘커뮤니티와 관람객 참여’, ‘이사회 리더십’의 5개 유형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신청하면 신청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진단 및 컨설팅을 지원
- 평가 과정: ‘박물관 핵심 기준’에 준해 1년간 MAP이 제시한 워크북과 활동 완수, 평가위원회의 현장 방문, 변화 수행을 위한 행동 수행, 최종 보고서 검토, 액션 플랜 문서화 업무로 이루어짐
- 박물관 내에 평가팀을 조직, MAP 실무자 및 평가위원회와 소통하도록 하고, 평가팀 외에 박물관 내외부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평가 과정과 결과를 공유하도록 요구
- 주로 중·소규모 박물관들이 역량을 강화하여 인증 신청을 준비하는 전단계로 활용
- 평가프로그램은 유료이나 IMLS의 지원으로 300달러~1500달러에 1년간의 평가프로그램에 참가할 수 있음

- 박물관·미술관 협회 또는 지역 협력망 구조를 중심으로 박물관·미술관 실무자, 관련 학계 및 박물관·미술관계 외 분야 전문가로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분야별로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제시

- 사립관의 운영에 지침이 되는 규정, 정책, 절차 등을 수립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운영 관련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제공하는 것은 사립박물관·미술관 경영의 전문성과 공적 신뢰를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음
- 현장사례연구와 설문조사에서 나타난바, 특히 개인설립 사립박물관·미술관들은 법인 형태의 사립관들과 달리 이러한 규정 및 정책에 대한 성문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사립관이 전문성과 공적 책무성을 갖춘 박물관·미술관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운영 규정, 설립목적(미션) 기술서, 조직 및 고용 규정, 소장품 정책, 이용자 정책, 윤리 규정, 운영 전략/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성문화할 필요가 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인식과 여건이 미흡한 상황임
- 설문조사에서 볼 때, 설립목적(미션)을 명시하는 공식 문서와 소장품 정책을 마련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다수가 긍정하고 있으나, 현장사례연구에서 파악한 바, 실제로는 구비하지 못한 곳이 다수이며, 있다 해도 명확한 문서화·규정화가 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음

(설문조사) “설립목적(미션), 즉 박물관·미술관이 왜 존재하고 누구를 위한 박물관·미술관인지를 정의하는 공식 규정문서를 마련해야 한다”(긍정응답 69.9%)

(설문조사) “박물관·미술관은 소장품의 획득, 관리, 보존, 폐기, 이관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별도의 소장품 정책 공문서와 그에 관한 절차 규정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긍정응답 66.4%)

- 한편, 현장사례연구 및 설문조사에서 운영 전략·계획 수립과 공표에 대한 긍정률과 실행정도는 낮은 편이었음. 그 이유에 대해, 현장사례연구에서 볼 때, 가변적이고 단기적인 국고보조금 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공식적인 운영계획의 문서화가 어렵거나 의미가 약하다는 의견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연간 운영계획이 있어도 형식적인 수준에서 작성되는 경우가 다수였음. 또한 계획수립의 필요성 인지와 인력 부족, 우선순위에 따른 여건 미비 등 조직 역량도 중장기 및 연간 운영 전략·계획 수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설문조사) “박물관·미술관은 기본적 운영방침을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또는 사업 연도별로 운영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긍정응답 59.3%)

(현장사례연구) “기관의 설립목적, 미션, 비전 등을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경우는 70%였으나, “그 목적 및 미션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하고 공표, 실행하고 평가 및 개선하는 절차가 마련”된 기관은 36%로 나타남

○ 이러한 기관 운영과 관련된 공식적인 문서 개발은 대외적으로 자원조성 및 업무 협력, 홍보마케팅 차원에서도 중요하며, 해외 사례를 볼 때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 및 평가인증, 공공 지원에 있어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증빙 자료가 되고 있음

[표 9-11] 미국, 영국, 일본의 설립·운영 및 인증 관련 박물관·미술관 증빙 자료

미국 인증의 필수 요건 ‘핵심 문서 검증’	영국 인증 항목 및 증빙자료	일본 ‘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상의 바람직한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의 ‘미션’, ‘윤리규정’, ‘전략계획’, ‘위기대응정책’, ‘소장품 관리 정책’의 5개 문서를 적절히 구비하고 있는가를 검증</li> <li>- 이 과정을 통과해야 인증을 신청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직 건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확한 설립 목적을 제시한 공식 문서 유무, 이사회/운영조직 관련 규범(규정)유무, 운영의 적절성, 효과적인 향후 계획, 소장품 보유 건물 및 부지의 안정성, 재정 기반 입증 등</li> </ul> </li> <li>• 컬렉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컬렉션 소유권에 관한 규정 및 협정, 컬렉션 개발 정책, 컬렉션 기록화 정책, 컬렉션 관리 및 보존 정책</li> </ul> </li> <li>• 이용자와 그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질의 서비스 개발, 이용자 중심 경험, 효과적인 학습 경험</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법」 및 등록요건을 보완하는 노력·의무로 제1조(취지) 외 총 15조의 설립·운영기준 제시</li> <li>- 박물관의 설치 등, 기본적 운영방침 및 사업계획, 운영 상황에 관한 점검 및 평가 등, 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등, 전시방법 등, 조사 연구, 학습기회의 제공 등, 정보 제공 등, 이용자에 맞는 서비스 제공,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의 연계 등, 개관일 등, 직원, 직원의 연수, 시설 및 설비, 위기관리 등</li> </ul>

- 따라서, 사립관이 이러한 박물관·미술관 운영의 기본 정책·규정을 자신의 여건에 맞게 개발하고 구비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매뉴얼·가이드라인을 제공하여 보급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파악됨

#### □ 표준 데이터 시스템 보급

- 소장품관리 시스템, 관람객 DB 관리 시스템 등 소규모 박물관·미술관들이 개별적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표준 전산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여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경영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음
  - 특히 많은 사립관이 단기 지원인력에 의해 소장품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체계적이고 표준화된 전산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 경우, 잦은 인력교체로 인한 인수인계 미비, 업무 중단 등의 문제를 완화하고 인력이 업무에 조기 적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
- 「박미법」상 협력망의 주요 기능으로 ‘전산정보체계를 통한 정보 및 자료의 유통’이 명시된 바, 중앙관과 지역대표관을 중심으로 한 박물관과 미술관 협력망을 중심으로 표준 전산 시스템 개발 및 보급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립박물관의 경우 정부는 국가문화유산 DB구축 사업을 통해 국립중앙박물관의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보급하고 이를 활용하여 소장품 DB를 구축하는 인력을 지원하고 있으나, 표준 전산시스템의 자체적인 활용 유도가 필요함
  - DB구축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나 DB구축 인력 지원 이후의 지속적인 관리 시스템은 미비한 상황으로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교육하여 사립관이 자체적으로 소장품관리의 체계적인 전산화를 도모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 사립미술관의 경우 이와 같은 표준화된 소장품관리 시스템이 아직 없고, 대부분 엑셀을 이용하여 기관별로 임의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임. 국립현대미술관 등에서 미술관에 보다 특화된 표준 소장품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사립관에 보급할 필요가 있음
- 이와 더불어 ‘관람객 DB 관리 시스템’은 사립관의 자원 조성, 관람객 개발, 홍보마케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또한 사립박물관·미술관 관람객의 빅데이터 구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라. 실험적·장기적 프로젝트를 위한 재정 지원

### □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의 방향 재설정

- 사립관에 대한 지원 필요성과 지원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공공 지원사업의 방식이 박물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립관의 자생력을 존중하고 자구적인 노력을 유도하기보다 정책 목표에 따른 하향식, 분배식 단기 지원으로 사립관의 지원 의존도를 높였다는 인식을 유념할 필요가 있음
- 사립박물관·미술관들이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단기 지원을 중심으로 연간 사업을 설계하고 학예 업무를 수행하는 기형적인 구조에서 벗어나 개별 사립관이 각자의 여건과 요구에 따라 사업을 스스로 설계하고 이를 심사하여 지원하는 방식으로 박물관 지원사업의 방향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음
- 사립관의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자생력을 기르는 지원사업으로 실험적 프로젝트, 장기 프로젝트 지원을 제안하고자 함

### □ 소규모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실험적 프로젝트 지원

- 특히 적은 인력과 개인 설립·운영 체제로 운영되는 소규모 사립박물관·미술관들은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에 비해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보다 유연하게 시도하여 다양성과 창의성을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릴 필요가 있음
- 개별 박물관·미술관이 강점과 약점, 내외부 여건을 진단하고 전략적 계획에 따라 추구하고자 하는 실험적인 프로젝트를 유연하게 개발하고 시도해 볼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유연하고 포괄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

<미국 IMLS의 소규모 박물관을 위한 특별 지원 사업 'Inspire! Grants for Small Museums'>

- 소규모 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평생 학습' '조직 역량' '소장품 관리와 접근성'의 세 유형에서 박물관이 신청하는 프로젝트를 최대 2년까지 지원(매칭 의무 없음)
- 각 박물관의 전략계획에서 우선순위에 있는 프로젝트의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 박물관들은 전시, 교육, 디지털 학습자료, 전문인력 양성, 커뮤니티 소통, 관람객 연구, 소장품 관리, 큐레이션, 보존 등 자신의 여건과 필요에 따른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지원 신청함

### □ 장기 지원사업 개발

- 기존의 사립박물관·미술관 지원사업은 인력지원사업의 경우 10개월이며, 기타 각종 사업지원의 경우에도 수 개월 내에 기획 및 실행이 완료되는 단년도 지원 성격을 지님

- 박물관·미술관 업무의 특성상, 장기적인 시간 단위의 연구와 실행이 요구되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단기적·단발적 지원 형식으로 많은 사립관들은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기 어렵고 학예업무의 수행 여부나 수행 내용이 지원 여부에 의존하여 좌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지원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원 기간을 2~3년으로 두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다년도 사업을 설계, 실행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음

## 마. 소장품 보존·수복 및 연구지원을 위한 광역(공공)수장고 건립

### □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열악한 수장환경 지원을 위한 광역(공공)수장고 건립

- 박물관·미술관의 핵심 기능이라고 할 소장품 보존에 있어 사립박물관·미술관은 수장고 환경과 보존·수복 인력의 미비로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광역(공공)수장고 건립을 통해 가치가 높은 사립관 소장품의 수장 환경 개선과 보존·수복을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판단됨
-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기준, 박물관·미술관 수장고의 평균면적과 소장품의 점유면적은 사립박물관·미술관이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며, 사립관의 연면적 대비 수장고 면적은 대다수가 10% 미만으로 나타나 소장품의 수와 가치에 비해 기본적인 수장고 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는 사립관들이 많음
  - 사립박물관·미술관 85개관에 보물, 국보, 등록문화재/지정문화재/국가기록물 등 약 79,756점(또는 건) 수장되어 있어 문화재 보호 차원에서도 공공(광역)수장고의 필요성이 있음
- 현장사례연구를 통해서도 대부분의 사립관은 대부분 전문적인 항온·항습 환경을 구비하고 있지 못하며, 매우 협소한 공간을 수장고로 활용하고 있어 물리적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됨
  - 현장사례연구에서 등록요건 및 ‘소장품의 보존 관리를 위한 적절한 수장·전시환경 마련’에 따른 시설을 적정하게 구비하고 운영하고 있는 곳은 68%였음. 또한 개선이 필요한 시설로 가장 많이 언급된 시설은 수장고로서, 대다수의 기관이 소장품 수가 늘어나면서 수장고의 규모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답함. 단순한 수장 시설 신설 혹은 증설 외에도, 항온항습 장치가 적절하게 갖추어진 수장 시설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경우도 많았음
  - 필수 구비 시설로 가장 많이 언급된 시설 역시 수장고로서, 소장품 수가 늘어나면서 수장고의 규모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답한 기관이 대부분에 달하였으나 각 개별관이 자체적으로 전문

수장시설을 구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지역 공공수장고 건립을 통한 사립관의 수장 환경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박물관·미술관의 수장 소장품의 증가와 설계 당시의 소장품만을 고려한 수장고 시설로 인한 기존 수장시설의 포화 및 노후화로, 수장고 시설개선 및 전문적 보존·수복의 필요성이 제기 되면서 2000년대 이후 광역(공공)수장고 건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

- 김연진 외(2008)는 기존 박물관·미술관 내의 부속시설로서의 수장고가 아닌 독립된 운영체계 및 조직을 가지고 운영되는 기관의 성격을 지닌 공공수장고 건립을 논의했으며,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 계획(2019~2023)>(문화체육관광부, 2019)에서도 광역 공동 수장고 건립 및 보존처리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광역 단위 거점 공동 수장고 건립 시 국비 지원(50%)을 추진하는 계획을 발표함

- 국립관인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현대미술관이 2018년 이후 국·공·사립박물관·미술관의 중요 소장품 보존처리를 지원하고 있으나, 그 대상 규모가 적어 사립관 소장품 보존처리를 위한 접근성은 매우 제한적인 상황임

- 국립중앙박물관은 연평균 5점(2018년 4건 5점, 2019년 3건 7점, 2020년 2건 5점)의 보존처리 지원

- 국립현대미술관의 보존처리 및 과학분석 지원 대상은 2020년 기준 7개관의 7점임

-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의 기준에 부합하고 소장품의 가치를 인정받는 사립박물관·미술관 소장품의 공공(광역) 수장고 사용을 지원하여 보존관리 전문성 및 공공의 활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소장품의 공공성과 우수성을 담보한 '프랑스 박물관'으로 인증되면 국립 박물관의 수장고를 사용할 수 있음

- 영국의 '컬렉션 지정제도'(Designation Scheme)는 국립 기관 외의 비영리 박물관·미술관·아카이브·도서관이 소장한 가치가 뛰어난 소장품을 신청 받아 잉글랜드예술위원회가 심의하여 지정하는 제도로, 민간 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이라도 소장품 가치에 따라 국가의 문화적 자산으로 인정, 관리하고 연구를 촉진하여 소장품을 보존하고 수장기관에 자금심을 부여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에서 시행되고 있음

- 이러한 공공수장고에 보존되는 소장품은 가치 있는 민간 소장품의 보전을 넘어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위상과 대중의 긍정적 인식을 고양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 광역수장고(공공수장고)의 지역거점체제 운영으로 국·공립박물관·미술관과의 네트워크, 협력 활성화

- 각 지역 박물관·미술관의 특성을 반영한 광역(공공)수장고는 지역거점체제로 건립

시 지역 내 박물관·미술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연구·협력을 활성화하고 소장품 이동시 운송비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음

- 경기도와 서울시의 경우 아래와 같이 광역(공공)수장고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계획에서 사립관의 소장품에 대한 고려는 배제되거나 간과되고 있는 실정임
- 서울시 통합수장고는 시립 박물관·미술관 소장품에 한하고 있으며, 경기도 역시 광역 공공수장고를 통해 경기도립 뮤지엄 소장품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함

경기도, 2020, <경기도-문화예술진흥-중단기-종합계획 2020-2024>

- 추진 전략 중 하나인 ‘공정한 문화자본 구축’의 정책과제로 총 47지를 제시, 이 중 신규 정책과제에서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경기도 뮤지엄 재도약’이 경기도 박물관·미술관 정책과 관련
- 지역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경기도 뮤지엄 재도약의 실행 과제는 총 6가지로 이 중 ① 광역 공공수장고 조성·운영이 논의
- 현재 광역 공공수장고 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 계획 수립하고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과 건립 방안 수립을 통해 광역 공공수장고 건립 설계용역 완료 및 착공

서울시, 2016,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추진>(2016~)

- 서울시는 ‘박물관 도시, 서울’ 추진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립 박물관·미술관 소장품의 수장공간 확보와 통합적인 관리를 위하여 총 35만점 수장 규모의 개방형 통합수장고를 건립 추진 중임
- 사업기간: 2016. 8월 ~ 2022. 7월
- 사업부지: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두곡리 550 일원
- 연면적: 9,000㎡(총 35만점 수장규모 / 토지 44,615㎡)
- 사업비: 42,884백만원(건물 40,684 토지 2,200)
- 주요시설: 수장고, 보존실, 혼증시설 등
- 수장고를 비롯하여 유물의 보존·복원·수리·전시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시설들로 구성, 단순히 유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닌 유물 보존처리 전과정 체험, 상설 전시,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계획

□ 사립박물관·미술관 소장품의 통합적 DB구축으로 소장품 연구/활용 활성화

- 공공(광역)수장고 건립은 국·공립·사립박물관·미술관 소장품 및 작가 연구, 소장품의 감정 데이터 및 과학적 분석 자료 등의 통합적 DB구축으로 전문적인 소장품 연구 및 활용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음
- 또한 공공(광역)수장고 건립은 지자체 협력망 사업과 연계하여 수장 시설의 부족과 예산 및 인력 부족 등 소장품 수장/관리의 한계를 보완하여 협력망을 기반으로 소장품관리 차원에서 예산 확보 용이성과 운영 효율성 등 규모의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김면 외, 2021)
- 현장사례연구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사립박물관·미술관은 학예사 1~2명의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장기근속 인력이 적어 소장품의 조사연구 기능이 매우

취약하나, 일부 사립관은 지자체, 외부 기관, 지역 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소장품을 연구, 소개하고 유물의 보존·수복 작업을 진행하기도 하고 있어, 공공(광역) 수장고를 통해 소장품 연구 및 활용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공공(광역)수장고를 통해 사립박물관·미술관 소장품의 연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수장 대상 소장품의 가치 평가와 소장품의 연구·전시·정보화를 통한 공적 활용에 대한 사립관의 인식과 동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봄

## 5절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의 도입 및 활용

### 가.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의 정책 목표 및 단계별 시행 전략

#### □ 평가인증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운영기반 재정비

- 본 연구는 기 시행 중인 국·공립 박물관·미술관의 평가인증제도를 사립박물관·미술관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가능성을 모색함에 있어, 평가인증제도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심층적으로 점검하고자 하였음
- 이를 위해 사립박물관·미술관에 대한 기 법령과 제도, 정책을 분석하고 사립박물관·미술관의 현황과 인식을 실증적으로 파악하여 평가인증제도가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근간으로 삼음
- 이에 따라 평가인증에 앞서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질적 향상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박물관·미술관이 공감하고 지향해야 할 ‘우수 박물관·미술관’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의 기준 도출을 위한 준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 먼저, 해외 국가들이 박물관의 우수성을 견인하여 공적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는 질적 기준을 살펴보고, 국내의 여건에 적합한 기준을 도출하기 위한 시범연구로서 체크리스트와 설문문항을 설계하여 현장사례연구와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음
- 이러한 연구 과정에서 사립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는 사립관의 설립·운영 및 우수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행 요건임을 파악할 수 있었음
- 또한 기존 박물관 정책 및 지원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해 사립관 설립 운영의 기반을 재정비하고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하였음

#### □ 평가인증제의 정책 목표 명확화

-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는 민간 부문의 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운영을 규제하는 통제 수단이 아닌,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운영의 기준을 제시하고 우수성을

촉진 및 지원하여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고 사회적 영향력을 증대하는 정책수단으로 설계, 활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평가인증제의 정책 목표는 아래 미국과 영국의 사례와 같이 사립박물관·미술관들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혜택 또는 효과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함

<미국박물관협회의 박물관·미술관 우수성 인증의 목표>

- 1) 지역사회에 더욱 중요한 자산이 되기, 2) 외부 지원과 공적 신뢰의 가치 입증, 3) 소장품의 온전한 보존관리 보장, 4) 펀딩 기회 증진, 5)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 6) 변화 유도, 7) 직원과 이사진의 역량 개발, 8) 박물관 업계에서의 경쟁력 확보

<영국 잉글랜드예술위원회가 명시한 박물관·미술관 인증의 혜택>

- 성과 차원: 성과 평가, 성취에 대한 보상 및 개선을 위한 권위 있는 기준 역할
- 공적 인지도 획득: 뮤지엄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높여 정부 기관 및 대중들에게 신뢰와 신용을 구축
- 파트너십: 뮤지엄 서비스를 검토해 기관 내외부의 협력 장려
- 계획 차원: 뮤지엄의 절차 및 정책을 공식화하고, 향후 계획 수립에 도움
- 후원 차원: 뮤지엄이 국가 표준을 충족했음을 입증하여, 공공 및 민간 지원을 위한 신뢰 구축

○ 따라서 국·공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와도 다른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의 정책 목표를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여 제도 도입과 운영을 고려해야 할 것임

-또한 평가인증제도가 위와 같은 정책수단으로서 역할을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인증 제도 자체를 성찰적으로 평가 및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임

○ 이러한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의 정책 목표는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질적 향상을 통한 공적 신뢰도 강화’로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른 대외적·정책적 효과와 대내적·경영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대외적·정책적 효과로서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공적 책무성 강화’, ‘사립박물관·미술관의 대외적 신뢰 제고’, ‘공공지원의 근거 강화’는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사회적 영향력과 정책 및 지원의 제도적 공고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대내적·경영적 효과는 개별 박물관·미술관의 실질적인 운영 개선 및 발전 동력을 강화하는 효과로,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경영 개선’, ‘관장 및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 ‘혁신 사례 및 노력의 확산’을 기대할 수 있음

-대내적·정책적 효과와 대내적·경영적 효과는 서로 밀접한 연계성을 갖고 있으며, 대내적·경영적 효과를 달성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대외적·정책적 효과로 확산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음

[표 9-12]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의 정책 목표 및 효과

대외적·정책적 효과		
<p>‘사립박물관·미술관의 공적 책무성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과 책무성의 정립 및 확대를 위한 기준 제공</li> <li>- 사립박물관·미술관이 평가인증의 기준에 준하여 박물관·미술관이 지향해야 하는 공공성과 책무성을 인식하고 공유하며 실천하는 계기</li> <li>-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공공성 및 책무성의 의미, 개념, 범위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과 논의를 거쳐 평가인증의 기준 및 지표를 도출하는 상향식 합의 과정</li> </ul>	<p>‘사립박물관·미술관의 대외적 신뢰 제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적 책무와 경영 개선을 바탕으로 대외 신뢰 제고</li> <li>- 사립박물관·미술관에 대한 대외 신뢰 강화는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사회적 영향력과 인지도, 이용률 제고로 선순환</li> <li>- 사립박물관·미술관에 대한 후원 및 회원제 운영, 기증 및 대여를 위한 공신력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더 양질의 콘텐츠를 확보하고 다층적인 이용자 관계 확대</li> </ul>	<p>‘공공지원의 근거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 및 지원의 방향과 규모에 대한 제도적 근거 공고화</li> <li>- 평가인증을 통해 사립박물관·미술관이 공적책무성, 경영, 소장품, 이용자 등의 관점에서 우수한 기준에 도달하고자 하는 지구적 노력을 격려하고 유도하기 위한 정책 및 지원의 재설계 기반 마련</li> <li>- 사립박물관·미술관이 일정 수준의 기준에 부합한다는 대외적 인증은 공공지원의 타당성 및 확대의 정당성을 공고화</li> </ul>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10px; margin: 10px auto; width: fit-content;"> <p><b>평가인증제 정책 목표</b></p> <p><b>‘사립박물관·미술관의 질적 향상을 통한 공적 신뢰도 강화’</b></p> </div>		
<p>‘사립박물관·미술관의 경영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영 투명성과 적절성 등 사립 박물관·미술관 경영 개선</li> <li>-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계획과 조직 및 인력 관리, 재정/회계 관리, 홍보마케팅, 자원조성 등 경영 개선 및 변화 유도</li> <li>- 자체 진단평가 및 외부 전문평가와 연동된 컨설팅 지원을 통한 조직 역량 강화</li> </ul>	<p>‘관장 및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관장 및 전문인력의 핵심역량 강화</li> <li>-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질적 성장을 위한 관장 및 전문인력의 지식과 리더십, 실무 능력 배양</li> <li>- 평가인증의 과정에서 뿐만 아니라 평가인증에 근거한 사후 지원을 통해 사립박물관·미술관 관장 및 전문인력의 박물관 관련 지식과 실천 능력 강화</li> </ul>	<p>‘혁신 사례 및 노력의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 사립박물관·미술관의 혁신 사례 인정/확산 계기 마련</li> <li>- 평가인증을 통해 혁신 사례를 발굴 및 인정함으로써 사립박물관·미술관 스스로의 발전 및 혁신의 동기 유발</li> <li>- 우수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 사례의 공유 및 기관 간 네트워크를 촉진하여 사립박물관·미술관계의 균형 있는 발전 및 성장 견인</li> </ul>
대내적·경영적 효과		

## □ 점진적·단계적인 평가인증제의 도입 및 운영

- 본 연구에서 평가인증제 도입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시범적으로 수행한 사립박물관·미술관 현장사례연구와 설문조사 분석을 통해,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는 사립관의 자발성을 유도하면서 점진적, 단계적으로 도입·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해외 사례를 볼 때, 사립박물관·미술관의 평가인증은 평가인증의 필요성과 기준에 대한 폭넓은 합의와 이해, 수용을 전제로 하며, 다수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될 때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볼 수 있음
- 평가인증의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에 앞서 평가인증제도를 수용하고 평가인증으로 인한 운영 개선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전제 조건들을 인식하고 단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함
  - 미국은 평가와 인증을 구분하여 인증 전에 장기 컨설팅형 평가를 통한 운영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박물관 등록심사의 최소 기준인 등록 요건보다 높은 수준의 내용으로 박물관이 지향해야 할 ‘박물관의 설립 및 운영상의 바람직한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등록박물관들이 자기평가 및 외부평가 기준으로 활용하고 업무기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 현장사례연구와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바와 같이, 현재 사립박물관·미술관 구성원들은 대체로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대한 자체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반면, 외부평가에 대한 수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외부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는 기준에 대해 설문조사 응답자의 48.7%가 ‘내용에 공감하나, 국내 반영은 검토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16.8%는 ‘당장 공감하기 어려워, 논의 필요’하다고 응답, 대다수가 사립관에 외부평가가 도입되는 것에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는 유보적 의견을 표하고 있음

(설문조사) “박물관·미술관은 운영과 사업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각 연도의 사업계획의 달성 상황과 그 외 운영 상황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자체평가)” (긍정응답 68.1%)

(설문조사) “박물관·미술관은 운영과 사업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체평가 외에, 외부 전문가, 이용자, 지역주민 등에 의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외부평가)” (긍정응답 34.5%)

- 이러한 상황에서 사립관에 대해 평가인증제도를 국·공립박물관·미술관과 같이 법령에 의거해 일률적으로 의무화하거나 평가인증제도를 통한 질적 향상의 정책 목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며,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평가인증 제도 도입의 전제 조건을 순차적으로 해결하면서 평가인증 제도를 도입, 운영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함

## □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질적 향상을 위해 평가인증제의 제도적 조건 이행

-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등록제도 등 정책 제도의 정비, 인력지원제도 개선 및 실험적·지구적 개선 노력 지원 등 지원사업의 개선, 협력망 활성화 등 앞에서 제시한 정책 및 지원의 재구조화를 통해 평가인증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을 이행하는 것이 요구됨
- 일차적으로, 법 제도의 정비를 바탕으로 현재 체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및 등록제도의 문제를 개선하는 것은 평가인증 제도 도입의 핵심적인 선결 조건이라고 할 수 있음
  - 현행 설립 및 등록제도의 문제를 개선하지 않은 채 박물관·미술관의 질 관리를 평가인증제도로 해결하려는 접근방식은 자칫 옥상옥과 같은 행정낭비와 불신을 초래할 수 있음
  - 또한 설립 및 등록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관리 자체로 평가인증의 정책 목표를 상당 부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됨
-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의 기준에 준하여 사립관 스스로가 강점과 부족한 부분을 진단·평가하고 개선이나 혁신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하면, 정부는 이를 심사 및 지원하여 인증의 단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부 정책 목표에 따른 일괄적이고 하향식·분배식의 지원 방식에서 선화하여 사립관의 자생적이고 지구적인 노력을 촉진하여 근본적인 역량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사)한국박물관협회를 비롯한 사립박물관·미술관의 대표적인 협회들이 현재의 정부 지원사업의 전달체계로서의 역할을 넘어, 박물관·미술관들의 네트워크와 애드보커시(advocacy)를 위한 구심체로서의 본연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 협회가 중심이 되어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 및 우수성의 기준 수립, 질적 향상을 위한 동료 평가, 박물관·미술관의 윤리 정립 및 이에 따른 자정 역할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조직 역량과 시스템을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음

## 나. 국가 차원의 ‘설립·운영 기준’ 수립 및 공론장의 활성화

### □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의 질적 기준 마련

-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에 앞서, 박물관·미술관 운영의 성과를 측정하는 양적 산출 지표가 아닌 설립·운영의 질적 결과를 제시하는 국가 기준(national standards)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설립·운영 및 평가인증의 기준에 대한 해외 사례를

분석하였음. 해외사례를 기반으로 현장사례연구의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여 기준 항목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우수 박물관·미술관의 기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음. 또한 우수 박물관·미술관의 기준에 대한 동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행하여 사립관의 인식과 의견을 수렴하였음

- 위와 같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우수성의 기준에 기반을 두는 동시에 우리 사립관이 공감하고 합의하는 기준을 도출하여 설립·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평가인증에 선행하는 필수 과정일 것임
- 설문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아래 (표 9-13)과 같이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의 기준(안)을 제시하고자 함
  - 일차로,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 수립을 위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83개의 문항 중 응답자의 70% 이상이 “내용에 공감하며 국내 반영 필요”하다고 응답한 문항에 대해서는 현재 사립관에서 폭넓은 합의와 공감대가 있는 최소한의 핵심 기준으로 간주할 수 있어, 이 항목들을 중심으로 기준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음
- 공감대가 높은 핵심 기준들을 네 개의 범주와 세부 항목으로 구조화하여 제시함

범주	항목	내용
공적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중을 위한 공공성</li> <li>• 합법성 및 윤리성</li> <li>• 다양성과 포용성</li> <li>• 투명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의 공익을 위한 존재 방식과 대중을 위한 접근성, 지역사회 기여 등 대중을 위한 공공성을 의미. 또한 합법적인 운영과 윤리적 책임, 다양한 이용자들을 포용하고, 내외부에 투명한 관계와 운영을 통해 공적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기본 책무들을 포함</li> </ul>
조직 건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운영 적절성</li> <li>• 조직 및 인력</li> <li>• 재정 건전성</li> <li>• 시설 및 설비</li> <li>• 위기관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명확한 운영체계, 운영주체 역할, 운영 규정 등 운영 적절성, 조직 및 인력의 합리적인 구성과 확보 및 능력 개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재정 운영, 기능에 합당한 시설의 확보 및 장기적인 관리, 학교·박물관·미술관·문화기관 등 외부 기관 협력, 예기치 못한 재해 사고 등에 대응하는 위기 관리 매뉴얼 구비와 훈련에 대한 내용을 포함</li> </ul>
소장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집 및 보존 관리</li> <li>• 정리 및 문서화</li> <li>• 소장품 활용 및 이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의 설립목적 및 규정, 윤리에 합당한 수집, 보존, 관리 의무, 소장품의 체계적인 정리 및 문서화, 소장품 활용과 대중의 이용 접근성을 위한 노력에 대한 내용을 포함</li> </ul>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석 및 연구</li> <li>• 상설 및 기획/특별 전시</li> <li>• 교육 및 정보</li> <li>• 소통 및 참여</li> <li>• 외부 협력</li> <li>• 이용자 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의 질 높은 해석 및 연구 활동과 이를 바탕으로 한 상설/기획 전시 개발 및 운영, 교육적 서비스와 정보 제공, 다양한 이용자층과 소통 및 참여 유도, 이용자 정책 수립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li> </ul>

○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 기준(안)은 아래와 같음

[표 9-13]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 기준(안)

범주	항목	기준
공적 책임	대중을 위한 공공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은 대중에게 유익함을 주고, 컬렉션을 보호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존속하는 기관이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지역의 좋은 이웃이 되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다.</li> <li>• 대중을 위해 그리고 대중과 함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성하며 언론과 토론의 자유를 지지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이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분명히 제시해야 하며, 이 공공 서비스의 중심에 교육이 있어야 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대중에게 박물관·미술관과 그 자원에 대한 물리적·지적 접근성을 제공하기 위해 헌신한다.</li> </ul>
	합법성 및 윤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은 박물관·미술관 윤리 및 규정을 따르는 건전하고 합법적인 운영체제와 조직을 갖추어야 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의 모든 업무는 공익을 위해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박물관·미술관 종사자들은 최고 수준의 청렴성과 윤리를 유지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국제적인 박물관·미술관 규정 및 윤리, 국내 법규에서 정하는 공적 책무를 위해 헌신하며, 박물관·미술관의 시설, 운영, 행정 등과 관련된 법규, 규정, 규칙을 준수한다.</li> </ul>
	다양성과 포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은 적극적인 이용자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잠재적 이용자에게 포용적이고 다양한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li> </ul>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 활동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파트너 조직, 관리 기관, 직원 및 자원봉사자를 존중하고 이들과 투명한 관계를 구축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설립목적(미션)에 부합하여 효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공적 신뢰를 획득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li> </ul>
조직 건전성	운영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은 직원의 기술과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박물관·미술관의 설립목적(미션)을 달성하도록 운영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독립된 조직이 규정에 의해 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임하고 있다.</li> <li>•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관한 박물관·미술관의 설립주체(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재단법인, 개인 등)의 책임과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된 공식적인 규정이 존재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의 모든 구성원 및 운영 관계자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 권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공유하며, 합법적, 윤리적, 효율적으로 각자의 책임을 이행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 정책 개발 과정에 적절한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관장/직원으로 종사하거나, 자문위원회, 이사회,</li> </ul>

범주	항목	기준
		<p>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참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고용 관련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준수해야 한다. (모든 인력을 위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업무분장 및 협력 기준과 방법, 각 직무별 역할과 책임 설정 등)</li> <li>• 업무 연속성과 책임을 보장하는 인수인계 절차가 있다.</li> </ul>
	조직 및 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 운영을 총괄하여 전담하는 관장을 두어야 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의 설립목적(미션) 및 운영방침에 기초하여 박물관·미술관 사업(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의 학예사를 두어야 한다.</li> <li>• 학예사 외에, 박물관·미술관의 행정, 홍보마케팅, 시설관리 등과 같은 사무 및 기능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설립목적(미션) 및 운영방침에 따른 효과적인 박물관·미술관 활동을 위해,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전문적인 역량에 맞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담하고 배치해야 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과 설립주체, 정부, 유관 협회나 단체 등은 박물관·미술관의 관장, 학예사, 그 외 직원의 능력 및 자질 향상, 경력 개발을 위한 연수(교육, 재교육, 보수교육 등) 기회를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직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연수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li> </ul>
	재정 건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은 설립목적(미션) 수행을 위해 법적, 윤리적으로 합당하게 재정을 확보하고 책임감 있게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li> </ul>
	시설 및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은 긍정적인 공적 이미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 전반을 안전하게 운영해야 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소장품, 직원, 이용자 등의 필요에 부합해 공간을 할당하고 시설을 활용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소장품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효과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 실행할 수 있을 만큼, 부지와 건물의 장기적인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방재상, 위생상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사고나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장제한,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내화, 내진, 방충해, 방수, 방진, 방음, 온습도 조절, 일광 차단 또는 조절, 통풍 조절, 오염/파괴/도난 방지, 그 외 박물관·미술관 자료를 적절하게 보관하는 데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시설의 장기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과 절차를 갖추고 있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휴게시설 및 이용자의 쾌적한 관람을 위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li> </ul>
	위기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은 사고, 재해, 그 외 비상사태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li> </ul>

범주	항목	기준
		<p>박물관·미술관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태에 관한 위기관리 대응안내서를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한 위기관리 훈련의 정기적 실시, 그 외 충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p>
소장품	수집 및 보존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은 미래 세대를 위해 중요한 컬렉션을 보존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설립목적(미션), 규정 및 정책, 전략/계획에 명시된 바에 따라 소장품을 합법적, 윤리적, 효과적으로 획득, 관리, 보존, 활용해야 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소장 자료에 관한 도서, 문헌, 조사자료, 그 외 필요한 자료의 수집, 보관, 활용에도 노력해야 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이 휴관 또는 폐관할 경우, 소장 자료 및 도서 등을 다른 박물관·미술관에 양도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공적 자산인 소장품(및 아카이브 자료 등)이 소실 또는 산일되지 않고 적절하게 보존/활용되게 해야 한다</li> </ul>
	정리 및 문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의 적절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소장 자료 및 도서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li> </ul>
	소장품 활용 및 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은 이용자의 학습, 영감, 즐거움을 위해 공익적으로 소장품을 이용/활용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자료의 수집 또는 보관이 곤란한 경우, 전시를 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또는 관외 대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복제, 모조, 모사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작하여 박물관·미술관 내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li> </ul>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	해석 및 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은 모든 이용자들에게 확실한 정보와 연구에 기초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고, 일관되고 높은 품질의 해석 활동(연구, 전시, 교육)을 경험하도록 해야 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소장품 및 그에 대한 다양한 학술적 해석과 지식을 토대로 한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이용자의 학습에 기여해야 한다. (다양한 관점의 해석에 의한 소장품 전시, 소장품 연구에 이용자 참여, 효과적인 학습 프로그램 개발 등)</li> <li>• 박물관·미술관은 해석 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박물관·미술관 운영 계획의 수립·개선에 활용해야 한다.</li> </ul>
	상설 및 기획/특별 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은 기본적인 운영방침에 기초해, 소장 자료의 상설전시(상설전시 갱신)를 하거나, 특정 주제를 정해 소장 자료 또는 임시로 빌려온 자료로 기획/특별전시를 행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전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장품 및 전시자료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시방법을 연구·개발하고, 문헌자료, 음성, 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다.</li> </ul>
	교육 및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은 교육의 목적과 철학을 명확히 공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박물관·미술관의 자원과 콘텐츠를 활용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이용자의 학습활동 및 조사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li> </ul>

범주	항목	기준
		소장 자료에 관한 각종 강연회, 연구회, 아동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및 학습활동 행사 등을 개최하고, 학교나 교육단체에 박물관·미술관 활용에 필요한 안내나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
소통 및 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은 다양한 공동체(커뮤니티)에게 열려 있어야 하고, 다양한 공동체를 지원하며, 다양한 공동체에 가치를 부여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이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 시설,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접근이 용이한 시설 확보, 인근 편의시설 정보 제공, 건물 내외부에 적절한 표지판 및 방향 표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 및 소통 등)</li> <li>• 박물관·미술관은 이용자 및 지역주민이 학습을 통해 지식 및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시자료 해설, 행사 기획, 학예업무 보조, 자료조사 등의 활동기회를 제공한다.</li> <li>• 박물관·미술관은 이용자의 학습활동 및 조사연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순회전,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을 개최한다.</li> </ul>
외부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은 학교, 다른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그 외 문화기관, 학술기관, 교육단체, 행정기관, 민간기업이나 사업자 등과 긴밀히 연계, 협력하여 박물관·미술관 활동을 수행한다.</li> </ul>
이용자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물관·미술관은 현재 및 잠재적 이용자와 최선을 다해 소통하고, 그들의 필요와 관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이용자 서비스 정책 및 전략/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li> </ul>

-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 기준(안)은 사립박물관·미술관의 평가인증의 기준 및 지표의 준거가 되며, 설립 계획 승인 및 등록의 요건과 연동시켜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 및 등록의 기준을 엄정히 상향, 관리하는데 활용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사립박물관·미술관이 자체 평가 및 자기 점검의 기준으로 삼아 운영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함

#### □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 기준 수립 및 정책·제도 공유의 공론장 활성화

- 평가인증제도 도입과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이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윤리적·전문적 설립·운영 기준의 공유 기반을 만들고 합의된 표준을 만드는 것임
- 향후 본 연구에서 도출한 기준(안)을 바탕으로, 사립관의 종사자를 대변하는 박물관·미술관 협회, 관련 학회, 정부와 지자체 등의 수평적이고 개방적인 논의를 통해 상호합의된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 기준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설립·운영 기준에 대한 폭넓고 지속적인 공론장을 마련하여 기준의 필요성과 내용에 대한 인식 및 이해-공감 및 합의-적용 및 실천-점검 및 성찰-개선과

질적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여야 함

- 이는 기존에 정부 중심으로 이루어진 하향식 문화기반시설 평가인증 지표 개발과 적용과 달리 수평적이고 폭넓은 논의를 통해 상향식으로 합의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공론장으로 작동해야 할 것임
- 기본적으로 박물관·미술관 협회 및 협력망은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의 우수성 기준을 위한 활발한 공론장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임
- 더불어 공론장을 통해 시대에 부합하는 기준을 정기적으로 갱신 및 보완하고, 관장 및 직원들이 설립·운영 기준을 지속적으로 인지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 및 연수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ICOM의 새 뮤지엄 정의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오늘날 박물관·미술관에 요구되는 지속가능성과 다양성·포용성에 대한 사회적 역할을 사립박물관·미술관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설립·운영의 기준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겠음

## 다.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 시행 로드맵

□ 모든 박물관·미술관 정책, 제도, 실천과 연계되어 있는 평가인증제의 특수성

- 평가인증제는 처음 제안되었을 때부터 박물관·미술관 운영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 박물관·미술관’을 인증하는 형식으로 설계된 제도임
- 이는 평가인증제가 다른 어떤 제도보다도 모든 박물관·미술관 정책 및 제도, 지원사업, 이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개별 박물관·미술관의 운영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함
- 이러한 특수성은 평가인증제의 도입 및 시행이 평가인증제 자체의 설계를 넘어서 평가인증제에 연계되어 있는 모든 정책, 제도, 지원사업, 개별 박물관·미술관의 운영 여건, 그 종사자들 및 관계자들, 그로부터 산출되는 각종 박물관·미술관의 유·무형의 실천들 전반에 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말해 줌
- 따라서 평가인증제의 도입과 시행은 이러한 제도 고유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포괄적인 정책, 제도, 지원사업 등은 물론, 운영 여건 등이 일정 정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되는 것이 선행되어야만 그 정책 목표를 실질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
- 이는 역으로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은 평가인증제의 도입 및 시행이 오히려 박물관·미술관 분야의 혼란과 부담을 가중하고, 정부와 사립박물관·미술관의 관계를 단순히 평가자-피평가자라는 수동적 틀로 제한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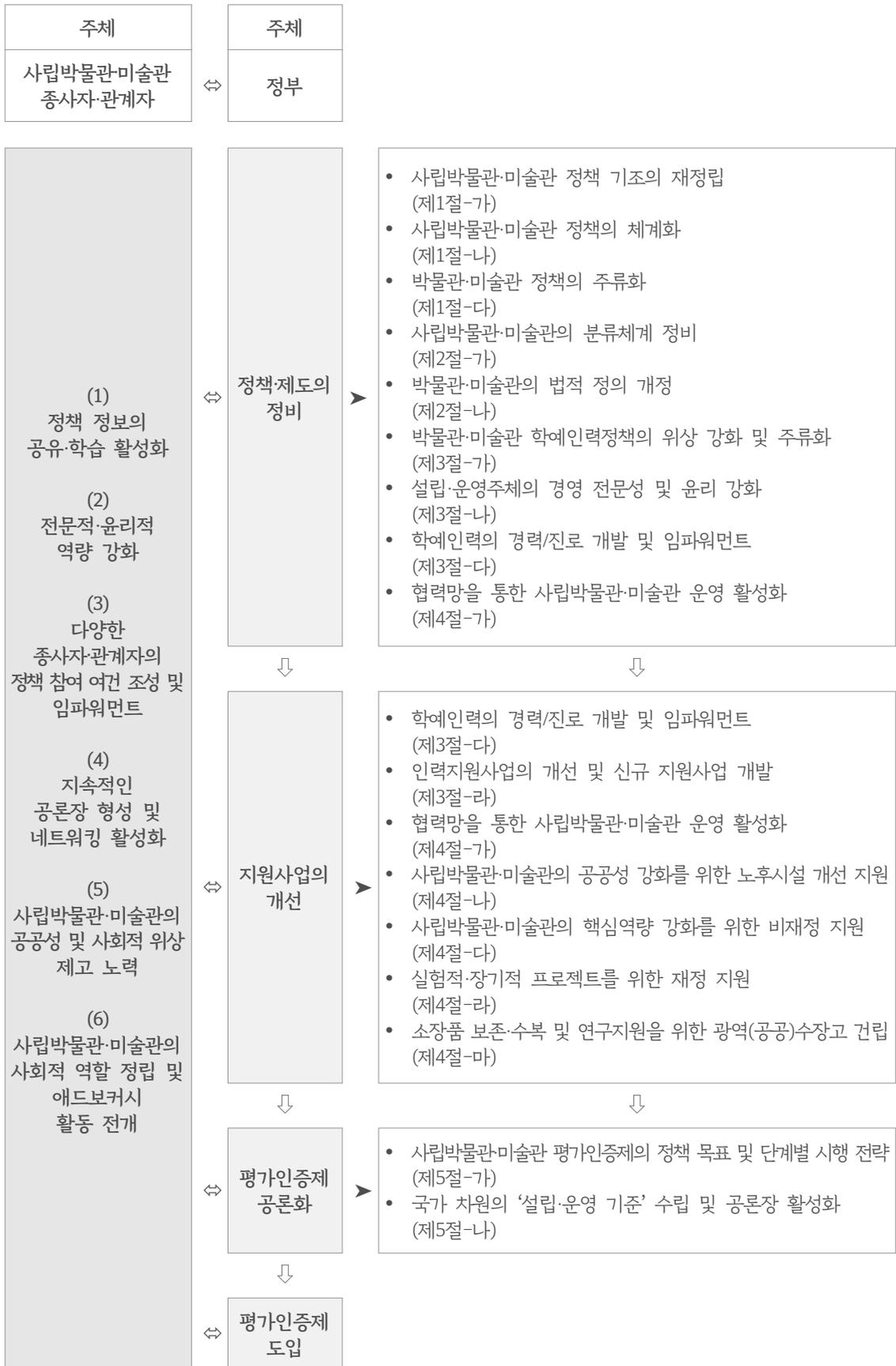
□ 평가인증제의 특수성에 기반한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 시행 로드맵의 설정

- 위와 같은 평가인증제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그 시행 로드맵은 평가인증제와 간밀히 연계되어 있는 각종 정책 및 제도의 정비, 지원사업의 운영방식 및 현재의 운영여건 개선 등을 포괄하는 형태로 구상되어야 함
- 즉, 단순히 평가인증제 자체에만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그 제도가 박물관·미술관의 운영현황 및 정책 전반에서 어떠한 역할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지가 모호해질 수밖에 없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의 시행 방안을 이처럼 종합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여 아래와 같은 로드맵을 제안함

□ 정부 및 사립박물관·미술관 종사자/관계자의 상호성에 의한 역할 설정

- 사립박물관·미술관에 관련되는 정책은 정부와 사립박물관·미술관 종사자/관계자 사이의 상호이해 및 노력, 대화와 협상, 합의를 통해서 수립, 실행되는 것이 기본적인 틀이자 바람직한 추진방식이라 할 수 있음
- 이러한 차원에서 평가인증제 시행을 위한 로드맵은 정부의 역할뿐 아니라 사립박물관·미술관 종사자/관계자의 역할(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설정하고, 이 양자의 역할이 긴밀하게 상호연계되는 과정을 통해서 구현되어야 할 것임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부 및 사립박물관·미술관 종사자·관계자의 상호성을 가시화하고, 각자의 역할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과정으로서 평가인증제 시행 로드맵을 제안함

[표 9-14]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 시행 로드맵(안)





## 참고 문헌

---



## 참고 문헌

### 단행본

- 이보아, 2014, 『박물관 경영과 마케팅』, 서울: 김영사.
- 류은영, 원종익, 2019, 『프랑스문화정책』, 서울: 지성공간.
- André Desvallées and François Mairesse(Eds.), 2010, *Key Concepts of Museology*. Paris: Armand Colin.
- Gob. A., & Drouguet, N., 2014, *La Muséologie, Histoire, Développements, Enjeux Actuels*, Paris: Armand Colin.
- Labourdet. M-C., 2021, *Les Musées de France*, Paris: Que Sais Je.
- Poulot.D., 2008, *Une histoire des musées de France, XVIII-XXe siècle*, Paris: La Découverte.
- Wendt, S., (2003), *The American Association of Museums' Accreditation Program: An Analysis of Benefits Perceived by Museums*, San Francisco: The University of San Francisco(USF) Scholarship: a digital repository @ Gleeson Library|Geschke Center

### 학술논문·학위논문

- 권채리, 2018, 문화유산관리의 법적주체와 관할경합-프랑스 제도의 함의, 『성균관법학』, 30(4), 1-34.
- 김규원, 2015, 프랑스 지방 문화분권 정책의 변화와 방향성, 『문화와 정치』, 2(2), 101-130.
- 김수빈, 2020, 1980년대 초 프랑스 지방 도시의 문화 활성화-도시 간 문화 자본의 균형과 지역민의 문화 향유를 중심으로, 『도시연구: 역사·사회·문화』, 25, 113-147.
- 김주영, 2020, 도시재생사업의 평가지표에 관한 탐색적 연구: 성과평가를 중심으로, 『주택도시금융연구』, 5(2), 69-83.
- 김하진, 2021, 「학예사 문턱넘기」,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한결, 2019, 혁명기 프랑스 박물관의 공공성 원칙 확립의 역사적 배경에 대한 고찰, 『미술이론과 현장』, 27, 5-25.
- 나애리, 2006, 1980년대 이후 프랑스 박물관의 변화와 문화정책, 『프랑스문화예술연구』, 18, 69-89.
- 남현우, 2014, 박물관 · 미술관 문화기술 R&D 전략 및 연구과제 발굴에 대한 연구, 『한국과학예술융합학회』, 15, 219-219.
- 노수경, 2021, 성숙한 문화도시를 위하여, 문화관광 인사이트 제157호
- 박영미, 2016, 사진 전문 기관을 중심으로 한 큐레이터 직무 분석, 『한국사진학회지』, 36, 6-26.
- 송기형, 2008, 문화의 지방화를 위한 프랑스의 박물관 정책에 관한 연구: 지방 박물관 차별에 대한 역사적 고찰, 『프랑스문화예술연구』, 24, 51-73.
- 신상철, 2014, 프랑스 국립박물관 법인화 정책의 현황과 성과: 국립현대미술관 법인화 방안에 대한

- 프랑스적 해법, 『프랑스문화예술연구』, 49, 323-357.
- 신영문, 2020, 고고학 분야에서 자연박물관 학예인력의 역할. 『북악사론』, 11, 북악사학회, 7-25.
- 안진근, 2021, 문화도시 이미지와 박물관 외관 디자인에 관한 연구, 『상품문화디자인학연구』, 38, 93-103.
- 양지연, 2005, 미술관 전문인력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연구, 『예술경영연구』, 8, 49-69.
- 연구석, 2020, 서울, 수도권, 지방 주요 국·공립미술관, 해외 주요 미술관 관장들의 전문적 요인과 사회적 조건에 대한 비교·분석, 『예술경영연구』, 55, 115-154.
- 전형연·차지영, 2021, 문화기업으로서의 프랑스 박물관의 경영 활동 전략 연구, 『기호학연구』, 68, 163-187.

## 연구보고서 등

- ICOM, 2000, <박물관 전문인력 개발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 ICOM, 2020.7, <COM Report: 박물관, 박물관 근무자 및 COVID-19>.
- ICOM, 2021.7, <박물관, 박물관직 종사자 및 COVID-19: 세 번째 후속조사>.
- 강원도, 2014, <강원도 문화예술진흥 중장기종합계획(2014-2024년)>.
- 국토교통부, 2014,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모니터링·평가 계획(안)>.
- 경기문화재단, 2017, 『문화정책』, Summer Vol.01.
- 경상남도, 2020, '참여와 자치의 지역문화로 혁신하는 경남' -제2차 경상남도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2020-2024년).
- 김륜희 외, 2015,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방안 연구: 선도지역을 사례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 김면 외, 2020, 『2020년 문화영향평가 종합결과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성하 외, 2020, 『경기도-문화예술진흥-중단기-종합계획 2020-2024』, GRI 경기연구원.
- 김현경 외, 2017,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 확대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혜인 외, 2013, 『박물관 평가인증제 평가영역 및 평가기준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김혜인 외, 2018, 『박물관 및 미술관 종합발전 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라도삼 외,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진흥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연구원, 2016.
- 명지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학예사 제도 및 미술관 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미술관 발전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관광부, 2007,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 자격제도 규제순응도 조사』.
- 문화관광부, 1990, <문화발전 10개년계획(1990~1999)>.
- 문화관광부, 1998, <2000년대를 준비하는 『국민의 정부』 새 문화정책>.
- 문화관광부, 2003, <문화비전 중장기 기본계획(2004~2008)>.

문화복지위원회, 2017, 『경상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 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2.5, <박물관 발전 기본구상>.

문화체육관광부, 2018,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 2018, 『2018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2019, <박물관·미술관 진흥 중장기계획(2019~23)>.

문화체육관광부, 2020, <문체부 보도자료, 전국·공립박물관 평가인증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2020, <문체부 보도자료, 전국·공립미술관 평가인증 결과>.

문화체육관광부, 2020.3.25, <코로나19 피해 사립박물관미술관 현장 방문>.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0년도 지역문화정책관 예산 집행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20, 『2020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2021, <21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여가친화인증사업 신청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도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및 후원우수기관 인증사업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2021, <스포츠친화기업 인증제 시범사업 공고>.

문화체육관광부, 2021, <국립박물관 평가인증제도 운영지침>.

문화체육관광부, 2021, <공립미술관 평가인증제도 운영지침>.

문화체육관광부, 2022, <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개요>.

문화체육관광부·한국관광공사, 2021, <한국관광 품질인증 신청 가이드>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6,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2,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박소현 외, 2011, 『공립박물관 운영실태 조사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박소현, 2012, 『박물관 설립·등록기준 및 평가인증제도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소현 외, 2017, 『박물관평가인증제도 확대방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백선헌 외, 2020, 『문화영향평가 운영실태와 서울시 실행방안』, 서울연구원.

(사)한국박물관협회, 2020, 『2020 사립 및 사립대학박물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사)한국박물관협회, 2020, 『2020 사립 및 사립대학박물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사)한국박물관협회·(주)장앤파트너스그룹, 2021, 『2021 전국 사립박물관 운영실태조사』.

(사)사립사립미술관협회, 2019~2021,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20~2021,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21, 『전국사립미술관 운영현황 분석연구』.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학예사 제도 및 미술관 평가체계 개선을 통한 미술관 발전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2013, <서울시 박물관 진흥계획>.

서울특별시, 2016,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양지연 외, 2013,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 매뉴얼 연구』, (사)한국박물관협회.

양혜원 외, 2020, 『코로나19가 문화예술분야에 미친 영향 및 정책대응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계형, 201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선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윤계형, 2019, 『박물관·미술관 진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윤소영 외, 2020, 『(가칭)문화예술인재개발원 건립 및 운영기본계획』, 문화체육관광부.

예카테리나 트라프키나 외, 코로나19와 뮤지엄: 영향과 혁신, 그리고 위기 이후의 계획, OECD-ICOM Webinar, 2020.4.10.; 「ICOM Report: 박물관, 박물관 근무자 및 COVID-19」, ICOM, 2020.7.

이삼수 외, 2018,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정보활용 방안 연구』, LH 토지주택연구원.

이왕건 외, 2017, 『도시재생사업의 미래전망과 발전방안』, KRIHS 국토연구원.

이원태 외, 2003, 『전국문화기반시설관리운영평가 개선방안연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임학순 외, 1999, 『문화기반시설 운영평가모델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정책개발원.

장훈 외, 2022, 『2020년 기준 지역문화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조광호 외, 2016, 『문화도시 지정 및 지원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전라남도, 2020, 『<자생과 혁신의 문화전남> -제2차 전라남도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2020-2040년)>.

제주특별자치도, 2020, 『<제주의 가치창조, 문화예술의 섬 구현>-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시행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21, 『<2021년 사립박물관·미술관 인증제 평가계획>.

충청남도, 2015, 『<충청남도 문화예술 발전전략(2015-2019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20, 『<문화영향평가 이렇게 한다>.

황준욱 외, 2005, 『문화예술 인력정책 기반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문화관광부.

## 웹사이트

국립중앙박물관 경력인정 대상기관 안내,  
[https://www.museum.go.kr/site/main/content/career\\_accreditation](https://www.museum.go.kr/site/main/content/career_accreditation). (검색일 2022.02.01.)

김학동, 「사법」(20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25643>.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https://www.city.go.kr/index.do>

미국 American Alliance of Museums, AAM <https://annualmeeting.aam-us.org/>.

미국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IMLS <https://www.imls.gov/>.

미국 Institute of Museum and Library Services, IMLS

[https://www.imls.gov/sites/default/files/museum\\_data\\_file\\_documentation\\_and\\_users\\_guide.pdf](https://www.imls.gov/sites/default/files/museum_data_file_documentation_and_users_guide.pdf).

미국 American Alliance of Museums, AAM Accreditation & Excellence Programs.

<https://www.aam-us.org/programs/accreditation-excellence-programs/>.

(검색일 2022.02.0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통계청, 2017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http://kostat.go.kr/portal/eng/pressReleases/5/2/index.board>

프랑스 문화부

<https://www.pop.culture.gouv.fr/search/list?base=%5B%22%5B%22%2C%22R%C3%A9pertoire%20des%20Mus%C3%A9es%20de%20France%20%28Mus%C3%A9ofile%29%22%5D>.

(검색일 2022.05.01.)

프랑스 문화부

<https://www.culture.gouv.fr/Aides-demarches/Protections-labels-et-appellations/Appellation-Musee-de-France>.(검색일 2022.05.08.)

프랑스

<https://blog.landot-avocats.net/2020/11/17/une-deconcentration-de-plus-celle-de-lappellation-musee-de-france/>.(검색일 2022.04.25.)

## 기사

오선아 기자, ‘경주시, 제 4차 문화도시 예비사업 대상지에서 제외’, 경주신문, 2021.12.9

김나운 기자, ‘대문 고쳐준 게 도시재생? 낙후된 동네 좋아진 게 없다’, 중앙선데이, 2021.6.12.

홍창빈 기자, ‘사립박물관 난립 제주도.. 평가인증제도 활성화’, 헤드라인 제주, 2017.8.22

최재수 기자, ‘김승수 의원, “코로나19로 박물관미술관 피해액 728억 추산” 주장’, 매일신문, 2020.10.8.

백창현·이시은 기자, ‘코로나19 사태로 경기도 내 미술관 박물관 초죽음...문화부 지원책 “아직 없다”’, 중부일보, 2020.3.2.



## 부록

---

- || 부록 1 || 「국유재산법」 및 그 시행령의 ‘공공단체’ 관련 규정
- || 부록 2 || 사립박물관 학예인력지원사업 운영약정서
- || 부록 3 || 사립박물관 소장품 DB화 사업 운영약정서
- || 부록 4 ||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지원관 만족도조사 결과
- || 부록 5 ||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지원인력 만족도조사 결과
- || 부록 6 ||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지원관 만족도조사 결과
- || 부록 7 ||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지원인력 만족도조사 결과
- || 부록 8 || 등록 박물관·등록미술관 운영현황보고
- || 부록 9 || 전국 사립박물관 경력인정대상기관 인정 연도 분포
- || 부록 10 || 행정구역별 경력인정대상 사립박물관 분포
- || 부록 11 || 사립박물관 지정문화재 등 소장 현황
- || 부록 12 || 행정구역별 사립박물관 기획 및 특별전 운영현황
- || 부록 13 ||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립박물관
- || 부록 14 || 행정구역별 사립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기관 수
- || 부록 15 || 행정구역별 사립박물관 개관 현황
- || 부록 16 || 전국 사립미술관 경력인정대상기관 인정 연도 분포
- || 부록 17 || 행정구역별 경력인정대상 사립미술관 분포
- || 부록 18 || 행정구역별 사립미술관 기획 및 특별전 운영현황
- || 부록 19 || 행정구역별 사립미술관 프로그램 운영 기관 수
- || 부록 20 || 행정구역별 사립미술관 운영 프로그램 수
- || 부록 21 || 행정구역별 사립미술관 개관 현황
- || 부록 22 || ‘우수 박물관·미술관’(인증 박물관·미술관) 기준 마련을 위한 현장사례연구 체크리스트
- || 부록 23 || ‘우수 박물관·미술관’의 기준마련을 위한 설문조사지



부록 1 「국유재산법」 및 그 시행령의 ‘공공단체’ 관련 규정

제30조(사용허가)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만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공용·공공용·기업용 재산: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2. 보존용재산: 보존목적의 수행에 필요한 범위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1.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재산의 기부자이거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행정재산에 대하여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로 사용·수익하기 위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이를 지방공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③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용·수익이 그 용도나 목적에 장애가 되거나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 1의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② 사용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천재지변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행정재산의 형태·규모·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활용성이 낮거나 보수가 필요한 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5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유지·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4. 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양여한 재산이 10년 내에 양여목적과 달리 사용된 때에는 그 양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등은 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을 양여하려면 총괄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가액 이하의 일반재산을 제1항제3호에 따라 양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33조(공공단체의 범위)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1. 법령에 따라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는 법인
2. 법령에 따라 정부가 기본재산의 전액을 출연하는 법인

- 
- ※ 행정재산: (1)공용재산(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 ※ 일반재산: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

Ⅱ 부록 2 Ⅱ 사립박물관 학예인력지원사업 운영약정서

제1조(목적)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박물관명 (이하 “을” 이라 한다.) 간 「학예인력 고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지원기간)

지원기간은 2017년 월 일에서 2017년 12월 31일까지이다. [학예인력 배치날짜 기준]

제3조(학예인력 근무 장소)

학예인력의 근무 장소는 “을”의 박물관으로 한다.

제4조(갑과 을의 의무와 협조)

“을”은 학예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노력을 하고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갑”의 동 사업 추진방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① “을”은 「학예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학예인력 사업 운영 약정서」에 따라 본 사업을 성실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갑”이 동 사업 시행지침이나 지원약정서의 이행여부 등을 점검·확인하고자 할 경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을”은 「학예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학예인력 사업 운영 약정서」를 학예인력 근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동 사업으로 고용된 학예인력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알게 하여야 한다.
- ④ “을”은 “갑”이 본 사업과 관련된 교육과 실습, 워크숍 등에 참여를 요구할 시 따라야 한다.
- ⑤ “갑”은 사업과 관련된 평가, 통계자료 작성, 사업성과 분석 등의 목적으로 “을”에게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 ⑥ 지원대상관이 자체적으로 구인하지 못하고 본 협회를 통해 구인 요청 시, 연속 2회 공고 후에도 구인되지 않을 경우 후보 관에 기회가 이양된다.<2012.12.17., 개정>

제5조(학예인력 운영에 갑에 대한 을의 의무와 협조)

- ① “갑”은 “을”에게 학예인력의 근무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을 이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고용 학예인력의 월 급여 일부를 “갑”으로부터 받고 “을”이 부담해야 할 나머지 월 급여 분을 합산하여 정해진 날짜에 학예인력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을”이 부담해야할 급여 분을 포함한 지급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학예인력의 급여 통장사본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갑”이 본 사업과 관련된 교육과 실습, 워크숍 등에 고용 학예인력의 참여를 요구할 시 따라야 한다.
- ④ “을”은 본 사업과 관련된 학예인력의 업무범위를 다음과 같이 숙지하고 따라야 하며, 이의 위반 시에는 동 사업의 지원에서 향후 일정 년 간 제외될 수 있다.

1. 지원인력 업무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세부 업무 범위
학예·전시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연구] 소장품/자료 조사, 자료집/학술지 발간</li> <li>• [서류 작성]</li> <li>• [자료 분석]</li> <li>• [도록/책자 제작] 관련자료 번역, 사진촬영, 원고 작성/교정, 편집</li> <li>• [전시] 기획/전시, 전시보조자료 제작, 홍보물 제작</li> <li>• [전시 안내]</li> </ul>
소장품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장품 전시]</li> <li>• [소장품 수집] 구입/수증</li> <li>• [관리 및 보존수복] 수장 및 전시 공간 환경 유지, 소장품 보존처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장품 ] 분류/입력/전산</li> <li>• [소장품 관리] 출/격납, 운송, 포장, 상태검사, 대여</li> <li>•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관리/운영]</li> </ul>
교육	• [교육] 전시와 연계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교육자료 제작
협력	• 본 사업과 관련된 “갑”의 요청 업무

2. 지원인력 본인의 자발적이지 않은 1. 업무범위 외 사항은 요구할 수 없다.

⑤ 그 외 사항은 통념상의 직업윤리 규정을 준용한다.

#### 제6조(근로계약의 체결)

“을”은 학예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갑”은 근로 계약조건 중에서 부적절한 사항의 발생 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지원인력 계약조건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세부 계약조건
평균근무일	• [주5일 이상 근무] 근로시간 및 휴무일은 고용관의 기준에 준할 것
의무가입	•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급여	• 매년 책정되는 임금액에 따름 • “을”은 학예사의 경력에 따라 급여 외 임금을 추가 지불할 수 있음

#### 제7조(학예인력의 중도 퇴직에 대한 갑과 을의 조치)

① 학예인력의 중도 퇴직의 이유가 객관적으로 보아 고용 학예인력에게 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재지원 배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잔여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배치 불가로 한다. <2008.3.14, 개정>

② 학예인력의 중도 퇴직의 이유가 객관적으로 보아 “을”에게 있을 경우: 잔여 근로계약과 관계없이 “갑”은 “을”에게 재지원 할 수 없으며, 그 사유에 따라 “갑”은 “을”에게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판단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또한 사업 기간 중 3회 이상 인력 교체 시, 차년도 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012.12.17, 개정>

③ 학예인력의 중도 퇴직의 이유가 불분명할 경우: 제반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반 사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 제8조(지원금의 반환)

“을”은 지원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사업 기간 중 기관 및 인력의 문제로 인해 지원이 중단될 경우 “을”은 나머지 지원금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은 사업을 위한 배치 인력의 인건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을”이 “갑”이 지정한 인건비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지원은 취소되고, “을”은 지원금 전액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 인건비 지불 연체, 배치 인력 1인에 대한 인건비 총액의 변경 및 기타 인력 지원 사업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취소되고, “을”은 지원금 전액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제9조(제재)

① “을”이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운영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갑”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제7조 제2항과 관련하여 그 사유가 도의적, 윤리적, 사회적으로 심대한 경우,

③ 이외에 “을”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의 방향과 목적에 부합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 시에는 동 사업에서 향후 5년 간 협회 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

#### 제10조(중도해지 통보)

“을”은 고용기간 종료 이전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5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

한다. <2012.12.17, 개정>

제11조(“갑” 및 “을”과 학예인력과의 관계)

- ① “갑”은 “을”, “을”의 고용 학예인력에게 동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에 부합한 관리·감독을 한다.
- ② 학예인력은 “을”에 근무하기 시작한 때부터 “을” 소속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으며, “을”과 학예인력 간에 발생하는 제반 법적 권리와 의무는 양 당사자 간의 문제이다. <2014.1.24, 개정>
- ③ “을”과 학예인력은 상호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며 사회보험 가입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감독상의 조치)

- ① “갑”은 “을”의 학예인력 고용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실사·지도·점검·평가할 수 있다.
-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사·지도·점검·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 방문, 관련 서류의 열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정도에 따라 “을”에 대한 경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 때에는 “을”에 대하여 고용사업의 정지를 통보하거나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④ “갑”은 “을”이 중대한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학예인력을 사업목적 외로 고용 및 운영할 경우 약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 간 협회 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별첨 1. 참조), 「학예인력 지원사업 시행지침」,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017.3.12, 개정>

---

부록 3 Ⅱ 사립박물관 소장품 DB화 사업 운영약정서

제1조(목적)

사단법인 한국박물관협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박물관(이하 “을”이라 한다.) 간 「2016 전국 공·사립·대학박물관 소장품 DB화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제2조(지원기간)

지원기간은 2016년 ( )월 ( )일에서 ( )월 ( )일(개월)까지이다.

제3조(소장품 등록 인력 근무 장소)

소장품 등록 인력의 근무 장소는 “을”의 박물관으로 한다.

제4조(갑과 을의 의무와 협조)

“을”은 소장품 등록 인력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노력을 하고 다음사항을 포함하여 “갑”의 동 사업 추진방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① “을”은 「2016 전국 공·사립·대학박물관 소장품 DB화 사업 운영 약정서」에 따라 본 사업을 성실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의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조치」(붙임 1. 참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갑”이 동 사업 시행지침이나 지원약정서의 이행여부 등을 점검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을”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③ “을”은 「2016 전국 공·사립·대학박물관 소장품 DB화 사업 운영 약정서」를 소장품 등록 인력의 근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하여 동 사업으로 고용된 등록 인력으로 하여금 그 내용을 알게 하여야 한다.
- ④ “을”은 “갑”이 본 사업과 관련된 교육과 실습, 워크숍 등에 참여를 요구할 시 따라야 한다.
- ⑤ “갑”은 사업과 관련된 평가, 통계자료 작성, 사업성과 분석 등의 목적으로 “을”에게 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소장품 등록 인력 운용에 갑에 대한 을의 의무와 협조)

- ① “갑”은 “을”에게 소장품 등록 인력의 근무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제반 자료를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며 “을”은 이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② “을”은 고용 소장품 등록 인력의 월 급여 일부를 “갑”으로부터 받고 “을”이 부담해야 할 나머지 월 급여 분을 합산하여 정해진 날짜에 소장품 등록 인력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을”이 부담해야 할 급여 분을 포함한 지급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소장품 등록 인력의 급여 통장사본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을”은 “갑”이 본 사업과 관련된 교육과 실습, 워크숍 등에 고용 소장품 등록 인력의 참여를 요구할 시 따라야 한다.
- ④ “을”은 본 사업과 관련된 소장품 등록 인력의 업무범위를 다음과 같이 숙지하고 따라야 하며, 이의 위반 시에는 동 사업의 지원에서 향후 일정 5년 간 제외될 수 있다.

가. 지원등록 인력 업무범위는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세부 업무 범위
소장품 등록	•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관리/운영]
	• [소장품 등록] 분류/입력/전산
	• [서류 작성] 소장품명세서 작성
	• [조사/연구] 소장품/자료 조사
	• [소장품 관리] 수장 및 전시 공간 환경 유지, 출/격납, 운송, 포장, 상태검사, 대어
협력	• 본 사업과 관련된 “갑”의 요청 업무

나. 지원등록 인력 본인의 자발적이지 않은 1. 업무범위 외 사항은 요구할 수 없다.

- ⑤ 그 외 사항은 통념상의 직업윤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근로계약의 체결)

“을”은 소장품 등록 인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갑”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갑”은 근로 계약조건 중에서 부적절한 사항의 발생 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지원등록 인력 계약조건은 아래 표와 같다.

구분	세부 계약조건
평균근무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li> <li>-근로시간 및 휴무일은 고용관의 기준에 준할 것</li> </ul>
의무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4대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li> </ul>
급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월급 200만원(주차수당 유급수당 등 고용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수당 포함)</li> <li>• “을”은 관의 매칭 인건비(60만원)와 “을”의 지원비(140만원)를 합산한 금액을 매월 지정된 날짜에 등록 인력의 급여통장으로 지급</li> <li>• 4대 보험 기관부담금은 관 부담금(60만원)과 별도로 기관에서 부담</li> </ul>

제7조(소장품 등록 인력의 중도 퇴직에 대한 갑과 을의 조치)

- ① 소장품 등록 인력의 중도 퇴직의 이유가 객관적으로 보아 고용 등록 인력에게 있을 경우: “갑”은 “을”에게 적절한 절차에 따라 재지원 배치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단, 잔여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배치 불가로 한다.
- ② 소장품 등록 인력의 중도 퇴직의 이유가 객관적으로 보아 “을”에게 있을 경우: 잔여 근로계약과 관계없이 “갑”은 “을”에게 재 지원 할 수 없으며, 그 사유에 따라 “갑”은 “을”에게 별도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판단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또한 사업 기관 중 3회 이상 등록 인력 교체 시, 차년도 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③ 소장품 등록 인력의 중도 퇴직의 이유가 불분명할 경우: 제반 여부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반 사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을”은 지원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① 사업 기간 중 기관 및 등록 인력의 문제로 인해 지원이 중단될 경우 “을”은 나머지 지원금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② 지원금은 사업을 위한 배치 등록 인력의 인건비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을”이 “갑”이 지정한 인건비 이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경우 지원은 취소되고, “을”은 지원금 전액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인건비 지불 연체, 배치 등록 인력에 대한 인건비 총액의 변경 및 기타 등록 인력 지원 사업 중복 수혜 시 지원이 취소되고, “을”은 지원금 전액을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제재)

- ① “을”이 약정의 내용과 상이하게 운영하거나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갑”은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② 제7조 제2항과 관련하여 그 사유가 도의적, 윤리적, 사회적으로 심대한 경우,
- ③ 이외에 “을”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의 방향과 목적에 부합하여야하며 이의 위반 시에는 동 사업에서 향후 5년 간 협회 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

제10조(중도해지 통보)

“을”은 고용기간 종료 이전에 중도해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15일 이내에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갑” 및 “을”과 소장품 등록 인력과의 관계)

- ① “갑”은 “을”, “을”의 고용 소장품 등록 인력에게 동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에 부합한 관리·감독을 한다.
- ② 소장품 등록 인력은 “을”에 근무하기 시작한 때부터 “을” 소속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갖으며, “을”과 소장품 등록 인력 간에 발생하는 제반 법적 권리와 의무는 양 당사자 간의 문제이다.

---

③ “을”과 소장품 등록 인력은 상호 권리와 의무를 존중하며 사회보험 가입 등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감독상의 조치)

- ① “갑”은 “을”의 소장품 등록 인력 고용사업이 적정하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 및 지원약정 등의 이행여부를 실사·지도·점검·평가할 수 있다.
-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사·지도·점검·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 방문, 관련 서류의 열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위반정도에 따라 “을”에 대한 경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③ “갑”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개선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된 때에는 “을”에 대하여 고용사업의 정지를 통보하거나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④ “갑”은 “을”이 중대한 약정사항을 위반하거나 소장품 등록 인력을 사업목적 외로 고용 및 운용할 경우 약정을 취소하고 향후 5년 간 협회 지원 사업에서 배제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약정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훈령 제187호)」(별첨 2. 참조), 사회통념상 합리적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Ⅱ 부록 4 Ⅱ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지원관 만족도조사 결과

평가 항목	질문	년도	응답 (0.5만점)
1. 직무 만족도	1-1 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성실한 직무능력에 만족한다.	2019	0.46
		2020	0.47
		2021	0.47
	1-2 전문인력이 미술관 업무와 사업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2019	0.48
		2020	0.48
		2021	0.48
	1-3 전문인력이 지원사업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다.	2019	0.47
		2020	0.47
		2021	0.47
	1-4 전문인력이 채용시 기획하였던 사업과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였다.	2019	0.47
		2020	0.47
		2021	0.47
	1-5 전문인력이 미술관의 콘텐츠 및 제반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19	0.47
		2020	0.47
		2021	0.47
	1-6 전문인력이 창의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아이디어를 개발한 사례가 있다.	2019	0.45
		2020	0.46
		2021	0.45
2. 조직 만족도	2-1 전문인력과 미술관장 및 직원들과의 소통과 업무협조가 원활하다.	2019	0.46
		2020	0.47
		2021	0.48
	2-2 전문인력이 관람객, 피교육자, 업무관련자들과 잘 소통하는 편이다.	2019	0.46
		2020	0.47
		2021	0.47
3. 근무 만족도	3-1 전문인력의 출퇴근이 정상적이며, 결근, 조퇴 등이 없는 편이다.	2019	0.47
		2020	0.48
		2021	0.49
	3-2 전문인력의 근무자세가 성실하고, 적극적이다.	2019	0.47
		2020	0.48
		2021	0.48
4. 사립 미술관 전문인력 지원	4-1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2019	0.46
		2020	0.45
		2021	0.46
	4-2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고용창출(안정화) 및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2019	0.46
		2020	0.48

평가 항목	질문	년도	응답 (0.5만점)
사업		2021	0.48
	4-3 지원사업 집행과정에서 제반공지와 교육, 기타 업무진행이 적절히 진행되고 있다.	2019	0.46
		2020	0.46
		2021	0.47
5. 기타 자유 의견	5-1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채용 방법이 객관적이고 적절하다.	2019	0.44
		2020	0.46
		2021	0.46
	5-2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급여가 적절하다.	2019	0.33
		2020	0.37
		2021	0.35
	5-3 미술관에 출퇴근 거리와 교통수단에 만족한다.	2019	0.4
		2020	0.42
		2021	0.42
	5-4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근무기간이 적절하다.	2019	0.36
2020		0.38	
2021		0.36	

※ 자료원: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19~2021,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재정리.

Ⅱ 부록 5 Ⅱ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지원인력 만족도조사 결과

평가 항목	질문	년도	응답 학예인력 (0.5만점)	응답 에듀케이터 (0.5만점)
1. 전반 만족도	1-1 미술관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2019	0.44	0.43
		2020	0.43	0.47
		2021	0.45	0.47
	1-2 미술관의 전문인력으로서 적절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무조건, 환경적 조건을 제공하였다.	2019	0.42	0.43
		2020	0.43	0.46
		2021	0.45	0.46
2. 직무 만족도	2-1 현재하고 있는 나의 직무에 대해 만족하며 경력 개발과 전문성에 도움이 된다.	2019	0.45	0.45
		2020	0.45	0.46
		2021	0.43	0.47
	2-2 전문인력이 관람객, 피교육자, 업무관련자들과 잘 소통하는 편이다.	2019	-	-
		2020	0.45	0.48
		2021	0.44	0.47
	2-3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난이도와 양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019	0.4	0.39
		2020	0.43	0.45
		2021	0.42	0.44
	2-4 직무에 대한 건의 과정이 적합하며, 합리적으로 처리되었다.	2019	0.44	0.42
		2020	0.44	0.45
		2021	0.42	0.46
2-5 직무에 관하여 자체 점검 및 평가 등의 기회를 통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19	0.44	0.43	
	2020	0.45	0.46	
	2021	0.45	0.47	
3. 조직 및 환경 만족도	3-1 미술관에서 업무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상사 및 동료와의 의사소통 관계에 만족한다.	2019	0.45	0.44
		2020	0.46	0.46
		2021	0.43	0.47
	3-2 미술관에서의 근무시간이 규정을 준수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019	0.46	0.45
		2020	0.45	0.47
		2021	0.45	0.47
3-3 월차, 휴가, 병가, 교육기회 제공 등 복지수준에 대해 만족한다.	2019	0.42	0.41	
	2020	0.43	0.44	
	2021	0.42	0.44	
4. 사립 미술관 전문	4-1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2019	0.41	0.4
		2020	0.42	0.47
		2021	0.4	0.45
	4-2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이 문화예술 전문인력	2019	0.43	0.41

평가 항목	질문	년도	응답 학예인력 (0.5만점)	응답 에듀케이터 (0.5만점)
인력 지원	고용창출(안정화) 및 증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2020	0.44	0.48
		2021	0.43	0.46
사업	4-3 규정에 명시된 급여가 매월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2019	0.48	0.49
		2020	0.48	0.49
		2021	0.49	0.49
	4-4 지원사업 집행과정에서 제반 공지와 교육, 기타 업무진행이 적절히 진행되고 있다.	2019	0.45	0.45
		2020	0.45	0.48
		2021	0.47	0.47
5. 기타 자유 의견	5-1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채용 방법이 객관적이고 적절하다.	2019	0.42	0.44
		2020	0.44	0.47
		2021	0.45	0.7
	5-2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급여가 적절하다.	2019	0.31	0.33
		2020	0.32	0.35
		2021	0.28	0.31
	5-3 미술관에 출퇴근 거리와 교통수단에 만족한다.	2019	0.37	0.4
		2020	0.39	0.43
		2021	0.39	0.43
	5-4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의 근무기간이 적절하다.	2019	0.34	0.38
		2020	0.39	0.39
		2021	0.36	0.39

※ 자료원: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19~2021,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재정리.

Ⅱ 부록 6 Ⅱ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지원관 만족도조사 결과

평가 항목	질문	년도	응답 (0.5만점)
1. 직무 만족도	1-1 예비학예인력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다.	2020	0.44
		2021	0.45
	1-2 예비학예인력이 지원사업의 의미를 잘 이해하고 있다.	2020	0.46
		2021	0.47
	1-3 예비학예인력이 학예업무 외에도 교육, 홍보, 행정 등 여러분야에 걸쳐 업무습득을 위한 노력을 하였다.	2020	0.46
		2021	0.47
	1-4 예비학예인력이 미술관의 콘텐츠 및 제반 업무를 파악하고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2020	0.46
		2021	0.47
	1-5 예비학예인력이 창의적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아이디어를 개발한 사례가 있다.	2020	0.44
		2021	0.45
	1-6 예비학예인력이 미술관 업무와 사업 수행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2020	0.47
		2021	0.47
2. 조직 만족도	2-1 예비학예인력과 미술관장 및 직원들과의 소통과 업무협조가 원활하다.	2020	0.46
		2021	0.47
	2-2 예비학예인력이 관람객, 피교육자, 업무관련자들과 잘 소통하는 편이다.	2020	0.46
		2021	0.47
3. 근무 만족도	3-1 예비학예인력의 출퇴근이 정상적이며, 결근, 조퇴 등이 없는 편이다.	2020	0.48
		2021	0.48
	3-2 예비학예인력의 근무자세가 성실하고, 적극적이다.	2020	0.48
		2021	0.48
4. 사립 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 사업	4-1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2020	0.46
		2021	0.45
	4-2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이 현장 전문성 강화와 경력확보 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2020	0.47
		2021	0.48
	4-3 지원사업 집행과정에서 제반 공지와 교육, 기타 업무진행이 적절히 진행되고 있다.	2020	0.46
		2021	0.45
5. 기타 자유 의견	5-1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의 채용 방법이 객관적이고 적절하다.	2020	0.45
		2021	0.46
	5-2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의 급여가 적절하다.	2020	0.36
		2021	0.37
	5-3 미술관 출퇴근 거리와 교통수단에 만족한다.	2020	0.41
		2021	0.43
	5-4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의 근무기간이 적절하다.	2020	0.34
		2021	0.36

※ 자료원: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19~2021, 사립미술관 전문인력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재정리.

Ⅱ 부록 7 Ⅱ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지원인력 만족도조사 결과

평가 항목	질문	년도	응답 (0.5만점)
1. 전반 만족도	1-1 미술관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2020	0.46
		2021	0.46
	1-2 미술관의 예비학예인력으로서 적절한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근무조건, 환경적 조건을 제공하였다.	2020	0.44
		2021	0.45
2. 직무 만족도	2-1 현재 하고 있는 나의 직무에 대해 만족하며 경력 개발과 전문성에 도움이 된다.	2020	0.46
		2021	0.45
	2-2 예비학예인력으로서 전문성 습득을 위한 기회가 되었다.	2020	0.46
		2021	0.45
	2-3 현재 수행하고 있는 직무가 난이도와 양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020	0.44
		2021	0.43
2-4 직무에 대한 건의과정이 적합하며, 합리적으로 처리되었다.	2020	0.44	
2021	0.44		
2-5 직무에 관하여 자체 점검 및 평가 등의 기회를 통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2020	0.44	
	2021	0.44	
	3. 조직 및 환경 만족도	3-1 미술관에서 업무적으로나 인간적으로 상사 및 동료와의 의사소통·관계에 만족한다.	2020
3-2 미술관에서의 근무시간이 규정을 준수하고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021	0.46	
	2020	0.45	
	2021	0.48	
3-3 월차, 휴가, 병가, 교육기회 제공 등 복지수준에 대해 만족한다.	2020	0.41	
	2021	0.45	
4. 사립 미술관 예비인력 지원 사업	4-1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2020	0.46
		2021	0.44
	4-2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이 현장 전문성 강화와 경력확보 등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2020	0.47
		2021	0.46
4-3 규정에 명시된 급여가 매월 정상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2020	0.49	
	2021	0.49	
4-4 지원사업 집행과정에서 제반공지와 교육, 기타 업무진행이 적절히 진행되고 있다.	2020	0.47	
	2021	0.46	
5. 기타 자유 의견	5-1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의 채용 방법이 객관적이고 적절하다.	2020	0.46
		2021	0.46
	5-2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의 급여가 적절하다.	2020	0.35
		2021	0.35
5-3 미술관 출퇴근 거리와 교통수단에 만족한다.	2020	0.41	
	2021	0.43	
5-4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의 근무기간이 적절하다.	2020	0.37	
	2021	0.37	

※ 자료원: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2020~2021, 사립미술관 예비학예인력 지원사업 최종보고서, 재정리

Ⅱ 부 록 8 Ⅱ 등록 박물관·등록미술관 운영현황보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16. 11. 29.>)

① (박물관·미술관) 명칭							
② 소재지	(전화:                    )						
③ 설립자 주소	(전화:                    )						
④ 등록번호	제 호(   .   .   .)			⑤ 개관일   .   .			

구분	직업	성명	생년월일	전공	구분				
⑥ 설립자					유급	자원봉사			
⑦ 직원현황	관장(원장)				[ ]	[ ]			
	학예사				[ ]	[ ]			
	그 밖의 직원				명	명			
	총인원(⑥+⑦)				명	명			
⑧ 소장 자료현황	구분(류)				기타	계			
	수량								
⑨ 시설현황	구분	시설수/총면적		비고	구분	시설수/총면적		비고	
	대지	㎡			연구실	실	㎡		
	건평	㎡			자료실	실	㎡		
	전시실	실	㎡		도서실	실	㎡		
	작업실	실	㎡		시청각실	실	㎡		
	준비실	실	㎡		강당	실	㎡		
	사무실	실	㎡						
⑩ 수지현황	총수입			천원	⑫ 관람료	개인			원
	총비용			천원			단체		
⑪ 관람인원	총인원			명					원
	단체관람인원			명					원
⑬ 휴관일								무료	
⑭ 개관시간					⑮ 관람소요시간	시간	분		
⑯ 편의시설	주차장	평 대			식당	[ ]유	[ ]무		
	사진촬영	[ ]허가 [ ]비허가			매점	[ ]유	[ ]무		
	장애인 시설	[ ]유 [ ]무			그 밖의 시설				
⑰ 문화 교육현황 (특별전 등)	프로그램명				참석인원	기간	그 밖의 사항		
⑱ 자료발간 현황	자료명				종류	비고			
⑲ 박물관 주요 특징									
⑳ 앞으로의 사업계획									

Ⅱ 부록 9 Ⅱ 전국 사립박물관 경력인정대상기관 인정 연도 분포

(n=125)

인정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박물관 수	21	2	2	0	9	10	6	4	4	6
인정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박물관 수	7	6	7	3	2	7	6	3	7	4
인정 연도	2020	2021								
박물관 수	7	2								

※ 2000년과 2008년에 인정 기관 중 각 1개 기관이 중간에 해제되었다가 재인정 받음.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Ⅱ 부록 10 Ⅱ 행정구역별 경력인정대상 사립박물관 분포

(n=125)

행정구역	사립박물관수	경력인정대상 사립박물관 수/비율	행정구역별 사립박물관 중 경력인정대상기관 비율
서울특별시	70	42	33.6%
부산광역시	7	3	2.4%
대구광역시	6	2	1.6%
인천광역시	12	5	4.0%
광주광역시	3	1	0.8%
대전광역시	4	2	1.6%
울산광역시	1	0	0.0%
세종특별자치시	4	1	0.8%
경기도	63	29	23.2%
강원도	41	3	2.4%
충청북도	12	5	4.0%
충청남도	20	8	6.4%
전라북도	9	1	0.8%
전라남도	18	3	2.4%
경상북도	22	8	6.4%
경상남도	22	8	6.4%
제주특별자치도	44	4	3.2%
<b>전국</b>	<b>358</b>	<b>125</b>	<b>100%</b>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Ⅱ 692 Ⅱ 2021년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 시범운영: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재정립과 평가인증제 시행방안 연구

부록 11 | 사립박물관 지정문화재 등 소장 현황

소재지		등록 여부	박물관명	지정문화재 등	
시·도	시군구			명칭	개수(점)
서울	성북구	1종	간송박물관	《훈민정음》 등	국보 10건 보물 34건 등록문화재 1건 시지정문화재 4건
서울	강남구	1종	경기여자고등학교 경운박물관	이해상내외상복, 저항라적삼	문화재청 등록문화재 2점
서울	서초구	1종	관문사성보박물관	묘법연화경	보물 4점 서울시문화재 7점
서울	중구	1종	농협 농업박물관	강진 용소농기 등	서울시문화재 4점
서울	강남구	2종	도산안창호기념관	국가기록물 제5호	국가기록물 5563점
서울	중구	1종	배재학당역사박물관	배재학당피아노 등	등록문화재 2점 서울시지정기념물 1점
서울	용산구	1종	백범김구기념관	백범김구유묵-한미친선평등 호조	등록문화재 1점
서울	종로구	1종	불교중앙박물관	남양주 수종사 부도 사리장엄 등 보물 총 12건	보물 451점
서울	종로구	1종	삼성출판박물관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주본 권 13 등	국보 1점 보물 12점
서울	종로구	1종	서울대학교병원 의학박물관	대한의원개원칙서 (등록문화재449호)	1
서울	종로구	1종	신문박물관 PRESSEUM	배설만사집, 배설의유품인태극기, 일제강점기문자보급교재	문화재청등록문화재 3건
서울	중구	1종	안중근의사기념관	안중근의사유묵	보물 7점
서울	중구	1종	우리은행 은행사박물관	대한천일은행 창립청원서 및 인가서 등	서울시 유형문화재/국가지정 기록물 75점
서울	중구	1종	이화박물관	심슨홀	지정문화재 1건
서울	용산구	1종	전쟁기념관	이승만 대통령 의전용 세단 등	등록문화재 3점 시도유형문화재(서울시) 10점
서울	강남구	1종	코리아나 화장박물관	초조본대반야바라밀다경 외 2 점	국보 1점 보물 2점
서울	성북구	2종	해곡최순우기념관	최순우 옛집	등록문화재 1점
서울	관악구	1종	호림박물관 신림본관	분청사기박지연어문편병 등	국보 8건 보물 54건

소재지		등록 여부	박물관명	지정문화재 등	
시·도	시군구			명칭	개수(점)
					시지정문화재 11건
서울	강남구	1종	호림박물관 신사분관	분청사기박지연어문편병 등	국보 8건 보물 54건 시지정문화재 11건
서울	종로구	1종	화정박물관	고려시대범종/윤산군이탁백 자음각묘지	시도지정 문화재 2건 4점(고려 시대 범종 1건 1점/윤산군이탁 백자음각묘지 1건 3점)
부산	금정구	1종	범어사 성보박물관	삼국유사 등 국가지정 4점	국보 1점 보물 3점 시지정 349점
부산	금정구	1종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의왕 원유관, 조선왕조의궤	중요민속문화재 1점 보물 2건 2점
인천	연수구	1종	가천박물관	국보 제276호 초조본유가사지 론 권53, 보물 제1154호 대방광 불화엄경, 보물 제1155호 경률 이상, 보물 제1178호 향약제생 집성방, 보물 제1179호 태산요 록, 보물 제1180호 산응경, 보물 제1205호 대방광불화엄경, 보 물 제1206호 초조본십주비바 사론, 보물 제1207호 산거사요, 보물 제1208호 춘추경좌씨전 구해, 보물 제1209호 우주두울, 보물 제1227호 식물본초, 보물 제1249호 간이벽온방, 보물 제 1250호 세의득효방, 보물 제 1716호 중수정화경사증류비 용본초, 인천광역시 유형문화 재 제63호 신간소문입식운기 론오, 인천광역시유형문화재 제64호 효경, 인천광역시 유형 문화재 제65호 증주당현절구 삼체시법	국보 1점 보물 14점 인천광역시유형문화재 3점
인천	미추홀구	1종	범패민속문화박물관	인천 무형문화재 10-1	1
대전	유성구	1종	한국조폐공사 화폐박물관	근대압사기	1
세종	세종	1종	교과서박물관	월인천강지곡	국보 1점
경기	여주시	1종	목야박물관	예뵤미타도량참법등	보물 3점
경기	수원시	1종	대한불교조계종봉녕사	영산회상도 등	무형문화재 4점

■ 694 ■ 2021년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 시범운영: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재정립과 평가인증제 시행방안 연구

소재지		등록 여부	박물관명	지정문화재 등	
시·도	시군구			명칭	개수(점)
세주요엄박물관					
경기	화성시	1종	용주사 효행박물관	용주사 동종 등	국보 1점 보물 89점 시도지정문화재 50점
경기	의왕시	1종	철도박물관	파시 5-23 증기기관차 등	등록문화재 9
경기	광명시	1종	충현박물관	이원익 호성공신도상 외	보물 1건 1점 도지정유형문화재 11건 25점 도지정문화재자료 4건 20점
경기	파주시	1종	파주나비나라박물관	산골뚝나비 등	천연기념물 1점 멸종야생동식물 8점
경기	용인시	1종	(재)한국등잔박물관	조족등 등	경기도 민속문화재 2점
강원	강릉시	1종	강릉선교장박물관	강릉 선교장 소장 태극기	등록문화재 1점
강원	영월군	1종	만봉불화박물관	시왕도 초본, 사자도 초본	강원도 지정문화재 10점
강원	인제군	1종	만해문학박물관	도서-〈불교〉지	국가등록문화재 6점
강원	원주시	1종	무릉고서화미술박물관	고산구곡도 외	서울시문화재지정 8
강원	원주시	1종	뮤지엄 산(페이퍼갤러리)	초조본 대방광불화엄경 주본 권제36	국보 1점 보물 8점 서울시 유형문화재 1점
강원	평창군	1종	왕조실록의궤박물관	평창월정사밀부 등록	오대산사고 문화재자료 2점
강원	평창군	1종	월정사성보박물관	상원사중창권선문 등	국보 2점 보물 52점 유형문화재 24건 문화재자료 26점 중요민속문화재 1점 등록문화재 3점
강원	원주시	1종	치악산고판화박물관	미기재	강원도지정문화재 7점
강원	평창군	2종	고려궁박물관	고려청자 등	주요민속자료 20점 중요민속자료 5점 중요민속자료 5점 중요민속자료 5점
충북	단양군	1종	불교천태중앙박물관	초조본대방광불화엄경권20등 진실주집 등 묘법연화경 등	국보 2점 보물 10점 출처북도지정문화재 44점
충북	음성군	1종	철박물관	15톤 전기로	등록문화재 1건 8점

소재지		등록 여부	박물관명	지정문화재 등	
시·도	시군구			명칭	개수(점)
충북	음성군	1종	한독의약박물관	청지상감상약국명합 등	보물 6점 도지정문화재 2점
충북	음성군	미등 록	매괴박물관	예수성심기,성모성심기	유형문화재 2점
충남	천안시	1종	독립기념관	조선말 큰사전 원고 등	보물 2점 등록문화재 76점
충남	예산군	1종	수덕사근역성보관	보물제1147호(2008.3.12.지정)묘법연화경 보물제1381호(2003.11.14.지정)목조연화대좌 보물제1543(2008.3.12.지정)상교정본자비도량참법 보물1572호(2008.8.28.)서산문수사금동여래좌상복장유물 일부 보물1915호(2016.9.1.)개심사달마대사관심론경판 보물1916호(2016.9.1.)개심사달마대사혈맥론경판 보물1961호(2017.12.26.)개심사묘법연화경경판 보물1962호(2017.12.26.)개심사계초심학인문경판 보물1963호(2017.12.26.)개심사도가논변모자리혹론경판 보물1965호(2017.12.26.)개심사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경판 보물1966호(2017.12.26.)개심사성관자재구수육자선정경판 보물1967호(2017.12.26.)개심사오대진언경판	보물 14점
충남	아산시	1종	온양민속박물관	감주와갑주함 외 7건	충청남도민속자료 3점 충청남도유형문화재 5점
충남	아산시	1종	공세리성지성당박물관	공세리성당, 사제관	도지정문화재 2점
전북	김제시	1종	금산사 성보박물관	남원실상사 약수암 육각아미타 여래설법상	보물 3건 8점 도지정문화재 1건 1점
전북	전주시	2종	예수병원의학박물관	마티잉골드왕진사진 요도확장기 휴대용수술도구 방광내시경	근대문화유산목록 의료분야등재유물 5

소재지		등록 여부	박물관명	지정문화재 등	
시·도	시군구			명칭	개수(점)
암환자치료기록지					
전북	익산시	2종	충간공보물제651호박물관	보물제651호연안이씨종중문 적	보물 18점
전남	화순군	1종	규남박물관	하백원의 만국전도, 하백원의 동국지도	2
전남	해남군	1종	대흥사성보박물관	금동여래보살좌상등	보물 8점 지방문화재 7점
전남	담양군	1종	미암박물관	미암일기등	보물 12점 지정문화재 238점
전남	순천시	1종	송광사성보박물관	보조국사삼존불감 등	국보 4점 보물 2669점 도지정유형문화재 39점 등록문화재 5점
전남	영광군	1종	수나라성보박물관	불갑사 불복장 전적등	보물 3건 포함 259점 시도지정 문화재 5점 비지정 문화재 154점 총 418점
전남	구례군	1종	화엄사성보박물관	각항전 앞 석등 외	국보 4점, 보물 8점
경북	포항시	2종	보경사성보박물관	보경사 괘불탱, 보경사 서운암 동종	보물 2점
경북	영주시	1종	부석사성보박물관	조사당벽화 등	국보 1점, 보물 2점
경북	경주시	1종	불국사박물관	불국사삼층석탑사리장엄구, 불국사영산회상도	국보 1점, 보물 1점
경북	예천군	1종	용문사성보유물관	용문사 감역교지 등	보물 4점, 경북도유형문화재 1점
경북	안동시	1종	유교문화박물관	한국의유교책판등	세계기록유산 64,278점 아태기록유산 551점 국보 1점 보물 1,854점 시도유형문화재 216점 문화재자료 216점 등록문화재 691점
경북	영천시	1종	은해사성보박물관	은해사괘불탱 외	보물 3점(유형 1건 2점)
경북	김천시	1종	직지성보박물관	도리사 금동육각사리함 등	국보 1건 1점 보물 8건 12점 시도지정문화재 7건 12점

소재지		등록 여부	박물관명	지정문화재 등	
시·도	시군구			명칭	개수(점)
					문화재자료 1건 1점 등록문화재 2건 2점
경북	포항시	1종	포스코역사박물관	(등록문화재)삼화제철소 고로 1	
경북	영천시	1종	영천역사박물관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521호 민간조보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1점
경남	밀양시	1종	미리벌민속박물관	강세황 행서팔곡병 등	경남유형문화재 2점, 경남문화재자료 663점
경남	밀양시	1종	영산정사성보박물관	밀양영산정사고불서 등	경남 유형문화재 2점
경남	고성군	1종	옥천사성보박물관	청동복등	국가지정문화재 2건 도지정문화재 20건
경남	진주시	1종	토지구택박물관	분류두공부시언해(1051-4호) 심원권일기(642호)	보물(1점) 경남유형문화재(1점)
경남	양산시	1종	통도사성보박물관	통도사 은제도금아미타여래삼 존상 및 복장유물	국보1건 1점 보물26건 93점 시도지정문화재49건 979점
경남	거제시	1종	포로수용소유적박물관	경남문화재자료제99호 거제도포로수용소 잔존유적지(부분)	0(유적지의 일부분으로 소장유물 자료에 포함시키지 않음)
경남	밀양시	1종	표충사호국박물관	청동은입사향완 등	국보 1건 보물 2건 국가민속문화재 1건 도지정유형문화재 21건 도지정문화재자료 7건 도기념물 1건
경남	합천군	1종	해인사성보박물관	합천 해인사 건칠희랑대사 좌 상 등	국보 1점 보물 522점 중요민속문화재 4점 시도지정문화재 16점 문화재자료 2점
제주	제주시	1종	한림공원	천연기념물제236호 제주한림용암동굴지대	1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Ⅱ 부록 12 Ⅱ 행정구역별 사립박물관 기획 및 특별전 운영현황

행정구역	사립박물관 수	기획 및 특별전 운영 기관		전체 기관 수 대비 기획 및 특별전 운영 비율(%)
총	358	235	65.6%	100%
서울	69	50	72.5%	20.9%
부산	8	6	75.0%	2.6%
대구	6	4	66.7%	1.7%
인천	12	7	58.3%	3.0%
광주	3	2	66.7%	0.9%
대전	4	4	100.0%	1.7%
울산	1	0	0.0%	0.0%
세종	4	1	25.0%	0.4%
경기	63	49	77.8%	20.9%
강원	42	28	66.7%	12.0%
충북	12	7	58.3%	3.0%
충남	19	15	78.9%	6.4%
전북	9	5	55.6%	2.1%
전남	18	14	77.8%	6.0%
경북	22	14	63.6%	6.0%
경남	22	16	72.7%	6.8%
제주	44	13	29.5%	5.6%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Ⅱ 부록 13 Ⅱ 모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립박물관

행정구역	등록 유형	박물관 명
서울(4)	1종	가회민화박물관, 다문화박물관, 백범김구기념관, 안중근의사기념관
부산(1)	1종	유엔평화기념관
광주(1)	2종	한국미용박물관
경기(8)	1종	김포다도박물관, 만해기념관, 용청박물관, 여주곤충박물관, 잔야문학박물관, 파주나비나라박물관, 풀짚공예박물관, 한길책박물관
강원(5)	1종	무릉고서화미술박물관, 월정사성보박물관, 호야지리박물관
	2종	고려궁박물관
	미등록	아라리인형의집 박물관
충남(4)	1종	한국자연사박물관, 독립기념관
	2종	공주기독교박물관, 한국문인인장박물관
전남(2)	1종	귀족호도박물관, 땅끝해양자연사박물관
경남(1)	1종	옥천사성보박물관
제주(2)	2종	제주옹기박물관
	1종	제주해양동물박물관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부록 14 Ⅱ 행정구역별 사립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기관 수

(n=275)

행정구역	프로그램 운영 기관 수		강좌 프로그램 운영 기관 수		체험 프로그램 운영 기관 수				답사 프로그램 운영 기관 수	
					정기		비정기			
합계	275	76.8%	142	100%	208	100%	196	100%	55	100%
서울	56	81.2%	30	21.1%	43	20.7%	33	16.8%	10	18.2%
부산	7	87.5%	5	3.5%	6	2.9%	4	2.0%	1	1.8%
대구	5	83.3%	3	2.1%	4	1.9%	3	1.5%	1	1.8%
인천	7	58.3%	1	0.7%	3	1.4%	7	3.6%	-	-
광주	3	100.0%	1	0.7%	3	1.4%	2	1.0%	1	1.8%
대전	3	75.0%	1	0.7%	3	1.4%	1	0.5%	-	-
울산	1	100.0%	1	0.7%	1	0.5%	1	0.5%	-	-
세종	3	75.0%	2	1.4%	3	1.4%	3	1.5%	-	-
경기	58	92.1%	34	23.9%	42	20.2%	46	23.5%	10	18.2%
강원	34	81.0%	20	14.1%	29	13.9%	26	13.3%	10	18.2%
충북	8	66.7%	4	2.8%	3	1.4%	7	3.6%	-	-
충남	17	89.5%	11	7.7%	14	6.7%	14	7.1%	5	9.1%
전북	5	55.6%	3	2.1%	4	1.9%	3	1.5%	-	-
전남	9	50.0%	3	2.1%	8	3.8%	6	3.1%	3	5.5%
경북	13	59.1%	6	4.2%	8	3.8%	5	2.6%	3	5.5%
경남	17	77.3%	7	4.9%	14	6.7%	14	7.1%	2	3.6%
제주	29	65.9%	10	7.0%	20	9.6%	21	10.7%	9	16.4%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Ⅱ 부록 15 Ⅱ 행정구역별 사립박물관 개관 현황

행정구역	개방 일수 확인 기관 수	평균 개방 일수	휴관 기관 수	개관 일수 미기재관	휴관 기관 (개관일수 미기재)
총	329	217	18	11	
서울	64	180	4	1	꼭두 박물관, 보나장신구박물관, 서울올림픽기념관, 쇠대박물관 (한국금융사박물관)
부산	7	155	1	0	록봉민속교육박물관
대구	5	241	1	0	농경생활사박물관
인천	10	175	0	2	(재미난박물관, 초연대구박물관)
광주	3	150	0	0	
대전	4	186	0	0	
울산	1	320	0	0	
세종	4	191	0	0	
경기	60	212	1	2	피노지움 (왈츠와 닥터만커피박물관, 한국조리박물관)
강원	40	247	2	0	금강자연사박물관, 치악민속박물관
충북	11	233	1	0	예뿌리민속박물관
충남	16	228	2	1	한국고건축박물관, 한국문인인장박물관 (북권박물관)
전북	8	151	0	1	(원송이학교 자연사박물관)
전남	15	238	1	2	히든트릭박물관 (대흥사성보박물관, 선암사성보박물관)
경북	20	215	1	1	안동소주박물관; 코로나19로 임시 휴관 (부석사성보박물관)
경남	21	227	0	1	(산청산골박물관)
제주	40	346	4	0	세계오지민속박물관, SOS박물관, 제주평화박물관, 보석앤화석박물관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Ⅱ 702 Ⅱ 2021년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 시범운영: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재정립과 평가인증제 시행방안 연구

부록 16 Ⅱ 전국 사립미술관 경력인정대상기관 인정 연도 분포

(n=82)

인정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평균
미술관 수	11	4	0	0	1	4	5	2	4	3	3.4
인정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미술관 수	3	2	5	2	3	5	4	4	4	4	3.6
인정 연도	2020	2021									
미술관 수	10	2									6

※ 2000년에 인정 기관 중 1개 기관이 중간에 해제되었다가 재인정 받음.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부록 17 Ⅱ 행정구역별 경력인정대상 사립미술관 분포

(n=82)

행정구역	사립미술관수	경력인정대상 사립미술관 수/비율		행정구역별 사립미술관 중 경력인정대상기관 비율
서울특별시	35	27	32.9%	77.1%
부산광역시	4	4	4.9%	100.0%
대구광역시	0	0	0.0%	-
인천광역시	3	1	1.2%	33.3%
광주광역시	8	7	8.5%	87.5%
대전광역시	3	0	-	-
울산광역시	0	0	-	-
세종특별자치시	0	0	-	-
경기도	39	19	23.2%	48.7%
강원도	16	2	2.4%	12.5%
충청북도	6	4	4.9%	66.7%
충청남도	6	4	4.9%	66.7%
전라북도	11	3	3.7%	27.3%
전라남도	24	6	7.3%	25.0%
경상북도	5	3	3.7%	60.0%
경상남도	5	2	2.4%	40.0%
제주특별자치도	14	0	-	-
전국	179	82	100%	45.8%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Ⅱ 부 록 18 Ⅱ 행정구역별 사립미술관 기획 및 특별전 운영현황

행정구역	기획전 및 특별전 개최 기관 수	전체 기획전 및 특별전 개최 수	지역 평균
서울	33	151	4.6
부산	4	18	4.5
인천	2	12	6.0
광주	8	50	6.3
대전	2	2	1.0
경기	37	171	4.6
강원	12	41	3.4
충북	3	30	10.0
충남	6	47	7.8
전북	11	58	5.3
전남	22	120	5.5
경북	5	22	4.4
경남	5	27	5.4
제주	9	20	2.2
<b>평균</b>	<b>159</b>	<b>769</b>	<b>4.8</b>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부록 19 Ⅱ 행정구역별 사립미술관 프로그램 운영 기관 수

(n=137)

행정구역	프로그램 운영 기관 수	강좌 프로그램	정기 체험 프로그램	비정기 체험 프로그램	답사 프로그램
서울	24	18	12	14	2
부산	4	3	1	3	0
인천	2	1	1	2	0
광주	8	7	2	4	2
대전	1	1	0	0	0
경기	36	21	24	28	3
강원	10	5	6	8	1
충북	3	1	2	3	0
충남	4	2	4	3	0
전북	10	3	6	8	3
전남	20	13	16	14	7
경북	4	4	3	3	0
경남	5	9	5	6	1
제주	6	3	3	5	3
<b>합계</b>	<b>137</b>	<b>91</b>	<b>85</b>	<b>101</b>	<b>22</b>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Ⅱ 부록 20 Ⅱ 행정구역별 사립미술관 운영 프로그램 수

(n=137)

행정구역	프로그램 총 수	강좌 프로그램 수	정기 체험 프로그램 수	비정기 체험 프로그램	답사 프로그램 수
서울	297	116	67	106	8
부산	29	13	1	15	0
인천	36	2	12	22	0
광주	26	14	3	10	2
대전	1	1	0	0	0
경기	316	62	150	99	5
강원	105	19	34	42	10
충북	31	1	2	28	0
충남	20	2	7	11	0
전북	166	8	66	89	3
전남	133	33	48	35	17
경북	50	31	17	24	0
경남	39	12	11	15	1
제주	42	19	265	11	3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Ⅱ 부록 21 Ⅱ 행정구역별 사립미술관 개관 현황

행정구역	개방 일수 확인 기관 수	평균 개방 일수	휴관 기관 수	개관 일수 미기재관	휴관 기관 (개관일수 미기재)
총	169	263	6	5	
서울	36	213	0	0	
부산	4	242	0	0	
인천	3	273	0	1	(전원미술관)
광주	8	301	1	0	의재미술관
대전	3	111	1	0	남철미술관
경기	39	270	0	1	(아트린뮤지움)
강원	16	255	2	1	권진규미술관(미등록), 일현미술관 (오랜미래신화미술관)
충북	6	318	0	2	(신미술관, 운보미술관)
충남	6	299	0	0	
전북	11	268	0	0	
전남	24	276	1	0	장전미술관
경북	5	277	0	0	
경남	5	232	0	0	
제주	14	338	1	0	성안미술관

※ 자료원: 문화체육관광부, 2021, 『2021년 전국문화기반시설 총람』 재정리.

## ‘우수 박물관·미술관’(인증 박물관·미술관) 기준 마련을 위한 현장사례연구 체크리스트 [개요 + 체크리스트]

### I 목적

### II 특징

### III 연구 방법

### IV 응답시 유의 사항

### V 체크리스트

Part 1. 공공성 (공적 신뢰와 책임)

Part 2. 조직 건전성A (거버넌스, 미션, 운영계획, 조직구조)

Part 3. 조직 건전성B (인력, 시설, 재정, 위기관리)

Part 4. 소장품 (Collection, 자료)

Part 5.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 (전시, 교육, 지역, 관람객)

Part 6. 제도개선 관련 의견 수렴

### [사립박물관·미술관 현장사례연구 개요]

#### I. 목적

- 본 연구는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제도 시범운영: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재정립과 평가인증제도의 활용방안」(문체부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됩니다. 사립박물관·미술관의 현황을 질적연구방법을 통해서 보다 심층적이고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0조(보고)에 의한 기본적인 운영현황 자료(양적 데이터)로 확인하기 어려운 현황을 현장사례연구 방식을 통해 파악하고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 현황 파악을 토대로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을 개선, 보완하여 연구보고서 형식으로 제안하기 위한 것입니다.
-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에 대한 제안의 일부로서, 현재 국·공립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의무시행하고 있는 평가인증제도의 목적, 방법, 활용방안 등을 사립박물관·미술관의 현황, 특성, 정책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설계·검토하고, 향후 필요한 지원과 정책을 발굴하여 제안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본 연구는 ‘평가’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평가인증제도를 도입할 경우 ‘우수한 박물관’의 기준과 평가지표를 수립하기 위한 기초연구입니다.

## II. 특징

- 본 연구는 ‘현장평가’가 아닌 ‘현장사례연구’로 진행됩니다.
- ※ ‘현장평가’가 일반적으로 특정 사업이나 목적에 의한 평가위원의 채점·심의와 그에 따른 결과를 공표하는 행정위로서의 평가사업에 포함된 과정이라면, 본 ‘현장사례연구’는 어디까지나 법정 운영현황 자료(양적 데이터)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질적 사례연구 활동입니다.
- 본 연구는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재정립(개선·보완) 및 그에 따른 평가인증제도의 목적, 방법,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정책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만큼, 정책연구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사립박물관·미술관 종사자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 연구자와 박물관·미술관 종사자 사이의 협력적인 연구과정을 중시합니다.
- 본 연구는 짧은 시간의 ‘현장평가’를 위해 사전 제출자료를 일괄 요청하지 않습니다.
- ※ 단,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사실의 설명이나 근거 제시를 위한 필요상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대신에 본 연구는 소수의 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일정 기간 소정의 연구주제를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사례연구방법론(직접관찰, 면접 등)을 통해 현장연구를 수행합니다.

## III. 연구방법

- 연구자는 2인 1팀으로 각 5개 기관 내외를 대상으로 직접관찰, 면접 등의 연구를 수행합니다.
- 연구자는 사전에 연구 대상기관에 관한 기초자료(사전 공유/배포, 구글 드라이브 사용\*)를 숙지하고 방문합니다.
- 연구자는 사전에 약속을 정하여 관찰 또는 직원이 있을 때에 방문합니다. (연락처 개별 공지)
- 연구자는 주요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 방문합니다.
- 연구자는 직원과 함께 수장고 등의 시설을 확인합니다.
- 연구자는 기초자료 및 체크리스트를 토대로 하여 현장관찰 및 면접을 수행합니다.

- 참여기관에서는 사전에 기초자료 및 체크리스트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자는 본 연구 목적으로 면접 내용을 녹취할 수도 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자는 참여기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연구자로서의 윤리와 성실의 의무를 다합니다.
- 연구자는 연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연구목적 외에 개인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 각 연구팀은 2022년 5월 15일까지 기한을 엄수해 연구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구보고서 작성 시, 체크리스트 및 연구질문의 항목을 가급적 모두 작성해 주십시오.
  - 연구보고서 분량의 제한은 없습니다.
  - 참여기관의 의견 및 제공 자료 등은 연구자가 서술 내에서 제시합니다.
  - 연구자는 서술의 근거가 될 사진 촬영을 부탁드립니다(서술 시 활용).
  - 작성이 어려운 항목에 관해서는 그 사유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IV. 응답시 유의사항

1. 연구항목은 총 5개의 파트 및 각 파트 별 ① 기본 확인 사항 의견 체크리스트로 구성됩니다.
  - [기본 확인 사항]은 참여기관 관계자를 통해 해당 관에 각 내용이 해당하지 확인하여 작성해주시고,
  - 항목에 따라 연구자께서 상세하게 서술해 주셔야 하는 항목의 경우 추가 지면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연구자에게서는

- (1) 참여기관 관계자와의 면접조사(인터뷰)를 통해서 각 항목 부합 여부를 서술하고(증빙자료 있을 경우 첨부),
- (2) 인터뷰 결과를 정리하여 서술해 주십시오.
- (3) 그리고 최종적으로 연구자의 종합적인 의견을 서술해 주십시오.

- 바쁘신 시간을 내어 조사에 응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 현장사례연구 관련 문의: museum2021@naver.com

먼저 조사 자료의 분류를 위해 다음의 내용을 작성해 주십시오.

- aQ1. 기관명: \_\_\_\_\_ 등록 종별: 1종 2종  
 aQ2. 현장사례연구 참여자명: 연구자 \_\_\_\_\_ 박물관·미술관 소속 참여자(직위 및 성명): \_\_\_\_\_

- aQ3. 설립주체 구분:  공공기관(국가지자체 출연)  기업 소속 박물관·미술관
- 기업(인) 설립 공익법인  기업(인) 설립 비영리법인(재단법인)  기업(인) 설립 비영리법인(재단법인)
- 기업(인) 외 설립 비영리법인(재단법인)  기업(인) 외 설립 비영리법인(사단법인)
- 개인 설립 (고유번호 부여 단체)  개인 설립 (사업자 등록)  기타 \_\_\_\_\_

다음은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 마련을 위한 **현장사례연구 체크리스트**입니다.

### 현황 체크리스트 [참여관 기입→전문가 현장방문 면담조사/확인]

- ※ 참여기관 담당자는 연구자 방문 전에 ‘기본항목’의 각 문항을 확인 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연구자는 방문 시에 ‘기본항목’ 작성 내용을 확인하여 완성해 주시고, ‘부가항목’을 작성해 주십시오.
- ※ [연구자 작성]으로 표시된 문항은 연구자가 단독으로 작성합니다.

## Part I. 공공성 (공적 신뢰와 책임)

### [기본 항목] (참여관 기입→전문가 현장방문 면담조사/확인)

	기본 확인 항목	예	아니오
Q1.	기관의 설립주체와 운영주체(조직)를 상시 공표하고 있는가?		
Q2.	기관의 설립 및 운영 관련 자체 규정이 있는가?		
Q3.	ICOM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활용하고 있는가? 또는 기관의 윤리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Q4.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적 자원의 범위와 내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가?		
Q5.	국거나 지자체의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가?		

### [부가 질문] (참여관 기입→전문가 현장방문 면담조사/확인)

Q2. 기관의 설립 및 운영 관련 규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이를 공표하고 있는가? (\* 규정 문서 제시)

Q3. ICOM 윤리강령의 내용을 공유하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예: 교육, 워크숍, 자체 윤리강령 제정 등) (\* 자체 윤리강령 제시(있을 경우))

Q4. 박물관·미술관의 공공적 자원의 범위의 범위와 내용은 어떤 것인가? 이를 점검하고 관리/이용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는가?

- 기본 자산(재정 및 소장품) 설정 및 관련 규정 유무, 이에 관한 정보공개 여부
- 공공적 자원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의사결정 주체 및 방식:
- 이에 관한 애로사항 및 의견:

Q5. 어떤 지원 사업에 참여했는가? 그에 대한 의견(장점, 단점, 과제 등)은 어떠한가?

[연구자 Part I 종합의견] (15줄 내외)

**Part II. 조직 건전성 A (거버넌스, 미션, 운영계획, 조직구조)**

[기본 항목] (참여관 기입 →전문가 현장방문 면담조사/확인)

기본 확인 항목	예	아니오
Q1. 기관의 설립목적, 미션, 비전 등을 명시한 공식적인 문서 또는 공개된 문서가 있는가?		
Q2. 기관의 설립목적 및 미션에 부합하는 운영계획을 정기적으로 수립, 공표하고 이를 실행, 평가, 개선하는 절차가 있는가?(* 증빙자료 확인)		
Q3. 기관의 모든 직원 및 자원봉사자가 설립목적 및 미션을 공유하고 이에 관해 활발한 대화/소통이 이루어지는가?		
Q4. '비영리의 항구적인 기관'이라는 뮤지엄 개념 정의에 부합하는가?(* 증빙자료 확인)		
Q5. 운영조직 및 의사결정(거버넌스)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는가?		
Q6. 기관 운영에 관해 외부 전문가(박물관 전문가 등)로 구성된 이사회 또는 위원회(운영위원회, 자문위원회 등)가 운영되고 있는가?		
Q7. 기관 운영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정책개발은 누가 하는가? ① 관장 ② 학예실장 또는 특정 학예사 ③ 이사회 또는 운영위원회 ④ 기타 조직 (구체적 조직: )		

**[부가 질문]**

Q1. **[\*연구자 작성]** 사립박물관·미술관은 다양한 설립 동기와 배경,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하신 박물관·미술관 관계자외의 질의응답을 통해 해당 관의 설립 동기, 배경, 역사, 그로부터 파악되는 특징을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줄 내외)

[연구자 Part II 종합의견] (15줄 내외)

### PartⅢ. 조직 건전성B (인력, 시설, 제정, 위기관리)

#### [기본 항목] (참여관 기입 →전문가 현장방문 면담조사/확인)

기본 확인 항목		예	아니오			
Q1. 향상 등록요건에 따른 인력 수(학예사 1명 이상)를 충족하고 있는가?						
Q1-1. 경력인정대상기관인 경우, 학예사 2명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Q2. ‘소장품의 보존·관리를 위한 적절한 전문인력’을 항상적으로 확보하고 있는가?						
Q3. 인력(자원봉사자 포함)의 고용절차 및 요건, 직무/역할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가?						
Q4. 직원의 능력 향상과 학습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연수에 참여하도록 하는가?						
Q5. 기관에 적절한 인력 규모는 몇 명이라고 생각하는가? ( )명						
Q5-1. 현재 업무분장 및 인원: 소장품 연구/등록( )명, 소장품 보존관리( )명, 전시기획( )명, 교육( )명, 행정/홍보( )명						
Q6.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적절한 재정 계획이 있는가?						
Q7. 기관 연도는 언제인가? ( )년 현재 시설 노후화 등 개선 필요성이 있는가?						
Q8. 등록요건 및 ‘소장품의 보존·관리를 위한 적절한 수장·전시환경 마련’에 따른 아래의 시설(종합박물관, 전문박물관, 미술관 별 요건)을 적정하게 구비하고 운영하고 있는가?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33%; vertical-align: top;"> <b>[종합박물관]</b>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2) 수장고(收藏庫): 2개 이상 잠금장치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6)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소화설비                 </td> <td style="width:33%; vertical-align: top;"> <b>[전문박물관]</b>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2개 이상 잠금장치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소화설비                 </td> <td style="width:33%; vertical-align: top;"> <b>[미술관]</b>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2개 이상 잠금장치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소화설비                 </td> </tr> </table>	<b>[종합박물관]</b>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2) 수장고(收藏庫): 2개 이상 잠금장치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6)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소화설비	<b>[전문박물관]</b>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2개 이상 잠금장치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소화설비	<b>[미술관]</b>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2개 이상 잠금장치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소화설비			
<b>[종합박물관]</b> 1) 각 분야별 전문박물관의 해당 전시실 2) 수장고(收藏庫): 2개 이상 잠금장치 3) 작업실 또는 준비실 4) 사무실 또는 연구실 5)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6)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소화설비	<b>[전문박물관]</b>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2개 이상 잠금장치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소화설비	<b>[미술관]</b> 1) 100제곱미터 이상의 전시실 또는 2,000제곱미터 이상의 야외전시장 2) 수장고: 2개 이상 잠금장치 3) 사무실 또는 연구실 4) 자료실·도서실·강당 중 1개 시설 5) 도난 방지시설, 온습도 조절장치, 소화설비				
Q9. 잠재적인 사고 및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방안을 갖추고 있는가?						

[부가 질문] (참여관 기입 →전문가 현장방문 면담조사/확인)

Q1. 등록요건에 따른 인력 수(일반 학예사 1명/ 경력인정대상기관 학예사 2명 이상)가 충족되지 못하고 인력 수의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Q3. 해당 규정의 내용은 어떤 것이며,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 (\* 증빙자료 확인)

Q5. 기관에 적절한 인력 규모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관의 방법 또는 노력은 무엇인가?

Q7. 현재 시설의 개선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Q8. 운영을 위해서 반드시 구비해야 할 시설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향후 구비 또는 개선 계획은 어떤 것인가?

[연구자 Part III 종합의견] (15줄 내외)

## PartIV. 소장품 (Collection, 자료)

### [기본 항목] (참여관 기입 →전문가 현장방문 면담조사/확인)

기본 확인 항목	예	아니오
Q1. 등록요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가치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가치 평가 기준’ 1) 자료의 해당 분야에의 적합성 2) 자료 수집의 적정성 3) 자료의 학술적·예술적·교육적·역사적 가치 4) 자료의 희소성		
Q2. ‘소장품 목록 및 취득·변경·활용 사항 등의 성실한 기록과 지속 관리’가 법정 관리대장을 사용하여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부록 참조]		
Q3. 소장품의 수집(취득) 및 폐기, 신규 소장품 개발, 소장품 관리 및 보존 등에 관한 정책(규정)을 문서화하여 마련하고 있는가?		
Q4-1. 소장품 DB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가?		
Q4-2. 소장품 DB 구축을 전담하는 학예사가 있는가?		
Q4-3. 소장품은 얼마나 공개되고 있는가?(2021년 기준) 총 소장품 수( )점, 온라인 공개( )점, 전시( )점, 대여( )점		
Q5-1. 모든 학예인력이 예방적 보존 및 보안 원칙을 숙지하고 준수하고 있는가?		
Q5-2. 소장품의 수복/복원이 필요할 경우, 이를 위한 방법이나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Q6. 소장품 관련 학문적, 기술적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Q7-1. 모든 학예사(연구, 전시, 교육 등)가 소장품에 대해 항상적으로 접근 가능한가?		
Q7-2. 소장품 관리를 전담하는 학예사를 지정하여 지속 관리하는가?		
Q7-3. 모든 학예사가 소장품의 가치, 내용, 보존 상태 등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는가?		
Q8. 소장품의 보존 환경은 양호한가?		

[부가 질문] (참여관 기입 → 전문가 현장방문 면담조사/확인)

Q1. [\*연구자 작성] 해당 관은 등록요건에서 제시하고 있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가치 평가 기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 본 박물관·미술관의 특성상, 등록요건의 ‘가치 평가 기준’이 적절하나? 적절하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본 박물관·미술관이 ‘가치 평가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나 제도개선, 지원이 필요한가?

Q3~8.

- (1) 소장품 정책(규정) 내용은 어떤 것인가? 소장품 획득, 변경, 처분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가?
- (2) 소장품의 획득, 변경, 처분 등이 발생할 경우에 이에 관한 의사결정 절차가 있는가?
- (3) 소장품 DB에 목록화된 소장품들에 대해 후속 연구조사가 이루어지는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 (4) 소장품의 연구조사, 보존수복 등을 위한 외부 협력 네트워크가 있는가? 소장품 연구조사, 보존관리 관련 문제점은 무엇인가?
- (5) 전시 및 교육 활동에 소장품은 얼마나 활용되는가? 소장품 외 자료(대여자료, 보조/복제자료 등)의 활용 비중이 높은가?

[연구자 Part IV 종합의견] (15줄 내외)

## Part V.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 (전시, 교육, 지역, 관람객)

### [기본 항목] (참여관 기입 → 전문가 현장방문 면담조사/확인)

기본 확인 항목	예	아니오
Q1-1. 기관이 자체적으로 만든 홈페이지가 있는가?		
Q1-2. 기관의 자체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업데이트하고 있는가?		
Q2-1. 2021년의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실적은 어떠한가? 상설전시(O, X), 기획/특별전시( )회, 교육 프로그램 수( )개		
Q2-2. 관련해 코로나19 등 제약이 되는 외부 요건이 있었는가?		
Q3. 설립목적 및 미션에 부합하는 상설전시를 하고 있는가?		
Q4. 최근 3년간 설립목적 및 미션에 부합하는 기획/특별전시가 이루어졌는가?(* 증빙자료 확인)		
Q5. 전시, 교육 등을 위한 충분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Q6. 기관의 이용자(관람객)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Q7-1. 최근 3년간 기획/특별전시의 소장품 활용도는 얼마나 되는가?		
Q7-2. 소장품에 대한 연구 및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증빙자료 확인)		
Q8-1. 지역사회 연계협력을 위한 별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Q8-2. 국내·외의 다른 박물관·미술관, 그 외 기관 등과 연계협력 경험이 있는가?		
Q8-3. 다른 기관과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 [부가 질문] (참여관 기입 → 전문가 현장방문 면담조사/확인)

Q2.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제약이 되는 외부 요건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 영향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

Q3~4. [\*연구자 작성] 해당 관은 설립목적 및 미션에 부합하는 상설전시 및 기획/특별전시를 하고 있는가? (장단점, 이유, 과제 등 서술)

※ 기획/특별전시의 경우, 최근 3년간 기획/특별전시 관련 자료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

Q4. 전시 및 교육 전문인력 확보에서 어려움은 무엇인가?

Q5. 이용자(관람객) 정책(규정)이 있다면 그 핵심내용은 무엇인가? (\* 증빙자료 확인) 향후 수정보완 계획은 있는가?

Q7-2. [\*연구자 작성] 소장품에 대한 연구 및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는 무엇인가?

Q8-3. 다른 기관과 연계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 이유, 장단점, 이를 위해 필요한 과제 등은 무엇인가?

[연구자 Part V 종합의견] (15줄 내외)

Part VI. 다음은 ‘우수 박물관·미술관’ 기준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관련 의견 수렴 항목입니다.

본 항목은 참여기관의 담당자 및 연구자가 각각 작성합니다.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평가인증제도는 ‘우수 박물관·미술관’을 인증하고 있습니다. 본 제도를 사립박물관·미술관에 확대 적용하거나, 혹은 본 제도에 준하는 또 다른 제도를 신설한다고 할 때,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동으로 지향해야 할 ‘우수 박물관·미술관’은 어떠한지 알려주세요?

[참여기관 의견]

[연구자 의견]

‘우수 박물관·미술관’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와 노력이 필요할까요? 현재의 여건과 상황을 진단해 볼 때, 박물관·미술관이 개별적으로 또는 함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참여기관 의견]

[연구자 의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자체는 건전한 박물관·미술관을 육성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우수 박물관·미술관’을 육성하는 데 국가 및 지자체가 어떠한 정책적 노력(제도 개선,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참여기관 의견]

[연구자 의견]

## 『2021년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 시범운영 :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재정립과 평가인증제도의 활용방안 연구』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 시범운영 사업: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재정립과 평가인증제도의 활용방안 연구』(연구기관: 한국예술평가학회)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라 국립 및 공립 박물관·미술관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소정의 평가를 통해 ‘우수 박물관·미술관’을 인증하여,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의 질적 향상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와 하였습니다. 이 제도 시행 이후 사립박물관·미술관에 대한 평가인증제도의 확대 적용을 검토하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 연구가 착수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연구는 현행의 국·공립박물관·미술관을 대상으로 한 평가인증제도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립박물관·미술관의 다양한 여건과 상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는 동시에,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운영에서 지향해야 할 공통의 기준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것이 평가인증제도의 도입 여부 및 그 목적, 방법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전제조건이자 정책 전반의 개선을 위한 초석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에 평가인증제도를 통해 공인되는 ‘우수 박물관·미술관’에 관한 공통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해외 각국의 국가별 운영 기준 사례를 검토하고, ‘박물관·미술관 정책 해외사례 공유포럼’(2022.3.16.)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사립박물관·미술관 종사자 및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널리 수렴하고자 본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해외 각국의 ‘국가 박물관·미술관 운영 기준’ 세부 항목들을 종합하여 분류·재구성한 것입니다. 적지 않은 분량의 항목이 망라되어 있어 응답하시는 데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지만, 우리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해외의 박물관·미술관 운영 기준을 통해 우리 현실에 필요한 기준들을 모색해 보고자 하오니, 부디 소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질문에 응답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 조사 주관 기관: (사)한국예술평가학회/협력 기관: (사)한국박물관협회, (사)한국사립미술관협회

■ 조사 수행 기관: (주)티브릿지코퍼레이션 김기덕 센터장

※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 ①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는 통계작성의 목적 외에 사용하지는 아니 된다.

다음은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SQ1. 귀하께서 현재 소속되어 있는 기관은 다음 중 어떤 유형에 해당되십니까?      ① 사립박물관      ② 사립미술관

SQ2. 그림, 귀 기관은 몇 종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① 1종      ② 2종

SQ3. 귀하께서 현재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설립주체 유형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체 출연)      ② 기업(인) 설립 공익법인      ③ 기업(인) 설립 비영리법인(재단법인)
- ④ 기업(회사법인) 소속 박물관·미술관      ⑤ 기업(인) 설립 외 비영리법인(재단법인)      ⑥ 기업(인) 설립 외 비영리법인(사단법인)
- ⑦ 개인 설립 (고유번호 부여단체)      ⑧ 개인 설립 (사업자 등록)      ⑨ 기타 \_\_\_\_\_

SQ4. 현재 사립박물관·미술관에서 귀하의 직위는 무엇입니까?

- ① 관장      ② 학예사(소장품 보존관리, 소장품 등록, 전시, 교육 등)      ③ 기타 \_\_\_\_\_

[SQ4에서 ②학예사로 답한 경우에만 SQ30.01과 SQ30.02에 응답]

SQ40.01. 귀하께서는 현재 국가인력지원사업에 참여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SQ40.02. 귀하께서 현재 소속되어 있는 기관에서 근무하고 계신 기간은 얼마입니까? ( \_\_\_\_\_년 \_\_\_\_\_개월)

SQ5. 귀하께서 사립박물관·미술관을 운영하거나 근무하신 총 기간은 얼마입니까? [\* 현재 기관에서 근무하기 이전의 운영 및 근무 경력까지 모두 합산하여 응답]

- ① 2년 미만      ② 2년 이상 5년 미만      ③ 5년 이상 10년 미만      ④ 10년 이상 15년 미만      ⑤ 15년 이상 20년 미만      ⑥ 20년 이상

SQ6. 귀하께서 현재 소속된 기관은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복수의 사립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현재 소속 기관 기준으로 응답]

-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광역시      ③ 인천광역시      ④ 대구광역시      ⑤ 대전광역시      ⑥ 울산광역시      ⑦ 광주광역시      ⑧ 경기도      ⑨ 강원도
- ⑩ 충청북도      ⑪ 충청남도      ⑫ 전라북도      ⑬ 전라남도      ⑭ 경상북도      ⑮ 경상남도      ⑯ 세종특별자치시      ⑰ 제주특별자치도

SQ7.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SQ8. 학력      ① 대학 졸업      ② 대학원 석사 졸업(학위 취득)      ③ 대학원 박사 졸업(학위 취득)

SQ9.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이상



해의 기준 세부 내용		내용에 공감하며, 국내 반영 필요	내용에 공감하나, 국내 반영은 검토 필요	내용에 공감하기 어려움, 논의 필요
해의 기준의 주제 범위	접근성의 제고 및 이를 위한 박물관·미술관(총사자)의 윤리	1	2	3
	박물관·미술관이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을 분명히 제시해야 하며, 이 공공 서비스의 중심에 교육이 있어야 한다.	1	2	3
	박물관·미술관은 적극적인 이용자뿐 아니라 다양한 유형의 잠재적 이용자에게 포용적이고 다양한 참여 기회를 보장한다.	1	2	3
	박물관·미술관은 지역의 좋은 이웃이 되고 지역과 함께 발전하기 위해 노력한다. 대중을 위해 그리고 대중과 함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생성하며 언론과 토론의 자유를 지지한다.	1	2	3

A1] 위 항목과 관련하여 추가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Part II.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조직 건전성(A(거버넌스/리더십·조직구조, 설립목적/미션, 계획, 평가)에 관한 질문입니다.**

B1] 귀하께서는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 기준으로 아래 항목들에 공감하시며, 국내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의 기준 세부 내용		내용에 공감하며, 국내 반영 필요	내용에 공감하나, 국내 반영은 검토 필요	내용에 공감하기 어려움, 논의 필요
해의 기준의 주제 범위	설립주체의 책임과 박물관·미술관 운영조직의 독립성	1	2	3
	1	1	2	3

해의 기준 세부 내용

해의 기준의 주제 범주	내용에 공감하며, 국내 반영 필요	내용에 공감하나, 국내 반영은 검토 필요	내용에 공감하기 어려워, 논의 필요
	1	2	3
	1	2	3
2 운영의 조직 및 절차 규정	1	2	3
	1	2	3
3 비물관·미술관 운영 관련 의사결정 및 정책 수립에서의 전문가 참여	1	2	3
	1	2	3
4 설립목적에 관한 공식 규정문서의 마련과 적용	1	2	3
	1	2	3
5 설립목적(미션)에 기반한 비물관·미술관의 운영방침 및 전략계획의 수립, 실행, 평가	1	2	3

비물관·미술관을 운영하는 독립된 조직이 규정에 의해 그 권한과 책임을 갖고 박물관·미술관 운영에 임하고 있다.

비물관·미술관 운영과 관련된 다양한 조직 및 구성원들의 역할과 책임을 규정하고 이를 집행할 절차를 가지고 있다. (이사회, 운영위원회, 관장, 직원, 자원봉사자, 이용자 등 포함)

비물관·미술관의 모든 구성원 및 운영 관계자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 권한에 대해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공유하며, 합법적, 윤리적, 효율적으로 각자의 책임을 이행한다.

소장품과 관련된 향후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승인하는 권한을 가진 사람 또는 조직이 있다.

업무 연속성과 책임을 보장하는 인수인계 절차가 있다.

비물관·미술관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과 정책 개발 과정에 적절한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관장/직원으로 종사하거나, 지문위원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등을 통해 참여)

비물관·미술관의 설립목적(미션), 즉 박물관·미술관이 왜 존재하고 누구를 위한 박물관·미술관인지를 정의하는 공식 규정문서를 마련해야 한다.

비물관·미술관의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결정 구조, 직원과 자원봉사자의 구성 및 업무 분담 방식, 구성원의 자질과 다양성 등을 포함한 박물관·미술관 운영과 활동의 모든 측면이 박물관·미술관의 설립목적(미션)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잘 갖추어져 있다.

비물관·미술관은 그 설립 목적(미션)을 바탕으로, 자료의 수집·보관·전시, 조사연구, 교육 활동 등의 실시에 관한 기본적인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공표해야 한다.

비물관·미술관은 기본적 운영방향을 바탕으로 주기적으로 또는 시엄 연도별로 운영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비물관·미술관의 운영방침 및 운영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용자 및 지역주민, 사회 전반의 요청에 충분히 유의해야 하고, 이용자와 지역 주민들이 운영 방침 및 전략계획 수립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해의 기준 세부 내용		내용에 공감하며, 국내 반영 필요	내용에 공감하나, 국내 반영은 검토 필요	당장 공감하기 어려워, 논의 필요
해의 기준의 주제 범주	박물관·미술관은 운영과 사업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각 연도의 사업계획의 달성 상황과 그 외 운영 상황에 대해 스스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한다. (자체평가)	1	2	3
	박물관·미술관은 운영과 사업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자체평가 외에, 외부 전문가, 이용자, 지역주민 등에 의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외부평가)	1	2	3
	박물관·미술관이 운영 전략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 박물관·미술관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	1	2	3
	박물관·미술관은 평가 결과 및 운영 개선 대책을 인터넷(홈페이지 등)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공표해야 한다.	1	2	3
	박물관·미술관은 폐기물을 최소화하고 그것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	1	2	3
6 지속가능한 운영 정책	박물관·미술관은 지속가능한 환경을 위한 정책을 공표하고, 이 정책은 박물관·미술관의 설립목적(미션)에도 적합해야 한다.	1	2	3
		1	2	3

※ 박물관·미술관 운영의 전략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 박물관·미술관 설립목적(미션) 문서
- ✓ 이전 시기의 전략계획에 대한 검토 및 분석
- ✓ 박물관·미술관의 환경 분석
- ✓ 박물관·미술관 운영 및 현황 관련 각종 의견들의 분석 및 권설행 결과 내용
- ✓ 박물관·미술관의 주요 목표
- ✓ 각 주요 목표에 관한 세부 목표
- ✓ 박물관·미술관의 목표 달성 방법
- ✓ 목표 달성에 가능한 인력, 재정 등의 자원 계획

B2] 위 항목과 관련하여 추가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Part III. 다음은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조직 건전성B(인력, 시설, 재정 등의 자원 안정성과 위기관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C1] 귀하께서는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 기준으로서 아래 항목들에 공감하시며, 국내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외 기준 세부 내용			내용에 공감하며, 국내 반영 필요	내용에 공감하나, 국내 반영은 검토 필요	당장 공감하기 어려워, 논의 필요
해외 기준의 주제 범주		박물관·미술관 운영을 총괄하여 전담하는 관장을 두어야 한다.	1	2	3	
		박물관·미술관의 설립목적(미션) 및 운영방침에 기초하여 박물관·미술관 사업(박물관·미술관 및 미술관 진흥법)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수의 학예사를 두어야 한다.	1	2	3	
		학예사 외에, 박물관·미술관의 행정, 홍보마케팅, 시설관리 등과 같은 사무 및 기능적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을 두어야 한다.	1	2	3	
1 인력		박물관·미술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이고 효과적인 고용 관련 규정과 절차를 마련하고 준수해야 한다. (모든 인력을 위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업무분장 및 협력 기준과 방법, 각 직무별 역할과 책임 설정 등)	1	2	3	
		박물관·미술관은 설립목적(미션) 및 운영방침에 따른 효과적인 박물관·미술관 활동을 위해, 모든 직원들이 자신의 전문적인 역량에 맞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를 분담하고 배치해야 한다.	1	2	3	
		박물관·미술관과 설립주체, 정부, 유관 협회나 단체 등은 박물관·미술관의 관장, 학예사, 그 외 직원의 능력 및 자질 향상, 경력 개발을 위한 연수(교육, 재교육, 보수교육 등) 기회를 충실히 마련해야 한다.	1	2	3	
2 재정		박물관·미술관은 직원의 지속적인 능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연수에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1	2	3	
		박물관·미술관은 설립목적(미션) 수행을 위해 법적, 윤리적으로 합당하게 재정을 확보하고 책임감 있게 재정을 운영해야 한다.	1	2	3	
		박물관·미술관은 박물관·미술관 운영과 관련된 재정이 합법적이고 인정적으로 관리, 운영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1	2	3	
3 시설 및 설비, 위기관리		박물관·미술관은 충분한 기용 자금을 보유해야 하며, 소장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는 안 된다.	1	2	3	
		박물관·미술관은 소장품, 직원, 이용자 등의 필요에 부합해 공간을 활용하고 시설을 활용한다.	1	2	3	

해의 기준의 주제 범위	해의 기준 세부 내용			내용에 공감하며, 국내 반영 필요	내용에 공감하나, 국내 반영은 검토 필요	다양 응답 공감하기 어려워, 논의 필요
(비상계획)	박물관·미술관은 시설의 장기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과 절차를 갖추고 있다.	1	2	3		
	박물관·미술관은 소장품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효과적인 운영 계획을 수립, 실행할 수 있을 만큼 부지와 건물의 장기적인 이용이 보장되어 있다.	1	2	3		
	박물관·미술관은 내화, 내진, 방충해, 방수, 방진, 방음, 온습도 조절, 일광 차단 또는 조절, 통풍 조절, 오염/피해/도난 방지, 그 외 박물관·미술관자료를 적절하게 보관하는 데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2	3		
	박물관·미술관은 청소년 대상 음성해설 기기, 경사로, 점자 및 와규어 표기, 수유시설, 그 외 청소년, 고령자, 장애인, 유소년 보호자, 외국인 등의 원활한 이용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2	3		
	박물관·미술관은 휴게시설 및 이용자의 쾌적한 관람을 위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	2	3		
	박물관·미술관은 사고, 재해, 그 외 비상사태에 의한 피해 방지를 위해, 박물관·미술관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사태에 관한 위기관리 대응안내서를 마련하고, 관계기관과 연계한 위기관리 훈련의 정기적 실시, 그 외 충분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1	2	3		
	박물관·미술관은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방재상, 위생상 필요한 설비를 갖추고, 사고나 재해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입장제한,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2	3		

C2] 위 항목과 관련하여 추가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Part IV. 다음은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소장품(Collection, 박물관·미술관 자료)에 관한 질문입니다.

D1] 귀하께서는 사립박물관·미술관 운영 기준으로서 아래 항목들에 공감하시며, 국내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의 기준의 주제 범위	해의 기준 내용			내용에 공감하며, 국내 반영 필요	내용에 공감하나, 국내 반영은 검토 필요	당장 공감하기 어려워, 논의 필요
	내용에 공감하며, 국내 반영 필요	내용에 공감하나, 국내 반영은 검토 필요	내용에 공감하며, 국내 반영 필요			
1	박물관·미술관은 설립목적(미션), 규정 및 정책, 전략계획에 명시된 바에 따라 소장품을 합법적, 윤리적, 효과적으로 획득, 관리, 보존, 활용해야 한다.	1	2	3		
	박물관·미술관은 소장품 및 그에 관한 정보를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1	2	3		
	박물관·미술관은 소장품의 획득, 관리, 보존, 폐기, 이관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별도의 소장품 정책 공문서와 그에 관한 절차 규정을 수립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	1	2	3		
	박물관·미술관은 미래 세대를 위해 중요한 컬렉션을 보존한다.	1	2	3		
2	박물관·미술관은 실물, 표본, 문헌, 도표, 필름 등의 각종 자료의 출처 조사결과, 학술연구 상황, 지역 내 다른 소장처 존재 여부, 자료의 전시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소장품의 필요 수량을 결정해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 전시해야 한다.	1	2	3		
	박물관·미술관은 박물관·미술관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등의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단독으로 또는 다른 박물관·미술관, 연구기관 등과 공동으로, 소장품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조사연구, 자료의 보존 및 전시 방법에 관한 기술적 연구, 그 외 다양한 학술연구를 실시해야 한다.	1	2	3		
3	소장품 관련 조사연구	1	2	3		
	소장품의 보존, 관리, 수복	1	2	3		

해외 기준의 주제 범주		해외 기준 내용		
4	아카이브 및 소장품 DB 구축	박물관·미술관은 소장 자료에 관한 도서, 문헌, 조사자료, 그 외 필요한 자료의 수집, 보관, 활용에도 노력해야 한다.	내용에 공감하거나, 국내 반영 검토 필요	내용에 공감하거나, 국내 반영 검토 필요
5	소장품의 부제	박물관·미술관의 적절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소장 자료 및 도서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한다.	내용에 공감하며, 국내 반영 필요	내용에 공감하며, 국내 반영 필요
6	후관폐관 시 소장품 양도 등	박물관·미술관은 자료의 수집 또는 보관이 곤란한 경우, 전시를 위한 교육적 배려가 필요한 경우, 또는 권외 대출 등이 곤란한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부제, 모조, 모사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제작하여 박물관·미술관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단, 저작권법과 그 외 법령에서 규정하는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1	3

※ 박물관·미술관 소장품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 소장품 개발 목적
- ✓ 현재 소장품 개요
- ✓ 향후 수집(획득)을 위한 주제 및 우선순위
- ✓ 소장품의 관리·보존·활용에 대한 규정
- ✓ 소장품 문서화(documentation) 및 폐기를 위한 우선순위
- ✓ 획득 및 폐기에 대한 법적·윤리적 규정 및 절차
- ✓ 소장품 관련 의사결정 구조 및 조직

D2] 위 항목과 관련하여 추가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Part V. 다음은 시립박물관·미술관의 이용자 및 이용자 경험(박물관·미술관 서비스, 해석·전시·교육·학습, 지역 연계협력 등에 관한 질문입니다.**

E1] 귀하께서는 시립박물관·미술관 운영 기준으로서 아래 항목들에 공감하시며, 국내에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외 기준 세부 내용		내용에 공감하며, 국내 반영 필요	내용에 공감하나, 국내 반영 검토 필요	당장 공감하기 어려워, 논의 필요
해외 기준의 주제 범주		1	2	3
	이용자 중심의 박물관·미술관 경험과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정책 수립)	1	2	3
2 소장품 해석 활동 전반 (연구·전시·교육)		1	2	3
		1	2	3

헤의 기준의 주제 범위	헤의 기준 세부 내용			내용에 공감하며 , 국내 반영 필요	내용에 공감하나 , 국내 반영은 검토 필요	다양 응답 공감하기 어려워, 논의 필요
3 전시 활동	박물관·미술관은 해석 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박물관·미술관 운영 계획의 수립·개선에 활용해야 한다.	1	2	3	3	
4 이용자의 학습 및 조사연구 활동에 기여	<p>박물관·미술관은 기본적인 운영방식에 기초해, 소장 자료의 상설전시(상설전시 갱신)를 하거나, 특정 주제를 정해 소장 자료 또는 임시로 빌려온 자료로 기획/특별전시를 행한다.</p> <p>박물관·미술관은 전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소장품 및 전시자료의 특성에 부합하는 전시방법을 연구·개발하고, 문헌자료, 음성, 영상 등의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다.</p> <p>박물관·미술관은 이용자의 학습활동 및 조사연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순회전, 찾아가는 프로그램 등을 개최한다.</p> <p>박물관·미술관은 이용자의 학습활동 및 조사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장 자료에 관한 각종 강연회, 연구회, 아동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활동 및 학습활동 행사 등을 개최하고, 학교나 교육단체에 박물관·미술관 활용에 필요한 안내나 조언을 제공해야 한다.</p> <p>박물관·미술관은 이용 편의 확대 및 조사연구 성과의 확산을 위해, 박물관·미술관 안내서, 팸플릿, 도록, 연보, 연구보고서, 소장품 해설서 등을 제작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으로 공개, 배포해야 한다.</p>	1	2	3	3	
5 유관기관/단체 및 이용자/ 지역주민과의 연계협력을 통한 이용자 경험 증대	<p>박물관·미술관은 학교, 다른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그 외 문화기관, 학술기관, 교육단체, 행정기관, 민간기업이나 사업자 등과 긴밀히 연계, 협력하여 박물관·미술관 활동을 수행한다.</p> <p>박물관·미술관은 이용자 및 지역주민이 학습을 통해 지식 및 기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전시자료 해설, 행사 기획, 학예업무 보조, 자료조사 등의 활동기회를 제공한다.</p>	1	2	3	3	

※ 박물관·미술관 이용자 서비스 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 모든 이용자를 존중하고 확대하는 박물관·미술관 문화 조성 방안
- ✓ 소장품 및 관련 정보에 대한 모든 시민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공식 정책문서
- ✓ 지역이 직면하고 있는 우선적 과제에 대한 박물관·미술관의 협력 방안 등

E2] 위 항목과 관련하여 추가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면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 등록 사립박물관·미술관 평가인증 시범운영: 사립박물관·미술관 정책의 재정립과 평가인증제 시행방안 연구

---

발 행 일: 2022.6.20.

발 행 처: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기반과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www.mcst.go.kr](http://www.mcst.go.kr)

연 구 처: 사단법인한국예술경영학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39, 3층 3317호(서초동, 한성빌딩)  
[www.kartsnet.org](http://www.kartsnet.org)

인 쇄 처: 주식회사 필경

---

<비매품>

※ 이 책에 실린 글과 그림, 사진, 내용을 포함한 제반 사항은  
저작권자와 협의 없이 무단전제 및 복제를 금합니다.





